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서문

대한민국(이하 “한국” 이라 한다)과 에콰도르공화국(이하 “에콰도르” 라 한다)(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국” 이라 한다)은,

양 당사국 간 우호관계와 협력의 특별한 결속을 강화하고 경제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 협정이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과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빈곤을 경감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발전 증진을 약속하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역에서 생활 수준을 제고하며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

양국의 무역 관계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조건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의 영역 간 무역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방지할 것임을 결의하고,

이 협정이 양 당사국이 채택한 국제적 약속에 따라, 환경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증진을 위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임을 인식하며,

노동권의 보호 및 집행을 추구하고, 생활 수준과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며, 노동 사안에서 양 당사국의 협력 및 역량을 증진시키고,

국제 무역에서 포용적 무역과 중소기업¹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우수한 거버넌스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 환경이 경제 효율성의 향상과 무역 및 투자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을 인식하고,

양 당사국 간의 상이한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하며,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¹ 에콰도르의 경우, 중소기업은 서민연대경제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1절 최초규정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1.2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그들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즉시 서로 협의한다.¹

제1.3조 의무의 범위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에 상정된 협의는 제20장(분쟁해결)에 수립된 분쟁해결절차의 단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상 모든 규정의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그리고 그러한 정부와 당국이 위임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구에 의한 협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2절 일반정의

제1.4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

관세는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 그리고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²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세”는 한국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되는 조정관세를 포함한다.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존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세계무역기구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22장(제도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 국민, 그리고

나. 에콰도르의 경우, 에콰도르 헌법에 따라,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한 에콰도르인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의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사회연대경제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수용, 이익 및 자본 축적보다 인간과 노동을 그 활동의 핵심에 두고, 연대와 협력 및 상호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필요를 충족하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³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상업화, 자금 조달 및 소비의 과정을 조직하고 개발하는 경제 조직의 한 형태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⁴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³ 서민연대경제의 구성원은 사회연대경제의 이해관계자이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대하여,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자국의 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에콰도르에 대하여, 에콰도르의 헌법에 따라, 에콰도르가 국제법과 자국의 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토, 해양, 인접 도서, 영해, 갈라파고스 제도, 대륙붕, 하층토 및 상공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⁵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효 중인 모든 면제를 포함한다.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내국민 대우

제2.2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2절 관세 철폐

제2.3조 상품 분류

양 당사국 간 무역에서의 상품 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합치하는 각 당사국 각자의 관세품목분류표에 규정된 분류이다.

제2.4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나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의 가속화 또는 개선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이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합의는 제23.2조(개정)에 따라,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 수정을 통하여 채택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후에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3절

특별 제도

제2.5조

관세 면제

1.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 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관세 면제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관세 면제의 적용을 기존의 수혜자에 대하여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기존의 관세 면제의 지속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2.6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 가.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 당국이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여기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으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해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 만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국의 관세 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8.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자국의 영역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어떠한 당사국도 컨테이너가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반하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2.7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상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2.8조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 광고물이 포장 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않을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중 어떠한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

제4절

비관세조치

제2.9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나 제한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통합된 1994년도 GATT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4.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항은 당사국이 제4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당국과 그 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6. 제4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2.10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¹

2.

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기존의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30일 전에 공표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수입허가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11조

¹ 제1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를 결정할 때 각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행정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되도록이면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제2.12조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제2.13조

국영무역기업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른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1994년도 GATT 제17조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제출한 통보의 맥락에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국영무역기업의 개별 사례,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방식 및 그 운영이 양자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비밀정보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조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5절 그 밖의 조치

제2.14조 농업 수출 보조금

1. 양 당사국은 농산물에 대하여 예정된 수출 보조금 권리의 철폐를 포함하여, 2015년 12월 19일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수출 경쟁에 관한 2015년 12월 19일 각료회의 결정(WT/MIN(15)/45, WT/L/980)」에서 한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의 다자적 철폐의 목표를 공유하고, 제1항에 언급된 각료회의 결정에 규정된 철폐가 완료되면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이 어떠한 형태로든 재도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2.15조 안데스 가격밴드제도

1. 에콰도르는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속서 2-다에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 11월 26일의 안데스공동체 결정 제371호와 그 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데스 가격밴드제도 또는 후속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²

제2.16조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² 부속서 2-나에 따라, 에콰도르는 양허유형 X로 규정되며 안데스 가격밴드제도 열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안데스 가격밴드제도를 유지한다.

부록 2-나-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을 갖춘 당사국은 그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13조와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운영한다.

제6절 제도규정

제2.17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감독하는 것
 - 나. 이 협정상 관세 양허의 가속화 또는 개선,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 다.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 라.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호부터 다호까지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장을 제공하는 것

마. 그 권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조언 및 권고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바. 이 장과 관련하여 공동위원회가 결정한 그 밖의 사안을 수행하는 것

4. 양 당사국은 농수산물 무역 임시작업반을 설치한다. 양 당사국 간 농수산물의 무역에 대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작업반은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임시작업반은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절

정의

제2.18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 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국내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넘지 않는 가치 또는 수량을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할 것
- 나.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 다.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 라.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외환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그러나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바.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될 것

사.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탈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 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며,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1. 에콰도르에 대하여, 제2.2조 및 제2.9조는 다음의 조치 및 그 조치의 지속, 신속한 갱신 또는 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조치의 지속, 신속한 갱신 또는 개정은 이 협정과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가. 대외무역위원회 결의 제51호에 따라 수립된 중고차, 부품, 예비부품 및 부속품의 수입과 관련된 조치 및 후속 개정, 그리고

나. 2003년 1월 8일에 통과되고 2003년 4월 8일에 관보 제57호에 공표된 대외통상투자위원회 결의 제182호의 중고 의류, 중고 신발 및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조치, 그리고 그 결의의 수정

2. 한국과 에콰도르에 대하여, 제2.2조 및 제2.9조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한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 후에 재검토된다.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 가.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A”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B”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라.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D”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마.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E”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바.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F”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사.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G”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S”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1)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된다.
- 2)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 3)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에콰도르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된다, 그리고
- 4)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에콰도르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자.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TRQ”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부록 2-나-1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그리고

차.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X”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2. 상품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리고 에콰도르 공식 통화단위의 가장 근접한 0.001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23.4조(발효)에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 주해

한국의 관세양허표

1. 한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속적인 인하가 적용될 기준관세율은 이 부속서에 명시된 기준관세율이다.

부록 2-나-1

한국의 관세율할당 운영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한국이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에콰도르의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에콰도르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않는다.

2.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에콰도르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된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10,000
2	11,000
3	12,000
4	13,000
5	14,000
6	15,000

이행 6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이행 6년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 제1항차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그리고

다. 가호 및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306161090, 0306169090, 0306171090, 0306179090, 1605211000, 1605219000 및

1605290000.

3. 한국수산물무역협회는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고, 공매 제도를 통하여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일반 주해
에콰도르의 관세양허표

1. 에콰도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E”)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E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E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E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E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속적인 인하가 적용될 기준관세율은 이 부속서에 명시된 것이다.

부속서 2-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³

HSE 2017	품목명
1007.90.00.00	- 기타
1101.00.00.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8.19.00.00	- - 그 밖의 전분
1201.90.00.00	- 기타
1202.41.00.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1202.42.00.00	- -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6.00.90.00	- 기타
1207.10.90.00	- - 기타
1207.99.99.00	- - - 기타
1208.10.00.00	- 대두로 만든 것
1208.90.00.90	- - 기타
1502.10.10.00	- - 변성된 것
1502.10.90.00	- - 기타
1502.90.10.00	- - 변성된 것
1503.00.00.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및 텔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 혼합 또는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1508.10.00.00	- 조유(粗油)
1508.90.00.00	- 기타
1512.11.20.00	- - - 잇꽃
1512.19.20.00	- - - 잇꽃
1512.21.00.00	- - 조유(粗油) [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1512.29.00.00	- - 기타
1513.11.00.00	- - 조유(粗油)
1513.19.00.00	- - 기타
1513.21.10.00	- - - 팜핵의 것
1513.29.10.00	- - - 팜핵의 것
1514.11.00.00	- - 조유(粗油)
1514.19.00.00	- - 기타
1514.91.00.00	- - 조유(粗油)
1514.99.00.00	- - 기타
1515.21.00.00	- - 조유(粗油)

³ 이 부속서에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고정요소는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양허표에 따라 철폐된다. 안데스 가격밴드제도의 가변적 요소는 유지된다.

1515.29.00.00	- - 기타
1515.30.00.0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1515.50.00.0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15.90.00.90	- - 기타
1516.20.00.00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1517.10.00.00	-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1517.90.00.00	- 기타
1518.00.90.90	- - 기타
1702.30.20.00	- - 포도당시럽
1702.30.90.00	- - 기타
1702.40.10.00	- - 포도당
1702.90.90.00	- - 기타
1703.10.00.0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2302.10.00.00	- 옥수수에서 나온 것
2302.30.00.90	- - 기타
2302.40.00.00	-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2309.90.90.13	- - - - 양식용(입자 지름이 1,200마이크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2309.90.90.19	- - - - 기타

부속서 2-나
한국 관세양허표

HSK 2021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참고
0101211000	농가 사육용	0	A	
0101219000	기타	8	C	
0101291000	경주말	8	C	
0101299000	기타	8	C	
0101301000	번식용	8	A	
0101309000	기타	8	C	
0101900000	기타	8	A	
0102211000	젖소	89.1	A	
0102212000	육우(肉牛)	89.1	A	
0102219000	기타	89.1	A	
0102291000	젖소	40	X	
0102292000	육우(肉牛)	40	X	
0102299000	기타	0	A	
0102310000	번식용	89.1	A	
0102391000	젖소	40	X	
0102392000	육우(肉牛)	40	X	
0102399000	기타	0	A	
0102901000	번식용	89.1	A	
0102909010	젖소	40	X	
0102909020	육우(肉牛)	40	X	
0102909090	기타	0	A	
0103100000	번식용	18	A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18	G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18	G	
0104101000	번식용	0	A	
0104109000	기타	8	C	
0104201000	젖산양	8	C	

0104209000	기타	8	C	
0105111000	번식용	9	A	
0105119000	기타	9	C	
0105120000	칠면조	9	C	
0105131000	번식용	0	A	
0105139000	기타	18	E	
0105140000	거위	9	C	
0105150000	기니아새	9	A	
0105941000	번식용	9	A	
0105949000	기타	9	C	
0105991010	번식용	0	A	
0105991090	기타	18	E	
0105992000	칠면조	9	C	
0105999000	기타	9	C	
0106110000	영장류	8	C	
010612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8	D	
0106122000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8	C	
010613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8	B	
0106141000	번식용	0	A	
0106149000	기타	8	C	
0106191000	개	8	C	
0106193000	사슴	8	C	
0106194000	곰	8	C	
0106195010	번식용	0	A	
0106195090	기타	8	C	
0106196010	번식용	0	A	
0106196090	기타	8	C	
0106199000	기타	8	B	
0106201000	뱀	8	C	
0106202000	자라	8	C	
0106203000	거북	8	C	

0106209000	거북	8	C	
0106310000	맹금류	8	C	
0106320000	앵무류[패럿류(parrots) · 패러키트류(parakeets) · 금강앵무류 ·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8	C	
0106330000	타조와 에뮤(emu)[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드iae(Dromaius novaehollandiae)]	8	C	
0106390000	기타	8	A	
0106411000	꿀벌	8	C	
0106419000	기타	8	C	
0106490000	기타	8	A	
0106901000	양서류	8	C	
0106903010	갯지렁이	8	C	
0106903020	실지렁이	8	C	
0106903090	기타	8	C	
0106909000	기타	8	C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X	
0201201000	갈비	40	X	
0201209000	기타	40	X	
0201300000	뼈 없는 것	40	X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X	
0202201000	갈비	40	X	
0202209000	기타	40	X	
0202300000	뼈 없는 것	40	X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X	
0203120000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5	X	
0203191000	삼겹살	22.5	X	
0203199000	기타	22.5	X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5	G	
0203220000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G	
0203291000	삼겹살	25	G	

0203299000	기타	25	G	
02041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E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E	
02042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E	
0204230000	뼈 없는 것	22.5	E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C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E	
02044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C	
0204430000	뼈 없는 것	22.5	E	
02045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22.5	E	
0204502000	냉동한 것	22.5	E	
02050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27	E	
0205002000	냉동한 것	27	E	
020610000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0206210000	허	18	X	
0206220000	간	18	X	
0206291000	꼬리	18	X	
0206292000	족	18	X	
0206299000	기타	18	G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0206410000	간	18	G	
0206491000	족	18	G	
0206499000	기타	18	G	
02068000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11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18	X	
0207119000	기타	18	X	
020712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20	X	
0207129000	기타	20	X	
0207131010	다리	18	X	

0207131020	가슴	18	G	
0207131030	날개	18	G	
0207131090	기타	18	G	
0207132010	간	22.5	G	
0207132090	기타	27	G	
0207141010	다리	20	G	
0207141020	가슴	20	G	
0207141030	날개	20	G	
0207141090	기타	20	G	
0207142010	간	22.5	X	
0207142090	기타	27	G	
020724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25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D	
0207261000	절단육	18	E	
0207262010	간	22.5	E	
0207262090	기타	27	E	
0207271000	절단육	18	D	
0207272010	간	22.5	D	
0207272090	기타	27	D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G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G	
0207441000	절단육	18	G	
0207442010	간	22.5	G	
0207442090	기타	27	G	
0207451000	절단육	18	X	
0207452010	간	22.5	X	
0207452090	기타	27	X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E	
0207541000	절단육	18	E	

0207542010	간	22.5	E	
0207542090	기타	27	E	
0207551000	절단육	18	X	
0207552010	간	22.5	E	
0207552090	기타	27	E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X	
0207603100	절단육	18	E	
0207603210	간	22.5	E	
0207603290	기타	27	E	
0207604100	절단육	18	X	
0207604210	간	22.5	E	
0207604290	기타	27	E	
0208100000	토끼의 것	22.5	E	
0208300000	영장류의 것	18	E	
020840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D	
0208402000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C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8	E	
020860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데(Camelidae)과]의 것	18	E	
0208901000	사슴의 것	27	E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30	C	
0208909090	기타	18	E	
0209100000	돼지의 것	3	A	
0209900000	기타	3	A	
0210110000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X	
021012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0	X	
0210190000	기타	25	X	
0210201000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27	X	
0210209000	기타	27	X	
0210910000	영장류의 것	22.5	E	

021092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D	
0210922000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C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2.5	E	
0210991010	소의 것	22.5	X	
0210991020	돼지의 것	22.5	X	
0210991030	가금(家禽)류의 것	22.5	E	
0210991090	기타	22.5	X	
0210999010	면양과 산양의 것	22.5	E	
0210999020	가금(家禽)류의 것	22.5	E	
0210999090	기타	22.5	E	
0301111000	비단잉어	10	E	
0301119000	기타	10	E	
0301190000	기타	10	E	
030191100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10	E	
0301912000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E	
0301921000	실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A	
0301922000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5	A	
0301929010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	10	G	
0301929090	기타	20	X	

030193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10	D	
030194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	10	E	
030194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0	E	
030195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	E	
0301992000	방어	10	E	
0301994010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A	
0301994090	기타	28% 또는 2,052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301995000	붕장어	10	X	
0301996000	갯장어	10	D	
0301997000	먹장어	10	D	
0301998000	넙치류	10	X	
0301999010	능성어	10	E	
0301999020	복어	10	D	
0301999030	틸라피아	10	G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G	
0301999051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A	
0301999059	기타	28	X	
0301999060	숭어	10	E	
0301999070	미꾸라지	10	D	
0301999080	메기	10	E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Hexagrammos)종 · 아그라무스(Agrammus)종]	10	D	
0301999092	붕어	10	D	

0301999093	연어	10	D	
0301999094	초어	10	C	
0301999095	민어	10	X	
0301999096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은 제외한다]	10	D	
0301999099	기타	10	E	
030211100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20	E	
0302112000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웅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0	E	
03021300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20	D	
030214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0	D	
0302190000	기타	20	D	
0302210000	넙치[레인하르트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20	X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20	G	
03022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20	D	
0302240000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20	G	
0302290000	기타	20	G	
03023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20	D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20	G	
0302330000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20	G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20	X	
03023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	20	E	
03023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20	E	
03023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20	E	
0302390000	기타	20	E	
03024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0	E	
0302420000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20	X	
03024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20	E	
03024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20	X	
03024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20	X	
03024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20	C	
03024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0	D	
0302491000	삼치[스콤버로모루스(Scomberomorus)종]	20	X	
0302492000	병어[팜푸스(Pampus)종]	20	D	
0302493000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20	E	
0302499000	기타	20	E	

0302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20	E	
03025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i>Melanogrammus aeglefinus</i>)]	20	C	
03025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i>Pollachius virens</i>)]	20	E	
03025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i>Merluccius</i>)종 · 유르피키스(<i>Urophycis</i>)종]	20	C	
03025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i>Theragra chalcogramma</i>)]	20	E	
0302560000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i>Micromesistius poutassou</i>)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i>Micromesistius australis</i>)]	20	D	
0302590000	기타	20	G	
03027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종]	20	G	
0302720000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종 · 실루러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종 · 익타루러스(<i>Ictalurus</i>)종]	20	E	
0302730000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종 · 카라시우스(<i>Carassius</i>)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종 · 시리누스(<i>Cirrhinus</i>)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종]	20	C	
0302740000	뱀장어[앙귤라(<i>Anguilla</i>)종]	20	G	
0302790000	기타	20	E	
0302810000	곰상어와 그 밖의 상어	20	E	
03028200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i>Rajidae</i>)과]	20	X	
0302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종]	20	E	
0302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i>Dicentrarchus</i>)종]	20	D	
0302850000	돔[스파리대(<i>Sparidae</i>)과]	20	D	
0302891000	방어	20	E	
0302892000	갈치	20	X	

0302893000	붕장어	20	G	
0302894000	갯장어	20	C	
0302895000	학꽂치(Hyporhamphus sajori)	20	E	
0302896000	돔[스파리대(Sparidae)과는 제외한다]	20	D	
0302899020	복어	20	C	
0302899040	아귀	20	C	
0302899090	기타	20	E	
0302911000	간	20	C	
0302912000	어란(魚卵) · 어백(魚白)	20	C	
0302920000	상어 지느러미	20	E	
0302990000	기타	20	G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10	D	
0303120000	그 밖의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10	D	
030313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D	
030314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E	
0303190000	기타	10	D	
030323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X	
030324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루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루스(Ictalurus)종]	10	F	

030325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10	X	
0303260000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10	X	
0303290000	기타	10	C	
0303310000	넙치[레인하르트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10	X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10	X	
03033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10	D	
0303340000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10	X	
0303390000	기타	10	X	
03034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10	E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10	G	
0303430000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10	G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10	G	
03034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10	E	
03034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0	E	
03034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	E	
0303490000	기타	10	F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0	E	

03035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종], 브리스링(<i>brisling</i>)이나 스프랫(<i>sprats</i>)[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10	E	
03035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i>Scomber scombrus</i>)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콤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10	X	
03035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i>Trachurus</i>)종]	10	X	
03035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i>Rachycentron canadum</i>)]	10	C	
03035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10	E	
0303591000	삼치[스콤버로모루스(<i>Scomberomorus</i>)종]	10	X	
0303592000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i>Cololabis saira</i>)]	24	X	
0303599000	기타	10	X	
03036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10	E	
030364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i>Melanogrammus aeglefinus</i>)]	10	C	
030365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i>Pollachius virens</i>)]	10	E	
0303660000	민대구[메루키우스(<i>Merluccius</i>)종 · 유르피키스(<i>Urophycis</i>)종]	10	G	
030367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i>Theragra chalcogramma</i>)]	22	X	
0303680000	블루 화이팅스(<i>blue whittings</i>)[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i>Micromesistius poutassou</i>)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i>Micromesistius australis</i>)]	10	D	
0303691000	새꼬리민태	10	C	
0303699000	기타	22	X	
030381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10	E	
0303821000	가오리	10	E	
0303822000	홍어	10	X	
0303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종]	10	D	
0303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i>Dicentrarchus</i>)종]	10	D	
0303891000	은대구	10	E	

0303892000	갈치	10	X	
0303893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Branchiostegus Japonicus)]	10	E	
0303893090	기타	10	E	
0303894000	붕장어	10	X	
0303895000	조기	10	X	
0303896000	학꽂치(Hyporhamphus sajori)	10	X	
0303898000	복어	10	D	
0303899010	보리멸	10	D	
0303899020	홍살치	10	D	
0303899030	달고기	10	D	
0303899040	임연수어	10	D	
030389905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X	
0303899060	아귀	10	D	
0303899070	먹장어(대서양 또는 태평양)	10	D	
0303899080	밀크피쉬	10	D	
0303899091	민어	10	X	
0303899092	까나리	10	C	
030389909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	10	D	
0303899099	기타	10	X	
0303911000	간	10	C	
0303912010	명란	10	C	
0303912090	기타	10	C	
0303920000	상어 지느러미	10	E	
0303990000	기타	10	X	
03043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20	G	
03043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20	E	
03043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20	C	
0304390000	기타	20	G	

03044100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i>Oncorhynchus nerka</i>)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i>Oncorhynchus gorbuscha</i>) · 웅코링쿠스 케타(<i>Oncorhynchus keta</i>) · 웅코링쿠스 차비차(<i>Oncorhynchus tshawytscha</i>) · 웅코링쿠스 키수츠(<i>Oncorhynchus kisutch</i>) · 웅코링쿠스 마소(<i>Oncorhynchus masou</i>)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i>Oncorhynchus rhodurus</i>)],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i>Salmo salar</i>)],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i>Hucho hucho</i>)]	20	D	
0304420000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웅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웅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웅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 웅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 · 웅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20	E	
0304431000	가자미	20	G	
0304439000	기타	20	G	
0304440000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과 · 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과 · 가디대(<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대(<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대(<i>Merlucciidae</i>)과 · 모리대(<i>Moridae</i>)과 ·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	20	F	
030445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20	E	
030446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종]	20	E	
030447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20	G	
0304481000	가오리	20	G	
0304482000	홍어	20	G	
0304491000	붕장어	20	X	
0304492000	참다랑어	20	E	
0304499000	기타	20	X	
0304511000	연육	20	G	
0304519000	기타	20	G	

0304521000	연육	20	D	
0304529000	기타	20	D	
0304531000	연육	20	F	
0304539000	기타	20	F	
0304541000	연육	20	E	
0304549000	기타	20	E	
0304551000	연육	20	D	
0304559000	기타	20	D	
0304561000	연육	20	E	
0304569000	기타	20	D	
0304571010	연육	20	E	
0304571090	기타	20	E	
0304572010	연육	20	E	
0304572090	기타	20	E	
0304591010	연육	20	X	
0304591090	기타	20	X	
0304592010	연육	20	G	
0304592090	기타	20	G	
0304593010	연육	20	E	
0304593090	기타	20	E	
0304599010	연육	20	E	
0304599090	기타	20	D	
03046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X	
03046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10	E	
03046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10	C	
0304690000	기타	10	G	
03047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F	
0304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10	C	
03047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10	E	

03047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10	X	
03047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0	E	
0304790000	기타	10	E	
03048100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D	
030482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ogas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E	
0304831000	가자미	10	X	
0304839000	기타	10	X	
030484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X	
030485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10	D	
030486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0	E	
0304871000	참다랑어	10	E	
0304879000	기타	10	X	
0304881000	곱상어, 그 밖의 상어	10	G	
0304882000	가오리	10	G	
0304883000	홍어	10	G	
0304891000	붕장어의 것	10	F	
0304892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의 것	10	D	

0304893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은 제외한다]의 것	10	G	
0304894000	쥐치의 것	10	D	
0304899000	기타	10	G	
0304911000	냉동 연육	10	E	
0304919000	기타	10	E	
0304921000	냉동 연육	10	D	
0304929000	기타	10	D	
0304931000	냉동 연육	10	G	
0304939000	기타	10	X	
0304941000	냉동 연육	10	E	
0304949000	기타	10	E	
0304951000	냉동 연육	10	F	
0304959000	기타	10	E	
0304961000	냉동 연육	10	E	
0304969000	기타	10	E	
0304971010	냉동 연육	10	E	
0304971090	기타	10	E	
0304972010	냉동 연육	10	E	
0304972090	기타	10	E	
0304991000	냉동 연육	10	E	
0304999000	기타	10	E	
0305100000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C	
0305201000	간	20	C	
0305202000	건조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20	C	
0305203000	훈제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20	C	
0305204010	명태의 것	20	E	
0305204020	조기의 것	20	G	
0305204030	청어의 것	20	E	
0305204090	기타	20	C	
0305311000	건조한 것	20	E	

030531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G	
0305321000	건조한 것	20	E	
030532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E	
0305391000	건조한 것	20	E	
03053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E	
03054100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i>Oncorhynchus nerka</i>)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i>Oncorhynchus gorbuscha</i>) · 웅코링쿠스 케타(<i>Oncorhynchus keta</i>) · 웅코링쿠스 차비차(<i>Oncorhynchus tshawytscha</i>) · 웅코링쿠스 키수츠(<i>Oncorhynchus kisutch</i>) · 웅코링쿠스 마소(<i>Oncorhynchus masou</i>)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i>Oncorhynchus rhodurus</i>)],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i>Salmo salar</i>)],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i>Hucho hucho</i>)]	20	D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20	E	
0305430000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웅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웅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웅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 웅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 · 웅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20	E	

03054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램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길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20	G	
0305491000	멸치	20	X	
0305492000	명태	20	E	
0305499000	기타	20	E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0	E	
030552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램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길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20	E	

03055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과 · 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과 · 가디대(<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대(<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대(<i>Merlucciidae</i>)과 · 모리대(<i>Moridae</i>)과 ·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	20	E	
0305541000	멸치[엔그라우리스(<i>Engraulis</i>)종]	20	X	
0305549000	기타	20	E	
0305593000	명태(북어)	20	E	
0305594000	조기(굴비)	20	X	
0305595000	복어	20	D	
0305596000	갯장어	20	D	
0305597000	까나리	20	C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20	D	
0305599000	기타	20	E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20	E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20	E	
0305631000	멸치젓	20	X	
0305639000	기타	20	X	

03056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램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길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20	X	
0305691000	연어	20	D	
0305692000	송어	20	E	
0305693000	갈치	20	G	
0305694000	정어리	20	E	
0305695000	고등어	20	X	
0305696000	조기	20	G	
0305697000	전갱이	20	G	
0305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E	
0305699000	기타	20	E	
0305711000	훈제한 것	20	E	
0305712000	건조한 것	20	E	
030571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E	
0305721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의 것	20	D	
0305729000	기타	20	E	
0305790000	기타	20	E	
0306111000	훈제한 것	20	X	
0306119000	기타	20	X	
03061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G	

03061210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G	
0306129000	기타	20	X	
0306141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E	
0306141012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E	
0306141090	기타	20	E	
0306142010	훈제한 것	20	D	
0306142090	기타	20	D	
0306143010	훈제한 것	20	G	
0306143090	기타	14	X	
0306149010	훈제한 것	20	D	
0306149090	기타	14	D	
0306151000	훈제한 것	20	E	
0306159000	기타	20	E	
0306161010	훈제한 것	20	G	
0306161090	기타	20	TRQ	부록 2-나-1 참고
0306169010	훈제한 것	20	G	
0306169090	기타	20	TRQ	부록 2-나-1 참고
0306171010	훈제한 것	20	G	
0306171090	기타	20	TRQ	부록 2-나-1 참고
0306179010	훈제한 것	20	G	
0306179090	기타	20	TRQ	부록 2-나-1 참고
0306191000	훈제한 것	20	G	
0306199000	기타	20	G	
03063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 · 파누리루스(Panulirus)종 · 자수스(Jasus)종]	20	X	
03063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20	X	
0306331000	꽃게	20	G	
0306332000	대게	20	X	
0306339000	기타	20	E	
0306340000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20	X	

0306350000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리스(Pandalus)종 · 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20	X	
0306360000	그 밖의 새우류	20	X	
0306390000	기타[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	20	G	
0306912000	건조한 것	20	X	
030691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X	
0306914000	훈제한 것	20	X	
0306922000	건조한 것	20	G	
030692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G	
0306924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G	
03069240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G	
0306932000	건조한 것	20	G	
030693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X	
0306934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G	
0306934012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G	
0306934090	기타	20	G	
0306942000	건조한 것	20	G	
030694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E	
0306944000	훈제한 것	20	G	
0306951020	건조한 것	20	X	
030695103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32	X	
0306951040	훈제한 것	20	X	
0306959020	건조한 것	20	X	
030695903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32	X	
0306959040	훈제한 것	20	X	
0306992000	건조한 것	20	G	
03069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G	
0306994000	훈제한 것	20	G	
0307111010	종패용	0	A	
0307111090	기타	5	G	
0307119000	기타	20	X	

0307120000	냉동한 것	20	X	
0307192000	건조한 것	20	X	
0307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X	
0307194000	훈제한 것	20	X	
0307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D	
0307220000	냉동한 것	20	D	
0307292000	건조한 것	20	D	
0307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D	
0307294000	훈제한 것	20	D	
03073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E	
0307320000	냉동한 것	20	E	
0307392000	건조한 것	20	E	
0307393000	훈제한 것	20	E	
0307399000	기타	20	E	
0307421010	세피아 오피시날리스(<i>Sepia officinalis</i>) · 로시아 마크로소마(<i>Rossia macrosoma</i>) · 세피올라(<i>Sepiola</i>)종	10	D	
0307421090	기타	20	C	
0307422010	옴마스트레페스(<i>Ommastrephes</i>)종 · 로리고(<i>Loligo</i>)종 · 노토토다루스(<i>Nototodarus</i>)종 · 세피오투디스(<i>Sepioteuthis</i>)종	10	X	
0307422090	기타	20	C	
0307431010	세피아 오피시날리스(<i>Sepia officinalis</i>) · 로시아 마크로소마(<i>Rossia macrosoma</i>) · 세피올라(<i>Sepiola</i>)종	10	D	
0307431090	기타	20	C	
0307432010	옴마스트레페스(<i>Ommastrephes</i>)종 · 로리고(<i>Loligo</i>)종 · 노토토다루스(<i>Nototodarus</i>)종 · 세피오투디스(<i>Sepioteuthis</i>)종	22	X	
0307432090	기타	22	C	

0307492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i>Sepia officinalis</i>) · 러시아 마크로소마(<i>Rossia macrosoma</i>) · 세피올라(<i>Sepiola</i>)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i>Ommastrephes</i>)종 · 로리고(<i>Loligo</i>)종 · 노토토다루스(<i>Nototodarus</i>)종 · 세피오투디스(<i>Sepioteuthis</i>)종]	10	G	
0307492090	기타	20	C	
0307493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i>Sepia officinalis</i>) · 러시아 마크로소마(<i>Rossia macrosoma</i>) · 세피올라(<i>Sepiola</i>)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i>Ommastrephes</i>)종 · 로리고(<i>Loligo</i>)종 · 노토토다루스(<i>Nototodarus</i>)종 · 세피오투디스(<i>Sepioteuthis</i>)종]	10	X	
0307493090	기타	20	D	
0307494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i>Sepia officinalis</i>) · 러시아 마크로소마(<i>Rossia macrosoma</i>) · 세피올라(<i>Sepiola</i>)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i>Ommastrephes</i>)종 · 로리고(<i>Loligo</i>)종 · 노토토다루스(<i>Nototodarus</i>)종 · 세피오투디스(<i>Sepioteuthis</i>)종]	20	G	
0307494090	기타	20	C	
0307511000	낙지	20	X	
0307512000	주꾸미	20	X	
0307519000	기타	20	X	
0307521000	문어	20	X	
0307522000	낙지	20	X	
0307523000	쭈꾸미	20	X	
0307529000	기타	20	G	
0307592000	건조한 것	20	G	
0307593000	훈제한 것	20	G	
0307599000	기타	20	X	
0307601000	훈제한 것	20	C	
0307609000	기타	20	C	
0307711010	치패(稚貝)	20	D	
0307711090	기타	20	D	

0307712010	종패용	0	A	
0307712090	기타	20	E	
0307713000	새조개	20	D	
0307714000	바지락	20	D	
0307715000	개조개	20	X	
0307719000	기타	20	X	
0307721000	새조개	20	D	
0307722000	개량조개	20	D	
0307723000	바지락	20	D	
0307724000	피조개	20	E	
0307725000	개조개	20	X	
0307729000	기타	20	X	
0307792010	개량조개	20	D	
0307792020	바지락	20	D	
0307792030	개조개	20	G	
0307792090	기타	20	G	
0307793010	개량조개	20	D	
0307793020	바지락	20	D	
0307793030	개조개	20	G	
0307793090	기타	20	G	
0307794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D	
0307794019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D	
0307794090	기타	20	D	
0307810000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20	X	
0307820000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20	C	
0307830000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20	X	
0307840000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20	C	
0307871000	건조한 것	20	G	
030787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G	
0307873000	훈제한 것	20	G	

0307881000	건조한 것	20	D	
030788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C	
0307883000	훈제한 것	20	C	
0307911000	소라	20	G	
0307912010	종패용	0	A	
0307912090	기타	20	C	
0307913000	개아지살	20	G	
0307914000	재첩	20	D	
0307919000	기타	20	C	
0307921000	개아지살	20	X	
0307922000	소라	20	X	
0307929000	기타	20	C	
0307992100	개아지살	20	G	
0307992900	기타	20	D	
0307993100	소라	20	G	
0307993900	기타	20	B	
03079941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C	
03079941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B	
0307994900	기타	20	B	
03081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E	
0308120000	냉동한 것	20	E	
0308192000	건조한 것	20	E	
0308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E	
0308194000	훈제한 것	20	E	
0308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D	
0308220000	냉동한 것	20	D	
0308292000	건조한 것	20	D	
0308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D	
0308294000	훈제한 것	20	D	
030830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C	
0308302000	냉동한 것	20	C	
0308303000	건조한 것	20	C	

03083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C	
0308305000	훈제한 것	20	C	
0308901011	종묘(種苗)	0	A	
0308901019	기타	20	D	
0308901090	기타	20	C	
0308902010	우렁ხעי(멍게)	20	C	
0308902090	기타	20	C	
0308903010	우렁ხעי(멍게)	20	C	
0308903090	기타	20	C	
03089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C	
0308905000	훈제한 것	20	C	
04011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36	X	
04012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36	X	
0401401000	냉동크림	36	X	
0401409000	기타	36	X	
0401501000	냉동크림	36	X	
0401509000	기타	36	X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176	X	
0402101090	기타	176	X	
0402109000	기타	176	X	
0402211000	전지분유	176	X	
0402219000	기타	176	X	
0402290000	기타	176	X	
0402911000	무가당연유(無加糖煉乳)	89	X	
0402919000	기타	89	X	
0402991000	가당연유(加糖煉乳)	89	X	
0402999000	기타	89	X	
0403101000	액체 상태인 것	36	E	
0403102000	냉동한 것	36	E	
0403109000	기타	36	E	
0403901000	버터밀크	89	X	
0403902000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36	X	

0403903000	케피어(kephir)	36	X	
0403909000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36	X	
0404101011	사료용	49.5	F	
0404101019	기타	49.5	F	
0404101091	사료용	49.5	X	
0404101099	기타	49.5	X	
0404102111	사료용	49.5	X	
0404102119	기타	49.5	X	
0404102121	사료용	49.5	F	
0404102129	기타	49.5	F	
0404102131	사료용	49.5	F	
0404102139	기타	49.5	F	
0404102191	사료용	49.5	X	
0404102199	기타	49.5	X	
0404102910	사료용	49.5	X	
0404102990	기타	49.5	X	
0404901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36	X	
0404902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36	X	
0405100000	버터	89	G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8	X	
0405900000	기타	89	G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36	G	
0406101020	크림 치즈	36	G	
0406101090	기타	36	G	
0406102000	커드(curd)	36	X	
040620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36	X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36	X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36	X	
040690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36	G	
0406902000	하우다 치즈(Gouda cheese)	36	G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Camembert cheese)	36	G	
0406904000	에멘탈 치즈(Emmental cheese)	36	G	
0406909000	기타	36	G	
04071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7	E	
0407190000	기타	27	E	
04072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7	E	
0407290000	기타	27	E	
0407900000	기타	27	E	
0408110000	건조한 것	27	G	
0408190000	기타	27	G	
0408910000	건조한 것	27	E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41.6	G	
0408999000	기타	27	G	
0409000000	천연꿀	243% 또는 1,864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410002000	칼새등지	8	C	
0410003000	로열젤리	8	C	
0410009000	기타	8	C	
050100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3	A	
0502100000	돼지 털 · 멧돼지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3	A	
0502902000	염소 털	3	A	
0502909000	기타	3	A	
0504001010	소의 것	27	E	
0504001021	소시지 케이싱용	27	E	
0504001029	기타	27	E	
0504001031	소시지 케이싱용	27	E	
0504001039	기타	27	E	
0504001090	기타	27	E	

0504002000	방광	27	E	
0504003000	위	27	E	
0505100000	숨털과 충전재용 깃털	3	C	
0505901000	깃털 가루	5	C	
0505909000	기타	5	C	
050610000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3	A	
0506901020	소의 것	9	C	
0506901090	기타	3	A	
0506902000	뿔가루	25.6	G	
0506909000	기타	3	A	
0507101000	상아	8	C	
0507109000	기타	8	C	
0507901110	전지(全枝)	20	X	
0507901190	기타	20	X	
0507901200	녹각	20	X	
0507902010	귀갑(龜甲)과 귀판(龜板)	8	C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8	E	
0507902090	기타	8	C	
0508001000	산호	8	C	
0508002010	진주패각	8	C	
0508002020	청패각(전복)	8	C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8	C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8	C	
0508002050	트로커스(Trochus) 패각	8	C	
0508002060	아고야(Agoya) 패각	8	C	
0508002070	민물패각[메가로나이아스네보사(Megalonaia snervosa), 앰브레마프리카타(Amblymaplicata), 콰드루라 콰드루라(Quadrula quadrula)종]	8	C	
0508002090	기타	8	C	
0508009000	기타	8	C	
0510001000	용연향(ambergris)	8	C	
0510002000	해리향(castoreum)	8	C	

0510003000	사향	8	C	
0510004000	우황	8	C	
0510005000	오령지	8	C	
0510009010	채장	8	C	
0510009020	담즙	8	C	
0510009030	합개(蛤蚧)	8	C	
0510009090	기타	8	C	
0511100000	소의 정액	0	A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brine shrimp) 알	8	C	
0511911090	기타	8	C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waste)	5	G	
0511919000	기타	8	C	
0511991000	동물의 피	8	C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	A	
0511992090	기타	0	A	
0511993010	소의 것	18	A	
0511993020	돼지의 것	18	A	
0511993090	기타	0	A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18	E	
0511995011	정돈한 것	3	A	
0511995019	기타	3	A	
0511995020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	3	A	
0511996000	동물성의 해면	8	C	
0511999010	잠종(蠶種)	18	E	
0511999020	누에번데기	8	C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는 제외한다)	8	C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	8	C	
0511999090	기타	8	C	
0601101000	튤립의 것	8	E	
0601102000	백합의 것	4	E	
0601103000	달리아의 것	8	E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8	E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C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8	E	
0601107000	프리지어의 것	8	E	
0601108000	수선화의 것	8	C	
0601109000	기타	8	C	
0601201000	튤립의 것	8	F	
0601202000	백합의 것	8	E	
0601203000	달리아의 것	8	F	
0601204000	히아신스의 것	8	F	
06012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C	
060120600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8	C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8	F	
0601208000	프리지어의 것	8	F	
0601209010	수선화의 것	8	C	
0601209090	기타	8	C	
0602101000	과일나무의 것	8	C	
0602109000	기타	8	E	
0602201000	사과나무	18	A	
0602202000	배나무	18	A	
0602203000	복숭아나무	18	A	
0602204000	포도나무	8	A	
0602205000	감나무	8	A	
0602206000	귤나무	18	A	
0602207010	밤나무	8	E	
0602207020	호두나무	8	E	
0602207030	잣나무	8	E	
0602209000	기타	8	C	
060230000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E	
060240000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C	
0602901010	난초	8	C	
0602901020	카네이션	8	C	
0602901030	구즈마니아	8	C	

0602901040	안개초	8	F	
0602901050	국화	8	C	
0602901060	선인장류	8	C	
0602901090	기타	8	C	
0602902011	분재용	8	E	
0602902019	기타	8	E	
0602902020	낙엽송	8	E	
0602902030	삼나무	8	E	
0602902040	편백	8	E	
0602902050	리기테다	8	E	
0602902061	분재용	8	E	
0602902069	기타	8	E	
0602902071	분재용	8	E	
0602902079	기타	8	E	
0602902081	분재용	8	E	
0602902089	기타	8	E	
0602902091	분재용	8	E	
0602902099	기타	8	E	
0602909010	목단	8	E	
0602909020	동백	8	E	
0602909030	뽕나무	18	C	
0602909040	버섯의 종균(種菌)	8	C	
0602909090	기타	8	C	
0603110000	장미	25	F	
0603120000	카네이션	25	G	
0603131000	심비디움(Cymbidiums)	25	X	
0603132000	팔레놉시스(Phalaenopsis)	25	X	
0603139000	기타	25	F	
0603140000	국화	25	F	
0603150000	백합[릴리움(Lilium)종]	25	G	
0603191000	튤립	25	G	
0603192000	글라디올러스	25	G	

0603194000	안개초	25	F	
0603199000	기타	25	F	
0603900000	기타	25	D	
0604201000	이끼와 지의(地衣)	8	E	
0604202010	은행잎	8	E	
0604202090	기타	8	E	
0604209000	기타	8	C	
0604901000	이끼와 지의(地衣)	8	E	
0604909000	기타	8	C	
0701100000	종자용	304	X	
0701900000	기타	304	X	
070200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G	
0703101000	양파	135%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03102000	쪽파	27	E	
0703201000	껍질을 깠 것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03209000	기타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03901000	리크(leek)	27	E	
0703909000	기타	27	E	
070410000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27	E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27	E	
0704901000	양배추	27	E	
0704902000	배추	27	G	
0704909000	기타	27	E	
0705110000	결구(結球) 상추	45	E	
0705190000	기타	45	E	
0705210000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8	E	
0705290000	기타	8	E	

0706101000	당근	30% 또는 134원/kg, 양자 중 고액(율)	G	
0706102000	순무	27	E	
0706901000	무	30	G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27	C	
0706903000	더덕	27	X	
0706904000	도라지	27	X	
0706909000	기타	27	E	
070700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7	G	
07081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7	E	
0708200000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27	G	
070890000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27	G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7	C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27	F	
070940000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27	E	
0709517000	양송이 버섯	30	E	
0709519000	기타	30	E	
0709591000	송이버섯	30	G	
0709592000	표고버섯	40.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G	
0709593000	영지버섯	30	E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	30	E	
0709594090	기타	30	E	
0709595000	팽이버섯	30	E	
0709596000	송로(松露)	27	G	
0709599000	기타	30	E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09609000	기타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09700000	시금치류	27	E	
0709910000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27	E	

0709920000	올리브	27	D	
0709930000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27	G	
0709991000	고사리	30	G	
0709992000	고비	27	G	
0709999000	기타	27	G	
0710100000	감자	27	X	
071021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7	D	
0710220000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27	X	
0710290000	기타	27	D	
0710300000	시금치류	27	E	
0710400000	스위트콘	30	D	
0710801000	양파	27	G	
0710802000	마늘	27	G	
0710803000	죽순	27	G	
0710804000	당근	27	G	
0710805000	고사리	30	G	
0710806000	송이버섯	27	G	
071080700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7	X	
0710808010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27	E	
0710808020	고려엉겅퀴(곤드레)	27	E	
0710809000	기타	27	D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G	
0711200000	올리브	27	G	
0711400000	오이류	30	G	
07115100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30	C	
0711591000	송로(松露)	27	G	
0711599000	기타	30	C	
0711901000	마늘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1903000	죽순	27	G	
0711904000	당근	27	G	

0711905010	고사리	27	G	
0711905020	고비	27	G	
0711905091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1905099	기타	27	G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C	
0712200000	양파	135%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2311000	양송이 버섯	30	E	
0712319000	기타	30% 또는 1,218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3200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30% 또는 1,218원/kg, 양자 중 고액(율)	G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30% 또는 1,218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391010	송이버섯	30	G	
0712391020	표고버섯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2391030	영지버섯	30% 또는 842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391040	느타리버섯	30	E	
0712391050	팽이버섯	30	E	
0712391090	기타	30% 또는 1,218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392000	송로(松露)	27	G	
0712901000	마늘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712902010	고사리	30% 또는 1,807원/kg, 양자 중 고액(율)	G	
0712902020	무	30	X	
0712902030	파	30% 또는 1,159원/kg, 양자 중 고액(율)	G	

0712902040	당근	30% 또는 864원/kg, 양자 중 고액 (율)	G	
0712902050	호박	30	G	
0712902060	양배추	30	E	
0712902070	토란줄기	30	C	
0712902080	고구마줄기	30	C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370	X	
0712902092	스위트콘(기타)	370	G	
0712902093	감자	27	X	
0712902094	고비	30% 또는 1,446원/kg, 양자 중 고 액(율)	G	
0712902095	더덕	30	G	
0712902096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30	G	
0712902097	고려엉겅퀴(곤드레)	30	G	
0712902099	기타	30	G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G	
0713101000	종자용	27	E	
0713102000	사료용	0	A	
0713109000	기타	27	E	
071320000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27	X	
0713311000	종자용	607.5	X	
0713319000	기타	607.5	X	
0713321000	종자용	420.8	X	
0713329000	기타	420.8	X	
0713331000	종자용	27	E	
0713339000	기타	27	E	
0713340000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 · 보안드 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27	G	
0713350000	동부콩[비그나 윤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27	E	
0713390000	기타	27	E	
0713400000	렌즈콩	27	X	

071350000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 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 · 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27	E	
071360000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27	G	
0713900000	기타	27	C	
0714101000	신선한 것	887.4	G	
0714102010	칩	887.4	G	
0714102020	펠릿(pellet)	887.4	G	
0714102090	기타	887.4	G	
0714103000	냉장한 것	887.4	G	
0714104000	냉동한 것	45	G	
0714201000	신선한 것	385% 또는 338원/kg, 양자 중 고액 (율)	X	
0714202000	건조한 것	385	X	
0714203000	냉장한 것	385	X	
0714204000	냉동한 것	45	X	
0714301000	냉동한 것	45	X	
0714309000	기타	385	X	
0714401000	냉동한 것	45	X	
0714409000	기타	385	X	
0714501000	냉동한 것	45	X	
0714509000	기타	385	X	
0714901010	냉동한 것	45	G	
0714901090	기타	18	G	
0714909010	냉동한 것	45	X	
0714909090	기타	385	X	
0801110000	말린 것	30	G	
0801120000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30	G	
0801190000	기타	30	G	
0801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G	
0801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G	
0801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G	

0801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G	
08021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E	
08021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E	
0802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E	
0802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E	
0802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5	X	
0802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X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19.4% 또는 1,47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8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219.4% 또는 1,47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8025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F	
08025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F	
08026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E	
08026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F	
080270000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30	G	
0802800000	빈랑자(areca nut)	30	F	
0802901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66.8% 또는 2,664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802901020	껍데기를 벗긴 것	566.8% 또는 2,664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802902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G	
0802902020	껍데기를 벗긴 것	30	G	
0802909000	기타	30	G	
0803100000	플랜틴(plantain)	30	C	
0803900000	기타	30	C	
0804100000	대추야자	30	E	
0804200000	무화과	30	F	
0804300000	파인애플	30	D	
0804400000	아보카도(avocado)	30	E	
0804501000	구아바(guava)	30	G	
0804502000	망고(mango)	30	E	

0804503000	망고스틴(mangosteen)	30	G	
0805100000	오렌지	50	X	
0805211000	감귤	144	X	
0805219000	기타	144	X	
0805220000	클레멘타인(clementine)	144	X	
0805290000	기타	144	X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30	G	
080550100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 · 시트러스 리머눔(Citrus limonum)]	30	G	
0805502010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30	G	
0805502020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144	G	
0805900000	기타	144	X	
0806100000	신선한 것	45	S	
0806200000	건조한 것	21	G	
0807110000	수박	45	G	
0807190000	기타	45	G	
0807200000	포포(papaw)[파파야(papaya)]	30	G	
0808100000	사과	45	X	
0808300000	배	45	X	
0808400000	마르멜로(quince)	45	F	
0809100000	살구	45	F	
0809210000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24	G	
0809290000	기타	24	G	
080930000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45	X	
0809401000	자두	45	G	
0809402000	슬로(sloe)	45	F	
0810100000	초본류 딸기	45	G	
0810200000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loganberry)	45	F	
0810300000	흑색 · 백색 ·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45	F	
0810400000	크랜베리(cranberry) · 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45	E	

0810500000	키위프루트(kiwifruit)	45	F	
0810600000	두리안(durian)	45	G	
0810701000	단감	45	G	
0810709000	기타	50	G	
0810903000	대추	611.5% 또는 5,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810905000	매실	50	X	
0810909000	기타	45	E	
0811100000	초본류 딸기	30	G	
0811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 · 백색 · 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30	E	
0811901000	밤	30	X	
0811902000	대추	30	X	
0811903000	잣	30	X	
0811909000	기타	30	D	
0812100000	체리	30	F	
0812901000	초본류 딸기	30	X	
0812909000	기타	30	G	
0813100000	살구	45	F	
0813200000	프룬(prune)	18	E	
0813300000	사과	45	G	
0813401000	감	50	X	
0813402000	대추	611.5% 또는 5,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813409000	기타	45	E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45	G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30	F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30	C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2	A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A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8	A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8	A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3	E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8	E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513.6	X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3.6	X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40	E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40	E	
0903000000	마테(maté)	25	E	
0904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C	
0904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C	
09042100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905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C	
0905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A	
0906110000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8	C	
0906191000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을 제외한다]	8	C	
0906192000	계피나무의 꽃	8	C	
0906201000	계피	8	C	
0906202000	계피나무의 꽃	8	C	
0907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C	
0907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C	
0908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C	
0908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C	
0908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C	
0908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A	
0908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C	
0908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A	

0909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C	
0909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A	
0909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C	
0909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A	
090961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8	C	
090961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8	C	
090961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8	C	
090962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8	A	
090962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8	C	
090962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8	C	
091011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91011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G	
0910119000	기타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91012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91012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10129000	기타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X	
0910200000	사프란(saffron)	8	C	
0910300000	심황[강황(薑黃)]	8	C	
0910911000	카레	8	C	
0910919000	기타	8	C	
0910991000	타임과 월계수의 잎	8	C	
0910999000	기타	8	C	
1001110000	종자	3	B	
1001190000	기타	3	A	
1001911000	메슬린(meslin)	3	B	
1001919000	기타	1.8	A	

1001991010	메슬린(meslin)	3	A	
1001991090	기타	0	A	
1001992010	메슬린(meslin)	3	A	
1001992090	기타	1.8	A	
1001999010	메슬린(meslin)	3	A	
1001999090	기타	1.8	A	
1002100000	종자	108.7	F	
1002900000	기타	3	A	
1003101000	맥주보리	513	X	
1003102000	겉보리	324% 또는 326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03103000	쌀보리	299.7% 또는 361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03109000	기타	299.7	X	
1003901000	맥주보리	513	X	
1003902000	겉보리	324% 또는 326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03903000	쌀보리	299.7% 또는 361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003909000	기타	299.7	X	
1004100000	종자	554.8	F	
1004900000	기타	3	A	
1005100000	종자용	328	X	
1005901000	사료용	328	F	
1005902000	팝콘	630	X	
1005909000	기타	328	F	
1006100000	벼	513	X	
1006201000	메현미	513	X	
1006202000	찰현미	513	X	
1006301000	멥쌀	513	X	
1006302000	찹쌀	513	X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513	X	

1007100000	종자	779.4	X	
1007900000	기타	3	A	
1008100000	메밀	256.1	X	
1008211000	조	18	E	
1008219000	기타	3	A	
1008291000	조	3	A	
1008299000	기타	3	A	
1008300000	카나리시드(canary seed)	3	A	
1008400000	포니오(Fonio)[디지털리아(Digitaria)종]	800.3	X	
100850000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800.3	X	
1008600000	라이밀(triticale)	800.3	X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800.3	X	
1101001000	밀가루	3	B	
1101002000	메슬린(meslin) 가루	5	B	
1102200000	옥수수가루	5	B	
1102901000	보릿가루	260	X	
1102902000	쌀가루	513	X	
1102903000	호밀가루	5	B	
1102909000	기타	800.3	G	
1103110000	밀로 만든 것	288.2	X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62.9	X	
1103191000	보리로 만든 것	260	X	
1103192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X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513	X	
1103199000	기타	800.3	X	
1103201000	밀로 만든 것	288.2	X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513	X	
1103203000	보리로 만든 것	260	X	
1103209000	기타	800.3	X	
1104120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X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513	X	

1104192000	보리로 만든 것	233	X	
1104199000	기타	800.3	X	
1104220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X	
11042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67	X	
1104291000	울무로 만든 것	800.3	X	
1104292000	보리로 만든 것	126	X	
1104299000	기타	800.3	X	
1104301000	쌀로 만든 것	5	X	
1104309000	기타	5	G	
1105100000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304	X	
1105200000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304	X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	C	
1106201000	참깨의 것	8	E	
1106209000	기타	8	E	
1106300000	제8류 물품의 것	8	E	
1107100000	볶지 않은 것	269	X	
1107201000	훈연(燻煙)한 것	269	X	
1107209000	기타	27	G	
1108110000	밀로 만든 것	50.9	X	
1108121000	식품용	226	X	
1108129000	기타	226	X	
1108130000	감자로 만든 것	455	X	
1108141000	식품용	455	X	
1108149000	기타	455	X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것	241.2	X	
1108199000	기타	800.3	X	
1108200000	이눌린(inulin)	800.3	X	
110900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8	C	
1201101000	콩나물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 (율)	X	
1201109000	기타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 (율)	X	

1201901000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 (율)	X	
1201902000	사료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 (율)	X	
1201903000	콩나물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 (율)	X	
1201909000	기타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 (율)	X	
1202301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30.5	X	
1202302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30.5	X	
12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30.5	G	
12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30.5	X	
1203000000	코프라(copra)	3	A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3	A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A	
1205109000	기타	10	E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A	
1205909000	기타	10	E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5	D	
120710000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3	A	
1207210000	종자	3	A	
1207291000	사료용	2	A	
1207299000	기타	3	A	
1207300000	피마자	3	A	
1207400000	참깨	630% 또는 6,66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207500000	겨자씨	3	A	
120760000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3	A	
1207700000	멜론 종자	3	A	
1207910000	양귀비씨	3	A	

1207991000	들깨	40% 또는 410원/kg, 양자 중 고액 (율)	X	
1207992000	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	3	A	
1207999000	기타	3	A	
1208100000	대두로 만든 것	3	E	
1208900000	기타	3	A	
1209100000	사탕무 종자	0	A	
1209210000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	A	
12092200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0	A	
1209230000	페스큐(fescue) 종자	0	A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 (Poa pratensis L.)] 종자	0	A	
1209250000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 · 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0	A	
1209291000	루핀(lupine) 종자	0	A	
1209292000	수단그래스(Sudan grass) 종자	0	A	
1209293000	오차드그래스(orchard grass) 종자	0	A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timothy grass) 종자	0	A	
1209299000	기타	0	A	
120930000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	A	
1209911010	양파 종자	0	A	
1209911090	기타	0	A	
1209912000	무 종자	0	A	
1209913000	고추 · 단고추류(Capsicum annuum)의 종자	0	A	
1209914000	양배추 종자	0	A	
1209915000	토마토 종자	0	A	
1209919000	기타	0	A	
1209991010	참나무	0	A	
1209991090	기타	0	A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0	A	
1209993000	담배 종자	0	A	
1209994000	잔디 종자	0	A	

1209999000	기타	0	A	
1210100000	홉(hop)[잘게 부순 것 · 가루 모양 ·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30	G	
1210201000	홉(hop)	30	G	
1210202000	루플린(lupulin)	30	G	
1211201110	산양삼(山養蔘)	222.8	X	
1211201190	기타	222.8	X	
1211201211	본삼	222.8	X	
1211201219	기타	222.8	X	
1211201291	본삼	222.8	X	
1211201299	기타	222.8	X	
1211201311	본삼	754.3	X	
1211201319	기타	754.3	X	
1211201391	본삼	754.3	X	
1211201399	기타	754.3	X	
1211202110	가루	18	X	
1211202120	타브렛이나 캡슐	18	X	
1211202190	기타	18	X	
1211202210	가루	754.3	X	
1211202220	타브렛이나 캡슐	754.3	X	
1211202290	기타	754.3	X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754.3	X	
1211203200	종자	754.3	X	
1211209300	신선 · 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754.3	X	
1211209900	기타	754.3	G	
1211301000	신선 · 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8	C	
1211309000	기타	3	E	
1211401000	신선 · 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8	C	
1211409000	기타	3	E	
1211501000	신선 · 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8	B	
1211509000	기타	3	E	
1211901100	부자(附子)	8	C	

1211901200	황련(黃連)	8	C	
1211901300	원지(遠志)	8	C	
1211901400	패모(貝母)	8	C	
1211901500	두충(杜沖)	8	C	
1211901600	감초	8	C	
1211901700	사인(砂仁)	8	C	
1211901800	산조인(酸棗仁)	8	C	
1211901910	용안육(龍眼肉)	8	C	
1211901920	산사자(山査子)	8	C	
1211901930	연자육(蓮子肉)	8	C	
1211901940	박하	8	C	
1211901950	초피(椒皮)	8	E	
1211901960	건조한 도라지	8	G	
1211901970	구기자	8	C	
1211901980	오미자	8	C	
1211901991	사군자(使君子)	8	C	
1211901992	백수오	8	B	
1211901993	하수오	8	B	
1211901999	기타	8	B	
1211909010	식용에 적합한 것	45	G	
1211909090	기타	3	E	
1212211010	건조한 것	20	F	
1212211020	냉장한 것	20	F	
1212211030	냉동한 것	10	G	
1212211090	기타	20	G	
1212212010	건조한 것	20	F	
1212212020	염장한 것	20	G	
1212212030	냉장한 것	20	G	
1212212040	냉동한 것	45	G	
1212212090	기타	20	G	
1212213010	건조한 것	20	C	
1212213020	냉장한 것	20	C	

1212213030	냉동한 것	45	C	
1212213090	기타	20	C	
1212214010	신선한 것	20	D	
1212214020	냉장한 것	20	D	
1212214030	냉동한 것	45	D	
1212214090	기타	20	C	
1212215010	염장한 것	20	E	
1212215020	냉장한 것	20	E	
1212215030	냉동한 것	45	E	
1212215090	기타	20	E	
1212216010	냉동한 것	45	C	
1212216090	기타	20	C	
1212217011	냉동한 것	45	C	
1212217019	기타	20	C	
1212217021	냉동한 것	45	C	
1212217029	기타	20	C	
1212217031	냉동한 것	45	C	
1212217039	기타	20	C	
1212218011	냉동한 것	45	C	
1212218019	기타	20	C	
1212218021	냉동한 것	45	C	
1212218029	기타	20	C	
1212218031	냉동한 것	45	C	
1212218039	기타	20	C	
1212219011	냉동한 것	45	C	
1212219019	기타	20	C	
1212219091	냉동한 것	45	C	
1212219099	기타	20	C	
1212291010	냉동한 것	10	G	
1212291090	기타	20	G	
1212292010	냉동한 것	45	G	
1212292090	기타	20	G	

1212293010	냉동한 것	45	C	
1212293090	기타	20	C	
1212294010	냉동한 것	45	C	
1212294090	기타	20	C	
1212295010	냉동한 것	45	C	
1212295090	기타	20	C	
1212296010	냉동한 것	45	C	
1212296090	기타	20	C	
1212297011	냉동한 것	45	C	
1212297019	기타	20	C	
1212297021	냉동한 것	45	C	
1212297029	기타	20	C	
1212297031	냉동한 것	45	C	
1212297039	기타	20	C	
1212298011	냉동한 것	45	C	
1212298019	기타	20	C	
1212298021	냉동한 것	45	C	
1212298029	기타	20	C	
1212298031	냉동한 것	45	C	
1212298039	기타	20	C	
1212299011	냉동한 것	45	C	
1212299019	기타	20	C	
1212299091	냉동한 것	45	C	
1212299099	기타	20	C	
1212910000	사탕무	3	E	
12129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20	G	
1212930000	사탕수수	3	E	
1212940000	치커리(chicory) 뿌리	8	C	
1212992000	구약구(kuyaku) 뿌리	8	C	
1212993000	꽃가루	8	C	
1212996000	살구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 자두의 핵(核)	8	C	

1212999000	기타	8	A	
1213000000	곡물의 껍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8	C	
1214101000	사료용	1	E	
1214109000	기타	10	E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100.5	X	
1214909011	사료용	1	E	
1214909019	기타	18	E	
1214909090	기타	100.5	X	
1301200000	아라비아 검	3	A	
1301901000	올레오레진(oleoresin)	3	C	
1301902010	셸락(shellac)	3	A	
1301902090	기타	3	A	
1301909000	기타	3	C	
1302110000	아편	8	C	
1302120000	감초로 만든 것	8	C	
1302130000	홉(hop)으로 만든 것	30	G	
1302140000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8	C	
1302191110	인삼 추출물(extract)	20	X	
13021911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20	X	
1302191190	기타	20	X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754.3	X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754.3	X	
1302191290	기타	754.3	X	
1302191900	기타	20	X	
1302192000	캐슈너트 셸액(cashew nut shell liquid)	8	C	
1302193000	생칠(生漆)	8	E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8	C	
1302199020	콜라 추출물(extract)	8	C	
1302199031	당귀(當歸) 추출물	8	C	
1302199032	오미자(五味子) 추출물	8	C	

1302199033	작약(芍藥) 추출물	8	C	
1302199034	천궁(川芎) 추출물	8	C	
1302199035	황기(黃芪) 추출물	8	C	
1302199039	기타	8	C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extract)	8	C	
1302199099	기타	8	C	
1302200000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8	C	
1302311000	실 한천	8	C	
1302312000	가루 한천	8	C	
1302319000	기타	8	C	
13023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 ·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 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8	C	
1302390000	기타	8	C	
1401101000	맹종죽(孟宗竹)	8	E	
1401102000	청환죽(靑丸竹)	8	E	
1401109000	기타	8	E	
1401201000	쫄개거나 뽑아서 늘린 것	8	E	
1401209000	기타	8	E	
1401900000	기타	8	E	
1404200000	면(綿) 린터(linter)	3	A	
1404901000	조각용 종자 · 껍질 · 너트(예: 상아야자)	3	C	
1404902010	닥나무나 꾸지나무(paper mulberry) 껍질	3	C	
1404902090	기타	3	D	
1404903010	떡갈잎	5	E	
1404903020	청미래덩굴잎	5	E	
1404903090	기타	5	E	
1404904000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kapok) · 식물성 헤어 · 거머리말][층상(層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 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3	C	

1404905000	비나 브러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 수류 · 피아사바(piassava) · 카우치 그라스(couch-grass) · 이 스틸리(istle)](다발이나 꾸러미 상태인지에 상관없다)	3	A	
1404906010	오배자(五倍子)	3	C	
1404906020	아몬드 헐(almond hull)	3	C	
1404906090	기타	3	C	
1404909000	기타	3	E	
1501101000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3	A	
1501109000	기타	3	A	
150120000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3	A	
1501900000	기타	3	A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2	A	
1502101090	기타	2	A	
1502109000	기타	3	A	
1502901000	소의 것	2	A	
1502909000	기타	3	A	
1503002000	라드유(lard oil)	3	A	
1503009000	기타	3	A	
1504101000	상어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3	C	
1504109000	기타	3	G	
1504200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3	C	
1504301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3	C	
1504309000	기타	3	C	
1505001000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3	A	
1505009000	기타	3	A	
1506001000	우각유(neat's foot oil)와 그 분획물	3	A	
1506009000	기타	3	A	
1507101000	식품용	5	G	
1507102000	바이오디젤 제조용	5	G	
1507109000	기타	5	G	
1507901010	식품용	5	G	
1507901020	바이오디젤 제조용	5	G	

1507901090	기타	5	G	
1507909000	기타	5	G	
1508100000	조유(粗油)	27	E	
1508901000	정제유(精製油)	27	E	
1508909000	기타	27	E	
1509100000	버진(virgin)	5	A	
1509900000	기타	5	A	
1510000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5	A	
1511100000	조유(粗油)	3	A	
1511901000	팜 올레인(palm olein)	2	A	
1511902000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2	A	
1511909000	기타	2	A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5	A	
1512112000	잇꽃유	5	A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5	A	
1512191020	잇꽃유	5	A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5	A	
1512199020	잇꽃유	5	A	
15122100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	A	
1512291000	정제유(精製油)	5	A	
1512299000	기타	5	A	
1513110000	조유(粗油)	3	A	
1513191000	정제유(精製油)	3	A	
1513199000	기타	3	A	
1513211000	팜핵유(palm kernel oil)	5	A	
1513212000	바바수유(babassu oil)	8	A	
1513291010	팜핵유(palm kernel oil)	5	A	
1513291020	바바수유(babassu oil)	8	A	
1513299000	기타	8	A	

1514110000	조유(粗油)	5	G	
1514191000	정제유(精製油)	5	G	
1514199000	기타	5	G	
151491100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5	G	
1514912000	겨자유	5	G	
151499101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5	G	
1514991020	겨자유	5	G	
1514999000	기타	5	G	
1515110000	조유(粗油)	5	A	
1515190000	기타	5	A	
1515210000	조유(粗油)	5	C	
1515290000	기타	5	A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5	A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630% 또는 12,060원/kg, 양자 중 고액(율)	X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E	
1515909010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5	C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8	A	
1515909030	호호바유(jojoba oil)와 그 분획물	8	A	
1515909040	동유(tung oil)와 그 분획물	8	A	
1515909090	기타	5	A	
1516101000	우지(牛脂)와 그 분획물	8	C	
1516102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8	C	
1516109000	기타	8	C	
1516201010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	36	E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36	E	
1516201030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36	E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E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36	X	
1516202010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8	A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8	A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8	A	

1516202040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8	A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8	G	
1516202090	기타	8	A	
1517100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8	C	
1517901000	이미테이션 라드	8	C	
1517902000	쇼트닝	8	C	
1517909000	기타	8	C	
1518001000	탈수피마자유	8	C	
1518002000	에폭시화(epoxidised)한 대두유	8	C	
1518009010	사료용	5	C	
1518009090	기타	8	C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8	C	
1521101000	카나버 왁스	8	C	
1521102000	팜왁스	8	C	
1521109000	기타	8	C	
1521901000	경납(鯨蠟)	8	C	
1521902000	밀랍(蜜蠟)	8	C	
1521909000	기타	8	C	
1522001000	데그라스(degras)	8	C	
1522009000	기타	8	C	
1601001000	소시지	18	E	
1601009000	기타	30	F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X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F	
1602209000	기타	30	F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D	
1602319000	기타	30	D	
1602321010	삼계탕	30	G	
1602321090	기타	30	G	
1602329000	기타	30	G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F	

1602399000	기타	30	F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G	
1602419000	기타	27	G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G	
1602429000	기타	27	G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G	
1602499000	기타	27	G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72	X	
1602509000	기타	72	X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X	
1602909000	기타	30	X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30	X	
1603002000	육즙	30	X	
1603003000	어류의 추출물(extract)	30	C	
1603004000	어류의 즙	30	G	
1603009000	기타	30	G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X	
1604119000	기타	20	X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G	
1604129000	기타	20	G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C	
1604139000	기타	20	G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20	E	
1604141012	삶은 것	20	C	
1604141019	기타	20	B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20	G	
1604141022	삶은 것	20	F	
1604141029	기타	20	G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20	F	
1604141032	삶은 것	20	C	
1604141039	기타	20	G	
1604149000	기타	20	E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F	
1604159000	기타	20	F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X	
1604169000	기타	20	X	
16041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G	
1604179000	기타	20	X	
160418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F	
1604189000	기타	20	F	
1604191010	공치	20	E	
1604191020	전갱이	20	F	
1604191090	기타	20	F	
1604199010	쥐치포	20	D	
1604199090	기타	20	F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paste)	20	C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marinade)	20	C	
1604203000	생선소시지	20	C	
1604204010	게맛의 것	20	C	
1604204090	기타	20	C	
1604209000	기타	20	C	
1604310000	캐비아	20	C	
1604320000	캐비아 대용물	20	C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E	
1605101091	붉은대게살	20	X	
1605101099	기타	20	E	
1605109000	기타	20	E	
1605211000	빵가루를 입힌 것	20	TRQ	부록 2-나-1 참고
1605219000	기타	20	TRQ	부록 2-나-1 참고
1605290000	기타	20	TRQ	부록 2-나-1 참고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E	
1605309000	기타	20	E	
16054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D	
1605409000	기타	20	D	

16055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X	
1605519000	기타	20	X	
16055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D	
1605529000	기타	20	D	
16055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E	
1605539000	기타	20	E	
160554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D	
1605541090	기타	20	D	
160554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F	
1605542091	조미오징어	20	X	
1605542099	기타	20	X	
16055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G	
1605559000	기타	20	X	
160556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D	
1605561090	기타	20	D	
160556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D	
1605562090	기타	20	D	
160556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G	
1605569090	기타	20	X	
16055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X	
1605579000	기타	20	X	
160558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C	
1605589000	기타	20	C	
160559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D	
1605591090	기타	20	D	
160559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G	
1605592090	기타	20	X	
160559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C	
1605599090	기타	20	C	
16056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D	
1605619000	기타	20	D	
16056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D	

1605629000	기타	20	D	
16056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C	
1605639000	기타	20	C	
16056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C	
1605699000	기타	20	C	
1701121000	당도(糖度)가 98.5도 이하인 것	3	A	
1701122000	당도(糖度)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A	
1701130000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3	A	
1701141000	당도(糖度)가 98.5도 이하인 것	3	A	
1701142000	당도(糖度)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A	
1701910000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30	X	
1701990000	기타	30	X	
1702111000	유당(乳糖)	49.5	X	
1702119000	유당(乳糖)시럽	20	X	
1702191000	유당(乳糖)	49.5	X	
1702199000	유당(乳糖)시럽	20	X	
1702201000	단풍당	8	C	
1702202000	단풍당시럽	8	C	
1702301000	포도당	8	E	
1702302000	포도당시럽	8	E	
1702401000	포도당	8	E	
1702402000	포도당시럽	8	E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8	E	
1702601000	과당	8	E	
1702602000	과당시럽	8	E	
1702901000	인조꿀	243	X	
1702902000	캐러멜당	8	C	
1702903000	맥아당	8	C	
1702909000	기타	8	C	
1703101000	주정 제조용	3	A	
1703109000	기타	3	A	
1703901000	주정 제조용	3	A	

1703909000	기타	3	A	
1704100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B	
170490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8	C	
1704902010	드롭스(drops)	8	C	
1704902020	캐러멜	8	C	
1704902090	기타	8	C	
1704909000	기타	8	C	
1801001000	생 것	2	A	
1801002000	볶은 것	8	B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8	B	
1802009000	기타	8	B	
180310000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5	A	
1803200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5	B	
180400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5	A	
180500000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5	A	
180610000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C	
18062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A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8	C	
1806209090	기타	8	C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A	
1806319000	기타	8	A	
180632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A	
1806329000	기타	8	A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A	
1806902111	조제 분류	36	E	
1806902119	기타	40	E	
1806902191	오트밀의 것	8	C	
1806902199	기타	8	C	
1806902210	보릿가루의 것	8	C	

1806902290	기타	513	X	
1806902910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30	C	
1806902920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36	E	
1806902991	오트밀의 것	8	C	
1806902992	보릿가루의 것	8	C	
1806902999	기타	513	X	
180690301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5.4	B	
1806903091	날알 모양의 쌀	8	X	
1806903099	기타	8	B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 이상의 것)	8	B	
1806909090	기타	8	B	
1901101010	조제 분유	36	F	
1901101090	기타	40	F	
1901109010	오트밀의 것	8	C	
1901109090	기타	8	C	
1901201000	쌀가루의 것	513	X	
1901202000	보릿가루의 것	8	E	
1901209000	기타	513	X	
1901901000	맥아 추출물(extract)	30	G	
19019020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36	X	
19019020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36	X	
1901909010	오트밀	8	C	
1901909091	쌀가루의 것	513	X	
1901909092	보릿가루의 것	8	E	
1901909099	기타	513	X	
1902111000	스파게티	5	C	
1902112000	마카로니	5	C	
1902119000	기타	5	C	
1902191000	국수	5	C	

1902192000	당면	26.0% 또는 206원/kg, 양자 중 고액 (율)	X	
1902193000	냉면	5	C	
1902199000	기타	5	B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1902301010	라면	5	A	
1902301090	기타	5	C	
1902309000	기타	5	A	
1902400000	쿠스쿠스(couscous)	5	A	
1903001000	타피오카	8	C	
1903009000	기타	8	C	
1904101000	콘 플레이크(corn flake)	5.4	C	
1904102000	콘 칩	5.4	B	
1904103000	튀긴 쌀	5.4	E	
1904109000	기타	5.4	A	
1904201000	무슬리(Mu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	45	G	
1904209000	기타	5.4	E	
1904300000	불거 밀(bulgur wheat)	8	E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50	X	
1904901090	기타	8	X	
1904909000	기타	8	C	
1905100000	귀리빵	8	C	
190520000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C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8	C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8	B	
1905400000	러스크(rusk) · 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8	C	
1905901010	빵	8	B	
1905901020	건빵	8	C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8	C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5	B	

1905901050	쌀과자	8	C	
1905901090	기타	8	B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8	C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8	C	
1905909090	기타	8	B	
2001100000	오이류	30	F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30	C	
2001909010	쪽파	30	E	
2001909020	토마토	30	D	
2001909030	꽃양배추	30	C	
2001909040	스위트콘	30	F	
2001909050	염교(rakkyo)	30	G	
2001909060	마늘	30	X	
2001909070	양파	30	X	
2001909090	기타	30	C	
200210000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8	E	
2002901000	토마토 페이스트(paste)(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2002909000	기타	8	E	
2003104000	양송이 버섯	20	C	
2003109000	기타	20	C	
2003901000	표고버섯	20	X	
2003902000	송이버섯	20	G	
2003903000	송로(松露)	20	G	
2003909000	기타	20	C	
2004100000	감자	18	E	
2004901000	스위트콘	30	D	
2004909000	기타	30	G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pureed corn)	20	D	
2005109000	기타	20	D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20	X	
2005209000	기타	20	X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G	
2005511000	녹두	20	X	
2005512000	팥	20	X	
2005519000	기타	20	X	
2005591000	녹두	20	G	
2005592000	팥	20	G	
2005599000	기타	20	X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G	
2005700000	올리브	20	E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E	
2005910000	죽순	20	G	
2005991000	김치	20	C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20	G	
2005994000	고려엉겅퀴(곤드레)	20	G	
2005999000	기타	20	G	
2006001000	마롱 글라세(marrons glacés)	30	X	
2006002000	파인애플	30	E	
2006003000	생강	30	E	
2006004000	연 뿌리	30	C	
2006005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C	
2006006010	껍질을 제거한 콩	20	C	
2006006090	기타	20	C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C	
2006008000	올리브	20	C	
200600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C	
2006009020	죽순	20	G	
2006009030	그 밖의 채소	20	G	
2006009090	기타	30	C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D	
200791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30	F	

2007919000	기타	30	G	
2007991000	잼 · 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30	D	
2007999000	기타	30	E	
2008111000	피넛 버터	50	G	
2008119000	기타	63.9	G	
2008191000	밤	50	X	
2008192000	코코넛	45	X	
2008199000	기타	45	D	
2008200000	파인애플	45	E	
2008301000	유자	45	G	
2008309000	기타	45	X	
2008400000	배	45	X	
2008500000	살구	45	F	
2008600000	체리	45	D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X	
2008709000	기타	45	X	
2008800000	초본류 딸기	45	E	
2008910000	팜 하트(palm heart)	45	E	
200893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45	D	
200897101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F	
2008971090	기타	45	E	
2008972000	과실 샐러드	45	E	
2008979000	기타	45	G	
2008991000	포도	45	G	
2008992000	사과	45	X	
2008993000	팝콘	45	F	
2008994000	소금에 절인 초피	45	G	
2008995010	김	8	X	
2008995090	기타	8	C	

2008999000	기타	45	D	
2009110000	냉동한 것	54	G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54	X	
2009190000	기타	54	X	
20092100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30	G	
2009290000	기타	30	G	
2009311000	레몬주스	50	G	
2009312000	라임주스	50	G	
2009319000	기타	54	X	
2009391000	레몬주스	50	G	
2009392000	라임주스	50	G	
2009399000	기타	54	X	
20094100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50	G	
2009490000	기타	50	G	
2009500000	토마토주스	30	F	
2009610000	브릭스(Brix)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은 것	45	G	
2009690000	기타	45	G	
20097100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45	X	
2009790000	기타	45	X	
200981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50	D	
2009891010	복숭아주스	50	X	
2009891020	딸기주스	50	G	
2009891090	기타	50	D	
2009892000	채소 주스	30	F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X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G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F	
2009901090	기타	50	G	

2009902000	채소로 만든 것	30	F	
2009909000	기타	50	F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8	B	
2101119000	기타	8	B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8	B	
2101129010	밀크 · 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8	C	
2101129090	기타	8	B	
2101201000	설탕 · 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40	E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40	E	
2101209019	기타	40	E	
2101209090	기타	40	E	
2101301000	보리의 것	8	C	
2101309000	기타	8	C	
2102101000	양조효모	8	C	
2102102000	증류효모	8	C	
2102103000	제빵효모	8	C	
2102104000	배양효모	8	C	
2102109000	기타	8	C	
2102201000	불활성 효모	8	C	
2102202000	누룩	8	C	
2102203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8	C	
2102203090	기타	8	C	
2102204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8	C	
2102204090	기타	8	C	
2102209000	기타	8	C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8	C	
2103100000	간장	8	G	
2103201000	토마토 케첩	8	F	
2103202000	토마토 소스	8	F	
2103301000	겨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8	C	
2103302000	조제한 겨자	8	C	
2103901010	된장	8	C	

2103901020	춘장	8	C	
2103901030	고추장	32	F	
2103901090	기타	45	F	
2103909010	마요네스	8	C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45	C	
2103909030	혼합조미료	45	E	
2103909040	메주	8	X	
2103909090	기타	45	E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18	D	
2104102000	어류로 만든 것	30	C	
2104103000	채소로 만든 것	18	D	
2104109000	기타	18	D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30	D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8	C	
2105001090	기타	8	C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8	C	
2105009090	기타	8	C	
2106101000	두부	8	E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8	C	
2106109030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8	C	
2106901010	콜라 베이스	8	A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8	C	
2106901090	기타	8	C	
21069020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C	
2106903011	인삼차	8	X	
2106903019	기타	8	X	
2106903021	홍삼차	754.3	X	
2106903029	기타	754.3	X	
2106909010	커피크리머	8	C	
210690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8	E	

210690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	8	E	
210690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8	E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	C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8	C	
2106909050	향미(香味)용 조제품	8	C	
2106909060	도토리 가루	8	E	
21069090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C	
2106909080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D	
2106909091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8	E	
2106909099	기타	8	B	
2201100000	광천수와 탄산수	8	B	
2201901000	얼음과 눈	8	C	
2201909000	기타	8	C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8	B	
2202109000	기타	8	C	
220291000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8	A	
2202991000	인삼음료	8	X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9	D	
2202993000	식혜	8	C	
2202999000	기타	8	A	
2203000000	맥주	30	D	
220410000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15	D	
2204211000	붉은 포도주	15	D	
2204212000	흰 포도주	15	D	
2204219000	기타	15	D	
2204221000	붉은 포도주	15	D	
2204222000	흰 포도주	15	D	
2204229000	기타	15	D	

2204291000	붉은 포도주	15	D	
2204292000	흰 포도주	15	D	
2204299000	기타	15	D	
2204300000	그 밖의 포도즙	30	F	
2205100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	G	
2205900000	기타	15	G	
2206001010	사과주	15	E	
2206001020	배술	15	E	
2206001090	기타	15	E	
2206002010	청주	15	C	
2206002020	약주	15	C	
2206002030	탁주	15	C	
2206002090	기타	15	C	
2206009010	와인쿨러(제2009호나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15	C	
2206009090	기타	15	C	
2207101000	조주정(粗酒精)	10	G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270	G	
2207109090	기타	30	D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 없다)	8	C	
2208201000	꼬냇	15	C	
2208209000	기타	15	C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	20	C	
2208302000	버본 위스키	20	C	
2208303000	라이(rye) 위스키	20	C	
2208309000	기타	20	C	
220840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20	B	
2208500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20	C	
2208600000	보드카	20	C	
2208701000	인삼주	20	C	

2208702000	오가피주	20	G	
2208709000	기타	20	C	
2208901000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20	C	
2208904000	소주	30	B	
2208906000	고량주	30	C	
2208907000	데킬라	20	C	
2208909000	기타	30	C	
2209001000	양조식초	8	C	
2209009000	기타	8	B	
2301101000	육이나 설육(脰肉)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펠릿(pellet)	9	X	
2301102000	수지박(greaves)	5	B	
2301201000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펠릿(pellet)	5	C	
2301209000	기타	5	D	
2302100000	옥수수에서 나온 것	5	B	
2302300000	밀에서 나온 것	2	A	
2302401000	쌀에서 나온 것	5	B	
2302409000	기타	5	B	
230250000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5	B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0	A	
2303200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5	B	
2303301000	사료용	2	B	
2303309000	기타	5	A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8	A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	B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2	A	
2306200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5	B	
2306300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5	B	

23064100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0	A	
2306490000	기타	0	A	
230650000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	A	
2306600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2	A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63% 또는 72원/kg, 양자 중 고액 (율)	X	
2306902000	들깨에서 나온 것	5	B	
2306903000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5	B	
2306909000	기타	5	B	
23070000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5	B	
2308001000	도토리	5	E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5	E	
2308003000	목화씨 껍질	5	B	
2308009000	기타	46.4	G	
2309101000	개사료	5	B	
2309102000	고양이 사료	5	B	
2309901010	양돈용	4.2	A	
2309901020	양계용	4.2	A	
2309901030	어류용	5	A	
2309901040	축우용	4.2	A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	71	G	
2309901099	기타	5	A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 로 한 것은 제외한다)	50.6	G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50.6	G	
2309902091	19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5	A	
2309902099	기타	50.6	G	
2309903010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5	A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5	A	
2309903030	미량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5	A	
2309903090	기타	5	A	

2309909010	낙시용 떡밥	5	F	
2309909090	기타	50.6	G	
2401101000	황색종(種)	20	G	
2401102000	버어리(burley)종(種)	20	G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20	G	
2401109000	기타	20	G	
2401201000	황색종	20	G	
2401202000	버어리(burley)종(種)	20	G	
2401203000	오리엔트종(種)	20	G	
2401209000	기타	20	G	
2401301000	앞의 주맥(主脈)	20	G	
2401302000	앞 부스러기	20	G	
2401309000	기타	20	G	
2402101000	시가(cigar)	40	G	
2402102000	셔루트(cheroot)	40	G	
2402103000	시가릴로(cigarillo)	40	G	
2402201000	필터담배	40	G	
2402209000	기타	40	F	
2402900000	기타	40	G	
240311000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40	F	
2403191000	파이프 담배	40	G	
2403199000	기타	40	F	
2403911000	판상엽(板狀葉)	32.8	G	
2403919000	기타	40	G	
2403991000	씹는 담배	40	G	
2403992000	코 담배	40	G	
2403993000	담배의 추출물(extracts)과 에센스(essence)	40	G	
2403994000	입안에 머금는 담배(예: 스누스)	40	G	
2403999000	기타	40	G	
2501001010	암염(岩鹽)	1	A	
2501001020	천일염	1	D	

2501009010	식염	8	D	
2501009020	순염화나트륨	8	D	
2501009090	기타	8	D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A	
2503000000	황[승화황(昇華黃)· 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	A	
2504101000	인상(鱗狀)흑연	3	A	
2504102000	토상(土狀)흑연	3	A	
2504109000	기타	3	A	
2504901000	인상(鱗狀)흑연	3	A	
2504902000	토상(土狀)흑연	3	A	
2504909000	기타	3	A	
2505100000	규사	2	A	
2505901010	점토사	3	A	
2505901020	장석사(長石砂)	3	A	
2505901090	기타	3	A	
2505909000	기타	3	A	
2506101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미만인 것	3	A	
2506102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이상 100분의 0.1 이하인 것	3	A	
2506103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	3	A	
250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A	
2506209000	기타	3	A	
2507001010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3	A	
2507001090	기타	3	A	
2507002010	와목점토(蛙目粘土)	3	A	
2507002020	목절점토(木節粘土)	3	A	
2507002090	기타	3	A	
2507009000	기타	3	A	
2508100000	벤토나이트(bentonite)	3	A	
2508300000	내화(耐火)점토	3	A	
2508401000	산성백토	3	A	

2508402000	탈색토(奪色土)와 표포토(漂布土)	3	A	
2508409000	기타	3	A	
2508501000	홍주석(紅柱石)	3	A	
2508502000	남정석(藍晶石)	3	A	
2508503000	규선석(珪線石)	3	A	
2508600000	멀라이트(mullite)	3	A	
2508701000	샤모트(chamotte)	3	A	
2508702000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3	A	
2509000000	초크	3	A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0	A	
2510109000	기타	1	A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3	A	
2510202000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3	A	
2510209000	기타	3	A	
251110000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3	A	
251120000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3	A	
2512000000	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 다 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 (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겔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 로 한정한다]	3	A	
2513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불규칙한 조각[잘게 부순 부서(빔스 키)을 포함한다]	3	A	
2513109000	기타	3	A	
2513201010	금강사(金剛砂)	3	A	
2513201020	천연 커런덤(corundum)	3	A	
2513201030	천연 석류석	3	A	
2513201090	기타	3	A	
2513202010	금강사(金剛砂)	3	A	
2513202020	천연 커런덤(corundum)	3	A	
2513202030	천연 석류석	3	A	
2513202090	기타	3	A	
25140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A	

2514009000	기타	3	A	
2515111000	대리석	3	A	
2515112000	트래버틴(travertine)	3	A	
2515121000	대리석	3	A	
2515122000	트래버틴(travertine)	3	A	
251520000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 석고(alabaster)	3	A	
2516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A	
2516120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A	
251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A	
2516209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A	
25169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A	
2516909000	기타	3	A	
2517101000	자갈	3	A	
2517102000	쇄석(碎石)	3	A	
2517109000	기타	3	A	
2517200000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A	
251730000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3	A	
2517410000	대리석으로 만든 것	3	A	
2517491000	현무암으로 만든 것	3	A	
2517492000	화강암으로 만든 것	3	A	
2517499000	기타	3	A	
2518100000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3	A	
2518200000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3	A	
251830000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3	A	

251910000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3	A	
2519901000	용융(溶融)·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3	A	
2519902000	천연 산화마그네슘	3	A	
2519909000	기타	3	A	
2520101000	석고	5	A	
2520102000	무수(無水)석고	5	A	
2520201000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5	A	
2520209000	기타	5	A	
2521001000	석회석	3	A	
2521009000	기타	3	A	
2522100000	생석회(生石灰)	3	A	
2522200000	소석회(消石灰)	3	A	
2522300000	수경성(水硬性) 석회	3	A	
2523100000	시멘트 클링커(clinker)	5	A	
2523210000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2523290000	기타	5	A	
252330000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8	A	
2523901000	슬래그(slag) 시멘트	5	A	
2523909000	기타	5	A	
2524100000	청(靑)석면	5	A	
2524901000	갈(褐)석면	5	A	
2524902000	백(白)석면	5	A	
2524909000	기타	5	A	
252510000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갬 운모	3	A	
2525200000	운모 가루	3	A	
2525300000	운모 웨이스트(waste)	3	A	
2526101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A	
2526109000	기타	3	A	
2526200000	부수거나 가루인 것	5	A	

2528001000	천연 봉산나트륨과 그 정광(精鑛)[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A	
2528002000	봉산칼슘	3	A	
2528003000	염화봉산마그네슘	3	A	
2528004000	천연 봉산	3	A	
2528009000	기타	3	A	
2529100000	장석(長石)	3	A	
2529211000	가루	2	A	
2529219000	기타	2	A	
2529221000	가루	2	A	
2529229000	기타	2	A	
2529301000	백류석(白榴石)	2	A	
2529302000	하석(霞石)	2	A	
2529303000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2	A	
2530101000	질석(蛭石)	3	A	
2530102000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	3	A	
2530200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3	A	
2530901000	천연 황화비소	3	A	
2530902000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망간광	3	A	
2530903000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	3	A	
2530904000	주사(朱沙)	3	A	
2530905000	납석(蠟石)	3	A	
2530906000	불석(沸石)	3	A	
2530907000	명반석(明礬石)	3	A	
2530908000	규회석(硅灰石)	3	A	
2530909010	도석(陶石)	3	A	
2530909020	견운모(絹雲母)	3	A	
2530909030	어스컬러(earth colour)	8	A	
2530909040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8	A	
2530909050	천연 빙정석(氷晶石)과 천연 치올라이트(chiolite)	3	A	
2530909091	천연탄산칼슘	3	A	
2530909099	기타	3	A	

2601111000	적(赤)철광	0	A	
2601112000	자(磁)철광	0	A	
2601119000	기타	0	A	
2601121000	적(赤)철광	0	A	
2601122000	자(磁)철광	0	A	
2601129000	기타	0	A	
260120000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1	A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 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 鑛)을 포함한다]	0	A	
260300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0700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1001000	흑중석(wolframite)	0	A	
2611002000	회중석(scheelite)	0	A	
2611009000	기타	0	A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3100000	배소(焙燒)한 것	0	A	
2613900000	기타	0	A	
2614001000	금홍석(rutile)	0	A	
2614009000	기타	0	A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5901000	니오븀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5902000	탄탈륨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5903000	바나듐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6100000	은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6901000	금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6902000	백금광과 그 정광(精鑛)[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A	
2617100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7902000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7904000	비스무트(bismuth)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7909000	기타	0	A	
261800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	A	
2619001010	용광로 슬래그(slag)	2	A	
2619001090	기타	2	A	
2619002000	드로스(dross)	2	A	
2619003000	스케일링(scaling)	2	A	
2619009000	기타	2	A	
2620110000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2	A	
2620190000	기타	2	A	
2620210000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2	A	
2620290000	기타	2	A	
262030000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2	A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2	A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2	A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2	A	
2620990000	기타	2	A	
2621100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	A	
2621900000	기타	2	A	
2701110000	무연탄	0	A	
2701121000	강점결성 코크스용 탄	0	A	
2701122000	그 밖의 코크스용 탄	0	A	

2701129010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2 미만인 것(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 기준에 의한다)	0	A	
2701129090	기타	0	A	
2701190000	그 밖의 석탄	0	A	
2701201000	연탄	1	A	
2701202000	조개탄(ovoid)	1	A	
2701209000	기타	1	A	
270210000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1	A	
2702200000	응결시킨 갈탄	1	A	
2703001000	응결시키지 않은 것	1	A	
2703002000	응결시킨 것	1	A	
2704001010	석탄에서 제조한 것	3	A	
2704001090	기타	3	A	
2704002000	반성(半成) 코크스	3	A	
2704003000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3	A	
2705000000	석탄가스 · 수성(水性)가스 · 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A	
2706001000	콜타르(coal tar)	5	A	
2706009000	기타	5	A	
2707100000	벤조올(벤젠)	3	A	
2707200000	톨루올(톨루엔)	3	A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3	A	
2707400000	나프탈렌	5	A	
2707500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아이 · 에스 · 오(ISO) 3405방법(에이 · 에스 · 티 · 엠 디(ASTM D)86의 방법과 동등)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2707910000	크레오소트(creosote)유	5	A	
2707991000	솔벤트 나프타(solvent naphtha)	5	A	
2707992000	안트라센(anthracene)	5	A	

2707993000	페놀(석탄산)	8	A	
2707999000	기타	5	A	
2708100000	피치(pitch)	5	C	
2708200000	피치코크스(pitch cokes)	5	A	
270900101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3	E	
270900102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3	E	
270900103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3	E	
270900104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3	E	
270900105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3	E	
270900106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3	A	
270900107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3	A	
270900108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3	E	
2709001090	기타	3	E	
2709002000	역청유(瀝靑油)	3	E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3	A	
2710122000	항공 휘발유	3	A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A	
2710124000	나프타	0.5	A	
2710125000	엔지엘(NGL)	0.5	A	
2710129000	기타	5	A	
2710191010	제트 연료유	5	A	
2710191090	기타	5	A	
2710192010	등유	3	A	
2710192020	제트 연료유	3	A	
2710192030	노르말-파라핀(n-paraffin)	5	A	
2710192090	기타	5	A	
2710193000	경유	3	A	
271019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3	A	
2710194020	중유(벙커비유)	3	A	
2710194030	벙커시유	3	A	
2710194090	기타	5	A	
2710195010	조유(粗油)	7	A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7	A	
2710196000	신전유(extender oil)	8	C	
2710197110	항공기용 기관오일	7	C	
2710197120	자동차용 기관오일	7	C	
2710197130	선박용 기관오일	7	C	
2710197210	실린더오일	7	C	
2710197220	스핀들(spindle)오일	7	C	
2710197230	기어오일	7	C	
2710197240	터빈오일	7	C	
2710197250	냉동기오일	7	C	
2710197310	컴파운드오일	7	C	
2710197320	유동파라핀	7	C	
2710197330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	C	
2710197410	방청유(anti-corrosive oil)	7	C	
2710197420	절삭유	7	C	
2710197430	세척유	7	C	
2710197440	주형이형유	7	C	
2710197450	유압브레이크유	7	C	
2710197510	프로세스유	7	C	
2710197520	전기전열유	7	C	
2710197530	열처리유	7	C	
2710197540	열매체유	7	C	
2710197900	기타	7	C	
271019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C	
2710198020	칼슘을 첨가한 것	8	C	
271019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C	
2710198040	리튬을 첨가한 것	8	C	
2710198090	기타	8	C	
2710199000	기타	8	C	
2710201010	자동차 휘발유	5	C	
2710201020	항공 휘발유	5	C	
271020103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C	

2710201040	나프타	0.5	C	
2710201050	엔지엘(NGL)	0.5	C	
2710201090	기타	5	C	
2710209110	제트 연료유	5	C	
2710209190	기타	5	C	
2710209210	등유	5	C	
2710209220	제트 연료유	5	C	
2710209230	노르말-파라핀(n-paraffin)	5	A	
2710209290	기타	5	C	
2710209300	경유	5	C	
2710209410	경질(輕質)중유(병커에이유)	5	C	
2710209420	중유(병커비유)	5	C	
2710209430	병커시유	5	C	
2710209490	기타	5	C	
2710209510	조유(粗油)	7	C	
2710209520	윤활유 기유(基油)	7	C	
2710209600	신전유(extender oil)	8	C	
2710209711	항공기용 기관오일	7	C	
2710209712	자동차용 기관오일	7	C	
2710209713	선박용 기관오일	7	C	
2710209721	실린더오일	7	C	
2710209722	스핀들(spindle)오일	7	C	
2710209723	기어오일	7	C	
2710209724	터빈오일	7	C	
2710209725	냉동기오일	7	C	
2710209731	컴파운드오일	7	C	
2710209732	유동파라핀	7	C	
2710209733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	C	
2710209741	방청유	7	C	
2710209742	절삭유	7	C	
2710209743	세척유	7	C	
2710209744	주형이형유	7	C	

2710209745	유압브레이크유	7	C	
2710209751	프로세스유	7	C	
2710209752	전기전열유	7	C	
2710209753	열처리유	7	C	
2710209754	열매체유	7	C	
2710209790	기타	7	C	
27102098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C	
2710209820	칼슘을 첨가한 것	8	C	
27102098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C	
2710209840	리튬을 첨가한 것	8	C	
2710209890	기타	8	C	
2710209900	기타	8	C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 · 항공 휘발유 · 제트 연료유의 것	3	A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	A	
2710911090	기타	5	A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3	A	
2710912090	기타	5	A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3	A	
2710914010	경질(輕質)중유(병커에이유) · 중유(병커비유) · 병커시유의 것	3	A	
2710914090	기타	5	A	
2710915000	조유(粗油) · 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 · 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7	A	
2710919000	기타	8	A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 · 항공 휘발유 · 제트 연료유의 것	3	A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	A	
2710991090	기타	5	A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3	A	
2710992090	기타	5	A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3	A	
2710994010	경질(輕質)중유(병커에이유) · 중유(병커비유) · 병커시유의 것	3	A	

2710994090	기타	5	A	
2710995000	조유(粗油) · 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 · 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7	A	
2710999000	기타	8	A	
2711110000	천연가스	3	A	
2711120000	프로판	3	A	
2711130000	부탄	3	A	
2711141000	에틸렌	5	A	
2711142000	프로필렌	5	A	
2711143000	부틸렌	5	A	
2711144000	부타디엔	5	A	
2711190000	기타	5	A	
2711210000	천연가스	3	A	
2711290000	기타	5	C	
2712101000	바셀린	8	A	
2712109000	기타	8	A	
2712200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2712901010	슬랙왁스와 스케일왁스	8	A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	8	A	
2712901090	기타	8	A	
2712909010	몬탄왁스	8	A	
2712909020	토탄왁스	8	A	
2712909030	세레신왁스	8	A	
2712909040	합성 파라핀왁스	8	A	
2712909090	기타	8	A	
2713110000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5	A	
2713120000	하소(煨燒)한 것	5	A	
2713200000	석유역청(瀝靑)	5	A	
271390000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5	C	
2714100000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5	C	

2714901000	천연의 역청(瀝靑)과 아스팔트	5	A	
2714902000	아스팔타이트	5	A	
2714903000	아스팔트질의 암석	5	A	
2715001000	컷백(cut-back)	5	C	
2715002000	아스팔트 · 역청(瀝靑) · 피치(pitch) · 타르의 에멀션(emulsion)이나 안정분산액	5	C	
2715003000	매스틱(mastic)	5	C	
2715009000	기타	5	A	
2716000000	전기에너지	5	A	
2801100000	염소	5.5	A	
2801200000	요드	5.5	A	
2801301000	플루오르	5.5	A	
2801302000	브롬	5.5	A	
2802001000	승화황(昇華黃)	5	A	
2802002000	침강황(沈降黃)	5	A	
2802003000	콜로이드황	5	A	
2803001000	아세틸렌 블랙	5.5	A	
2803009011	이차전지 제조용	5	A	
2803009019	기타	5.5	A	
2803009090	기타	5.5	A	
2804100000	수소	5.5	A	
2804210000	아르곤	5.5	A	
2804291000	헬륨	5.5	A	
2804292000	네온	5.5	A	
2804293000	크립톤	5.5	A	
2804294000	크세논	5.5	A	
2804299000	기타	5.5	A	
2804300000	질소	5.5	A	
2804400000	산소	5.5	A	
2804501000	붕소	5.5	A	
2804502000	텔루르	5.5	A	
2804611010	잉곳(ingot) 또는 브릭(brick)	3	A	

2804611090	기타	3	A	
2804619000	기타	3	A	
2804690000	기타	5	A	
2804701000	황린	5	A	
2804709000	기타	5.5	A	
2804800000	비소	5.5	A	
2804900000	셀렌	5.5	A	
2805110000	나트륨	5.5	A	
2805120000	칼슘	5.5	A	
2805190000	기타	5.5	A	
2805301000	세륨그룹	5.5	A	
2805302000	테르븀그룹	5.5	A	
2805303000	에르븀그룹	5.5	A	
2805304000	이트륨	5.5	A	
2805305000	스칸듐	5.5	A	
2805309000	기타	5.5	A	
2805400000	수은	5.5	A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5.5	A	
2806200000	클로로황산	5.5	A	
2807001010	반도체 제조용	5.5	A	
2807001090	기타	5.5	A	
2807002000	발연황산	5.5	A	
2808001010	반도체 제조용	5.5	A	
2808001090	기타	5.5	A	
2808002000	황질산	5.5	A	
2809100000	오산화인	5.5	A	
2809201010	반도체 제조용	5.5	A	
2809201090	기타	5.5	A	
2809202010	메타인산	5.5	A	
2809202020	피로인산	5.5	A	
2809202090	기타	5.5	A	
2810001010	삼산화 이붕소	5.5	A	

2810001090	기타	5.5	A	
2810002000	오르토붕산	5.5	A	
2810003000	메타붕산	5.5	A	
2810009000	기타	5.5	A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	5.5	A	
2811119000	기타	5.5	A	
2811120000	시아화수소(시아화수소산)	5.5	A	
2811191000	황화수소	5.5	A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5.5	A	
2811193000	술파민산	5.5	A	
2811194000	과염소산	5.5	A	
2811195000	염소산	5.5	A	
2811196000	하이포아인산	5.5	A	
2811197000	아인산	5.5	A	
2811198000	비산	5.5	A	
2811199000	기타	5.5	A	
2811210000	이산화탄소	5.5	A	
2811221000	화이트카본	5.5	A	
2811229010	실리카겔	5.5	A	
2811229090	기타	5.5	A	
2811291000	일산화탄소	5.5	A	
2811292000	아산화질소	5.5	A	
2811293000	이산화질소	5.5	A	
2811294000	삼산화비소	5.5	A	
2811295000	오산화비소	5.5	A	
2811299000	기타	5.5	A	
281211000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5	A	
281212000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5	A	
281213000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5	A	
281214000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5	A	
2812150000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5	A	
2812160000	설퍼 디클로라이드	5	A	

2812170000	티오닐 클로라이드	5	A	
2812190000	기타	5	A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5.5	A	
2812902000	설퍼헥사플루오라이드	5.5	A	
2812909000	기타	5.5	A	
2813100000	이황화탄소	5.5	A	
2813901020	오황화인	5.5	A	
2813901090	기타	5.5	A	
2813902010	오황화비소	5.5	A	
2813902090	기타	5.5	A	
2813903000	황화규소	5.5	A	
2813909000	기타	5.5	A	
2814100000	무수(無水)암모니아	1	A	
2814200000	암모니아수	2	A	
2815110000	고체	5.5	A	
281512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8	A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5.5	A	
2815301000	과산화나트륨	5.5	A	
2815302000	과산화칼륨	5.5	A	
2816101000	수산화마그네슘	5.5	A	
2816102000	과산화마그네슘	5.5	A	
281640000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5.5	A	
2817001000	산화아연	5.5	A	
2817002000	과산화아연	5.5	A	
2818101000	선별된 알갱이 모양	3	A	
2818109000	기타	3	A	
281820000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1	A	
2818301000	알루미나겔	5.5	A	
2818309000	기타	5.5	A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5.5	A	
2819901010	산화제이크로뮴	5.5	A	
2819901090	기타	5.5	A	

2819902000	수산화크로뮴	5.5	A	
2820100000	이산화망간	5	A	
2820901000	일산화망간	5.5	A	
2820902000	삼산화제이망간	5.5	A	
2820909000	기타	5.5	A	
2821101000	산화철	5.5	A	
2821102000	수산화철	5.5	A	
2821200000	어스컬러(earth colour)	5.5	A	
2822001010	산화제이코발트	5.5	A	
2822001091	이차전지 제조용	3	A	
2822001099	기타	5.5	A	
2822002010	수산화제일코발트	5.5	A	
2822002090	기타	5.5	A	
2823001000	아나타스형	5.5	A	
2823009000	기타	5.5	A	
282410000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 · 메시코트(massicot)]	5.5	A	
2824901000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5.5	A	
2824909000	기타	5.5	A	
282510100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5.5	A	
2825109010	히드라진	5.5	A	
2825109020	히드라진과 무기염	5.5	A	
2825109030	히드록실아민	5.5	A	
2825109041	히드록실 암모늄클로라이드(히드록실아민염산염)	5.5	A	
2825109049	기타	5.5	A	
2825201000	산화리튬	5.5	A	
2825202000	수산화리튬	5	A	
2825301000	오산화바나듐	1	A	
2825309000	기타	3	A	
2825401000	산화니켈	5.5	A	
2825402000	수산화니켈	5.5	A	
2825501000	산화구리	5.5	A	

28255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825502090	기타	5.5	A	
2825601000	산화게르마늄	5.5	A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5.5	A	
2825701000	산화몰리브덴	3	A	
2825702000	수산화몰리브덴	5.5	A	
2825800000	산화안티모니	5.5	A	
2825901010	산화칼슘	5.5	A	
2825901020	산화텅스텐	1	A	
2825901030	산화석	5.5	A	
2825901090	기타	5.5	A	
2825902010	수산화칼슘	5.5	A	
2825902020	수산화망간	5.5	A	
2825902030	수산화텅스텐	5.5	A	
2825902040	수산화석	5.5	A	
2825902090	기타	5.5	A	
2825903010	과산화니켈	5.5	A	
2825903090	기타	5.5	A	
2825909000	기타	5.5	A	
28261200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5.5	A	
2826191000	플루오르화칼슘	5.5	A	
2826193010	산성플루오르화칼륨	5.5	A	
2826193090	기타	5.5	A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이나 플루오르화나트륨	5.5	A	
2826195000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6)	5.5	A	
2826199000	기타	5.5	A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5.5	A	
2826901000	인조치올라이트	5.5	A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5.5	A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5.5	A	
2826904000	플루오르화인산염	5.5	A	

2826905000	플루오르화황산염	5.5	A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규산칼륨	5.5	A	
2826909000	기타	5.5	A	
2827100000	염화암모늄	5.5	A	
2827200000	염화칼슘	5.5	A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5.5	A	
2827320000	알루미늄 염화물	5.5	A	
2827350000	니켈 염화물	5.5	A	
2827391000	구리 염화물	5.5	A	
2827399000	기타	5.5	A	
2827411000	산화염화구리	5.5	A	
282741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827412090	기타	5.5	A	
2827491000	산화 염화물	5.5	A	
2827492000	수산화 염화물	5.5	A	
2827511000	브롬화나트륨	5.5	A	
2827512000	브롬화칼륨	5.5	A	
2827591000	브롬화칼슘	5.5	A	
2827599000	기타	5.5	A	
2827601000	산화요드화물	5.5	A	
2827609010	요드화칼륨	5.5	A	
2827609090	기타	5.5	A	
282810000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5.5	A	
2828901010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5.5	A	
2828901020	하이포아염소산칼륨	5.5	A	
2828901090	기타	5.5	A	
2828902010	아염소산나트륨	5.5	A	
2828902020	아염소산알루미늄	5.5	A	
2828902090	기타	5.5	A	
2828903000	하이포아브롬산염	5.5	A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5.5	A	
2829191000	염소산칼륨	5.5	A	
2829192000	염소산바륨	5.5	A	
2829199000	기타	5.5	A	
2829901010	과염소산나트륨	5.5	A	
2829901020	과염소산암모늄	5.5	A	
2829901090	기타	5.5	A	
2829902010	브롬산염	5.5	A	
2829902020	과브롬산염	5.5	A	
2829902030	요오드산염	5.5	A	
2829902040	과요오드산염	5.5	A	
2830101000	황화수소나트륨	5.5	A	
2830109000	기타	5.5	A	
2830901000	황화물	5.5	A	
2830902000	폴리황화물	5.5	A	
2831101000	아이티온산나트륨	5.5	A	
2831102000	숯폭실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 숯폭실산나트륨)	5.5	A	
2831901000	아이티온산염	5.5	A	
2831902000	숯폭실산염	5.5	A	
2832101000	아황산수소나트륨	5.5	A	
2832109000	기타	5.5	A	
2832201000	아황산 암모늄	5.5	A	
2832202000	아황산 칼륨	5.5	A	
2832203000	아황산 칼슘	5.5	A	
2832209000	기타	5.5	A	
2832301000	티오황산 암모늄	5.5	A	
2832302000	티오황산 나트륨	5.5	A	
2832303000	티오황산 칼륨	5.5	A	
2832309000	기타	5.5	A	
2833110000	황산이나트륨	5.5	A	
2833191000	황산수소나트륨	5.5	A	
2833192000	이황산이나트륨	5.5	A	

2833199000	기타	5.5	A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5.5	A	
2833221000	이차전지 제조용	5	A	
2833229000	기타	5.5	A	
2833240000	황산니켈	5	A	
283325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833259000	기타	5.5	A	
2833270000	황산바륨	5.5	A	
2833291000	황산철	5.5	A	
2833292010	이차전지 제조용	5	A	
2833292090	기타	5.5	A	
2833293010	이차전지 제조용	5	A	
2833293090	기타	5.5	A	
2833299000	기타	5.5	A	
2833300000	명반	5.5	A	
2833401000	과황산암모늄	5.5	A	
2833402000	과황산나트륨	5.5	A	
2833403000	과황산칼슘	5.5	A	
2833409000	기타	5.5	A	
2834101000	아질산나트륨	5.5	A	
2834109000	기타	5.5	A	
2834210000	질산칼륨	5.5	A	
2834291000	질산바륨	5.5	A	
2834299000	기타	5.5	A	
2835101010	하이포아인산나트륨	5.5	A	
2835101020	하이포아인산칼슘	5.5	A	
2835101090	기타	5.5	A	
2835102000	아인산염	5.5	A	
2835221000	인산일나트륨	5.5	A	
2835222000	인산이나트륨	5.5	A	
2835240000	인산칼륨	5.5	A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5.5	A	
2835260000	그 밖의 인산칼슘	5.5	A	
2835291000	인산알루미늄	5.5	A	
2835299000	기타	5.5	A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5.5	A	
2835391000	메타인산나트륨	5.5	A	
2835392000	피로인산나트륨	5.5	A	
2835399000	기타	5.5	A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3	A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5.5	A	
2836400000	탄산칼륨	5.5	A	
2836500000	탄산칼슘	5.5	A	
2836600000	탄산바륨	5.5	A	
2836910000	탄산리튬	5	A	
2836920000	탄산스트론튬	5.5	A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5.5	A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암모늄	5.5	A	
2836991031	이차전지 제조용	5	A	
2836991039	기타	5.5	A	
2836991090	기타	5.5	A	
2836992000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5.5	A	
2837111000	시아나화나트륨	5.5	A	
2837112000	산화시아나화나트륨	5.5	A	
2837191010	시아나화칼륨	5.5	A	
2837191020	시아나화구리	5.5	A	
2837191030	시아나화아연	5.5	A	
2837191090	기타	5.5	A	
2837192000	산화시아나화물	5.5	A	
2837201000	페로시아나화물	5.5	A	
2837202000	페리시아나화물	5.5	A	
2837209000	기타	5.5	A	
2839110000	메타규산나트륨	5.5	A	

2839190000	기타	5.5	A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5.5	A	
2839902000	규산바륨	5.5	A	
2839909000	기타	5.5	A	
2840110000	무수물(無水物)	5	A	
2840190000	기타	5	A	
2840200000	그 밖의 붕산염	5	A	
2840300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	A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5.5	A	
2841501000	크롬산칼륨	5.5	A	
2841509000	기타	5.5	A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5.5	A	
2841691000	아망간산염	5.5	A	
2841692000	망간산염	5.5	A	
2841693000	과망간산염	5.5	A	
2841700000	몰리브덴산염	5.5	A	
284180000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5	A	
2841901000	주석산염	5.5	A	
2841902010	티탄산바륨	5.5	A	
2841902020	티탄산스트론튬	5.5	A	
2841902030	티탄산납	5.5	A	
2841902090	기타	5.5	A	
2841903000	안티몬산염	5.5	A	
2841904000	철산염과 아철산염	5.5	A	
2841905000	바나듐산염	5.5	A	
2841906000	비스무트산염	5.5	A	
2841909000	기타	5.5	A	
2842101000	알루미늄노실리케이트	6.5	A	
2842109000	기타	5.5	A	
2842901000	셀렌산염	5.5	A	
2842903000	황을 함유하는 겐염이나 착염	5.5	A	
2842905000	셀렌의 겐염이나 착염	5.5	A	

2842909000	기타	5.5	A	
2843101000	콜로이드 은	5.5	A	
2843102000	콜로이드 금	5.5	A	
2843103000	콜로이드 백금	5.5	A	
2843109000	기타	5.5	A	
2843211000	반도체 제조용	5.5	A	
2843219000	기타	5.5	A	
2843291000	반도체 제조용	5.5	A	
2843299000	기타	5.5	A	
2843301000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5.5	A	
2843309000	기타	5.5	A	
2843901000	아말감(amalgam)	5.5	A	
2843909010	백금 화합물	5.5	A	
2843909090	기타	5.5	A	
2844101000	천연 우라늄	0	A	
2844102000	분산물(分散物)(천연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2844109000	기타	0	A	
284420100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0	A	
2844202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 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2844209000	기타	0	A	
2844301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2844309000	기타	0	A	
2844401000	방사성원소	0	A	
2844402000	방사성동위원소	0	A	
2844403000	분산물(分散物)(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2844409000	기타	0	A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0	A	

284510000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0	A	
2845901000	중수소	0	A	
2845902000	탄소의 동위원소	0	A	
2845909000	기타	0	A	
2846100000	세륨화합물	5	A	
2846901000	산화이트륨	5	A	
2846909000	기타	5	A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	5.5	A	
2847009000	기타	5.5	A	
2849100000	탄화칼슘	5.5	A	
2849200000	탄화규소	5	A	
2849901000	복탄화물	5.5	A	
2849909010	탄화텅스텐	5.5	A	
2849909090	기타	5.5	A	
2850001000	수소화물	5.5	A	
2850002000	질화물	5.5	A	
2850003000	아지드화물	5.5	A	
2850004000	규화물	5.5	A	
2850005000	붕화물	5.5	A	
2852101000	소호 제2825.90호, 제2827.39호, 제2827.49호, 제2827.60호, 제2830.90호, 제2833.29호, 제2834.29호, 제2835.39호, 제2837.19호, 제2837.20호, 제2841.50호, 제2842.10호, 제2842.90호, 제2843.90호, 제2849.90호, 제2850.00호, 또는 제2853호의 것	5.5	A	
2852102000	제2931호의 것, 소호 제2918.11호, 제2932.99호, 제2934.99.9090호, 제3201.90.2000호, 제3201.90.4000호, 제3206.50호, 제3707.90호, 제3822.00.1091호, 제3822.00.2091호의 것	6.5	A	
2852103000	제2934.99.2000호, 제3822.00.1092호, 제3822.00.2092호의 것	6.5	A	
2852104000	소호 제3502.90호, 제3504.00호의 것	8	A	

2852105000	제3822.00.101호, 제3822.00.102호, 제3822.00.1093호, 제3822.00.201호, 제3822.00.202호, 제3822.00.2093호의 것	0	A	
2852106000	제3822.00.1099호, 제3822.00.2099호의 것	8	A	
2852901000	소호 제2830.90호, 제2835.39호, 제2842.10.9000호, 제2849.90호, 제2850.00호, 제2853.90.2000호의 것	5.5	A	
2852902000	제2842.10.1000호, 제2934.99.2000호, 제2934.99.9090호, 소호 제3201.90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2100호, 제3824.99.2290호부터 제3824.99.9090호까지의 것	6.5	A	
2852903000	소호 제3501.90호의 카세인산염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의 것(커피크리머 제조용은 제외한다)	20	E	
2852904000	소호 제3502.90호, 제3504.00호의 것	8	C	
285310000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5.5	A	
2853901000	증류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5.5	A	
2853902000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5.5	A	
2853909000	기타	5.5	A	
2901101000	부탄	0	A	
2901102000	헥산	0	A	
2901103000	헵탄	0	A	
2901109000	기타	0	A	
2901210000	에틸렌	0	A	
2901220000	프로펜(프로필렌)	0	A	
290123000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	A	
2901241000	1,3-부타디엔	0	A	
2901242000	이소프렌	0	A	
2901291000	헥센	0	A	
2901292000	옥텐	0	A	
2901299000	기타	0	A	
2902110000	시클로헥산	5	A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5	A	
2902199000	기타	5	A	

2902200000	벤젠	3	A	
2902300000	톨루엔	3	A	
2902410000	오르토-크실렌	5	A	
2902420000	메타-크실렌	5	A	
2902430000	파라-크실렌	3	A	
2902440000	혼합크실렌이성체	3	A	
2902500000	스티렌	0	A	
2902600000	에틸벤젠	5	A	
2902700000	큐멘	3	A	
2902901000	나프탈렌	0	A	
2902902000	메틸나프탈렌	0	A	
2902903000	메틸스티렌	0	A	
2902909000	기타	0	A	
2903111000	염화메탄(염화메틸)	5.5	A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5.5	A	
29031200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5.5	A	
290313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5.5	A	
2903140000	사염화탄소	5.5	A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	A	
290319100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5.5	A	
2903199000	기타	5.5	A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5	A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5.5	A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5	A	
2903290000	기타	5.5	A	
2903310000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5.5	A	
2903391000	브로모메탄(메틸 브로마이드)	5.5	A	
2903392000	브로모에탄(1,2-디브로모에탄은 제외한다)	5.5	A	
2903393000	요드메탄	5.5	A	
2903394000	헥사플루오르에탄(CFC-116)	5.5	A	
2903395000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5.5	A	
2903396000	1,1,1,2-테트라 플루오르에탄(HFC-134a)	5.5	A	

2903397000	1,1,3,3,3-펜타플루오로-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5.5	A	
2903399000	기타	5.5	A	
290371000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A	
290372000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5.5	A	
2903730000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5.5	A	
2903740000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5.5	A	
290375000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5.5	A	
290376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 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5.5	A	
2903770000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5.5	A	
2903780000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5.5	A	
2903791100	클로로플루오르메탄	5.5	A	
2903791210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5.5	A	
2903791290	기타	5.5	A	
2903791300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5.5	A	
2903792000	불소와 염소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 · 에탄 · 프로판의 유 도체	5.5	A	
2903799000	기타	5.5	A	
29038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5.5	A	
29038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5.5	A	
2903830000	미렉스(ISO)	5.5	A	
2903890000	기타	5.5	A	
2903911000	클로로벤젠	5.5	A	
2903919000	기타	5.5	A	
2903921000	헥사클로로벤젠(ISO)	5.5	A	
2903922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 라-클로로페닐)에탄]	5.5	A	
290393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5.5	A	
2903940000	헥사브로모비페닐	5.5	A	
2903991000	염화벤질	5.5	A	
2903992010	1,2,4-트리클로로벤젠	5.5	A	

2903992090	기타	5.5	A	
2903993000	벤조트리클로라이드	5.5	A	
2903999000	기타	5.5	A	
2904101000	벤젠 술폰산	5.5	A	
2904109000	기타	5.5	A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5.5	A	
2904209010	니트로벤젠	5.5	A	
2904209090	기타	5.5	A	
290431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5.5	A	
290432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5.5	A	
290433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5.5	A	
290434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5.5	A	
2904350000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5.5	A	
2904360000	과불화옥탄술폰소닐플루오라이드	5.5	A	
2904910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5.5	A	
2904990000	기타	5.5	A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2	A	
29051210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5.5	A	
2905122010	반도체 제조용	5.5	A	
2905122090	기타	5.5	A	
29051300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	A	
2905140000	그 밖의 부탄올	5.5	A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5.5	A	
2905169000	기타	5.5	A	
29051710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5.5	A	
2905172000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5.5	A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5.5	A	
2905191000	헵틸알코올	5.5	A	
2905192000	노닐알코올	5.5	A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	A	
2905194000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5.5	A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5	A	

2905199020	2-프로필 헵틸 알코올	5	A	
2905199030	이소데실 알코올	3	A	
2905199090	기타	5	A	
2905221000	게라니올 · 시트로네올 · 리날롤 · 로디놀 · 네롤	5	A	
2905229000	기타	5	A	
2905290000	기타	5	A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3	A	
29053200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5	A	
2905391000	1,4-부탄디올	5.5	A	
2905392000	네오펜틸 글리콜	5.5	A	
2905399000	기타	5.5	A	
29054100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5.5	A	
2905420000	펜타에리트리톨	5.5	A	
2905430000	만니톨	8	C	
29054400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8	C	
2905450000	글리세롤	8	A	
2905490000	기타	5.5	A	
2905510000	에스클로비놀(INN)	5.5	A	
2905590000	기타	5.5	A	
2906110000	멘톨	5.5	A	
2906120000	시클로헥산올 · 메틸시클로헥산올 · 디메틸시클로헥산올	5.5	A	
2906131000	스테롤	5.5	A	
2906132000	이노시톨	5.5	A	
2906191000	보르네올	5.5	A	
2906192000	테르피네올	5.5	A	
2906199000	기타	5.5	A	
2906210000	벤질알코올	5.5	A	
2906291000	페닐에틸알코올	5.5	A	
2906292000	페닐프로필알코올	5.5	A	
2906293000	신나밀알코올	5.5	A	
2906299000	기타	5.5	A	

2907111000	페놀	5.5	A	
2907112000	페놀의 염	5.5	A	
2907121000	크레졸	5.5	A	
2907122000	크레졸의 염	5.5	A	
2907131000	옥틸페놀	5.5	A	
2907132000	노닐페놀	5	A	
2907139000	기타	5.5	A	
2907151000	나프톨	5.5	A	
2907152000	나프톨의 염	5.5	A	
2907191000	티몰	5.5	A	
2907192000	크실레놀과 이들의 염	5.5	A	
2907199000	기타	5.5	A	
2907211000	레소르시놀	5.5	A	
2907212000	레소르시놀의 염	5.5	A	
2907221000	히드로퀴논	5.5	A	
2907222000	히드로퀴논의 염	5.5	A	
2907231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5.5	A	
2907232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의 염	5.5	A	
2907291000	카테콜	5.5	A	
2907299000	기타	5.5	A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5	A	
2908191000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은 제외한다)	5	A	
2908192000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5	A	
2908193000	트리브로모페놀	5	A	
2908199000	기타	5	A	
2908910000	디노셉(ISO)과 그 염	5.5	A	
2908920000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5.5	A	
2908991000	나프톨술폰산과 이들의 염	5.5	A	
2908992000	페놀술폰산	5.5	A	
2908993000	니트로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5.5	A	
2908994000	니트로소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5.5	A	
2908999000	기타	5.5	A	

2909110000	디에틸에테르	5.5	A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5.5	A	
2909192000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5.5	A	
2909199000	기타	5.5	A	
290920000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 소화유도체	5.5	A	
2909301000	아니솔	5.5	A	
2909302000	아네톨	5.5	A	
2909303000	디페닐 에테르	5.5	A	
2909304000	엠브렛 머스크	5.5	A	
2909305000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5.5	A	
29093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 정한다)	2	A	
2909309090	기타	5.5	A	
29094100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5.5	A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 부틸에테르	5.5	A	
2909441000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 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5.5	A	
2909449000	기타	5.5	A	
2909491000	트리에틸렌 글리콜	5.5	A	
2909499000	기타	5.5	A	
2909501000	오이게놀	5.5	A	
2909502000	이소오이게놀	5.5	A	
2909503000	에테르알코올페놀	5.5	A	
2909509000	기타	5.5	A	
2909601000	과산화알코올	5.5	A	
2909602000	디쿠밀퍼록사이드	5.5	A	
2909603000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5.5	A	
2909609000	기타	5.5	A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5	A	

291020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5	A	
2910300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5.5	A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5.5	A	
2910500000	엔드린(ISO)	5.5	A	
2910900000	기타	5.5	A	
2911001010	아세탈	5.5	A	
2911001020	헤미아세탈	5.5	A	
2911009000	기타	5.5	A	
29121100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5.5	A	
29121200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5	A	
2912191000	시트로넬알데히드	5.5	A	
2912192000	시틀알	5.5	A	
2912193000	부탄알(부티르알데히드, 노르말-이성체)	5.5	A	
2912199000	기타	5.5	A	
2912210000	벤즈알데히드	5.5	A	
2912292000	페닐아세트알데히드	5.5	A	
2912293000	신남알데히드	5.5	A	
2912294000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	5.5	A	
2912295000	시클라멘알데히드	5.5	A	
2912299000	기타	5.5	A	
29124100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5	A	
2912420000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5.5	A	
2912491000	3,4,5-트리메톡시벤즈알데히드	5.5	A	
2912499000	기타	5.5	A	
2912501000	트리옥산	5.5	A	
2912503000	메타알데히드	5.5	A	
2912509000	기타	5.5	A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5.5	A	
29130000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5.5	A	
2914110000	아세톤	5.5	A	
29141200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3	A	

29141300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5.5	A	
2914191000	3,3-디메틸-2-부타논(피나콜론)	5.5	A	
2914199000	기타	5.5	A	
2914221000	시클로헥사논	5	A	
2914222000	메틸시클로헥사논	5	A	
2914231000	이오논	5	A	
2914232000	메틸이오논	5	A	
2914291000	자스몬	5	A	
2914299000	기타	5	A	
29143100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5.5	A	
2914390000	기타	5.5	A	
2914401000	디아세톤 알코올(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	5.5	A	
2914409000	기타	5.5	A	
2914501000	케톤-페놀	5.5	A	
2914509000	기타	5.5	A	
2914610000	안트라퀴논	5.5	A	
2914620000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5.5	A	
2914691000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5.5	A	
2914699010	퀴논알코올 · 퀴논페놀과 퀴논알데히드	5.5	A	
2914699090	기타	5.5	A	
2914710000	클로르데콘(ISO)	5	A	
29147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14799000	기타	5	A	
2915110000	포름산	5.5	A	
2915121000	포름산 칼슘	5.5	A	
2915122000	포름산 암모늄	5.5	A	
2915129000	기타	5.5	A	
2915131000	포름산 메틸	5.5	A	
2915132000	2-에틸헥실클로로포메이트	5.5	A	
2915139000	기타	5.5	A	
2915210000	초산	5.5	A	

2915240000	무수(無水)초산	5.5	A	
2915291000	초산칼슘	5.5	A	
2915292000	초산나트륨	5.5	A	
2915293000	초산코발트	5.5	A	
2915299000	기타	5.5	A	
2915310000	초산에틸	5.5	A	
2915320000	초산비닐	5.5	A	
2915331000	반도체 제조용	5.5	A	
2915339000	기타	5.5	A	
2915360000	초산디노 섹(ISO)	5.5	A	
2915391000	초산아밀	5.5	A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5.5	A	
2915393000	초산메틸	5.5	A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5.5	A	
2915395000	초산2-에톡시에틸	5.5	A	
2915399000	기타	5.5	A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5.5	A	
2915409000	기타	5.5	A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5.5	A	
2915600000	부탄산 · 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5	A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5.5	A	
2915702010	스테아르산	5.5	A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5	A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5.5	A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5.5	A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5.5	A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5.5	A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5.5	A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5.5	A	
2915702090	기타	5.5	A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5.5	A	
2915909010	2-에틸헥소산	5.5	A	

2915909090	기타	5.5	A	
2916111000	아크릴산	6.5	A	
2916119000	기타	6.5	A	
2916121000	아크릴산에틸	6.5	A	
2916122000	아크릴산메틸	6.5	A	
2916123000	아크릴산부틸	6.5	A	
2916124000	아크릴산 2-에틸헥실	6.5	A	
2916129000	기타	6.5	A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6.5	A	
2916139000	기타	6.5	A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6.5	A	
2916149000	기타	6.5	A	
291615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A	
2916152000	리놀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A	
2916153000	리놀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A	
2916160000	비나파크릴(ISO)	6.5	A	
2916190000	기타	6.5	A	
2916201000	시클로 헥산카르복시산	6.5	A	
2916202000	시클로 펜테닐 초산	6.5	A	
2916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16209090	기타	6.5	A	
2916311000	벤조산	6.5	A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6.5	A	
2916313000	벤조산벤질	6.5	A	
291631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16319090	기타	6.5	A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6.5	A	
2916322000	염화벤조일	6.5	A	
2916341000	페닐아세트산	6.5	A	
2916342000	페닐아세트산의 염	6.5	A	

2916391000	계피산	6.5	A	
2916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16399090	기타	6.5	A	
2917111000	옥살산	6.5	A	
2917112000	옥살산의 염	6.5	A	
2917113000	옥살산의 에스테르	6.5	A	
2917121000	아디프산	6.5	A	
2917122000	아디프산의 염	6.5	A	
2917123010	아디프산 디옥틸	6.5	A	
2917123090	기타	6.5	A	
2917131000	아젤라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A	
2917132000	세바스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A	
2917140000	무수말레산	6.5	A	
2917191000	말레산	6.5	A	
2917192000	숙신산	6.5	A	
2917193000	숙신산 나트륨	6.5	A	
2917194000	말론산 디에틸	6.5	A	
2917195000	말론산 디이소프로필	6.5	A	
2917199000	기타	6.5	A	
291720000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6.5	A	
291732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6.5	A	
2917329000	기타	6.5	A	
2917331000	오르토프탈산디노닐	6.5	A	
2917332000	오르토프탈산디데실	6.5	A	
2917341000	오르토프탈산 디헥틸	6.5	A	
2917342000	오르토프탈산 디이소데실	6.5	A	
2917343000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6.5	A	
2917349000	기타	6.5	A	
2917350000	무수프탈산	6.5	A	

2917361000	테레프탈산	3	A	
2917369000	기타	6.5	A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6.5	A	
2917391000	이소프탈산	6.5	A	
2917392000	트리옥틸트리메리테이트(T.O.T.M)	6.5	A	
2917393000	무수트리멜리트산	6.5	A	
2917399000	기타	6.5	A	
2918111000	락트산	6.5	A	
2918112000	락트산의 염	6.5	A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6.5	A	
2918120000	타르타르산	6.5	A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6.5	A	
2918132000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	6.5	A	
2918140000	시트르산	6.5	A	
2918151010	시트르산 칼슘	6.5	A	
2918151090	기타	6.5	A	
2918152000	시트르산의 에스테르	6.5	A	
2918161000	글루콘산	6.5	A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6.5	A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6.5	A	
2918170000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6.5	A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5	A	
2918191010	말산	6.5	A	
2918191090	기타	6.5	A	
2918192010	말산의 염	6.5	A	
2918192090	기타	6.5	A	
2918193010	말산의 에스테르	6.5	A	
2918193020	메틸벤질레이트	6.5	A	
2918193090	기타	6.5	A	
2918199000	기타	6.5	A	
2918211000	살리실산	6.5	A	
2918212010	살리실산 나트륨	6.5	A	

2918212090	기타	6.5	A	
2918221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6.5	A	
2918222000	오르토-아세틸살리산의 염	6.5	A	
2918223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에스테르	6.5	A	
2918231010	살리실산 메틸	6.5	A	
2918231020	살리실산 에틸	6.5	A	
2918231090	기타	6.5	A	
2918232000	그 밖의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6.5	A	
2918291000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6.5	A	
2918299010	갈산	6.5	A	
291829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6.5	A	
2918299040	갈산의 염과 에스테르	6.5	A	
2918299090	기타	6.5	A	
29183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18309000	기타	6.5	A	
29189100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A	
29189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18999000	기타	6.5	A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6.5	A	
291990101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19901019	기타	6.5	A	
2919901020	글리세로인산	6.5	A	
2919901090	기타	6.5	A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6.5	A	
2919909000	기타	6.5	A	
29201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0119000	기타	6.5	A	

2920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0199000	기타	6.5	A	
2920210000	디메틸 포스파이트	6.5	A	
2920220000	디에틸 포스파이트	6.5	A	
292023000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6.5	A	
292024000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6.5	A	
2920290000	기타	6.5	A	
29203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0309000	기타	6.5	A	
2920901010	황산디메틸	6.5	A	
2920901020	황산디에틸	6.5	A	
2920901090	기타	6.5	A	
2920902000	아질산에스테르와 질산에스테르의 것	6.5	A	
2920903000	탄산에스테르의 것	6.5	A	
29209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0909090	기타	6.5	A	
2921111010	메틸아민	6.5	A	
2921111020	메틸아민의 염	6.5	A	
2921112010	디메틸아민	6.5	A	
2921112020	디메틸아민의 염	6.5	A	
2921113010	트리메틸아민	6.5	A	
2921113020	트리메틸아민의 염	6.5	A	
2921120000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A	
292113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A	
2921140000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A	
2921192000	디에틸아민과 그 염	6.5	A	
2921199010	디메틸라우릴아민	6.5	A	
2921199020	클로르메틴(INN)[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6.5	A	
2921199030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6.5	A	

2921199040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6.5	A	
2921199050	디-이소프로필아민	6.5	A	
292119907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A	
2921199090	기타	6.5	A	
2921211000	에틸렌디아민	6.5	A	
2921212000	에틸렌디아민의 염	6.5	A	
2921221000	헥사메틸렌디아민	6.5	A	
2921222000	헥사메틸렌디아민아디페이트	6.5	A	
2921229000	기타	6.5	A	
2921291000	디에틸렌 트리아민	5	A	
2921292000	트리에틸렌 테트라아민	5	A	
2921299000	기타	5	A	
2921301000	시클로 헥실아민	6.5	A	
2921309000	기타	6.5	A	
2921411000	아닐린	6.5	A	
2921412000	아닐린의 염	6.5	A	
2921421000	아닐린의 니트로할로겐화 유도체	6.5	A	
2921422000	2,4,5-트리클로로아닐린	6.5	A	
292142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1429090	기타	6.5	A	
2921431000	파라-톨루이딘-메타-술폰산과 그 염	6.5	A	
2921432000	2-클로로-파라-톨루이딘-5-술폰산과 그 염	6.5	A	
2921433000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술폰산과 그 염	6.5	A	
2921439010	톨루이딘	6.5	A	
292143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1439099	기타	6.5	A	
2921441000	디페닐아민	6.5	A	
2921449000	기타	6.5	A	
2921451000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6.5	A	

292145901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A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A	
2921459030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5	A	
2921459090	기타	6.5	A	
2921460000	암페타민(INN) · 벤즈페타민(INN) · 텍스암페타민(INN) · 에틸암페타민(INN) · 펜캄파민(INN) · 레페타민(INN) · 레브암페타민(INN) · 메페노렉스(INN) · 펜터민(INN), 이들의 염	6.5	A	
29214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1499000	기타	6.5	A	
2921511000	엔-페닐-엔-이소프로필 파라-페닐렌디아민	6.5	A	
292151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6.5	A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6.5	A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6.5	A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6.5	A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6.5	A	
2921519090	기타	6.5	A	
2921591000	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염	6.5	A	
2921599010	벤지딘	6.5	A	
2921599020	벤지딘 디히드로 클로라이드	6.5	A	
2921599030	4,4'디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과 그 염	6.5	A	
2921599040	벤지딘의 염(벤지딘디히드로클로라이드의 것은 제외한다)	6.5	A	
2921599050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6.5	A	
2921599090	기타	6.5	A	
2922111000	모노에탄올아민	6.5	A	
2922112000	모노에탄올아민의 염	6.5	A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6.5	A	
2922122000	디에탄올아민의 염	6.5	A	
29221400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5	A	
2922150000	트리에탄올아민	3	A	
292216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6.5	A	

2922171000	메틸디에탄올아민	6.5	A	
2922172000	에틸디에탄올아민	6.5	A	
2922180000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6.5	A	
2922191000	아릴에탄올아민	6.5	A	
2922193010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6.5	A	
2922193020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6.5	A	
2922193090	기타	6.5	A	
2922196000	디에틸아미노에탄올	6.5	A	
2922199000	기타	6.5	A	
2922211000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6.5	A	
2922212000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염	3	A	
2922213000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6.5	A	
2922219000	기타	6.5	A	
2922291000	파라-아미노페놀	6.5	A	
2922299010	메타-아미노페놀	6.5	A	
2922299020	오르토-아미노페놀	6.5	A	
2922299030	아미노 크레졸	6.5	A	
2922299040	페네티딘과 이들의 염	6.5	A	
2922299090	기타	6.5	A	
2922310000	암페프라몬(INN) · 메타돈(INN) · 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6.5	A	
2922392000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이들의 염	6.5	A	
2922393000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6.5	A	
2922399000	기타	6.5	A	
2922411000	리신	6.5	A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6.5	A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6.5	A	
2922421000	글루탐산	5	A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6.5	A	
2922423000	그 밖의 글루탐산의 염	6.5	A	
2922431000	안트라닐산	6.5	A	
2922439000	안트라닐산의 염	6.5	A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6.5	A	
2922491000	글리신	6.5	A	
2922492000	알라닌	6.5	A	
2922493000	류우신	6.5	A	
2922494000	바린	6.5	A	
2922495000	아스파르트산	6.5	A	
2922496000	페닐글리신	6.5	A	
2922497000	에틸파라아미노 벤조에이트	6.5	A	
2922499000	기타	6.5	A	
2922501000	세린	6.5	A	
2922502000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6.5	A	
2922503000	1-파라-니트로 페놀-2-아미노-1,3-프로판디올	6.5	A	
2922504000	디알파히드록시페닐글리신	6.5	A	
29225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2509090	기타	6.5	A	
2923101000	콜린	6.5	A	
2923102000	콜린의 염	6.5	A	
2923201000	레시틴	6.5	A	
2923202000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5	A	
29233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6.5	A	
29234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6.5	A	
2923900000	기타	6.5	A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6.5	A	
29241210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6.5	A	
2924122000	모노크로토포스(ISO)	6.5	A	
2924123000	포스파미돈(ISO)	6.5	A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6.5	A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5	A	
2924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4199090	기타	6.5	A	

29242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4219000	기타	6.5	A	
29242300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6.5	A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6.5	A	
292425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4259000	기타	6.5	A	
2924291010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6.5	A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6.5	A	
2924291090	기타	6.5	A	
2924292000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5	A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6.5	A	
2924299020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이오헥솔, 이오버솔, 이오딕산올	0	A	
2924299092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4299099	기타	6.5	A	
2925111000	사카린	6.5	A	
2925112000	사카린의 염	6.5	A	
2925120000	구루테치미드(INN)	6.5	A	
2925191000	프탈이미드	6.5	A	
2925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5199090	기타	6.5	A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6.5	A	
2925291000	디페닐구아니딘	6.5	A	
2925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5299090	기타	6.5	A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6.5	A	
2926200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5	A	

2926300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6.5	A	
2926400000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6.5	A	
2926901000	아세토니트릴	6.5	A	
2926902000	1,4-디아미노-2,3-디시아노안트라퀴논	6.5	A	
2926909010	말로노니트릴	6.5	A	
2926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6909099	기타	6.5	A	
2927001100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술폰산	6.5	A	
2927001900	기타	6.5	A	
2927002100	아조디카본아미드	6.5	A	
2927002910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	6.5	A	
2927002990	기타	6.5	A	
2927003000	아족시화합물	6.5	A	
2928001000	페닐히드라진	6.5	A	
2928009010	페릴랄틴	6.5	A	
2928009020	메틸에틸 케토옥심	6.5	A	
29280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28009099	기타	6.5	A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6.5	A	
2929102000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6.5	A	
2929109000	기타	6.5	A	
2929901000	이소시아나화물	6.5	A	
29299030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6.5	A	
2929904000	디에틸-노르말, 노르말-디메틸 포스포르 아미데이트	6.5	A	
2929905000	오르토-에틸-2-디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6.5	A	

29299060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6.5	A	
2929909000	기타	6.5	A	
29302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0201090	기타	6.5	A	
29302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0202090	기타	6.5	A	
2930301000	티우람모노술폰라이드	6.5	A	
2930302000	티우람디술폰라이드	6.5	A	
2930303000	티우람테트라술폰라이드	6.5	A	
2930400000	메티오닌	6.5	A	
293060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6.5	A	
2930700000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폰라이드[티오디글리콜(INN)]	6.5	A	
2930800000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6.5	A	
2930901000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6.5	A	
2930902010	티오우레아	6.5	A	
2930902020	티오키르바닐리드	6.5	A	
2930902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0902099	기타	6.5	A	
2930903010	티오알코올	6.5	A	
2930903020	티오펜놀	6.5	A	
293090303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탄티올	6.5	A	
293090304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A	
2930904020	티오아닐린	6.5	A	
2930904090	기타	6.5	A	
2930905010	2-클로로 에틸클로로메틸술폰라이드	6.5	A	
2930905020	비스(2-클로로에틸)술폰라이드	6.5	A	
2930905070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6.5	A	

2930905090	기타	6.5	A	
29309060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와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A	
2930907000	오, 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A	
2930908000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6.5	A	
2930909010	티오산	6.5	A	
2930909020	이소티오시아네이트	6.5	A	
2930909030	시스테인	6.5	A	
2930909040	시스틴	6.5	A	
2930909050	글루타티온	6.5	A	
2930909060	8-클로로-6-토시록틴산에틸에스테르	6.5	A	
2930909070	하나의 인(燐)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화합물	6.5	A	
2930909080	디티오키르본산염(크산틴산염)	6.5	A	
2930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0909099	기타	6.5	A	
2931100000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6.5	A	
2931200000	트리부틸틴 화합물	6.5	A	
2931310000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A	
2931320000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6.5	A	
2931330000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A	
2931340000	3-(트리하이드록시시릴)프로필 메틸포스포네이트 나트륨	6.5	A	
2931350000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포피네인 2,4,6-트리옥사이드	6.5	A	

2931360000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A	
2931370000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A	
2931380000	메틸포스포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6.5	A	
2931390000	기타	6.5	A	
2931901010	2-클로로비닐 디클로로아르신	6.5	A	
2931901020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6.5	A	
2931901030	트리스(2-클로로비닐) 아르신	6.5	A	
2931901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 정한다)	2	A	
2931901099	기타	6.5	A	
2931902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 미노)에틸] 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이들의 알킬 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A	
2931902200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A	
2931902300	오-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A	
29319024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 루오리데이트	6.5	A	
29319025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 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6.5	A	
2931902913	디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A	
2931902914	디메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A	
2931902915	기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 로 한정한다)로 한정한다]	2	A	
2931902919	기타	6.5	A	
29319029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 정한다)	2	A	

2931902999	기타	6.5	A	
293190301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	6.5	A	
2931903090	기타	6.5	A	
293190403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A	
2931904090	기타	6.5	A	
2931909010	디부틸 틴 옥사이드	6.5	A	
2931909020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6.5	A	
293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1909099	기타	6.5	A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6.5	A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5	A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6.5	A	
293213200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6.5	A	
2932140000	수크랄로스	6.5	A	
2932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2199000	기타	6.5	A	
2932201010	쿠마린	5	A	
2932201020	메틸쿠마린	5	A	
2932201030	에틸쿠마린	5	A	
2932209010	노 나락톤	5	A	
2932209020	운데카락톤	5	A	
2932209030	부티로락톤	5	A	
2932209040	산토닌	5	A	
2932209050	페놀프탈레인	5	A	
2932209060	글루쿠로노락톤	5	A	
2932209070	탈수소초산과 그 염	5	A	
2932209080	아세틸케텐(디케텐)	5	A	
29322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2209099	기타	5	A	
2932910000	이소사프롤	6.5	A	
29329200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5	A	
2932930000	피페로날	6.5	A	
2932940000	사프롤	6.5	A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5	A	
2932991000	디옥산	6.5	A	
2932992000	벤조푸란(쿠마론)	6.5	A	
2932993000	시네올	5.5	A	
2932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2999090	기타	6.5	A	
2933111000	메틸렌비스(1-페닐-2,3-디메틸-4-메틸아미노피라조론-5)	6.5	A	
2933119010	페나존(안티피린)	6.5	A	
2933119030	설피린	6.5	A	
2933119040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6.5	A	
293311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3119099	기타	6.5	A	
2933191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6.5	A	
2933199010	페닐부타존	6.5	A	
2933199020	피라졸레이트	6.5	A	
29331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3199099	기타	6.5	A	
2933211000	히단토인	6.5	A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6.5	A	
2933291000	리시딘	6.5	A	
2933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3299090	기타	6.5	A	
2933311000	피리딘	6.5	A	

2933312000	피리딘의 염	6.5	A	
2933321000	피페리딘	6.5	A	
2933329000	피페리딘의 염	6.5	A	
2933330000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일(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파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6.5	A	
2933391000	이소니코틴산 히드라지드	6.5	A	
2933393000	3-하이드록시-1-메틸피페리딘	6.5	A	
2933394000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6.5	A	
2933395000	퀴뉴클리딘-3-올	6.5	A	
2933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3399090	기타	6.5	A	
2933410000	레보파놀(INN)과 그 염	6.5	A	
2933491000	피비니움파모에이트	6.5	A	
29334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3499090	기타	6.5	A	
29335200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6.5	A	
2933530000	아로바르비탈(INN) · 아모바르비탈(INN) · 바르비탈(INN) · 부탈비탈(INN) · 부토바르비탈(INN) · 싸이클로바르비탈(INN) · 메틸페노바르비탈(INN) · 펜토바르비탈(INN) · 페노바르비탈(INN) · 섹부타바르비탈(INN) · 세코바르비탈(INN) · 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6.5	A	
2933540000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6.5	A	
2933550000	로프라졸람(INN) · 메크로과론(INN) · 메타과론(INN) · 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6.5	A	
2933591100	5-플루오르우라실	6.5	A	

2933591910	피리미딘	6.5	A	
29335919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3591999	기타	6.5	A	
2933592010	피페라진	6.5	A	
2933592020	시트르산 피페라진	6.5	A	
2933592040	1-아미노-4-메틸피페라진	6.5	A	
2933592090	기타	6.5	A	
2933610000	멜라민	6.5	A	
2933691000	염화시아눌	3	A	
2933692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	6.5	A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6.5	A	
29336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3699099	기타	6.5	A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3	A	
2933720000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6.5	A	
2933791000	이사틴	6.5	A	
2933792000	2- 히드록시퀴놀린	6.5	A	
2933793000	1-비닐-2-피롤리돈	6.5	A	
2933799000	기타	6.5	A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 · 카마제팜(INN) ·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 클로나제팜(INN) · 클로라제페이트 · 델로라제팜(INN) · 디아제팜(INN) · 에스타졸람(INN) ·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 플르디아제팜(INN) · 플루니트라제팜(INN) · 플루라제팜(INN) · 할라제팜(INN) · 로라제팜(INN) · 로르메타제팜(INN) · 마진돌(INN) · 메다제팜(INN) · 미다졸람(INN) · 니메타제팜(INN) · 니트라제팜(INN) · 놀다제팜(INN) · 옥사제팜(INN) · 피나제팜(INN) · 프라제팜(INN) · 피로발레톤(INN) · 테마제팜(INN) · 테트라제팜(INN) · 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6.5	A	

2933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3929000	기타	6.5	A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6.5	A	
2933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3999090	기타	6.5	A	
2934101000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	6.5	A	
29341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4109090	기타	6.5	A	
2934201000	벤조티아졸	6.5	A	
2934202000	머캐프토 벤조티아졸	6.5	A	
2934203000	디벤조티아졸린 디술파이드	6.5	A	
2934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4209090	기타	6.5	A	
2934301000	페노티아진(티오디페닐아민)	6.5	A	
2934309000	기타	6.5	A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 · 브로티졸람(INN) · 클로티아제팜(INN) · 클록사졸람(INN) · 텍스트로모라마이드(INN) · 할록사졸람(INN) · 케타졸람(INN) · 메소카브(INN) · 옥사졸람(INN) · 페몰린(INN) · 펜디메트라진(INN) · 펜메트라진(INN) · 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6.5	A	
2934991000	모르포린	6.5	A	
2934992000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6.5	A	
2934993000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6.5	A	
2934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4999090	기타	6.5	A	
2935100000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A	
2935200000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A	

2935300000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A	
2935400000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A	
2935500000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A	
2935901000	2-아미노-엔-에틸벤젠 술폰아닐리드	6.5	A	
2935902000	술파메톡사졸	6.5	A	
2935903010	술파티아졸	6.5	A	
2935903090	기타	6.5	A	
29359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5909090	기타	6.5	A	
2936210000	비타민 A와 이들의 유도체	6.5	A	
2936220000	비타민 B1과 이들의 유도체	6.5	A	
2936230000	비타민 B2와 이들의 유도체	6.5	A	
293624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6.5	A	
2936250000	비타민 B6와 이들의 유도체	6.5	A	
2936260000	비타민 B12와 이들의 유도체	6.5	A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6.5	A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6.5	A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6.5	A	
2936279000	기타	6.5	A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6.5	A	
2936289000	기타	6.5	A	
2936291010	비타민 B9	6.5	A	
2936291090	기타	6.5	A	
2936292000	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	6.5	A	
2936293000	비타민 H와 이들의 유도체	6.5	A	
2936294000	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	6.5	A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6.5	A	
2936299000	기타	6.5	A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A	
2936909000	기타	6.5	A	

2937111000	소호 제2933.9호나 제2934.9호의 것	6.5	A	
2937119000	기타	0	A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0	A	
293719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6.5	A	
2937199000	기타	0	A	
2937211000	코르티손	0	A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0	A	
2937213000	프레드니손	0	A	
2937214000	프레드니손	0	A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A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0	A	
2937292000	소호 제2914.50호의 것	5.5	A	
2937299000	기타	0	A	
2937501000	소호 제2918.17호, 제2918.19호, 제2918.9호의 것	6.5	A	
2937502000	소호 제2934.9호의 것	6.5	A	
2937509000	기타	0	A	
293790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6.5	A	
2937902100	에피네프린	0	A	
2937902910	소호 제2922.50호의 것	6.5	A	
2937902990	기타	0	A	
2937903000	아미노산 유도체	0	A	
2937909000	기타	0	A	
2938101000	루토시드(루틴)	6.5	A	
2938102000	루토시드의 유도체	6.5	A	
2938901000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6.5	A	
293890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6.5	A	
2938903000	사포닌	6.5	A	
2938904000	스테비오사이드	6.5	A	
2938909000	기타	6.5	A	
2939111000	모르핀	0	A	
2939112000	에틸모르핀	0	A	
2939113000	코데인	0	A	

2939114000	양귀비 줄기 농축물(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2939119000	기타	0	A	
2939190000	기타	0	A	
2939200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0	A	
2939411000	에페드린	0	A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0	A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0	A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0	A	
2939430000	캐친(INN)과 그 염	0	A	
2939440000	놀에페드린과 그 염	0	A	
2939490000	기타	0	A	
29395100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A	
2939590000	기타	0	A	
2939611000	엘고메트린(INN)	0	A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0	A	
2939621000	엘고타민(INN)	0	A	
2939629000	엘고타민(INN)의 염	0	A	
2939631000	리세르그산	0	A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0	A	
2939690000	기타	0	A	
2939710000	코카인 · 엑고닌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0	A	
2939791000	니코틴과 그 염	0	A	
2939799000	기타	0	A	
29398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39801090	기타	6.5	A	
2939802000	히스트리노코톡신, 테트로도톡신	0	A	
2939809000	기타	6.5	A	

2940001010	갈락토오스	6.5	A	
2940001020	소르보오스	6.5	A	
2940001030	키실로오스	6.5	A	
2940001090	기타	6.5	A	
2940002010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6.5	A	
2940002090	기타	6.5	A	
2941101000	페니실린 지(G) 칼륨	6.5	A	
2941109010	페니실린 지(G) 나트륨	6.5	A	
2941109020	페니실린 브이(V)	6.5	A	
2941109090	기타	6.5	A	
29412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41209000	기타	6.5	A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A	
2941302000	염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6.5	A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A	
2941309000	기타	6.5	A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6.5	A	
2941501000	에리트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6.5	A	
2941509000	기타	6.5	A	
2941902000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틸-6-메틸렌-5-옥시테트라 사이클린-파라톨루엔술포네이트	6.5	A	
2941909010	황산 카나마이신	6.5	A	
2941909020	레더마이신	6.5	A	
2941909030	황산 겐타마이신	6.5	A	
2941909040	류코마이신	6.5	A	
294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2941909099	기타	6.5	A	
2942001000	케텐	6.5	A	
2942009010	아세트 아비산 동	6.5	A	
2942009090	기타	6.5	A	

3001201000	선(腺) 추출물	0	A	
3001202000	간장 추출물	0	A	
3001203000	담낭 추출물	0	A	
3001204000	췌장 추출물	0	A	
3001205000	위장 추출물	0	A	
3001209000	기타	0	A	
3001901010	인체의 것	0	A	
3001901090	기타	0	A	
3001902010	웅담	0	A	
3001902090	기타	0	A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0	A	
3001909020	인체의 것	0	A	
3001909090	기타	0	A	
3002110000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0	A	
300212100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0	A	
3002129010	면역혈청	0	A	
3002129021	헤모글로빈	0	A	
3002129022	글로불린(globulin)	0	A	
3002129030	트롬빈(thrombin)과 프로트롬비나제(prothrombinase)	0	A	
3002129040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0	A	
3002129090	기타	0	A	
3002131000	소호 제2925.29호, 제2933.29호, 제2934.99호, 제2937.90.1000호, 제3002.90.3010호, 제3907.20호의 것[농약 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6.5	A	
3002139000	기타	0	A	
3002141000	소호 제2925.29호, 제2933.29호, 제2934.99호, 제2937.90.1000호, 제3002.90.3010호, 제3907.20호의 것[농약 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6.5	A	
3002149000	기타	0	A	

3002150000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0	A	
3002191000	소호 제2925.29호, 제2933.29호, 제2934.99호, 제2937.90.1000호, 제3002.90.3010호, 제3907.20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6.5	A	
3002199000	기타	0	A	
300220000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0	A	
3002301000	구제역 백신	0	A	
3002309000	기타	0	A	
3002901000	사람의 피	0	A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3002903010	색시톡신(saxitoxin)	6.5	A	
3002903020	리신(ricin)	8	A	
3002903090	기타	0	A	
3002904000	미생물 배양체	0	A	
3002905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0	A	
3002906000	살균소	0	A	
3002907000	제2933.29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6.5	A	
3002908000	소호 제3002.12.1000호, 제3002.12.9021호, 제3002.12.9022호, 3002.12.9030호의 것	0	A	
3002909000	기타	0	A	
3003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을 함유하는 것	8	A	
3003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A	
3003201000	항결핵제와 항암제	8	A	
3003209000	기타	8	A	
3003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A	
3003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A	
3003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A	

3003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8	A	
3003397000	남성 호르몬제제	8	A	
3003398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8	A	
3003399000	기타	8	A	
3003410000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A	
3003420000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A	
3003430000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A	
3003491000	항암제	8	A	
3003499000	기타	8	A	
300360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8	A	
30039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 항암제	8	A	
3003909100	아스피린제제	8	A	
3003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A	
3003909300	비타민제제	8	A	
3003909400	녹용제제	8	A	
3003909500	인삼제제	8	A	
3003909900	기타	8	A	
3004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을 함유하는 것	8	A	
3004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A	
30042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 항암제	8	A	
3004209100	클로람페니콜제제	8	A	
30042092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8	A	
3004209300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제제	8	A	
3004209400	카나마이신제제	8	A	
3004209900	기타	8	A	
3004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A	
30043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8	A	
3004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A	
3004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A	

3004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8	A	
3004393000	갑상샘과 부갑상샘 호르몬제제	8	A	
3004394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8	A	
3004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8	A	
3004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8	A	
3004397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8	A	
3004399000	기타	8	A	
3004410000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A	
3004420000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A	
3004430000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A	
3004491000	항암제	8	A	
3004492010	코카인제제	8	A	
3004492020	맥각알칼로이드제제	8	A	
3004492030	니코틴제제	8	A	
3004493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A	
3004499000	기타	8	A	
3004501000	비타민 A제제	8	A	
3004502010	비타민 B1제제	8	A	
3004502090	기타	8	A	
3004503000	비타민 C제제	8	A	
3004504000	비타민 D제제	8	A	
3004505000	비타민 E제제	8	A	
3004506000	비타민 H제제	8	A	
3004507000	비타민 K제제	8	A	
3004509000	기타	8	A	
300460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향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8	A	
30049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 항암제	8	A	
3004909100	아스피린제제	8	A	
3004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A	
3004909300	녹용제제	8	A	
3004909400	인삼제제	8	A	

3004909500	로열젤리 제제	8	A	
3004909900	기타	8	A	
3005101000	반창고	0	A	
3005109000	기타	0	A	
3005901000	탈지면	0	A	
3005902000	거즈	0	A	
3005903000	붕대	0	A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0	A	
3005909000	기타	0	A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0	A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0	A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0	A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0	A	
3006104000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0	A	
3006105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A	
300610502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8	A	
3006105090	기타	0	A	
3006200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0	A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0	A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 투여용)	0	A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0	A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0	A	
3006403000	뼈 형성용 시멘트	0	A	
3006500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0	A	
3006600000	제2937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A	
300670000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6.5	A	
3006910000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6.5	A	
3006921010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0	A	

3006921090	기타	0	A	
300692201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0	A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0	A	
3006922031	색시톡신(saxitoxin)	6.5	A	
3006922032	리신(ricin)	8	A	
3006922090	기타	0	A	
3006923000	제3003호와 제3004호의 것	8	A	
3006924000	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	0	A	
3006925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6.5	A	
3101001010	구아노(guano)	6.5	A	
3101001090	기타	6.5	A	
3101002000	식물성 비료	6.5	A	
3101003000	동물성 ·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6.5	A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2	A	
3102109000	기타	6.5	A	
3102210000	황산암모늄	6.5	A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6.5	A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6.5	A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A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102501000	천연의 것	6.5	A	
3102509000	기타	6.5	A	
3102600000	질산칼슘 ·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6.5	A	
3102800000	요소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6.5	A	
3102909000	기타	6.5	A	

3103110000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6.5	A	
3103190000	기타	6.5	A	
3103901000	소성인산석회	6.5	A	
3103902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 이상으로 한정한다)	6.5	A	
3103903000	기타 인산석회	6.5	A	
3103904000	혼합 인산질비료	6.5	A	
3103909000	기타	6.5	A	
3104200000	염화칼륨	0	A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2 이하인 것	1	A	
3104309000	기타	6.5	A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1	A	
3104901090	기타	6.5	A	
3104909000	기타	1	A	
310510000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6.5	A	
3105200000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6.5	A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6.5	A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 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6.5	A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6.5	A	
3105590000	기타	6.5	A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6.5	A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6.5	A	
3105909000	기타	6.5	A	
3201100000	퀘브라초 추출물(quebracho extract)	6.5	A	
320120000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6.5	A	
3201901010	망그로브 추출물(extract)	6.5	A	

3201901020	미로보란 추출물(extract)	6.5	A	
3201901040	감비어 추출물(extract)	6.5	A	
3201901090	기타	6.5	A	
3201902000	탄닌산과 그 염	6.5	A	
3201903000	탄닌의 에테르나 에스테르	6.5	A	
3201904000	그 밖의 탄닌의 유도체	6.5	A	
3202101000	방향족 신탄스	6.5	A	
3202102000	염화 알킬술폰	6.5	A	
3202103000	수지성 유연제	6.5	A	
3202109000	기타	6.5	A	
3202901000	무기유연제	6.5	A	
3202902000	인조 탈회제	6.5	A	
3202909000	기타	6.5	A	
3203001100	천연 인디고(indigo)	6.5	A	
3203001910	로그우드(logwood)	6.5	A	
3203001930	엽록소	6.5	A	
3203001990	기타	6.5	A	
3203002010	코치니엘(cochineal)	6.5	A	
3203002030	세피아(sepia)	6.5	A	
3203002090	기타	6.5	A	
3203003000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A	
3204111000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press cake)으로 한정한다]	4	A	
3204119000	기타	8	A	
3204121000	산성염료와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204122000	매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204130000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204140000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204150000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204192000	래피드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204193000	황화염료 · 황화 건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A	
3204199000	기타	8	A	
320420000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	6.5	A	
320490101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5	A	
3204901090	기타	6.5	A	
3204909000	기타	6.5	A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색소	6.5	A	
3205009000	기타	6.5	A	
3206110000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6.5	A	
3206190000	기타	6.5	A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6.5	A	
3206411000	군청	6.5	A	
3206419000	기타	6.5	A	
3206421000	리도폰(lithopone)	6.5	A	
3206429000	기타	6.5	A	
3206491000	아연회	6.5	A	
3206492000	광물성 블랙	6.5	A	
3206493000	어스칼러(colored earth)	6.5	A	
3206494000	용해성 반다이케브라운	6.5	A	
3206495000	코발트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6.5	A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6.5	A	
3206499000	기타	6.5	A	
320650000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6.5	A	
3207100000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A	
3207201000	법랑과 유약	6.5	A	
3207202000	슬립	6.5	A	
3207209000	기타	6.5	A	

3207301000	금으로 만든 것	6.5	A	
3207302000	백금으로 만든 것	6.5	A	
3207303000	팔라듐으로 만든 것	6.5	A	
3207304000	은으로 만든 것	6.5	A	
3207309000	기타	6.5	A	
320740000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 플레이크 (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208101010	에나멜	6.5	A	
3208101090	기타	6.5	A	
320810200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20810300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A	
3208201011	에나멜	6.5	A	
3208201019	기타	6.5	A	
32082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2082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A	
3208202011	에나멜	6.5	A	
3208202019	기타	6.5	A	
3208202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208202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A	
3208901011	에나멜	6.5	A	
3208901019	기타	6.5	A	
32089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2089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A	
3208909011	에나멜	6.5	A	
3208909019	기타	6.5	A	
3208909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208909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A	
3209101011	에나멜	6.5	A	
3209101019	기타	6.5	A	
32091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6.5	A	
3209102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209901011	에나멜	6.5	A	
3209901019	기타	6.5	A	
32099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209909011	에나멜	6.5	A	
3209909019	기타	6.5	A	
3209909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A	
3210001011	에나멜	6.5	A	
3210001019	기타	6.5	A	
3210001091	에나멜	6.5	A	
3210001099	기타	6.5	A	
3210002010	오일 바니시(varnish)	6.5	A	
3210002020	락 · 천연 검이나 천연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 (varnish)와 래커(lacquer)	6.5	A	
3210002030	역청질 · 피치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 (varnish)	6.5	A	
3210002040	용제를 함유하지 않은 액상 바니시(varnish)	6.5	A	
3210003010	디스템퍼(distemper)	6.5	A	
3210003090	기타	6.5	A	
3211000000	조제 드라이어	6.5	A	
3212100000	스탬프용 박(箔)	6.5	A	
3212901000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6.5	A	
3212909000	기타	6.5	A	
3213101000	유성 물감	6.5	A	
3213102000	수성 물감	6.5	A	
3213109000	기타	6.5	A	
3213901000	유성 물감	6.5	A	
3213902000	수성 물감	6.5	A	
3213909000	기타	6.5	A	
321410106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6.5	A	
3214101090	기타	6.5	A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6.5	A	

3214109000	기타	6.5	A	
3214900000	기타	6.5	A	
3215110000	흑색	0	A	
3215190000	기타	0	A	
3215901000	필기용 잉크	6.5	A	
3215902000	제도용 잉크	6.5	A	
3215903000	복사용 잉크	6.5	A	
3215904010	유성	6.5	A	
3215904020	수성	6.5	A	
3215904030	유성 · 수성 겸용	6.5	A	
3215905000	금속성 잉크	6.5	A	
3215906010	유성	6.5	A	
3215906020	수성	6.5	A	
3215906030	유성 · 수성 겸용	6.5	A	
3215909000	기타	6.5	A	
3301120000	오렌지유	5	B	
3301130000	레몬유	5	B	
3301190000	기타	5	B	
33012400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5	B	
3301250000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5	B	
3301291000	바닐라유	5	B	
3301292000	시트로넬라유	5	B	
3301293000	신나몬바크유	5	B	
3301294000	신나몬리프유	5	B	
3301299000	기타	5	B	
3301300000	레지노이드(resinoid)	8	C	
3301901000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8	C	
3301902000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8	C	
3301903000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8	C	
3301904100	아편에서 추출한 것	8	C	

3301904200	감초에서 추출한 것	8	C	
3301904300	홉(hop)에서 추출한 것	30	F	
3301904400	제충국(除蟲菊)에서 추출한 것이나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	8	C	
3301904510	백삼에서 추출한 것	20	X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것	754.3	X	
3301904530	그 밖의 인삼에서 추출한 것	20	X	
3301904600	캐슈너트 쉼액(cashew nut shell liquid)에서 추출한 것	8	C	
3301904700	생칠(生漆)에서 추출한 것	8	C	
3301904800	기타	8	C	
3302101000	식품공업용	5	A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30	A	
3302102019	기타	8	A	
3302102090	기타	5	A	
3302900000	기타	6.5	A	
3303001000	향수	6.5	A	
3303002000	화장수	6.5	A	
3304101000	립스틱	6.5	A	
3304109000	기타	6.5	A	
3304201000	아이섀도	6.5	A	
3304209000	기타	6.5	A	
3304301000	네일에나멜	6.5	A	
3304309000	기타	6.5	A	
3304911000	페이스파우더	6.5	A	
3304912000	베이비파우더(탈쿰파우더를 포함한다)	6.5	A	
3304919000	기타	6.5	A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6.5	A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6.5	A	
3304993000	어린이용 제품류	6.5	A	
3304999000	기타	6.5	A	
3305100000	샴푸	5	A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5	A	
3305300000	헤어 래커(hair lacquer)	5	A	
3305901000	헤어린스	5	A	
3305902000	헤어크림	5	A	
3305909000	기타	5	A	
3306100000	치약	6.5	A	
3306201011	70텍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	8	A	
3306201019	기타	8	A	
3306201020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를 초과하는 것	8	A	
3306209000	기타	8	A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6.5	A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6.5	A	
330710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6.5	A	
3307109000	기타	6.5	A	
330720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6.5	A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6.5	A	
330730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6.5	A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6.5	A	
3307490000	기타	6.5	A	
3307901000	탈모제	6.5	A	
3307902000	향낭	6.5	A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6.5	A	
3307904000	마스크 팩	6.5	A	
3307909000	기타	6.5	A	
3401111000	약용비누	6.5	A	
3401119000	기타	6.5	A	
3401191010	세탁비누	6.5	A	
3401191090	기타	6.5	A	
340119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펄트(felt)와 부직포	6.5	A	

3401200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6.5	A	
340130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A	
3402110000	음이온성	8	A	
3402120000	양이온성	8	A	
340213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 정한다)	2	A	
3402139000	기타	8	A	
3402190000	기타	8	A	
3402201000	조제 세제	5	A	
3402202000	조제 청정제	6.5	A	
3402209000	기타	6.5	A	
3402901000	조제 계면활성제	6.5	A	
3402902000	조제 세제	5	A	
3402903000	조제 청정제	6.5	A	
34031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A	
34031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A	
3403119000	기타	6.5	A	
3403191000	조제 절삭유	6.5	A	
3403192000	볼트·너트 방출제	6.5	A	
3403193000	방청제나 부식방지제	6.5	A	
3403194000	이형(mold release) 조제품	6.5	A	
3403195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6.5	A	
3403199000	기타	6.5	A	
34039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A	
34039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A	
3403919000	기타	6.5	A	
3403991000	조제 절삭유	6.5	A	
3403992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6.5	A	
3403999000	기타	6.5	A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6.5	A	

3404901010	클로로 파라핀왁스	6.5	A	
3404901030	폴리알킬렌왁스	6.5	A	
3404901040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6.5	A	
3404901090	기타	6.5	A	
3404902000	조제 왁스	6.5	A	
34051000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A	
3405200000	목제가구 · 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A	
3405300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6.5	A	
34054000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 · 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6.5	A	
3405901010	초크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405901020	규조토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405901030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405901090	기타	6.5	A	
3405909000	기타	6.5	A	
340600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A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6.5	A	
3407002000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6.5	A	
3407003000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6.5	A	
3501101000	커피 크림 제조용	8	E	
3501109000	기타	20	E	
3501901110	커피 크림 제조용	8	E	
3501901190	기타	20	E	
3501901200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20	E	
3501902000	카세인 글루(casein glue)	20	E	
3502110000	건조한 것	8	E	
3502190000	기타	8	E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8	E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8	A	
3502909000	기타	8	A	

3503001010	젤라틴	8	C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8	C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isinglass)	8	C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	8	C	
3504001010	펩톤(peptone)	8	A	
3504001020	펩톤(peptone) 유도체	8	A	
3504002010	케라틴	8	A	
3504002020	핵산단백질	8	A	
3504002030	유리단백질	8	A	
3504002090	기타	8	A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	8	A	
3505101000	덱스트린	8	C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8	C	
3505103000	배소전분	385.7	X	
3505104010	식품용	385.7	X	
3505104090	기타	385.7	X	
3505105010	식품용	385.7	X	
3505105090	기타	385.7	X	
3505109010	식품용	385.7	X	
3505109090	기타	385.7	X	
3505201000	전분 글루(glue)	201.2	X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glue)	201.2	X	
3505209000	기타	201.2	X	
350610100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506109000	기타	6.5	A	
3506911000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 · 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3506919000	기타	6.5	A	
3506991000	비엔나 글루(glue)	6.5	A	
3506992000	화학처리한 천연검에서 얻은 글루(glue)	6.5	A	

3506993000	규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6.5	A	
3506999000	기타	6.5	A	
350710000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6.5	A	
3507901010	트립신	6.5	A	
3507901020	키모트립신	6.5	A	
3507901030	알파아밀라제	6.5	A	
3507901040	리파제	6.5	A	
3507901090	기타	6.5	A	
3507902000	펩신	6.5	A	
3507903000	맥아효소	6.5	A	
3507904010	파파인	6.5	A	
3507904020	브로멜라인	6.5	A	
3507904030	피신	6.5	A	
3507906010	아밀라제	6.5	A	
3507906020	프로테아제	6.5	A	
3507907000	펙틱효소	6.5	A	
3507909000	기타	6.5	A	
3601001000	흑색화약	6.5	A	
3601002000	무연화약	6.5	A	
360200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6.5	A	
3603001000	도화선	6.5	A	
3603002000	도폭선	6.5	A	
3603003000	뇌관	6.5	A	
3603004000	점화기	6.5	A	
3603005000	전기뇌관	6.5	A	
3604100000	불꽃제품	6.5	A	
3604901000	신호용 조명탄	6.5	A	
3604909000	기타	6.5	A	
3605001000	황린(黃磷) 성냥	6.5	A	
3605009000	기타	6.5	A	

360610000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6.5	A	
3606901010	메타 연료	6.5	A	
3606901020	헥사민	6.5	A	
3606901030	고체 알코올	6.5	A	
3606901090	기타	6.5	A	
3606902010	라이터 돌	6.5	A	
3606902090	기타	6.5	A	
3606909010	라이터 돌	6.5	A	
3606909090	기타	6.5	A	
3701100000	엑스선용	6.5	A	
370120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A	
3701301000	반도체 제조용	0	A	
3701309100	인쇄제판용	0	A	
3701309200	인쇄회로기판용	0	A	
3701309930	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blank mask)로 한정한다]	0	A	
3701309990	기타	0	A	
3701911000	반도체 제조용	6.5	A	
3701919100	인쇄제판용	6.5	A	
37019192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3701919900	기타	6.5	A	
3701991000	반도체 제조용	0	A	
3701999100	인쇄제판용	0	A	
3701999200	인쇄회로기판용	0	A	
3701999920	항공촬영용	0	A	
3701999990	기타	0	A	
3702100000	엑스선용	6.5	A	
3702311110	네거티브	6.5	A	
3702311120	포지티브	6.5	A	
3702311210	네거티브	6.5	A	
3702311220	포지티브	6.5	A	

3702311910	네거티브	6.5	A	
3702311920	포지티브	6.5	A	
3702312000	인쇄제판용	6.5	A	
370231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3702319000	기타	6.5	A	
3702321110	네거티브	6.5	A	
3702321120	포지티브	6.5	A	
3702321210	네거티브	6.5	A	
3702321220	포지티브	6.5	A	
3702321910	네거티브	6.5	A	
3702321920	포지티브	6.5	A	
3702322000	인쇄제판용	6.5	A	
37023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370232903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A	
3702329090	기타	6.5	A	
3702391110	네거티브	6.5	A	
3702391120	포지티브	6.5	A	
3702391210	네거티브	6.5	A	
3702391220	포지티브	6.5	A	
3702391910	네거티브	6.5	A	
3702391920	포지티브	6.5	A	
3702392000	인쇄제판용	6.5	A	
370239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3702399000	기타	6.5	A	
3702411000	영화필름	6.5	A	
3702419000	기타	6.5	A	
3702421000	영화필름	6.5	A	
3702422000	인쇄제판용	6.5	A	
37024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3702429000	기타	6.5	A	
3702431010	네거티브	6.5	A	
3702431020	포지티브	6.5	A	

3702432000	인쇄제판용	6.5	A	
370243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3702439000	기타	6.5	A	
3702441010	네거티브	6.5	A	
3702441020	포지티브	6.5	A	
3702442000	인쇄제판용	6.5	A	
370244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3702449020	항공촬영용	6.5	A	
3702449090	기타	6.5	A	
3702521010	네거티브	6.5	A	
3702521020	포지티브	6.5	A	
37025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3702529000	기타	6.5	A	
3702530000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6.5	A	
3702541010	네거티브	6.5	A	
3702541020	포지티브	6.5	A	
3702542000	인쇄제판용	6.5	A	
370254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3702549010	광전복음용	6.5	A	
3702549090	기타	6.5	A	
3702551010	네거티브	6.5	A	
3702551020	포지티브	6.5	A	
370255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3702559000	기타	6.5	A	
3702561010	네거티브	6.5	A	
3702561020	포지티브	6.5	A	
3702562000	인쇄제판용	6.5	A	
3702569000	기타	6.5	A	
3702961010	네거티브	6.5	A	
3702961020	포지티브	6.5	A	
370296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3702969000	기타	6.5	A	
3702971010	네거티브	6.5	A	
3702971020	포지티브	6.5	A	
370297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3702979010	광전녹음용	6.5	A	
3702979090	기타	6.5	A	
3702981010	네거티브	6.5	A	
3702981020	포지티브	6.5	A	
3702982000	인쇄제판용	6.5	A	
370298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A	
3702989000	기타	6.5	A	
3703101030	사진복사용	6.5	A	
3703101040	기록용	6.5	A	
3703101090	기타	6.5	A	
3703109030	사진복사용	6.5	A	
3703109090	기타	6.5	A	
3703201000	엑스선용	6.5	A	
3703203000	사진복사용	6.5	A	
3703204000	기록용	6.5	A	
3703209000	기타	6.5	A	
3703901000	엑스선용	6.5	A	
3703903000	사진복사용	6.5	A	
3703904000	기록용	6.5	A	
3703909000	기타	6.5	A	
3704001100	영화용	0	A	
3704001200	오프셋 복사용(엽서·그림엽서·카드·캘린더 제작용으로 한정한다)	0	A	
3704001300	반도체 제조용	0	A	
3704001900	기타	0	A	
3704002000	사진 인화지·판지·직물	6.5	A	
3705001010	엽서·그림엽서·카드와 캘린더 제작용	6.5	A	
3705001090	기타	0	A	

3705009010	반도체 제조용	0	A	
3705009090	기타	0	A	
37061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195원/m 또는 6.5	A	
3706102000	뉴스용	4원/m 또는 6.5	A	
3706103010	편집용 필름(rush)	26원/m 또는 6.5	A	
37061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468원/m 또는 6.5	A	
37061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78원/m 또는 6.5	A	
37061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품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26원/m 또는 6.5	A	
3706105010	네거티브	1,092원/m 또는 6.5	A	
3706105020	포지티브	182원/m 또는 6.5	A	
3706106010	네거티브	1,560원/m 또는 6.5	A	
3706106020	포지티브	260원/m 또는 6.5	A	
37069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9원/m 또는 6.5	A	
3706902000	뉴스용	5원/m 또는 6.5	A	
3706903010	편집용 필름(rush)	26원/m 또는 6.5	A	
37069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468원/m 또는 6.5	A	
37069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78원/m 또는 6.5	A	
37069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품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26원/m 또는 6.5	A	
3706905010	네거티브	25원/m 또는 6.5	A	
3706905020	포지티브	8원/m 또는 6.5	A	
3706906010	네거티브	1,092원/m 또는 6.5	A	
3706906020	포지티브	182원/m 또는 6.5	A	
3707100000	감광유제	6.5	A	
3707901010	반도체 제조용	0	A	
370790102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0	A	
3707901090	기타	0	A	
3707902100	천연색 사진용	0	A	
3707902910	엑스선용	0	A	

3707902920	인쇄제판용	0	A	
3707902990	기타	0	A	
3707903100	천연색 사진용	0	A	
3707903910	엑스선용	0	A	
3707903920	인쇄제판용	0	A	
3707903990	기타	0	A	
3707909100	증도제와 감도제	0	A	
3707909200	조색제	0	A	
3707909300	세정제	0	A	
3707909400	섬광재료	0	A	
3707909900	기타	0	A	
3801101000	이차전지 제조용	4	A	
3801109000	기타	6.5	A	
380120000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6.5	A	
3801300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6.5	A	
3801900000	기타	6.5	A	
3802100000	활성탄	6.5	A	
3802901010	활성 규조토	6.5	A	
3802901020	활성토	6.5	A	
3802901090	기타	6.5	A	
3802902000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6.5	A	
380300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A	
3804001000	액체 상태인 것	6.5	A	
3804009000	기타	6.5	A	
3805101000	검테레빈유	6.5	A	
3805102000	우드테레빈유	6.5	A	
3805103000	황산테레빈유	6.5	A	
3805900000	기타	6.5	A	
3806101000	로진(rosin)	6.5	C	
3806102000	수지산	6.5	A	
3806201000	로진염	6.5	A	

3806202000	수지산염	6.5	A	
3806209000	기타	6.5	A	
3806300000	에스테르 검(ester gum)	6.5	A	
3806903000	로진스피릿과 로진유	6.5	A	
3806909000	기타	6.5	A	
3807001000	목(木)타르 · 목(木)타르유 ·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6.5	A	
3807002000	목(木)나프타	6.5	A	
3807003000	식물성 피치(pitch)	6.5	A	
3807009010	목초액	6.5	C	
3807009090	기타	6.5	A	
3808520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6.5	A	
38085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808599000	기타	6.5	A	
38086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808619000	기타	6.5	A	
38086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808629000	기타	6.5	A	
38086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808699000	기타	6.5	A	
38089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808919000	기타	6.5	A	
3808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808929000	기타	6.5	A	
3808931000	제초제	6.5	A	
3808932000	발아억제제	6.5	A	

3808933000	식물성장조절제	6.5	A	
3808940000	소독제	6.5	A	
3808991000	살서제(취약)	6.5	A	
3808999000	기타	6.5	A	
380910000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C	
3809910000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A	
3809920000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A	
38099300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A	
38101010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6.5	A	
3810109000	기타	6.5	A	
3810901000	납불임·땀질이나 용접용의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6.5	A	
3810909000	기타	6.5	A	
3811110000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811190000	기타	6.5	A	
3811210000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5	A	
3811290000	기타	5	A	
3811900000	기타	6.5	A	
38121010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812102000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812103000	티우람 숄파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812104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812105000	머캅토프토 벤조티아졸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812106000	디벤조티아질 디숄파이드(DM)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A	
3812109000	기타	6.5	A	
3812200000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6.5	A	
3812310000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6.5	A	
3812391000	산화방지 조제품	6.5	A	
3812392000	그 밖의 복합안정제	6.5	A	
3813001000	소화기용 조제품	6.5	A	
3813002000	소화기용 장전물	6.5	A	
3813003000	장전된 소화탄	6.5	A	

3814001010	아세톤 · 초산메틸과 메틸알코올 혼합물	6.5	A	
3814001020	초산에틸 · 부틸알코올과 톨루엔 혼합물	6.5	A	
3814001090	기타	6.5	A	
3814002110	반도체 제조용	6.5	A	
3814002190	기타	6.5	A	
3814002900	기타	6.5	A	
3815110000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6.5	A	
3815121000	백금이나 백금화합물의 것	6.5	A	
3815122000	팔라듐이나 팔라듐화합물의 것	6.5	A	
3815129000	기타	6.5	A	
3815191000	활성물질로서 철이나 철화합물의 것	6.5	A	
3815192000	티타늄이나 티타늄화합물의 것	6.5	A	
3815199000	기타	6.5	A	
3815901000	반응시작제	6.5	A	
3815909000	기타	6.5	A	
3816001000	내화시멘트	6.5	A	
3816002000	내화모르타르	6.5	A	
3816003000	내화콘크리트	6.5	A	
3816009000	기타	6.5	A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 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A	
3818001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	0	A	
3818002010	태양전지 제조용 웨이퍼	0	A	
3818002090	기타	0	A	
3819001000	유압제동액	6.5	A	
3819002000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6.5	A	
3820001000	부동(不凍) 조제품	6.5	A	
3820002000	조제 제빙액	6.5	A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식물 · 인간 ·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6.5	A	
3822001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A	

3822001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A	
382200101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 웹(web)[제 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3822001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A	
3822001019	기타	0	A	
3822001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3822001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6.5	A	
3822001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5	A	
3822001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 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3822001099	기타	8	A	
3822002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A	
3822002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A	
382200201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 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3822002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A	
3822002019	기타	0	A	
382200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3822002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6.5	A	
3822002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5	A	
3822002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 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3822002099	기타	8	A	
3822003041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0	A	
3822003042	이 표에서 세율이 1퍼센트인 것	1	A	

3822003043	이 표에서 세율이 2퍼센트인 것	2	A	
3822003044	이 표에서 세율이 3퍼센트인 것	3	A	
3822003045	이 표에서 세율이 4퍼센트인 것	4	A	
3822003046	이 표에서 세율이 5퍼센트인 것	5	A	
3822003047	이 표에서 세율이 5.4퍼센트인 것	5.4	A	
3822003048	이 표에서 세율이 6.5퍼센트인 것	6.5	A	
3822003049	이 표에서 세율이 7퍼센트인 것	7	A	
3822003050	이 표에서 세율이 8퍼센트인 것	8	A	
3822003051	이 표에서 세율이 10퍼센트인 것	10	A	
3822003052	이 표에서 세율이 20퍼센트인 것	20	A	
3822003053	이 표에서 세율이 27퍼센트인 것	27	A	
3822003054	이 표에서 세율이 30퍼센트인 것	30	A	
3822003055	이 표에서 세율이 36퍼센트인 것	36	A	
3822003056	이 표에서 세율이 40퍼센트인 것	40	A	
3822003057	이 표에서 세율이 50퍼센트인 것	50	A	
3822003058	제3706.10.1000호, 제3706.10.5020호, 제3706.90.6020호의 것	182원/m 또는 6.5	A	
3822003059	제3706.10.2000호, 제3706.90.2000호의 것	4원/m 또는 6.5	A	
3822003060	제3706.10.3010호, 제3706.10.4000호, 제3706.90.3010호, 제3706.90.4000호의 것	26원/m 또는 6.5	A	
3822003061	제3706.10.3020호, 제3706.90.3020호의 것	468원/m 또는 6.5	A	
3822003062	제3706.10.3030호, 제3706.90.3030호의 것	78원/m 또는 6.5	A	
3822003063	제3706.10.5010호, 제3706.90.6010호의 것	1,092원/m 또는 6.5	A	
3822003064	제3706.10.6010호의 것	1,560원/m 또는 6.5	A	
3822003065	제3706.10.6020호의 것	260원/m 또는 6.5	A	
3822003066	제3706.90.1000호, 제3706.90.5020호의 것	8원/m 또는 6.5	A	
3822003067	제3706.90.5010호의 것	25원/m 또는 6.5	A	
3823110000	스테아린산	8	A	
3823120000	올레인산	8	A	
3823130000	톨유(tall oil) 지방산	8	A	
3823191000	팔미틴산	8	A	
3823192000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8	A	

3823199000	기타	8	A	
3823701000	세틸 알코올	5	A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5	A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5	A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3	A	
38237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823709090	기타	5	A	
3824100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6.5	A	
382430000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824400000	시멘트용 · 모르타르용 ·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6.5	A	
3824500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5	A	
382460000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	C	
38247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본 재료로 한 세정제	6.5	A	
3824719000	기타	6.5	A	
382472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6.5	A	
38247300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6.5	A	
38247400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82475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5	A	
382476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5	A	
3824770000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6.5	A	
3824780000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6.5	A	
3824790000	기타	6.5	A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5	A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 (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6.5	A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5	A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독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선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6.5	A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6.5	A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6.5	A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폰일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6.5	A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6.5	A	
3824910000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6.5	A	
3824991000	크롬광 배소물	5	A	
3824992100	진공관의 게터(getter)	6.5	A	
38249922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A	
3824992290	기타	6.5	A	
3824992900	기타	6.5	A	
3824993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 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6.5	A	

3824993910	하나의 인(燐)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화합품으로 주로 구성된 그 밖의 혼합물	6.5	A	
3824993990	기타	6.5	A	
3824994100	혼합 폴리에틸렌글리콜	6.5	A	
3824994200	이온교환체	6.5	A	
3824994300	스케일방지제	6.5	A	
3824994400	바니시(varnish)경화제나 글루(glue)의 경화제	6.5	A	
3824995100	잉크제거제	6.5	A	
3824995200	등사판원지 수정제	6.5	A	
3824995300	수정액	6.5	A	
3824996100	페인트용 혼합증량제	6.5	A	
3824996200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6.5	A	
3824996300	소다석회	6.5	A	
3824996400	수화실리카겔	6.5	A	
3824996500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6.5	A	
3824996600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6.5	A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6.5	A	
3824997200	염화파라핀	6.5	A	
3824997300	소포제	6.5	A	
3824997400	발포제	6.5	A	
3824997500	조제 탄산칼슘	6.5	A	
3824997600	액정용 조제품	6.5	A	
3824997700	암모니아성 가스액	6.5	A	
3824998000	조제유기과산화물(제3815호의 물품과 제3824.99.440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A	
3824999010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A	
3824999020	추잉껌 베이스	6.5	A	
3824999030	나프텐산과 이들의 수불용성염과 이들의 에스테르	6.5	A	
3824999041	니코틴을 함유한 것	6.5	A	
3824999049	기타	6.5	A	

3824999090	기타	6.5	A	
3825100000	생활폐기물	6.5	A	
3825200000	하수 찌꺼기	6.5	A	
3825301000	제3005호의 것	0	A	
3825302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6.5	A	
3825303000	소호 제4015.11호의 것	8	A	
3825304000	소호 제9018.3호의 것	8	A	
3825410000	할로젠을 함유하는 것	6.5	A	
3825490000	기타	6.5	A	
3825500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6.5	A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6.5	A	
3825690000	기타	6.5	A	
3825900000	기타	6.5	A	
38260000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90110100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6.5	A	
3901109000	기타	6.5	A	
3901201000	펄프의 것	6.5	A	
3901209000	기타	6.5	A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6.5	A	
390140000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6.5	A	
3901900000	기타	6.5	A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6.5	A	
3902200000	폴리이소부틸렌	6.5	A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6.5	A	
3902900000	기타	6.5	A	
3903110000	발포성의 것	6.5	A	
3903190000	기타	6.5	A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6.5	A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6.5	A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6.5	A	
3903909000	기타	6.5	A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6.5	A	
3904220000	가소화한 것	6.5	A	
3904300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6.5	A	
390440000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6.5	A	
3904500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6.5	A	
39046100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6.5	A	
3904690000	기타	6.5	A	
3904900000	기타	6.5	A	
3905120000	물에 분산된 것	6.5	A	
3905190000	기타	6.5	A	
3905210000	물에 분산된 것	6.5	A	
3905290000	기타	6.5	A	
3905300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A	
3905910000	공중합체(共重合體)	6.5	A	
3905990000	기타	6.5	A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6.5	A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8	A	
3906909000	기타	8	A	
3907100000	폴리아세탈수지	6.5	A	
3907201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6.5	A	
390720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6.5	A	
390720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6.5	A	
3907209000	기타	6.5	A	
3907301000	반도체 제조용	6.5	A	
3907309000	기타	6.5	A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6.5	A	

3907500000	알키드수지	6.5	A	
3907610000	점도번호가 그램당 78 밀리리터 이상인 것	6.5	A	
3907690000	기타	6.5	A	
3907700000	폴리(락트산)	6.5	A	
3907910000	불포화의 것	6.5	A	
390799100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A	
3907992000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	0	A	
3907999000	기타	6.5	A	
3908101000	폴리아미드 -6	6.5	A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6.5	A	
3908103000	폴리아미드 -11, -12, -6,9, -6,10 또는 -6,12	6.5	A	
3908900000	기타	6.5	A	
3909101000	요소수지	6.5	A	
3909102000	티오요소수지	6.5	A	
3909200000	멜라민수지	6.5	A	
3909310000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6.5	A	
3909390000	기타	6.5	A	
3909400000	페놀수지	6.5	A	
3909500000	폴리우레탄	6.5	A	
3910001000	반도체 제조용	6.5	A	
3910009010	실리콘오일	6.5	A	
3910009020	실리콘고무	6.5	A	
3910009090	기타	6.5	A	
3911101000	석유수지	8	A	
3911102000	쿠마론 · 인덴이나 쿠마론-인덴수지	8	A	
3911103000	폴리테르펜	8	A	
3911901000	폴리술파이드	6.5	A	
3911902000	폴리술폰	6.5	A	
3911903000	푸란수지	6.5	A	
3911909000	기타	6.5	A	
39121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5	A	

3912120000	가소화한 것	5	A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6.5	A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6.5	A	
3912319000	기타	6.5	A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6.5	A	
3912399000	기타	6.5	A	
3912901000	재생 셀룰로오스	6.5	A	
3912909000	기타	6.5	A	
3913101000	알긴산 나트륨	6.5	A	
3913102000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6.5	A	
3913109000	기타	6.5	A	
3913901000	경화단백질	6.5	A	
3913902010	염화고무	6.5	A	
3913902040	환화고무	6.5	A	
3913902090	기타	6.5	A	
3913909010	덱스트란	6.5	A	
3913909090	기타	6.5	A	
3914001000	양이온성의 것	6.5	A	
3914009000	기타	6.5	A	
3915101000	제조 당시 필름 · 시트(sheet) · 판 · 박(箔) 상태의 것	6.5	A	
3915102000	제조 당시 파이프 · 호스 상태의 것	6.5	A	
3915109000	기타	6.5	A	
39152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53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5901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5902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5903000	폴리아세탈수지로 만든 것	6.5	A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A	
3915905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A	
3915909000	기타	6.5	A	
3916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62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690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6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6903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6904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A	
3916909000	기타	6.5	A	
3917101000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6.5	A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로 만든 것	6.5	A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723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729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7292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A	
3917299000	기타	6.5	A	
391731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7319000	기타	6.5	A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7329000	기타	6.5	A	
391733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733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7339000	기타	6.5	A	
391739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739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7399000	기타	6.5	A	
3917400000	연결구류	6.5	A	
391810100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6.5	A	
391810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18109000	기타	6.5	A	
391890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A	
3919100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6.5	A	
3919900000	기타	6.5	A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20430000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6.5	A	
3920490000	기타	6.5	A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6.5	A	
3920590000	기타	6.5	A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A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A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A	
3920690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A	
392071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A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A	
39207910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A	
3920799000	기타	6.5	A	
392091000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A	
3920920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A	
392093000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A	
392094000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A	
3920991000	항공기용	6.5	A	
3920999010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A	
3920999090	기타	6.5	A	
3921110000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2112000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211300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6.5	A	
392114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A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A	
3921191090	기타	6.5	A	
3921192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A	
3921192090	기타	6.5	A	
3921193010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로 만든 것	6.5	A	

3921193090	기타	6.5	A	
3921194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A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A	
392119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A	
3921194090	기타	6.5	A	
392119501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6.5	A	
392119502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A	
3921195090	기타	6.5	A	
392119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A	
392119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A	
392119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A	
392119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A	
3921199090	기타	6.5	A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21904010	경질의 것	6.5	A	
3921904020	연질의 것	6.5	A	
392190501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6.5	A	
3921905090	기타	6.5	A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A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A	
392190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A	
3921906090	기타	6.5	A	
392190701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A	
392190702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6.5	A	
392190703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A	
3921907090	기타	6.5	A	
392190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A	
392190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A	
392190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A	
392190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A	

392190905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6.5	A	
3921909090	기타	6.5	A	
3922101000	목욕통과 샤워통	6.5	A	
3922102000	세면대	6.5	A	
3922103000	설거지통	6.5	A	
392220000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6.5	A	
3922901000	비데	6.5	A	
3922909000	기타	6.5	A	
3923100000	상자 · 케이스 ·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A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6.5	A	
392329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A	
3923300000	카보이(carboy) · 병 · 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A	
3923400000	스풀(spool) · 콕(cop) · 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6.5	A	
3923500000	뚜껑 · 마개 ·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6.5	A	
3923900000	기타	6.5	A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5	A	
3924901000	비누접시와 통	6.5	A	
3924902000	탁상보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6.5	A	
3924909000	기타	6.5	A	
3925100000	저장기 · 탱크 · 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A	
3925200000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6.5	A	
3925300000	셔터 ·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6.5	A	
3925900000	기타	6.5	A	
3926101000	필통과 지우개	6.5	A	
3926102000	바인더	6.5	A	
3926109000	기타	6.5	A	
39262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6.5	A	
3926300000	가구 · 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6.5	A	
3926400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6.5	A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6.5	A	

3926902000	부채 · 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살 · 자루(살 ·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6.5	A	
3926903000	레이블과 태그	6.5	A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6.5	A	
3926905000	그림틀 · 사진틀 · 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	6.5	A	
3926906000	앨범	6.5	A	
3926909000	기타	6.5	A	
4001100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 지에 상관없다]	0	A	
4001210000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0	A	
40012200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A	
4001290000	기타	0	A	
4001301000	치클검(chicle gum)	2	A	
4001309000	기타	2	A	
4002110000	라텍스	8	A	
4002190000	기타	8	A	
4002201000	라텍스	8	A	
4002209000	기타	8	A	
4002311000	라텍스	5	A	
4002319000	기타	5	A	
4002391000	라텍스	5	A	
4002399010	염화부틸고무(CIIR)의 것	5	A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5	A	
4002410000	라텍스	8	A	
4002490000	기타	8	A	
4002510000	라텍스	8	A	
4002590000	기타	8	A	
4002601000	라텍스	8	A	
4002609000	기타	8	A	
4002701000	라텍스	8	A	
4002709000	기타	8	A	
4002801000	라텍스	8	A	

4002809000	기타	8	A	
4002910000	라텍스	8	A	
4002991000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XNBR)의 것	8	A	
4002992000	아크릴로니트릴 이소프렌고무(NIR)의 것	8	A	
4002993000	티오플라스트(TM)	8	A	
4002999000	기타	8	A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A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 · 스크랩(scrap)[경 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3	A	
4005101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8	A	
4005109000	기타	8	A	
400520000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8	A	
4005910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8	A	
4005991000	배합고무 라텍스	8	A	
4005999000	기타	8	A	
400610000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8	A	
4006901000	고무막대(rod)	8	A	
4006902000	고무관	8	A	
4006903000	고무형재(形材)	8	A	
4006904000	고무디스크 · 링 · 와셔	8	A	
4006905000	고무실	8	A	
4006909000	기타	8	A	
4007001000	고무실	5	A	
4007002000	고무끈	8	A	
40081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A	
4008119000	기타	8	A	
40081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A	
4008199000	기타	8	A	
400821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A	
4008219000	기타	8	A	

400829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A	
4008299000	기타	8	A	
40091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A	
40091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A	
40092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A	
40092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A	
40093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A	
40093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A	
40094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A	
40094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A	
40101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8	A	
40101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8	A	
4010191000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8	A	
4010199000	기타	8	A	
401031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401032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A	
401033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401034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A	
401035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8	A	
401036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8	A	

4010390000	기타	8	A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5	A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5	A	
4011109000	기타	5	A	
4011201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5	A	
4011201090	기타	5	A	
4011202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5	A	
4011202090	기타	5	A	
4011209000	기타	5	A	
4011300000	항공기용	5	A	
4011400000	모터사이클용	5	A	
4011500000	자전거용	5	A	
4011701000	헤링본(herring-bone)이나 이와 유사한 트레드(tread)가 있는 것	5	A	
4011709000	기타	5	A	
4011801010	림(rim)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5	A	
4011801090	기타	5	A	
4011809010	림(rim)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5	A	
4011809090	기타	5	A	
4011901000	헤링본(herring-bone)이나 이와 유사한 트레드(tread)가 있는 것	5	A	
4011909000	기타	5	A	
4012110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A	
4012120000	버스용 · 화물자동차용	8	A	
4012130000	항공기용	5	A	
4012190000	기타	8	A	
4012201000	항공기용	5	A	
40122090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A	
401220902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의 것	8	A	
4012209090	기타	8	A	

4012901010	솔리드 타이어	5	A	
4012901020	쿠션 타이어	5	A	
4012901030	타이어트래드	5	A	
4012901040	타이어 플랩	5	A	
4012909010	솔리드 타이어	8	A	
4012909020	쿠션 타이어	8	A	
4012909030	타이어트래드	8	A	
4012909040	타이어 플랩	8	A	
4012909090	기타	8	A	
4013101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 용을 포함한다]	8	A	
4013102000	버스·화물차용	8	A	
4013200000	자전거용	8	A	
4013901000	항공기용	5	A	
4013909010	모터싸이클·모터스쿠터용	8	A	
4013909020	산업용·농경용	8	A	
4013909090	기타	8	A	
4014100000	콘돔	8	A	
4014901000	젓꼭지	8	A	
4014909000	기타	8	A	
4015110000	외과용	8	A	
4015190000	기타	8	A	
4015901000	잠수복	8	A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8	A	
4015909000	기타	8	A	
401610000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8	A	
4016910000	바닥깔개와 매트	8	A	
4016920000	지우개	8	A	
4016930000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8	A	
4016940000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A	
4016951000	공기 매트리스	8	A	

4016952000	베개	8	A	
4016953000	쿠션	8	A	
4016959000	기타	8	A	
4016991010	기구·비행선·비행기계류·글라이더·연과 로토슈트의 부품	0	A	
4016991090	기타	8	A	
4016992000	고무밴드	8	A	
4016993000	병마개	8	A	
4016999000	기타	8	A	
4017001000	경질고무	8	A	
4017002000	경질고무의 제품	8	A	
4101201000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	0	A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101501011	카우하이드(cow hide)	0	A	
410150101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0	A	
4101501013	옥스하이드(ox hide)	0	A	
4101501014	불하이드(bull hide)	0	A	
4101501019	기타	0	A	
4101501021	카우하이드(cow hide)	0	A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0	A	
4101501023	옥스하이드(ox hide)	0	A	
4101501024	불하이드(bull hide)	0	A	
4101501029	기타	0	A	
4101501090	기타	0	A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101901010	버트(butt)와 벤드(bend)	0	A	
4101901091	송아지의 원피	0	A	
4101901099	기타	0	A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102100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A	
4102211000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	0	A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102291000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	0	A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103201010	뱀의 원피	0	A	
4103201030	악어의 원피	0	A	
4103201090	기타	0	A	
4103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103301000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	0	A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103901010	장어류의 원피	0	A	
4103901020	캥거루의 원피	0	A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0	A	
4103901090	기타	0	A	
4103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A	
4104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3	A	
4104190000	기타	3	A	
41044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3	A	
4104490000	기타	3	A	
410510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3	A	
410530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3	A	
41062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3	A	
41062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3	A	
41063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A	

41063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A	
4106400000	파충류의 원피	5	A	
41069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A	
41069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A	
4107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A	
41071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A	
4107190000	기타	5	A	
41079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A	
41079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A	
4107990000	기타	5	A	
4112000000	유연처리 ·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5	A	
4113100000	산양의 가죽	5	A	
4113200000	돼지의 가죽	5	A	
4113300000	파충류의 가죽	5	A	
4113900000	기타	5	A	
4114100000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5	A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5	A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5	A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5	A	
4115100000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 · 시트(sheet) 모양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A	
4115200000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3	A	
4201001000	파충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1009010	안장과 안장용 방석	8	A	
4201009020	고삐줄	8	A	
4201009030	끈	8	A	
4201009040	재갈	8	A	
4201009090	기타	8	A	
42021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1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1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1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1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111090	기타	8	A	
42021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A	
42021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A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A	
42021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A	
4202121090	기타	8	A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A	
4202191000	판지로 만든 것	8	A	
4202199000	기타	8	A	
42022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2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2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2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2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211090	기타	8	A	
42022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A	
42022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A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A	
42022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A	
4202221090	기타	8	A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A	
4202291000	판지로 만든 것	8	A	

4202299000	기타	8	A	
42023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3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3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3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3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311090	기타	8	A	
42023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A	
42023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A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A	
42023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A	
4202321090	기타	8	A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A	
4202391000	판지로 만든 것	8	A	
4202399000	기타	8	A	
42029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9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9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9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9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A	
4202911090	기타	8	A	
42029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A	
42029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A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A	
42029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A	
4202921090	기타	8	A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A	
4202991000	판지로 만든 것	8	A	
4202999000	기타	8	A	
4203101010	코트류	13	A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A	
4203101050	조끼류	13	A	

4203101060	바지류	13	A	
4203101070	스커트류	13	A	
4203101080	오버롤류	13	A	
4203101090	기타	13	A	
4203102010	코트류	13	A	
4203102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A	
4203102050	조끼류	13	A	
4203102060	바지류	13	A	
4203102070	스커트류	13	A	
4203102080	오버롤류	13	A	
4203102090	기타	13	A	
4203103010	코트류	13	A	
4203103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A	
4203103050	조끼류	13	A	
4203103060	바지류	13	A	
4203103070	스커트류	13	A	
4203103080	오버롤류	13	A	
4203103090	기타	13	A	
4203109010	코트류	13	A	
4203109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A	
4203109050	조끼류	13	A	
4203109060	바지류	13	A	
4203109070	스커트류	13	A	
4203109080	오버롤류	13	A	
4203109090	기타	13	A	
4203211000	야구장갑	13	A	
4203212000	골프장갑	13	A	
4203213000	스키장갑	13	A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13	A	
4203215000	배팅장갑	13	A	
4203216000	테니스장갑	13	A	
4203217000	아이스하키장갑	13	A	

4203219000	기타	13	A	
4203291000	작업용 장갑	13	A	
4203292000	방한용 장갑	13	A	
4203293000	운전용 장갑	13	A	
4203299000	기타	13	A	
420330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13	A	
420330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13	A	
420330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13	A	
420330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13	A	
4203301090	기타	13	A	
4203309000	기타	13	A	
420340000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13	A	
4205001110	벨트	8	A	
4205001190	기타	8	A	
4205001900	그 밖의 가죽제품	8	A	
4205002110	벨트	8	A	
4205002190	기타	8	A	
42050029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8	A	
4206001000	캣거트(catgut)	8	A	
4206009000	기타	8	A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A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Caracul) ·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 · 중국 · 몽고 ·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A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A	
4301802000	오파섬(opossum)의 것	3	A	
4301803000	라쿤(raccoon)의 것	3	A	

4301804000	코요테의 것	3	A	
4301805000	토끼의 것	3	A	
4301806000	사향뒤쥐의 것	3	A	
4301809000	기타	3	A	
4301900000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3	A	
4302110000	밍크의 것	5	A	
4302191000	비버(beaver)의 것	5	A	
4302192000	사향뒤쥐의 것	5	A	
4302193000	여우의 것	5	A	
4302195000	친칠라의 것	5	A	
4302196000	오파섬(opossum)의 것	5	A	
4302197000	라쿤(raccoon)의 것	5	A	
4302198000	코요테의 것	5	A	
4302199010	면양의 것	5	A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Caracul) · 페르시아와 이와 유사한 어린 양 · 인도 · 중국 · 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5	A	
4302199090	기타	5	A	
4302201000	밍크의 것	5	A	
4302202000	토끼의 것	5	A	
4302203000	비버(beaver)의 것	5	A	
4302204000	사향뒤쥐의 것	5	A	
4302205000	여우의 것	5	A	
4302207000	친칠라의 것	5	A	
4302209020	라쿤(raccoon)의 것	5	A	
4302209030	코요테의 것	5	A	
4302209090	기타	5	A	
430230000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4303101100	밍크의 것	16	A	
4303101200	토끼의 것	16	A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16	A	
4303101400	비버(beaver)의 것	16	A	
4303101500	사향뒤쥐의 것	16	A	
4303101600	여우의 것	16	A	
4303101800	친칠라의 것	16	A	
4303101910	오파섬(opossum)의 것	16	A	
4303101920	라쿤(raccoon)의 것	16	A	
4303101930	코요테의 것	16	A	
4303101990	기타	16	A	
4303102100	밍크의 것	16	A	
4303102200	토끼의 것	16	A	
4303102300	어린 양의 것	16	A	
4303102400	비버(beaver)의 것	16	A	
4303102500	사향뒤쥐의 것	16	A	
4303102600	여우의 것	16	A	
4303102800	친칠라의 것	16	A	
4303102920	라쿤(raccoon)의 것	16	A	
4303102930	코요테의 것	16	A	
4303102990	기타	16	A	
4303900000	기타	16	A	
4304001000	인조모피	8	A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8	A	
4401110000	침엽수류	2	A	
4401120000	활엽수류	2	A	
4401210000	침엽수류	2	A	
4401221000	펄프 제조용	0	A	
4401229000	기타	2	A	
4401310000	목재 펠릿(pellet)	2	A	
4401390000	기타	2	A	
4401400000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A	
4402101000	성형 목탄	2	B	

4402109000	기타	2	B	
4402901000	성형 목탄	2	B	
4402909000	기타	2	B	
4403110000	침엽수류	0	A	
4403121000	열대산 목재	0	A	
4403129000	기타	0	A	
4403211000	적송	0	A	
440321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	A	
4403219000	기타	0	A	
4403221000	적송	0	A	
440322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	A	
4403229000	기타	0	A	
440323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0	A	
440323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	0	A	
440324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0	A	
440324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	0	A	
4403251000	삼나무	0	A	
4403252000	미송	0	A	
4403253000	낙엽송	0	A	
4403254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0	A	
4403259000	기타	0	A	
4403261000	삼나무	0	A	
4403262000	미송	0	A	
4403263000	낙엽송	0	A	
4403264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0	A	
4403269000	기타	0	A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A	
4403491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 아란(Alan)	0	A	

4403492000	케루잉(Keruing) · 라민(Ramin) · 카폴(Kapur) · 티크(Teak) · 종콩(Jongkong) · 멜바우(Merbau) · 제루통(Jelutong) · 캄파스(Kempas)	0	A	
4403493000	오쿠메(Okoumé) · 오베체(Obeche) · 사펠리(Sapelli) · 시포(Sipo) · 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 · 마코레(Makoré) · 이로코(Iroko)	0	A	
4403494000	티아마(Tiama) · 만소니아(Mansonia) · 이롬바(Ilomba) · 디베투(Dibétou) · 림바(Limba) · 아조베(Azobé)	0	A	
4403495000	마호가니(Mahogany)와 발사(Balsa)	0	A	
4403499000	기타	0	A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0	A	
440393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440394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4403950000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4403960000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4403971000	포플러	0	A	
4403972000	사시나무	0	A	
4403980000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의 것	0	A	
4403991010	자단(rosewood)	0	A	
4403991020	흑단(ebony wood)	0	A	
4403991040	물푸레나무	0	A	
4403991050	호두나무	0	A	
4403991090	기타	0	A	
4403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0	A	
4403993030	단풍나무	0	A	
4403993040	느릅나무	0	A	
4403993060	피나무	0	A	
4403994000	오동나무	0	A	

4403999000	기타	0	A	
4404100000	침엽수류	5	C	
4404200000	활엽수류	5	C	
4405000000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5	C	
4406110000	침엽수류	5	C	
4406120000	활엽수류	5	C	
4406910000	침엽수류	5	C	
4406920000	활엽수류	5	C	
4407111000	적송	5	C	
440711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5	C	
4407119000	기타	5	C	
440712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5	C	
440712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	5	C	
4407191000	삼나무	5	C	
440719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5	C	
4407192020	헴록(hemlock)	5	C	
4407192090	기타	5	C	
4407193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5	C	
4407194000	낙엽송	5	C	
4407195000	편백나무	5	C	
4407199000	기타	5	C	
44072100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5	C	
4407220000	비롤라(Virola) · 임부아(Imbua) · 발사(Balsa)	5	E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5	C	
4407260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 아란(Alan)	5	C	
4407270000	사펠리(Sapelli)	5	C	
4407280000	이로코(Iroko)	5	C	

4407291000	케루잉(Keruing) · 라민(Ramin) · 카풀(Kapur) · 종콩(Jongkong) · 멜바우(Merbau) · 제루통(Jelutong) · 캄파스(Kempas)	5	C	
4407292000	티크(Teak)	5	C	
4407293000	오꾸메(Okoumé) · 오베체(Obeche) · 시포(Sipo) · 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 · 마꼬레(Makoré) · 티아마(Tiama) · 만소니아(Mansonia) · 이롬바(Ilomba) · 디벤투(Dibé tou) · 림바(Limba) · 아조베(Azobé)	5	C	
4407299000	기타	5	C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5	C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5	C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5	C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5	C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5	C	
4407960000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	5	C	
4407971000	포플러	5	C	
4407972000	사시나무	5	C	
4407991010	자단(rosewood)	5	C	
4407991020	흑단(ebony wood)	5	C	
4407991040	호두나무	5	C	
4407991090	기타	5	C	
4407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5	C	
4407993040	느릅나무	5	C	
4407993060	피나무	5	C	
4407994000	오동나무	5	C	
4407999000	기타	5	C	
440810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C	
4408109100	합판 제조용	2	A	
4408109200	무늬목	3	C	
4408109910	삼나무	5	C	
4408109920	미송	5	C	

4408109950	낙엽송	5	C	
4408109960	가문비나무	5	C	
4408109990	기타	5	C	
4408313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C	
4408319011	합판 제조용	2	A	
4408319012	무늬목	3	C	
4408319019	기타	5	C	
4408319021	합판 제조용	2	A	
4408319022	무늬목	3	C	
4408319029	기타	5	C	
440839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C	
4408399011	합판 제조용	2	A	
4408399012	무늬목	3	C	
4408399019	기타	5	C	
4408399021	합판 제조용	2	A	
4408399022	무늬목	3	C	
4408399029	기타	5	C	
4408399031	합판 제조용	2	A	
4408399032	무늬목	3	C	
4408399039	기타	5	C	
4408399041	합판 제조용	2	A	
4408399042	무늬목	3	C	
4408399049	기타	5	C	
4408399051	합판 제조용	2	A	
4408399052	무늬목	3	C	
4408399059	기타	5	C	
4408399091	합판 제조용	2	C	
4408399092	무늬목	3	C	
4408399099	기타	5	C	

4408901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C	
4408909150	합판 제조용	2	A	
4408909160	무늬목	3	C	
4408909191	자단(Rosewood)	5	C	
4408909192	흑단(Ebony wood)	5	C	
4408909193	물푸레나무	5	C	
4408909194	호두나무	5	C	
4408909195	참나무	5	C	
4408909199	기타	5	C	
4408909210	합판 제조용	2	A	
4408909220	무늬목	3	C	
4408909290	기타	5	C	
4408909370	합판 제조용	2	A	
4408909380	무늬목	3	C	
4408909391	사시나무	5	C	
4408909392	포플러	5	C	
4408909393	단풍나무	5	C	
4408909394	느릅나무	5	C	
4408909395	자작나무	5	C	
4408909396	피나무	5	C	
4408909410	합판 제조용	2	A	
4408909420	무늬목	3	C	
4408909490	기타	5	C	
4408909910	합판 제조용	2	A	
4408909920	무늬목	3	C	
4408909990	기타	5	C	
4409101000	사이딩(Siding)	8	E	
4409102000	플로어링(Flooring)	8	E	
4409109000	기타	8	E	
44092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8	E	
4409221000	사이딩(Siding)	8	E	

4409222000	플로어링(Flooring)	8	E	
4409229000	기타	8	E	
4409291000	사이딩(Siding)	8	E	
4409292000	플로어링(Flooring)	8	E	
4409299000	기타	8	E	
441011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E	
4410112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E	
441011300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E	
4410119000	기타	8	E	
441012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E	
4410129000	기타	8	E	
4410191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E	
4410191090	기타	8	E	
441019902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E	
441019903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E	
4410199090	기타	8	E	
4410900000	기타	8	E	
441112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E	
4411129000	기타	8	E	
441113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E	
4411139000	기타	8	E	
441114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E	
4411149010	마루판	8	E	
4411149090	기타	8	E	
441192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E	
4411929010	마루판	8	E	
4411929090	기타	8	E	
441193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E	
4411939010	마루판	8	E	

4411939090	기타	8	E	
441194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E	
4411949000	기타	8	E	
4412101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1010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	E	
4412102000	마루판	8	E	
4412109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	E	
4412109090	기타	8	E	
441231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12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8	E	
4412312090	기타	8	E	
441231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1401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8	E	
4412314019	기타	10	E	
441231402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	E	
4412314029	기타	10	E	
4412315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	E	
4412315090	기타	10	E	
4412316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	E	
4412316090	기타	10	E	
4412317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	E	
4412317090	기타	10	E	
441233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3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3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3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34020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3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3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3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34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4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4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4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44020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4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4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4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39100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99000	기타	10	E	
4412941000	블록보드(blockboard)	8	E	
4412942000	라민보드(laminboard)	8	E	
4412943000	배튼보드(battenboard)	8	E	
4412994100	합판	10	E	
4412994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4919	기타	8	E	
4412994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4999	기타	8	E	
4412995100	합판	10	E	
4412995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5919	기타	8	E	
4412995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5999	기타	8	E	

4412996100	합판	10	E	
4412996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	E	
4412996919	기타	8	E	
4412996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6999	기타	8	E	
4412999100	합판	10	E	
4412999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9919	기타	8	E	
4412999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9999	기타	8	E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 · 플레이트(plate) 모양 · 스트립(strip) 모양 ·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	
441400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 · 사진틀 · 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8	E	
4415100000	케이스 · 상자 · 크레이트(crate) · 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8	E	
4415200000	팔릿(pallet) · 박스팔릿(box pallet) ·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릿칼러(pallet collar)	8	E	
4416000000	나무로 만든 통 · 배럴(barrel) · 배트(vat) · 튜(tub) ·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8	E	
4417000000	나무로 만든 공구 · 공구의 몸체 · 공구의 손잡이 · 비나 브리시의 몸체와 손잡이 · 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8	E	
4418100000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8	E	
4418200000	문 · 문틀 · 문지방	8	D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8	E	
4418500000	지붕을 이는 판자	8	E	
4418600000	기둥과 들보	8	E	
441873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5	E	
4418739000	기타	5	E	

441874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E	
4418749000	기타	8	E	
441875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E	
4418759000	기타	8	E	
441879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E	
4418799000	기타	8	E	
44189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8	E	
4418991000	셀룰러우드패널	8	D	
4418999000	기타	8	A	
4419110000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8	E	
4419120000	젓가락	8	E	
4419190000	기타	8	E	
4419901000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8	E	
4419902000	대접(공기)	8	E	
4419903000	젓가락	8	E	
4419909000	기타	8	D	
4420101000	작은 조각상	8	D	
4420109000	기타	8	D	
4420901000	마르케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8	D	
4420902010	담배상자	8	E	
4420902020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D	
4420902030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8	D	
4420902090	기타	8	E	
4420909010	담배용 상자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D	
4420909020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8	D	
4420909090	기타	8	E	
4421100000	옷걸이	8	E	
4421911000	스풀·콥·보빈·재봉사 릴과 이와 유사한 것(선반가공한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8	E	
4421912000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 펙(peg)과 못	8	E	
4421913000	이쑤시개	8	E	
442191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8	E	

4421915000	부채 · 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이들의 살과 자루(살 ·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8	E	
4421919000	기타	8	E	
4421991000	스풀 · 콥 · 보빈 · 재봉사 릴과 이와 유사한 것(선반가공한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8	D	
4421992000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 껍(peg)과 못	8	D	
4421993000	이쑤시개	8	D	
442199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8	D	
4421995000	부채 · 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이들의 살과 자루(살 ·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8	D	
4421999000	기타	8	E	
450110000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 으로 한정한다)	8	E	
4501900000	기타	8	E	
450200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 · 판 모양 · 시 트(sheet) 모양 ·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감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8	E	
4503100000	마개	8	E	
4503900000	기타	8	E	
4504100000	블록 ·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 타일(어떤 모양이라 도 상관없다) · 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하 다)	8	E	
4504900000	기타	8	E	
4601211000	매트류	8	A	
4601212000	발	8	A	
4601221000	매트류	8	A	
4601222000	발	8	A	
4601291000	매트류	8	A	
4601292000	발	8	A	
4601921000	은죽발장(폭이 35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4601929000	기타	8	A	

46019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8	A	
4601941000	은죽발장(폭이 35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4601949000	기타	8	A	
4601991000	플라스틱재료로 엮은 시트(sheet) 모양의 물품	8	A	
4601999000	기타	8	A	
4602111000	바구니	8	D	
4602112000	쟁반, 접시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	D	
4602119000	기타	8	D	
4602120000	등나무로 만든 것	8	D	
4602191000	골풀제품	8	A	
4602199000	기타	8	A	
4602900000	기타	8	A	
470100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A	
470100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A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0	A	
4703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A	
4703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A	
4703211000	반표백한 것	0	A	
4703212000	표백한 것	0	A	
4703291000	반표백한 것	0	A	
4703292000	표백한 것	0	A	
4704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A	
4704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A	
47042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A	
47042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A	
470500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	A	
470610000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0	A	
470620000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	A	
4706301000	기계펄프	0	A	
4706302000	화학펄프	0	A	
4706303000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0	A	

4706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A	
470691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A	
470692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A	
470692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A	
470693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A	
470693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A	
47071000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 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 · 판지로 만든 것	0	A	
4707200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470730000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A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A	
48010000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4802100000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0	A	
4802200000	사진 감광성 · 열 감응성 · 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0	A	
4802400000	벽지용 원지(原紙)	0	A	
480254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541090	기타	0	A	
480254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549090	기타	0	A	
480255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551020	복사용지	0	A	
480255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A	
4802551040	팬시지	0	A	
4802551090	기타	0	A	
480255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559090	기타	0	A	
480256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561020	복사용지	0	A	

480256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A	
4802561040	팬시지	0	A	
4802561090	기타	0	A	
480256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569090	기타	0	A	
480257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571020	복사용지	0	A	
480257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A	
4802571040	팬시지	0	A	
4802571090	기타	0	A	
480257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579090	기타	0	A	
480258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581020	팬시지	0	A	
4802581090	기타	0	A	
4802582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582090	기타	0	A	
480258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589090	기타	0	A	
480261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611020	복사용지	0	A	
480261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A	
4802611090	기타	0	A	
480261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619090	기타	0	A	
480262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621020	복사용지	0	A	
480262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A	
4802621090	기타	0	A	
480262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629090	기타	0	A	
480269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691020	복사용지	0	A	
480269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A	
4802691040	팬시지	0	A	
4802691090	기타	0	A	
480269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2699090	기타	0	A	
4803001000	화장지 · 안면용 티슈스톡	0	A	
480300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0	A	
4803009000	기타	0	A	
4804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A	
4804190000	기타	0	A	
4804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A	
4804290000	기타	0	A	
480431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A	
4804312000	콘덴서지와 판지	0	A	
4804313000	포장지와 판지	0	A	
4804319000	기타	0	A	
480439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A	
4804392000	콘덴서지와 판지	0	A	
4804393000	포장지와 판지	0	A	
4804399000	기타	0	A	
480441101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A	
4804411090	기타	0	A	
480441901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A	
4804419090	기타	0	A	
4804421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A	
480442102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 · 의약품 · 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A	
4804421030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A	
4804421090	기타	0	A	
4804429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A	
4804429030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A	

4804429090	기타	0	A	
480449100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A	
4804499000	기타	0	A	
4804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A	
480452100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A	
4804522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 · 의약품 · 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A	
4804523000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A	
4804529000	기타	0	A	
4804590000	기타	0	A	
4805110000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0	A	
4805120000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0	A	
4805190000	기타	0	A	
4805241000	여러 층의 종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5249000	기타	0	A	
4805251000	여러 층의 종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5259000	기타	0	A	
4805300000	아황산포장지	0	A	
4805400000	여과지와 판지	0	A	
4805500000	펠트지와 판지	0	A	
4805911000	여러 층의 종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5919010	콘덴서지와 판지	0	A	
4805919090	기타	0	A	
4805921000	여러 층의 종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5929000	기타	0	A	
4805931000	여러 층의 종지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A	
4805939000	기타	0	A	
4806100000	황산지	0	A	
4806200000	내지지(耐脂紙)	0	A	
480630000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0	A	
4806401000	글라신지(glassine paper)	0	A	
4806409000	기타	0	A	

4807000000	겹붙인 종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0	A	
4808100000	물결 모양의 종지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0	A	
4808401000	자루(sack)용	0	A	
4808409000	기타	0	A	
4808900000	기타	0	A	
4809201000	한 겹의 것	0	A	
4809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	A	
4809901000	전사지	0	A	
4809902010	제공미터당 중량이 65그램 이상의 것	0	A	
4809902090	기타	0	A	
4809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A	
4809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A	
4809909000	기타	0	A	
4810131000	인쇄용 · 필기용 종지와 판지	0	A	
4810139000	기타	0	A	
4810141000	인쇄용 · 필기용 종지와 판지	0	A	
4810149000	기타	0	A	
4810191000	인쇄용 · 필기용 종지와 판지	0	A	
4810199000	기타	0	A	
48102200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지	0	A	
4810290000	기타	0	A	
481031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 · 의약품 · 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A	
4810312000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A	
4810319000	기타	0	A	
481032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 · 의약품 · 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A	
4810322000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A	
4810329000	기타	0	A	
4810390000	기타	0	A	

4810921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0	A	
4810921090	기타	0	A	
4810922000	아이보리판지	0	A	
4810929000	기타	0	A	
4810991000	지형지	0	A	
4810992000	여과지	0	A	
4810999000	기타	0	A	
4811101000	루핑지	0	A	
4811109000	기타	0	A	
4811410000	셀프접착지	0	A	
4811490000	기타	0	A	
4811511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며 265그램 이하인 것	0	A	
481151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A	
4811519019	기타	0	A	
4811519090	기타	0	A	
4811590000	기타	0	A	
4811600000	왁스 · 파라핀왁스 · 스테아린(stearin) · 기름 · 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지와 판지	0	A	
4811901010	괘선, 선이나 방안선을 그은 것	0	A	
4811901090	기타	0	A	
4811902010	셀룰로오스워딩	0	A	
4811902090	기타	0	A	
48120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0	A	
481310000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0	A	
4813200000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0	A	
4813900000	기타	0	A	
4814201000	벽지	0	A	
4814202000	링크라스타	0	A	
4814209000	기타	0	A	
4814901010	갈포섬유로 만든 것	0	A	
4814901090	기타	0	A	

4814909000	기타	0	A	
4816201000	한 겹의 것	0	A	
4816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	A	
4816901000	전사지	0	A	
4816902010	제공미터당 중량이 65그램 이상인 것	0	A	
4816902090	기타	0	A	
4816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A	
4816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A	
4816905000	등사원지	0	A	
4816909000	기타	0	A	
4817100000	봉투	0	A	
4817200000	봉함엽서 · 우편엽서 · 통신용카드	0	A	
4817300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 · 파우치 · 지갑 ·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4818100000	화장지	0	A	
4818200000	손수건 · 클렌징티슈 · 안면용 화장지 · 타월	0	A	
481830000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0	A	
4818500000	의류와 의류 부착품	0	A	
4818900000	기타	0	A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481920000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A	
4819300000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0	A	
481940000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0	A	
4819501000	액체 포장에 적합한 것	0	A	
4819509000	기타	0	A	
4819600000	서류상자 · 서류받침 · 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 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4820100000	장부 · 회계부 · 노트북 · 주문장 · 영수장 · 편지지철 · 메모철 · 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A	
4820200000	연습장	0	A	
482030000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 · 폴더 · 서류철 표지	0	A	

4820400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0	A	
482050000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0	A	
4820900000	기타	0	A	
4821100000	인쇄한 것	0	A	
4821900000	기타	0	A	
4822100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0	A	
4822900000	기타	0	A	
4823200000	여과용 종지와 판지	0	A	
4823400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이얼	0	A	
48236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A	
4823690000	기타	0	A	
48237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0	A	
4823901010	구멍을 뚫은 카드	0	A	
4823901090	기타	0	A	
4823902000	전기절연지	0	A	
4823903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A	
4823903019	기타	0	A	
482390302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A	
4823903029	기타	0	A	
4823903090	기타	0	A	
4823905000	자카드(Jacquard) 직기용 구멍을 뚫은 종이	0	A	
482390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A	
4823909019	기타	0	A	
4823909090	기타	0	A	
4901101000	국문판	0	A	
4901109000	기타	0	A	
4901911000	국문판	0	A	
4901919000	기타	0	A	
4901991000	국문판	0	A	
4901999000	기타	0	A	
4902101010	신문	0	A	
4902101090	기타	0	A	

4902109000	기타	0	A	
4902901010	잡지	0	A	
4902901090	기타	0	A	
4902909010	잡지	0	A	
4902909090	기타	0	A	
490300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0	A	
490400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A	
4905100000	지구의	0	A	
4905911000	지도와 해도	0	A	
4905919000	기타	0	A	
4905990000	기타	0	A	
4906001000	설계도	0	A	
4906002000	도안	0	A	
4906009000	기타	0	A	
4907001000	우표(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4907002000	항공화물증권	0	A	
4907009000	기타	0	A	
4908100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0	A	
490890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comania)]로서 쿠션 플로어링 시트(sheet)용의 것	0	A	
4908909000	기타	0	A	
49090000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으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A	
4910001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것	0	A	
4910009000	기타	0	A	
491110000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0	A	
4911911000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0	A	
4911919000	기타	0	A	
4911990000	기타	0	A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1% 또는 5,276원/kg, 양자 중 고액(율)	A	
5002001010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3	A	
5002001020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A	
5002001030	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A	
5002001040	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A	
5002001050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A	
5002002000	옥사(doupion silk)	3	A	
5002009000	기타	8	A	
5003001000	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	2	A	
5003009000	기타	2	A	
500400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3	A	
5005001000	견수방사	3	A	
5005002000	견방사	3	A	
5005003000	견방주사	3	A	
5006001000	견사	8	A	
5006002000	견수방사	8	A	
5006003000	견방사	8	A	
5006004000	견방주사	8	A	
5006005000	누에의 거트(gut)	8	A	
5007100000	견 노일(noil) 직물	13	A	
5007201000	생지견직물	13	A	
5007202010	홀치기가공	13	A	
5007202020	사틴	13	A	
5007202030	크렘 데신(crepe de chine)	13	A	
5007202090	기타	13	A	
5007209000	기타	13	A	

5007901000	생지견직물	13	A	
5007902000	아세테이트사와 혼방한 견직물	13	A	
5007903000	그 밖의 인조섬유와 혼방한 견직물	13	A	
5007904000	양모와 혼방한 견직물	13	A	
5007909000	기타	13	A	
5101110000	깎은 양모	0	A	
5101190000	기타	0	A	
5101210000	깎은 양모	0	A	
5101290000	기타	0	A	
5101300000	탄화처리한 것	0	A	
51021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A	
5102190000	기타	0	A	
5102200000	동물의 거친 털	0	A	
51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0	A	
5103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	A	
510330000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0	A	
5104000000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A	
5105100000	카드(card)한 양모	0	A	
5105210000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5105290000	기타	0	A	
51053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A	
5105390000	기타	0	A	
510540000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5106101000	순모의 것	8	A	
5106109000	기타	8	A	
5106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A	
5106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A	
5106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A	
5106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A	
5106209000	기타	8	A	

5107101000	순모의 것	8	A	
5107102000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A	
51071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A	
5107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A	
5107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A	
5107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A	
5107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A	
51072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A	
5108100000	카드(card)한 것	8	A	
5108200000	코움(comb)한 것	8	A	
5109101000	양모사	8	A	
51091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8	A	
5109901000	양모사	8	A	
51099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8	A	
51100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 없다]	8	A	
5111111000	양모로 만든 것	13	A	
5111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A	
5111191000	양모로 만든 것	13	A	
5111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A	
511120000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A	
5111300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A	
5111900000	기타	13	A	
5112111000	양모로 만든 것	13	A	
5112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A	
5112191000	양모로 만든 것	13	A	
5112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A	
511220000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A	
5112300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A	
5112900000	기타	13	A	
511300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A	

5201001000	실면(實綿)	0	A	
5201009010	섬유 길이가 23.2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5201009020	섬유 길이가 23.2밀리미터 이상 25.4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5201009030	섬유 길이가 25.4밀리미터 이상 28.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5201009050	섬유 길이가 28.5밀리미터 이상 34.9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5201009060	섬유 길이가 34.9밀리미터 이상인 것	0	A	
520210000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0	A	
5202910000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A	
5202990000	기타	0	A	
520300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520411000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8	A	
5204190000	기타	8	A	
5204200000	소매용	8	A	
52051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119000	기타	8	A	
5205121010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27 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1	A	
5205121090	기타	8	A	
5205129000	기타	8	A	
52051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139000	기타	8	A	
52051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149000	기타	8	A	
52051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159000	기타	8	A	
52052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219000	기타	8	A	
52052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229000	기타	8	A	
52052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239000	기타	8	A	
52052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249000	기타	8	A	
520526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269000	기타	8	A	
520527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279000	기타	8	A	
520528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289000	기타	8	A	
52053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319000	기타	8	A	
5205321010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변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1	A	
5205321090	기타	8	A	
5205329000	기타	8	A	
52053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339000	기타	8	A	
52053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349000	기타	8	A	
52053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359000	기타	8	A	
52054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419000	기타	8	A	
52054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429000	기타	8	A	
52054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439000	기타	8	A	
52054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449000	기타	8	A	
520546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469000	기타	8	A	

520547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479000	기타	8	A	
520548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5489000	기타	8	A	
52061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119000	기타	8	A	
52061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129000	기타	8	A	
52061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139000	기타	8	A	
52061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149000	기타	8	A	
52061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159000	기타	8	A	
52062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219000	기타	8	A	
52062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229000	기타	8	A	
52062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239000	기타	8	A	
52062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249000	기타	8	A	
52062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259000	기타	8	A	
52063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319000	기타	8	A	
52063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329000	기타	8	A	
52063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339000	기타	8	A	
52063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349000	기타	8	A	

52063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359000	기타	8	A	
52064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419000	기타	8	A	
52064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429000	기타	8	A	
52064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439000	기타	8	A	
52064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449000	기타	8	A	
52064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6459000	기타	8	A	
520710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7109000	기타	8	A	
520790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A	
5207909000	기타	8	A	
52081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2081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081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10	A	
52082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2082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2082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082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10	A	
52083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2083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2083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083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2084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2084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2084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084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2085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2085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2085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08599000	기타	10	A	
52091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2091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091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2092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2092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092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2093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2093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093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2094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209420000	데 님(denim)	10	A	
5209430000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094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2095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2095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095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2101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2101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10199000	기타	10	A	
52102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2102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10299000	기타	10	A	
52103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2103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103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2104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2104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10499000	기타	10	A	
52105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2105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2111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2111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111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211200000	표백한 것	10	A	
52113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2113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113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2114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211420000	데님(denim)	10	A	
5211430000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114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211510000	평직물(平織物)	10	A	
52115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A	
5211590000	그 밖의 직물	10	A	
52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10	A	
5212120000	표백한 것	10	A	
5212130000	염색한 것	10	A	
52121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A	
5212150000	날염한 것	10	A	
5212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10	A	
5212220000	표백한 것	10	A	
5212230000	염색한 것	10	A	
52122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A	
5212250000	날염한 것	10	A	
530110000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	A	
5301210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2	A	
5301290000	기타	2	A	
5301301000	아마의 토우(tow)	2	A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waste)	2	A	
530210000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	A	
5302901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적인 것은 제외한다)	2	A	
5302902010	대마의 토우(tow)	2	A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waste)	2	A	
5303101000	황마	2	A	
530310200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	2	A	
5303901010	황마	2	A	
5303901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	2	A	
5303909010	황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A	
5303909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A	
5305001000	코코넛[코이어(coir)]의 것	2	A	
5305002000	아바카의 것	2	A	
5305003000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것	2	A	
5305009000	기타	2	A	
5306101000	순아마사	8	A	
5306102000	혼방아마사	8	A	
5306201000	순아마사	8	A	
5306202000	혼방아마사	8	A	
5307101000	황마사	8	A	
5307109000	기타	8	A	
5307201000	황마사	8	A	
5307209000	기타	8	A	
5308100000	코이어(coir)사	8	A	
5308200000	대마사	8	A	
5308901000	라미(ramie)사	8	A	
5308909000	기타	8	A	
5309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A	
5309190000	기타	2	A	
5309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A	
5309290000	기타	2	A	
5310101000	황마직물	8	A	
5310109000	기타	8	A	
5310901000	황마직물	8	A	
5310909000	기타	8	A	

5311001000	라미(ramie)의 것	8	A	
5311002000	대마의 것	8	A	
5311003000	종이실(paper yarn)의 것	8	A	
5311009000	기타	8	A	
5401101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A	
540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4011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1109000	기타	8	A	
5401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A	
5401209000	기타	8	A	
5402110000	아라미드의 것	8	A	
5402191011	타이어 코드사	8	A	
5402191012	어망사	8	A	
5402191019	기타	8	A	
5402191021	타이어 코드사	8	A	
5402191022	어망사	8	A	
5402191029	기타	8	A	
5402191090	기타	8	A	
5402199000	기타	8	A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5402311010	나일론 6의 것	8	A	
5402311020	나일론 66의 것	8	A	
5402311090	기타	8	A	
5402319000	기타	8	A	
5402321010	나일론 6의 것	8	A	
5402321020	나일론 66의 것	8	A	
5402321090	기타	8	A	
5402329000	기타	8	A	
540233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A	
5402339000	기타	8	A	
540234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A	

5402390000	기타	8	A	
5402440000	탄성사	8	A	
5402451010	나일론 6의 것	8	A	
5402451020	나일론 66의 것	8	A	
5402451090	기타	8	A	
5402459000	기타	8	A	
540246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A	
5402469000	기타	8	A	
540247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A	
5402479000	기타	8	A	
540248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8	A	
54024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2499000	기타	8	A	
54025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4025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40253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A	
54025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2599000	기타	8	A	
54026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4026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40263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A	
54026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2692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A	
5402699000	기타	8	A	
5403100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1	A	
5403311000	텍스처드사	1	A	
5403319000	기타	1	A	
5403321000	텍스처드사	1	A	
5403329000	기타	1	A	
5403331000	텍스처드사	8	A	
5403339000	기타	8	A	

5403391000	텍스처드사	8	A	
5403399000	기타	8	A	
5403411000	텍스처드사	1	A	
5403419000	기타	1	A	
5403421000	텍스처드사	8	A	
5403429000	기타	8	A	
5403491000	텍스처드사	8	A	
5403499000	기타	8	A	
5404110000	탄성사	8	A	
540412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8	A	
5404191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A	
5404192000	폴리우레탄의 것	8	A	
5404193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A	
5404199000	기타	8	A	
5404901000	스트립 모양의 것	8	A	
5404909000	기타	8	A	
5405001000	모노필라멘트	8	A	
5405009000	기타	8	A	
5406001000	합성필라멘트사	8	A	
5406002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	8	A	
5407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407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40720000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8	A	
5407300000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8	A	
5407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A	
5407420000	염색한 것	8	A	
54074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A	
5407440000	날염한 것	8	A	
5407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A	
5407520000	염색한 것	8	A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A	
5407540000	날염한 것	8	A	

54076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A	
5407612000	염색한 것	8	A	
540761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A	
5407614000	날염한 것	8	A	
54076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A	
5407692000	염색한 것	8	A	
540769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A	
5407694000	날염한 것	8	A	
540771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7719000	기타	8	A	
540772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7729000	기타	8	A	
540773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7739000	기타	8	A	
540774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7749000	기타	8	A	
54078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4078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4078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7819000	기타	8	A	
54078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4078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4078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7829000	기타	8	A	
54078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4078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4078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7839000	기타	8	A	
54078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4078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4078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7849000	기타	8	A	

5407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4079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4079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7919000	기타	8	A	
5407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4079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4079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7929000	기타	8	A	
54079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4079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4079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7939000	기타	8	A	
54079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4079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4079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A	
5407949000	기타	8	A	
5408100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8	A	
5408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A	
5408220000	염색한 것	8	A	
54082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A	
5408240000	날염한 것	8	A	
5408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A	
5408320000	염색한 것	8	A	
54083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A	
5408340000	날염한 것	8	A	
5501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5012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501301000	아크릴의 것	8	A	
550130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501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A	
5501900000	기타	8	A	
5502101000	44,000 데시텍스 미만의 것	7.5	A	

5502102000	44,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7.5	A	
55029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7.5	A	
5502909000	기타	7.5	A	
550311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A	
5503119000	기타	8	A	
550319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A	
5503199000	기타	8	A	
5503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A	
550320901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A	
5503209090	기타	8	A	
5503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A	
5503301090	기타	8	A	
5503302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A	
5503302090	기타	8	A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A	
5503900000	기타	8	A	
5504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1	A	
550410200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1	A	
5504109000	기타	1	A	
5504902000	리오셀(lyocell)의 것	2	A	
5504909000	기타	8	A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2	A	
55052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2	A	
5506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A	
5506109000	기타	8	A	
5506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A	
5506209000	기타	8	A	
5506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A	
5506301090	기타	8	A	
550630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506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A	
5506900000	기타	8	A	

550700102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8	A	
5507001090	기타	8	A	
55070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A	
5507009000	기타	8	A	
5508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508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508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508109000	기타	8	A	
55082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A	
5508209000	기타	8	A	
5509111000	강력사	8	A	
5509119000	기타	8	A	
5509121000	강력사	8	A	
5509129000	기타	8	A	
5509211000	강력사	8	A	
5509219000	기타	8	A	
5509221000	강력사	8	A	
5509229000	기타	8	A	
5509311000	아크릴의 것	8	A	
55093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509321000	아크릴의 것	8	A	
55093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509410000	단사	8	A	
5509420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8	A	
5509510000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8	A	
5509520000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8	A	
5509530000	주로 면과 혼방한 것	8	A	
5509590000	기타	8	A	
5509611000	아크릴의 것	8	A	
55096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509621000	아크릴의 것	8	A	
55096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509691010	아크릴의 것	8	A	
5509691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509692010	아크릴의 것	8	A	
55096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509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509919000	기타	8	A	
5509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509929000	기타	8	A	
5509990000	기타	8	A	
5510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A	
5510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A	
5510119000	기타	8	A	
5510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A	
5510129000	기타	8	A	
55102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A	
5510209000	기타	8	A	
5510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A	
5510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A	
5510309000	기타	8	A	
55109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A	
55109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A	
5510909000	기타	8	A	
5511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51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511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511109000	기타	8	A	
55112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A	
55112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A	
55112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A	
5511209000	기타	8	A	
5511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A	
5511309000	기타	8	A	

55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5512191000	염색한 것	10	A	
5512192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A	
5512193000	날염한 것	10	A	
5512211000	아크릴의 것	10	A	
55122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A	
5512290000	기타	10	A	
5512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A	
5512919000	기타	10	A	
55129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A	
5512999000	기타	10	A	
5513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A	
5513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A	
55131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A	
5513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A	
5513192010	아크릴의 것	10	A	
5513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A	
5513199000	기타	10	A	
5513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A	
551323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A	
5513239000	기타	10	A	
5513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A	
5513292010	아크릴의 것	10	A	
5513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A	
5513299000	기타	10	A	
55133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A	
55133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A	

5513392010	아크릴의 것	10	A	
55133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A	
5513399000	기타	10	A	
5513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A	
5513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A	
5513492010	아크릴의 것	10	A	
5513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A	
5513499000	기타	10	A	
5514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A	
5514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A	
5514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A	
5514192010	아크릴의 것	10	A	
5514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A	
5514193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직물	10	A	
5514199000	기타	10	A	
5514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A	
55142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A	
55142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A	
5514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A	
5514292010	아크릴의 것	10	A	
5514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A	
5514299000	기타	10	A	
551430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A	
5514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A	
55144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A	

55144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A	
5514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A	
5514492010	아크릴의 것	10	A	
5514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A	
5514499000	기타	10	A	
55151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5515119000	기타	10	A	
55151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5515129000	기타	10	A	
551513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5515139000	기타	10	A	
55151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5515199000	기타	10	A	
55152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5515219000	기타	10	A	
55152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5515229000	기타	10	A	
55152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5515299000	기타	10	A	
5515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5515919000	기타	10	A	
55159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5515999000	기타	10	A	
5516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A	
5516119000	기타	10	A	
5516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A	
5516129000	기타	10	A	
55161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1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A	
5516139000	기타	10	A	

55161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1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A	
5516149000	기타	10	A	
55162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2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A	
5516219000	기타	10	A	
55162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2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A	
5516229000	기타	10	A	
55162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2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A	
5516239000	기타	10	A	
55162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2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A	
5516249000	기타	10	A	
55163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3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A	
5516319000	기타	10	A	
55163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3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A	
5516329000	기타	10	A	
55163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339000	기타	10	A	
55163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349000	기타	10	A	
55164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419000	기타	10	A	
55164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4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A	
5516429000	기타	10	A	
55164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4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A	

5516439000	기타	10	A	
55164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449000	기타	10	A	
55169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919000	기타	10	A	
55169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9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A	
5516929000	기타	10	A	
55169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939000	기타	10	A	
55169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A	
5516949000	기타	10	A	
56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8	A	
56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A	
5601290000	기타	8	A	
5601301000	섬유의 플록(flock)	8	A	
5601309000	기타	8	A	
5602101000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	8	A	
5602102000	스티치 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8	A	
5602211000	피아노 펠트(felt)	8	A	
5602219000	기타	8	A	
560229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8	A	
5602900000	기타	8	A	
560311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8	A	
5603119000	기타	8	A	
560312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8	A	
5603129000	기타	8	A	
560313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8	A	
5603139000	기타	8	A	
560314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8	A	
5603149000	기타	8	A	
56039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8	A	

56039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8	A	
560393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8	A	
560394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8	A	
560410000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5604901000	모조 캣거트(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A	
56049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서 침투·도포한 것)	8	A	
5604909000	기타	8	A	
560500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5606001000	짐프사(Gimped yarn)	8	A	
5606002000	셔닐사(chenille yarn)	8	A	
5606003000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8	A	
5606009000	기타	8	A	
5607210000	포장용 끈	10	A	
5607290000	기타	10	A	
5607410000	포장용 끈	10	A	
5607490000	기타	10	A	
5607500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A	
5607901000	제5303호의 황마, 방직용 인피섬유로 만든 것	10	A	
5607909000	기타	10	A	
56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A	
5608119000	기타	10	A	
560819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A	
5608199000	기타	10	A	
5608901000	면으로 만든 것	10	A	
5608909000	기타	10	A	
5609001000	면으로 만든 것	8	A	
5609002000	식물성 섬유로 만든 것(면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8	A	

56090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A	
5609009000	기타	8	A	
5701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A	
57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5702100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10	A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 깔개	10	A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A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A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A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A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5702500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10	A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A	
5702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A	
57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A	
5703200000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10	A	
570330000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57041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7042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A	
5704900000	기타	10	A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A	
5801101000	파일(pile)직물	13	A	
5801102000	셔닐(chenille)직물	13	A	
58012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3	A	
58012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3	A	

58012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3	A	
5801260000	셔닐(chenille)직물	13	A	
5801271000	절단되지 않은 것	13	A	
5801272000	절단된 것	13	A	
58013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3	A	
58013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3	A	
58013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3	A	
5801360000	셔닐(chenille)직물	13	A	
5801371000	절단되지 않은 것	13	A	
5801372000	절단된 것	13	A	
58019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3	A	
580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8	A	
5802190000	기타	8	A	
58022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8	A	
5802300000	터프트(tuft)한 직물	8	A	
5803000000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8	A	
58041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5804102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5804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5804109000	기타	13	A	
580421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58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5804292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5804299000	기타	13	A	
5804300000	손으로 만든 레이스	13	A	
5805001000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8	A	
5805002000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8	A	
5806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A	
5806102000	면으로 만든 것	8	A	
5806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A	
5806109000	기타	8	A	

580620000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5806310000	면으로 만든 것	8	A	
5806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A	
5806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A	
5806392000	식물성섬유(면은 제외한다)로 만든 것	8	A	
5806399000	기타	8	A	
580640000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덱)	8	A	
5807101000	레이블(label)	8	A	
5807109000	기타	8	A	
5807901000	레이블(label)	8	A	
5807909000	기타	8	A	
580810000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8	A	
5808901000	장식용 트리밍(trimming)	8	A	
5808909000	기타	8	A	
580900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8	A	
581010000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A	
5810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5810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5810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5811001000	견으로 만든 것	8	A	
58110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A	
5811003000	면으로 만든 것	8	A	
58110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A	
5811009000	기타	8	A	
590110000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8	A	

5901901000	투사포(tracing cloth)	8	A	
5901902000	회화용 캔버스	8	A	
5901903000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8	A	
5902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8	A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8	A	
5902900000	기타	8	A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10	A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10	A	
5903900000	기타	10	A	
5904100000	리놀룸	8	A	
5904900000	기타	8	A	
5905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8	A	
5906100000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8	A	
5906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8	A	
5906990000	기타	8	A	
5907001000	건성유의 조제품이나 기름을 도포·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8	A	
5907002000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 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8	A	
5907009000	기타	8	A	
5908001000	심지	8	A	
5908009000	기타	8	A	
5909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 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 관없다)	8	A	
591000000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 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 ·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 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5911101000	세폭(細幅)직물로 만든 것	8	A	
5911109000	기타	8	A	

591120000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8	A	
59113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8	A	
59113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8	A	
59114000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8	A	
5911900000	기타	8	A	
6001101000	면으로 만든 것	10	A	
6001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A	
6001109000	기타	10	A	
60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10	A	
60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A	
6001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6001910000	면으로 만든 것	10	A	
6001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A	
60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A	
60024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A	
6002900000	기타	10	A	
60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A	
6003200000	면으로 만든 것	10	A	
6003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A	
6003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A	
6003900000	기타	10	A	
60041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A	
6004900000	기타	10	A	
6005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005220000	염색한 것	10	A	
6005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A	
6005240000	날염한 것	10	A	
600535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005352000	염색한 것	10	A	

6005353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A	
6005354000	날염한 것	10	A	
6005360000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A	
6005370000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A	
6005380000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A	
6005390000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A	
6005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005420000	염색한 것	10	A	
6005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A	
6005440000	날염한 것	10	A	
6005900000	기타	10	A	
6006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A	
6006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006220000	염색한 것	10	A	
6006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A	
6006240000	날염한 것	10	A	
6006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006320000	염색한 것	10	A	
60063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A	
6006340000	날염한 것	10	A	
6006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A	
6006420000	염색한 것	10	A	
6006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A	
6006440000	날염한 것	10	A	
6006900000	기타	10	A	
6101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1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1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2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02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2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2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2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3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031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31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3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03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4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4199000	기타	13	A	
61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4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4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104499000	기타	13	A	

61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4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046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46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51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5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5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1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05909000	기타	13	A	
61061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6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6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6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106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06909000	기타	13	A	
61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71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71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7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7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07999000	기타	13	A	
61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8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8199000	기타	13	A	
61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83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83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83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8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108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08999000	기타	13	A	
6109101000	티셔츠	13	A	
6109109000	기타	13	A	
6109901010	티셔츠	13	A	
6109901090	기타	13	A	
6109902010	티셔츠	13	A	
6109902090	기타	13	A	
6109903010	티셔츠	13	A	
6109903090	기타	13	A	
6109909010	티셔츠	13	A	
6109909090	기타	13	A	
6110110000	양모로 만든 것	13	A	
6110120000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13	A	
6110190000	기타	13	A	
6110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10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10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110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110909000	기타	13	A	
6111201000	의류	8	A	
6111202000	부속품	8	A	
6111301000	의류	8	A	
6111302000	부속품	8	A	
6111901000	의류	8	A	
6111902000	부속품	8	A	
6112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12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1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12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112209000	기타	13	A	
61123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1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124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1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13001000	제5903호의 것	13	A	
6113002000	제5906호의 것	13	A	
6113003000	제5907호의 것	13	A	
6114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14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14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114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114909000	기타	13	A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13	A	
61152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115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153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115309000	기타	13	A	
611594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1595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1596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115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11610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8	A	
6116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A	
6116921000	작업용 장갑	8	A	
6116929000	기타	8	A	
6116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A	
6116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A	
61171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1171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117103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1171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117109000	기타	13	A	
6117801000	넥타이류	13	A	
6117809000	기타	13	A	
6117900000	부분품	13	A	
6201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1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1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1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1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1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19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1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1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2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2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2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2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29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2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2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3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3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32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3299000	기타	13	A	
62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A	
6203429000	기타	13	A	
62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4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4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41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204199000	기타	13	A	
62042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204299000	기타	13	A	
62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43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204399000	기타	13	A	
62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204499000	기타	13	A	
62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45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204599000	기타	13	A	
62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46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A	
6204629000	기타	13	A	
62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46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204699000	기타	13	A	
62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5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5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2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5909000	기타	13	A	
6206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3	A	
6206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63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64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64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6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719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207199000	기타	13	A	
62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79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207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7993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799302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7999000	기타	13	A	
62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81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208192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8199000	기타	13	A	
62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089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A	
6208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08999000	기타	13	A	
6209201000	의류	8	A	

6209202000	부속품	8	A	
6209301000	의류	8	A	
6209302000	부속품	8	A	
620990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A	
6209901090	기타	8	A	
6209902000	부속품	8	A	
6210101000	제5602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210102000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2102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2102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2102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2103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2103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2103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2104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2104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2104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2105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2105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2105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A	
621111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211119000	기타	13	A	
621112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211129000	기타	13	A	
6211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211209000	기타	13	A	
62113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13	A	
6211329000	기타	13	A	
62113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113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11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11399000	기타	13	A	

62114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13	A	
6211429000	기타	13	A	
62114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2114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A	
62114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A	
6211499000	기타	13	A	
62121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12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212109000	기타	13	A	
62122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2122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212209000	기타	13	A	
6212300000	코르슬렛(corselette)	13	A	
6212900000	기타	13	A	
6213200000	면으로 만든 것	8	A	
621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A	
6214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A	
6214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A	
6214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A	
6214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8	A	
621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A	
6215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A	
621520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A	
621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A	
6216001000	플라스틱·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것	8	A	
6216009000	기타	8	A	
6217100000	부속품	13	A	
6217900000	부분품	13	A	
6301100000	전기모포	10	A	
6301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 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A	

630130000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A	
630140000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A	
630190000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10	A	
63021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02109000	기타	13	A	
6302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02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302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023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3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0240000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3	A	
63025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025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302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02600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302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029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A	
63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03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03199000	기타	13	A	
6303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039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03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041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3	A	
6304190000	기타	13	A	

6304200000	베드 넷트(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3	A	
6304920000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A	
6304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A	
6304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A	
6305100000	황마나 제5303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鞣皮)섬유로 만든 것	8	A	
63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8	A	
6305320000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6305330000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A	
6305390000	기타	8	A	
630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A	
6306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06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06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06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06300000	돛	13	A	
63064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064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A	
63069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A	
63069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A	
6306909000	기타	13	A	
6307100000	마루땀이포·접시땀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10	A	
6307200000	구멍재킷과 구멍벨트	10	A	
6307901000	신발류 끈	10	A	
6307902000	보자기	10	A	

6307903000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10	A	
6307904010	수술용 마스크	10	A	
6307904020	보건용 마스크	10	A	
6307904030	비말차단용 마스크	10	A	
6307904090	그 밖의 안면마스크	10	A	
6307909000	기타	10	A	
6308000000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13	A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8	A	
6310100000	선별한 것	8	A	
6310900000	기타	8	A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8	A	
6401921000	스키부츠	8	A	
6401929010	고무로 만든 것	8	A	
6401929090	기타	8	A	
6401991010	고무로 만든 것	8	A	
6401991090	기타	8	A	
6401999000	기타	8	A	
64021200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13	A	
6402190000	기타	13	A	
640220000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402911000	방한화	13	A	
6402912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A	
6402919000	기타	13	A	
6402991000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13	A	
6402992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A	
6402999000	기타	13	A	
64031200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13	A	

6403190000	기타	13	A	
6403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40340000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3	A	
6403511000	드레스화	13	A	
6403519000	기타	13	A	
6403591000	드레스화	13	A	
6403599000	기타	13	A	
6403911000	드레스화	13	A	
6403912000	등산화	13	A	
6403913000	편상화(lace-boots)	13	A	
6403914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A	
6403919000	기타	13	A	
6403991000	드레스화	13	A	
6403992000	등산화	13	A	
6403993000	편상화(lace-boots)	13	A	
6403994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A	
6403999000	기타	13	A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A	
6404191000	실내화	13	A	
6404199000	기타	13	A	
6404201000	실내화	13	A	
6404209000	기타	13	A	
640510000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3	A	
6405200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3	A	
6405900000	기타	13	A	
6406101000	갑피	8	A	
6406102000	부분품	8	A	

6406201000	바깥바닥	8	A	
6406202000	뒷굽	8	A	
6406901000	목재로 만든 것	8	A	
6406909010	갈아 끼울수 있는 안창	8	A	
6406909020	힐 쿠션	8	A	
6406909030	각반	8	A	
6406909040	레깅	8	A	
6406909090	기타	8	A	
650100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투우(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8	A	
650200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A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6505001000	헤어네트	8	A	
6505009011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A	
650500901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8	A	
6505009021	운동모	8	A	
6505009022	베레모	8	A	
6505009029	기타	8	A	
6505009090	기타	8	A	
6506100000	안전모자	8	A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6506991000	가죽으로 만든 것	8	A	
6506992000	금속으로 만든 것	8	A	
6506999000	기타	8	A	
6507000000	헤드밴드 · 내장재 · 커버 · 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모자의 프레임(frame) · 챙 · 턱끈	8	A	

660110000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13	A	
66019100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13	A	
6601991000	지팡이 겸용 우산	13	A	
6601992000	양산	13	A	
6601999000	기타	13	A	
6602001000	지팡이	8	A	
6602002000	시트스틱(seat-stick)	8	A	
6602003000	채찍 · 승마용 채찍	8	A	
6602009000	기타	8	A	
660320000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13	A	
6603900000	기타	13	A	
670100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 깃털과 그 부분 · 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 깃촉(quill)은 제외한다]	8	A	
6702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6702901000	직물로 만든 것	8	A	
6702902000	종이로 만든 것	8	A	
6702909000	기타	8	A	
6703001010	세척 · 정돈한 것	8	A	
6703001090	기타	8	A	
6703009000	기타	8	A	
6704110000	전체가발	8	A	
6704191000	부분가발	8	A	
6704192000	가수염	8	A	
6704193000	가눈썹	8	A	
6704194000	가속눈썹	8	A	
6704199000	기타	8	A	
6704201000	전체가발	8	A	
6704202000	부분가발	8	A	
6704203000	가수염	8	A	
6704204000	가눈썹	8	A	
6704205000	가속눈썹	8	A	

6704209000	기타	8	A	
670490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A	
6801000000	포석 · 연석 ·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8	A	
6802100000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 · 조각 · 가루	8	A	
6802211000	대리석	8	A	
6802212000	트래버틴(travertine)	8	A	
6802213000	설화석고(alabaster)	8	A	
6802230000	화강암	8	C	
6802291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8	A	
6802299000	기타	8	C	
6802911000	대리석	8	A	
6802912000	트래버틴(travertine)	8	A	
6802913000	설화석고(alabaster)	8	A	
6802920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8	A	
6802930000	화강암	8	C	
6802990000	그 밖의 돌	8	C	
6803001000	벼루	8	C	
6803009000	기타	8	C	
680410000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 · 그라인딩(grinding)용 · 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8	A	
6804210000	합성 ·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8	A	
6804220000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8	A	
6804230000	천연석으로 만든 것	8	A	
6804300000	수지석(手砥石)	8	A	
680510000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A	
680520000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A	

680530000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8	A	
6806101000	슬래그 울(slag wool)	8	A	
6806102000	암면(rock wool)	8	A	
6806103000	세라믹 파이버	8	A	
6806109000	기타	8	A	
6806201000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8	A	
6806202000	팽창점토	8	A	
6806204000	팽창퍼라이트	8	A	
6806209000	기타	8	A	
6806901000	내화피복재	8	A	
6806909000	기타	8	A	
6807100000	롤 모양인 것	8	A	
6807900000	기타	8	A	
6808000000	패널 · 보드 · 타일 · 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 짚 · 목재의 대팻밥 · 칩 · 파티클(particle) · 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 · 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8	A	
6809110000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8	A	
6809190000	기타	8	A	
6809900000	그 밖의 제품	8	A	
6810111000	블록	8	A	
6810112000	벽돌	8	A	
6810191000	타일	8	A	
6810192000	판석	8	A	
6810193000	기와(지붕타일)	8	A	
6810199000	기타	8	A	
68109100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8	A	
6810991000	빔(beam)과 거더(girder)	8	A	
6810992000	파일	8	A	
6810993000	전신주	8	A	
6810994000	철도 받침목	8	A	
6810995000	관	8	A	

6810999000	기타	8	A	
6811401010	지붕 · 천장 · 벽과 바닥재용	8	A	
6811401090	기타	8	A	
6811402010	지붕 · 천장 · 벽과 바닥재용	8	A	
6811402090	기타	8	A	
6811403000	관 · 관의 연결구류	8	A	
6811409010	지붕 · 천장 · 벽과 바닥재용	8	A	
6811409090	기타	8	A	
6811810000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8	A	
6811820000	그 밖의 시트(sheet) · 패널 · 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8	A	
6811891000	관 · 관의 연결구류	8	A	
6811899000	기타	8	A	
6812801000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 모자류	8	A	
6812803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트(jointing)	8	A	
6812809000	기타	8	A	
6812910000	의류 · 의류 부속품 · 신발 · 모자류	8	A	
6812920000	종이 · 표지용 판지 · 펄트(felt)	8	A	
6812930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트(jointing)	8	A	
6812990000	기타	8	A	
6813201010	자동차용	8	A	
6813201090	기타	8	A	
6813202000	클러치 페이싱	8	A	
6813209010	자동차용	8	A	
6813209090	기타	8	A	
6813810000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8	A	
6813891000	클러치 페이싱	8	A	
6813899000	기타	8	A	
6814100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6814900000	기타	8	A	

6815101000	비전기용 흑연제품	8	A	
6815102000	탄소섬유	8	A	
6815109000	기타	8	A	
6815200000	이탄(泥炭)제품	8	A	
6815910000	마그네사이트 · 백운석 ·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8	A	
6815990000	기타	8	A	
6901001000	벽돌	8	A	
6901002000	블록	8	A	
6901003000	타일	8	A	
6901009010	슬래브와 패널	8	A	
6901009090	기타	8	A	
6902100000	마그네슘 · 칼슘 ·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 · 산화칼슘 ·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8	A	
6902200000	알루미나 · 실리카,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8	A	
6902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A	
6902909000	기타	8	A	
6903101000	레토르트(retort)	8	A	
6903102010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3	A	
6903102090	기타	8	A	
6903103000	반응그릇	8	A	
6903104000	머플	8	A	
6903105000	노즐	8	A	
6903106000	플러그(plug)	8	A	
6903107000	관(管)	8	A	
6903108000	막대(bar, rod)	8	A	
6903109000	기타	8	A	
6903201000	레토르트(retort)	8	A	
6903202000	도가니	8	A	
6903203000	반응그릇	8	A	
6903204000	머플	8	A	

6903205000	노즐	8	A	
6903206000	플러그(plug)	8	A	
6903207000	관(管)	8	A	
6903208000	막대(bar, rod)	8	A	
6903209000	기타	8	A	
6903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A	
6903909010	레토르트(retort)	8	A	
6903909020	도가니	8	A	
6903909030	반응그릇	8	A	
6903909040	머플	8	A	
6903909050	노즐	8	A	
6903909060	플러그(plug)	8	A	
6903909070	관(管)	8	A	
6903909080	막대(bar, rod)	8	A	
6903909090	기타	8	A	
6904100000	건축용 벽돌	8	A	
6904900000	기타	8	A	
6905100000	기와(지붕타일)	8	A	
6905901000	굴뚝통 · 굴뚝갓 · 굴뚝용 내장재	8	A	
6905902000	건축용 장식품	8	A	
6905909000	기타	8	A	
6906001000	관(管) · 도관(導管) · 홈통	8	A	
6906002000	관의 연결구류	8	A	
6907210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8	A	
6907221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3 이하인 것	8	A	
6907229000	기타	8	A	
6907230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8	A	
6907301000	자기제의 것	8	A	
6907309000	기타	8	A	
6907401000	자기제의 것	8	A	
6907409000	기타	8	A	

6909110000	자기제의 것	8	A	
69091200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8	A	
6909190000	기타	8	A	
6909900000	기타	8	A	
6910101000	세면대	8	A	
6910102000	목욕통	8	A	
6910103000	수세식 변기통	8	A	
6910104000	소변기	8	A	
6910109000	기타	8	A	
6910900000	기타	8	A	
6911101000	커피 세트 · 티세트	8	A	
6911102000	공기, 대접과 접시	8	A	
6911109000	기타	8	A	
6911901000	가정용품	8	A	
6911902000	화장용품	8	A	
6911909000	기타	8	A	
6912001010	커피 세트 · 티세트	8	A	
6912001020	공기, 대접과 접시	8	A	
6912001090	기타	8	A	
6912002000	가정용품	8	A	
6912003000	화장용품	8	A	
6912009000	기타	8	A	
6913101000	조각상 · 작은 조각상 · 흉상	8	A	
6913109020	식탁장식용품	8	A	
6913109090	기타	8	A	
6913901000	조각상 · 작은 조각상 · 흉상	8	A	
6913909020	식탁장식용품	8	A	
6913909090	기타	8	A	
6914101000	화분	8	A	
6914109000	기타	8	A	
6914901000	화분	8	A	
6914909000	기타	8	A	

7001001000	괴(塊)	5	A	
7001002000	웨이스트(waste) · 스크랩(scrap), 깨진 유리	3	A	
7002100000	구(球)	8	A	
700220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A	
7002209000	기타	8	A	
700231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A	
7002319000	기타	8	A	
70023200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1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A	
7002390000	기타	8	A	
700312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312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312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312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312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312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312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00319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319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319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319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319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319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319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00320000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8	A	
7003300000	프로파일(profile)	8	A	
70042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42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42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42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42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42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42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0049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49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49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49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49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49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49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005101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101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101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101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005102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102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102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102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005109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109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109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109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00521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21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21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21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21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21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21701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217020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521703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005291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A	
7005291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blank mask)용	3	A	
7005291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A	
7005291040	액정 디스플레이용	8	A	
7005291091	맑은 유리	8	A	
7005291092	저철분 유리	8	A	
7005291099	기타	8	A	
7005292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A	
7005292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blank mask)용	3	A	
7005292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A	
7005292091	맑은 유리	8	A	
7005292092	저철분 유리	8	A	
7005292099	기타	8	A	
7005293010	맑은 유리	8	A	
7005293020	저철분 유리	8	A	
7005293090	기타	8	A	
7005294010	맑은 유리	8	A	
7005294020	저철분 유리	8	A	
7005294090	기타	8	A	
7005295010	맑은 유리	8	A	
7005295020	저철분 유리	8	A	
7005295090	기타	8	A	
7005296010	맑은 유리	8	A	
7005296020	저철분 유리	8	A	
7005296090	기타	8	A	
7005297010	맑은 유리	8	A	
7005297020	저철분 유리	8	A	
7005297090	기타	8	A	
7005298010	맑은 유리	8	A	
7005298020	저철분 유리	8	A	

7005298090	기타	8	A	
7005299010	맑은 유리	8	A	
7005299020	저철분 유리	8	A	
7005299090	기타	8	A	
7005300000	망입(網入) 유리	8	A	
700600100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A	
700600200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blank mask)용	3	A	
700600300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A	
7006004000	액정 디스플레이용	8	A	
7006009000	기타	8	A	
700711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7112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00719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A	
7007192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007211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A	
700721200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A	
7007291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A	
700729200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A	
700800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8	A	
700910000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	A	
7009910000	틀이 붙지 않은 것	8	A	
7009920000	틀이 붙은 것	8	A	
7010100000	애플	8	A	
701020000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8	A	
7010900000	기타	8	A	
7011100000	전등용	8	A	
7011201000	천연색용	8	A	
7011209000	기타	8	A	
7011900000	기타	8	A	
7013100000	유리 도자제의 것	8	A	
701322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A	

7013280000	기타	8	A	
701333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A	
7013370000	기타	8	A	
70134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A	
70134200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8	A	
7013490000	기타	8	A	
70139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A	
7013990000	기타	8	A	
7014001000	실드빔 램프(sealed beam lamp)의 것	8	A	
7014009010	신호용 유리제품	8	A	
7014009020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	8	A	
7015100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8	A	
7015901000	선글라스용	8	A	
7015902000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것	8	A	
7015909000	기타	8	A	
701610000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8	A	
7016901000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8	A	
7016909010	레드라이트(leaded light)	8	A	
7016909020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8	A	
7016909090	기타	8	A	
7017100000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8	A	
70172000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A	
7017900000	기타	8	A	
7018101000	비드(bead)	8	A	
7018102000	모조 진주	8	A	

7018103000	모조 귀석과 반귀석	8	A	
7018104000	모조 산호	8	A	
7018109000	기타	8	A	
7018200000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8	A	
7018901000	유리안구(인체용은 제외한다)	8	A	
7018909000	기타	8	A	
7019110000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7019120000	로빙(roving)	8	A	
7019190000	기타	8	A	
7019310000	매트(mat)	8	A	
7019320000	얇은 시트(sheet)(보일)	8	A	
7019390000	기타	8	A	
7019400000	로빙(roving) 직물	8	A	
701951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8	A	
7019520000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7019590000	기타	8	A	
7019901000	글라스울(glass wool)	8	A	
7019909000	기타	8	A	
7020001011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	A	
7020001012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석영 도가니	3	A	
702000101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A	
7020001019	기타	8	A	
7020001090	기타	8	A	
7020009000	기타	8	A	
7101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	8	A	

7101102000	가공한 것	8	A	
7101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	8	A	
7101220000	가공한 것	8	A	
7102100000	선별하지 않은 것	1	A	
71022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	A	
7102290000	기타	5	A	
71023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1	A	
7102390000	기타	5	A	
7103100000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1	A	
7103911000	공업용	5	A	
7103919010	루비	5	A	
7103919020	사파이어	5	A	
7103919030	에메랄드	5	A	
7103991000	공업용	5	A	
7103999010	오팔	5	A	
7103999020	비취	5	A	
7103999030	옥수(玉髓)	5	A	
7103999040	수정	5	A	
7103999090	기타	5	A	
7104100000	압전기용 석영	5	A	
7104201000	다이아몬드	5	A	
7104209000	기타	5	A	
7104901010	다이아몬드	5	A	
7104901020	인조수정	5	A	
7104901090	기타	5	A	
7104909010	다이아몬드	5	A	
7104909090	기타	5	A	
7105101000	천연의 것	5	A	
7105102000	합성한 것	5	A	
7105901000	석류석의 것	5	A	
7105909000	기타	5	A	
7106100000	가루	3	A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A	
7106919000	기타	3	A	
710692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A	
7106922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3	A	
7106923000	선	3	A	
7106929000	기타	3	A	
710700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A	
7107002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3	A	
7107003000	선	3	A	
7107004000	관(管)과 중공(中空)봉	3	A	
7107009000	기타	3	A	
7108110000	가루	3	A	
7108121000	럼프(lump) · 빌릿(billet) · 알갱이	3	A	
7108129000	기타	3	A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	3	A	
7108131090	기타	3	A	
710813901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A	
7108139020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3	A	
7108139090	기타	3	A	
7108200000	화폐용	0	A	
710900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A	
7110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A	
7110190000	기타	3	A	
7110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A	
7110290000	기타	3	A	
71103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A	
7110390000	기타	3	A	
71104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A	
7110490000	기타	3	A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 · 은 ·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A	

711230000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2	A	
7112911000	잔재물의 것	2	A	
7112919000	기타	3	A	
7112921000	잔재물의 것	2	A	
7112929000	기타	3	A	
7112991000	잔재물의 것	2	A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 · 패어링(paring) · 스크랩(scrap)의 것	6.5	A	
7112999000	기타	3	A	
71131100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7113191000	백금으로 만든 것	8	A	
7113192000	금으로 만든 것	8	A	
7113199000	기타	8	A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8	A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8	A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8	A	
7113209000	기타	8	A	
7114111000	식탁용	8	A	
7114112000	화장실용	8	A	
711411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8	A	
7114114000	깍연용	8	A	
7114119000	기타	8	A	
7114191000	식탁용	8	A	
711419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8	A	
7114199000	기타	8	A	
7114201000	식탁용	8	A	
711420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8	A	
7114204000	깍연용	8	A	
7114209000	기타	8	A	
7115100000	축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7115901010	백금 도가니	8	A	
7115901090	기타	8	A	
7115909010	금으로 만든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A	
7115909020	은으로 만든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A	
7115909090	기타	8	A	
7116101000	천연진주로 만든 것	8	A	
7116102000	양식진주로 만든 것	8	A	
7116201000	공업용	8	A	
7116209010	신변장식용	8	A	
7116209090	기타	8	A	
7117110000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8	A	
7117191000	목걸이	8	A	
7117192000	팔찌	8	A	
7117193000	귀걸이	8	A	
7117194000	브로치	8	A	
7117195000	반지	8	A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8	A	
7117199000	기타	8	A	
7117900000	기타	8	A	
711810000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	A	
7118901000	금화	0	A	
7118902000	은화	0	A	
7118909000	기타	0	A	
7201101000	주물용	0	A	
7201102000	제강용	0	A	
7201109000	기타	0	A	
7201200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01500000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2	A	
72021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5	A	
7202190000	기타	5	A	
7202210000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2	A	

7202291000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	3	A	
7202299000	기타	3	A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5	A	
72024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2	A	
7202490000	기타	2	A	
720250000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2	A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3	A	
720270000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3	A	
720280000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3	A	
7202910000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3	A	
7202920000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3	A	
7202930000	페로니오븀(ferro-niobium)	3	A	
7202991000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A	
7202999000	기타	3	A	
720310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A	
7203900000	기타	1	A	
720410000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A	
7204290000	기타	0	A	
720430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204410000	선삭(旋削) · 세이빙(shaving) · 칩 · 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 · 톱밥 · 파일링(filing) · 트리밍(trimming) · 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A	
7204490000	기타	0	A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0	A	
7205101000	샷(shot)	5	A	
7205102000	그릿(grit)	5	A	
7205109000	기타	5	A	
7205210000	합금강의 것	3	A	

7205290000	기타	3	A	
7206100000	잉곳(ingot)	0	A	
7206900000	기타	0	A	
7207111000	블룸(bloom)	0	A	
7207112000	빌릿(billet)	0	A	
7207121000	슬래브	0	A	
7207122000	시트바(sheet bar)	0	A	
7207190000	기타	0	A	
7207201000	블룸(bloom)	0	A	
7207202000	빌릿(billet)	0	A	
7207203000	슬래브	0	A	
7207209000	기타	0	A	
7208101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A	
7208109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0825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8259000	기타	0	A	
720826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8269000	기타	0	A	
720827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8279000	기타	0	A	
720836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8369000	기타	0	A	
720837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8379000	기타	0	A	
720838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8389000	기타	0	A	
720839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8399000	기타	0	A	
720840000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0	A	
720851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8519000	기타	0	A	

720852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8529000	기타	0	A	
720853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8539000	기타	0	A	
720854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8549000	기타	0	A	
7208900000	기타	0	A	
720915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9159000	기타	0	A	
720916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9169000	기타	0	A	
720917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9179000	기타	0	A	
720918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9189000	기타	0	A	
720925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9259000	기타	0	A	
720926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9269000	기타	0	A	
720927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9279000	기타	0	A	
720928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09289000	기타	0	A	
7209900000	기타	0	A	
721011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A	
721012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1020000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0	A	
72103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10309000	기타	0	A	
7210410000	물결 모양의 것	0	A	
7210491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10491090	기타	0	A	

721049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10499090	기타	0	A	
721050000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0690000	기타	0	A	
7210701000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	A	
7210702000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	A	
72109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09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0909000	기타	0	A	
7211130000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0	A	
721114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11149000	기타	0	A	
721119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11199000	기타	0	A	
721123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11239000	기타	0	A	
721129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11299000	기타	0	A	
72119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11909000	기타	0	A	
7212101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A	
7212102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122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12209000	기타	0	A	
7212301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12301090	기타	0	A	
721230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12309090	기타	0	A	
7212401000	두께가 4.75mm 이상인 것	0	A	
7212402000	두께가 4.75mm 미만인 것	0	A	
72125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25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2509000	기타	0	A	
7212600000	클래드(clad)한 것	0	A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0	A	
7213200000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1391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0	A	
7213911090	기타	0	A	
7213919000	기타	0	A	
721399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0	A	
7213991090	기타	0	A	
7213999000	기타	0	A	
7214100000	단조(鍛造)한 것	0	A	
7214201000	철근	0	A	
7214209000	기타	0	A	
7214300000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14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0	A	
721499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	0	A	
7214999000	기타	0	A	
7215100000	괘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1550000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15900000	기타	0	A	
7216101000	유(U)형강	0	A	
7216102000	아이(I)형강	0	A	
7216103000	에이치(H)형강	0	A	
7216210000	엘(L)형강	0	A	

7216220000	티(T)형강	0	A	
7216310000	유(U)형강	0	A	
7216320000	아이(I)형강	0	A	
7216333000	높이가 300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16334000	높이가 300밀리미터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16335000	높이가 6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7216401000	엘(L)형강	0	A	
7216402000	티(T)형강	0	A	
721650000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166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0	A	
7216690000	기타	0	A	
72169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0	A	
7216990000	기타	0	A	
721710000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7217200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7301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7309000	기타	0	A	
7217900000	기타	0	A	
7218101000	잉곳(ingot)	0	A	
7218109000	기타	0	A	
7218911000	슬래브	0	A	
7218912000	시트바(sheet bar)	0	A	
7218919000	기타	0	A	
7218991000	블룸(bloom)	0	A	
7218992000	빌릿(billet)	0	A	
7218999000	기타	0	A	
72191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19111090	기타	0	A	
7219119000	기타	0	A	
72191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19121090	기타	0	A	
7219129000	기타	0	A	
72191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19131090	기타	0	A	
7219139000	기타	0	A	
72191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19141090	기타	0	A	
7219149000	기타	0	A	
72192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19211090	기타	0	A	
7219219000	기타	0	A	
72192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19221090	기타	0	A	
7219229000	기타	0	A	
72192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19231090	기타	0	A	
7219239000	기타	0	A	
72192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19241090	기타	0	A	
7219249000	기타	0	A	
72193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19311090	기타	0	A	
7219319000	기타	0	A	
72193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19321090	기타	0	A	
7219329000	기타	0	A	
72193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19331090	기타	0	A	
7219339000	기타	0	A	
72193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19341090	기타	0	A	
7219349000	기타	0	A	

721935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19351090	기타	0	A	
7219359000	기타	0	A	
72199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19901090	기타	0	A	
7219909000	기타	0	A	
72201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20111090	기타	0	A	
7220119000	기타	0	A	
72201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20121090	기타	0	A	
7220129000	기타	0	A	
72202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20201090	기타	0	A	
7220209000	기타	0	A	
72209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A	
7220901090	기타	0	A	
7220909000	기타	0	A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22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A	
7222190000	기타	0	A	
722220000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22300000	그 밖의 봉	0	A	
7222400000	형강(形鋼)	0	A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0	A	
7224101000	잉곳(ingot)	0	A	
7224109000	기타	0	A	
7224901000	블룸(bloom)	0	A	
7224902000	빌릿(billet)	0	A	
7224903000	슬래브	0	A	

7224904000	시트바(sheet bar)	0	A	
7224909000	기타	0	A	
7225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A	
7225190000	기타	0	A	
7225301000	고속도강의 것	0	A	
722530901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25309091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	A	
7225309092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	A	
7225309099	기타	0	A	
7225401000	고속도강의 것	0	A	
722540901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25409091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	A	
7225409092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	A	
7225409099	기타	0	A	
7225501000	고속도강의 것	0	A	
7225509000	기타	0	A	
7225911000	고속도강의 것	0	A	
722591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25919090	기타	0	A	
7225921000	고속도강의 것	0	A	
7225929011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25929019	기타	0	A	
7225929091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A	
7225929099	기타	0	A	
7225991000	고속도강의 것	0	A	
7225999000	기타	0	A	
7226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A	
7226190000	기타	0	A	

7226200000	고속도강의 것	0	A	
7226911000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	A	
7226912000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	A	
7226919000	기타	0	A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A	
7226991000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미크론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26992000	아연을 전해도금이나 전해 도포한 것	0	A	
7226993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이나 도포한 것	0	A	
7226999000	기타	0	A	
7227100000	고속도강의 것	0	A	
7227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A	
7227901000	내열강의 것	0	A	
7227909010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이고 전 중량의 100분의 0.003 미만의 것	0	A	
7227909020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3 이상의 것	0	A	
7227909090	기타	0	A	
7228100000	고속도강의 봉	0	A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0	A	
7228301000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0	A	
7228309000	기타	0	A	
7228401000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0	A	
7228409000	기타	0	A	
722850000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28601000	철근(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0	A	
7228609000	기타	0	A	
7228701010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0	A	
7228701090	기타	0	A	

7228709000	기타	0	A	
7228800000	중공(中空)드릴봉	0	A	
7229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A	
7229901010	고속도강의 것	0	A	
7229901090	기타	0	A	
7229902010	고속도강의 것	0	A	
7229902090	기타	0	A	
7229909010	고속도강의 것	0	A	
7229909090	기타	0	A	
7301101000	유(U)형	0	A	
7301109000	기타	0	A	
7301201000	유(U)형강	0	A	
7301202000	에이치(H)형강	0	A	
7301203000	아이(I)형강	0	A	
7301209000	기타	0	A	
7302101010	열처리한 것	0	A	
7302101090	기타	0	A	
7302102010	열처리한 것	0	A	
7302102090	기타	0	A	
7302103010	열처리한 것	0	A	
7302103090	기타	0	A	
7302104010	열처리한 것	0	A	
7302104090	기타	0	A	
730230000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8	A	
73024000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0	A	
7302900000	기타	0	A	
7303001010	구상흑연 주철로 만든 것	8	A	
7303001090	기타	8	A	
73030020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A	
730411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A	

7304190000	기타	0	A	
730422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0	A	
7304230000	그 밖의 드릴파이프	0	A	
7304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04290000	기타	0	A	
73043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A	
7304390000	기타	0	A	
73044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A	
7304490000	기타	0	A	
73045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A	
7304590000	기타	0	A	
7304900000	기타	0	A	
7305111000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 초과 1,422.4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305112000	바깥지름이 1,422.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730512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05190000	기타	0	A	
7305200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0	A	
7305311000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0	A	
7305312000	전기저항 용접한것	0	A	
7305319000	기타	0	A	
7305390000	기타	0	A	
7305900000	기타	0	A	
7306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06190000	기타	0	A	
7306211000	케이싱	0	A	
7306212000	튜브	0	A	
7306291000	케이싱	0	A	
7306292000	튜브	0	A	
7306301010	아연도금한 것	0	A	
7306301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	A	
7306301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A	

7306301090	기타	0	A	
7306302010	아연도금한 것	0	A	
7306302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	A	
7306302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A	
7306302090	기타	0	A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306500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06611010	아연도금한 것	0	A	
7306611090	기타	0	A	
730661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A	
730661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A	
7306691010	아연도금한 것	0	A	
7306691090	기타	0	A	
730669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A	
730669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A	
7306901000	이중관(double wall) 강관	0	A	
7306909000	기타	0	A	
730711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8	A	
7307190000	기타	8	A	
7307210000	플랜지(flange)	8	A	
73072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0	A	
7307229000	기타	8	A	
73072300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8	A	
7307290000	기타	8	A	
7307910000	플랜지(flange)	8	A	
73079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철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0	A	
7307929000	기타	8	A	
7307930000	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8	A	
7307991000	나선가공한 것(도금여부에 상관없다)	8	A	

7307999000	기타	8	A	
7308100000	다리와 교량	0	A	
7308200000	탑과 격자주(格子柱)	8	A	
7308300000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A	
7308400000	비계(飛階) · 차단기 · 지주 · 광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8	A	
7308901000	수문	0	A	
7308909000	기타	0	A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8	A	
7310210000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8	A	
7310290000	기타	8	A	
7311001000	용적이 30리터 이하인 것	8	A	
7311002000	용적이 3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인 것	8	A	
7311003000	용적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것	8	A	
7312101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A	
7312101019	기타	0	A	
7312101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A	
7312101092	스틸타이어 코드	0	A	
7312101099	기타	0	A	
7312102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A	
7312102019	기타	0	A	
7312102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A	
7312102092	스틸타이어 코드	0	A	
7312102099	기타	0	A	
7312900000	기타	0	A	
7313001000	유자선(有刺銃)	0	A	
7313009000	기타	0	A	

7314120000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14140000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14190000	기타	0	A	
7314200000	그릴 · 망 ·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143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314390000	기타	0	A	
73144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3144200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A	
7314490000	기타	0	A	
731450000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0	A	
7315110000	롤러체인(roller chain)	8	A	
7315120000	그 밖의 체인	8	A	
7315190000	부분품	8	A	
7315200000	스키드체인(skid chain)	8	A	
7315810000	스터드링크(stud-link)	8	A	
73158200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8	A	
7315890000	기타	8	A	
7315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A	
7316001000	닳	8	A	
7316002000	부분품	8	A	
7317001011	도금 · 도포 · 페인트한 것	0	A	
7317001019	기타	0	A	
7317001021	도금 · 도포 · 페인트한 것	0	A	
7317001029	기타	0	A	
7317002000	압정	0	A	
7317003000	제도용과 사무용 핀	0	A	
7317004000	파형 못	0	A	
7317005000	스테인플	0	A	

7317009000	기타	0	A	
7318110000	코치 스크루(coach screw)	8	A	
7318120000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8	A	
7318130000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8	A	
7318140000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8	A	
7318151000	머신스크루(screw)	8	A	
7318152000	볼트(bolt)	8	A	
7318153000	볼트(bolt) · 너트(nut)(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8	A	
7318159000	기타	8	A	
7318160000	너트(nut)	8	A	
7318190000	기타	8	A	
7318210000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8	A	
7318220000	그 밖의 와셔(washer)	8	A	
7318230000	리벳(rivet)	8	A	
7318240000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8	A	
7318290000	기타	8	A	
7319401000	안전핀	8	A	
7319402000	반도체 웨이퍼 · 반도체 디바이스의 측정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핀	8	A	
7319409000	기타	8	A	
7319901010	수봉침	8	A	
7319901020	수편침	8	A	
7319901090	기타	8	A	
7319909000	기타	8	A	
7320101000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8	A	
7320102000	기관차 · 철도 차량용 판상 스프링	8	A	
7320109000	기타	8	A	
7320201000	자동차용	8	A	
7320202000	충격 흡수용	8	A	
7320203000	철도차량 연계완충기용	8	A	
7320204000	가구용	8	A	

7320209000	기타	8	A	
7320901000	평나선형 스프링	8	A	
7320909000	그 밖의 스프링	8	A	
73211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검용	8	A	
7321120000	액체연료용	8	A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8	A	
73218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검용	8	A	
7321820000	액체연료용	8	A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8	A	
7321900000	부분품	8	A	
7322111000	방열기	8	A	
7322112000	부분품	8	A	
7322191000	방열기	8	A	
7322192000	부분품	8	A	
732290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8	A	
7322909010	공기가열기	8	A	
7322909020	온풍배분기	8	A	
7322909030	부분품	8	A	
732310000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A	
732391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8	A	
732392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8	A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A	
73239400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8	A	
7323990000	기타	8	A	
7324101000	설거지통	8	A	
7324102000	세면대	8	A	
7324210000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7324291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A	
7324299000	기타	8	A	
7324901000	화장용 세트	8	A	
7324908000	기타	8	A	

7324909000	부분품	8	A	
732510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8	A	
73259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A	
7325991000	주철로 만든 것	8	A	
7325992000	주강으로 만든 것	8	A	
7325993000	합금강으로 만든 것	8	A	
7325999000	기타	8	A	
73261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A	
7326190000	기타	8	A	
732620000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8	A	
7326901000	방직기계용 보빈(bobbin)	8	A	
7326909000	기타	8	A	
7401001000	구리의 매트(mat)	0	A	
7401002000	시멘트동(침전동)	0	A	
7402001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0	A	
7402002000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0	A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3	A	
7403120000	와이어바(wire-bar)	5	A	
7403130000	빌릿(billet)	5	A	
7403191000	슬래브	5	A	
7403192000	잉곳(ingot)	5	A	
7403199000	기타	5	A	
7403210000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5	A	
7403220000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5	A	
7403291010	구리-니켈의 합금(백동)	5	A	
7403291020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5	A	
7403299000	기타	5	A	
740400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40500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5	A	
740610000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8	A	
7406201000	층상조직인 가루	8	A	
7406202000	플레이크(flake)	8	A	

7407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A	
7407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A	
7407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A	
740729201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A	
740729202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A	
7407299000	기타	8	A	
7408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408190000	기타	8	A	
7408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A	
7408221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A	
7408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A	
7408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A	
7408299000	기타	8	A	
7409111000	반도체 제조용	5	A	
7409119000	기타	8	A	
7409191000	반도체 제조용	5	A	
7409199000	기타	8	A	
7409211000	반도체 제조용	5	A	
7409219000	기타	8	A	
7409291000	반도체 제조용	5	A	
7409299000	기타	8	A	
7409311000	반도체 제조용	5	A	
7409319000	기타	8	A	
7409391000	반도체 제조용	5	A	
7409399000	기타	8	A	
7409401010	반도체 제조용	5	A	
7409401090	기타	8	A	
7409402010	반도체 제조용	5	A	
7409402090	기타	8	A	
7409901000	반도체 제조용	5	A	
7409909000	기타	8	A	
741011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A	

741012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8	A	
741021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8	A	
7410219000	기타	8	A	
741022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8	A	
7410229000	기타	8	A	
7411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A	
7411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A	
7411221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A	
7411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A	
7411291000	구리 - 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A	
7411299000	기타	8	A	
7412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	A	
741220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3	A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3	A	
7415101000	귀금속을 도금 · 피복 · 도포한 것	8	A	
7415109000	기타	8	A	
7415210000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8	A	
7415290000	기타	8	A	
7415330000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8	A	
7415390000	기타	8	A	
7418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A	
7418109010	식탁용품 · 주방용품	8	A	
741810902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5	A	
7418109030	기타 가정용 물품	8	A	
7418109091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용	5	A	
7418109099	기타	8	A	
7418201000	위생용품	8	A	
7418202000	부분품	8	A	

7419101000	체인	8	A	
7419102000	부분품	8	A	
7419910000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419991010	클로스(cloth)	8	A	
7419991090	기타	8	A	
7419992000	구리로 만든 스프링	8	A	
7419999000	기타	8	A	
7501100000	니켈의 매트(mat)	0	A	
7501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	A	
7501201090	기타	0	A	
7501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	A	
7501209090	기타	0	A	
7502101000	음극	3	A	
7502109000	기타	3	A	
7502200000	니켈 합금	3	A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504001000	가루	5	A	
7504002000	플레이크(flake)	5	A	
7505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A	
7505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A	
75052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A	
75052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A	
75061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3	A	
7506102000	박(箔)	5	A	
75062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5	A	
7506202000	박(箔)	5	A	
7507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8	A	
7507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8	A	
7507200000	관(管) 연결구류	8	A	
750810000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8	A	
75089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A	

75089020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A	
75089020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8	A	
7508909000	기타	8	A	
76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1	A	
7601201000	캐스팅 엘로이(casting alloy)	1	A	
7601202000	빌릿(billet)	3	A	
7601209000	기타	1	A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60310000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8	A	
7603201000	가루	8	A	
7603202000	플레이크(flake)	8	A	
7604101000	봉	8	A	
760410201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A	
7604102090	기타	8	A	
7604210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A	
7604291000	봉	8	A	
7604299000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	8	A	
7605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605190000	기타	8	A	
76052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7605290000	기타	8	A	
7606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A	
7606119000	기타	8	A	
76061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A	
76069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A	
7606919000	기타	8	A	
76069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A	
7607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A	
7607119000	기타	8	A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A	
7607199000	기타	8	A	
760720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A	

7607209000	기타	8	A	
7608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A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A	
7609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8	A	
7610100000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A	
7610901000	구조물	8	A	
7610908000	기타	8	A	
7610909000	부분품	8	A	
7611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7612100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8	A	
7612901000	경질의 튜브형 용기	8	A	
7612909010	용적이 1리터 미만인 것	8	A	
7612909020	용적이 1리터 이상 20리터 미만인 것	8	A	
7612909030	용적이 20리터 이상인 것	8	A	
7613001000	압축가스용	8	A	
7613002000	액화가스용	8	A	
7614100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8	A	
7614900000	기타	8	A	
7615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A	
761510901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5	A	
7615109020	식탁용품 · 주방용품	8	A	
7615109030	그 밖의 가정용 물품	8	A	
7615109090	부분품	8	A	
7615201000	위생용품	8	A	
7615202000	부분품	8	A	

7616100000	못 · 압정 · 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 ·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 스크루 훅(screw hook) · 리벳(rivet) · 코터(cotter) · 코터핀(cotter-pin) · 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A	
7616910000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 그릴 · 망 · 울타리	8	A	
7616991000	보빈(bobbin)	8	A	
7616999010	알루미늄 파우치(pouch)	8	A	
7616999020	알루미늄 노브(knob)	8	A	
7616999090	기타	8	A	
7801101000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A	
7801109000	기타	3	A	
78019100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3	A	
7801991000	정제하지 않은 납	1	A	
7801992010	납-주석 합금	3	A	
7801992090	기타	3	A	
780200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804111000	시트(sheet) · 스트립	8	A	
7804112000	박(箔)	8	A	
7804190000	기타	8	A	
7804201000	가루	8	A	
7804202000	플레이크(flake)	8	A	
7806001000	납으로 만든 용기	8	A	
7806002000	전기도금용 양극	8	A	
7806003010	봉	8	A	
7806003020	프로파일(profile)	8	A	
7806003030	선(線)	8	A	
7806004000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8	A	
7806009000	기타	8	A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A	
790112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3	A	
7901201000	아연-알루미늄 합금	3	A	

7901209000	기타	3	A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903100000	아연 더스트(dust)	8	A	
7903901000	가루	8	A	
7903902000	플레이크(flake)	8	A	
7904001000	봉	8	A	
7904002000	프로파일(profile)	8	A	
7904003000	선(線)	8	A	
7905001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8	A	
7905002000	박(箔)	8	A	
7907001000	아연으로 만든 홈통 · 지붕덮개 · 채광 창틀과 그 밖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8	A	
7907002010	관(管)	8	A	
7907002020	관(管) 연결구류	8	A	
7907009010	전기도금용 양극	8	A	
7907009090	기타	8	A	
80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주석	2	A	
8001200000	주석 합금	3	A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003001010	합금하지 않은 것	8	A	
8003001090	기타	8	A	
8003002010	합금하지 않은 것	8	A	
8003002090	기타	8	A	
80070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A	
8007002000	판 · 시트(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8007003010	박(箔)	8	A	
8007003021	가루	8	A	
8007003022	플레이크(flake)	8	A	
8007004000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8	A	
8007009000	기타	8	A	

8101100000	가루	3	A	
8101940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3	A	
8101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8	A	
8101969000	기타	8	A	
8101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01991010	붕	8	A	
8101991020	프로파일(profile)	8	A	
810199103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8	A	
8101991040	박(箔)	8	A	
8101999000	기타	8	A	
8102100000	가루	3	A	
8102940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3	A	
8102951000	붕	8	A	
8102952000	프로파일(profile)	8	A	
8102953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8	A	
8102954000	박(箔)	8	A	
8102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8	A	
8102969000	기타	8	A	
8102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02990000	기타	8	A	
8103201000	괴(塊)	3	A	
8103202000	가루	3	A	
8103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03900000	기타	8	A	
8104110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3	A	
8104190000	기타	3	A	
8104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04301000	줄밥(rasping) · 연삭설(tuning) · 알갱이	8	A	
8104302000	가루	8	A	
8104901000	붕	8	A	
8104909000	기타	8	A	
8105201000	괴(塊)	3	A	

810520200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 생산물	3	A	
8105203000	가루	2	A	
8105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8105900000	기타	3	A	
8106001010	괴(塊)	3	A	
81060010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8106001030	가루	3	A	
8106009000	기타	3	A	
8107201000	괴(塊)	3	A	
8107202000	가루	3	A	
8107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8107900000	기타	3	A	
8108201000	괴(塊)	2	A	
8108202000	가루	3	A	
8108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8108901000	판과 스트립	8	A	
8108902000	관	8	A	
8108909000	기타	8	A	
8109201000	괴(塊)	3	A	
8109202000	가루	3	A	
8109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8109901010	관	0	A	
810990102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0	A	
8109901030	봉	0	A	
8109901090	기타	0	A	
8109909000	기타	3	A	
811010000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3	A	
8110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8110900000	기타	3	A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 다]	2	A	

8112120000	괴(塊), 가루	3	A	
811213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8112190000	기타	3	A	
8112210000	괴(塊), 가루	3	A	
81122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8112290000	기타	3	A	
8112510000	괴(塊), 가루	3	A	
81125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A	
8112590000	기타	3	A	
8112921000	게르마늄	3	A	
8112922000	바나듐	3	A	
8112923000	갈륨	3	A	
8112924000	하프늄	3	A	
8112925000	인듐	3	A	
8112926000	니오븀(컬럼븀)	3	A	
8112927000	레늄	3	A	
8112929000	기타	3	A	
8112991000	게르마늄	3	A	
8112992000	바나듐	3	A	
8112993000	갈륨	3	A	
8112994000	하프늄	3	A	
8112995000	인듐	3	A	
8112996000	니오븀(컬럼븀)	3	A	
8112997000	레늄	3	A	
8112999000	기타	3	A	
811300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3	A	
8201100000	가래와 삽	8	A	
8201300000	곡괭이 · 픽스(picks) · 괭이 · 쇠스랑	8	A	
8201400000	도끼 · 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8	A	
8201500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8	A	

820160000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 · 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8	A	
8201901000	낫	8	A	
8201904000	포크	8	A	
8201909000	기타	8	A	
8202101000	목재용	8	A	
8202102000	금속용	8	A	
8202109000	기타	8	A	
8202200000	띠톱의 날	8	A	
8202310000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8	A	
8202391000	작용하는 부분이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8	A	
8202392010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를 개별 단위로 절단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것	8	A	
8202392090	기타	8	A	
8202393000	작용하는 부분이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A	
8202399000	부분품	8	A	
8202400000	체인톱의 날	8	A	
8202911000	쇠톱의 날	8	A	
8202919000	기타	8	A	
8202991000	사파이어 잉곳(ingot) 절단용	5	A	
8202999000	기타	8	A	
8203101000	톱날용	8	A	
8203109000	기타	8	A	
820320100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8	A	
8203202000	집게	8	A	
8203203000	핀셋	8	A	
8203209000	기타	8	A	
820330000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8	A	
8203401000	파이프커터(pipe-cutter)	8	A	
8203402000	볼트크로퍼(bolt cropper)와 클리퍼	8	A	
8203403000	천공펀치	8	A	
8203409000	기타	8	A	

8204110000	조절할 수 없는 것	8	A	
8204120000	조절할 수 있는 것	8	A	
820420000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8205101000	드릴링용	8	A	
8205102000	드레딩(threading)용	8	A	
8205103000	태핑용(tapping)	8	A	
8205109000	기타	8	A	
8205200000	망치(hammer, sledge hammer)	8	A	
8205300000	목재 가공용 대패 · 끌 ·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8	A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8	A	
8205510000	가정용 공구	8	A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8	A	
8205592000	땀인두	8	A	
8205593000	그리스 건(grease gun)	8	A	
8205595000	광산용과 토목공사용 공구	8	A	
8205596000	미장용과 도장용 공구	8	A	
8205597000	시계 제조용 공구	8	A	
8205599000	기타	8	A	
8205600000	블로램프(blow lamp)	8	A	
8205701000	바이스(vice)	8	A	
8205702000	클램프(clamp)	8	A	
8205709000	기타	8	A	
8205901000	모루	8	A	
8205902000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	8	A	
8205909010	이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	8	A	
8205909090	기타	8	A	
8206000000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	A	
8207130000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	A	
8207191000	작용하는 부분을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A	
8207199000	부분품	8	A	

8207201000	인발(引拔)용	8	A	
8207202000	압출용	8	A	
8207301000	프레싱(pressing)용	8	A	
8207302000	스탬핑(stamping)용	8	A	
8207303000	펀칭(punching)용	8	A	
8207309000	기타	8	A	
8207401000	태핑(tapping)용	8	A	
8207402000	드레딩(threading)용	8	A	
8207409000	기타	8	A	
8207501010	고속도강으로 만든 것	8	A	
8207501090	기타	8	A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brace bit)	8	A	
8207509000	기타	8	A	
8207601000	리머(reamer)	8	A	
8207603000	브로치(broach)	8	A	
8207609000	기타	8	A	
8207701000	기어커터	8	A	
8207702000	밀링커터	8	A	
8207703000	기어커팅 호브(gear cutting hob)	8	A	
8207704000	로터리파일	8	A	
8207709000	기타	8	A	
8207801000	선반용 공구	8	A	
8207809000	기타	8	A	
8207901000	다이아몬드 공구	8	A	
8207909000	기타	8	A	
8208100000	금속 가공용	8	A	
8208200000	목재 가공용	8	A	
820830000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8	A	
8208400000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기계의 것	8	A	
8208900000	기타	8	A	
8209001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으로 코팅 처리된 것	8	A	
8209001050	티타늄의 것	8	A	

8209001090	기타	8	A	
8209002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8	A	
8209002050	티타늄의 것	8	A	
8209002090	기타	8	A	
8210001000	분쇄기·마쇄기	8	A	
8210002000	추출기·압착기	8	A	
8210003000	비터(beater)·믹서	8	A	
8210004000	세절기·커터	8	A	
8210005000	오프너·코르크·실러	8	A	
8210008000	그 밖의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8	A	
8210009000	부분품	8	A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8	A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	A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8	A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8	A	
8211940000	칼날	8	A	
821195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8	A	
8212100000	면도기	8	A	
821220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	A	
8212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A	
8213001000	가정용·사무용 가위	8	A	
8213002010	재단용 가위	8	A	
8213002020	이발용 가위	8	A	
8213002090	기타	8	A	
8213003000	매니큐어용 가위	8	A	
8213004000	가위날	8	A	
8213009000	기타	8	A	
8214101000	연필깎이	8	A	
8214109000	기타	8	A	
821420000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	A	

8214901000	이발기	8	A	
8214902000	정육점이나 주방용 칼붙이와 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	8	A	
8214909000	기타	8	A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8	A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8	A	
8215911000	스푼	8	A	
8215912000	포크	8	A	
821591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8	A	
821591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A	
8215915000	각종 집게	8	A	
8215919000	기타	8	A	
8215991000	스푼	8	A	
8215992000	포크	8	A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8	A	
821599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A	
8215995000	각종 집게	8	A	
8215999000	기타	8	A	
8301100000	자물쇠	8	A	
830120000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8	A	
830130000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8	A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8	A	
8301401090	기타	8	A	
8301409000	기타	8	A	
8301500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8	A	
8301600000	부분품	8	A	
8301700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8	A	
8302100000	경첩	8	A	
8302200000	카스터(caster)	8	A	
83023000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A	

8302411000	문 · 창에 적합한 것	8	A	
8302419000	기타	8	A	
8302420000	기타(가구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8302491000	트렁크 · 슈트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여행용구에 적합한 것	8	A	
8302499000	기타	8	A	
8302500000	모자걸이 · 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	A	
8302600000	자동도어 폐지기	8	A	
8303001000	금고	8	A	
8303009000	기타	8	A	
8304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 · 카드인덱스함 · 페이퍼 트레이(paper tray) · 페이퍼 레스트(paper rest) · 펜 트레이(pen tray) ·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	A	
830510000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8	A	
830520000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8	A	
8305900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A	
8306100000	벨 · 징과 이와 유사한 것	8	A	
83062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	A	
8306290000	기타	8	A	
8306301000	사진틀 · 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8	A	
8306302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	A	
8307100000	철강으로 만든 것	8	A	
830790000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A	
8308101000	훅(hook)	8	A	
8308102000	아이(eye) · 아일릿(eyelet)	8	A	
830820000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8	A	
8308901000	걸쇠나 걸쇠가 붙은 프레임	8	A	
8308902000	버클(buckle)이나 버클(buckle)걸쇠	8	A	
8308903000	구슬	8	A	
8308904000	스팽글(spangle)	8	A	

8308909000	기타	8	A	
830910000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8	A	
8309901000	캔뚜껑(E.O.E)	8	A	
8309909000	기타	8	A	
8310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8	A	
8311101000	반도체 제조용	8	A	
8311109000	기타	8	A	
8311201000	반도체 제조용	8	A	
8311209000	기타	8	A	
8311301000	반도체 제조용	8	A	
8311309010	납-주석 합금의 땀납	8	A	
8311309090	기타	8	A	
8311901000	반도체 제조용	8	A	
8311909000	기타	8	A	
8401100000	원자로	0	A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0	A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0	A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0	A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8	A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8	A	
8402191000	열매체보일러	8	A	
8402199000	기타	8	A	
840220000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	A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5	A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5	A	
8403101000	유류를 사용하는 것	8	A	
8403102000	석탄을 사용하는 것	8	A	
8403103000	가스를 사용하는 것	8	A	
8403109000	기타	8	A	
8403900000	부분품	8	A	

8404101000	연료절약기	5	A	
8404102000	과열기	5	A	
8404103000	그을음제거기	5	A	
8404104000	가스회수기	5	A	
8404109000	기타	5	A	
8404200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5	A	
8404901000	보일러용 응축기의 것	5	A	
8404902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것	5	A	
8404909000	기타	5	A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8	A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8	A	
8405104000	산소 발생기	8	A	
8405109000	기타	8	A	
84059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의 것	8	A	
8405902000	수성가스 발생기의 것	8	A	
8405904000	산소 발생기의 것	8	A	
8405909000	기타	8	A	
8406100000	선박추진용 터빈	5	A	
8406811000	출력이 40메가와트 초과 10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A	
8406812000	출력이 100메가와트 초과 30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A	
8406813000	출력이 3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A	
8406820000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A	
8406901000	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	8	A	
8406909000	기타	5	A	
8407100000	항공기용 엔진	0	A	
8407210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	8	A	
8407290000	기타	8	A	
840731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A	
8407319000	기타	8	A	
840732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A	
8407329000	기타	8	A	
840733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A	

8407339000	기타	8	A	
840734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A	
8407349000	기타	8	A	
8407901000	철도차량용	0	A	
8407909000	기타	8	A	
8408101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A	
8408102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A	
8408103000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A	
8408201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8	A	
8408202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8	A	
8408203000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 초과 4,000시시 이하인 것	8	A	
8408204000	실린더용량이 4,000시시 초과 10,000시시 이하인 것	8	A	
8408205000	실린더용량이 10,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	A	
8408901010	철도용 기관차의 내연기관	0	A	
8408901090	기타	5	A	
8408909010	선박용 내연기관	8	A	
8408909021	출력이 40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기용[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500이나 1,800인 것으로 한정한다]	4	A	
8408909029	기타	8	A	
8408909030	제8429호용 내연기관	8	A	
8408909090	기타	8	A	
8409100000	항공기 엔진용	5	A	
8409911000	제87류의 차량용	8	A	
8409912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의 것	8	A	
8409919000	기타	8	A	
8409991000	철도차량용	5	A	
8409992000	제87류의 차량용	8	A	
8409993010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A	
840999302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A	
8409993030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	8	A	
8409999010	발전용	8	A	

8409999090	기타	8	A	
8410111000	수력터빈	0	A	
8410119000	기타	8	A	
8410120000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0	A	
8410130000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A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0	A	
8410901090	기타	8	A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0	A	
8410909090	기타	8	A	
8411111000	항공기용	3	A	
8411119010	선박용	8	A	
8411119090	기타	8	A	
8411121000	항공기용	3	A	
8411129010	선박용	8	A	
8411129090	기타	8	A	
8411211000	항공기용	3	A	
8411219010	선박용	8	A	
8411219090	기타	8	A	
8411221000	항공기용	3	A	
8411229010	선박용	8	A	
8411229090	기타	8	A	
8411811000	항공기용	3	A	
8411819010	선박용	8	A	
8411819090	기타	8	A	
8411821000	항공기용	3	A	
8411829010	선박용	8	A	
8411829090	기타	5	A	
8411911000	항공기용	3	A	
8411919000	기타	8	A	
8411991000	항공기용	3	A	
8411999000	기타	5	A	
8412101000	항공기의 것	5	A	

8412109000	기타	8	A	
8412211000	액압실린더	8	A	
8412219000	기타	8	A	
8412290000	기타	8	A	
84123100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8	A	
8412390000	기타	8	A	
8412800000	기타	8	A	
8412901010	램제트나 펄스제트 엔진의 것	5	A	
8412901090	기타	5	A	
8412902000	수력엔진의 것	0	A	
8412909000	기타	5	A	
8413110000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8	A	
8413190000	기타	8	A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 한다)	8	A	
8413301000	항공기용	8	A	
8413302000	철도용 기관차용	8	A	
8413303000	선박용	8	A	
8413304000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8	A	
8413309000	기타	8	A	
8413400000	콘크리트 펌프	8	A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8	A	
8413509010	플런저펌프	8	A	
8413509020	피스톤펌프	8	A	
8413509030	다이아프램펌프	8	A	
8413509090	기타	8	A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8	A	
8413609010	기어펌프	8	A	
8413609020	베인펌프	8	A	
8413609030	스크루펌프	8	A	
8413609090	기타	8	A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8	A	
8413709010	터빈펌프	8	A	
8413709020	볼류트 펌프	8	A	
8413709090	기타	8	A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8	A	
8413819000	기타	8	A	
8413820000	액체엘리베이터	8	A	
8413911000	급유용 펌프의 것	8	A	
8413912000	내연기관의 것	8	A	
8413913000	왕복펌프의 것	8	A	
8413914000	원심펌프의 것	8	A	
8413915000	로터리펌프의 것	8	A	
8413919000	기타	8	A	
8413920000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8	A	
8414101000	항공기용	8	A	
84141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	A	
84141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0	A	
8414109090	기타	8	A	
8414200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8	A	
8414301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A	
8414302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A	
8414400000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8	A	
8414511000	항공기용	8	A	
8414519000	기타	8	A	
8414591000	항공기용	8	A	
8414592000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3.25	A	
8414599000	기타	8	A	
8414601000	항공기용	8	A	
8414609000	기타	8	A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8414809110	항공기용	8	A	
8414809190	기타	8	A	
841480921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8	A	
841480922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8	A	
8414809230	사용동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8	A	
8414809900	기타	8	A	
8414901000	팬과 후드의 것	8	A	
8414909010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것	8	A	
841490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은 제외한다)	8	A	
8414909090	기타	8	A	
8415101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A	
8415101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A	
8415102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A	
8415102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A	
8415109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A	
8415109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A	
841520000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8	A	
841581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8	A	
841582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841583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8	A	
8415900000	부분품	8	A	
841610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8	A	
841610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초과 1,500리터 미만인 것	8	A	
841610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리터 이상인 것	8	A	
8416201000	잘게 부순 고체연료용	8	A	
8416202000	기체연료용	8	A	
8416209000	기타	8	A	

8416300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	A	
8416901000	노용 버너의 것	8	A	
8416909000	기타	8	A	
8417101010	철광석용	8	A	
8417101090	기타	8	A	
8417102010	철강용	8	A	
8417102090	기타	8	A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8	A	
8417801010	시멘트용	8	A	
8417801020	유리용	8	A	
8417801030	도자기용	8	A	
8417801090	기타	8	A	
8417802000	이화학용	8	A	
8417809000	기타	5	A	
8417900000	부분품	5	A	
8418101010	용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8	A	
8418101020	용량이 200리터 초과 400리터 이하인 것	8	A	
8418101030	용량이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8	A	
8418109000	기타	8	A	
8418211000	용량이 200리터 미만인 것	8	A	
8418212000	용량이 200리터 이상 400리터 미만인 것	8	A	
8418213000	용량이 400리터 이상인 것	8	A	
841829100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	A	
8418299000	기타	8	A	
841830000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8418501000	쇼케이스	8	A	
8418509000	기타	8	A	
8418610000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	A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8	A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8	A	
8418692020	아이스큐버	8	A	
8418692030	냉수기	8	A	
8418692090	기타	8	A	
8418693000	열펌프	8	A	
84189100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8	A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8	A	
8418999000	기타	8	A	
8419110000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8	A	
8419190000	기타	5	A	
8419200000	내과용 · 외과용 · 실험실용 살균기	0	A	
8419310000	농산물용	8	A	
8419320000	목재용 · 제지펄프용 · 종이용 · 판지용	8	A	
841939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핀 드라이어	3	A	
8419399000	기타	5	A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8	A	
8419501000	항공기용	8	A	
841950200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	A	
8419509000	기타	8	A	
8419600000	기체 액화용 기기	5	A	
841981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8	A	
841989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8	A	
8419899010	가열기	8	A	
8419899020	냉각기	5	A	
8419899030	증발기	5	A	
8419899040	응축기	5	A	
8419899050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8	A	
8419899060	고온항온기 · 저온항온기	8	A	
8419899070	항온항습기	8	A	
8419899080	공기조절기	8	A	
8419899090	기타	5	A	

841990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의 것	8	A	
841990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5	A	
841990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8	A	
841990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8	A	
8419909040	내과용 · 외과용 · 실험실용 살균장치의 것	0	A	
8419909090	기타	5	A	
8420101000	제지용	8	A	
8420102000	직물용	8	A	
8420103000	가죽용	8	A	
8420104000	고무용 · 플라스틱용	8	A	
8420105000	인쇄회로기판이나 인쇄회로 제조용	0	A	
8420109000	기타	8	A	
8420910000	실린더	8	A	
8420990000	기타	8	A	
8421110000	크림분리기	8	A	
8421120000	의류탈수기	8	A	
8421191000	내과용 · 외과용 · 이화학용	8	A	
8421192000	식품공업용	8	A	
8421193000	석유화학공업용	8	A	
8421199000	기타	8	A	
8421211000	가정형	5	A	
8421219010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5	A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3	A	
8421219090	기타	5	A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8	A	
842123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A	
8421232000	항공기용	8	A	
8421239000	기타	8	A	
8421291000	낙농용	8	A	
8421292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5	A	

8421292090	기타	5	A	
8421293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0	A	
8421293090	기타	0	A	
8421294000	항공기용	8	A	
8421299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0	A	
8421299090	기타	5	A	
842131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A	
8421312000	항공기용	8	A	
8421319000	기타	8	A	
8421391000	가정형	5	A	
8421392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5	A	
842139901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	A	
8421399019	기타	5	A	
842139902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	A	
8421399029	기타	0	A	
8421399030	항공기용	8	A	
842139909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	A	
8421399099	기타	5	A	
842191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	A	
8421991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정화기의 것	5	A	
842199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것	5	A	
842199902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0	A	
8421999029	기타	5	A	

842199903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0	A	
8421999039	기타	0	A	
842199909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0	A	
8421999099	기타	5	A	
8422110000	가정형	8	A	
8422190000	기타	8	A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8	A	
8422301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8	A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합용 · 봉지용 기계	8	A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 · 레이블 첨부용 기계	8	A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	A	
8422309000	기타	8	A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8	A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8	A	
8422409020	자동결속기	8	A	
8422409030	진공포장기	8	A	
8422409090	기타	8	A	
8422901000	접시세척기의 것	8	A	
8422902000	그 밖의 포장기계의 것	8	A	
8422909000	기타	8	A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8	A	
8423201000	컨베이어 스케일	8	A	
8423202000	피드미터(feed meter) · 피드웨이어(feed weigher)	8	A	
8423209000	기타	8	A	

842330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0	A	
8423309000	기타	8	A	
842381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0	A	
8423819000	기타	8	A	
842382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는 제외한다)	0	A	
8423829000	기타	8	A	
8423891000	트럭 스케일	8	A	
842389901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0	A	
8423899090	기타	8	A	
8423901011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0	A	
8423901019	기타	8	A	
8423901091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0	A	
8423901099	기타	8	A	
842390901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0	A	
8423909090	기타	8	A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8424201000	스프레이건	8	A	
8424202010	로보트형	8	A	
8424202090	기타	8	A	
8424209000	기타	8	A	
8424301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8	A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8	A	
8424309000	기타	8	A	
8424410000	휴대용 방제기	8	A	
8424491000	자주식(自走式) 방제기	8	A	
8424499000	기타	8	A	
8424820000	농업용이나 원예용	8	A	
8424891000	반도체 제조용	0	A	

8424892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용	0	A	
8424899000	기타	8	A	
8424901000	소화기의 것	8	A	
8424902000	스프레이건의 것	8	A	
8424903000	방제기의 것	8	A	
8424909010	반도체 제조용	0	A	
842490902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용	0	A	
8424909090	기타	8	A	
8425111010	체인블록	0	A	
8425111090	기타	0	A	
8425112010	체인블록	0	A	
8425112090	기타	0	A	
8425190000	기타	0	A	
842531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25319000	기타	0	A	
842539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25399000	기타	0	A	
84254100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0	A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0	A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A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0	A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A	
8426110000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0	A	
84261210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0	A	
8426122000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0	A	
8426190000	기타	0	A	
8426200000	타워크레인(tower crane)	0	A	
8426301000	문형 크레인	0	A	
8426302000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0	A	
8426410000	타이어가 달린 것	0	A	

8426491000	신축붐식(telescopic boom type)	0	A	
8426492000	앵글식(latticed boom type)	0	A	
8426499000	기타	0	A	
8426910000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0	A	
8426991000	선박의 데릭(derrick)	0	A	
8426999000	기타	0	A	
8427101010	신품	8	A	
8427101020	중고품	8	A	
8427102010	신품	8	A	
8427102020	중고품	8	A	
8427201011	신품	8	A	
8427201012	중고품	8	A	
8427201021	신품	8	A	
8427201022	중고품	8	A	
8427209000	기타	8	A	
8427901000	수동식 펠릿(pallet) 트럭	8	A	
8427909000	기타	8	A	
8428101000	리프트	0	A	
8428102000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0	A	
8428201000	뉴매틱 엘리베이터	0	A	
8428202000	뉴매틱 컨베이어	0	A	
842831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0	A	
8428320000	그 밖의 버켓형	0	A	
8428331010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	0	A	
8428331020	분당 속도가 240미터 이상인 것	0	A	
8428332000	컨베이어	0	A	
8428390000	기타	0	A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0	A	
8428402000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0	A	
8428600000	텔레페릭(teleferic)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 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0	A	

8428901000	광산용 왜건푸셔 · 기관차 · 화차의 트레버서 · 화차 경사기 나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0	A	
8428909000	기타	0	A	
8429111000	불도저(bulldozer)	0	A	
8429112000	앵글도저(angledozer)	0	A	
8429190000	기타	0	A	
842920000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0	A	
8429300000	스크래퍼(scraper)	0	A	
8429401000	탐핑머신(tamping machine)	0	A	
8429402000	로드롤러(road roller)	0	A	
8429511011	신품	0	A	
8429511012	중고품	0	A	
8429511021	신품	0	A	
8429511022	중고품	0	A	
8429511031	신품	0	A	
8429511032	중고품	0	A	
8429511091	신품	0	A	
8429511092	중고품	0	A	
8429519000	기타	0	A	
8429521011	신품	0	A	
8429521012	중고품	0	A	
8429521021	신품	0	A	
8429521022	중고품	0	A	
8429521090	기타	0	A	
8429529000	기타	0	A	
8429590000	기타	0	A	
843010000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0	A	
843020000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0	A	
8430310000	자주식(自走式)	0	A	
8430390000	기타	0	A	
8430411000	천공용 기계	0	A	
8430412000	시굴용 기계	0	A	

8430491000	시추기	0	A	
8430499000	기타	0	A	
843050000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0	A	
8430610000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0	A	
8430690000	기타	0	A	
843110000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0	A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것	8	A	
8431310000	리프트 ·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 에스컬레이터의 것	0	A	
8431390000	기타	0	A	
8431411000	엑스커베이터(excavator)의 것	0	A	
8431419000	기타	0	A	
8431420000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0	A	
8431430000	소호 제8430.41호나 제8430.49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0	A	
8431491000	유압브레이커	0	A	
8431492000	크러셔(crusher)	0	A	
8431499000	기타	0	A	
8432100000	플라우(쟁기)	0	A	
843221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A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0	A	
8432292000	제초기	0	A	
8432299000	기타	0	A	
8432310000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 · 식부기(植付機) · 이식기	0	A	
8432391000	파종기	0	A	
8432392000	식부기(植付機) · 이식기(이앙기를 포함한다)	0	A	
8432410000	퇴비 살포기	0	A	
8432420000	비료 살포기	0	A	
8432800000	그 밖의 기계	0	A	
8432901000	플라우(쟁기)의 것	0	A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0	A	

8432909000	기타	0	A	
84331100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33190000	기타	0	A	
8433200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0	A	
843330000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0	A	
843340000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0	A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0	A	
8433520000	그 밖의 탈곡기	0	A	
8433530000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0	A	
8433590000	기타	0	A	
8433601000	새의 알 선별기	0	A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0	A	
8433609090	기타	0	A	
843390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0	A	
8433902000	풀베는 기계의 것	0	A	
8433909000	기타	0	A	
8434100000	착유기	0	A	
8434201000	균질기	0	A	
8434209000	기타	0	A	
8434901000	착유기의 것	0	A	
8434902000	균질기의 것	0	A	
8434909000	기타	0	A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8	A	
843510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8	A	
8435109000	기타	8	A	
8435900000	부분품	8	A	
8436101000	사료절단기	8	A	
8436102000	사료분쇄기	8	A	
8436103000	사료배합기	8	A	
8436109000	기타	8	A	

8436211000	부란기	8	A	
8436219000	기타	8	A	
8436290000	기타	8	A	
8436800000	그 밖의 기계	8	A	
8436910000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8	A	
8436990000	기타	8	A	
8437101000	목초종자 정선기	8	A	
8437109000	기타	8	A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8	A	
8437802000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용	8	A	
8437901000	종자·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용의 것	8	A	
8437909000	기타	8	A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8	A	
8438109000	기타	8	A	
8438200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8	A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8	A	
8438400000	양조용 기계	8	A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8	A	
8438509000	기타	8	A	
8438600000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8	A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8	A	
8438809000	기타	8	A	
8438900000	부분품	8	A	
8439101000	쇄목기	8	A	
8439102000	절단기	8	A	
8439103000	스트레이너	8	A	
8439109000	기타	8	A	
8439201000	초지 준비기	8	A	
8439202000	초지기	8	A	
8439209000	기타	8	A	

8439301000	종이 · 판지를 감는 기계	8	A	
8439302000	표면 가공기	8	A	
8439303000	침투 가공기	8	A	
8439309000	기타	8	A	
84399100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8	A	
8439990000	기타	8	A	
8440101000	제본용 재봉기	8	A	
8440102000	제본용 접는 기계	8	A	
8440109000	기타	8	A	
8440901000	제본용 재봉기의 것	8	A	
8440909000	기타	8	A	
8441100000	절단기	8	A	
8441201000	종이백 · 봉지 제조용 기계	8	A	
8441202000	봉투 제조기	8	A	
8441300000	카톤(carton) · 박스 · 케이스 · 튜브 · 드럼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8	A	
8441400000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8	A	
8441801000	종이 · 판지의 트리밍기	8	A	
8441809000	기타	8	A	
8441900000	부분품	8	A	
8442301000	활자 주조용 기계류, 장치	0	A	
8442302000	특수 성형 프레스	0	A	
8442303000	산 부식용 기기	0	A	
8442305000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 기계류, 장치, 장비(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0	A	
8442309000	기타	0	A	
8442401000	식자용 기계류 · 장치의 것	0	A	
8442402000	활자주조용 기계류 · 장치의 것	0	A	
8442409000	기타	0	A	

8442500000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 · 그레인 ·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0	A	
844311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8	A	
844312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8443130000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8	A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	A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8	A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8	A	
8443170000	그라비아(gravure) 인쇄용 기계	8	A	
8443191000	직물날염기	8	A	
8443192000	그 밖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노름 등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인쇄기	8	A	
8443199000	기타	8	A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0	A	
8443311020	도트 프린터	0	A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0	A	
8443311090	기타	0	A	
8443312000	팩시밀리(프린터, 복사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43313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A	
8443313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A	
8443314000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31.1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0	A	
8443321020	도트 프린터	0	A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0	A	
8443321090	기타	0	A	
8443322000	팩시밀리	0	A	
8443323000	텔레프린터	0	A	
8443324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A	
8443324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 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A	
8443325010	반도체 제조용	0	A	
8443325090	기타	0	A	
8443391010	반도체 제조용	0	A	
8443391090	기타	0	A	
8443392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A	
8443392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 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A	
8443393010	광학기구를 갖춘 것	0	A	
8443393020	밀착식	0	A	
8443394000	열식 복사기	0	A	
8443399000	기타	0	A	
8443911010	자동급지기	0	A	
8443911020	접기용, 풀칠용, 천공용, 지철용의 기계	0	A	
8443911090	기타	0	A	
8443919000	기타	0	A	
8443991000	제8443.31.10호이나 제8443.32.10호의 것	0	A	
8443992000	팩시밀리의 것	0	A	
8443993000	텔레프린터의 것	0	A	
8443994010	자동 문서공급기	0	A	
8443994020	종이공급기	0	A	
8443994030	분류기	0	A	
8443994090	기타	0	A	

8443995000	제8443.31.4000호, 제8443.32.5010호, 제8443.32.5090호, 제8443.39.1010호, 제8443.39.1090호의 것	0	A	
8443999000	기타	0	A	
8444001000	방사(紡絲)기	5	A	
8444002000	연신(drawing)기	5	A	
8444003000	텍스처(texture)기	5	A	
8444004000	절단기	5	A	
8444009000	기타	5	A	
8445110000	카드기(carding machine)	5	A	
8445120000	코밍기(combing machine)	5	A	
8445130000	연조기나 조방기	5	A	
8445191000	혼타면기	5	A	
8445192000	래프성형기	5	A	
8445193000	조면기	8	A	
8445199000	기타	5	A	
8445201010	정방기	5	A	
8445201090	기타	5	A	
8445202000	모방용	5	A	
8445203000	견방용	5	A	
8445209000	기타	5	A	
8445301000	필라멘트사용	5	A	
8445302000	방적사용	5	A	
8445309000	기타	5	A	
8445401000	콘 와인더	5	A	
8445402000	치즈 와인더	5	A	
8445409000	기타	5	A	
8445901000	정경기	8	A	
8445902000	정경호부기	8	A	
8445903000	통경기	8	A	
8445904000	연경기	8	A	
8445909000	기타	8	A	
844610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8	A	

8446211000	면직기	8	A	
8446213000	견직기	8	A	
8446219000	기타	8	A	
8446290000	기타	8	A	
8446301010	면직기	8	A	
8446301020	견직기	8	A	
8446301030	타올직기	8	A	
8446301090	기타	8	A	
8446302010	면직기	8	A	
8446302020	견직기	8	A	
8446302030	타올직기	8	A	
8446302090	기타	8	A	
8446303010	면직기	8	A	
8446303020	견직기	8	A	
8446303030	타올직기	8	A	
8446303090	기타	8	A	
8446309010	면직기	8	A	
8446309020	견직기	8	A	
8446309030	타올직기	8	A	
8446309090	기타	8	A	
8447111000	양말편기	8	A	
8447119000	기타	8	A	
8447120000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A	
8447201010	수(手) 편직기(반자동 횡(橫) 편직기는 포함한다)	8	A	
8447201020	자동 횡(橫) 편직기	8	A	
8447201090	기타	8	A	
8447202010	랏셀기	8	A	
8447202020	트리코트기	8	A	
8447202090	기타	8	A	
8447209000	기타	8	A	
8447901000	레이스기	8	A	
8447902010	자동자수기	8	A	

8447902090	기타	8	A	
8447903000	결망기	8	A	
8447909000	기타	8	A	
8448111000	도비(dobby)기	8	A	
8448112000	자카드기	8	A	
8448113000	카드 천공기	8	A	
8448119000	기타	8	A	
8448191000	경사용 빔스탠드와 크릴(creel)	8	A	
8448199010	실 제조용 보조기계(조면기는 제외한다)	5	A	
8448199090	기타	8	A	
8448201000	방사 니플	5	A	
8448209000	기타	5	A	
8448310000	침포	8	A	
8448321000	카드기(carding machine)용[가넷와이어(garnet wire)는 제외한다]	5	A	
8448329000	기타	8	A	
8448331000	스핀들 플라이어	5	A	
8448339010	스핀들	8	A	
8448339020	스피닝링	8	A	
8448339030	링트래블러	8	A	
8448391000	경사빔	8	A	
8448399000	기타	8	A	
8448420000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8	A	
8448491000	셔틀	8	A	
8448499000	기타	8	A	
8448511000	메리야스용 바늘	8	A	
8448512000	자수기용 바늘	8	A	
8448513000	레이스기용 바늘	8	A	
8448519000	기타	8	A	
8448590000	기타	8	A	
8449001000	기계	8	A	
8449002000	모자제조용 형(型)	8	A	

8449009000	부분품	8	A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8	A	
8450120000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8450190000	기타	8	A	
8450200000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	A	
8450900000	부분품	8	A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8	A	
8451210000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8	A	
8451290000	기타	8	A	
8451301000	스팀 프레스	8	A	
8451309000	기타	8	A	
8451401000	세척기	8	A	
8451402000	표백기	8	A	
8451403000	염색기	8	A	
8451501000	감기(reeling)용 기계 · 풀기(unreeling)용 기계	8	A	
8451502000	절단기	8	A	
8451509000	기타	8	A	
8451801000	열처리기	8	A	
8451802000	폭출기(幅出機)	8	A	
8451803000	머서라이징(mercerizing)기	8	A	
8451809010	방축가공기	8	A	
8451809020	도포기, 침투기	8	A	
8451809030	기모기(起毛機)	8	A	
8451809040	패딩기	8	A	
8451809090	기타	8	A	
8451901000	드라이클리닝기의 것	8	A	
8451902000	건조기의 것	8	A	
8451909000	기타	8	A	
8452101020	지그재그형	8	A	
8452101030	프리암식	8	A	

8452101090	기타	8	A	
8452102000	수동식	8	A	
8452212000	포장대 봉합용	8	A	
8452219000	기타	8	A	
8452292000	포장대 봉합용	8	A	
8452299000	기타	8	A	
8452300000	재봉기용 바늘	8	A	
845290100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덮개와 그 부분품	8	A	
8452909000	그 밖의 재봉기 부분품	8	A	
8453101000	유피준비기계	8	A	
8453102000	유피기계	8	A	
8453103000	원피·가죽 가공기계	8	A	
8453200000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8	A	
8453800000	그 밖의 기계	8	A	
8453900000	부분품	8	A	
8454100000	전로	8	A	
845420000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8	A	
8454301010	다이캐스팅기	8	A	
8454301090	기타	8	A	
8454309000	기타	8	A	
8454901000	전로의 것	8	A	
8454909000	기타	8	A	
8455100000	관 압연기	8	A	
8455210000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8	A	
8455220000	냉간(冷間) 압연기	8	A	
8455301000	주조제의 것	8	A	
8455302000	단조제의 것	8	A	
8455309000	기타	8	A	
8455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A	
845611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 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 류의 것	0	A	

8456119000	기타	8	A	
845612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8456129000	기타	8	A	
8456200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8	A	
8456301010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8	A	
8456301090	기타	8	A	
8456309000	기타	8	A	
8456400000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8	A	
8456500000	워터젯 절단기	8	A	
8456900000	기타	8	A	
8457101000	수직형	8	A	
8457102000	수평형	8	A	
8457103000	문형	8	A	
8457109000	기타	8	A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8	A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	A	
8458110000	수치제어식	8	A	
8458190000	기타	8	A	
8458910000	수치제어식	8	A	
8458990000	기타	8	A	
845910000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8	A	
8459210000	수치제어식	8	A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8	A	
8459292000	직립 드릴링 머신	8	A	
8459293000	다축 드릴링 머신	8	A	
8459299000	기타	8	A	
8459310000	수치제어식	8	A	
8459390000	기타	8	A	

8459411000	지그 보링머신	8	A	
8459412000	수평 보링머신	8	A	
8459419000	기타	8	A	
8459490000	기타	8	A	
8459510000	수치제어식	8	A	
8459590000	기타	8	A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A	
845961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8	A	
8459619000	기타	8	A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A	
845969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8	A	
8459693000	만능공구 밀링머신	8	A	
8459694000	프로필 밀링머신	8	A	
8459699000	기타	8	A	
8459701000	태핑머신(tapping machine)	8	A	
8459709000	그 밖의 나사절삭기	8	A	
8460120000	수치제어식	8	A	
8460190000	기타	8	A	
8460220000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8	A	
8460230000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8	A	
8460241000	내면연삭기	8	A	
8460242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8	A	
8460249000	기타	8	A	
8460291000	원통연삭기	8	A	
8460292000	내면연삭기	8	A	
8460293000	무심연삭기	8	A	
846029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8	A	
8460299000	기타	8	A	
8460310000	수치제어식	8	A	
8460390000	기타	8	A	
8460401000	호닝머신(honing machine)	8	A	
8460402000	래핑머신(lapping machine)	8	A	

8460900000	기타	8	A	
8461200000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8	A	
846130000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8	A	
8461401010	수치제어식	8	A	
8461401090	기타	8	A	
8461402000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	8	A	
8461500000	톱기계나 절단기	8	A	
8461900000	기타	8	A	
8462101000	에어해머	8	A	
8462109000	기타	8	A	
8462210000	수치제어식	8	A	
8462290000	기타	8	A	
8462310000	수치제어식	8	A	
8462390000	기타	8	A	
846241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A	
8462412000	낫칭기(notching machine)	8	A	
846249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A	
8462492000	낫칭기(notching machine)	8	A	
846291100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A	
846291200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초과 3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A	
8462913000	최고가압이 300메트릭톤 초과 1,0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A	
8462914000	최고가압이 1,00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8	A	
8462991010	최고가압이 3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A	
8462991020	최고가압이 30메트릭톤 초과 1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A	
846299103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초과 3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A	
8462991040	최고가압이 300메트릭톤 초과 6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A	
8462991050	최고가압이 600메트릭톤 초과 1,5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A	
8462991090	기타	8	A	
8462999000	기타	8	A	
8463100000	드로우벤치(draw-bench)[봉 · 관 · 프로파일(profile) · 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8463200000	나사 전조기	8	A	
8463300000	선 가공기	8	A	
8463901000	3D 프린터	8	A	
8463909000	기타	8	A	
8464100000	톱기계	8	A	
8464201000	광학유리용 · 안경유리용	8	A	
8464202000	그 밖의 유리용	8	A	
8464209000	기타	8	A	
8464901000	유리 냉간 가공용 공작기계	8	A	
8464902000	콘크리트 가공용 공작기계	8	A	
8464903000	도자기 가공용 공작기계	8	A	
8464909000	기타	8	A	
8465101000	목재 가공용	8	A	
8465109000	기타	8	A	
8465201000	목재 가공용	8	A	
8465209000	기타	8	A	
8465911000	목재 가공용	8	A	
8465919000	기타	8	A	
8465921000	목재 가공용	8	A	
8465929000	기타	8	A	
8465931000	목재 가공용	8	A	
8465939000	기타	8	A	
8465941000	목재 가공용	8	A	
8465949000	기타	8	A	
8465951000	목재 가공용	8	A	
8465959000	기타	8	A	
8465961000	목재 가공용	8	A	
8465969000	기타	8	A	
8465991000	목재 가공용	8	A	
8465999000	기타	8	A	
846610000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8	A	
8466201000	항공기용	8	A	

8466209000	기타	8	A	
8466300000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8	A	
8466910000	제8464호의 기계용	8	A	
8466920000	제8465호의 기계용	8	A	
846693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차 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 계의 것	0	A	
8466939000	기타	8	A	
8466940000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8	A	
8467111000	착암기	8	A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8	A	
8467113000	그라인더	8	A	
8467114000	임팩트 렌치	8	A	
8467115000	드릴	8	A	
8467119000	기타	8	A	
8467191000	착암기	8	A	
8467199000	기타	8	A	
8467210000	각종 드릴	8	A	
8467220000	톱	8	A	
8467290000	기타	8	A	
8467810000	체인톱	8	A	
8467891010	소호 제8430.49호, 제8479.10호의 것	0	A	
8467891020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91호의 것	8	A	
8467891090	기타	8	A	
8467899000	기타	8	A	
8467910000	체인톱의 것	8	A	
84679200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8	A	
8467990000	기타	8	A	
8468100000	수지식 취관(吹管)	8	A	
8468201000	가스 용접기	8	A	
8468202000	가스 자동절단기	8	A	

8468209000	기타	8	A	
8468800000	그 밖의 기기	8	A	
8468900000	부분품	8	A	
8470103010	17단위 미만인 것	0	A	
8470103020	17단위 이상인 것	0	A	
8470104010	제8472.90.9000호의 것	0	A	
8470104090	기타	0	A	
8470210000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0	A	
8470290000	기타	0	A	
8470300000	그 밖의 계산기	0	A	
8470500000	금전 등록기	0	A	
8470902000	표권 발행기	0	A	
8470903000	회계기	0	A	
8470909000	기타	0	A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A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A	
8471419000	기타	0	A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A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A	
8471491090	기타	0	A	
8471499000	기타	0	A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A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A	

8471509000	기타	0	A	
8471601010	문자(표식) 판독장치	0	A	
8471601020	키 입력장치	0	A	
8471601030	마우스	0	A	
8471601040	스캐너	0	A	
8471601090	기타	0	A	
8471602000	출력장치	0	A	
8471603030	음성 입출력장치	0	A	
8471603090	기타	0	A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 · 롬)	0	A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	A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0	A	
8471702032	디브이디(DVD) 드라이브	0	A	
8471702033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0	A	
8471702039	기타	0	A	
8471702090	기타	0	A	
8471709000	기타	0	A	
8471801000	사운드카드	0	A	
8471802000	비디오 카드	0	A	
8471809000	기타	0	A	
8471900000	기타	0	A	
8472100000	등사기	0	A	
8472301000	편지 분류기	8	A	
8472302000	소인기	8	A	
8472309000	기타	8	A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0	A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0	A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 · 입금기	0	A	
8472901050	주화계수 포장기	0	A	
8472901090	기타	0	A	
8472902000	등사용이나 인쇄용 자동제판기	0	A	
8472903000	표권발행기	0	A	

8472904000	연필절삭기	0	A	
8472905000	서류절단기	0	A	
8472906000	주소인쇄기와 주소판 엠보싱기	0	A	
8472909000	기타	8	A	
8473210000	소호 제8470.10호 · 제8470.21호 ·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A	
8473291000	소호 제8470.30호의 기계의 것	0	A	
8473293000	소호 제8470.50호의 기계의 것	0	A	
8473294000	소호 제8470.90호의 기계의 것	0	A	
8473301000	자기헤드	0	A	
8473302000	주기관(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73303000	컴퓨터 케이스	0	A	
8473304060	디램 모듈	0	A	
8473304090	기타	0	A	
847330901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0	A	
8473309090	기타	0	A	
8473401000	현금자동처리기(제8472.90.1050호와 제8472.90.1090호는 제외한다)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A	
8473402000	현금자동처리기(제8472.90.1050호와 제8472.90.1090호는 제외한다)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73409000	기타	0	A	
8473501000	소호 제8470.10호, 제8470.21호,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473509000	기타	0	A	
8474100000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 · 세척기	0	A	
8474201000	파쇄 · 분쇄능력이 시간당 20톤 이하인 것	0	A	
8474209000	기타	0	A	
8474311000	배치 플랜트	0	A	
8474319000	기타	0	A	

8474321000	아스팔트 플랜트	0	A	
8474329000	기타	0	A	
8474390000	기타	0	A	
847480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0	A	
8474802000	조괴기(造塊機) · 형입기와 성형기	0	A	
8474809000	기타	0	A	
8474900000	부분품	0	A	
8475100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 · 튜브 · 밸브 · 플래시벌브 (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 계	8	A	
8475210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0	A	
8475291000	판유리 제조용	8	A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	8	A	
8475299000	기타	8	A	
8475901000	판유리 제조용	8	A	
8475902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0	A	
8475909000	기타	8	A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	A	
8476290000	기타	8	A	
847681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A	
8476819000	기타	8	A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A	
8476894000	화폐 교환기	0	A	
8476899000	기타	8	A	
8476901000	화폐교환기의 것	0	A	
8476909000	기타	8	A	
8477101000	고무 공업용	8	A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	8	A	
8477201000	고무 공업용	8	A	
8477202000	플라스틱 공업용	8	A	
8477300000	취입 성형기	8	A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8	A	

847751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8	A	
8477591000	3D 프린터	8	A	
8477599000	기타	8	A	
8477800000	그 밖의 기계	8	A	
8477900000	부분품	8	A	
8478100000	기계류	8	A	
8478900000	부분품	8	A	
8479101000	모울타르나 콘크리트 살포기	0	A	
8479102000	그 밖의 도로공사용 기계	0	A	
8479109000	기타	0	A	
847920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8	A	
8479300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8	A	
8479400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8	A	
8479501000	제8479.81호, 제8479.82호,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40호, 제8479.89.9060호, 제8479.89.9091호의 것	8	A	
84795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8	A	
8479509000	기타	8	A	
8479600000	증발식 에어컨	8	A	
8479710000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8	A	
8479790000	기타	8	A	
8479811000	금속 세척기	8	A	
8479812010	반도체 제조용	3	A	
8479812090	기타	8	A	
8479813000	권선기	8	A	
8479814000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8	A	
8479819000	기타	8	A	
8479821000	혼합기	5	A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5	A	
8479823000	균질기	5	A	
8479824000	교반기	5	A	
8479829000	기타	5	A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8479891090	기타	8	A	
8479892010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8479892090	기타	8	A	
8479899010	프레스 · 압출기	5	A	
8479899020	선박용 · 어업용 기기	8	A	
8479899030	아이레팅(eyeletting)기 · 튜블러리베팅(tubular reventing)기	8	A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8	A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8	A	
8479899070	3D 프린터	8	A	
8479899080	조상기(釣上機)	8	A	
8479899091	제87류의 차량용	8	A	
8479899099	기타	5	A	
8479901010	냉방기기용(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8	A	
8479901020	가정형 기기용	8	A	
8479901030	제87류의 차량용	8	A	
84799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8	A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8	A	
8479904000	제8479.7호의 것	8	A	
8479905010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8479905090	기타	5	A	
8479909010	토목공사, 건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8	A	
847990902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의 것	8	A	

8479909030	로프, 케이블 제조기의 것	8	A	
847990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5	A	
8479909050	혼합기 · 반죽기 · 파쇄기 · 분쇄기 · 기계식체 · 시프팅기 · 균질기 · 유화기 · 교반기의 것	5	A	
8479909060	프레스 · 압출기의 것	5	A	
8479909070	선박용 · 어업 기기의 것	8	A	
8479909080	자동 마그네틱 제조기의 것	8	A	
8479909090	기타	5	A	
8480100000	금속 주조용 주형틀	8	A	
8480200000	주형 베이스	8	A	
8480300000	주형 제조용 모형	8	A	
84804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8	A	
8480490000	기타	8	A	
8480500000	유리 성형용 주형	8	A	
848060000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8	A	
84807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8	A	
8480790000	기타	8	A	
8481100000	감압밸브	8	A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8	A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8	A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8	A	
8481400000	안전밸브	8	A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8	A	
8481801020	액압 작동식의 것	8	A	
8481801030	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8	A	
8481801090	기타	8	A	
8481802000	탭 · 코크와 트랩	8	A	
8481809000	기타	8	A	
8481900000	부분품	8	A	
8482102000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A	
8482109000	기타	8	A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 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8	A	
848230000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A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A	
8482500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A	
8482800000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A	
8482910000	볼 · 니들 · 롤러	8	A	
8482990000	기타	8	A	
8483101000	항공기용	3	A	
8483109010	제87류 차량용	8	A	
8483109090	기타	8	A	
8483201000	항공기용	3	A	
8483209000	기타	8	A	
8483301000	항공기용	3	A	
8483309000	기타	8	A	
8483401010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3	A	
8483401090	기타	3	A	
8483409010	기어	8	A	
8483409020	기어박스	8	A	
8483409030	무단변속기	8	A	
8483409041	제87류 차량용	8	A	
8483409049	기타	8	A	
8483409090	기타	8	A	
8483501000	항공기용	8	A	
8483509000	기타	8	A	
8483601000	항공기용	3	A	
8483602000	풍력발전기용	5	A	
8483609000	기타	8	A	
8483901000	항공기용	3	A	
8483902000	풍력발전기용	5	A	
8483909000	기타	8	A	

8484101000	제87류 차량용	8	A	
8484109000	기타	8	A	
848420000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	A	
8484900000	기타	8	A	
84861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	A	
8486102000	단결정 보울(boule)을 성장시키는 기계	0	A	
8486103011	레이저 작동식 절단기	0	A	
8486103019	기타	0	A	
8486103020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A	
8486103090	기타	0	A	
8486104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A	
8486104019	기타	0	A	
8486104021	웨이퍼를 스트리핑·세척하는 기기	0	A	
8486104029	기타	0	A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A	
8486105020	전자유도식·유전식 노(爐)와 오븐	0	A	
84861050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0	A	
8486109000	기타	0	A	
84862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	A	
848620210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A	
8486202210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용도의 것	0	A	
8486202290	기타	0	A	
8486202310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0	A	
8486202390	기타	0	A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0	A	
8486204000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0	A	
8486205110	반도체 리드의 것	0	A	
8486205190	기타	0	A	
8486205910	반도체 리드의 것	0	A	
8486205990	기타	0	A	

8486206010	반도체웨이퍼 위에 직접 그리는 기기	0	A	
8486206020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0	A	
8486206091	레이저 작동식 기기	0	A	
8486206099	기타	0	A	
848620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0	A	
8486208110	반도체 제조공정 중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0	A	
8486208120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A	
8486208190	기타	0	A	
848620841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0	A	
8486208420	반도체웨이퍼를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A	
8486208490	기타	0	A	
8486209110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을 위한 분사기	0	A	
8486209120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과 오염물질제거기	0	A	
8486209190	기타	0	A	
8486209200	포토리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0	A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A	
8486209321	레이저 작동식 기기	0	A	
8486209329	기타	0	A	
8486209390	기타	0	A	
8486209400	웨이퍼·캐리어·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A	
8486209500	반도체웨이퍼 위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0	A	
8486209600	반도체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0	A	
8486209900	기타	0	A	
8486301000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A	
848630200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	A	

84863030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0	A	
8486303020	초음파 방식에 의한 것	0	A	
8486303030	방전 방식에 의한 것	0	A	
8486303042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건식 식각기	0	A	
8486303043	그 밖의 건식식각기	0	A	
8486303049	기타	0	A	
8486304010	연마기·광택기	0	A	
8486304090	기타	0	A	
8486305011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0	A	
8486305019	기타	0	A	
8486305020	도포·현상기	0	A	
8486305041	물리적 방식의 것	0	A	
8486305042	화학적 방식의 것	0	A	
8486305049	기타	0	A	
8486305051	물리적 방식의 것	0	A	
8486305052	화학적 방식의 것	0	A	
8486305059	기타	0	A	
8486306010	실(seal), 쇼트, 스페이서, 액정 디스펜서	0	A	
8486306020	스크라이빙 머신	0	A	
8486306030	패널 어셈블러	0	A	
8486306090	기타	0	A	
8486307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0	A	
8486308000	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	0	A	
84863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로봇	0	A	
8486309090	기타	0	A	
8486401010	패턴형성기(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와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0	A	
848640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수리하기 위한 포커스트 이온빔 밀링기	0	A	
8486401030	포토리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0	A	
8486401040	마스크와 레티클을 식각, 세척, 스트리핑하는 기계와 기기	0	A	
8486401090	기타	0	A	

8486402010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와이어접착기	0	A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제거시키는 기계	0	A	
8486402031	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0	A	
8486402039	기타	0	A	
8486402040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0	A	
8486402050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분리하는 기계	0	A	
8486402070	사출식·압축식의 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0	A	
848640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 캐리어,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A	
8486402091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0	A	
8486402092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 외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0	A	
8486402093	웨이퍼의 절단 이전에 전체 웨이퍼에 연결접점(범프)을 형성하는 웨이퍼 범핑용 기기	0	A	
8486402094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이나 오염물질제거기(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으로 한정한다)	0	A	
8486402095	저항가열식의 전기식 노(爐)와 오븐	0	A	
8486402099	기타	0	A	
8486403010	반도체 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카세트, 상자나 그 밖의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것	0	A	
8486403020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揚荷)용의 것	0	A	
8486403090	기타	0	A	

8486901010	제8486.10.1000호, 제8486.10.2000호, 제8486.10.3011호, 제8486.10.3019호, 제8486.10.3020호, 제8486.10.4011호, 제8486.10.4021호, 제8486.10.5010호, 제8486.10.5020호, 제8486.10.5030호의 것	0	A	
8486901020	제8486.10.3090호, 제8486.10.4019호, 제8486.10.4029호, 제8486.10.9000호의 것	0	A	
8486902010	제8486.20.1000호, 제8486.20.2100호, 제8486.20.2210호, 제8486.20.2310호, 제8486.20.2390호, 제8486.20.3000호, 제8486.20.4000호, 제8486.20.5110호, 제8486.20.5910호, 제8486.20.6010호, 제8486.20.6020호, 제8486.20.6091호, 제8486.20.6099호, 제8486.20.7000호, 제8486.20.8110호, 제8486.20.8120호, 제8486.20.8410호, 제8486.20.8420호, 제8486.20.9110호, 제8486.20.9120호, 제8486.20.9190호, 제8486.20.9200호, 제8486.20.9310호, 제8486.20.9321호, 제8486.20.9329호, 제8486.20.9400호, 제8486.20.9500호, 제8486.20.9600호의 것	0	A	
8486902020	제8486.20.2290호, 제8486.20.5190호, 제8486.20.5990호, 제8486.20.8190호, 제8486.20.8490호, 제8486.20.9390호, 제8486.20.9900호의 것	0	A	
8486903010	제8486.30.1000호, 제8486.30.2000호의 것	0	A	
8486903020	제8486.30.3010호, 제8486.30.3020호, 제8486.30.3030호, 제8486.30.3043호, 제8486.30.3049호, 제8486.30.4010호, 제8486.30.4090호, 제8486.30.6020호, 제8486.30.7000호, 제8486.30.8000호, 제8486.30.9020호, 제8486.30.9090호의 것	0	A	
8486903030	제8486.30.5019호, 제8486.30.5020호, 제8486.30.5051호, 제8486.30.5052호, 제8486.30.5059호, 제8486.30.6010호, 제8486.30.6030호, 제8486.30.6090호의 것	0	A	
8486903040	제8486.30.3042호, 제8486.30.5011호, 제8486.30.5041호, 제8486.30.5042호, 제8486.30.5049호의 것	0	A	

8486904010	제8486.40.1010호, 제8486.40.1020호, 제8486.40.1030호, 제8486.40.2010호, 제8486.40.2031호, 제8486.40.2070호, 제8486.40.2080호, 제8486.40.2091호, 제8486.40.2094호, 제8486.40.2095호, 제8486.40.3010호, 제8486.40.3020호, 제8486.40.3090호의 것	0	A	
8486904020	제8486.40.1040호, 제8486.40.1090호, 제8486.40.2020호, 제8486.40.2039호, 제8486.40.2040호, 제8486.40.2050호, 제8486.40.2092호, 제8486.40.2093호, 제8486.40.2099호의 것	0	A	
848710000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8	A	
8487901000	제87류 차량용	8	A	
8487909010	오일 실링	8	A	
8487909090	기타	8	A	
8501101000	직류 전동기	8	A	
8501102000	교류 전동기	8	A	
8501103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8	A	
8501201000	출력이 37.5와트 초과 100와트 이하인 것	8	A	
85012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8	A	
8501203000	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는 것	8	A	
850131101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8	A	
8501311090	기타	8	A	
8501312000	직류 발전기	8	A	
8501321000	직류 전동기	8	A	
8501322000	직류 발전기	8	A	
8501331000	직류 전동기	8	A	
8501332000	직류 발전기	8	A	
8501341000	직류 전동기	8	A	
8501342000	직류 발전기	8	A	
850140100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8	A	
85014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8	A	
8501403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A	
8501404000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A	

8501510000	출력이 75와트 이하인 것	8	A	
8501520000	출력이 75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A	
8501531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A	
8501532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A	
8501534000	출력이 1,5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A	
8501611000	출력이 75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1612000	출력이 75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16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163100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A	
8501639000	기타	8	A	
850164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A	
8502111000	출력이 75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2112000	출력이 75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21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2131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A	
8502131090	기타	8	A	
850213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A	
8502134000	출력이 3,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A	
850220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220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2203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A	
8502203090	기타	8	A	
8502204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A	
850231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A	
850231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A	
850231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A	
850239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A	

850239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A	
8502393000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A	
850239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A	
8502400000	회전변환기	8	A	
8503001000	전동기의 것	8	A	
8503002010	풍력발전기용	5	A	
8503002090	기타	5	A	
8503003000	회전변환기의 것	8	A	
8504101010	전류가 1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101020	전류가 1암페어 초과 20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102000	전류가 20암페어 초과 60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103000	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A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8	A	
850421901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21902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8	A	
8504229010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229020	용량이 1,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229030	용량이 5,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230000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A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8	A	
8504312000	전압 조정기	8	A	
850431901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31902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초과 5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319040	용량이 500볼트암페어 초과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8	A	

8504322000	전압 조정기	8	A	
8504329010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329020	용량이 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8	A	
8504332000	전압 조정기	8	A	
8504339010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339020	용량이 3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33904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8	A	
8504342000	전압 조정기	8	A	
8504349010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2,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A	
8504349030	용량이 2,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A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8504401090	기타	2	A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8504402019	기타	2	A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8504402099	기타	2	A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8504403090	기타	3.25	A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8504404090	기타	3.25	A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8504405090	기타	3.25	A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0	A	
8504409019	기타	0	A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8504409099	기타	3.25	A	
85045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8504501090	기타	0	A	
8504502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8504502090	기타	0	A	
850450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A	
8504509090	기타	0	A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8504.40호 · 제8504.5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04909000	기타	0	A	
8505111000	알니코(alnico)의 것	8	A	
8505119000	기타	8	A	
8505191000	산화철의 것	8	A	

8505199000	기타	8	A	
8505200000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 · 브레이크	8	A	
8505901010	자기공명 촬영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제 9018호의 전자석은 제외한다)	0	A	
8505901090	기타	8	A	
8505902000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의 척(chuck) · 클램프 · 바이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8	A	
850590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lifting head)	8	A	
8505909000	부분품	8	A	
8506101000	망간건전지	13	A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13	A	
8506109000	기타	8	A	
8506300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8	A	
8506400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8	A	
8506500000	리튬으로 만든 것	8	A	
8506600000	에어징크로 만든 것	8	A	
8506801000	산화아연으로 만든 것	8	A	
8506809000	기타	8	A	
8506900000	부분품	8	A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8	A	
850720000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8	A	
8507300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8	A	
8507400000	니켈-철 축전지	8	A	
850750000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8	A	
8507601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8	A	
8507609000	기타	8	A	
8507800000	그 밖의 축전지	8	A	
8507901000	격리판	8	A	
8507909000	기타	8	A	
8508111000	로보트형	8	A	
8508119000	기타	8	A	
8508192000	로보트형	8	A	

8508199000	기타	8	A	
8508600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8	A	
8508701000	제8508.11.9000호의 것	8	A	
8508702000	제8508.19.9000호, 제8508.60.0000호의 것	8	A	
8508703000	제8508.11.1000호, 제8508.19.2000호의 것	8	A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채소즙 추출기	8	A	
8509801000	커피분쇄기	8	A	
8509802000	얼음분쇄기	8	A	
8509803000	바닥광택기	8	A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8	A	
8509809000	기타	8	A	
8509900000	부분품	8	A	
8510100000	면도기	8	A	
8510200000	이발기	8	A	
8510300000	모발제거기	8	A	
8510901000	면도기의 것	8	A	
8510902000	이발기의 것	8	A	
8510903000	모발제거기의 것	8	A	
8511101000	항공기용	3	A	
8511109000	기타	8	A	
8511201000	항공기용	3	A	
8511209000	기타	8	A	
8511301000	항공기용	3	A	
8511309000	기타	8	A	
8511401000	항공기용	3	A	
8511409000	기타	8	A	
8511501000	항공기용	3	A	
8511509000	기타	8	A	
8511801000	항공기용	3	A	
8511809000	기타	8	A	
8511901000	항공기용	3	A	
8511909000	기타	8	A	

8512101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A	
8512109000	기타	8	A	
8512201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A	
8512201090	기타	8	A	
851220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A	
8512202090	기타	8	A	
8512300000	음향신호용 기구	8	A	
851240000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 제무기(demister)	8	A	
8512900000	부분품	8	A	
8513101000	광산용 안전등	8	A	
851310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A	
8513102090	기타	8	A	
8513109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A	
8513109090	기타	8	A	
8513900000	부분품	8	A	
8514101000	실험실용	8	A	
8514102000	금속공업용	8	A	
8514103000	식품공업용	8	A	
8514109000	기타	5	A	
8514201000	실험실용	8	A	
8514202000	금속공업용	8	A	
8514203000	식품공업용	8	A	
8514209000	기타	5	A	
8514301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종류의 것	0	A	
8514309000	기타	5	A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	0	A	
8514409000	기타	8	A	
8514901000	반도체 제조용	0	A	
8514902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노(爐)와 오븐의 것	0	A	

8514909000	기타	5	A	
8515110000	납땜용 인두와 건(gun)	8	A	
8515191000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침적 납땜용(wave soldering) 기계	0	A	
8515199000	기타	8	A	
8515211010	로봇형	8	A	
8515211090	기타	8	A	
8515212010	로봇형	8	A	
8515212090	기타	8	A	
8515213010	로봇형	8	A	
8515213090	기타	8	A	
8515219010	로봇형	8	A	
8515219090	기타	8	A	
8515291000	점 용접기기	8	A	
8515292000	봉합 용접기기	8	A	
8515293000	바트 용접기기	8	A	
8515299000	기타	8	A	
8515311010	로봇형	8	A	
8515311090	기타	8	A	
8515319010	로봇형	8	A	
8515319090	기타	8	A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8	A	
8515399000	기타	8	A	
8515801000	초음파 응용기기	8	A	
8515802000	전자빔용 기기	8	A	
851580300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	A	
8515809000	기타	8	A	
8515901010	레이저 작동식의 것	8	A	
8515901090	기타	8	A	
8515902000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침적 납땜용(wave soldering) 기기의 것	0	A	
8515909000	기타	8	A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8	A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	A	
8516290000	기타	8	A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8	A	
8516320000	그 밖의 이용기기	8	A	
8516330000	손 건조기	8	A	
8516400000	전기다리미	8	A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8	A	
8516601000	전기오븐	8	A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8	A	
8516609000	기타	8	A	
8516710000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8	A	
8516720000	토스터	8	A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8	A	
8516799000	기타	8	A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8	A	
8516900000	부분품	8	A	
85171100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7121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A	
8517121090	기타	0	A	
8517122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A	
8517122090	기타	0	A	
8517123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A	
8517123090	기타	0	A	
8517124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A	
8517124090	기타	0	A	
8517129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A	
8517129090	기타	0	A	
8517181000	푸쉬 버튼식 전화기	0	A	
8517189000	기타	0	A	
8517611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0	A	

8517619000	기타	0	A	
8517621000	텔레프린터	0	A	
851762201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0	A	
8517622020	사설통신용 교환기	0	A	
8517622090	기타	0	A	
8517623110	단국장치	0	A	
8517623120	중계장치	0	A	
8517623190	기타	0	A	
8517623210	단국장치	0	A	
8517623220	중계장치	0	A	
8517623290	기타	0	A	
8517623310	광중계장치	0	A	
8517623320	광단국장치	0	A	
8517623390	기타	0	A	
8517623410	에이/디(A/D), 디/에이(D/A)변환기	0	A	
8517623420	코덱	0	A	
8517623430	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	0	A	
8517623490	기타	0	A	
8517623510	아날로그 신호전송 방식	0	A	
8517623520	디지털 신호전송 방식	0	A	
8517623590	기타	0	A	
8517623900	기타	0	A	
8517624010	키-폰	0	A	
8517624020	영상전신기기	0	A	
8517624090	기타	0	A	
8517625000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0	A	
8517626020	영상전신기기	0	A	
8517626031	워키토키 세트	0	A	
8517626039	기타	0	A	
8517626050	무선통신용 교환기	0	A	
8517626060	무선통신용 중계기	0	A	
8517626090	기타	0	A	

8517627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	A	
8517629000	기타	0	A	
8517691100	장중단파 수신기	0	A	
8517691211	휴대용 무선통신기	0	A	
8517691219	기타	0	A	
8517691290	기타	0	A	
8517691900	기타	0	A	
8517692000	영상전화기	0	A	
8517699000	기타	0	A	
8517701010	유선전화기의 것	0	A	
8517701021	키패드	0	A	
8517701022	프레임	0	A	
8517701023	디스플레이 모듈	0	A	
8517701029	기타	0	A	
8517701090	기타	0	A	
8517702000	소호 제8517.61호의 것	0	A	
8517703010	텔레프린터의 것	0	A	
8517703021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것	0	A	
8517703022	사설통신용 교환기의 것	0	A	
8517703029	기타	0	A	
8517703031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	0	A	
8517703032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0	A	
8517703039	기타	0	A	
8517703041	영상전신기기의 것	0	A	
8517703049	기타	0	A	
8517703050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 송신기기의 것	0	A	
8517703061	디스플레이 모듈	0	A	
8517703069	기타	0	A	
851770307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	A	
8517703090	기타	0	A	
8517704011	호출용 · 경보용 · 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의 것	0	A	
8517704019	기타	0	A	

8517704020	영상전화기의 것	0	A	
8517704090	기타	0	A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8109010	무선 마이크로폰(무선 마이크로폰 세트를 포함한다)	4	A	
8518109090	기타	4	A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4	A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4	A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8299000	기타	4	A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세트	0	A	
8518309000	기타	4	E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2	A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0	A	
8518901000	인쇄회로조립품(제8518.10.1000호 · 제8518.29.1000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8909000	기타	0	A	
8519201000	코인이나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A	
8519209000	기타(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A	
8519301000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8	A	
8519309000	기타	8	A	
8519500000	전화응답기	0	A	
8519811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9812100	카세트 플레이어(제85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9812210	자동차용	0	A	
8519812220	휴대용(제85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0	A	
8519812290	기타	0	A	
8519812310	자동차용	0	A	
8519812320	휴대용	0	A	
8519812390	기타	0	A	
8519812900	기타	0	A	
8519813000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9814111	자동차용	0	A	
8519814112	휴대용	0	A	
8519814119	기타	0	A	
8519814190	기타	0	A	
8519814200	기타(카세트형으로 한정한다)	0	A	
8519814300	기타	0	A	
8519815020	디스크형	0	A	
8519815030	카세트형	0	A	
8519815090	기타	0	A	
851981900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8519891000	그 밖의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9893000	데크(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8519899010	그 밖의 음성재생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989902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8521100000	마그네틱 테이프형	0	A	
8521901000	디스크형	2	A	
8521909000	기타	2	A	
8522100000	픽업 카트리지	8	A	
8522901020	비디오 녹화용	0	A	

8522901090	기타	0	A	
8522902000	레이저 픽업	0	A	
8522909010	전화응답기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A	
8522909020	전화응답기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22909090	기타	0	A	
852321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8523291110	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8523291120	폭이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8523291130	폭이 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8523291200	마그네틱 디스크	0	A	
8523291900	기타	0	A	
852329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8523292119	기타	0	A	
852329212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8523292129	기타	0	A	
852329213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8523292139	기타	0	A	
8523292210	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8523292220	폭이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8523292231	비디오 녹화된 것	0	A	
8523292239	기타	0	A	
852329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8523292919	기타	0	A	
8523292991	비디오 녹화된 것	0	A	
8523292992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23292999	기타	0	A	
8523410000	기록이 안 된 것	0	A	

85234910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8523491019	기타	0	A	
8523491020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0	A	
8523491031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23491039	기타	0	A	
85234990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8523499019	기타	0	A	
8523499091	비디오 녹화된 것	0	A	
8523499092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23499099	기타	0	A	
852351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A	
852351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8523512190	기타	0	A	
8523512920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23512990	기타	0	A	
8523521000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갖춘 것과 그 부분품	0	A	
8523529000	기타와 그 부분품	0	A	
852359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A	
852359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8523592190	기타	0	A	
8523592920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23592990	기타	0	A	
8523593000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	0	A	
852380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A	

8523802100	축음기용 레코드판	0	A	
85238022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A	
8523802290	기타	0	A	
8523802920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23802990	기타	0	A	
8525501000	라디오 방송용	0	A	
8525502000	텔레비전용	0	A	
8525509000	기타	0	A	
8525601000	라디오 방송용	0	A	
8525602000	텔레비전용	0	A	
8525609000	기타	0	A	
8525801010	녹화기용	0	A	
8525801020	모니터용	0	A	
8525801090	기타	0	A	
852580201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0	A	
8525802090	기타	0	A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	0	A	
8526101000	항공기용	2.5	E	
8526109000	기타	2.5	E	
8526911010	항공기용	3.25	E	
8526911090	기타	3.25	E	
8526912010	항공기용	3.25	E	
8526912090	기타	3.25	E	
8526913010	항공기용	2	E	
8526913020	자동차용	2	E	
8526913090	기타	2	E	
8526914000	로란 리시버	2	E	
8526919010	항공기용	3.25	E	
8526919020	자동차용	3.25	E	
8526919090	기타	3.25	E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5	E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0	A	
8527131000	카세트형	0	A	
8527132000	디스크형	0	A	
852713300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0	A	
8527139000	기타	0	A	
8527190000	기타	0	A	
8527211000	카세트형	8	A	
8527212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4	A	
8527212090	기타	8	A	
8527213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4	A	
8527213090	기타	8	A	
8527219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4	A	
8527219090	기타	8	A	
8527290000	기타	0	A	
8527911010	카세트형	0	A	
8527911020	디스크형	0	A	
852791103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0	A	
8527911090	기타	0	A	
8527919000	기타	0	A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0	A	
8527990000	기타	0	A	
852842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A	
852849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0	A	
8528491090	기타	0	A	
852849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0	A	
8528492090	기타	0	A	

8528521000	액정모니터	0	A	
8528529000	기타	0	A	
852859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8	A	
8528591090	기타	8	A	
852859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8	A	
8528592090	기타	8	A	
852862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A	
8528690000	기타	8	A	
8528711000	비디오 튜너	0	A	
8528712020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춘것	0	A	
8528712090	기타	0	A	
8528719000	기타	0	A	
8528721010	아날로그의 것	8	A	
8528721020	디지털의 것	8	A	
8528722010	아날로그의 것	8	A	
8528722020	디지털의 것	8	A	
8528723010	아날로그의 것	8	A	
8528723020	디지털의 것	8	A	
8528724010	아날로그의 것	8	A	
8528724020	디지털의 것	8	A	
8528725010	아날로그의 것	8	A	
8528725020	디지털의 것	8	A	
8528729000	기타	8	A	
8528732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센티미터 미만인 것	8	A	
8528733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 센티미터 이상인 것	8	A	
8528739000	기타	8	A	
8529101000	레이더기기용	2.5	E	
8529109100	항행용 무선기기 · 무선원격조절기용	3.25	E	
8529109210	위성방송 수신용	3.25	E	

8529109290	기타	3.25	E	
852910930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기기의 것	0	A	
8529109900	기타	3.25	E	
8529901000	레이더기기의 것	0	A	
8529909100	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의 것	0	A	
8529909200	라디오 방송용·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0	A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0	A	
8529909500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0	A	
8529909610	천연색 튜너	0	A	
8529909620	흑백이나 단색 튜너	0	A	
8529909630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0	A	
852990964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	0	A	
8529909642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0	A	
8529909643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방식용	8	A	
8529909649	기타	0	A	
8529909650	그 밖의 흑백이나 단색용	0	A	
8529909910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 디지털카메라용(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을 포함한다)	0	A	
8529909921	디스플레이 모듈	0	A	
8529909929	기타	0	A	
8529909990	기타	0	A	
8530101010	지상장치용	8	A	
8530101090	기타	8	A	
8530109000	기타	8	A	
8530800000	그 밖의 기기	8	A	
8530900000	부분품	8	A	
8531101000	도난경보기	8	A	
8531102000	화재경보기	8	A	
8531103000	가스경보기	8	A	
8531104000	전기식의 벨	8	A	
8531105000	사이렌	8	A	
8531109000	그 밖의 신호기기	8	A	

853120100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	0	A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	A	
8531802000	도어벨 · 차임 · 버저와 이와 유사한 기기	8	A	
8531809000	기타	0	A	
8531901000	소호 제8531.10호의 것	0	A	
8531902000	소호 제8531.20호의 것	0	A	
8531909000	기타	0	A	
853210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A	
8532210000	탄탈륨의 것	0	A	
8532220000	알루미늄 전해의 것	0	A	
853223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	A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	A	
8532250000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	A	
8532290000	기타	0	A	
8532301000	폴리에틸렌 가변식 축전기	0	A	
8532309000	기타	0	A	
8532901000	고정식	0	A	
8532902000	가변식	0	A	
8532909000	기타	0	A	
8533100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0	A	
8533212000	서미스터	0	A	
8533219000	기타	0	A	
8533292000	서미스터	0	A	
8533299000	기타	0	A	
8533310000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0	A	
8533390000	기타	0	A	
8533401000	탄소가변의 것	0	A	
8533403000	바리스터	0	A	
8533409000	기타	0	A	
8533901000	가변식 저항기의 것	0	A	

8533909000	그 밖의 것	0	A	
8534001000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inductance), 저항기, 축전지 등]이 형성된 것	0	A	
8534002000	테이프형이나 리드프레임(lead frame)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0	A	
8534009000	기타	0	A	
8535100000	퓨즈	8	A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A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A	
8535291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미만인 것	8	A	
8535292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이상인 것	8	A	
853530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A	
853530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A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인 것	8	A	
8535400000	피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8	A	
8535901000	커넥터	8	A	
8535902000	터미널	8	A	
8535909000	기타	8	A	
8536101000	관형	8	A	
8536109000	기타	8	A	
8536200000	자동차단기	8	A	
853630000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0	A	
8536410000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8	A	
8536490000	기타	8	A	
8536501000	회전형	3.25	A	
8536502000	푸쉬 버튼형	3.25	A	
8536503000	마이크로형	3.25	A	
8536504000	전자개폐형(전자접속기를 포함한다)	3.25	A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로 한정하 다)	0	A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 으로 한정한다)	0	A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것(1,000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36509090	기타	3.25	A	
8536610000	램프홀더	8	A	
8536691000	동축케이블 · 인쇄회로용의 것	0	A	
8536699000	기타	8	A	
85367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A	
8536702000	실험실용 ·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것	8	A	
8536703010	주조 · 주형 · 압착 · 단조(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36703090	기타	8	A	
8536901000	접속함	0	A	
8536902000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또는 제8711호의 자동차용 배터리 클램프(battery clamp)	8	A	
8536909010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	A	
8536909090	기타	0	A	
8537101000	배전반	8	A	
8537102010	수치 제어반	8	A	
8537102020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8	A	
8537102090	기타	8	A	
8537103000	터치감응식 자료입력장치('터치스크린'이라 불림)[영상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기기에 결합되어 디스플레이 영역 내의 접촉여부와 위치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며, 제시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0	A	
8537109000	기타	8	A	
8537201000	배전반	8	A	
8537202000	제어반	8	A	
8537209000	기타	8	A	
8538100000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0	A	
8538901000	개폐기의 것	8	A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것	8	A	
8538903000	계전기의 것	8	A	
8538904000	제어반의 것	8	A	
8538909000	기타	8	A	
853910000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8	A	
8539210000	텅스텐 할로겐의 것	8	A	
8539221000	백열램프	8	A	
8539222000	장식용 램프	8	A	
8539223000	빔 램프	8	A	
8539224000	집어(集魚)용 램프	8	A	
8539229000	기타	8	A	
8539290000	기타	8	A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8	A	
8539321000	수은램프	8	A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8	A	
8539323000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램프	8	A	
8539391010	평판디스플레이의 후면광원(backlighting)용	0	A	
8539391090	기타	8	A	
8539399000	기타	8	A	
8539410000	아크램프	8	A	
8539491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A	
8539491090	기타	8	A	
8539492000	적외선 램프	8	A	
853950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8	A	
85399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A	
8539902000	방전램프의 것	8	A	
8539909000	기타	8	A	
8540110000	천연색	8	A	
8540120000	단색	8	A	
854020000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 (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8	A	

85404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A	
8540601000	천연색	8	A	
8540609000	기타	8	A	
8540710000	자전관(magnetron)	8	A	
8540791000	속도변조관(klystron)	8	A	
8540799000	기타	8	A	
8540810000	수신관이나 증폭관	8	A	
8540891000	송신기용 열전자관	8	A	
8540892000	방전관	8	A	
8540899000	기타	8	A	
8540911000	디플렉션 코일	8	A	
8540912000	전자총	8	A	
8540913000	새도우마스크	8	A	
8540919000	기타	8	A	
8540990000	기타	8	A	
85411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A	
8541109000	기타	0	A	
854121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A	
8541219000	기타	0	A	
85412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A	
8541299000	기타	0	A	
85413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A	
8541302000	사이리스터(thyristor)	0	A	
8541303000	다이액(diac)	0	A	
8541304000	트라이액(triac)	0	A	
85414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A	
8541402010	레이저소자	0	A	
8541402090	기타	0	A	
8541409010	광전도 셀	0	A	
8541409021	태양전지	0	A	

8541409022	태양광모듈(태양전지가 모듈 또는 패널로 조립된 것을 포함한다.)	0	A	
8541409029	기타	0	A	
8541409030	전하결합소자	0	A	
8541409090	기타	0	A	
85415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A	
8541502000	정류소자	0	A	
8541509000	기타	0	A	
8541601000	수정진동자	0	A	
8541609000	기타	0	A	
8541902000	다이오드의 것	0	A	
8541903000	트랜지스터의 것	0	A	
8541909000	기타	0	A	
854231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A	
854231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A	
854231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A	
8542314010	제9301호·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1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A	
854231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14040	제8528.42호·제8528.52호·제8528.62호·제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1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A	
8542314060	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제8429호·제8430호·제8443.99호·제8470호·제8471호·제8472호·제9026호·제9030호·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14090	기타	0	A	
8542321010	디램	0	A	
8542321020	에스램	0	A	

8542321030	플래시 메모리	0	A	
8542321090	기타	0	A	
854232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A	
854232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A	
8542324010	제9301호·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2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A	
854232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24040	제8528.42호·제8528.52호·제8528.62호·제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2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A	
8542324060	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제8429호·제8430호·제8443.99호·제8470호·제8471호·제8472호·제9026호·제9030호·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24090	기타	0	A	
854233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A	
854233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A	
854233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A	
8542334010	제9301호·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3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A	
854233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34040	제8528.42호·제8528.52호·제8528.62호·제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3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A	

8542334060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제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34090	기타	0	A	
854239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A	
854239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A	
854239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A	
8542394010	제9301호 · 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9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A	
854239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94040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9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A	
8542394060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제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394090	기타	0	A	
854290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의 것	0	A	
854290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의 것	0	A	
854290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것	0	A	
8542904010	제9301호 · 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90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A	
854290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904040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90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A	
8542904060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제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A	
8542904090	기타	0	A	
8543100000	입자가속기	8	A	
8543200000	신호발생기	0	A	
8543301000	인쇄회로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전기영동용은 제외한다)	0	A	
8543309000	기타	8	A	
854370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저장장치	8	A	
8543702010	이온정수기	8	A	
8543702020	미용기기	8	A	
8543702030	오디오믹서	8	A	
8543702040	이퀄라이저	8	A	
8543702050	오존 발생기	8	A	
8543702090	기타	8	A	
8543703000	전자번역기 · 전자사전	0	A	
8543704010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8	A	
8543704090	기타	8	A	
8543705000	유선전신용 · 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 · 유선전화용 통신망 연결용 제품	0	A	
8543709010	고주파증폭기	8	A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8	A	
8543709040	비디오게임 콘솔용 무선 적외선 원격조절장치	0	A	
8543709050	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0	A	
8543709060	휴대용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 리더기(문자, 정지화상 또는 음성파일의 기록 및 재생용으로 한정한다)	0	A	
8543709070	디지털신호처리기(사운드 믹싱을 위해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43709090	기타	8	A	
8543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A	
8543909011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0	A	
8543909019	기타	0	A	
8543909020	전자변역기 · 전자사전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 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43909090	기타	0	A	
8544111000	절연도로 피복전선	8	A	
8544119000	기타	8	A	
8544190000	기타	8	A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8	A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8	A	
8544421010	전기통신용	0	A	
8544421090	기타	8	A	
8544422010	전기통신용	0	A	
8544422090	기타	8	A	
8544429010	전기통신용	0	A	
8544429090	기타	8	A	
8544491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A	
8544491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	A	
8544491090	기타	8	A	
8544492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A	
8544492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	A	
8544492090	기타	8	A	
8544499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A	
8544499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	A	
8544499090	기타	8	A	
854460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A	
8544601090	기타	8	A	
854460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A	
8544602090	기타	8	A	

854460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A	
8544603090	기타	8	A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0	A	
8545110000	노(爐)용	5	A	
8545190000	기타	5	A	
8545200000	브러시	8	A	
8545901000	탄소봉	8	A	
8545902000	탄소난방필름	8	A	
8545909000	기타	8	A	
8546100000	유리로 만든 것	8	A	
8546200000	도자제의 것	8	A	
854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자	8	A	
8546909000	기타	8	A	
8547100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8	A	
8547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8	A	
8547900000	기타	8	A	
8548101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6.5	A	
8548102000	소호 제7204.21호, 제7204.29호, 제7204.30호, 제7204.49호의 것	0	A	
8548103000	소호 제7404.00호의 것	0	A	
8548104000	소호 제7503.00호, 제7902.00호의 것	0	A	
8548105000	소호 제7802.00호의 것	0	A	
8548106000	소호 제8107.30호, 제8111.00호의 것	3	A	
8548107000	소호 제8506.10호, 제8506.30호, 제8506.40호, 제8506.50호, 제8506.60호, 제8506.80호의 것	8	A	
8548109000	기타	8	A	
8548901000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0	A	
854890201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8	A	
8548902090	기타	8	A	
8548909000	기타	8	A	
860110000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A	

8601200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	A	
8602100000	디젤 전기기관차	0	A	
8602900000	기타	0	A	
8603101000	객차	5	A	
8603102000	화차	5	A	
8603901000	객차	5	A	
8603902000	화차	5	A	
8604004000	궤도검사차	5	A	
8604009000	기타	5	A	
8605001000	객차	5	A	
8605002000	수하물차	5	A	
8605009000	기타	5	A	
860610000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0	A	
860630000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8606910000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0	A	
86069200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8606990000	기타	0	A	
8607110000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A	
8607120000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A	
8607191000	차축	5	A	
8607192000	차륜	5	A	
8607193000	윤축(輪軸)	5	A	
8607199000	기타	5	A	
86072100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A	
8607290000	기타	5	A	
8607301000	축	5	A	
8607302000	연결장치	5	A	
8607303000	완충장치	5	A	
8607309000	기타	5	A	
8607910000	기관차용	5	A	

8607990000	기타	5	A	
8608001000	철도·궤도선로용 장치물	8	A	
8608002000	기계식의 신호·안전·교통 관제용 기기	8	A	
8608009000	부분품	8	A	
8609001000	액체 운반용	0	A	
8609002000	압축가스 운반용	0	A	
8609003000	일반화물 운반용	0	A	
8609004000	살아있는 동물 운반용	0	A	
8609005000	냉동용과 냉장용	0	A	
8609009000	기타	0	A	
8701100000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8	A	
8701201000	신차	8	A	
8701202000	중고차	8	A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0	A	
8701911010	신차	8	A	
8701911020	중고차	8	A	
8701912000	농업용 트랙터	0	A	
8701919000	기타	8	A	
8701921010	신차	8	A	
8701921020	중고차	8	A	
8701922000	농업용 트랙터	0	A	
8701929000	기타	8	A	
8701931010	신차	8	A	
8701931020	중고차	8	A	
8701932000	농업용 트랙터	0	A	
8701939000	기타	8	A	
8701941010	신차	8	A	
8701941020	중고차	8	A	
8701942000	농업용 트랙터	0	A	
8701949000	기타	8	A	
8701951010	신차	8	A	
8701951020	중고차	8	A	

8701952000	농업용 트랙터	0	A	
8701959000	기타	8	A	
8702101010	신차	10	A	
8702101020	중고차	10	A	
8702102010	신차	10	A	
8702102020	중고차	10	A	
8702103010	신차	10	A	
8702103020	중고차	10	A	
8702201000	신차	10	A	
8702202000	중고차	10	A	
8702301000	신차	10	A	
8702302000	중고차	10	A	
8702401000	신차	10	A	
8702402000	중고차	10	A	
8702901010	신차	10	A	
8702901020	중고차	10	A	
8702902010	신차	10	A	
8702902020	중고차	10	A	
8702903010	신차	10	A	
8702903020	중고차	10	A	
8703101000	설상주행용	8	A	
8703102000	골프용차	8	A	
8703109000	기타	8	A	
8703217000	신차	8	A	
8703218000	중고차	8	A	
8703227000	신차	8	A	
8703228000	중고차	8	A	
8703231010	신차	8	A	
8703231020	중고차	8	A	
8703239010	신차	8	A	
8703239020	중고차	8	A	
8703241010	신차	8	A	

8703241020	중고차	8	A	
8703249010	신차	8	A	
8703249020	중고차	8	A	
8703317000	신차	8	A	
8703318000	중고차	8	A	
8703321010	신차	8	A	
8703321020	중고차	8	A	
8703329010	신차	8	A	
8703329020	중고차	8	A	
8703337000	신차	8	A	
8703338000	중고차	8	A	
8703401000	신차	8	A	
8703402000	중고차	8	A	
8703501000	신차	8	A	
8703502000	중고차	8	A	
8703601000	신차	8	A	
8703602000	중고차	8	A	
8703701000	신차	8	A	
8703702000	중고차	8	A	
8703801000	신차	8	A	
8703802000	중고차	8	A	
8703900000	기타	8	A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704211010	신차	10	A	
8704211020	중고차	10	A	
8704219010	냉동차·냉장차	10	A	
8704219020	탱크차	10	A	
8704219090	기타	10	A	
8704221011	신차	10	A	
8704221012	중고차	10	A	
8704221091	신차	10	A	
8704221092	중고차	10	A	

8704229010	냉동차 · 냉장차	10	A	
8704229020	탱크차	10	A	
8704229090	기타	10	A	
8704231010	신차	10	A	
8704231020	중고차	10	A	
8704239010	냉동차 · 냉장차	10	A	
8704239020	탱크차	10	A	
8704239090	기타	10	A	
8704311010	신차	10	A	
8704311020	중고차	10	A	
8704319010	냉동차 · 냉장차	10	A	
8704319020	탱크차	10	A	
8704319090	기타	10	A	
8704321010	신차	10	A	
8704321020	중고차	10	A	
8704329010	냉동차 · 냉장차	10	A	
8704329020	탱크차	10	A	
8704329090	기타	10	A	
8704901010	신차	10	A	
8704901020	중고차	10	A	
8704909010	냉동차 · 냉장차	10	A	
8704909020	탱크차	10	A	
8704909090	기타	10	A	
8705101000	신축붐식	8	A	
8705102000	앵글식	8	A	
8705109000	기타	8	A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8	A	
8705300000	소방차	8	A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	A	
8705901010	농업용 살포차	8	A	
8705901090	기타	8	A	
8705909010	구난차	8	A	

8705909020	도로청소차	8	A	
8705909030	이동공작차	8	A	
8705909040	이동방송차	8	A	
8705909050	이동진료차	8	A	
87059090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8	A	
8705909070	제설차	8	A	
8705909090	기타	8	A	
8706001000	제8701호의 것	8	A	
8706002000	제8702호의 것	8	A	
8706003000	제8703호의 것	8	A	
8706004000	제8704호의 것	8	A	
8706005000	제8705호의 것	8	A	
8707100000	제8703호의 차량용	8	A	
8707901000	제8701호의 것	8	A	
8707902000	제8702호의 것	8	A	
8707903000	제8704호의 것	8	A	
8707904000	제8705호의 것	8	A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	A	
8708210000	안전벨트	8	A	
8708290000	기타	8	A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	A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8	A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8	A	
8708309000	기타	8	A	
870840000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8	A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 없다)과 그 부분품	8	A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	A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8	A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8	A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8	A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8	A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8	A	
8708940000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 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8	A	
8708951000	에어백	8	A	
8708959000	기타	8	A	
8708991010	제8701호의 것	8	A	
8708991020	제8702호의 것	8	A	
8708991030	제8703호의 것	8	A	
8708991040	제8704호의 것	8	A	
8708991050	제8705호의 것	8	A	
8708999000	기타	8	A	
8709110000	전기식의 것	8	A	
8709190000	기타	8	A	
8709900000	부분품	8	A	
8710001000	전차	0	A	
8710002000	그 밖의 장갑차량	0	A	
8710009000	부분품	0	A	
8711101000	모터사이클	8	A	
8711102000	모페드	8	A	
8711109000	기타	8	A	
8711201000	모터사이클	8	A	
8711209000	기타	8	A	
8711301000	모터사이클	8	A	
8711309000	기타	8	A	
8711401000	모터사이클	8	A	
8711409000	기타	8	A	
8711501000	모터사이클	8	A	
8711509000	기타	8	A	
8711601000	모터사이클	8	A	
8711609000	기타	8	A	
8711901000	모터사이클	8	A	

8711909000	기타	8	A	
8712001000	경기용	8	A	
8712009020	삼륜자전거	8	A	
8712009090	기타	8	A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A	
8713900000	기타	0	A	
8714101000	안장	8	A	
8714109000	기타	8	A	
871420000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0	A	
8714911000	프레임	8	A	
8714912000	포크	8	A	
8714919000	이들의 부분품	8	A	
8714921000	휠 림	8	A	
8714922000	스포크	8	A	
87149310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8	A	
8714932000	프리휠(free-wheel) 스프로킷 휠(sprocket-wheel)	8	A	
8714941000	브레이크	8	A	
8714949000	이들의 부분품	8	A	
8714950000	안장	8	A	
8714961000	페달	8	A	
8714962000	크랭크 기어(crankgear)	8	A	
8714969000	이들의 부분품	8	A	
8714990000	기타	8	A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5	A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8	A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A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8	A	
8716390000	기타	8	A	

871640000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A	
8716801000	손수레	8	A	
8716802000	우마차	8	A	
8716803000	썰매	8	A	
8716809000	기타	8	A	
871690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8	A	
8716909000	기타	8	A	
8801001000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0	A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8	A	
8801009090	기타	0	A	
8802111000	군용	0	A	
8802119000	기타	0	A	
8802121000	군용	0	A	
8802129000	기타	0	A	
8802201000	프로펠러식	0	A	
88022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A	
8802203000	터보제트식	0	A	
8802209000	기타	0	A	
8802301000	프로펠러식	0	A	
88023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A	
8802303000	터보제트식	0	A	
8802309000	기타	0	A	
8802401000	프로펠러식	0	A	
88024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A	
8802403000	터보제트식	0	A	
8802409000	기타	0	A	
8802601010	인공위성	0	A	
8802601090	기타	0	A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0	A	
8802603000	서보비틀(suborbital)	0	A	
8803100000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0	A	
880320000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0	A	

8803301000	비행기의 것	0	A	
8803302000	헬리콥터의 것	0	A	
8803901000	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의 것	0	A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것	0	A	
8803909000	기타	0	A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0	A	
8804002000	로토슈트(rotachute)	0	A	
880400901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0	A	
8804009020	로토슈트(rotachute)의 것	0	A	
8805101010	군용·경찰용	0	A	
8805101090	기타	5	A	
8805102010	군용·경찰용	0	A	
8805102090	기타	5	A	
8805109010	군용·경찰용	0	A	
8805109090	기타	5	A	
8805211010	군용·경찰용	0	A	
8805211090	기타	0	A	
8805212010	군용·경찰용	0	A	
8805212090	기타	0	A	
8805291010	군용·경찰용	0	A	
8805291090	기타	0	A	
8805292010	군용·경찰용	0	A	
8805292090	기타	0	A	
890110000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0	A	
8901200000	탱커(tanker)	0	A	
8901300000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8901901000	화물선	0	A	
8901902000	화객선	0	A	
8902001010	철강선	0	A	
8902001020	에프알피(FRP)선	0	A	

8902001030	목조선	0	A	
8902001090	기타	0	A	
8902002010	어획물의 가공선 · 저장선	0	A	
8902002090	기타	0	A	
8903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8	A	
8903910000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A	
89039200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8	A	
8903991000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	8	A	
8903999000	기타	8	A	
8904001000	예인선	5	A	
8904002000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5	A	
8904009000	기타	5	A	
8905100000	준설선	5	A	
8905201000	시추대	5	A	
8905202000	작업대	5	A	
8905209000	기타	5	A	
8905901000	조명선	5	A	
8905902000	소방선	5	A	
8905903000	기중기선	5	A	
8905905000	해난구조선	5	A	
8905907000	시추선	5	A	
8905908000	부선거(舢舨渠)	5	A	
8905909000	기타	5	A	
8906100000	군함	0	A	
8906900000	기타	0	A	
8907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5	A	
8907901000	부교(소호 제8907.10호의 것은 제외한다)	5	A	
8907902000	탱크	5	A	
8907903000	코퍼댐(coffer-dam)	5	A	
8907904000	부잔교(landing stage)	5	A	
8907905000	부표	5	A	

8907906000	수로부표	5	A	
8907909000	기타	5	A	
8908001000	해체용 선박	0	A	
8908009000	기타	0	A	
9001101000	광섬유	8	A	
9001102000	광섬유다발	8	A	
9001103000	광섬유 케이블	8	A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0	A	
9001300000	콘택트렌즈	8	A	
9001401000	시력 교정용	8	A	
9001409000	기타	8	A	
9001501000	시력 교정용	8	A	
9001509000	기타	8	A	
9001901000	프리즘	0	A	
9001902000	반사경	0	A	
9001903000	그 밖의 렌즈	0	A	
9001909000	기타	0	A	
9002111000	사진기용	8	A	
9002119010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8	A	
9002119020	영사기용	8	A	
9002119090	기타	8	A	
9002191000	현미경용	0	A	
9002192000	천체망원경용	0	A	
9002199000	기타	0	A	
9002201000	사진기용	0	A	
9002209000	기타	0	A	
9002901000	사진기용	0	A	
90029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	A	
9002909090	기타	0	A	
90031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900319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A	
9003199000	기타	8	A	

9003900000	부분품	8	A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A	
9004109000	기타	8	A	
9004901000	시력교정용 안경	8	A	
9004902000	3D 입체영상용 안경(능동방식인지 수동방식인지에 상관없다)	8	A	
9004909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A	
9004909090	기타	8	A	
9005100000	쌍안경	8	A	
9005801000	단안경	8	A	
9005802010	반사망원경	8	A	
9005802020	굴절식 천체망원경	8	A	
9005802090	기타	8	A	
9005809000	기타	8	A	
900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8	A	
9006301000	수중촬영용 사진기	8	A	
9006302000	공중측량용 사진기	8	A	
9006303000	내부기관의 내과용 · 외과용 검진용 사진기	8	A	
9006304000	법정비교용 사진기	8	A	
9006401000	폴라로이드 사진기	8	A	
9006402000	스티커 사진기	8	A	
9006409000	기타	8	A	
900651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A	
9006519000	기타	8	A	
900652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A	
9006529000	기타	8	A	
900653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A	
9006539010	일회용사진기	8	A	
9006539090	기타	8	A	
900659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A	
9006599000	기타	8	A	
900661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9006691000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A	
9006699000	기타	8	A	
9006910000	카메라용	8	A	
9006990000	기타	8	A	
9007100000	촬영기	8	A	
9007201000	폭이 20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	8	A	
9007209000	기타	8	A	
9007910000	촬영기용	8	A	
9007920000	영사기용	8	A	
9008501000	마이크로 필름 · 마이크로 피세나 그 밖의 마이크로 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는 상관없다)	8	A	
9008502000	그 밖의 투영기	8	A	
9008503000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8	A	
900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9010101000	인쇄 제판용	8	A	
9010102000	마이크로 필름용	8	A	
9010109010	반도체 제조용	0	A	
9010109090	기타	8	A	
901050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0	A	
9010509000	기타	0	A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0	A	
9010901010	제9010.50.1000호의 것	0	A	
9010901090	기타	0	A	
9010902000	제9010.50호 및 제9010.60호의 것(반도체 제조용은 제외한다)	0	A	
9010909000	기타	8	A	
901110100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A	
9011109000	기타	0	A	
901120101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A	
9011201090	기타	8	A	

9011209000	기타	8	A	
9011801000	편광 현미경	0	A	
9011802000	금속 현미경	0	A	
9011803000	위상차 현미경	0	A	
9011804000	생물 현미경	0	A	
9011809000	기타	0	A	
9011901000	제9011.10.1000호, 제9011.20.1010호의 것	0	A	
9011909000	기타	0	A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9012101090	기타	0	A	
9012102000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0	A	
9012901000	제9012.10.1010호의 것	0	A	
9012909000	기타	0	A	
9013101000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0	A	
9013109000	기타	8	A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0	A	
9013801120	전자계산기용	0	A	
9013801130	텔레비전용	8	A	
9013801140	모니터용	8	A	
9013801190	기타	8	A	
9013801920	전자계산기용	0	A	
9013801930	텔레비전용	8	A	
9013801990	기타	8	A	
901380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8	A	
9013803000	도어아이	8	A	
9013809000	기타	5	A	
9013901000	제9013.80.1120호, 제9013.80.1920호의 것	0	A	
9013902000	무기용 망원 조준기 또는 잠망경의 것	8	A	
9013909000	기타	0	A	
9014101010	항공기용	0	A	
9014101090	기타	0	A	

9014102010	항공기용	0	A	
9014102090	기타	0	A	
9014109000	기타	0	A	
901420000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0	A	
901480000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0	A	
9014901000	항공기용	0	A	
9014909000	기타	0	A	
9015100000	거리측정기	0	A	
901520000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0	A	
9015300000	수준기(水準器)	8	A	
9015400000	사진측량기기	0	A	
9015801000	토지 측량용	0	A	
9015802000	수로 측량용	0	A	
9015803000	해양 측량용	0	A	
9015804000	수리 계측용	0	A	
9015805000	기상 관측용	0	A	
9015809000	기타	0	A	
901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6001000	직시식	8	A	
9016002000	전자식	8	A	
9016008000	기타	8	A	
9016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9017101000	플로터	0	A	
9017109000	기타	8	A	
9017201010	플로터	0	A	
9017201090	기타	8	A	
9017202010	플로터	0	A	
9017202090	기타	8	A	
9017203000	계산용구	8	A	
9017209000	기타	8	A	
9017301000	마이크로미터	8	A	

9017302000	다이알 게이지류	8	A	
9017303000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lipers)	8	A	
9017309000	기타	8	A	
9017801000	눈금이 든 공은 자와 줄자	8	A	
9017809010	반도체 제조용	0	A	
9017809090	기타	8	A	
9017901000	반도체 제조용	0	A	
9017909010	플로터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9017909020	플로터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와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A	
9017909090	기타	8	A	
9018111000	심전계	0	A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8121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0	A	
901812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8131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0	A	
901813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81400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8	A	
9018191000	뇌파계	0	A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0	A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0	A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0	A	
9018198000	기타	0	A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0	A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831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	A	
9018321000	주사침	8	A	
9018322000	봉합침	8	A	
9018329000	기타	8	A	
9018391000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8	A	

9018392000	카테터(catheter)	8	A	
9018398000	기타	8	A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8	A	
90184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9018491000	치과용 버(bur)	8	A	
9018492000	치과용 유닛	8	A	
9018493000	치석 제거기	8	A	
9018498000	기타	8	A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9018501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0	A	
9018501090	기타	0	A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8901000	임신진단기	8	A	
9018902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	A	
9018902090	기타	8	A	
9018903000	산부인과용 기기	8	A	
901890400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8	A	
9018905000	인공신장기(인공신장기용 투석기를 포함한다)	8	A	
9018906000	전기신경자극기	0	A	
9018907000	수의과용 기기	8	A	
9018908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	A	
9018908090	기타	8	A	
9018909080	기타	8	A	
9018909090	부분품과 부속품	8	A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0	A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0	A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	A	
9019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9201000	오존 흡입기	0	A	
9019202000	산소 흡입기	0	A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0	A	
9019204000	인공호흡기	0	A	
9019208000	기타	0	A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20001000	가스마스크	8	A	
9020008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	8	A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9021100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0	A	
9021210000	의치	0	A	
9021290000	기타	0	A	
9021310000	인조관절	0	A	
9021390000	기타	0	A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A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A	
9021901000	스크루 · 스테이플 · 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0	A	
9021908000	기타	0	A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	A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0	A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0	A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0	A	
9022141090	기타	0	A	
9022142000	수 의과용	0	A	
9022191000	물리 · 화학시험용	0	A	
9022192000	공업용	0	A	
9022199000	기타	0	A	
9022211010	감마사진기 장치	0	A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0	A	
9022211030	코발트 60 치료기	0	A	
9022211090	기타	0	A	
9022212000	수 의과용	0	A	

9022291000	물리·화학시험용	0	A	
9022292000	공업용	0	A	
9022299000	기타	0	A	
9022300000	엑스선관	0	A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8	A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8	A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8	A	
9022901090	기타	8	A	
9022909010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	0	A	
9022909090	기타	8	A	
9023001000	인체나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0	A	
9023009000	기타	0	A	
9024101000	경도시험기	0	A	
902410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0	A	
9024103000	압축시험기	0	A	
9024104000	피로시험기	0	A	
9024105000	만능시험기	0	A	
9024106000	인쇄회로기판, 반도체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의 볼이나 와이어의 접착력·전단력 측정을 위한 기기	0	A	
9024109000	기타	0	A	
9024801010	신축시험기	0	A	
9024801020	마모시험기	0	A	
9024801090	기타	0	A	
9024809010	탄성시험기	0	A	
9024809020	소성시험기	0	A	
9024809090	기타	0	A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9024909000	기타	0	A	
9025111000	의료용·수의과용 온도계	0	A	
9025119000	기타	8	A	
9025191000	온도계	0	A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0	A	
9025192090	기타	0	A	
9025801000	액체 비중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8	A	
9025802000	기압계(다른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A	
9025803010	건습구 습도계	8	A	
9025803090	기타	8	A	
9025809000	기타	8	A	
902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26101000	유량계	0	A	
9026102000	액면계	0	A	
9026109000	기타	0	A	
9026201110	액체형	0	A	
9026201120	금속형	0	A	
9026201190	기타	0	A	
9026201900	기타	0	A	
9026209000	기타	0	A	
9026801000	열측정계	0	A	
9026802000	풍력계	0	A	
9026809000	기타	0	A	
9026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2710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0	A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A	
9027301000	분광계	0	A	
9027302000	분광광도계	0	A	
9027303000	분광사진기	0	A	
9027501000	편광계	0	A	
9027502000	굴절계	0	A	
9027503000	비색계	0	A	
9027504000	조도계	0	A	
9027509000	기타	0	A	
902780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화학분석용 기기	0	A	
9027802010	피·에이치(PH) 미터	0	A	

9027802020	열량계	0	A	
9027802030	점도계	0	A	
9027802040	팽창계	0	A	
9027802050	노출계	0	A	
9027802090	기타	0	A	
9027901000	마이크로톰(microtome)	0	A	
9027909010	반도체 제조용	0	A	
9027909091	가스·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톰(microtome)의 것	0	A	
9027909099	기타	0	A	
9028101010	디지털식	8	A	
9028101090	기타	8	A	
9028102000	검정용 계기	8	A	
9028201010	디지털식	8	A	
9028201090	기타	8	A	
9028202000	검정용 계기	8	A	
9028301010	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것	2.25	A	
9028301020	전류가 50암페어 미만인 것	2.25	A	
9028302000	검정용 계기	2.25	A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2.25	A	
9029101000	적산(積算)회전계	8	A	
9029102000	생산량계	8	A	
9029103000	택시미터	8	A	
9029104000	주행거리계	8	A	
9029105000	기계 등의 작동시간 지시용 적산(積算)계기	8	A	
9029109000	기타	8	A	
9029201010	시계식	8	A	
9029201090	기타	8	A	
9029202000	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	8	A	
9029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A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0	A	
9030201010	음극선관의 것	0	A	
9030201090	기타	0	A	

9030202000	오실로그래프(oscilloscope)	0	A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0	A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0	A	
9030331000	전압계	0	A	
9030332000	전류계	0	A	
9030333000	회로계	0	A	
9030334000	저항계	8	A	
9030335000	검류계	0	A	
9030336000	주파수 측정기	0	A	
9030339000	기타	8	A	
9030391000	전압계	0	A	
9030392000	전류계	0	A	
9030393000	회로계	0	A	
9030394000	저항계	0	A	
9030395000	검류계	0	A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0	A	
9030399000	기타	0	A	
9030401000	누화계(cross-talk meter)	0	A	
9030402000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0	A	
9030403000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0	A	
9030404000	잡음전압계(psophometer)	0	A	
9030409000	기타	0	A	
90308200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0	A	
903084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A	
9030890000	기타	0	A	
9030901000	소호 제9030.82호의 것	0	A	
9030909000	기타	0	A	
9031100000	균형시험기	0	A	
9031200000	테스트벤치(Test bench)	8	A	
9031411000	포시미터	0	A	
903141200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0	A	
9031419000	기타	0	A	

903149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0	A	
9031492000	광학식 각도계와 앵글게이지	0	A	
9031493000	포시미터	0	A	
9031494010	반도체 제조공정의 것	0	A	
9031494090	기타	0	A	
9031499000	기타	0	A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0	A	
9031802000	로드 셀	0	A	
9031809010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	0	A	
9031809020	기어 테스터	0	A	
9031809030	면적계	0	A	
9031809040	구면계	0	A	
9031809050	직물 검사장치	0	A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0	A	
9031809070	흙·균열 등 측정기	0	A	
9031809080	동력시험기	0	A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	0	A	
9031809099	기타	0	A	
9031901010	소호 제9031.41호의 것	0	A	
9031901090	그 밖의 것	0	A	
9031909000	기타	0	A	
9032101010	냉장고용	8	A	
9032101020	항공기용	5	A	
9032101090	기타	8	A	
9032102000	고정식	8	A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manostat)	0	A	
9032811010	항공기용	0	A	
9032811090	기타	0	A	
9032812010	항공기용	0	A	
9032812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	A	
9032812099	기타	0	A	
9032819010	항공기용	0	A	

9032819090	기타	0	A	
9032891010	항공기용	5	A	
9032891090	기타	8	A	
9032892010	항공기용	5	A	
9032892090	기타	8	A	
9032893010	항공기용	5	A	
9032893090	기타	8	A	
9032894010	항공기용	5	A	
9032894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A	
9032894099	기타	8	A	
9032899010	항공기용	5	A	
9032899090	기타	5	A	
9032901000	항공기용	5	A	
9032909000	기타	5	A	
90330000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A	
9101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A	
9101191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A	
9101199000	기타	8	A	
9101210000	자동권(自動捲)식	8	A	
9101290000	기타	8	A	
9101910000	전기구동식	8	A	
9101990000	기타	8	A	
9102111000	시각장애인용	8	A	
91021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A	
9102119010	батери·축전지 구동식	8	A	
9102119090	기타	8	A	
9102121000	батери·축전지 구동식	8	A	
9102129010	시각장애인용	8	A	
910212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A	

9102129090	기타	8	A	
9102191000	батери · 축전지 구동식	8	A	
9102199010	시각장애인용	8	A	
9102199020	문자판 · 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A	
9102199090	기타	8	A	
9102211000	시각장애인용	8	A	
9102212000	문자판 · 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A	
9102219000	기타	8	A	
9102291000	시각장애인용	8	A	
9102292000	문자판 · 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A	
9102299000	기타	8	A	
9102911000	스톱워치	8	A	
9102912000	시각장애인용	8	A	
9102919010	батери · 축전지 구동식	8	A	
9102919090	기타	8	A	
9102991000	스톱워치	8	A	
9102992000	시각장애인용	8	A	
9102999000	기타	8	A	
9103100000	전기구동식	8	A	
9103900000	기타	8	A	
9104001000	차량용	8	A	
9104002000	항공기용	8	A	
9104004000	선박용	8	A	
9104009000	기타	8	A	
9105110000	전기구동식	8	A	
9105190000	기타	8	A	
9105210000	전기구동식	8	A	
9105290000	기타	8	A	
9105910000	전기구동식	8	A	

9105990000	기타	8	A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8	A	
9106902000	타이머	8	A	
9106909000	기타	8	A	
9107001000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	8	A	
9107009000	기타	8	A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5	A	
910812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A	
9108190000	기타	5	A	
9108200000	자동권(自動捲)식	5	A	
9108900000	기타	5	A	
9109100000	전기구동식	8	A	
9109900000	기타	8	A	
9110111000	батери · 축전지 구동식	8	A	
9110119000	기타	8	A	
9110121000	батери · 축전지 구동식	8	A	
9110129000	기타	8	A	
9110190000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8	A	
9110901000	батери · 축전지 구동식	8	A	
9110909000	기타	8	A	
9111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A	
9111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A	
9111800000	그 밖의 케이스	8	A	
911190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A	
9111909000	기타	8	A	
9112200000	케이스	8	A	
9112900000	부분품	8	A	
9113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A	

9113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A	
9113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9113902000	가죽이나 컴퍼지션레더로 만든 것	8	A	
9113909000	기타	8	A	
9114100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8	A	
9114300000	문자판	8	A	
9114400000	지판과 브리지(bridge)	8	A	
9114900000	기타	8	A	
920110000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8	A	
9201200000	그랜드 피아노	8	A	
9201901000	하프시코드(harpsichord)	8	A	
9201909000	기타	8	A	
9202101000	바이올린	8	A	
9202102000	첼로	8	A	
9202109000	기타	8	A	
9202901000	기타	8	A	
9202902000	하프	8	A	
9202903000	만도린	8	A	
9202904000	밴조(banjo)	8	A	
9202909000	기타	8	A	
9205101000	트럼펫	8	A	
9205102000	트럼본	8	A	
9205109000	기타	8	A	
9205901010	플루트	8	A	
9205901020	클라리넷	8	A	
9205901030	색소폰	8	A	
9205901040	리코더(recorder)	8	A	
9205901090	기타	8	A	
9205902010	파이프 오르간	8	A	
9205902090	기타	8	A	
9205903010	아코디언	8	A	

9205903020	멜로디카	8	A	
9205903090	기타	8	A	
9205904000	하모니카	8	A	
9205909000	기타	8	A	
9206001000	북	8	A	
9206002000	목금	8	A	
9206003000	심벌	8	A	
9206004000	캐스터네츠	8	A	
9206005000	마라카스(maracas)	8	A	
9206006000	탬버린	8	A	
9206009000	기타	8	A	
920710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8	A	
9207103000	피아노	8	A	
9207109000	기타	8	A	
9207901000	기타	8	A	
9207902000	아코디언	8	A	
9207909000	기타	8	A	
9208100000	뮤지컬박스	8	A	
9208901000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8	A	
9208902000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8	A	
9208903000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8	A	
9208904000	뮤지컬소(musical saw)	8	A	
9208909000	기타	8	A	
9209301000	금속선으로 만든 것	8	A	
9209309000	기타	8	A	
92099100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8	A	
9209920000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A	
9209940000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A	
9209991000	뮤지컬 무브먼트의 것	8	A	
9209992000	박절기(metronom) · 소리굽쇠와 각종 조율관(調律管)	8	A	
9209993000	뮤지컬 박스용 메커니즘	8	A	
9209999000	기타	8	A	

9301101000	자주식(自走式)	0	A	
9301109000	기타	0	A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0	A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0	A	
9301902010	노리쇠작동	0	A	
9301902020	반자동	0	A	
9301902030	완전자동	0	A	
9301902090	기타	0	A	
9301903000	기관총	0	A	
9301904010	완전자동 피스톨(pistol)	0	A	
9301904090	기타	0	A	
9301909000	기타	0	A	
9302001010	리볼버(revolver)	0	A	
9302001021	반자동	0	A	
9302001029	기타	0	A	
9302001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	A	
9302001090	기타	0	A	
9302009010	리볼버(revolver)	0	A	
9302009021	반자동	0	A	
9302009029	기타	0	A	
9302009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	A	
9302009090	기타	0	A	
9303100000	총구장전 화기	8	A	
9303201011	펌프작동	8	A	
9303201012	반자동	8	A	
9303201019	기타	8	A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은 포함한다)	8	A	
9303201090	기타	8	A	
9303209011	펌프작동	8	A	
9303209012	반자동	8	A	

9303209019	기타	8	A	
9303209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A	
9303209090	기타	8	A	
9303301010	단발	8	A	
9303301020	반자동	8	A	
9303301090	기타	8	A	
9303309010	단발	8	A	
9303309020	반자동	8	A	
9303309090	기타	8	A	
9303900000	기타	8	A	
9304001000	공기총	8	A	
9304009000	기타	8	A	
9305101010	격발장치	0	A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0	A	
9305101030	총열	0	A	
9305101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가스완충기	0	A	
930510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A	
930510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A	
9305101070	개머리판·손잡이·플레이트	0	A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pistol)용]와 실린더[리볼버(revolver)용]	0	A	
9305101090	기타	0	A	
9305109010	격발장치	8	A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8	A	
9305109030	총열	8	A	
9305109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가스완충기	8	A	
9305109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8	A	
9305109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8	A	
9305109070	개머리판·손잡이·플레이트	8	A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8	A	
9305109090	기타	8	A	
9305201000	산탄총의 총열	8	A	

9305209010	라이플 총열	8	A	
9305209020	탄알집과 그 부분품	8	A	
9305209090	기타	8	A	
9305911010	격발장치	0	A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0	A	
9305911030	총열	0	A	
9305911040	피스톤 · 잠금러그(locking lug) · 가스완충기	0	A	
930591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A	
930591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A	
9305911070	소염기와 그 부분품	0	A	
9305911080	브리치(breech) · 노리쇠와 노리쇠집	0	A	
9305911090	기타	0	A	
9305919000	기타	0	A	
9305990000	기타	8	A	
9306210000	탄약	0	A	
9306290000	기타	0	A	
9306301000	리베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 · 무통 도살기용 탄약과 이들의 부분품	0	A	
9306309000	기타	0	A	
9306900000	기타	0	A	
9307000000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0	A	
9401100000	항공기용 의자	0	A	
9401200000	차량용 의자	8	A	
9401303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A	
9401309000	기타	0	A	
9401401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A	
9401402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A	
9401409000	기타	0	A	
94015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A	
94015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A	
9401591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A	
9401599000	기타	0	A	

940161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A	
9401619000	기타	0	A	
940169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A	
9401699000	기타	0	A	
940171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A	
9401719000	기타	0	A	
9401791000	가족으로 덮어씌운 것	0	A	
9401799000	기타	0	A	
9401801000	석재로 만든 것	0	A	
9401809000	기타	0	A	
9401901000	목재로 만든 것	8	A	
9401902000	금속으로 만든 것	8	A	
9401909000	기타	8	A	
9402101010	치과용 의자	0	A	
9402101090	기타	0	A	
9402109010	이발용·미용실용 의자	0	A	
9402109090	기타	0	A	
9402901000	수술대	0	A	
9402902000	산부인과용 검진대	0	A	
9402903000	분만대	0	A	
9402908000	기타	0	A	
9402909000	부분품	0	A	
94031000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0	A	
9403201000	침대	0	A	
9403209000	기타	0	A	
9403301000	책상	0	A	
9403309000	기타	0	A	
9403401000	식탁	8	A	
9403409000	기타	8	A	
9403501000	침대	0	A	
9403509000	기타	0	A	
9403601010	문갑	0	A	

9403601020	화장대	0	A	
9403601030	장롱	0	A	
9403601090	기타	0	A	
9403609010	문갑	0	A	
9403609020	화장대	0	A	
9403609030	장롱	0	A	
9403609090	기타	0	A	
9403701000	보행기	0	A	
9403709000	기타	0	A	
94038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A	
94038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A	
9403890000	기타	0	A	
9403900000	부분품	8	A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8	A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8	A	
94042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A	
9404300000	침낭(sleeping bag)	8	A	
9404900000	기타	8	A	
94051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A	
9405102000	형광램프의 것	8	A	
9405103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A	
9405109000	기타	8	A	
94052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A	
9405202000	형광램프의 것	8	A	
9405203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A	
9405209000	기타	8	A	
94053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A	
94053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A	
9405309000	기타	8	A	
9405401000	방폭형	8	A	
9405402000	투광형	8	A	

9405403000	가로등의 것	8	A	
9405409000	기타	8	A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	A	
9405601000	네온관의 것	8	A	
9405602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A	
9405603000	형광램프의 것	8	A	
9405604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A	
9405609000	기타	8	A	
9405911000	상들리에용	8	A	
9405919000	기타	8	A	
9405921000	상들리에용	8	A	
9405929000	기타	8	A	
9405991000	상들리에용	8	A	
9405999000	기타	8	A	
9406100000	나무로 만든 것	8	E	
940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9406902000	철강으로 만든 것	8	A	
9406903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A	
9406909000	기타	8	A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0	A	
9503001200	스쿠터	0	A	
9503001300	페달차	0	A	
9503001400	인형용 차	0	A	
9503001800	기타	0	A	
9503001900	부분품과 부속품	0	A	
950300211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A	
9503002120	고무로 만든 것	0	A	
950300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9503002140	도자제의 것	0	A	
9503002150	유리로 만든 것	0	A	
9503002160	나무로 만든 것	0	A	
9503002190	기타	8	A	

9503002910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8	A	
9503002990	기타	0	A	
9503003110	전기식 기차	0	A	
9503003190	부속품	0	A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제 9503.00.31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950300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0	A	
950300341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A	
9503003419	기타	8	A	
950300349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A	
9503003492	고무로 만든 것	0	A	
950300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9503003494	금속으로 만든 것	8	A	
9503003495	도자제의 것	0	A	
9503003496	유리로 만든 것	0	A	
9503003497	나무로 만든 것	0	A	
9503003499	기타	8	A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8	A	
9503003600	퍼즐	0	A	
9503003700	그 밖의 완구(세트 ·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A	
950300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9503003911	풍선 · 완구용 공 · 연과 이와 유사한 것	8	A	
9503003919	기타	8	A	
9503003990	부분품과 부속품(제9503.00.3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9504201000	당구대	0	A	
9504202000	당구공	0	A	
9504209000	기타	0	A	
9504301000	금전적 보상을 즉시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용구	0	A	
9504309000	기타	0	A	
9504400000	오락용 카드	0	A	

9504501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9504509000	기타	0	A	
9504901020	핀 세터	0	A	
9504901030	볼링 볼	0	A	
9504901040	레인	0	A	
9504901050	볼링 핀	0	A	
9504901090	기타	0	A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0	A	
9504903000	그 밖의 용구	0	A	
95049090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0	A	
9504909090	기타	0	A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8	A	
9505900000	기타	8	A	
9506110000	스키	8	A	
9506120000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8	A	
9506190000	기타	8	A	
9506210000	세일보드(sailboard)	8	A	
9506290000	기타	8	A	
9506310000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8	A	
9506320000	골프공	8	A	
9506391000	골프채의 부분품	8	A	
9506399000	기타	8	A	
9506401000	탁구대	8	A	
9506402000	탁구라켓	8	A	
9506403000	탁구공	8	A	
9506409000	기타	8	A	
9506510000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9506591000	배드민턴 라켓	8	A	
9506599000	기타	8	A	
9506610000	론테니스(lawn-tennis) 공	8	A	
9506621000	축구공	8	A	

9506622000	농구공	8	A	
9506623000	배구공	8	A	
9506624000	핸드볼공	8	A	
9506625000	미식축구용	8	A	
9506629000	기타	8	A	
9506691000	배드민턴 셔틀콕	8	A	
9506692000	야구공	8	A	
9506699000	기타	8	A	
950670000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A	
950691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8	A	
9506990000	기타	8	A	
9507101000	유리섬유로 만든 것	8	A	
9507102000	카본으로 만든 것	8	A	
9507109000	기타	8	A	
9507200000	낚시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A	
9507300000	낚시 릴	8	A	
9507901000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	8	A	
9507909000	기타	8	A	
950810000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8	A	
9508900000	기타	8	A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8	A	
9601901010	진주 양식용 핵	0	A	
9601901090	기타	8	A	
9601902000	뿔로 된 것	8	A	
9601909010	진주양식용 핵	0	A	
9601909090	기타	8	A	
9602001000	젤라틴 캡슐	8	A	
9602009010	가공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예: 상아야자)와 식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	8	A	

9602009020	흑옥(광물성 흑옥 유사품을 포함한다) · 호박 · 해포석 · 응결한 호박 · 응결한 해포석의 가공품과 그 제품	8	A	
9602009090	기타	8	A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A	
9603210000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8	A	
9603290000	기타	8	A	
9603300000	회화용 붓 · 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8	A	
9603400000	페인트용 · 디스탬퍼(distemper)용 · 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8	A	
9603500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 · 기구 ·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9603900000	기타	8	A	
9604000000	수동식 চে와 어레미	8	A	
960500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8	A	
960610000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 스냅파스너(snap-fastener) · 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8	A	
96062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8	A	
960622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8	A	
9606291000	조개껍질로 만든 것	8	A	
9606299000	기타	8	A	
960630000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8	A	
9607110000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A	
960719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9607199000	기타	8	A	
960720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A	
9607202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A	
9607209000	기타	8	A	

9608100000	볼펜	8	A	
960820000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8	A	
9608301000	만년필	8	A	
9608309000	기타	8	A	
9608401000	프로펠링 펜슬(propelling pencil)	8	A	
9608402010	메커니컬 타입의 것	8	A	
9608402090	기타	8	A	
96085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8	A	
960860000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9608911000	펜촉	8	A	
9608912000	닙 포인트(nib point)	8	A	
9608991000	부분품	8	A	
9608999000	기타	8	A	
9609101000	연필	8	A	
9609102000	색연필	8	A	
9609103000	크레용	8	A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9609901000	크레용 · 오일파스텔	8	A	
9609902000	파스텔	8	A	
9609903010	필기용	8	A	
9609903090	기타	8	A	
9609909000	기타	8	A	
9610001000	석판	8	A	
9610002000	흑판	8	A	
9610009000	기타	8	A	
9611001000	스탬프	8	A	
9611002000	수동식 인쇄용 세트	8	A	
9611009000	기타	8	A	
9612101000	타자기용	8	A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	8	A	

9612109000	기타	8	A	
9612200000	잉크 패드	8	A	
961310000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961320000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A	
9613800000	그 밖의ライター	8	A	
9613901000	압전식 점화 유닛	8	A	
9613909000	기타	8	A	
9614001000	파이프와 파이프 볼(pipe bowl)	8	A	
9614009000	기타	8	A	
9615111000	빗	8	A	
9615119000	기타	8	A	
9615191000	빗	8	A	
9615199000	기타	8	A	
9615901000	머리핀	8	A	
9615909000	기타	8	A	
961610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8	A	
9616200000	화장용 분첩과 패드	8	A	
9617001000	보온병	8	A	
9617002000	보온 도시락	8	A	
9617008000	기타	8	A	
9617009000	부분품	8	A	
9618001000	마네킹 인형	8	A	
9618002000	자동 인형	8	A	
9618009000	기타	8	A	
961900101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0	A	
9619001090	기타	0	A	
9619002000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8	A	

9619003010	제6108.21호, 제6108.22호, 제6108.29호, 제6111.20호, 제6111.30호, 제6111.90호, 제6209.20호, 제6209.30호, 제6209.90호, 제6210.50호의 것	13	A	
9619003020	제6113호, 제6208.91호, 제6208.92호, 제6208.99호의 것	13	A	
9619004000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63류 주2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0	A	
961900901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6.5	A	
9619009090	기타	6.5	A	
9620000000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E	
9701101000	회화	0	A	
9701102000	데생	0	A	
9701103000	파스텔	0	A	
9701900000	기타	0	A	
9702001000	판화	0	A	
9702002000	인쇄화	0	A	
9702003000	석판화	0	A	
9703001000	조각	0	A	
9703002000	조상(彫像)	0	A	
9704001000	우표	0	A	
9704009000	기타	0	A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사학 · 고고학 · 고생물학 · 민족학 ·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9706001000	도자기류	0	A	
9706002000	악기류	0	A	
9706009000	기타	0	A	

부속서 2-나
에콰도르 관세양허표

HSE 2017	품목명	기준세율	안데스 가격밴드제도	양허 유형	참고
0101.21.00.00	- - 번식용	15		A	
0101.29.10.00	- - - 경주용	20		A	
0101.29.90.00	- - - 기타	20		A	
0101.30.00.00	- 당나귀	0		A	
0101.90.00.00	- 기타	15		A	
0102.21.00.00	- - 번식용	0		A	
0102.29.10.00	- - - 싸움용	15		A	
0102.29.90.00	- - - 기타	5		A	
0102.31.00.00	- - 번식용	0		A	
0102.39.00.00	- - 기타	5		A	
0102.90.00.00	- 기타	5		A	
0103.10.00.00	- 번식용	0		A	
0103.91.00.00	- -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10		A	
0103.92.00.00	- -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10		A	
0104.10.10.00	- - 번식용	0		A	
0104.10.90.00	- - 기타	10		A	
0104.20.10.00	- - 번식용	0		A	
0104.20.90.00	- - 기타	10		A	
0105.11.00.10	- - - 중(重) 암컷 육용 종계	0		A	
0105.11.00.20	- - - 중(重) 수컷 육용 종계	0		A	
0105.11.00.30	- - - 경(輕) 암컷 종계	0		A	
0105.11.00.40	- - - 경(輕) 수컷 종계	0		A	
0105.11.00.50	- - - 상업용 산란용 암탉	0		A	
0105.11.00.60	- - - 브로일러(broiler) 닭	0		A	
0105.11.00.90	- - - 기타	0		A	
0105.12.00.00	- - 칠면조	0		A	
0105.13.00.00	- - 오리	0		A	

0105.14.00.00	- - 거위	0		A	
0105.15.00.00	- - 기니아새	0		A	
0105.94.00.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10		A	
0105.99.00.00	- - 기타	10		A	
0106.11.00.00	- - 영장류	20		A	
0106.12.00.00	- - 고래 · 돌고래 · 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20		A	
0106.13.11.00	- - - 라마[라마 글라마(Lama glama)], [과나코스(guanacos)를 포함한다]	10		A	
0106.13.12.00	- - - 알파카[라마 파쿠스(Lama pacus)]	10		A	
0106.13.19.00	- - - 기타	10		A	
0106.13.90.00	- - - 기타	10		A	
0106.14.00.00	- - 토끼	10		A	
0106.19.00.10	- - - 개	20		A	
0106.19.00.90	- - - 기타	10		A	
0106.20.00.0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0		A	
0106.31.00.00	- - 맹금류	20		A	
0106.32.00.00	- - 앵무류[패럿류(parrots) · 패러키트류(parakeets) · 금강앵무류 ·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20		A	
0106.33.00.00	- - 타조와 에뮤(emus)[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드iae(Dromaius novaehollandiae)]	20		A	
0106.39.00.00	- - 기타	20		A	
0106.41.00.00	- - 벌	5		A	
0106.49.00.00	- - 기타	5		A	
0106.90.00.00	- 기타	15		A	
0201.10.0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0		X	
0201.20.0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0		X	
0201.30.00.10	- - 얇게 절단한 것	20		X	
0201.30.00.90	- - 기타	20		X	
0202.10.0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0		X	
0202.20.0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0		X	
0202.30.00.10	- - 얇게 절단한 것	20		X	
0202.30.00.90	- - 기타	20		X	
0203.11.00.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5	APBS	X	

0203.12.00.00	-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5	APBS	X	
0203.19.10.00	- - - 뼈 없는 고기	45	APBS	X	
0203.19.20.00	- - - 갈비살 · 갈비	45	APBS	X	
0203.19.30.00	- - - 살코기가 있는 베이컨	45	APBS	X	
0203.19.90.00	- - - 기타	45	APBS	X	
0203.21.00.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5	APBS	X	
0203.22.00.00	-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5	APBS	X	
0203.29.10.00	- - - 뼈 없는 고기	45	APBS	X	
0203.29.20.00	- - - 갈비살 · 갈비	45	APBS	X	
0203.29.30.00	- - - 살코기가 있는 베이컨	45	APBS	X	
0203.29.90.00	- - - 기타	45	APBS	X	
0204.10.00.0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D	
0204.21.00.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0		D	
0204.22.00.00	-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0		E	
0204.23.00.00	- - 뼈 없는 것	20		E	
0204.30.00.0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E	
0204.41.00.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0		D	
0204.42.00.00	-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0		E	
0204.43.00.00	- - 뼈 없는 것	20		D	
0204.50.00.00	- 산양의 고기	20		E	
0205.00.00.00	말 · 당나귀 · 노새 · 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D	
0206.10.00.00	-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X	
0206.21.00.00	- - 혀	20		X	
0206.22.00.00	- - 간	20		X	
0206.29.00.00	- - 기타	20		X	
0206.30.00.00	-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X	
0206.41.00.00	- - 간	30		X	
0206.49.10.00	식용 껍질(가죽 · 원피)	30		X	
0206.49.90.00	- - - 기타	30		X	
0206.80.00.00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E	
0206.90.00.00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E	

0207.11.00.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APBS	X	
0207.12.00.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APBS	X	
0207.13.00.00	- - 절단육과 설육(脬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5.5	APBS	X	
0207.14.00.00	- -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85.5	APBS	X	
0207.24.00.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APBS	X	
0207.25.00.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APBS	X	
0207.26.00.00	- - 절단육과 설육(脬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5.5	APBS	X	
0207.27.00.00	- -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85.5	APBS	X	
0207.41.00.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E	
0207.42.00.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E	
0207.43.00.00	-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E	
0207.44.00.00	-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5.5		E	
0207.45.00.00	-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85.5		E	
0207.51.00.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E	
0207.52.00.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E	
0207.53.00.00	-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E	
0207.54.00.00	-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5.5		E	
0207.55.00.00	-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85.5		E	
0207.60.00.1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E	
0207.60.00.2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E	
0207.60.00.30	-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E	
0207.60.00.40	-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5.5		E	
0207.60.00.50	-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85.5		E	
0208.10.00.00	- 토끼의 것	30		A	
0208.30.00.00	- 영장류의 것	20		A	
0208.40.00.00	- 고래 · 돌고래류 · 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20		A	
0208.50.00.00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0		A	
0208.60.00.00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20		A	
0208.90.00.00	- 기타	20		E	

0209.10.10.00	- - 살코기가 없는 베이컨	30		X	
0209.10.90.00	- - 기타	30		X	
0209.90.00.00	- 기타	30		X	
0210.11.00.00	-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X	
0210.12.00.00	- - 복부살(삼겹살)과 이를 절단한 것	45	APBS	X	
0210.19.00.00	- - 기타	45	APBS	X	
0210.20.00.00	- 쇠고기	30		X	
0210.91.00.00	- - 영장류의 것	30		A	
0210.92.00.00	- - 고래 · 돌고래류 · 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30		A	
0210.93.00.00	-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30		A	
0210.99.10.00	- - -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30		X	
0210.99.90.00	- - - 기타	30		X	
0301.11.00.00	- - 민물의 것	20		A	
0301.19.00.00	- - 기타	20		A	
0301.91.10.00	- - - 번식용 또는 산업양식용의 것	0		A	
0301.91.90.00	- - - 기타	10		A	
0301.92.00.00	- - 뱀장어[앙굴라(Anguilla)종]	5		A	
0301.93.00.00	-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렵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5		A	
0301.94.00.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0		A	
0301.95.00.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		A	
0301.99.11.00	- - - - 틸라피아	0		A	
0301.99.19.10	- - - - - 만새기[코리파이나 히푸루스(Coryphaena Hippurus)]	0		A	
0301.99.19.90	- - - - - 기타	0		A	
0301.99.90.10	- - - - 만새기[코리파이나 히푸루스(Coryphaena Hippurus)]	10		A	

0301.99.90.90	- - - 기타	10		A	
0302.11.00.00	- - 중어[참모 트루타(Salmo trutta) • 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30		A	
0302.13.00.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30		A	
0302.14.00.00	- - 대서양 연어[참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30		A	
0302.19.00.00	- - 기타	30		A	
0302.21.00.00	- - 덩치[레인하르트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30		A	
0302.22.00.00	-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30		A	
0302.23.00.00	- - 서대[솔레아(Solea)종]	30		A	
0302.24.00.00	- -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30		A	
0302.29.00.00	- - 기타	30		A	
0302.31.00.00	-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30		A	
0302.32.00.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0		A	
0302.33.00.00	-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0		A	
0302.34.00.00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0		A	
0302.35.00.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30		A	
0302.36.00.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30		A	
0302.39.00.00	- - 기타	0		A	
0302.41.00.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30		A	
0302.42.00.00	-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30		A	

0302.43.00.00	-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0		A	
0302.44.00.00	-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30		A	
0302.45.00.00	-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30		A	
0302.46.00.00	- -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30		A	
0302.47.00.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30		A	
0302.49.00.00	- - - 기타	30		A	
0302.51.00.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30		A	
0302.52.00.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30		A	
0302.53.00.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30		A	
0302.54.00.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30		A	
0302.55.00.00	- - 멧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30		A	
0302.56.00.00	-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30		A	
0302.59.00.00	- - 기타	30		A	
0302.71.00.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30		A	
0302.72.00.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30		A	
0302.73.00.00	- - 잉어[자이프린더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30		A	
0302.74.00.00	- -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30		A	
0302.79.00.00	- - 기타	30		A	
0302.81.00.10	- - - 환도상어[알로피아스 펠라지쿠스(Alopias pelagicus)]	30		A	

0302.81.00.20	- - - 청새리상어[프리오나케 글라우카(Prionace glauca)]	30		A	
0302.81.00.30	- - - 미흑점상어[카르카리누스 팔시포르미스(Carcharhinus falciformis)]	30		A	
0302.81.00.40	- - - 장완홍상어[카르카리누스 롱기마누스(Carcharhinus longimanus)]	30		A	
0302.81.00.50	- - - 청상아리[이수루스 옥시린쿠스(Isurus oxyrinchus)]	30		A	
0302.81.00.60	- - - 귀상어[슈피르나 자가에나(Sphyrna zygaena)]	30		A	
0302.81.00.70	- - - 홍살귀상어[슈피르나 레위니(Sphyrna lewini)]	30		A	
0302.81.00.90	- - - 기타	30		A	
0302.82.00.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30		A	
0302.83.00.00	- - 남극 이빨고기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30		A	
0302.84.00.00	-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30		A	
0302.85.00.00	- - 돔[스파리대(Sparidae)과]	30		A	
0302.89.00.00	- - 기타	30		A	
0302.91.00.00	-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30		A	
0302.92.00.10	- - - 환도상어[알로피아스 펠라지쿠스(Alopias pelagicus)]	30		A	
0302.92.00.20	- - - 청새리상어[프리오나케 글라우카(Prionace glauca)]	30		A	
0302.92.00.30	- - - 미흑점상어[카르카리누스 팔시포르미스(Carcharhinus falciformis)]	30		A	
0302.92.00.40	- - - 장완홍상어[카르카리누스 롱기마누스(Carcharhinus longimanus)]	30		A	
0302.92.00.50	- - - 청상아리[이수루스 옥시린쿠스(Isurus oxyrinchus)]	30		A	
0302.92.00.60	- - - 귀상어[슈피르나 자가에나(Sphyrna zygaena)]	30		A	
0302.92.00.70	- - - 홍살귀상어[슈피르나 레위니(Sphyrna lewini)]	30		A	
0302.92.00.90	- - - 기타	30		A	

0302.99.00.11	- - -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와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마코이(Thunnus maccoyi)] 의 것	30		A	
0302.99.00.12	- - - - 황다랑어의 것[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0		A	
0302.99.00.13	- - -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의 것	0		A	
0302.99.00.14	- -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의 것	0		A	
0302.99.00.19	- - - - 그 밖의 다랑어의 것	0		A	
0302.99.00.20	-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의 것	0		A	
0302.99.00.90	- - - 기타	30		A	
0303.11.00.00	- -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30		A	
0303.12.00.00	- - 그 밖의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30		A	
0303.13.00.00	-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30		A	

0303.14.00.00	- - 송어[절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옹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옹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옹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 옹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 •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30		A	
0303.19.00.00	- - 기타	30		A	
0303.23.00.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종]	0		A	
0303.24.00.00	- -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종 • 실루루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종 • 익타루루스(<i>Ictalurus</i>)종]	0		A	
0303.25.00.00	- -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종 • 카라지우스(<i>Carassius</i>)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종 • 시리누스(<i>Cirrhinus</i>)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종]	0		A	
0303.26.00.00	- - 뱀장어[앙귤라(<i>Anguilla</i>)종]	30		A	
0303.29.00.00	- - 기타	30		A	
0303.31.00.00	- - 덩치[레인하르트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i>Reinhardtius hippoglossoides</i>)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i>Hippoglossus hippoglossus</i>)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i>Hippoglossus stenolepis</i>)]	30		A	
0303.32.00.00	-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i>Pleuronectes platessa</i>)]	30		A	
0303.33.00.00	- - 서대[솔레아(<i>Solea</i>)종]	30		A	
0303.34.00.00	- -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i>Psetta maxima</i>)]	30		A	
0303.39.00.00	- - 기타	30		A	
0303.41.00.00	-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i>Thunnus alalunga</i>)]	0		A	
0303.42.00.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i>Thunnus albacares</i>)]	0		A	
0303.43.00.00	-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0		A	
0303.44.00.00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i>Thunnus obesus</i>)]	0		A	
0303.45.00.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i>Thunnus thynnus</i>)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i>Thunnus orientalis</i>)]	30		A	
0303.46.00.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i>Thunnus maccoyii</i>)]	30		A	
0303.49.00.00	- - 기타	30		A	

0303.51.00.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30		A	
0303.53.00.10	- -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0		A	
0303.53.00.90	- - - 기타	20		A	
0303.54.00.00	-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0		A	
0303.55.00.00	-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0		A	
0303.56.00.00	- -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0		A	
0303.57.00.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A	
0303.59.00.00	- - 기타	0		A	
0303.63.00.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30		A	
0303.64.00.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30		A	
0303.65.00.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30		A	
0303.66.00.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30		A	
0303.67.00.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		A	
0303.68.00.00	-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0		A	
0303.69.00.00	- - 기타	0		A	
0303.81.00.10	- - - 환도상어[알로피아스 펠라지쿠스(Alopias pelagicus)]	30		A	
0303.81.00.20	- - - 청새리상어[프리오나케 글라우카(Prionace glauca)]	30		A	
0303.81.00.30	- - - 미흑점상어[카르카리누스 팔시포르미스(Carcharhinus falciformis)]	30		A	
0303.81.00.40	- - - 장완홍상어[카르카리누스 롱기마누스(Carcharhinus longimanus)]	30		A	
0303.81.00.50	- - - 청상아리[이수루스 옥시린쿠스(Isurus oxyrinchus)]	30		A	
0303.81.00.60	- - - 귀상어[슈피르나 자가에나(Sphyrna zygaena)]	30		A	
0303.81.00.70	- - - 홍살귀상어[슈피르나 레위니(Sphyrna lewini)]	30		A	
0303.81.00.90	- - - 기타	30		A	
0303.82.00.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0		A	
0303.83.00.00	- - 남극 이빨고기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A	
0303.84.00.00	-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30		A	

0303.89.00.10	- - - 만새기[코리파이나 히푸루스(Coryphaena Hippurus)]	0		A	
0303.89.00.90	- - - 기타	0		A	
0303.91.00.00	-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30		A	
0303.92.00.10	- - - 환도상어[알로피아스 펠라지쿠스(Alopias pelagicus)]	30		A	
0303.92.00.20	- - - 청새리상어[프리오나케 글라우카(Prionace glauca)]	30		A	
0303.92.00.30	- - - 미흑점상어[카르카리누스 팔시포르미스(Carcharhinus falciformis)]	30		A	
0303.92.00.40	- - - 장완흉상어[카르카리누스 롱기마누스(Carcharhinus longimanus)]	30		A	
0303.92.00.50	- - - 청상아리[이수루스 옥시린쿠스(Isurus oxyrinchus)]	30		A	
0303.92.00.60	- - - 귀상어[슈피르나 자가에나(Sphyrna zygaena)]	30		A	
0303.92.00.70	- - - 홍살귀상어[슈피르나 레위니(Sphyrna lewini)]	30		A	
0303.92.00.90	- - - 기타	30		A	
0303.99.00.10	- - - 연어과 및 넙치류[플레우로텍티도스(Pleuronéctidos) · 보티도스(Bótidos) · 시노글로시도스(Cynoglósidós) · 솔레이도스(Soleidos) · 에스코프탈미도스(Escoftálmidos) · 시타리도스(Citáridos)],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의 것	30		A	
0303.99.00.20	- - - 뱀장어[앙길라(Anguilla)종] · 나일 퍼치[라테스 nil로티쿠스(Lates niloticus)] · 가물치[카나(Channa)종]의 것	30		A	
0303.99.00.31	- - -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의 것	0		A	
0303.99.00.32	- -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의 것	0		A	
0303.99.00.33	- - -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의 것	0		A	
0303.99.00.34	- -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의 것	0		A	
0303.99.00.39	- - - - 그 밖의 다랑어의 것	30		A	
0303.99.00.40	- -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종] ·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의 것	20		A	
0303.99.00.50	- -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가두스 오각(Gadus ogac),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 해덕[멜라노그램무스 애글피너스(Melanogrammus aeglefinus)]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30		A	
0303.99.00.60	-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30		A	
0303.99.00.70	- -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30		A	
0303.99.00.90	- - - 기타	0		A	

0304.31.00.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30		A	
0304.32.00.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30		A	
0304.33.00.00	-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30		A	
0304.39.00.00	- - 기타	30		A	
0304.41.00.00	-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30		A	
0304.42.00.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30		A	
0304.43.00.00	- - 넙치류[플루로넵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Citharidae)과]	30		A	
0304.44.00.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o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30		A	
0304.45.00.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30		A	
0304.46.00.00	- - 남극 이빨고기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30		A	
0304.47.00.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30		A	
0304.48.00.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30		A	
0304.49.00.10	- - - 만새기[코리파이나 히푸루스(Coryphaena Hippurus)]	30		A	
0304.49.00.90	- - - 기타	30		A	

0304.51.00.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30		A	
0304.52.00.00	- - 연어과	30		A	
0304.53.00.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our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30		A	
0304.54.00.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30		A	
0304.55.00.00	- - 남극 이빨고기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30		A	
0304.56.00.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30		A	
0304.57.00.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30		A	
0304.59.00.00	- - 기타	30		A	
0304.61.00.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30		A	
0304.62.00.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30		A	
0304.63.00.00	-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30		A	
0304.69.00.00	- - 기타	30		A	
0304.71.00.00	- - 대구[가투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투스 오각(Gadus ogac) · 가투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30		A	
0304.72.00.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30		A	
0304.73.00.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30		A	
0304.74.00.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30		A	
0304.75.00.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30		A	
0304.79.00.10	- - - 만새기[코리파이나 히푸루스(Coryphaena Hippurus)]	30		A	
0304.79.00.90	- - - 기타	30		A	

0304.81.00.00	-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30		A	
0304.82.00.00	- - 연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30		A	
0304.83.00.00	- - 납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크프탈미대(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Citharidae)과]	30		A	
0304.84.00.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30		A	
0304.85.00.00	- - 남극 이빨고기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30		A	
0304.86.00.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30		A	
0304.87.00.00	-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30		A	
0304.88.00.00	- - 곱상어, 그 밖의 상어,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30		A	
0304.89.00.00	- - 기타	30		A	
0304.91.00.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30		A	
0304.92.00.00	- - 남극 이빨고기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30		A	

0304.93.00.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30		A	
0304.94.00.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30		A	
0304.95.00.00	- - 브레그마세로티네(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네(Euclichthyidae)과 · 가디네(Gadidae)과 · 마크로우리네(Macrouridae)과 · 멜라노니네(Melanonidae)과 · 메르루치네(Merlucciidae)과 · 모리네(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네(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30		A	
0304.96.00.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30		A	
0304.97.00.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네(Rajidae)과]	30		A	
0304.99.00.10	- - - 만새기[코리파이나 히푸루스(Coryphaena Hippurus)]	30		A	
0304.99.00.90	- - - 기타	30		A	
0305.10.00.00	-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A	
0305.20.00.00	- 어류의 간 · 어란(魚卵)(건조한 것 · 훈제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A	
0305.31.00.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30		A	

0305.32.00.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o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30		A	
0305.39.10.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의 것	30		A	
0305.39.90.00	- - - 기타	30		A	
0305.41.00.00	-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30		A	
0305.42.00.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30		A	
0305.43.00.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30		A	
0305.44.00.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30		A	
0305.49.00.10	- - - 만새기[코리파이나 히푸루스(Coryphaena Hippurus)]	30		A	
0305.49.00.90	- - - 기타	30		A	

0305.51.00.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25		A	
0305.52.00.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종],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종 · 실루루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종 · 익타루루스(<i>Ictalurus</i>)종],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종 · 카라시우스(<i>Carassius</i>)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종 · 시리누스(<i>Cirrhinus</i>)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렵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종], 뱀장어[앙굴라(<i>Anguilla</i>)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25		A	
0305.53.10.00	- - - 민대구[메루키우스(<i>Merluccius</i>)종 · 유르피키스(<i>Urophycis</i>)종]	25		A	
0305.53.90.00	- - - 기타	25		A	
0305.54.00.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멸치[엔그라우리스(<i>Engraulis</i>)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종], 브리스링(<i>brisling</i>)이나 스프랫(<i>sprats</i>)[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i>Scomber scombrus</i>)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콤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줄무늬 고등어(<i>Indian mackerels</i>)[라스트렐리거(<i>Rastrelliger</i>)종], 삼치[스콤버로모루스(<i>Scomberomorus</i>)종], 전갱이[트라커루스(<i>Trachurus</i>)종], 줄전갱이류[카랑크스(<i>Caranx</i>)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i>Rachycentron canadum</i>)], 병어[팜푸스(<i>Pampus</i>)종], 콩치[콜로라비스 사이라(<i>Cololabis saira</i>)], 가라지[데캡테루스(<i>Decapterus</i>)종],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i>Mallotus villosus</i>)],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i>Euthynnus affinis</i>)], 버니토[사르다(<i>Sarda</i>)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Istiophoridae</i>)]	25		A	

0305.59.00.00	- - 기타	25		A	
0305.61.00.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5		A	
0305.62.00.00	- - 대구[가투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투스 오각(Gadus ogac) · 가투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5		A	
0305.63.00.00	-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30		A	
0305.64.00.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	30		A	
0305.69.00.00	- - 기타	30		A	
0305.71.00.00	- - 상어 지느러미	25		A	
0305.72.00.00	- - 어류의 머리 · 꼬리 · 부레	30		A	
0305.79.00.10	- - - 그 밖의 상어 지느러미	30		A	
0305.79.00.90	- - - 기타	30		A	
0306.11.00.00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 · 파누리루스(Panulirus)종 · 자수스(Jasus)종]	30		A	
0306.12.00.00	-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30		A	
0306.14.00.00	- - 게[마크루라스(macruras)는 제외한다]	30		A	
0306.15.00.00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30		A	
0306.16.00.00	-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 · 그 밖의 십각류[판달러스(Pandalus)종 · 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30		G	
0306.17.11.00	- - - - 전체 형상을 갖춘것	30		G	
0306.17.12.00	- - - - 꼬리(껍데기를 벗긴 것으로 한정한다)	30		G	
0306.17.13.00	- - - - 꼬리(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으로서 물에 찌거나 삶아 조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G	
0306.17.14.00	- - - - 꼬리(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으로서 물에 찌거나 삶아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G	
0306.17.19.00	- - - - 기타	30		G	

0306.17.91.00	- - - - 징거미새우속(Macrobrachium genus)의 강(River) 새우	30		G	
0306.17.99.10	- - - - - 노란 오인트먼트 새우[프로트라키펜 프레시푸아 (Protrachypene precipua)]	30		G	
0306.17.99.20	- - - - - 검은 오인트먼트 새우[시포페나우스 리벤티 (Xiphopenaeus riveti)]	30		G	
0306.17.99.90	- - - - 기타	30		A	
0306.19.00.00	- - 기타[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	30		A	
0306.31.00.10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6.31.00.20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6.32.00.10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6.32.00.20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6.33.00.10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6.33.00.20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6.34.00.10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6.34.00.20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6.35.00.10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6.35.00.20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6.36.11.00	- - - 번식용 또는 산업양식용의 것	5		A	
0306.36.19.00	- - - - 기타	30		A	
0306.36.91.00	- - - 번식용 또는 산업양식용의 것	5		A	
0306.36.92.00	- - - - 그 밖의 징거미새우속(Macrobrachium genus)의 강 (River) 새우	30		A	
0306.36.99.10	- - - - - 노란 오인트먼트 새우[프로트라키펜 프레시푸아 (Protrachypene precipua)]	30		A	
0306.36.99.20	- - - - - 검은 오인트먼트 새우[시포페나우스 리벤티 (Xiphopenaeus riveti)]	30		A	
0306.36.99.90	- - - - 기타	30		A	
0306.39.00.10	- - -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펠릿(pellet)	20		A	
0306.39.00.90	- - - 기타	30		A	
0306.91.00.00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 · 파누리루스 (Panulirus)종 · 자수스(Jasus)종]	30		A	
0306.92.00.00	-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30		A	
0306.93.00.00	- - 게[마크루라스(macruras)는 제외한다]	30		A	
0306.94.00.00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 (Nephrops norvegicus)]	30		A	
0306.95.10.00	- - - 징거미새우(Macrobrachium)속의 강(river) 새우	30		A	

0306.95.90.00	- - - 기타	30		A	
0306.99.10.00	- - -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펠릿(pellet)	20		A	
0306.99.90.00	- - - 기타	30		A	
0307.11.00.10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7.11.00.20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7.12.00.00	- - 냉동한 것	30		A	
0307.19.00.00	- - 기타	30		A	
0307.21.10.10	-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7.21.10.20	-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7.21.90.00	- - - 기타	30		A	
0307.22.10.00	- - - 가리비과의 조개(부채꼴의 조개)[펙텐 야코바이우스(Pecten jacobaeus)]	30		A	
0307.22.90.00	- - - 기타	30		A	
0307.29.10.00	- - - 가리비과의 조개(부채꼴의 조개)[펙텐 야코바이우스(Pecten jacobaeus)]	30		A	
0307.29.90.00	- - - 기타	30		A	
0307.31.00.10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7.31.00.20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7.32.00.00	- - 냉동한 것	30		A	
0307.39.00.00	- - 기타	30		A	
0307.42.00.11	- - - - 오징어	30		A	
0307.42.00.19	- - - - 기타	30		A	
0307.42.00.21	- - - - 오징어	30		A	
0307.42.00.29	- - - - 기타	30		A	
0307.43.00.10	- - - 오징어	30		A	
0307.43.00.90	- - - 기타	30		A	
0307.49.00.00	- - 기타	30		A	
0307.51.00.10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7.51.00.20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7.52.00.00	- - 냉동한 것	30		A	
0307.59.00.00	- - 기타	30		A	
0307.60.00.00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30		A	
0307.71.00.10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7.71.00.20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7.72.00.00	- - 냉동한 것	30		A	
0307.79.00.00	- - 기타	30		A	

0307.81.00.10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7.81.00.20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7.82.00.10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7.82.00.20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7.83.00.00	- -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30		A	
0307.84.00.00	- -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30		A	
0307.87.00.00	- - 그 밖의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30		A	
0307.88.00.00	- - 그 밖의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30		A	
0307.91.00.10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7.91.00.20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7.92.10.00	- - - 칠레전복[콘콜레파스 콘콜레파스(Concholepas concholepas)]	30		A	
0307.92.20.00	- - - 삿갓조개[림펫(limpet)]	30		A	
0307.92.90.00	- - - 기타	30		A	
0307.99.20.00	- - - 칠레전복[콘콜레파스 콘콜레파스(Concholepas concholepas)]	30		A	
0307.99.50.00	- - - 삿갓조개[림펫(limpet)]	30		A	
0307.99.90.00	- - - 기타	30		A	
0308.11.00.10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8.11.00.20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8.12.00.00	- - 냉동한 것	30		A	
0308.19.00.00	- - 기타	30		A	
0308.21.00.10	- - - 살아 있는 것	30		A	
0308.21.00.20	- - -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30		A	
0308.22.00.00	- - 냉동한 것	30		A	
0308.29.00.00	- - 기타	30		A	
0308.30.00.10	- - 살아 있는 것	30		A	
0308.30.00.90	- - 기타	30		A	
0308.90.00.00	- 기타	0		A	
0401.10.00.0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54	APBS	X	
0401.20.00.0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54	APBS	X	
0401.40.00.0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54	APBS	X	
0401.50.00.0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54	APBS	X	
0402.10.10.00	- - 내용물의 순 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25	APBS	X	
0402.10.90.00	- - 기타	25	APBS	X	

0402.21.11.00	- - - - 내용물의 순 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25	APBS	X	
0402.21.19.00	- - - - 기타	25	APBS	X	
0402.21.91.00	- - - - 내용물의 순 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25	APBS	X	
0402.21.99.00	- - - - 기타	25	APBS	X	
0402.29.11.00	- - - - 내용물의 순 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25	APBS	X	
0402.29.19.00	- - - - 기타	25	APBS	X	
0402.29.91.00	- - - - 내용물의 순 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25	APBS	X	
0402.29.99.00	- - - - 기타	25	APBS	X	
0402.91.10.00	- - - 무당연유	54	APBS	X	
0402.91.90.00	- - - 기타	54	APBS	X	
0402.99.10.00	- - - 가당연유	30		X	
0402.99.90.00	- - - 기타	54	APBS	X	
0403.10.00.00	- 요구르트	30		X	
0403.90.10.00	- - 버터밀크	30		X	
0403.90.90.00	- - 기타	30		X	
0404.10.10.00	- - 일부나 전부를 탈염한 유장	5		F	
0404.10.90.00	- - 기타	20	APBS	X	
0404.90.00.00	- 기타	30	APBS	X	
0405.10.00.00	- 버터	30	APBS	X	
0405.20.00.00	-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30	APBS	X	
0405.90.20.00	- - 탈수한 유제품 오일[버터오일(buteroil)]	30	APBS	X	
0405.90.90.00	- - 기타	30	APBS	X	
0406.10.00.00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20		X	
0406.20.00.00	-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20		X	
0406.30.00.00	-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25	APBS	X	
0406.40.00.00	-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20		X	
0406.90.40.00	- - 완전한 무지방 상태에서 계산한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미만인 것	25	APBS	X	
0406.90.50.00	- - 완전한 무지방 상태에서 계산한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6 미만인 것	25	APBS	X	
0406.90.60.00	- - 완전한 무지방 상태에서 계산한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6 이상 100분의 59 미만인 것	25	APBS	X	

0406.90.90.00	- - 기타	25	APBS	X	
0407.11.00.10	- - 육계 부화용 수정란	0		A	
0407.11.00.20	- - 상업적 산란계 부화용 수정란	0		A	
0407.11.00.90	- - - 기타	0		A	
0407.19.00.00	- - 기타	0		A	
0407.21.10.00	- - - 백신 생산용의 것(특정 병원균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0407.21.90.00	- - - 기타	30		X	
0407.29.10.00	- - - 백신 생산용의 것(특정 병원균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0407.29.90.00	- - - 기타	30		X	
0407.90.00.00	- 기타	30		X	
0408.11.00.00	- - 건조한 것	30		X	
0408.19.00.00	- - 기타	30		X	
0408.91.00.00	- - 건조한 것	30		X	
0408.99.00.00	- - 기타	30		X	
0409.00.10.00	- - 300킬로그램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		E	
0409.00.90.00	- 기타	30		E	
0410.00.0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식품	30		E	
0501.00.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0		A	
0502.10.00.00	-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		A	
0502.90.00.00	- 기타	0		A	
0504.00.10.00	- 위	20		X	
0504.00.20.00	- 장	20		X	
0504.00.30.00	- 방광	10		X	
0505.10.00.00	-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10		C	
0505.90.00.00	- 기타	10		A	
0506.10.00.00	-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0506.90.00.00	- 기타	10		A	
0507.10.00.00	-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20		A	
0507.90.00.00	- 기타	20		A	

0508.00.00.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		A	
0510.00.10.00	- 담즙(건조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의약품 제조용의 선(腺)과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	10		A	
0510.00.90.00	- 기타	10		A	
0511.10.00.00	- 소의 정액	0		A	
0511.91.10.00	- - - 어류의 알 및 어란	0		A	
0511.91.20.00	- - - 어류의 웨이스트(waste)	0		A	
0511.91.90.00	- - - 기타	0		A	
0511.99.10.00	- - - 코치니엘(Cochineal)과 유사한 곤충[독틸로피우스 크서스(Dactylopius coccus)]	0		A	
0511.99.30.10	- - - - 말(horses)의 것	0		A	
0511.99.30.20	- - - - 돼지의 것	0		A	
0511.99.30.30	- - - - 수생(水生)동물의 것	0		A	
0511.99.30.40	- - - - 면양·산양·들소·낙타과 동물의 것	0		A	
0511.99.30.90	- - - - 기타	0		A	
0511.99.40.10	- - - - 말(horses)의 것	0		A	
0511.99.40.20	- - - - 돼지의 것	0		A	
0511.99.40.30	- - - - 수생(水生)동물의 것	0		A	
0511.99.40.40	- - - - 소의 것	0		A	
0511.99.40.50	- - - - 면양·산양·들소·낙타과 동물의 것	0		A	
0511.99.40.90	- - - - 기타	0		A	
0511.99.90.00	- - - 기타	0		A	
0601.10.00.00	-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0		A	

0601.20.00.0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	0		A	
0602.10.10.00	- - 난초	0		A	
0602.10.90.00	- - 기타	0		A	
0602.20.00.00	-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		A	
0602.30.00.00	-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		A	
0602.40.00.00	- 장미 관목(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		A	
0602.90.10.00	- - 난(뿌리가 있는 묘를 포함한다)	0		A	
0602.90.90.00	- - 기타	0		A	
0603.11.00.00	- - 장미	20		G	
0603.12.10.00	- - - 미니어처(miniature)	20		A	
0603.12.90.00	- - - 기타	20		A	
0603.13.00.00	- - 난	20		A	
0603.14.10.00	- - - 폼 폼(pom pom)	20		A	
0603.14.90.00	- - - 기타	20		A	
0603.15.00.00	- - 백합[릴리움(Lilium)종]	20		A	
0603.19.10.00	- - - 안개꽃[레인(rain), 일루전(illusion)], [집소필라 파니쿨라타 엘(Gypsophilia paniculata L.)]	20		A	
0603.19.20.00	- - - 애스터(aster)	20		A	
0603.19.30.00	- - - 알스트로에메리아(alstroemeria)	20		A	
0603.19.40.00	- - - 거베라(gerbera)	20		A	
0603.19.90.10	- - - - 백합	20		A	
0603.19.90.90	- - - - 기타	20		A	
0603.90.00.00	- 기타	20		A	
0604.20.00.00	- 신선한 것	20		A	
0604.90.00.00	- 기타	20		A	
0701.10.00.00	- 종자	0		A	
0701.90.00.00	- 기타	20		X	
0702.00.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5		E	
0703.10.00.11	- - - 진주 양파(흰색의 것)[알리움 세파 엘(Allium cepa L.)]	25		E	
0703.10.00.12	- - - 적양파[알리움 세파 엘(Alium cepa L.)]	25		E	
0703.10.00.19	- - - 기타	25		E	
0703.10.00.20	- - 쪽파	25		E	
0703.20.10.00	- - 종자	25		A	

0703.20.90.00	- - 기타	25		E	
0703.90.00.00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25		D	
0704.10.00.00	-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25		E	
0704.20.00.00	- 방울다다기 양배추	25		C	
0704.90.00.00	- 기타	25		C	
0705.11.00.00	- - 결구(結球) 상추	25		B	
0705.19.00.00	- - 기타	25		B	
0705.21.00.00	- -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25		A	
0705.29.00.00	- - 기타	25		C	
0706.10.00.00	- 당근과 순무	25		E	
0706.90.00.00	- 기타	25		D	
0707.00.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5		C	
0708.10.0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5		E	
0708.20.00.00	-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25		E	
0708.90.00.00	- 기타	25		E	
0709.20.00.0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5		A	
0709.30.00.00	- 가지(에그플랜트)	25		D	
0709.40.00.00	-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25		A	
0709.51.00.00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25		C	
0709.59.00.00	- - 기타	25		E	
0709.60.00.00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5		D	
0709.70.00.00	- 시금치류	25		A	
0709.91.00.00	- -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25		A	
0709.92.00.00	- - 올리브	25		A	
0709.93.00.00	- -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25		E	
0709.99.10.00	- -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25		X	
0709.99.90.00	- - - 기타	25		E	
0710.10.00.00	- 감자	25		X	
0710.21.00.00	- - 완두[아르베자스(arvejas), 치차로스(chícharos)]* [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5		E	
0710.22.00.00	- -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25		B	
0710.29.00.00	- - 기타	25		B	
0710.30.00.00	- 시금치류	25		A	
0710.40.00.00	- 스위트콘	10		X	

0710.80.10.00	-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5		A	
0710.80.20.00	- - 브로콜리[브라시카 올레라시아 이탤리카(Brassica oleracea italica)]	25		A	
0710.80.90.00	- - 기타	25		A	
0710.90.00.00	- 채소류의 혼합물	25		E	
0711.20.00.00	- 올리브	0		A	
0711.40.00.00	- 오이류	15		C	
0711.51.00.00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15		C	
0711.59.00.00	- - 기타	15		C	
0711.90.00.0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15		C	
0712.20.00.00	- 양파	20		E	
0712.31.00.00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25		C	
0712.32.00.00	- -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25		C	
0712.33.00.00	- -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25		C	
0712.39.00.00	- - 기타	25		A	
0712.90.10.00	- - 마늘	20		C	
0712.90.20.00	- - 스위트콘(파종용)	25		A	
0712.90.90.00	- - 기타	25		C	
0713.10.10.00	- - 종자	0		A	
0713.10.90.00	- - 기타	15		E	
0713.20.10.00	- - 종자	0		A	
0713.20.90.00	- - 기타	15		D	
0713.31.10.00	- - - 파종용	0		A	
0713.31.90.00	- - - 기타	25		E	
0713.32.10.00	- - - 파종용	0		A	
0713.32.90.00	- - - 기타	20		E	
0713.33.11.00	- - - - 흑색의 것	0		A	
0713.33.19.00	- - - - 기타	0		A	
0713.33.91.00	- - - - 흑색의 것	25		E	
0713.33.92.00	- - - - 카나리	25		E	
0713.33.99.00	- - - - 기타	20		E	
0713.34.10.00	- - - 종자	0		A	
0713.34.90.00	- - - 기타	20		E	
0713.35.10.00	- - - 종자	0		A	
0713.35.90.00	- - - 기타	20		E	
0713.39.10.00	- - - 종자	0		A	

0713.39.91.00	- - - 리마콩[파세러스 루나투스(Phaseolus lunatus)]	20		E	
0713.39.99.00	- - - 기타	20		E	
0713.40.10.00	- - 종자	0		A	
0713.40.90.00	- - 기타	15		C	
0713.50.10.00	- - 종자	0		A	
0713.50.90.00	- - 기타	15		C	
0713.60.10.00	- - 종자	0		A	
0713.60.90.00	- - 기타	25		D	
0713.90.10.00	- - 종자	0		A	
0713.90.90.00	- - 기타	25		D	
0714.10.00.00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25		A	
0714.20.10.00	- - 종자	15		A	
0714.20.90.00	- - 기타	15		B	
0714.30.00.00	- Yam[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15		X	
0714.40.00.00	-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종]	15		X	
0714.50.00.00	-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종]	15		X	
0714.90.10.00	- - 마카[레피디움 메예니이(Lepidium meyenii)]	15		X	
0714.90.90.00	- - 기타	15		X	
0801.11.10.00	- - - 파종용	0		A	
0801.11.90.00	- - - 기타	25		A	
0801.12.00.00	- -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25		A	
0801.19.00.00	- - 기타	25		A	
0801.21.00.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5		A	
0801.22.00.00	- - 껍데기를 벗긴 것	25		C	
0801.31.00.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5		A	
0801.32.00.00	- - 껍데기를 벗긴 것	25		A	
0802.11.00.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5		A	
0802.12.10.00	- - - 파종용	0		A	
0802.12.90.00	- - - 기타	20		A	
0802.21.00.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5		A	
0802.22.00.00	- - 껍데기를 벗긴 것	0		A	
0802.31.00.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15		C	
0802.32.00.00	- - 껍데기를 벗긴 것	15		C	
0802.41.00.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5		A	
0802.42.00.00	- - 껍데기를 벗긴 것	25		A	

0802.51.00.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5		A	
0802.52.00.00	- - 껍데기를 벗긴 것	25		A	
0802.61.00.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5		A	
0802.62.00.00	- - 껍데기를 벗긴 것	25		A	
0802.70.00.00	-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25		A	
0802.80.00.00	- 빈랑자(areca nut)	25		A	
0802.90.00.00	- 기타	25		A	
0803.10.10.00	- - 신선한 것	25		A	
0803.10.20.00	- - 건조한 것	25		A	
0803.90.11.10	- - - - 유기농 인증된 것	25		A	
0803.90.11.90	- - - - 기타	25		A	
0803.90.12.00	- - - 작은 바나나[만자니토(manzanito), 오리토(orito)] [무사 아쿠미나타(Musa acuminata)]	25		A	
0803.90.19.00	- - - 기타	25		A	
0803.90.20.00	- - 건조한 것	25		A	
0804.10.00.00	- 대추야자	25		A	
0804.20.00.00	- 무화과	25		A	
0804.30.00.00	- 파인애플	25		D	
0804.40.00.00	- 아보카도(avocado)	25		D	
0804.50.10.00	- - 구아바(guava)	25		A	
0804.50.20.10	- - - 망고(mango)	25		E	
0804.50.20.20	- - - 망고스틴(mangosteen)	25		A	
0805.10.00.00	- 오렌지	25		X	
0805.21.00.00	- -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 · 세트수머 (satsumas)를 포함한다]	25		E	
0805.22.00.00	- - 클레멘타인(clementine)	25		E	
0805.29.10.00	- - - 탄젤로[시트러스 레티쿨라타(Citrus reticulata) x 시트 러스 파라다이스(Citrus paradisis)]	25		E	
0805.29.90.00	- - - 기타	25		E	
0805.40.00.0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25		X	
0805.50.10.00	- -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 · 시트러스 리머눔 (Citrus limonum)]	25		X	
0805.50.21.00	- - - 레몬[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25		X	
0805.50.22.00	- - - 라임[타히티 레몬(Tahitian lemon)] [시트러스 라티폴 리아(Citrus latifolia)]	25		X	
0805.90.00.00	- 기타	25		X	
0806.10.00.00	- 신선한 것	15		S	

0806.20.00.00	- 건조한 것(건포도를 포함한다)	25		B	
0807.11.00.00	- - 수박	25		C	
0807.19.00.00	- - 기타	25		E	
0807.20.00.00	- 포포(papaw)[파파야(papaya)]	25		E	
0808.10.00.00	- 사과	15		D	
0808.30.00.00	- 배	15		A	
0808.40.00.00	- 마르멜로(quince)	20		A	
0809.10.00.00	- 살구	25		A	
0809.21.00.00	- -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25		A	
0809.29.00.00	- - 기타	25		A	
0809.30.00.0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25		B	
0809.40.00.00	- 자두와 슬로(sloe)	25		A	
0810.10.00.00	- 초본류 딸기	25		E	
0810.20.00.00	-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loganberry)	25		A	
0810.30.00.00	- 흑색 · 백색 ·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25		A	
0810.40.00.00	- 크랜베리 · 빌베리 ·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일	25		A	
0810.50.00.00	- 키위프루트(kiwifruit)	25		A	
0810.60.00.00	- 두리안(durian)	25		A	
0810.70.00.00	- 감	25		A	
0810.90.10.10	- - - 스위트 그라나딜라[파시플로라 리굴라리스(Passiflora ligularis)]	25		A	
0810.90.10.20	- - - 패션프루트[패시플로라 에둘리스(Passiflora edulis)]	25		A	
0810.90.10.90	- - - 기타	25		A	
0810.90.20.00	- - 가시여지 · 번여지 · 그 밖의 어노나[어노나(Annona)종]	25		A	
0810.90.30.00	- - 나무 토마토[리마 토메이트(lima tomate) · 타마릴로(tamarillo)], [시포만드라 베타세아(Cyphomandra betacea)]	25		A	
0810.90.40.00	- - 피타야(Pitahayas)[세레우스(Cereus)종]	25		A	
0810.90.50.00	- - 우주바[아구아이만토(aguaymanto), 우빌라스(uvillas)], [피살리스 페루비아나(Physalis peruviana)]	25		A	
0810.90.90.20	- - - 롤로[나란질라(naranjilla)], [솔라눔 키토엔세(Solanum quitoense)]	25		A	
0810.90.90.90	- - - 기타	25		A	
0811.10.10.00	- -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15		A	
0811.10.90.00	- - 기타	15		A	

0811.20.00.0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 · 백색 · 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15		A	
0811.90.10.00	- -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15		A	
0811.90.91.00	- - - 망고[망기페라 인디카 엘(Mangifera indica L.)]	15		A	
0811.90.92.00	- - - 카무카무(Camu Camu) [미르시아리아 두비아 (Myrciaria dubia)]	15		A	
0811.90.93.00	- - - 루쿠마(lucuma) [루쿠마 오보바타(Lucuma obovata)]	15		A	
0811.90.94.00	- - 패션프루트[패시플로라 에둘리스(Passiflora edulis)]	15		A	
0811.90.95.00	- - - 구아나바나[안노나 무리카타(Annona muricata)]	15		A	
0811.90.96.00	- - - 파파야	15		A	
0811.90.99.00	- - - 기타	15		A	
0812.10.00.00	- 체리	15		A	
0812.90.20.00	-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15		A	
0812.90.90.00	- - 기타	15		C	
0813.10.00.00	- 살구	25		A	
0813.20.00.00	- 프룬(prune)	25		C	
0813.30.00.00	- 사과	25		C	
0813.40.00.10	- - 골든베리(goldenberry)	25		A	
0813.40.00.90	- - 기타	25		B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25		C	
0814.00.10.00	- 레몬의 것[리몬 수틸(limón sutil) · 리몬 코뮌(limón común) · 리몬 크리올로(limón criollo)],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 (Citrus aurantifolia)]	15		C	
0814.00.90.00	- 기타	15		C	
0901.11.10.00	- - - 파종용	10		A	
0901.11.90.10	- - - - 아라비카	15		A	
0901.11.90.20	- - - - 로부스타	15		A	
0901.11.90.90	- - - - 기타	15		A	
0901.12.00.00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15		D	
0901.21.10.00	- - - 콩	15		D	
0901.21.20.00	- - - 잘게 부순 것	30		D	
0901.22.00.00	- - 카페인을 제거한 것	30		D	
0901.90.00.00	- 기타	30		D	
0902.10.00.00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25		D	
0902.20.00.00	-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5		D	

0902.30.00.00	-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30		D	
0902.40.00.00	-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30		D	
0903.00.00.00	마테(maté)	20		A	
0904.11.00.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5		A	
0904.12.00.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5		A	
0904.21.10.00	- - - 파프리카[캡시컴 안누움(Capsicum annuum, L)]	25		A	
0904.21.90.00	- - - 기타	25		A	
0904.22.10.00	- - - 파프리카[캡시컴 안누움 엘(Capsicum annuum L.)]	25		A	
0904.22.90.00	- - - 기타	25		A	
0905.10.00.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A	
0905.20.0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A	
0906.11.00.00	- -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10		D	
0906.19.00.00	- - 기타	10		D	
0906.20.0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5		D	
0907.10.00.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0		A	
0907.20.0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10		A	
0908.11.00.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0		A	
0908.12.00.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10		A	
0908.21.00.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A	
0908.22.00.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A	
0908.31.00.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0		A	
0908.32.00.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10		A	
0909.21.10.00	- - - 파종용	0		A	
0909.21.90.00	- - - 기타	10		A	
0909.22.00.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10		A	
0909.31.00.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0		A	
0909.32.00.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10		A	
0909.61.00.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A	
0909.62.00.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A	
0910.11.00.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A	
0910.12.00.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0		A	
0910.20.00.00	- 사프란(saffron)	20		A	
0910.30.00.00	- 심황[강황(薑黃)]	20		C	
0910.91.00.00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D	

0910.99.10.00	- - - 월계수의 잎	20		C	
0910.99.90.00	- - - 기타	20		E	
1001.11.00.00	- - 파종용	0		A	
1001.19.00.00	- - 기타	0		A	
1001.91.00.00	- - 파종용	0		A	
1001.99.10.00	- - - 그 밖의 밀	10		E	
1001.99.20.00	- - - 메슬린(meslin)	10		E	
1002.10.00.00	- 종자	0		A	
1002.90.00.00	- 기타	15		C	
1003.10.00.00	- 종자	0		A	
1003.90.00.10	- - 맥아용 또는 양조용	0		A	
1003.90.00.90	- - 기타	0		A	
1004.10.00.00	- 종자	0		A	
1004.90.00.00	- 기타	5		C	
1005.10.00.00	- 종자	0		A	
1005.90.11.00	- - - 노란색의 것	15	APBS	X	
1005.90.12.00	- - - 흰색의 것	15	APBS	X	
1005.90.19.00	- - - 기타	15	APBS	X	
1005.90.20.00	- - 버스팅 옥수수(자메이스류의 마이크로스퍼마 또는 자메이스종의 에버타)	15		X	
1005.90.30.00	- - 버스팅 옥수수(자메이스 아밀라세아류의 자이겐트)	15	APBS	X	
1005.90.40.00	- - 보라 옥수수(자메이스 아미라세아류의 자이겐트)	15	APBS	X	
1005.90.90.00	- - 기타	15	APBS	X	
1006.10.10.00	- - 파종용	0		A	
1006.10.90.00	- - 기타	20	APBS	X	
1006.20.00.00	- 현미	67.5	APBS	X	
1006.30.00.00	-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67.5	APBS	X	
1006.40.00.00	- 쉼미(broken rice)	25	APBS	X	
1007.10.00.00	- 종자	0		A	
1007.90.00.00	- 기타	15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008.10.10.00	- - 종자	0		A	
1008.10.90.00	- - 기타	20		A	
1008.21.00.00	- - 종자	0		A	
1008.29.00.00	- - 기타	0		A	
1008.30.10.00	- - 종자	0		A	
1008.30.90.00	- - 기타	0		A	

1008.40.00.00	- 폰니오(Fonio)[디지털리아(Digitaria)종]	20		A	
1008.50.10.00	- - 종자	0		A	
1008.50.90.10	- - - 유기농 인증된 것	25		X	
1008.50.90.90	- - - 기타	25		X	
1008.60.00.00	- 라이밀(tritcale)	20		A	
1008.90.21.00	- - - 종자	0		A	
1008.90.29.00	- - - 기타	0		A	
1008.90.91.00	- - - 종자	0		A	
1008.90.99.00	- - - 기타	20		A	
1101.00.00.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20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102.20.00.00	- 옥수수가루	10	APBS	X	
1102.90.10.00	- - 호밀가루	20		C	
1102.90.90.00	- - 기타	20		E	
1103.11.00.00	- - 밀로 만든 것	20		E	
1103.13.00.00	- - 옥수수로 만든 것	20		X	
1103.19.00.00	-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30		E	
1103.20.00.10	- - 옥수수로 만든 것	0		A	
1103.20.00.90	-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0		E	
1104.12.00.00	- - 귀리로 만든 것	30		C	
1104.19.00.00	- - 기타 곡물로 만든 것	30		E	
1104.22.00.00	- - 귀리로 만든 것	30		C	
1104.23.00.00	- - 옥수수로 만든 것	30		X	
1104.29.10.00	- - - 보리로 만든 것	30		D	
1104.29.90.00	- - - 기타	30		C	
1104.30.00.00	-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30		C	
1105.10.00.00	-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30		E	
1105.20.00.00	-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30		D	
1106.10.00.00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0		C	
1106.20.10.00	- - 마카[레피디움 메예니이(Lepidium meyenii)]	0		A	
1106.20.90.00	- - 기타	0		A	
1106.30.10.00	- - 바나나 또는 플랜틴(plantain)의 것	20		A	
1106.30.20.00	- - 루쿠마의 것[루쿠마 오보바타(Lucuma Obovata)]	20		A	
1106.30.90.00	- - 기타	20		A	
1107.10.00.00	- 볶지 않은 것	0		A	

1107.20.00.00	- 볶은 것	0		A	
1108.11.00.00	- - 밀로 만든 것	0		A	
1108.12.00.00	- - 옥수수로 만든 것	10	APBS	X	
1108.13.00.00	- - 감자로 만든 것	0		A	
1108.14.00.00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20		E	
1108.19.00.00	- - 그 밖의 전분	20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108.20.00.00	- 이눌린(inulin)	0		A	
1109.00.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0		A	
1201.10.00.00	- 파종용	0		A	
1201.90.00.00	- 기타	15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202.30.00.00	- 종자	0		A	
1202.41.00.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15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202.42.00.00	- -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5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203.00.00.00	코프라(copra)	10		A	
1204.00.10.00	- 종자	0		A	
1204.00.90.00	- 기타	0		A	
1205.10.10.00	- - 종자	0		A	
1205.10.90.00	- - 기타	0		A	
1205.90.10.00	- - 종자	0		A	
1205.90.90.00	- - 기타	0		A	
1206.00.10.00	- 종자	0		A	
1206.00.90.00	- 기타	15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207.10.10.00	- - 파종용	0		A	
1207.10.90.00	- - 기타	20	APBS	A	부속서 2-다 참조
1207.21.00.00	- - 종자	0		A	
1207.29.00.00	- - 기타	15		A	
1207.30.10.00	- - 종자	0		A	
1207.30.90.00	- - 기타	20		A	
1207.40.10.00	- - 종자	0		A	
1207.40.90.00	- - 기타	0		A	
1207.50.10.00	- - 종자	0		A	
1207.50.90.00	- - 기타	0		A	
1207.60.10.00	- - 종자	0		A	
1207.60.90.00	- - 기타	20		A	
1207.70.10.00	- - 종자	0		A	

1207.70.90.00	- - 기타	20		A	
1207.91.00.00	- 양귀비씨	0		A	
1207.99.10.00	- - - 종자	0		A	
1207.99.91.00	- - - - 캐리트 종자	0		A	
1207.99.99.00	- - - - 기타	20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208.10.00.00	- 대두로 만든 것	15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208.90.00.10	- - 카멜리나의 것	0		A	
1208.90.00.20	- - 유채의 것	0		A	
1208.90.00.90	- - 기타	15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209.10.00.00	- 사탕무 종자	0		A	
1209.21.00.00	- -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		A	
1209.22.00.00	- -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0		A	
1209.23.00.00	- - 페스큐(fescue) 종자	0		A	
1209.24.00.00	- -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0		A	
1209.25.00.00	- -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 · 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0		A	
1209.29.00.00	- - 기타	0		A	
1209.30.00.00	-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		A	
1209.91.10.00	- - - 양파, 리크, 마늘 및 알리움(Alium)속의 그 밖의 채소의 것	0		A	
1209.91.20.00	- - - 스프라우트, 꽃양배추, 브로콜리, 순무와 그 밖의 브라시카(Brassica)종의 것	0		A	
1209.91.30.00	- - - 당근[다우쿠스 카로타(Daucus carota)]의 것	0		A	
1209.91.40.00	- - - 상추[락투카 사비타](Lactuca sativa)]의 것	0		A	
1209.91.50.00	- - - 토마토[리쿠퍼시쿰(Licopersicum)종]의 것	0		A	
1209.91.90.00	- - - 기타	0		A	
1209.99.10.00	- - - 과수 또는 산림수의 종자	0		A	
1209.99.20.00	- - - 담배의 종자	5		A	
1209.99.30.00	- - - 타라[캐살피네아 스피노사(Caesalpinea spinosa)]의 종자	0		A	
1209.99.40.00	- - - 아치오테의 종자	0		A	
1209.99.90.00	- - - 기타	0		A	
1210.10.00.00	- 홉(hop)[잘게 부순 것 · 가루 모양 ·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0		A	

1210.20.00.00	- 홉(hop)[잘게 부순 것 · 가루 모양 ·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0		A	
1211.20.00.00	- 인삼	0		A	
1211.30.00.10	- - 냉장한 것	10		A	
1211.30.00.20	- - 냉동한 것	10		A	
1211.30.00.90	- - 기타	0		A	
1211.40.00.00	- 양귀비줄기	10		A	
1211.50.00.00	- 마황(麻黃)	10		A	
1211.90.30.00	- - 야생 마조람[오레가눔(Origanum)속의 것]	10		A	
1211.90.50.00	- - 캣츠 클로[운카리아 토멘토사(Uncaria tomentosa)]	10		A	
1211.90.60.00	- - 레몬 버베나[이에르바루이사][심보포곤 시트라투스(Cymbopogon citratus)]	10		A	
1211.90.90.00	- - 기타	10		A	
1212.21.00.10	- - - 스피룰리나	0		A	
1212.21.00.90	- - 기타	5		A	
1212.29.00.00	- - 기타	0		A	
1212.91.00.00	- - 사탕무	0		A	
1212.92.00.00	- -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0		A	
1212.93.00.00	- - 사탕수수	10		C	
1212.94.00.00	- - 치커리(chicory) 뿌리	0		A	
1212.99.10.00	- - - 스테비아[스테비아 레바우디아나(Stevia rebaudiana)]	10		C	
1212.99.90.00	- - - 기타	0		A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A	
1214.10.00.00	-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15		A	
1214.90.00.00	- 기타	0		A	
1301.20.00.00	- 아라비아 검	0		A	
1301.90.40.00	- 트라가칸트 검	0		A	
1301.90.90.00	- - 기타	0		A	
1302.11.10.00	- - - 양귀비 줄기의 농축물	0		A	
1302.11.90.00	- - - 기타	0		A	
1302.12.00.00	- - 감초로 만든 것	0		A	
1302.13.00.00	- - 홉(hop)으로 만든 것	0		A	
1302.14.00.00	- -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0		A	

1302.19.11.00	- - - -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0		A	
1302.19.19.00	- - - - 기타	0		A	
1302.19.20.00	- - - 콩 추출물 · 대두 추출물(가루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	0		A	
1302.19.91.00	- - - -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		A	
1302.19.99.00	- - - - 기타	0		A	
1302.20.00.00	-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0		A	
1302.31.00.00	- - 한천	0		A	
1302.32.00.10	- - -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로커스트 콩(locust bean)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1302.32.00.90	- - - 기타	0		A	
1302.39.10.00	- - - 타라 종자의 점질물[캐살피네아 스피노사(Caesalpineia spinosa)]	0		A	
1302.39.90.00	- - - 기타	0		A	
1401.10.00.00	- 대나무	10		A	
1401.20.00.00	- 등나무	0		A	
1401.90.00.00	- 기타	10		A	
1404.20.00.00	- 면(綿) 린터(linter)	10		A	
1404.90.10.00	- - 아치오테 분말	10		A	
1404.90.20.00	- - 타라 분말(캐살피네아 스피노사)	0		A	
1404.90.90.00	- - 기타	10		A	
1501.10.00.00	- 라드(lard)	0		A	
1501.20.00.00	- 그 밖의 돼지의 지방	0		A	
1501.90.00.00	- 기타	0		A	
1502.10.10.00	- - 변성된 것	15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502.10.90.00	- - 기타	20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502.90.10.00	- - 변성된 것	15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502.90.90.00	- - 기타	0		A	
1503.00.00.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및 텔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 혼합 또는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20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504.10.10.00	- - 대구 간의 것	0		A	
1504.10.21.00	- - 조유(粗油)	15		B	
1504.10.29.00	- - - 기타	0		A	
1504.20.10.00	- - 조유(粗油)	10		B	
1504.20.90.00	- - 기타	10		B	
1504.30.00.00	-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15		B	

1505.00.10.00	-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0		A	
1505.00.91.00	- - 라놀린(lanolin)	0		A	
1505.00.99.00	- - 기타	0		A	
1506.00.10.00	- 우족유	0		A	
1506.00.90.00	- 기타	0		A	
1507.10.00.00	-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	APBS	X	
1507.90.10.00	- - 첨가된 변성 물질의 함유량이 1퍼센트 이하인 것	20	APBS	X	
1507.90.90.00	- - 기타	20	APBS	X	
1508.10.00.00	- 조유(粗油)	10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508.90.00.00	- 기타	20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509.10.00.00	- 버진(virgin)	10		C	
1509.90.00.00	- 기타	0		A	
1510.00.0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20		C	
1511.10.00.00	- 조유(粗油)	20	APBS	X	
1511.90.00.00	- 기타	20	APBS	X	
1512.11.10.00	- - - 해바라기씨	0		A	
1512.11.20.00	- - - 잇꽃	20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512.19.10.00	- - - 해바라기씨	20	APBS	X	
1512.19.20.00	- - - 잇꽃	20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512.21.00.00	- -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20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512.29.00.00	- - 기타	20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513.11.00.00	- - 조유(粗油)	20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513.19.00.00	- - 기타	20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513.21.10.00	- - - 팜핵의 것	5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513.21.20.00	- - - 바바수의 것	20		C	
1513.29.10.00	- - - 팜핵의 것	20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513.29.20.00	- - - 바바수의 것	20		C	
1514.11.00.00	- - 조유(粗油)	5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514.19.00.00	- - 기타	20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514.91.00.00	- - 조유(粗油)	20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514.99.00.00	- - 기타	20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515.11.00.00	- - 조유(粗油)	20		C	
1515.19.00.00	- - 기타	20		C	

1515.21.00.00	- - 조유(粗油)	20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515.29.00.00	- - 기타	31.5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515.30.00.0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20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515.50.00.0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31.5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515.90.00.10	- - 호호바(Jojoba) 유	0		A	
1515.90.00.90	- - 기타	20	APBS	C	부속서 2-다 참조
1516.10.00.00	-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20		E	
1516.20.00.00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20	APBS	G	부속서 2-다 참조
1517.10.00.00	-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31.5	APBS	G	부속서 2-다 참조
1517.90.00.00	- 기타	20	APBS	G	부속서 2-다 참조
1518.00.10.00	- 리놀신	0		A	
1518.00.90.10	- - 에폭시화(epoxidized)한 대두유	0		A	
1518.00.90.90	- - 기타	20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5		C	
1521.10.10.00	- - 카나버 왁스	0		A	
1521.10.20.00	- - 칸델릴라 왁스	0		A	
1521.10.90.00	- - 기타	0		A	
1521.90.10.00	- - 밀랍(蜜蠟) 또는 총랍	15		C	
1521.90.20.00	- - 경납(鯨蠟)	0		A	
1522.00.00.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0		A	
1601.00.00.00	소시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30	APBS	X	
1602.10.00.00	- 균질화한 조제품	30		X	
1602.20.00.00	- 동물 간으로 만든 것	30		X	
1602.31.10.00	- - - 조미한 냉동조각	30	APBS	X	
1602.31.90.00	- - - 기타	30		X	
1602.32.10.00	- - - 조각난 것(조미·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APBS	X	
1602.32.90.00	- - - 기타	30		X	
1602.39.10.00	- - - 조각난 것(조미·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APBS	X	
1602.39.90.00	- - - 기타	30		X	
1602.41.00.00	-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30	APBS	X	
1602.42.00.00	- - 어깨살과 그 절단육	30	APBS	X	
1602.49.00.00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30		X	

1602.50.00.00	- 소로 만든 것	30		X	
1602.90.00.0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30		X	
1603.00.00.00	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30		E	
1604.11.00.00	- - 연어	30		B	
1604.12.00.00	- - 청어	30		B	
1604.13.10.00	- - - 토마토 소스에 담근 것	30		G	
1604.13.20.00	- - - 기름에 담근 것	30		G	
1604.13.30.00	- - - 염수장한 것과 염장한 것	30		G	
1604.13.90.00	- - - 기타	30		G	
1604.14.10.11	- - - - 반조리한 살덩이	30		G	
1604.14.10.12	- - - - 염수장한 것과 염장한 것	30		G	
1604.14.10.13	- - - - 기름에 담근 것	30		G	
1604.14.10.19	- - - - 기타	30		G	
1604.14.10.21	- - - - 반조리한 살덩이	30		G	
1604.14.10.22	- - - - 염수장한 것과 염장한 것	30		G	
1604.14.10.23	- - - - 기름에 담근 것	30		G	
1604.14.10.29	- - - - 기타	30		G	
1604.14.10.91	- - - - 반조리한 살덩이	30		G	
1604.14.10.92	- - - - 염수장한 것과 염장한 것	30		G	
1604.14.10.93	- - - - 기름에 담근 것	30		G	
1604.14.10.99	- - - - 기타	30		G	
1604.14.20.11	- - - - 반조리한 살덩이	30		G	
1604.14.20.12	- - - - 염수장한 것과 염장한 것	30		G	
1604.14.20.13	- - - - 기름에 담근 것	30		G	
1604.14.20.19	- - - - 기타	30		G	
1604.14.20.21	- - - - 반조리한 살덩이	30		G	
1604.14.20.22	- - - - 염수장한 것과 염장한 것	30		G	
1604.14.20.23	- - - - 기름에 담근 것	30		G	
1604.14.20.29	- - - - 기타	30		G	
1604.14.20.31	- - - - 반조리한 살덩이	30		G	
1604.14.20.32	- - - - 염수장한 것과 염장한 것	30		G	
1604.14.20.33	- - - - 기름에 담근 것	30		G	
1604.14.20.39	- - - - 기타	30		G	
1604.14.20.41	- - - - 반조리한 살덩이	30		G	
1604.14.20.42	- - - - 염수장한 것과 염장한 것	30		G	

1604.14.20.43	- - - - 기름에 담근 것	30		G	
1604.14.20.49	- - - - 기타	30		G	
1604.14.20.91	- - - - 반조리한 살덩이	30		G	
1604.14.20.92	- - - - 염수장한 것과 염장한 것	30		G	
1604.14.20.93	- - - - 기름에 담근 것	30		G	
1604.14.20.99	- - - - 기타	30		G	
1604.15.00.00	- - 고등어	20		G	
1604.16.00.00	- - 멸치	30		A	
1604.17.00.00	- - 뱀장어	30		A	
1604.18.00.00	- - 상어 지느러미	30		A	
1604.19.00.00	- - 기타	30		A	
1604.20.00.00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30		G	
1604.31.00.00	- - 캐비아	30		A	
1604.32.00.00	- - 캐비아 대용물	30		G	
1605.10.00.00	- 게[마크루라스(macruras)는 제외한다]	30		A	
1605.21.00.00	- -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30		G	
1605.29.00.00	- - 기타	30		G	
1605.30.00.00	- 바닷가재	30		A	
1605.40.00.00	- 그 밖의 갑각류	30		A	
1605.51.00.00	- - 굴	30		A	
1605.52.00.00	- - 가리비과의 조개[펙텐(Pecten)속·클라미스(Chlamys)속이나 플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30		A	
1605.53.00.00	- - 홍합	30		A	
1605.54.00.00	- - 갑오징어와 오징어	30		A	
1605.55.00.00	- - 문어	30		A	
1605.56.00.00	- -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30		A	
1605.57.00.00	- - 전복	30		A	
1605.58.00.00	-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30		A	
1605.59.10.00	- - - 전복[콘콜레파스 콘콜레파스(Concholepas concholepas)] 와 바지락	30		A	
1605.59.90.00	- - - 기타	30		A	
1605.61.00.00	- - 해삼	30		A	
1605.62.00.00	- - 성게	30		A	
1605.63.00.00	- - 해파리	30		A	
1605.69.00.00	- - 기타	30		A	

1701.12.00.00	- - 사탕무당	20	APBS	X	
1701.13.00.00	-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30		X	
1701.14.00.00	- - 그 밖의 사탕수수당	15	APBS	X	
1701.91.00.00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25	APBS	X	
1701.99.10.00	- - -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	15	APBS	X	
1701.99.90.10	- - - - 유기농 인증된 것	15	APBS	X	
1701.99.90.90	- - - - 기타	15	APBS	X	
1702.11.00.00	- -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0		A	
1702.19.10.00	- - - 유당(乳糖)	0		A	
1702.19.20.00	- - - 유당(乳糖)시럽	0		A	
1702.20.00.00	-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0		A	
1702.30.10.00	- - 건조상태에서 계산한 포도당(무수포도당으로 표시한다)의 함유량이 100분의 99 이상인 것[덱스트로스(Dextrose)]	0		A	
1702.30.20.00	- - 포도당시럽	0	APBS	A	부속서 2-다 참조
1702.30.90.00	- - 기타	0	APBS	A	부속서 2-다 참조
1702.40.10.00	- - 포도당	0	APBS	A	부속서 2-다 참조
1702.40.20.00	- - 포도당시럽	15	APBS	X	
1702.50.00.0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0		A	
1702.60.00.00	-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15	APBS	X	
1702.90.10.00	- -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20		E	
1702.90.20.00	- - 캐러멜당	5	APBS	X	
1702.90.30.00	- - 설탕[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PBS	X	
1702.90.40.00	- - 그 밖의 시럽	5	APBS	X	
1702.90.90.00	- - 기타	0	APBS	A	부속서 2-다 참조
1703.10.00.0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0	APBS	A	부속서 2-다 참조
1703.90.00.00	- 기타	15	APBS	X	
1704.10.10.00	- - 당을 도포한 것	20		G	
1704.10.90.00	- - 기타	20		G	
1704.90.10.00	- - 끓인 단 과자·파스틸(pastille)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설탕과자	20		G	
1704.90.90.00	- - 기타	20		G	
1801.00.11.00	- - 파종용	10		A	
1801.00.19.10	- - - 유기농 인증된 것	20		A	

1801.00.19.90	- - - 기타	20		A	
1801.00.20.00	- 볶은 것	25		A	
1802.00.0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0		A	
1803.10.00.00	-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20		A	
1803.20.00.00	-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20		A	
1804.00.11.00	- - 올레산으로 표시한 산도 지수가 100분의 1이하인 것	20		C	
1804.00.12.00	- - 올레산으로 표시한 산도 지수가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1.65 이하인 것	20		C	
1804.00.13.00	- - 올레산으로 표시한 산도 지수가 100분의 1.65를 초과하 는 것	20		C	
1804.00.20.00	- 코코아 지방과 기름	20		C	
1805.00.00.0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20		C	
1806.10.00.00	-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E	
1806.20.10.00	- -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30		C	
1806.20.90.00	- - 기타	30		B	
1806.31.00.00	-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20		C	
1806.32.00.00	- - 속을 채우지 않은 것	20		C	
1806.90.00.00	- 기타	30		C	
1901.10.10.00	- - 12개월 이하 유아용 분유	20		E	
1901.10.91.00	- - - 고운가루 · 거친가루 · 전분 ·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 로 한 것	20		E	
1901.10.99.00	- - - 기타	20		E	
1901.20.00.0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25		X	
1901.90.10.00	- - 맥아 추출물(extract)	0		A	
1901.90.20.00	- - 밀크 캐러멜	30		E	
1901.90.90.00	- - 기타	30		E	
1902.11.00.00	- - 새의 알을 넣은 것	30		E	
1902.19.00.00	- - 기타	30	APBS	X	
1902.20.00.0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0		X	
1902.30.00.00	- 그 밖의 파스타	30		E	
1902.40.00.00	- 쿠스쿠스(couscous)	30		A	
1903.00.00.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 (flake) 모양 · 낱알 모양 · 진주 모양 · 무거리 모양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30		E	
1904.10.00.00	-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20		E	

1904.20.00.00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20		E	
1904.30.00.00	- 불거 밀(bulgur wheat)	30		A	
1904.90.00.00	- 기타	30		X	
1905.10.00.00	- 귀리빵	20		C	
1905.20.00.00	-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0		C	
1905.31.00.00	- - 스위트 비스킷	20		X	
1905.32.00.00	- - 와플과 웨이퍼	20		X	
1905.40.00.00	- 러스크(rusk) · 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20		E	
1905.90.10.00	- - 맛과 향을 첨가한 가염 쿠키	20		E	
1905.90.90.00	- - 기타	20		E	
2001.10.00.00	- 오이류	30		C	
2001.90.10.00	- - 올리브	30		C	
2001.90.90.00	- - 기타	30		C	
2002.10.00.00	-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30		E	
2002.90.00.00	- 기타	30		C	
2003.10.00.00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30		C	
2003.90.00.00	- 기타	30		C	
2004.10.00.00	- 감자	30		E	
2004.90.00.0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30		E	
2005.10.00.00	- 균질화한 채소	30		E	
2005.20.00.00	- 감자	20		E	
2005.40.0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30		E	
2005.51.00.00	- - 껍데기를 벗긴 콩	30		E	
2005.59.00.00	- - 기타	30		E	
2005.60.00.0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A	
2005.70.00.00	- 올리브	20		A	
2005.80.00.0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30		C	
2005.91.00.00	- - 죽순	30		A	
2005.99.10.00	- - 아티초크	20		D	
2005.99.20.00	- - - 파프리카[캡시컴 앤뉴엄(Capsicum annuum)]	30		D	
2005.99.90.00	- - - 기타	30		A	

2006.00.00.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30		D	
2007.10.00.00	- 균질화한 조제품	30		D	
2007.91.10.00	- - -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	20		D	
2007.91.20.00	- - - 퓨레 및 페이스트	30		D	
2007.99.11.00	- - - -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	30		D	
2007.99.12.00	- - - - 퓨레 및 페이스트	30		D	
2007.99.91.00	- - - -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	30		D	
2007.99.92.10	- - - - - 바나나의 것	30		A	
2007.99.92.20	- - - - - 복숭아의 것	30		A	
2007.99.92.30	- - - - - 사과의 것	30		A	
2007.99.92.40	- - - - - 배의 것	30		A	
2007.99.92.50	- - - - - 망고의 것	30		A	
2007.99.92.90	- - - - - 기타	30		A	
2008.11.10.00	- - - 버터	30		C	
2008.11.90.00	- - - 기타	30		C	
2008.19.10.00	- - - 캐슈너트(cashew nut)	30		C	
2008.19.20.00	- - - 피스타치오(pistachio)	30		A	
2008.19.90.00	-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30		C	
2008.20.10.0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시럽을 포함한다)를 함유한 물에 넣은 것	30		E	
2008.20.90.00	- - 기타	30		C	
2008.30.00.00	- 감귤류 과실	20		E	
2008.40.00.00	- 배	30		D	
2008.50.00.00	- 살구	30		C	
2008.60.10.0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시럽을 포함한다)를 함유한 물에 넣은 것	30		A	
2008.60.90.00	- - 기타	30		A	
2008.70.20.0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시럽을 포함한다)를 함유한 물에 넣은 것	20		C	
2008.70.90.00	- - 기타	20		C	
2008.80.00.00	- 초본류 딸기	30		E	
2008.91.00.00	- - 팜 하트(palm heart)	30		A	
2008.93.00.00	-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30		D	

2008.97.00.00	- - 혼합물	20		D	
2008.99.20.00	- - - 포포(papaw)[파파야(papaya)]	30		E	
2008.99.30.00	- - - 망고(mango)	30		E	
2008.99.90.00	- - - 기타	30		C	
2009.11.00.00	- - 냉동한 것	30		C	
2009.12.00.00	-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30		C	
2009.19.00.00	- - 기타	30		C	
2009.21.00.00	-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30		E	
2009.29.00.00	- - 기타	30		E	
2009.31.00.00	-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30		E	
2009.39.10.00	- - - 소호 제0805.50.21호의 레몬의 것	30		E	
2009.39.90.00	- - - 기타	30		E	
2009.41.00.00	-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30		E	
2009.49.00.00	- - 기타	30		E	
2009.50.00.00	- 토마토주스	30		E	
2009.61.00.00	- - 브릭스(Brix) 값이 30 이하인 것	10		E	
2009.69.00.00	- - 기타	10		E	
2009.71.00.00	-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20		E	
2009.79.00.00	- - 기타	20		E	
2009.81.00.00	-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30		E	
2009.89.10.00	- - - 포포(papaw)의 것	30		E	
2009.89.20.00	- - - 패션프루트[패시플로라 에둘리스(Passiflora edulis)]	30		A	
2009.89.30.00	- - - 가시여지[안노나 무리카타(Annona muricata)]의 것	30		E	
2009.89.40.00	- - - 망고의 것	30		E	
2009.89.50.00	- - - 카무 카무[미르시아리아 두비아(Myrciaria dubia)]의 것	30		A	
2009.89.60.00	- - - 채소에서 추출한 것	30		D	
2009.89.90.00	- - - 기타	30		E	
2009.90.00.00	- 혼합 주스	20		E	
2101.11.00.00	- -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30		E	
2101.12.00.00	- -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0		E	

2101.20.00.00	-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A	
2101.30.00.00	- 볶은 치커리(chicory) ·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30		A	
2102.10.10.00	- - 배양효모	0		A	
2102.10.90.00	- - 기타	15		C	
2102.20.00.00	-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15		E	
2102.30.00.00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15		C	
2103.10.00.00	- 간장	30		E	
2103.20.00.00	-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30		C	
2103.30.10.00	- - 겨자의 고운 가루	0		A	
2103.30.20.00	- - 조제한 겨자	25		C	
2103.90.10.00	- - 마요네스	30		E	
2103.90.20.00	- - 혼합 조미료	30		E	
2103.90.90.00	- - 기타	30		E	
2104.10.10.00	- - 수프와 브로드(broth)용 조제품	30		C	
2104.10.20.00	- - 조제한 수프와 브로드(broth)	30		E	
2104.20.00.00	-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0		C	
2105.00.10.00	- 아이스크림(밀크와 유지방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E	
2105.00.90.00	- 기타	20		E	
2106.10.11.00	- - - 대두(건조상태에서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65와 100분의 75 사이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20		D	
2106.10.19.00	- - - 기타	0		A	
2106.10.20.00	- -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20		D	
2106.90.10.00	- - 분말 크림 · 아이스크림 · 푸딩 · 플랜 · 젤리 및 이와 유사한 것	15		E	
2106.90.21.00	- - -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0		G	
2106.90.29.00	- - - 기타	10		X	
2106.90.30.00	- - 단백질 가수분해물	0		A	
2106.90.40.00	- - 자기소화 효모	0		A	
2106.90.50.00	- - 제빵 개량제	0		A	
2106.90.61.00	- - - 스테비아(stevia)를 기본 재료로 한 것	20		X	
2106.90.69.00	- - - 기타	20		X	
2106.90.71.00	- - - 식물 · 식물의 부분 · 종자나 과실의 혼합물이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것	20		D	

2106.90.72.00	- - -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의 혼합물이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것(비타민, 미네랄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E	
2106.90.73.00	- - -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는 것	20		D	
2106.90.74.00	- - - 비타민을 함유하는 것	20		E	
2106.90.79.00	- - - 기타	20		E	
2106.90.80.00	- - 12개월 이하 유아용의 것(분유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20		E	
2106.90.90.00	- - 기타	20		G	
2201.10.00.00	- 광천수와 탄산수	20		D	
2201.90.00.00	- 기타	30		D	
2202.10.00.00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30		E	
2202.91.00.00	-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30		C	
2202.99.00.10	- - - 에너지 드링크(탄산음료를 포함한다)	30		E	
2202.99.00.90	- - - 기타	30		G	
2203.00.00.00	맥주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C	
2204.10.00.0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E	
2204.21.00.00	-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E	
2204.22.10.00	- - - 포도즙(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가 차단 또는 중지된 것으로 한정한다)	15		D	
2204.22.90.00	- - - 그 밖의 포도주	30		D	
2204.29.10.00	- - - 포도즙(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가 차단 또는 중지된 것으로 한정한다)	15		E	
2204.29.90.00	- - - 그 밖의 포도주	30		E	
2204.30.00.00	- 그 밖의 포도즙	25		A	
2205.10.00.00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D	
2205.90.00.00	- 기타	30		A	

2206.00.00.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E	
2207.10.00.10	- - 무수 알코올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E	
2207.10.00.90	- - 기타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E	
2207.20.00.10	- - 에탄올 연료	15		E	
2207.20.00.90	- - 기타	15		E	
2208.20.21.00	- - - 피스코(pisco)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B	
2208.20.22.00	- - - 신가니(singani)	20		A	
2208.20.29.10	- - - - 알코올 추출물과 브랜디 제조용 농축물[벌크 형태로 포장되고 알코올 도수가 50게이뤼삭(gay lussac)도(度) 이상으로, 소매판매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A	
2208.20.29.90	- - - - 기타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D	
2208.20.30.00	- - 포도박에서 얻은 증류주[그라파(grappa) 및 이와 유사한 것]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D	
2208.30.00.10	- - 알코올 추출물과 위스키 제조용 농축물(벌크 형태로 포장되고 알코올 도수가 50게이뤼삭(gay lussac)도(度) 이상으로, 소매판매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2208.30.00.90	- - 기타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C	

2208.40.00.10	- - 알코올 추출물과 럼 제조용 농축물[벌크 형태로 포장되고 알코올 도수가 50게이뤼삭(gay lussac)도(度) 이상으로, 소매판매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C	
2208.40.00.90	- - 기타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C	
2208.50.00.10	- - 알코올 조제품과 진(gin) · 제네바(geneva) 조제용 농축 추출물[벌크 형태로 포장되고 알코올 도수가 50게이뤼삭(gay lussac)도(度) 이상으로, 소매판매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C	
2208.50.00.90	- - 기타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C	
2208.60.00.10	- - 알코올 추출물과 보드카(vodka) 제조용 농축물[벌크 형태로 포장되고 알코올 도수가 50게이뤼삭(gay lussac)도(度) 이상으로, 소매판매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B	
2208.60.00.90	- - 기타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E	
2208.70.10.00	- - 아니스(anise)의 것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D	
2208.70.20.00	- - 크림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D	
2208.70.90.00	- - 기타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C	
2208.90.10.00	-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X	
2208.90.20.10	- - - 알코올 조제품과 아가베(데킬라 및 이와 유사한 것) 증류주 조제용 농축 추출물[벌크 형태로 포장되고 알코올 도수가 50게이뤼삭(gay lussac)도(度) 이상으로, 소비자 직접 마케팅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5		B	
2208.90.20.90	- - - 기타	1% + USD 0.25/A.D.L. (리터당 알코올 도수)		E	

2208.90.42.00	- - - 아니스(anise)의 것	1% + USD 0.25/A.D.L. (리터 당 알코올 도수)		E	
2208.90.49.00	- - - 기타	1% + USD 0.25/A.D.L. (리터 당 알코올 도수)		E	
2208.90.90.00	- - 기타	1% + USD 0.25/A.D.L. (리터 당 알코올 도수)		E	
2209.00.00.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20		D	
2301.10.10.00	- - 수지박(greaves)	15		E	
2301.10.90.00	- - 기타	0		A	
2301.20.11.10	- - - - 통째로 된 어류로 만든 것	15		A	
2301.20.11.90	- - - - 기타	0		A	
2301.20.19.10	- - - - 통째로 된 어류로 만든 것	15		A	
2301.20.19.90	- - - - 기타	15		A	
2301.20.90.00	- - 기타	0		A	
2302.10.00.00	- 옥수수에서 나온 것	15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2302.30.00.10	- - 밀종자·메밀종자·밀기울	0		A	
2302.30.00.90	- - 기타	15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2302.40.00.00	-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15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2302.50.00.00	-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15		C	
2303.10.00.0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0		A	
2303.20.00.00	-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0		A	
2303.30.00.11	- - - 양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15		A	
2303.30.00.12	- - - 증류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0		A	
2303.30.00.90	- - 기타	0		A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A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 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 다]	15		A	
2306.10.00.00	- 목화씨에서 나온 것	0		A	
2306.20.00.10	- - 아마씨 페이스트(paste)	0		A	
2306.20.00.90	- - 기타	15		A	
2306.30.00.00	-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15		A	

2306.41.00.00	-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0		A	
2306.49.00.10	- - 참기름 페이스트(paste)	15		A	
2306.49.00.20	- - 대마 페이스트(paste)	15		A	
2306.49.00.90	- - 기타	15		A	
2306.50.00.00	-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15		A	
2306.60.00.00	-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15		A	
2306.90.00.10	- - 참기름 페이스트(paste)	0		A	
2306.90.00.20	- - 대마 페이스트(paste)	0		A	
2306.90.00.90	- - 기타	0		A	
2307.00.00.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0		A	
2308.00.10.00	- 마리골드 꽃의 가루	0		A	
2308.00.90.00	- 기타	0		A	
2309.10.10.00	- - 밀봉캔으로 된 것	45		X	
2309.10.90.00	- - 기타	45	APBS	X	
2309.90.10.00	- - 가당사료	15	APBS	X	
2309.90.20.10	- - - - 양식용	0		A	
2309.90.20.90	- - - 기타	0		A	
2309.90.30.00	- - 어린암소 사료용 밀크 대용물	0		A	
2309.90.90.11	- - - - 플레이크(flake) 모양의 양식용	0		A	
2309.90.90.13	- - - - 양식용(입자 지름이 1,200마이크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APBS	E	부속서 2-다 참조
2309.90.90.18	- - - - 그 밖의 양식용	0		A	
2309.90.90.19	- - - - 기타	0	APBS	A	부속서 2-다 참조
2309.90.90.91	- - - - 개나 고양이용 사료(대량 판매용으로 한정한다)	20	APBS	X	
2309.90.90.99	- - - - 기타	20	APBS	X	
2401.10.10.00	- - 블랙 담배	20		E	
2401.10.20.00	- - 블론드 담배	20		E	
2401.20.10.00	- - 블랙 담배	25		E	
2401.20.20.00	- - 블론드 담배	25		E	
2401.30.00.00	- 담배 부산물	20		E	
2402.10.00.00	-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E	
2402.20.10.00	- - 블랙 담배의 것	30		E	
2402.20.20.00	- - 블론드 담배의 것	30		E	
2402.90.00.00	- 기타	30		E	

2403.11.00.00	-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30		D	
2403.19.00.00	- - 기타	30		E	
2403.91.00.00	- -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30		E	
2403.99.00.00	- - 기타	30		E	
2501.00.10.00	- 식탁염	5		A	
2501.00.20.00	- 순도가 100분의 99.5 이상인 염화나트륨(수용액을 포함한다)	0		A	
2501.00.91.00	- - 변성한 것	5		A	
2501.00.92.00	- - 가축 사료용의 것	5		A	
2501.00.99.00	- - 기타	5		A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2503.00.00.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0		A	
2504.10.00.00	-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0		A	
2504.90.00.00	- 기타	0		A	
2505.10.00.00	- 규사	0		A	
2505.90.00.00	- 기타	0		A	
2506.10.00.00	- 석영	0		A	
2506.20.00.00	- 규암	0		A	
2507.00.10.00	- 고령토(하소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2507.00.90.00	- 기타	0		A	
2508.10.00.00	- 벤토나이트(bentonite)	0		A	
2508.30.00.00	- 내화(耐火)점토	0		A	
2508.40.00.00	- 그 밖의 점토	0		A	
2508.50.00.00	-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矽線石)	0		A	
2508.60.00.00	- 멀라이트(mullite)	0		A	
2508.70.00.00	- 샤모트(chamotte) 또는 다이ナス 어스(dinas earth)	0		A	
2509.00.00.00	초크	0		A	
2510.10.00.00	- 잘게 부수지 않은 것	0		A	
2510.20.00.00	- 잘게 부순 것	0		A	
2511.10.00.00	-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0		A	
2511.20.00.00	-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0		A	
2512.00.00.00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아터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2513.10.00.00	- 부석	5		A	
2513.20.00.00	-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0		A	
2514.00.00.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2515.11.00.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5		A	
2515.12.00.00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5		A	
2515.20.00.00	-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 석고(alabaster)	0		A	
2516.11.00.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		A	
2516.12.00.00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0		A	
2516.20.00.00	- 사암	0		A	
2516.90.00.00	-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암석	0		A	
2517.10.00.00	- 자갈 · 왕자갈 · 채석(碎石)[콘크리트용 · 도로포장용 ·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2517.20.00.00	-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2517.30.00.00	- 타르 머캐덤(tar macadam)	0		A	
2517.41.00.00	- - 대리석으로 만든 것	0		A	
2517.49.00.00	- - 기타	0		A	
2518.10.00.00	-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0		A	
2518.20.00.00	-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0		A	
2518.30.00.00	-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0		A	
2519.10.00.00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0		A	
2519.90.10.00	- 용융((溶融)한 마그네시아	0		A	
2519.90.20.00	- -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2519.90.30.00	- - 소결한 마그네슘(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그 밖의 산화물을 함유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2520.10.00.00	- 석고와 무수(無水)석고	0		A	

2520.20.00.00	- 플라스터(plaster)	0		A	
2521.00.00.00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A	
2522.10.00.00	- 생석회(生石灰)	5		A	
2522.20.00.00	- 소석회(消石灰)	0		A	
2522.30.00.00	- 수경성(水硬性) 석회	0		A	
2523.10.00.00	- 시멘트 클링커(clinker)	5		E	
2523.21.00.00	- -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2523.29.00.00	- - 기타	10		E	
2523.30.00.00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10		E	
2523.90.00.00	-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10		E	
2524.10.10.00	- - 섬유상의 것	0		A	
2524.10.90.00	- - 기타	0		A	
2524.90.00.00	- 기타	0		A	
2525.10.00.00	-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갬 운모	0		A	
2525.20.00.00	- 운모 가루	0		A	
2525.30.00.00	- 운모 웨이스트(waste)	0		A	
2526.10.00.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A	
2526.20.0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A	
2528.00.10.00	- 천연 봉산나트륨과 그 정광(精鑛)[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2528.00.90.00	- 기타	0		A	
2529.10.00.00	- 장석(長石)	0		A	
2529.21.00.00	-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0		A	
2529.22.00.00	-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0		A	
2529.30.00.00	-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0		A	
2530.10.00.00	-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2530.20.00.00	- 키테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0		A	
2530.90.00.00	- 기타	0		A	
2601.11.00.00	- - 응결시키지 않은 것	0		A	
2601.12.00.00	- - 응결시킨 것	0		A	
2601.20.00.00	-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0		A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A	

2603.00.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07.00.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1.00.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2.10.00.00	-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2.20.00.00	-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3.10.00.00	- 배소(焙燒)한 것	0		A	
2613.90.00.00	- 기타	0		A	
2614.00.00.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5.10.00.00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5.90.00.00	- 기타	0		A	
2616.10.00.00	- 은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6.90.10.00	- - 금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6.90.90.00	- - 기타	0		A	
2617.10.00.00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0		A	
2617.90.00.00	- 기타	0		A	
2618.00.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0		A	
2619.00.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		A	
2620.11.00.00	- -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0		A	
2620.19.00.00	- - 기타	0		A	
2620.21.00.00	- -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0		A	
2620.29.00.00	- - 기타	0		A	
2620.30.00.00	-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0		A	
2620.40.00.00	-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0		A	
2620.60.00.00	-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0		A	
2620.91.00.00	-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0		A	

2620.99.00.00	- - 기타	0		A	
2621.10.00.00	-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0		A	
2621.90.00.00	- 기타	0		A	
2701.11.00.00	- - 무연탄	0		A	
2701.12.00.00	- - 유연탄	0		A	
2701.19.00.00	- - 그 밖의 석탄	0		A	
2701.20.00.00	-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 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5		A	
2702.10.00.00	-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0		A	
2702.20.00.00	- 응결시킨 갈탄	5		A	
2703.00.00.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2704.00.10.00	-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704.00.20.00	-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2704.00.30.00	-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5		A	
2705.00.00.00	석탄가스 · 수성(水性)가스 · 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A	
2706.00.00.00	석탄 · 갈탄 ·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에 상관없으며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0		A	
2707.10.00.00	- 벤조올(벤젠)	0		A	
2707.20.00.00	- 톨루올(톨루엔)	0		A	
2707.30.00.00	- 크실롤(크실렌)	0		A	
2707.40.00.00	- 나프탈렌	0		A	
2707.50.10.00	- - 솔벤트 나프타(solvent naphtha)	0		A	
2707.50.90.00	- - 기타	0		A	
2707.91.00.00	- - 크레오소트(creosote)유	0		A	
2707.99.10.00	- - - 안트라센(anthracene)	5		A	
2707.99.90.00	- - - 기타	0		A	
2708.10.00.00	- 피치(pitch)	10		A	
2708.20.00.00	- 피치코크스(pitch cokes)	10		A	
2709.00.00.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		A	
2710.12.11.00	- - - - 항공기 엔진용	0		A	

2710.12.13.10	- - - - - 안티녹(antiknock)제 지수가 87미만인 것	0		A	
2710.12.13.20	- - - - - 안티녹(antiknock)제 지수가 87이상 90미만인 것	0		A	
2710.12.13.30	- - - - - 안티녹(antiknock)제 지수가 90이상 95미만인 것	0		A	
2710.12.13.40	- - - - - 안티녹(antiknock)제 지수가 95 이상인 것	0		A	
2710.12.19.00	- - - - 기타	0		A	
2710.12.20.10	- - - - 항공기 엔진용	0		A	
2710.12.20.90	- - - - 기타	0		A	
2710.12.91.00	- - - - 휘발유[백정(白精 : white spirit)]	0		A	
2710.12.92.00	- - - - 리액터 및 터빈용의 가솔린형 제트 연료유	0		A	
2710.12.93.00	- - - - 테트라프로필렌	0		A	
2710.12.94.00	- - - - 노르말 파라핀(n-paraffin)의 혼합물	0		A	
2710.12.95.00	- - - - 노르말 올레핀(n-oleffin)의 혼합물	10		A	
2710.12.99.10	- - - - - 농업용 오일[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중량이 100 분의 70이상인 것으로 해충 방제 화합물 운반체와 같이 농 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2710.12.99.20	- - - - - 농업 해충 방제용으로서 공중 분사에 적합한 석유 (스프레이 오일)	0		A	
2710.12.99.30	- - - - - 영세 어선 엔진용 연료	0		A	
2710.12.99.90	- - - - - 기타	10		A	
2710.19.12.00	- - - - 노르말 파라핀(n-paraffin)의 혼합물	0		A	
2710.19.13.00	- - - - 노르말 올레핀(n-oleffin)의 혼합물	10		A	
2710.19.14.00	- - - - 등유	0		A	
2710.19.15.20	- - - - - 터빈 엔진 항공기용(제트 연료유)	0		A	
2710.19.15.30	- - - - - 터보 연료유 제4호	0		A	
2710.19.15.90	- - - - - 기타	0		A	
2710.19.19.00	- - - - 기타	0		A	
2710.19.21.10	- - - - - 세탄지수(cetane index)가 40 이상 44 이하인 것(디 젤 1)	0		A	
2710.19.21.20	- - - - - 세탄지수(cetane index)가 45 이상인 것(디젤 1)	0		A	
2710.19.21.31	- - - - - 황 함량이 50ppm 이하인 것	0		A	
2710.19.21.39	- - - - - - 기타	0		A	
2710.19.21.40	- - - - - 어선 엔진용 디젤	0		A	
2710.19.21.91	- - - - - 황 함량이 50ppm 이하인 것	10		A	
2710.19.21.99	- - - - - - 기타	10		A	
2710.19.22.00	- - - - 중유(연료유)	0		A	
2710.19.29.00	- - - - 기타	10		A	

2710.19.31.00	- - - - 노르말 파라핀(n-paraffin)의 혼합물	0		A	
2710.19.32.00	- - - - 노르말 올레핀(n-oleffin)의 혼합물	0		A	
2710.19.33.00	- - - - 전기절연유	0		A	
2710.19.34.10	- - - - - 기유(基油)[흑연화 점도(섭씨 40도), 점도가 초당 1,000제곱밀리미터 또는 섭씨 70도 이상에서 초당 2,500제곱밀리미터인 것]	0		A	
2710.19.34.90	- - - - - 기타	10		A	
2710.19.35.10	- - - - - 고무 솔벤트	0		A	
2710.19.35.20	- - - - - 솔벤트(solvent) 제1호	0		A	
2710.19.35.30	- - - - - 광물성 테레빈유	0		A	
2710.19.35.90	- - - - - 기타	0		A	
2710.19.36.00	- - - - 유압 전송용 오일	0		A	
2710.19.37.00	- - - - 화이트 오일(석유젤리 또는 파라핀왁스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2710.19.38.10	- - - - - SAE 40, TBN 7-20	5		C	
2710.19.38.90	- - - - - 기타	10		C	
2710.19.39.00	- - - - 기타	10		C	
2710.20.00.0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0		A	
2710.91.00.00	-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10		A	
2710.99.00.00	- - 기타	0		A	
2711.11.00.00	- - 천연가스	0		A	
2711.12.00.00	- - 프로판	0		A	
2711.13.00.00	- - 부탄	0		A	
2711.14.00.00	- -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틸렌 · 부타디엔	0		A	
2711.19.00.10	- - - 액화석유가스(LPG)	0		A	
2711.19.00.90	- - - 기타	0		A	
2711.21.00.00	- - 천연가스	5		A	
2711.29.00.00	- - 기타	5		A	
2712.10.10.00	- - 조유(粗油)	0		A	
2712.10.90.00	- - 기타	0		A	

2712.20.00.00	-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2712.90.10.00	- - 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	0		A	
2712.90.20.00	- - 오조케라이트(Ozokerite)와 세레신	0		A	
2712.90.30.00	- - 파라핀(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2712.90.90.00	- - 기타	0		A	
2713.11.00.00	- -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0		A	
2713.12.00.00	- - 하소(煨燒)한 것	0		A	
2713.20.00.00	- 석유역청(瀝靑)	0		A	
2713.90.00.00	-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10		A	
2714.10.00.00	-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또는 유모 혈암(油母 頁巖), 그 리고 타르샌드(tar sand)	10		A	
2714.90.00.10	- - 아스팔트 시멘트	0		A	
2714.90.00.20	- - 급속경화형(rapid curing) 시멘트	0		A	
2714.90.00.30	- - 공업용 아스팔트(산화된 것)	0		A	
2714.90.00.90	- - 기타	10		A	
2715.00.10.00	- 역청질 매스틱	10		A	
2715.00.90.00	- 기타	10		A	
2716.00.00.00	전기에너지	0		A	
2801.10.00.00	- 염소	0		A	
2801.20.00.00	- 요드	0		A	
2801.30.00.00	- 플루오르와 브롬	0		A	
2802.00.00.00	승화황(昇華黃) · 침강황(沈降黃) · 콜로이드황	0		A	
2803.00.10.00	- 아세틸렌 블랙	0		A	
2803.00.90.00	- 기타	0		A	
2804.10.00.00	- 수소	5		A	
2804.21.00.00	- - 아르곤	0		A	
2804.29.00.00	- - 기타	0		A	
2804.30.00.00	- 질소	0		A	
2804.40.00.00	- 산소	5		A	
2804.50.10.00	- - 붕소	0		A	
2804.50.20.00	- - 텔루르	0		A	
2804.61.00.00	- -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0		A	
2804.69.00.00	- - 기타	0		A	
2804.70.10.00	- - 적린(red phosphorus)이나 비정질(amorphous)	0		A	

2804.70.90.00	- - 기타	0		A	
2804.80.00.00	- 비소	0		A	
2804.90.10.00	- - 가루 모양인 것	0		A	
2804.90.90.00	- - 기타	0		A	
2805.11.00.00	- - 나트륨	0		A	
2805.12.00.00	- - 칼슘	0		A	
2805.19.00.10	- - - 스트론튬과 바륨	0		A	
2805.19.00.90	- - - 기타	0		A	
2805.30.00.00	-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2805.40.00.00	- 수은	0		A	
2806.10.00.00	- 염화수소(염산)	0		A	
2806.20.00.00	- 클로로황산	0		A	
2807.00.10.00	- 황산	0		A	
2807.00.20.00	- 발연황산	5		A	
2808.00.10.00	- 질산	0		A	
2808.00.20.00	- 황질산	0		A	
2809.10.00.00	- 오산화인	0		A	
2809.20.10.10	- - - 오르토인산(농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것)	0		A	
2809.20.10.90	- - - 기타	0		A	
2809.20.20.00	- - 폴리인산	0		A	
2810.00.10.00	- 오르토붕산	0		A	
2810.00.90.00	- 기타	0		A	
2811.11.00.00	-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0		A	
2811.12.00.00	- -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0		A	
2811.19.10.00	- - - 아미노술폰산(술파민산)	0		A	
2811.19.30.00	- - - 인 유도체	0		A	
2811.19.90.00	- - - 기타	0		A	
2811.21.00.00	- - 이산화탄소	10		A	
2811.22.10.00	- - - 실리카겔	0		A	
2811.22.90.00	- - - 기타	0		A	
2811.29.20.00	- - - 일산화질소(아산화질소 · 질소 산화물)	0		A	
2811.29.40.00	- - - 삼산화이비소(세스퀴산화비소, 아비산화물, 흰색비소)	0		A	
2811.29.90.10	- - - - 아황산가스	0		A	
2811.29.90.90	- - - - 기타	0		A	
2812.11.00.00	- -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0		A	

2812.12.00.00	- - 옥시염화인	0		A	
2812.13.00.00	- -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0		A	
2812.14.00.00	- -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0		A	
2812.15.00.00	- -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0		A	
2812.16.00.00	- - 설퍼 디클로라이드	0		A	
2812.17.00.00	- - 티오닐 클로라이드	0		A	
2812.19.10.00	- - - 아세닉 트리클로라이드	0		A	
2812.19.90.00	- - - 기타	0		A	
2812.90.00.00	- 기타	0		A	
2813.10.00.00	- 이황화탄소	0		A	
2813.90.20.00	- - 황화인	0		A	
2813.90.90.00	- - 기타	0		A	
2814.10.00.00	- 무수(無水)암모니아	0		A	
2814.20.00.00	- 암모니아수	0		A	
2815.11.00.00	- - 고체	0		A	
2815.12.00.00	- -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0		A	
2815.20.00.00	-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0		A	
2815.30.00.00	-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0		A	
2816.10.00.00	-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0		A	
2816.40.00.00	-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0		A	
2817.00.10.00	- 산화아연	0		A	
2817.00.20.00	- 과산화아연	0		A	
2818.10.00.00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2818.20.00.00	-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0		A	
2818.30.00.00	- 수산화알루미늄	0		A	
2819.10.00.00	- 삼산화크로뮴	0		A	
2819.90.10.00	- - 삼산화이크로뮴(삼이산화크롬 또는 산화크롬)	0		A	
2819.90.90.00	- - 기타	0		A	
2820.10.00.00	- 이산화망간	0		A	
2820.90.00.00	- 기타	0		A	
2821.10.10.00	- - 산화물	0		A	
2821.10.20.00	- - 수산화물	0		A	
2821.20.00.00	- 어스컬러(earth colour)	0		A	
2822.00.00.00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0		A	

2823.00.10.00	- 이산화티타늄(산화티타늄 또는 무수티타늄)	0		A	
2823.00.90.00	- 기타	0		A	
2824.10.00.00	-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 · 메시코트(massicot)]	0		A	
2824.90.00.10	- -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0		A	
2824.90.00.90	- - 기타	0		A	
2825.10.00.00	-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0		A	
2825.20.00.00	-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0		A	
2825.30.00.00	-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0		A	
2825.40.00.00	-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0		A	
2825.50.00.00	-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0		A	
2825.60.00.00	-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0		A	
2825.70.00.00	-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0		A	
2825.80.00.00	- 산화안티모니	0		A	
2825.90.10.00	- - 산화주석 및 수산화주석	0		A	
2825.90.40.00	- - 산화칼슘 및 수산화칼슘	0		A	
2825.90.90.00	- - 기타	0		A	
2826.12.00.00	- - 알루미늄의 것	0		A	
2826.19.10.00	- - - 나트륨의 것	0		A	
2826.19.90.00	- - - 기타	0		A	
2826.30.00.00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0		A	
2826.90.00.00	- 기타	0		A	
2827.10.00.00	- 염화암모늄	0		A	
2827.20.00.00	- 염화칼슘	0		A	
2827.31.00.00	- - 마그네슘 염화물	0		A	
2827.32.00.00	- - 알루미늄 염화물	0		A	
2827.35.00.00	- - 니켈 염화물	0		A	
2827.39.10.00	- - - 구리 염화물	0		A	
2827.39.30.00	- - - 주석 염화물	0		A	
2827.39.40.00	- - - 철 염화물	0		A	
2827.39.50.00	- - - 아연 염화물	0		A	
2827.39.90.00	- - - 기타	0		A	
2827.41.00.00	- - 구리 염화물	0		A	
2827.49.10.00	- - - 알루미늄 염화물	0		A	
2827.49.90.00	- - - 기타	0		A	
2827.51.00.00	- -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0		A	

2827.59.00.00	- - 기타	0		A	
2827.60.10.00	- - 나트륨이나 칼륨	0		A	
2827.60.90.00	- - 기타	0		A	
2828.10.00.00	-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0		A	
2828.90.11.00	- -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0		A	
2828.90.19.00	- - - 기타	10		A	
2828.90.20.00	- - 아염소산염	0		A	
2828.90.30.00	- - 하이포아브롬산염	0		A	
2829.11.00.00	- - 염소산나트륨	0		A	
2829.19.10.00	- - - 염소산칼륨	0		A	
2829.19.90.00	- - - 기타	0		A	
2829.90.10.00	- - 과염소산염	0		A	
2829.90.20.00	- - 요드산 칼륨	0		A	
2829.90.90.00	- - 기타	0		A	
2830.10.10.00	- - 황화나트륨	0		A	
2830.10.20.00	- - 황화수소나트륨	0		A	
2830.90.10.00	- - 황화칼륨	0		A	
2830.90.90.00	- - 기타	0		A	
2831.10.00.00	-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	0		A	
2831.90.00.00	- 기타	0		A	
2832.10.00.00	- 아황산나트륨	0		A	
2832.20.10.00	- - 아황산암모늄	0		A	
2832.20.90.00	- - 기타	0		A	
2832.30.10.00	- - 티오황산나트륨	0		A	
2832.30.90.00	- - 기타	0		A	
2833.11.00.00	- - 황산이나트륨	0		A	
2833.19.00.00	- - 기타	0		A	
2833.21.00.00	- - 황산마그네슘	0		A	
2833.22.00.00	- - 황산알루미늄	0		A	
2833.24.00.00	- - 황산니켈	0		A	
2833.25.00.00	- - 황산구리	0		A	
2833.27.00.00	- - 황산바륨	0		A	
2833.29.10.00	- - - 황산철	0		A	
2833.29.30.00	- - - 황산납	0		A	
2833.29.50.00	- - - 황산크로뮴	0		A	

2833.29.60.00	- - - 황산아연	0		A	
2833.29.90.00	- - - 기타	0		A	
2833.30.10.00	- - 명반	0		A	
2833.30.90.00	- - 기타	0		A	
2833.40.10.00	- - 과황산나트륨	0		A	
2833.40.90.00	- - 기타	0		A	
2834.10.00.00	- 아질산염	0		A	
2834.21.00.00	- - 질산칼륨	0		A	
2834.29.10.00	- - - 질산마그네슘	0		A	
2834.29.90.00	- - - 기타	0		A	
2835.10.00.00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0		A	
2835.22.00.00	- -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0		A	
2835.24.00.00	- - 인산칼륨	0		A	
2835.25.00.00	-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0		A	
2835.26.00.00	- - 그 밖의 인산칼슘	0		A	
2835.29.10.00	- - - 인산철	0		A	
2835.29.20.00	- - - 인산삼암모늄	0		A	
2835.29.90.00	- - - 기타	0		A	
2835.31.00.00	-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0		A	
2835.39.10.00	- - - 피로인산나트륨	0		A	
2835.39.90.00	- - - 기타	0		A	
2836.20.00.00	- 탄산이나트륨	0		A	
2836.30.00.0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0		A	
2836.40.00.00	- 탄산칼륨	0		A	
2836.50.00.00	- 탄산칼슘	0		A	
2836.60.00.00	- 탄산바륨	0		A	
2836.91.00.00	- 탄산리튬	0		A	
2836.92.00.00	- 탄산스트론튬	0		A	
2836.99.10.00	- - - 침강성 탄산마그네슘	0		A	
2836.99.20.00	- - - 탄산암모늄	0		A	
2836.99.30.00	- - - 탄산코발트	0		A	
2836.99.40.00	- - - 탄산니켈	0		A	
2836.99.50.00	- - - 세스퀴탄산나트륨	0		A	
2836.99.90.00	- - - 기타	0		A	

2837.11.10.00	- - - 시안화물	0		A	
2837.11.20.00	- - - 산화시안화물	0		A	
2837.19.00.10	- - - 시안화칼륨	0		A	
2837.19.00.20	- - - 시안화구리	0		A	
2837.19.00.90	- - - 기타	0		A	
2837.20.00.00	- 시안착염	0		A	
2839.11.00.00	- - 메타규산나트륨	5		A	
2839.19.00.10	- - - 규산나트륨	0		A	
2839.19.00.90	- - - 기타	5		A	
2839.90.10.00	- - 알루미늄의 것	0		A	
2839.90.20.00	- - 침강성 칼슘의 것	0		A	
2839.90.30.00	- - 마그네슘의 것	0		A	
2839.90.40.00	- - 칼륨의 것	0		A	
2839.90.90.00	- - 기타	0		A	
2840.11.00.00	- 무수물(無水物)	0		A	
2840.19.00.00	- - 기타	0		A	
2840.20.00.00	- 그 밖의 붕산염	0		A	
2840.30.00.0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0		A	
2841.30.00.00	- 중크롬산나트륨	0		A	
2841.50.10.00	- - 아연의 크롬산염 또는 납의 크롬산염	0		A	
2841.50.20.00	- - 크롬산칼륨	0		A	
2841.50.30.00	- - 크롬산나트륨	0		A	
2841.50.40.00	- - 중크롬산칼륨	0		A	
2841.50.50.00	- - 중크롬산탈륨	0		A	
2841.50.90.00	- - 기타	0		A	
2841.61.00.00	- - 과망간산칼륨	0		A	
2841.69.00.00	- - 기타	0		A	
2841.70.00.00	- 몰리브덴산염	0		A	
2841.80.00.00	-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0		A	
2841.90.10.00	- - 알루미늄산염	0		A	
2841.90.90.00	- - 기타	0		A	
2842.10.00.00	-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0		A	
2842.90.10.00	- - 아비산염과 비산염	0		A	
2842.90.21.00	- - - 암모늄과 아연의 것	0		A	
2842.90.29.00	- - - 기타	0		A	

2842.90.30.00	- - 인산의 겹염 또는 착염(인산염)	0		A	
2842.90.90.00	- - 기타	0		A	
2843.10.00.00	- 콜로이드 귀금속	0		A	
2843.21.00.00	- 질산은	0		A	
2843.29.00.00	- - 기타	0		A	
2843.30.00.00	- 금 화합물	0		A	
2843.90.00.00	- 그 밖의 화합물과 아말감(amalgam)	0		A	
2844.10.00.00	-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2844.20.00.00	-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2844.30.00.00	-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2844.40.10.00	- - 방사성 잔재물	0		A	
2844.40.90.00	- - 기타	0		A	
2844.50.00.00	-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0		A	
2845.10.00.0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0		A	
2845.90.00.00	- 기타	0		A	
2846.10.00.00	- 세륨화합물	0		A	
2846.90.00.00	- 기타	0		A	
2847.00.00.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2849.10.00.00	- 탄화칼슘	0		A	
2849.20.00.00	- 탄화규소	0		A	
2849.90.10.00	- - 텅스텐(볼프람)의 것	0		A	
2849.90.90.00	- - 기타	0		A	
2850.00.10.00	- 납의 질화물	0		A	
2850.00.20.00	- 아지드화물	0		A	
2850.00.90.00	- 기타	0		A	
2852.10.10.00	- - 수은 황화물	0		A	
2852.10.21.00	- - - 메르브로민(DCI)(머큐로크롬)	0		A	
2852.10.29.00	- - - 기타	0		A	

2852.10.90.00	- - 기타	0		A	
2852.90.10.00	- - 유기수은화합물	0		A	
2852.90.90.00	- - 기타	0		A	
2853.10.00.00	-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0		A	
2853.90.10.00	- - 증류수 또는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액체 공기 및 정제한 공기	0		A	
2853.90.90.00	- - 기타	0		A	
2901.10.00.10	- - 노말헥산	0		A	
2901.10.00.90	- - 기타	0		A	
2901.21.00.00	- - 에틸렌	0		A	
2901.22.00.00	- - 프로펜(프로필렌)	0		A	
2901.23.00.00	- -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		A	
2901.24.00.00	- -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0		A	
2901.29.00.00	- - 기타	5		A	
2902.11.00.00	- - 시클로헥산	0		A	
2902.19.00.00	- - 기타	0		A	
2902.20.00.00	- 벤젠	0		A	
2902.30.00.00	- 톨루엔	0		A	
2902.41.00.00	- - 오르토-크실렌	0		A	
2902.42.00.00	- - 메타-크실렌	0		A	
2902.43.00.00	- - 파라-크실렌	0		A	
2902.44.00.00	- - 혼합크실렌이성체	0		A	
2902.50.00.00	- 스티렌	0		A	
2902.60.00.00	- 에틸벤젠	0		A	
2902.70.00.00	- 큐멘	0		A	
2902.90.10.00	- - 나프탈렌	0		A	
2902.90.90.00	- - 기타	0		A	
2903.11.10.00	- - - 염화메탄(염화메틸)	0		A	
2903.11.20.00	- - - 염화에탄(염화에틸)	0		A	
2903.12.00.00	-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0		A	
2903.13.00.00	-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0		A	
2903.14.00.00	- - 사염화탄소	0		A	
2903.15.00.00	- -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0		A	
2903.19.10.00	- - -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0		A	
2903.19.90.00	- - - 기타	0		A	
2903.21.00.00	-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0		A	

2903.22.00.00	- - 삼염화에틸렌	0		A	
2903.23.00.00	-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0		A	
2903.29.10.00	- - - 염화비닐리덴[단량체(單量體 : monomer)]	0		A	
2903.29.90.00	- - - 기타	0		A	
2903.31.00.00	- -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0		A	
2903.39.10.00	- - - 브로모메탄(메틸 브로마이드)	0		A	
2903.39.21.00	- - - - 디플루오르메탄	0		A	
2903.39.22.00	- - - - 트리플루오르메탄	0		A	
2903.39.23.00	- - - - 디플루오르에탄	0		A	
2903.39.24.00	- - - - 트리플루오르에탄	0		A	
2903.39.25.00	- - - - 테트라플루오르에탄	0		A	
2903.39.26.00	- - - - 펜타플루오르에탄	0		A	
2903.39.30.00	- - - - 1,1,3,3,5-펜타플루오르-2-(트리플루오르메틸)-1-프로판	0		A	
2903.39.90.00	- - - 기타	0		A	
2903.71.00.00	-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0		A	
2903.72.00.00	-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0		A	
2903.73.00.00	- -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0		A	
2903.74.00.00	- -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0		A	
2903.75.00.00	-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0		A	
2903.76.00.00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0		A	
2903.77.11.00	- - - -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0		A	
2903.77.12.00	- - - -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0		A	
2903.77.13.00	- - -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0		A	
2903.77.21.00	- - - -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	0		A	
2903.77.22.00	- - - -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0		A	
2903.77.23.00	- - -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0		A	
2903.77.24.00	- - - -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0		A	
2903.77.25.00	- - - -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	0		A	
2903.77.31.00	- - - - 클로린헥사플루오르프로판	0		A	
2903.77.32.00	- - - -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	0		A	
2903.77.33.00	- - - -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0		A	
2903.77.34.00	- - - -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올	0		A	
2903.77.35.00	- - - - 펜타클로로트리클로로프로판	0		A	
2903.77.36.00	- - - -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	0		A	
2903.77.37.00	- - - - 헵타클로르클로로프로판	0		A	

2903.77.90.00	- - - 기타	0		A	
2903.78.00.00	- -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0		A	
2903.79.11.00	- - -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0		A	
2903.79.12.00	- - - -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0		A	
2903.79.19.00	- - - - 기타	0		A	
2903.79.20.00	- - - 불소와 브롬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유도체	0		A	
2903.79.90.00	- - - 기타	0		A	
2903.81.10.00	- - - 린데인(ISO) 감마 이성체	0		A	
2903.81.20.00	- - - 알파, 베타 및 델타 이성체	0		A	
2903.81.90.00	- - - 기타	0		A	
2903.82.10.00	- - - 엘드린(ISO)	0		A	
2903.82.20.00	- - - 클로르덴(ISO)	0		A	
2903.82.30.00	- - - 헵타클로르(ISO)	0		A	
2903.83.00.00	- - 미렉스(ISO)	0		A	
2903.89.10.00	- - - 캄페클로(톡사핀)	0		A	
2903.89.90.00	- - - 기타	0		A	
2903.91.00.00	- -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0		A	
2903.92.10.00	- - - 헥사클로로벤젠(ISO)	0		A	
2903.92.20.00	- - - 디디타(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0		A	
2903.93.00.00	- - - - 기타	0		A	
2903.94.00.00	- - - - 기타	0		A	
2903.99.10.00	- - - - 기타	0		A	
2903.99.20.00	- - - - 기타	0		A	
2903.99.30.00	- - - - 기타	0		A	
2903.99.90.00	- - - - 기타	0		A	
2904.10.10.00	- - 나프탈렌술폰산	5		A	
2904.10.90.00	- - 기타	0		A	
2904.20.10.00	- - 디니트로톨루엔	10		A	
2904.20.20.00	- - 트리니트로톨루엔(TNT)	0		A	
2904.20.30.00	- - 트리니트로부틸메타크실렌과 디니트로부틸파라시멘	0		A	
2904.20.40.00	- - 니트로벤젠	0		A	
2904.20.90.00	- - 기타	0		A	
2904.31.00.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0		A	
2904.32.00.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0		A	

2904.33.00.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0		A	
2904.34.00.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0		A	
2904.35.00.00	- -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0		A	
2904.36.00.00	- - 과불화옥탄술폰닐플루오라이드	0		A	
2904.91.00.00	-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0		A	
2904.99.00.00	- - 기타	0		A	
2905.11.00.00	- - 메탄올(메틸알코올)	0		A	
2905.12.10.00	- - - 프로필알코올	0		A	
2905.12.20.00	- - - 이소프로필알코올	0		A	
2905.13.00.00	-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0		A	
2905.14.10.00	- - - 이소부틸	0		A	
2905.14.90.00	- - - 기타	0		A	
2905.16.10.00	- - - 2-에틸헥산올	0		A	
2905.16.90.00	- - - 그 밖의 옥틸알코올	0		A	
2905.17.00.00	-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0		A	
2905.19.10.00	- - - 메틸 아밀	0		A	
2905.19.20.00	- - - 그 밖의 헥실알코올(헥산올)과 헵틸알코올(헵탄올)	0		A	
2905.19.30.00	- - - 노닐알코올(노난올)	0		A	
2905.19.40.00	- - - 데실알코올(데칸올)	0		A	
2905.19.50.00	- - -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0		A	
2905.19.60.00	- - -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0		A	
2905.19.90.00	- - - 기타	0		A	
2905.22.00.00	-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0		A	
2905.29.00.00	- - 기타	0		A	
2905.31.00.00	-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0		A	
2905.32.00.00	-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0		A	
2905.39.10.00	- - - 부틸렌글리콜(부탄디올)	0		A	
2905.39.90.00	- - - 기타	0		A	
2905.41.00.00	- -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0		A	
2905.42.00.00	- - 펜타에리트리톨(펜타에리트리트)	0		A	
2905.43.00.00	- - 만니톨	0		A	
2905.44.00.00	-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0		A	
2905.45.00.00	- - 글리세롤	0		A	
2905.49.00.00	- - 기타	0		A	

2905.51.00.00	- - 에스클로비놀(INN)	0		A	
2905.59.00.00	- - 기타	0		A	
2906.11.00.00	- - 멘톨	0		A	
2906.12.00.00	- - 시클로헥산올 · 메틸시클로헥산올 · 디메틸시클로헥산올	0		A	
2906.13.00.00	- - 스테롤과 이노시톨	0		A	
2906.19.00.00	- - 기타	0		A	
2906.21.00.00	- - 벤질알코올	0		A	
2906.29.00.00	- - 기타	0		A	
2907.11.10.00	- - - 페놀(석탄산)	0		A	
2907.11.20.00	- - - 염	0		A	
2907.12.00.00	- - 크레졸과 그 염	0		A	
2907.13.10.00	- - - 노닐페놀	0		A	
2907.13.90.00	- - - 기타	0		A	
2907.15.00.00	- - 나프톨과 이들의 염	0		A	
2907.19.00.00	- - 기타	0		A	
2907.21.00.00	- - 레소르시놀과 그 염	0		A	
2907.22.00.00	- -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0		A	
2907.23.00.00	- -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	0		A	
2907.29.10.00	- - - 페놀알코올	0		A	
2907.29.90.00	- - - 기타	0		A	
2908.11.00.00	- - 펜타클로로페놀(ISO)	0		A	
2908.19.00.00	- - 기타	0		A	
2908.91.00.00	- - 디노셉(ISO)과 그 염	0		A	
2908.92.00.00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0		A	
2908.99.10.00	- - - 술폰화만 된 유도체,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A	
2908.99.22.00	- - - - 디니트로페놀	0		A	
2908.99.23.00	- - - - 피크르산(트리니트로페놀)	0		A	
2908.99.29.00	- - - - 기타	0		A	
2908.99.90.00	- - - 기타	0		A	
2909.11.00.00	- - 디에틸에테르(에틸 옥사이드)	0		A	
2909.19.10.00	- - -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0		A	
2909.19.90.00	- - - 기타	0		A	
2909.20.00.0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0		A	

2909.30.10.00	- - 아네톨	0		A	
2909.30.90.00	- - 기타	0		A	
2909.41.00.00	-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0		A	
2909.43.00.00	- -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0		A	
2909.44.00.00	- -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0		A	
2909.49.10.00	- - - 디프로필렌글리콜	0		A	
2909.49.20.00	- - - 트리에틸렌 글리콜	0		A	
2909.49.30.00	- - - 글리세릴 구아리아콜	0		A	
2909.49.40.00	- - - 프로필렌글리콜 메틸에테르	0		A	
2909.49.50.00	- - - 프로필렌글리콜의 그 밖의 에테르	0		A	
2909.49.60.00	- - -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에테르	0		A	
2909.49.90.00	- - - 기타	0		A	
2909.50.10.00	- - 구아리아콜 · 오이게놀 및 이소오이게놀, 구아리아콜숄폰산 칼륨	0		A	
2909.50.90.00	- - 기타	0		A	
2909.60.10.00	- -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0		A	
2909.60.90.00	- - 기타	0		A	
2910.10.00.0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0		A	
2910.20.00.0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0		A	
2910.30.00.0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0		A	
2910.40.00.00	- 디엘드린(ISO, INN)	0		A	
2910.50.00.00	- 엔드린(ISO)	0		A	
2910.90.00.00	- 기타	0		A	
2911.00.00.00	아세탈 ·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숄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0		A	
2912.11.00.00	- - 메탄알(포름알데히드)	0		A	
2912.12.00.00	-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0		A	
2912.19.20.00	- - - 시트랄과 시트로넬올	0		A	
2912.19.30.00	- - - 글루타르알데히드	0		A	
2912.19.90.00	- - - 기타	0		A	
2912.21.00.00	- - 벤즈알데히드(벤조 알데히드)	0		A	
2912.29.10.00	- - - 신남알데히드와 페닐아세트알데히드	0		A	
2912.29.90.00	- - - 기타	0		A	

2912.41.00.00	-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0		A	
2912.42.00.00	- -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0		A	
2912.49.10.00	- - - 알데히드, 알코올	0		A	
2912.49.90.10	아니스 알데히드(알데히드 피-메톡시벤조산)	0		A	
2912.49.90.90	- - - - 기타	0		A	
2912.50.00.00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0		A	
2912.60.00.00	- 파라포름알데히드	0		A	
2913.00.00.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0		A	
2914.11.00.00	- - 아세톤	0		A	
2914.12.00.00	- - 부탄온(메틸에틸케톤)	0		A	
2914.13.00.00	- -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0		A	
2914.19.00.00	- - 기타	0		A	
2914.22.10.00	- - - 시클로헥사논	0		A	
2914.22.20.00	- - - 메틸시클로헥사논	0		A	
2914.23.00.00	- -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0		A	
2914.29.20.00	- - - 이소포론	0		A	
2914.29.30.00	- - - 장뇌	0		A	
2914.29.90.00	- - - 기타	0		A	
2914.31.00.00	-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0		A	
2914.39.00.00	- - 기타	0		A	
2914.40.10.00	- - 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디아세톤알코올)	0		A	
2914.40.90.00	- - 기타	0		A	
2914.50.00.00	- -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0		A	
2914.61.00.00	- - 안트라퀴논	0		A	
2914.62.00.00	- -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0		A	
2914.69.00.00	- - 기타	0		A	
2914.71.00.00	- - 클로르데콘(ISO)	0		A	
2914.79.00.00	- - 기타	0		A	
2915.11.00.00	- - 포름산	0		A	
2915.12.10.00	- - - 포름산나트륨	0		A	
2915.12.90.00	- - - 기타	0		A	
2915.13.00.00	- - 포름산의 에스테르	0		A	
2915.21.00.00	- - 초산	0		A	
2915.24.00.00	- - 무수(無水)초산	0		A	

2915.29.10.00	- - - 초산칼슘 · 초산납 · 초산동 · 초산크로뮴 · 초산알루미늄 또는 초산철	0		A	
2915.29.20.00	- - - 초산나트륨	0		A	
2915.29.90.00	- - - 기타	0		A	
2915.31.00.00	- - 초산에틸	0		A	
2915.32.00.00	- - 초산비닐	0		A	
2915.33.00.00	- - 초산노르말부틸	0		A	
2915.36.00.00	- - 초산디노셉(ISO)	0		A	
2915.39.10.00	- - - 초산2-에톡시에틸	0		A	
2915.39.21.00	- - - - 초산프로필	0		A	
2915.39.22.00	- - - - 초산이소프로필	0		A	
2915.39.30.00	- - - 초산아밀과 초산이소아밀	0		A	
2915.39.90.10	- - - - 초산이소부틸	0		A	
2915.39.90.90	- - - - 기타	0		A	
2915.40.10.00	- - 산	0		A	
2915.40.20.00	- - 염과 에스테르	0		A	
2915.50.10.00	- - 프로피온산	0		A	
2915.50.21.00	- - - 염	0		A	
2915.50.22.00	- - - 에스테르	0		A	
2915.60.11.00	- - - 부탄산	0		A	
2915.60.19.00	- - - 기타	0		A	
2915.60.20.00	- - 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A	
2915.70.10.00	- - -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A	
2915.70.21.00	- - - 스테아르산	0		A	
2915.70.22.00	- - - 염	0		A	
2915.70.29.00	- - - 에스테르	0		A	
2915.90.20.00	- - 브로모아세트산	0		A	
2915.90.31.00	- - - 염화아세틸	0		A	
2915.90.39.00	- - - 기타	0		A	
2915.90.40.00	- - 틴옥타노에이트	0		A	
2915.90.50.00	- - 라우르산	0		A	
2915.90.90.00	- - 기타	0		A	
2916.11.10.00	- - - 아크릴산	0		A	
2916.11.20.00	- - - 염	0		A	
2916.12.10.00	- - - 아크릴산부틸	0		A	

2916.12.90.00	- - - 기타	0		A	
2916.13.00.00	-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0		A	
2916.14.10.00	- - - 메타아크릴산메틸	0		A	
2916.14.90.00	- - - 기타	0		A	
2916.15.10.00	- - - 올레산	0		A	
2916.15.20.00	- - - 올레산의 염 및 에스테르	0		A	
2916.15.90.00	- - - 기타	0		A	
2916.16.00.00	- - 비나파크릴(ISO)	0		A	
2916.19.10.00	- - - 소르브산과 그 염	0		A	
2916.19.20.00	- - - 아크릴산 유도체	0		A	
2916.19.90.10	- - - - 메타아크릴산 유도체	0		A	
2916.19.90.90	- - - - 기타	0		A	
2916.20.10.00	- - 알레트린(ISO)	5		A	
2916.20.20.00	- - 페르메트린(ISO)(INN)	0		A	
2916.20.90.00	- - 기타	5		A	
2916.31.10.00	- - - 벤조산	0		A	
2916.31.30.00	- - - 벤조산나트륨	0		A	
2916.31.40.00	- - - 벤조산나프탈렌 · 벤조산암모늄 · 벤조산칼륨 · 벤조산칼슘 · 벤조산메틸 및 벤조산에틸	0		A	
2916.31.90.00	- - - 기타	0		A	
2916.32.10.00	- - - 과산화벤조일	0		A	
2916.32.20.00	- - - 염화벤조일	0		A	
2916.34.00.00	- -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0		A	
2916.39.00.00	- - 기타	0		A	
2917.11.10.00	- - - 옥살산	0		A	
2917.11.20.00	- - - 염과 에스테르	0		A	
2917.12.10.00	- - - 아디프산	0		A	
2917.12.20.00	- - - 염과 에스테르	0		A	
2917.13.10.00	- - - 아젤라산(INN), 그 염과 에스테르	0		A	
2917.13.20.00	- - - 세바스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A	
2917.14.00.00	- - 무수말레산	0		A	
2917.19.10.00	- - - 말레산	0		A	
2917.19.20.00	- - - 말레산의 염,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0		A	
2917.19.30.00	- - - 푸마르산	0		A	
2917.19.90.00	- - - 기타	0		A	

2917.20.00.0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0		A	
2917.32.00.00	-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0		A	
2917.33.00.00	- -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0		A	
2917.34.10.00	- - - 오르토프탈산디메틸 또는 오르토프탈산디에틸	0		A	
2917.34.20.00	- - -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0		A	
2917.34.90.00	- - - 기타	0		A	
2917.35.00.00	- - 무수프탈산	0		A	
2917.36.10.00	- - - 테레프탈산	0		A	
2917.36.20.00	- - - 염	0		A	
2917.37.00.00	- - 테레프탈산디메틸	0		A	
2917.39.20.00	- - - 오르토프탈산과 그 염	0		A	
2917.39.30.00	- - - 오르토프탈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A	
2917.39.40.00	- - - 무수트리멜리트산	0		A	
2917.39.90.00	- - - 기타	0		A	
2918.11.10.00	- - - 락트산	0		A	
2918.11.20.00	- - - 락트산칼슘	0		A	
2918.11.90.00	- - - 기타	0		A	
2918.12.00.00	- - 타르타르산	0		A	
2918.13.00.00	-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0		A	
2918.14.00.00	- - 시트르산	0		A	
2918.15.30.00	- - - 시트르산나트륨	0		A	
2918.15.90.00	- - - 기타	0		A	
2918.16.10.00	- - - 글루콘산	0		A	
2918.16.20.00	- - - 글루콘산칼슘	0		A	
2918.16.30.00	- - - 글루콘산나트륨	0		A	
2918.16.90.00	- - - 기타	0		A	
2918.17.00.00	- -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0		A	
2918.18.00.00	-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0		A	
2918.19.20.00	- - - 글루콘산 유도체	0		A	
2918.19.90.00	- - - 기타	0		A	
2918.21.10.00	- - - 살리실산	0		A	
2918.21.20.00	- - - 염	0		A	
2918.22.10.00	- -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0		A	
2918.22.20.00	- - - 염과 에스테르	0		A	

2918.23.00.00	- -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0		A	
2918.29.11.00	- - - - 파라-히드록시벤조산메틸	0		A	
2918.29.12.00	- - - - 파라-히드록시벤조산프로필	0		A	
2918.29.19.00	- - - - 기타	0		A	
2918.29.90.00	- - - 기타	0		A	
2918.30.00.00	- 알데히드 ·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0		A	
2918.91.00.00	- -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A	
2918.99.11.00	- - - - 2,4-디(ISO)	0		A	
2918.99.12.00	- - - - 염	0		A	
2918.99.20.00	- - - 2,4-디의 에스테르	0		A	
2918.99.30.00	- - - 디캄바(ISO)	0		A	
2918.99.40.00	- - - 엠시피에이(ISO)	0		A	
2918.99.50.00	- - - 2,4-디비-(2,4-디클로로페녹시)부티르산	0		A	
2918.99.60.00	- - - 디클로르프로프(ISO)	0		A	
2918.99.70.00	- - - 디클로포프-메틸[메틸 2-(4-(2,4-디클로로페녹시)페녹시) 프로피오네이트]	0		A	
2918.99.91.00	- - - - 나프록센나트륨	0		A	
2918.99.92.00	- - - - 2,4 디클로로페녹시프로피온산	0		A	
2918.99.99.00	- - - - 기타	0		A	
2919.10.00.0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0		A	
2919.90.11.00	- - - 글리세로 인산 나트륨	0		A	
2919.90.19.00	- - - 기타	0		A	
2919.90.20.00	- - 디메틸-디클로로-비닐-포스페이트(DDVP)	0		A	
2919.90.30.00	- - 클로르펜빈포스(ISO)	0		A	
2919.90.90.00	- - 기타	0		A	
2920.11.10.00	- - - 파라티온(ISO)	5		A	
2920.11.20.00	- - -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0		A	
2920.19.20.00	- - - 오-에틸-오-피 니트로페닐벤조티오포스페이트(EPN)	0		A	
2920.19.90.00	- - - 기타	0		A	
2920.21.00.00	- - 디메틸 포스파이트	0		A	
2920.22.00.00	- - 디에틸 포스파이트	0		A	
2920.23.00.00	- -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0		A	
2920.24.00.00	- -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0		A	

2920.29.00.00	- - 기타	0		A	
2920.30.00.00	- 엔도선판(ISO)	0		A	
2920.90.10.00	- - 니트로글리세린(글리세릴 트리니트레이트)	0		A	
2920.90.20.00	- - 펜트라이트(테트라니트로펜타에리트리톨)	0		A	
2920.90.90.00	- - 기타	0		A	
2921.11.00.00	- - 메틸아민 · 디메틸아민 · 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0		A	
2921.12.00.00	- -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0		A	
2921.13.00.00	-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0		A	
2921.14.00.00	-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0		A	
2921.19.10.00	- - -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0		A	
2921.19.20.00	- - - 클로르메틴(INN)[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0		A	
2921.19.30.00	- - -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0		A	
2921.19.41.00	- - - - 2-클로로-N,N-디메틸에틸아민 염산염(DMC)	0		A	
2921.19.42.00	- - - - 2-클로로트리에틸아민 염산염	0		A	
2921.19.49.00	- - - - 기타	0		A	
2921.19.50.00	- - - 디에틸아민과 그 염	0		A	
2921.19.90.00	- - - 기타	0		A	
2921.21.00.00	-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0		A	
2921.22.00.00	- -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0		A	
2921.29.00.00	- - 기타	0		A	
2921.30.00.00	- 포화지환식아민 · 불포화지환식아민 ·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21.41.00.00	- - 아닐린과 그 염	0		A	
2921.42.10.00	- - - 클로로아닐린	0		A	
2921.42.20.00	- - - 엔-메틸-엔,2,4,6-테트라니트로아닐린(테트릴)	0		A	
2921.42.90.00	- - - 기타	0		A	
2921.43.00.00	- -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21.44.00.00	- -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21.45.00.00	-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21.46.10.00	- - - 암페타민(INN)	0		A	

2921.46.20.00	- - - 벤즈페타민(INN) · 덱스암페타민(INN) · 에틸암페타민(INN) · 펜캄파민(INN)	0		A	
2921.46.30.00	- - - 레페타민(INN) · 레브암페타민(INN) · 메페노렉스(INN) · 팬터민(INN)	0		A	
2921.46.90.00	- - - 기타	0		A	
2921.49.10.00	- - - 자일리다인즈	0		A	
2921.49.90.00	- - - 기타	0		A	
2921.51.00.00	- - 오르토-페닐렌디아민 · 메타-페닐렌디아민 · 파라-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21.59.00.00	- - 기타	0		A	
2922.11.10.00	- - - 모노에탄올아민	0		A	
2922.11.20.00	- - - 염	0		A	
2922.12.10.00	- - - 디에탄올아민	0		A	
2922.12.20.00	- - - 염	0		A	
2922.14.10.00	- - -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	0		A	
2922.14.20.00	- - - 염	0		A	
2922.15.00.00	- - 트리에탄올아민	0		A	
2922.16.00.00	-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0		A	
2922.17.10.00	- - - 메틸디에탄올아민	0		A	
2922.17.20.00	- - - 에틸디에탄올아민	0		A	
2922.18.00.00	-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0		A	
2922.19.21.00	- - - -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0		A	
2922.19.22.00	- - - -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0		A	
2922.19.29.00	- - - - 기타	0		A	
2922.19.50.00	- - - 트리에탄올아민 염	0		A	
2922.19.90.00	- - - 기타	0		A	
2922.21.00.00	- -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0		A	
2922.29.00.00	- - 기타	0		A	
2922.31.10.00	- - - 암페프라몬(INN)	0		A	
2922.31.20.00	- - - 메타돈(INN)	0		A	
2922.31.30.00	- - - 노르메타돈(INN)	0		A	
2922.31.90.00	- - - 기타	0		A	

2922.39.00.00	- - 기타	0		A	
2922.41.00.00	- -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0		A	
2922.42.10.00	- - - 글루탐산모노나트륨	0		A	
2922.42.90.00	- - - 기타	0		A	
2922.43.00.00	- - 안트라닐산과 그 염	0		A	
2922.44.10.00	- - - 킬리딘(INN)	0		A	
2922.44.90.00	- - - 기타	0		A	
2922.49.10.00	- - - 글리신(INN), 그 염 및 에스테르	0		A	
2922.49.30.00	- - - 알라닌(INN), 페닐알라닌(INN), 류우신(INN), 이소류우신(INN)과 아스파르트산(INN)	0		A	
2922.49.41.00	- - -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EDTA)[에데트산(INN)]	0		A	
2922.49.42.00	- - - - 염	0		A	
2922.49.90.00	- - - 기타	0		A	
2922.50.30.00	- - 2-아미노-1-(2,5-디메톡시-4-메틸)-페닐프로판(STP,DOM)	0		A	
2922.50.40.00	- - 아미노산페놀, 그들의 염 및 유도체	0		A	
2922.50.90.00	- - 기타	0		A	
2923.10.00.00	- 콜린과 그 염	0		A	
2923.20.00.00	-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0		A	
2923.30.00.00	-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0		A	
2923.40.00.00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0		A	
2923.90.10.00	- - 콜린 유도체	0		A	
2923.90.90.00	- - 기타	0		A	
2924.11.00.00	- - 메프로바메이트(INN)	0		A	
2924.12.00.00	-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포스파미돈(ISO) 및 모노크로토포스(ISO)	0		A	
2924.19.00.00	- - 기타	0		A	
2924.21.10.00	- - - 디우론(ISO)	0		A	
2924.21.90.00	- - - 기타	0		A	
2924.23.00.00	- -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0		A	
2924.24.00.00	- - 에치나메이트(INN)	0		A	
2924.25.00.00	- - 알라클로르(ISO)	0		A	
2924.29.10.00	- - - 파라-아세트아미노페놀(파라세타몰)(INN)	0		A	
2924.29.20.00	- - - 리도카인(INN)	0		A	

2924.29.30.00	- - - 카르바릴(ISO), (INN)	0		A	
2924.29.40.00	- - - 프로파닐(ISO)	0		A	
2924.29.50.00	- - - 메타락실(ISO)	0		A	
2924.29.60.00	- - - 아스파르테임(INN)	0		A	
2924.29.70.00	- - - 아테놀올(INN)	0		A	
2924.29.80.00	- - - 부타클로르(2'-클로로-2',6' 디에틸-엔-(부톡시메틸)아세트아닐리드)	0		A	
2924.29.90.00	- - - 기타	0		A	
2925.11.00.00	- - 사카린과 그 염	0		A	
2925.12.00.00	- - 구루테치미드(INN)	0		A	
2925.19.00.00	- - 기타	0		A	
2925.21.00.00	- - 클로르디메포름(ISO)	10		A	
2925.29.10.00	- - - 구아니딘, 그들의 염과 유도체	0		A	
2925.29.90.00	- - - 기타	0		A	
2926.10.00.00	- 아크릴로니트릴	0		A	
2926.20.00.00	-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0		A	
2926.30.10.00	- -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5		A	
2926.30.20.00	- - 메타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0		A	
2926.40.00.00	-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0		A	
2926.90.20.00	- - 아세토니트릴	0		A	
2926.90.30.00	- - 아세톤시안히드린	0		A	
2926.90.40.00	- - 2-시아노-엔[(에틸아미노)카보닐]-2- (메톡시아미노)아세트아미드(사이목사닐)	0		A	
2926.90.50.00	- - 사이퍼메트린	0		A	
2926.90.90.00	- - 기타	0		A	
2927.00.00.10	- 아조디카본아미드	0		A	
2927.00.00.90	- 기타	5		A	
2928.00.10.00	- 에틸 메틸 케톡심(부타논옥심)	0		A	
2928.00.20.00	- 폭심(ISO)(INN)	0		A	
2928.00.90.00	- 기타	0		A	
2929.10.10.00	-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0		A	
2929.10.90.00	- - 기타	0		A	
2929.90.10.00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0		A	

2929.90.20.00	- -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0		A	
2929.90.30.00	- - 시클라멘산나트륨(INN)	0		A	
2929.90.90.00	- - 기타	0		A	
2930.20.10.00	- - 에틸디프로필티오카르바메이트	0		A	
2930.20.20.00	- - 부티레이트(ISO) · 티오벤카브 · 베노레이트	5		A	
2930.20.90.00	- - 기타	0		A	
2930.30.10.00	- - 테트라메틸티우람디술팜아이드(ISO)(INN)	0		A	
2930.30.90.10	- - - 산토큐어 TBBS용	0		A	
2930.30.90.90	- - - 기타	5		A	
2930.40.00.00	- 메티오닌	0		A	
2930.60.00.00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0		A	
2930.70.00.00	-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팜아이드[티오디글리콜(INN)]	0		A	
2930.80.00.00	-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0		A	
2930.90.11.00	- - - 티오파네이트 메틸(ISO)	0		A	
2930.90.19.00	- - - 기타	0		A	
2930.90.21.00	-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티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0		A	
2930.90.29.00	- - - 기타	0		A	
2930.90.30.00	- - 말라티온(ISO)	0		A	
2930.90.51.00	- - - 이소프로필 크산틴산나트륨(ISO)	0		A	
2930.90.59.00	- - - 기타	0		A	
2930.90.70.00	- - 오, 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0		A	
2930.90.80.00	- -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0		A	
2930.90.92.00	- - - 메티오닌의 염, 에스테르 및 유도체	0		A	
2930.90.93.10	- - - - 디메토에이트(ISO)	0		A	
2930.90.93.20	- - - - 펜티온(ISO)	0		A	
2930.90.94.00	- - -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와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0		A	
2930.90.95.00	- - - 2-클로로에틸술팜아이드 및 클로로메틸술팜아이드, 비스(2-클로로에틸)술팜아이드	0		A	

2930.90.96.00	- - -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탄, 1,2-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탄,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 프로판, 1,4-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 부탄,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 펜탄	0		A	
2930.90.97.00	- - -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옥사이드,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틸)옥사이드	0		A	
2930.90.98.00	- - - 그 밖의 것으로서 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 결합된 인원자를 포함하는 것(더 이상의 탄소 원자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2930.90.99.00	- - - 기타	0		A	
2931.10.00.00	-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0		A	
2931.20.00.00	- 트리부틸틴 화합물	0		A	
2931.31.00.00	-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0		A	
2931.32.00.00	-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0		A	
2931.33.00.00	-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0		A	
2931.34.00.00	- - 3-(트리하이드록시시릴)프로필 메틸포스포네이트 나트륨	0		A	
2931.35.00.00	- -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네인 2,4,6-트리옥사이드	0		A	
2931.36.00.00	-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0		A	
2931.37.00.00	- -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0		A	
2931.38.00.00	- - 메틸포스포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0		A	
2931.39.11.00	- - - - 글리포세이트(ISO)	0		A	
2931.39.12.00	- - - - 염	0		A	
2931.39.20.00	- - -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0		A	
2931.39.91.00	- - - - 트리클로르폰(ISO)	0		A	
2931.39.92.00	- -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포스포로아미노시아니데이트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0		A	
2931.39.93.00	- - - - 디플루오라이드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포스포닐	0		A	

2931.39.94.00	- - - - 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포스포나이트[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오-알킬의 에스테르(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0		A	
2931.39.95.00	- - - -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오-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피나콜릴	0		A	
2931.39.96.00	- - - - 그 밖의 것으로서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이 결합된 인원자를 포함하는 것(그 밖의 탄소 원자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2931.39.99.00	- - - - 기타	0		A	
2931.90.10.00	- - 2-클로로비닐디클로로아르신, 비스(2-디클로로비닐) 아르신 염소, 트리스(2-클로로페닐) 아르신	0		A	
2931.90.90.00	- - 기타	0		A	
2932.11.00.00	- - 테트라히드로푸란	0		A	
2932.12.00.00	-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랄)	0		A	
2932.13.10.00	- - - 푸르푸릴 알코올	0		A	
2932.13.20.00	- - -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0		A	
2932.14.00.00	- - 수크랄로스	0		A	
2932.19.00.00	- - 기타	0		A	
2932.20.10.00	- - 쿠마린 · 메틸쿠마린 · 에틸쿠마린	0		A	
2932.20.91.00	- - - 와르파린(ISO)(DCI)	0		A	
2932.20.99.00	- - - 기타	0		A	
2932.91.00.00	- - 이소사프롤	0		A	
2932.92.00.00	- -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0		A	
2932.93.00.00	- - 피페로날	0		A	
2932.94.00.00	- - 사프롤	0		A	
2932.95.00.00	-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0		A	
2932.99.10.00	- - - 피페로닐 부톡사이드	0		A	
2932.99.20.00	- - - 유칼립톨	0		A	
2932.99.40.00	- - - 카보퓨란(ISO)	0		A	
2932.99.90.00	- - - 기타	0		A	
2933.11.10.00	- - - 페나존(INN) (안티피린)	0		A	
2933.11.30.00	- - - 디피론(4-메틸아미노-1,5-디메틸-2-페닐-3-피라조론 메탄술폰산 나트륨)	0		A	
2933.11.90.00	- - - 기타	0		A	

2933.19.10.00	- - - 페닐부타존(INN)	0		A	
2933.19.90.00	- - - 기타	0		A	
2933.21.00.00	-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0		A	
2933.29.00.00	- - 기타	0		A	
2933.31.00.00	- - 피리딘과 그 염	0		A	
2933.32.00.00	- - 피페리딘과 그 염	0		A	
2933.33.10.00	- - - 브로마제팜(INN)	0		A	
2933.33.20.00	- - - 펜타닐(INN)	0		A	
2933.33.30.00	- - - 페치딘(INN)	0		A	
2933.33.40.00	- - - 페치딘(INN) 제 조중간체 에이: (4-시아노-1-메틸-4-페닐피페리딘 또는 1-메틸-4-페닐-4-시아노피페리딘)	0		A	
2933.33.50.00	- - - 알펜타닐(INN) · 아말레리딘(INN) · 메시트라미드(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페녹신(INN) · 디피파논(INN)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트리메페리딘(INN)	0		A	
2933.33.90.00	- - - 기타	0		A	
2933.39.11.00	- - - - 피클로람(ISO)	0		A	
2933.39.12.00	- - - - 염	0		A	
2933.39.20.00	- - - 파라콰트 디클로라이드	0		A	
2933.39.30.00	- - - 이소니코틴산 히드라지드	0		A	
2933.39.60.00	- - -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0		A	
2933.39.70.00	- - - 퀴뉴클리딘-3-올	0		A	
2933.39.90.00	- - - 기타	0		A	
2933.41.00.00	- - 레보파놀(INN)과 그 염	0		A	
2933.49.10.00	- - - 6-에톡시-1,2-디히드로-2,2,4-트리메틸퀴놀린(에톡시퀸)	0		A	
2933.49.90.00	- - - 기타	0		A	
2933.52.00.00	-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0		A	
2933.53.10.00	- - - 페노바르비탈(INN)	0		A	
2933.53.20.00	- - - 아로바르비탈(INN), 아모바르비탈(INN), 바르비탈(INN), 부탈비탈(INN)과 부토바르비탈	0		A	
2933.53.30.00	- - - 싸이클로바르비탈(INN), 메틸페노바르비탈(INN)과 펜토바르비탈(INN)	0		A	
2933.53.40.00	- - - 섹부타바르비탈(INN), 세코바르비탈(INN)과 비닐비탈(INN)	0		A	
2933.53.90.00	- - - 기타	0		A	

2933.54.00.00	- -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0		A	
2933.55.10.00	- - - 로프라졸람(INN)	0		A	
2933.55.20.00	- - - 메크로과론(INN)	0		A	
2933.55.30.00	- - - 메타과론(INN)	0		A	
2933.55.40.00	- - - 지페프롤(INN)	0		A	
2933.55.90.00	- - - 기타	0		A	
2933.59.10.00	- - - 피페라진(디에틸렌디아민)과 2,5-디메틸 피페라진(디메틸-2,5-디에틸렌디아민)	0		A	
2933.59.20.00	- - - 암프롤(INN)	0		A	
2933.59.30.00	- - - 피페라진의 그 밖의 유도체	0		A	
2933.59.40.00	- - - 티오펜탈나트륨(INN)	0		A	
2933.59.50.00	- - - 시프로플록사신(INN)과 그 염	0		A	
2933.59.60.00	- - - 히드록시진(INN)	0		A	
2933.59.90.00	- - - 기타	0		A	
2933.61.00.00	- - 멜라민	0		A	
2933.69.10.00	- - - 아트라진(ISO)	0		A	
2933.69.90.00	- - - 기타	0		A	
2933.71.00.00	- -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0		A	
2933.72.00.00	- -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0		A	
2933.79.10.00	- - - 프리미돈(INN)	0		A	
2933.79.90.00	- - - 기타	0		A	
2933.91.10.00	- - - 알프라졸람(INN)	0		A	
2933.91.20.00	- - - 디아제팜(INN)	0		A	
2933.91.30.00	- - - 로라제팜(INN)	0		A	
2933.91.40.00	- - - 트리아졸람(INN)	0		A	
2933.91.50.00	- - - 카마제팜(INN),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클로나제팜(INN), 클로라제페이트, 델로라제팜(INN), 에스타졸람(INN), 플르디아제팜(INN)과 플루니트라제팜(INN)	0		A	
2933.91.60.00	- - - 플루라제팜(INN), 할라제팜(INN),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로르메타제팜(INN), 마진돌(INN), 메다제팜(INN), 미다졸람(INN), 니메타제팜(INN)	0		A	

2933.91.70.00	- - - 니트라제팜(INN), 놀다제팜(INN), 옥사제팜(INN), 피나제팜(INN), 프라제팜(INN), 피로발레론(INN), 테마제판(INN)과 테트라제팜(INN)	0		A	
2933.91.90.00	- - - 기타	0		A	
2933.92.00.00	- - 아진포스-메틸(ISO)	0		A	
2933.99.10.00	- - - 파르벤다졸(INN)	0		A	
2933.99.20.00	- - - 알벤다졸(INN)	0		A	
2933.99.90.10	- - - - 트리아디메폰	0		A	
2933.99.90.90	- - - - 기타	0		A	
2934.10.10.00	- - 티아벤다졸(ISO)	0		A	
2934.10.90.00	- - 기타	0		A	
2934.20.00.00	-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2934.30.00.00	-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2934.91.10.00	- - -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과 텍스트로모라마이드(INN)	0		A	
2934.91.20.00	- - -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과 페몰린(INN)	0		A	
2934.91.30.00	- - -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0		A	
2934.91.90.00	- - - 기타	0		A	
2934.99.10.00	- - - 술톤과 술탐	0		A	
2934.99.20.00	- - - 6-아미노페니실란 산	0		A	
2934.99.30.00	- - - 핵산과 그들의 염	0		A	
2934.99.40.00	- - - 레바미솔(INN)	0		A	
2934.99.90.00	- - - 기타	0		A	
2935.10.00.00	-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מיד	0		A	
2935.20.00.00	-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מיד	0		A	
2935.30.00.00	-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מיד	0		A	
2935.40.00.00	-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מיד	0		A	
2935.50.00.00	-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מיד	0		A	
2935.90.10.00	- - 설피라이드(INN)	0		A	

2935.90.90.00	- - 기타	0		A	
2936.21.00.00	- - 비타민 A와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2.00.00	- - 비타민 B1과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3.00.00	- - 비타민 B2와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4.00.00	-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5.00.00	- - 비타민 B6와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6.00.00	- - 비타민 B12와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7.00.00	- - 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8.00.00	- - 비타민 E와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9.10.00	- - - 비타민 B9과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9.20.00	- - - 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9.30.00	- - - 비타민 PP와 이들의 유도체	0		A	
2936.29.90.00	- - -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0		A	
2936.90.00.00	-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0		A	
2937.11.00.00	- -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A	
2937.12.00.00	- - 인슐린과 그 염	0		A	
2937.19.10.00	- - - 옥시토신(INN)	0		A	
2937.19.90.00	- - - 기타	0		A	
2937.21.10.00	- - - 히드로코르티손	0		A	
2937.21.20.00	- - - 프레드니손(INN)(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0		A	
2937.21.90.10	- - - - 프레드니손(및 히드로코르티손)	0		A	
2937.21.90.20	- - - - 코르티손	0		A	
2937.22.10.00	- - - 베타메타손(INN)	0		A	
2937.22.20.00	- - - 덱사메타손(INN)	0		A	
2937.22.30.00	- - - 트리암시놀론(INN)	0		A	
2937.22.40.00	- - - 플루오시노나이드(INN)	0		A	
2937.22.90.00	- - - 기타	0		A	
2937.23.10.00	- - - 프로게스테론(INN)과 그 유도체	0		A	
2937.23.20.00	- - - 에스트리올(폴리콜린 하이드레이트)	0		A	
2937.23.90.00	- - - 기타	0		A	
2937.29.10.00	- - - 사이프로테론(INN)	0		A	
2937.29.20.00	- - - 피나스테라이드(INN)	0		A	
2937.29.90.00	- - - 기타	0		A	

2937.50.00.00	-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A	
2937.90.00.00	- 기타	0		A	
2938.10.00.00	-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0		A	
2938.90.20.00	- - 사포닌	0		A	
2938.90.90.00	- - 기타	0		A	
2939.11.10.00	- - - 양귀비 줄기 농축물과 그 염	0		A	
2939.11.20.00	- - - 코데인과 그 염	0		A	
2939.11.30.00	- - - 디히드로코데인(INN)과 그 염	0		A	
2939.11.40.00	- - - 헤로인과 그 염	0		A	
2939.11.50.00	- - - 모르핀과 그 염	0		A	
2939.11.60.00	- - - 버프레노핀(INN), 에틸모르핀, 에토르핀(INN), 히드로코돈(INN), 히드로모르폰(INN), 이들의 염	0		A	
2939.11.70.00	- - - 풀코딘(INN), 니코모르핀(INN), 옥시코돈 (INN), 옥시모르폰(INN), 테바콘(INN)과 테바인, 이들의 염	0		A	
2939.19.10.00	- - - 파파버린, 그 염과 유도체	0		A	
2939.19.90.00	- - - 기타	0		A	
2939.20.00.00	-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39.30.00.00	- 카페인과 그 염	0		A	
2939.41.00.00	- 에페드린과 그 염	0		A	
2939.42.00.00	-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0		A	
2939.43.00.00	- - 캐친(INN)과 그 염	0		A	
2939.44.00.00	- - 놀에페드린과 그 염	0		A	
2939.49.00.00	- - 기타	0		A	
2939.51.00.00	- -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A	
2939.59.00.00	- - 기타	0		A	
2939.61.00.00	- -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0		A	
2939.62.00.00	- - 에르고타민(INN)과 그 염	0		A	
2939.63.00.00	- - 리세르그산과 그 염	0		A	
2939.69.00.00	- - 기타	0		A	
2939.71.10.00	- - - 코카인, 그 염,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0		A	
2939.71.20.00	- - - 엑고닌, 그 염,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0		A	
2939.71.30.10	- - - - 레보메탐페타민	0		A	

2939.71.30.20	- - - - 그 염,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0		A	
2939.71.40.10	- - - - 메탐페타민(INN)	0		A	
2939.71.40.20	- - - - 염,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0		A	
2939.71.50.10	- - -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0		A	
2939.71.50.20	- - - - 염,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0		A	
2939.79.10.00	- - - 스코폴아민, 그 염과 유도체	0		A	
2939.79.90.00	- - - 기타	0		A	
2939.80.00.00	- 기타	0		A	
2940.00.0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A	
2941.10.10.00	- - 암피실린(INN)과 그 염	0		A	
2941.10.20.00	- - 아목시실린(INN)과 그 염	0		A	
2941.10.30.00	- - 옥사실린(INN), 클록사실린(INN), 디클록사실린(INN)과 그 염	0		A	
2941.10.40.00	- - 암피실린, 아목시실린과 디클록사실린의 유도체	0		A	
2941.10.90.00	- - 기타	0		A	
2941.20.00.00	-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30.10.00	- - 옥시테트라사이클린(ISO)(INN)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30.20.00	- -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30.90.00	- - 기타	0		A	
2941.40.00.00	-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50.00.00	-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90.10.00	- - 네오마이신(INN)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90.20.00	- - 액티노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90.30.00	- - 바시트라신(INN)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90.40.00	- - 그라미시딘(INN)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90.50.00	- - 티로트리신(INN)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5		A	
2941.90.60.00	- - 세파렉신(INN)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A	
2941.90.90.00	- - 기타	0		A	
2942.00.00.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0		A	
3001.20.10.00	- - 간의 것	0		A	
3001.20.20.00	- - 담즙의 것	0		A	
3001.20.90.00	- - 기타	0		A	
3001.90.10.00	- - 헤파린과 그 염	0		A	

3001.90.90.00	- - 기타	0		A	
3002.11.00.00	- -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5		E	
3002.12.11.00	- - - - 항사독제	0		A	
3002.12.12.00	- - - - 항디프테리아	0		A	
3002.12.13.00	- - - - 항파상풍제	0		A	
3002.12.19.00	- - - - 기타	5		E	
3002.12.21.00	- - - - 인간의 혈장과 그 밖의 인간의 혈액분획물	0		A	
3002.12.29.00	- - - - 기타	0		A	
3002.13.10.00	- - - 암 또는 에이즈 치료용	0		A	
3002.13.20.00	- - -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0		A	
3002.13.90.00	- - - 기타	0		A	
3002.14.10.00	- - - 암 또는 에이즈 치료용	0		A	
3002.14.20.00	- - -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0		A	
3002.14.90.00	- - - 기타	0		A	
3002.15.10.00	- - - 암 또는 에이즈 치료용	0		A	
3002.15.20.00	- - -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0		A	
3002.15.90.00	- - - 기타	0		A	
3002.19.10.00	- - - 암 또는 에이즈 치료용	0		A	
3002.19.20.00	- - -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0		A	
3002.19.90.00	- - - 기타	0		A	
3002.20.10.00	- - 소아마비 백신	0		A	
3002.20.20.00	- - 광견병 백신	0		A	
3002.20.30.00	- - 홍역 백신	0		A	
3002.20.90.00	- - 기타	0		A	
3002.30.10.00	- - 항아프타제	0		A	
3002.30.90.00	- - 기타	0		A	
3002.90.10.11	- - - - 식품, 음료 및 식초 조제용	0		A	
3002.90.10.19	- - - - 기타	0		A	
3002.90.10.21	- - - - 프로바이오틱스	0		A	
3002.90.10.22	- - - - 생물학적 환경정화용	0		A	
3002.90.10.29	- - - - 기타	0		A	
3002.90.10.30	- - - 농업용	0		A	
3002.90.10.90	- - - 기타	0		A	

3002.90.20.00	- -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0		A	
3002.90.30.00	- - 사람의 피	0		A	
3002.90.40.00	- - 색신평신(saxitoxin)	0		A	
3002.90.50.00	- - 리신(ricin)	0		A	
3002.90.90.00	- - 기타	0		A	
3003.10.00.0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5		E	
3003.20.00.00	-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5		E	
3003.31.00.00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5		E	
3003.39.00.00	- - 기타	5		E	
3003.41.00.00	-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5		E	
3003.42.00.00	-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5		E	
3003.43.00.00	-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5		E	
3003.49.00.00	- - 기타	5		E	
3003.60.00.0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3003.90.10.00	- - 인체용	0		A	
3003.90.20.00	- - 수의과용	0		A	
3004.10.10.00	- - 인체용	5		E	
3004.10.20.00	- - 수의과용	0		A	
3004.20.11.00	- -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	5		E	
3004.20.19.00	- - - 기타	5		E	
3004.20.20.00	- - 수의과용	5		E	
3004.31.00.00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0		A	
3004.32.11.00	- - -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	5		E	
3004.32.19.00	- - - - 기타	5		E	
3004.32.20.00	- - - 수의과용	0		A	
3004.39.11.00	- - -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	5		E	
3004.39.19.00	- - - - 기타	5		E	
3004.39.20.00	- - - 수의과용	0		A	
3004.41.10.00	- - - 인체용	5		E	
3004.41.20.00	- - - 수의과용	0		A	
3004.42.10.00	- - - 인체용	5		E	

3004.42.20.00	- - - 수의과용	5		E	
3004.43.10.00	- - - 인체용	5		E	
3004.43.20.00	- - - 수의과용	5		E	
3004.49.10.00	- - - 인체용	5		E	
3004.49.20.00	- - - 수의과용	0		A	
3004.50.10.00	- - 인체용	5		E	
3004.50.20.00	- - 수의과용	0		A	
3004.60.00.0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향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A	
3004.90.10.00	- - 인간 혈장용 합성 대용물	5		E	
3004.90.21.00	- - - 마취제	5		A	
3004.90.22.00	- - - 니트로글리세린이 침투된 패치	10		E	
3004.90.23.00	- - - 비경구적 영양법용	5		E	
3004.90.24.00	- - - 종양학 또는 에이즈 치료용	5		A	
3004.90.29.00	- - - 기타	5		A	
3004.90.30.00	- - 그 밖의 수의과용 의약품	5		A	
3005.10.10.00	- - 접착 테이프와 작은 크기의 붕대	10		E	
3005.10.90.00	- - 기타	10		E	
3005.90.10.00	- - 탈지면	15		G	
3005.90.20.00	- - 붕대	15		E	
3005.90.31.00	- - - 석고와 그 밖의 물질이 침투된 골절 치료용으로 적합한 것	15		E	
3005.90.39.00	- - - 기타	15		E	
3005.90.90.00	- - 기타	15		G	
3006.10.10.00	- -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0		A	
3006.10.20.00	- -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15		E	
3006.10.90.00	- - 기타	0		A	
3006.20.00.00	- 혈액형 분류용 시약	0		A	
3006.30.10.00	- - 바륨 황산염을 함유한 조영제	0		A	
3006.30.20.00	- - 그 밖의 조영제	0		A	
3006.30.30.00	- - 진단용 시약	0		A	
3006.40.10.00	- -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0		A	
3006.40.20.00	- - 뼈 형성용 시멘트	0		A	

3006.50.00.00	- 구급상자와 구급대	15		E	
3006.60.00.00	- 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10		E	
3006.70.00.00	-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5		E	
3006.91.00.00	- -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15		E	
3006.92.00.00	- - 폐(廢)의료용품	15		E	
3101.00.10.00	- 해조(海鳥)구아노	0		A	
3101.00.90.00	- 기타	0		A	
3102.10.10.00	- - 질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5 초과 100분의 46 이하인 것(비료 품질)	0		A	
3102.10.90.00	- - 기타	0		A	
3102.21.00.00	- - 황산암모늄	0		A	
3102.29.00.00	- - 기타	0		A	
3102.30.00.00	-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3102.40.00.00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3102.50.00.00	- 질산나트륨	0		A	
3102.60.00.00	- 질산칼슘 ·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0		A	
3102.80.00.00	- 요소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3102.90.10.00	- -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혼합물	0		A	
3102.90.90.00	- - 기타	0		A	
3103.11.00.00	- -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0		A	
3103.19.00.00	- - 기타	0		A	
3103.90.00.10	- - 탈인산화 박	0		A	
3103.90.00.90	- - 기타	0		A	
3104.20.20.00	- - 산화칼륨의 칼륨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8 초과 100분의 63.1 이하인 것	0		A	
3104.20.90.00	- - 기타	0		A	

3104.30.00.00	- 황산칼륨	0		A	
3104.90.10.00	- - 마그네슘과 황산칼륨	0		A	
3104.90.90.00	- - 기타	0		A	
3105.10.00.00	-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0		A	
3105.20.00.00	- 질소 · 인 ·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0		A	
3105.30.00.0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0		A	
3105.40.00.0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0		A	
3105.51.00.00	-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0		A	
3105.59.00.00	- - 기타	0		A	
3105.60.00.00	-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0		A	
3105.90.10.00	- - 질산칼륨나트륨(질산칼륨)	0		A	
3105.90.20.00	- - 2종의 비료물질(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또는 화학 비료	0		A	
3105.90.90.00	- - 기타	0		A	
3201.10.00.00	-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0		A	
3201.20.00.00	- 왓틀 추출물[아카시아(acacia)]	0		A	
3201.90.20.00	- - 퀘브라쵸 유연제	0		A	
3201.90.30.00	- - 참나무 또는 밤나무 추출물	0		A	
3201.90.90.00	- - 기타	0		A	
3202.10.00.00	- 합성 유기유연제	0		A	
3202.90.10.00	- -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0		A	

3202.90.90.00	- - 기타	0		A	
3203.00.11.00	- - 로그우드(logwood)의 것	0		A	
3203.00.12.00	- - 염록소	0		A	
3203.00.13.00	- - 천연 인디고(indigo)	0		A	
3203.00.14.00	- - 안나토(annatto)의 것[아치오테(achiote), 루쿠(roucou)]	10		C	
3203.00.15.00	- - 마리골드(크산토피)의 것	0		A	
3203.00.16.00	- - 보라 옥수수(안토시아닌)의 것	10		A	
3203.00.17.00	- - 강황(커큐민)의 것	10		A	
3203.00.19.00	- - 기타	10		A	
3203.00.21.00	- - 코치니엘의 것	10		A	
3203.00.29.00	- - 기타	0		A	
3204.11.00.00	- -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A	
3204.12.00.00	- -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A	
3204.13.00.00	- -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A	
3204.14.00.00	- -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A	
3204.15.10.00	- - - 합성 인디고	0		A	
3204.15.90.00	- - - 기타	0		A	
3204.16.00.00	- -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A	
3204.17.00.00	- -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A	
3204.19.10.00	- - - 합성 카로티노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A	
3204.19.90.00	- - - 기타	0		A	
3204.20.00.00	-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	0		A	
3204.90.00.00	- 기타	0		A	
3205.00.00.10	- 착색 래커(lacquers)	0		A	
3205.00.00.90	- 기타	0		A	
3206.11.00.00	- -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0		A	
3206.19.00.00	- - 기타	0		A	
3206.20.00.00	-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0		A	
3206.41.00.00	- - 군청(群靑)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A	
3206.42.00.00	- -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도폰(lithopone) · 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0		A	
3206.49.10.00	- - - 플라스틱, 고무 또는 그 밖의 매체로 된 그 밖의 안료의 농축 분산물	0		A	

3206.49.20.00	- - -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0		A	
3206.49.30.00	- - - 옥시아노철산염(페로시아화물과 페리시아나이드)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조제품	0		A	
3206.49.91.00	- - - - 광물성 블랙	0		A	
3206.49.99.00	- - - - 기타	0		A	
3206.50.00.00	-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0		A	
3207.10.00.00	-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A	
3207.20.10.00	- - 법랑과 유약	0		A	
3207.20.90.00	- - 기타	0		A	
3207.30.00.00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A	
3207.40.10.00	- - 유리 프리트(frit)	0		A	
3207.40.90.00	- - 기타	0		A	
3208.10.00.00	-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A	
3208.20.00.00	-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A	
3208.90.00.00	- 기타	0		A	
3209.10.00.00	-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A	
3209.90.00.00	- 기타	0		A	
3210.00.10.00	- 부식과 결정을 막는 해양 코팅	0		A	
3210.00.20.00	- 가죽의 완성이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5		A	
3210.00.90.00	- 기타	0		A	
3211.00.00.00	조제 드라이어	0		A	
3212.10.00.00	- 스탬프용 박(箔)	0		A	
3212.90.10.00	- -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 · 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액상 또는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페인트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3212.90.20.00	- - 소매용으로 포장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재	15		A	
3213.10.10.00	- - 수성페인트(프리믹스, 수성물감)	15		D	
3213.10.90.00	- - 기타	15		D	
3213.90.00.00	- 기타	15		B	
3214.10.10.00	- - 퍼티(putty), 수지시멘트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s)	0		A	
3214.10.20.00	- - 도장용 충전제	5		D	
3214.90.00.00	- 기타	0		A	
3215.11.00.00	- - 흑색	0		A	
3215.19.00.10	- - - 무용제의 플렉소그래픽(Flexographic) 잉크	0		A	

3215.19.00.90	- - - 기타	0		A	
3215.90.10.00	- - 헥토그래프(hectographs)와 스텐실(stencil) 등사기	0		A	
3215.90.20.00	- - 볼펜용의 것	0		A	
3215.90.90.00	- - 기타	0		A	
3301.12.00.00	- - 오렌지유	0		A	
3301.13.00.00	- - 레몬유	0		A	
3301.19.10.00	- - - 라임의 것	0		A	
3301.19.90.00	- - - 기타	0		A	
3301.24.00.00	- -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0		A	
3301.25.00.00	- -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0		A	
3301.29.10.00	- - - 아니스의 것	0		A	
3301.29.20.00	- - - 유칼립투스의 것	0		A	
3301.29.30.00	- - - 라벤더 또는 라반딘의 것	0		A	
3301.29.90.10	- - - - 제라늄의 것	0		A	
3301.29.90.20	- - - - 재스민의 것	0		A	
3301.29.90.30	- - - - 감송의 것	0		A	
3301.29.90.90	- - - - 기타	5		C	
3301.30.00.00	- 레지노이드(resinoid)	0		A	
3301.90.10.00	- -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0		A	
3301.90.20.00	- -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0		A	
3301.90.90.00	- - 기타	0		A	
3302.10.10.00	- -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	0		A	
3302.10.90.00	- - 기타	0		A	
3302.90.00.10	- -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	0		A	
3302.90.00.20	- - 알코올 용액을 포함하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0		A	
3302.90.00.90	- - 기타	0		A	
3303.00.00.00	향수와 화장수	20		E	
3304.10.00.00	- 입술화장용 제품류	20		E	
3304.20.00.00	- 눈화장용 제품류	20		E	
3304.30.00.00	- 매니큐어용 제품류 또는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20		E	
3304.91.00.00	- -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E	
3304.99.00.10	- - - 미용 제품(히알루론산을 함유한 생체 주입용 젤로 제시된 것)	20		A	
3304.99.00.90	- - - 기타	20		D	

3305.10.00.00	- 샴푸	20		E	
3305.20.00.00	-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20		E	
3305.30.00.00	- 헤어 래커(hair lacquer)	20		E	
3305.90.00.00	- 기타	20		E	
3306.10.00.00	- 치약	20		E	
3306.20.00.00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25		E	
3306.90.00.00	- 기타	20		E	
3307.10.00.00	- 면도용 제품류	20		E	
3307.20.00.00	-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20		E	
3307.30.00.00	-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20		E	
3307.41.00.00	- -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20		E	
3307.49.00.00	- - 기타	20		E	
3307.90.10.00	- - 콘택트렌즈 또는 의안용 제품	20		E	
3307.90.90.00	- - 기타	20		E	
3401.11.00.00	- -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20		E	
3401.19.10.00	- - - 막대(bar) 모양, 케이크 모양, 주형 모양으로 된 것	20		E	
3401.19.90.00	- - - 기타	20		E	
3401.20.00.00	- 그 밖의 모양의 비누	20		E	
3401.30.00.00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		E	
3402.11.10.10	- - - - 라우릴에테르황산나트륨	0		A	
3402.11.10.90	- - - - 기타	15		B	
3402.11.90.00	- - - 기타	0		A	
3402.12.10.00	- - - 지방성 아민염	20		E	
3402.12.90.00	- - - 기타	0		A	
3402.13.10.00	- - - 산화에틸렌과 11개 이상의 탄소 선형 알코올의 혼합물을 농축해서 얻은 것	0		A	
3402.13.90.00	- - - 기타(비이온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3402.19.10.00	- - - 알킬베타인 또는 술포베타인 단백질	0		A	
3402.19.90.00	- - - 기타	0		A	
3402.20.00.00	- 소매용으로 포장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된 제조품	20		E	
3402.90.10.00	- - 섬유 공업용 세제	10		C	

3402.90.91.00	- - - 노닐 옥시벤존 술폰산 나트륨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계면활성제	0		A	
3402.90.99.00	- - - 기타	15		E	
3403.11.00.00	- -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0		A	
3403.19.00.00	- - 기타	0		A	
3403.91.00.00	- -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0		A	
3403.99.00.00	- - 기타	0		A	
3404.20.00.00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0		A	
3404.90.30.00	- -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0		A	
3404.90.40.10	- - - 인조의 것	0		A	
3404.90.40.20	- - - 조제된 것	0		A	
3404.90.90.10	- - - 인조의 것	0		A	
3404.90.90.20	- - - 조제된 것	0		A	
3405.10.00.00	-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20		E	
3405.20.00.00	- 목제가구 · 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15		E	
3405.30.00.00	- 차체(coachwork)용 광택제(러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15		E	
3405.40.00.00	-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 · 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15		E	
3405.90.00.00	- 기타	15		E	
3406.00.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20		C	
3407.00.10.00	- 조형용 페이스트(paste)	20		E	
3407.00.20.00	-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15		C	
3407.00.90.00	- 그 밖의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0		A	
3501.10.00.00	- 카세인(casein)	0		A	
3501.90.10.00	- - 카세인 글루(casein glue)	0		A	
3501.90.90.00	- - 기타	0		A	
3502.11.00.00	- - 건조한 것	0		A	
3502.19.00.00	- - 기타	0		A	
3502.20.00.0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0		A	
3502.90.10.00	- - 알부민	0		A	

3502.90.90.00	- -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0		A	
3503.00.10.00	- 젤라틴과 그 유도체	0		A	
3503.00.20.00	-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	0		A	
3504.00.10.00	-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0		A	
3504.00.90.00	- 기타	0		A	
3505.10.00.00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0		A	
3505.20.00.00	- 글루(glue)	15		C	
3506.10.00.00	-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각종 물품(소매용으로 포장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3506.91.00.10	- -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0		A	
3506.91.00.20	- - -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0		A	
3506.99.00.10	- - - 열가소성	0		A	
3506.99.00.90	- - - 기타	0		A	
3507.10.00.00	-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0		A	
3507.90.13.00	- - - 치즈효소	0		A	
3507.90.19.00	- - - 기타	0		A	
3507.90.30.00	- - 파파인	0		A	
3507.90.40.00	- - 그 밖의 효소와 그 농축물	0		A	
3507.90.50.00	- - 고기 연화용 효소 조제품	0		A	
3507.90.60.00	- - 음료 정제용 효소 조제품	0		A	
3507.90.90.00	- - 기타	0		A	
3601.00.00.00	화약	10		A	
3602.00.11.00	- - 다이너마이트	10		A	
3602.00.19.00	- - 기타	10		A	
3602.00.20.00	- 질산암모늄을 기본 재료로 한 것	10		A	
3602.00.90.00	- 기타	0		A	
3603.00.10.00	- 도화선	10		A	
3603.00.20.00	- 도폭선	10		A	
3603.00.30.00	- 격발뇌관(percussion cap)	10		A	
3603.00.40.00	- 뇌관(detonating cap)	10		A	
3603.00.50.00	- 점화기	10		A	
3603.00.60.00	- 전기뇌관	10		A	
3604.10.00.00	- 불꽃제품	10		C	

3604.90.00.00	- 기타	0		A	
3605.00.00.00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20		C	
3606.10.00.00	-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나 액화가스연료	15		A	
3606.90.00.00	- 기타	0		A	
3701.10.00.00	- 엑스선용	0		A	
3701.20.00.0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		A	
3701.30.10.00	- - - 인쇄제판용 금속 플레이트	0		A	
3701.30.90.00	- - 기타	0		A	
3701.91.00.00	-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0		A	
3701.99.00.00	- - 기타	0		A	
3702.10.00.00	- 엑스선용	0		A	
3702.31.00.00	-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10		E	
3702.32.00.00	- -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E	
3702.39.00.00	- - 기타	10		A	
3702.41.00.00	-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10		A	
3702.42.00.00	-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은 제외한다)	10		A	
3702.43.00.00	-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 이하인 것	0		A	
3702.44.00.00	- - 폭이 10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C	
3702.52.00.00	- -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A	
3702.53.00.00	-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10		A	
3702.54.00.00	-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10		A	
3702.55.00.00	- - 폭이 16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A	
3702.56.00.00	-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A	
3702.96.00.00	- -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	10		A	
3702.97.00.00	- -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A	

3702.98.00.00	-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A	
3703.10.00.00	- 롤 모양(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3703.20.00.00	-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0		A	
3703.90.00.00	- 기타	0		A	
3704.00.00.00	사진플레이트 · 필름 · 인화지 · 판지 · 직물(노광한 것으로 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3705.00.00.10	- 오프셋 복사용	0		A	
3705.00.00.90	- 기타	5		B	
3706.10.00.00	-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C	
3706.90.00.00	- 기타	10		C	
3707.10.00.00	- 감광유제	0		A	
3707.90.00.00	- 기타	0		A	
3801.10.00.00	- 인조흑연	0		A	
3801.20.00.00	-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0		A	
3801.30.00.0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 사한 페이스트(paste)	0		A	
3801.90.00.00	- 기타	0		A	
3802.10.00.00	- 활성탄	0		A	
3802.90.10.00	- - 활성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 (tripolite) ·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	0		A	
3802.90.20.00	- - 수탄(폐수탄을 포함한다)	0		A	
3802.90.90.00	- - 기타	0		A	
3803.00.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3804.00.10.00	- 아황산 리그닌	0		A	
3804.00.90.00	- 기타	0		A	
3805.10.00.00	-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 황산테레빈유	0		A	
3805.90.10.00	- - 파인유	0		A	
3805.90.90.00	- - 기타	0		A	
3806.10.00.00	- 로진(rosin)과 수지산	0		A	
3806.20.00.00	- 로진염, 수지산염, 또는 로진(rosin) · 수지산 유도체의 염 [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0		A	
3806.30.00.00	- 에스테르 검(ester gum)	0		A	
3806.90.30.00	- - 로진 스프릿과 로진유	0		A	
3806.90.40.00	- - 런검	0		A	
3806.90.90.00	- - 기타	0		A	

3807.00.00.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3808.52.00.00	- -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3808.59.00.11	- - - -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엔도선판을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	0		A	
3808.59.00.12	- - - -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엔도선판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	
3808.59.00.19	- - - - 기타	5		E	
3808.59.00.21	- - - -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5		A	
3808.59.00.29	- - - - 기타	0		A	
3808.59.00.31	- - - -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5		A	
3808.59.00.32	- - - - 알라클로르를 함유하는 것	0		A	
3808.59.00.39	- - - - 기타	0		A	
3808.59.00.90	- - - 기타	0		A	
3808.61.00.10	- - - 퍼메트린 또는 사이퍼메트린 또는 그 밖의 합성 대용물을 함유하는 것	0		A	
3808.61.00.90	- - - 기타	0		A	
3808.62.00.10	- - - 퍼메트린 또는 사이퍼메트린 또는 피레트룸의 기타 합성 대용물을 함유한 것	0		A	
3808.62.00.90	- - - 기타	0		A	
3808.69.00.10	- - - 퍼메트린 또는 사이퍼메트린 또는 피레트룸의 기타 합성 대용물을 함유한 것	0		A	
3808.69.00.90	- - - 기타	0		A	
3808.91.12.00	-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A	
3808.91.14.00	- - - - 퍼메트린 또는 사이퍼메트린 또는 피레트룸(피레드로이드)용 그 밖의 합성 대용물을 함유한 것(다만, 이 류의 소호 주 제2호에 언급된 것은 제외한다)	0		A	
3808.91.15.00	- - - - 미렉스 또는 엔드린을 함유하는 것	0		A	
3808.91.19.00	- - - - 기타	0		A	
3808.91.91.00	- - - - 피레트룸을 함유하는 것	0		A	
3808.91.93.00	- - - - 카보퓨란을 함유하는 것(다만, 이 류 소호 주 제1호에 언급된 혼합물은 제외한다)	0		A	

3808.91.94.00	- - - - 디메토에이트를 함유하는 것	0		A	
3808.91.95.00	-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A	
3808.91.97.00	- - - - 퍼메트린 또는 사이퍼메트린 또는 피레트룸(피레드 로이드)용의 그 밖의 합성 대용물을 함유한 것(다만, 이 류의 소호 주 제2호에 언급된 것은 제외한다)	0		A	
3808.91.98.00	- - - - 미렉스 또는 엔드린을 함유하는 것	5		A	
3808.91.99.00	- - - - 기타	0		A	
3808.92.11.00	-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10		A	
3808.92.12.00	- - - - 만코제브, 마네브, 프로피네브 또는 지네브를 함유하는 것	5		A	
3808.92.19.00	- - - - 기타	0		A	
3808.92.91.00	- - - - 구리화합물을 함유하는 것	0		A	
3808.92.92.00	- - - - 기타	0		A	
3808.92.93.00	-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A	
3808.92.94.00	- - - - 피라조포스를 함유하는 것	0		A	
3808.92.99.00	- - - - 기타	0		A	
3808.93.11.00	-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A	
3808.93.19.00	- - - - 기타	0		A	
3808.93.91.00	-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A	
3808.93.93.00	- - - - 부타클로르를 함유하는 것	0		A	
3808.93.99.00	- - - - 기타	0		A	
3808.94.11.00	-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A	
3808.94.19.00	- - - - 기타	0		A	
3808.94.91.00	-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A	
3808.94.99.00	- - - - 기타	0		A	
3808.99.11.00	-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A	
3808.99.19.00	- - - - 기타	0		A	

3808.99.91.00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A	
3808.99.99.00	- - - 기타	0		A	
3809.10.00.00	-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A	
3809.91.00.00	- -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0		A	
3809.92.00.00	- -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0		A	
3809.93.00.00	- -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0		A	
3810.10.10.00	-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0		A	
3810.10.20.00	- - 납불임, 땀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주석, 납 또는 안티모니 합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3810.10.90.00	- - 기타	0		A	
3810.90.10.00	- - 납불임 · 땀질이나 용접용의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0		A	
3810.90.20.00	- -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되는 종류의 조제품	0		A	
3811.11.00.00	- -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A	
3811.19.00.00	- - 기타	0		A	
3811.21.10.00	- - - 점도향상제(그 밖의 첨가제와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3811.21.20.00	- - - 세제 및 분산제(그 밖의 첨가제와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점도향상제는 제외한다)	0		A	
3811.21.90.00	- - - 기타	0		A	
3811.29.00.00	- - 기타	0		A	
3811.90.00.00	- 기타	0		A	
3812.10.00.00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0		A	
3812.20.00.00	-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10		D	
3812.31.00.00	- -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0		A	
3812.39.10.00	- - - 산화방지 조제품	0		A	
3812.39.90.00	- - - 기타	0		A	
3813.00.12.00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및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0		A	
3813.00.13.00	- -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HBFCs)의 수소브로모플루오르 카본을 함유한 것	0		A	

3813.00.14.00	- -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	0		A	
3813.00.15.00	- -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A	
3813.00.19.00	- - 기타	0		A	
3813.00.20.00	- 장전된 소화탄	0		A	
3814.00.10.00	-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다]	10		A	
3814.00.20.00	-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A	
3814.00.30.00	- 사염화탄소 · 브로모클로로메탄 또는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10		A	
3814.00.90.00	- 기타	7.5		A	
3815.11.00.00	- -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0		A	
3815.12.00.00	-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0		A	
3815.19.10.00	- - - 활성물질로서 티타늄 또는 티타늄 화합물의 것	0		A	
3815.19.90.00	- - - 기타	0		A	
3815.90.00.00	- 기타	0		A	
3816.00.00.00	내화시멘트 · 내화모르타르 · 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A	
3817.00.10.00	- 도데실벤젠	0		A	
3817.00.20.00	- 혼합 알킬아나프탈렌	0		A	
3817.00.90.10	- - 트리데실벤젠	0		A	
3817.00.90.90	- - 기타	0		A	
3818.00.0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 · 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0		A	
3819.00.00.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3820.00.0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5		C	
3821.00.00.10	- 미생물(바이러스 및 이와 유사한 유기체를 포함한다)의 개발 또는 유지를 위한 것	0		A	
3821.00.00.20	- 식물,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를 개발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	0		A	
3822.00.30.00	- 보증된 참조물질	0		A	
3822.00.90.00	- 기타	0		A	
3823.11.00.00	- - 스테아린산	0		A	
3823.12.00.00	- - 올레인산	15		C	
3823.13.00.00	- - 톨유(tall oil) 지방산	15		C	
3823.19.00.00	- - 기타	15		C	
3823.70.10.00	- - 라우릴 알코올	15		C	
3823.70.20.00	- - 세틸 알코올	0		A	
3823.70.30.00	- - 스테아릴 알코올	0		A	
3823.70.90.10	- - - 세틸스테아릴알코올	0		A	
3823.70.90.20	- - - 세틸스테릴알코올황산나트륨	0		A	
3823.70.90.90	- - - 기타	15		C	
3824.10.00.00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5		E	
3824.30.00.00	-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3824.40.00.00	- 시멘트용 · 모르타르용 ·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7.5		E	
3824.50.00.00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10		B	
3824.60.00.00	-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0		A	
3824.71.00.10	- - - 과불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0		A	
3824.71.00.90	- - - 기타	0		A	
3824.72.00.00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0		A	
3824.73.00.00	- -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0		A	
3824.74.00.00	-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3824.75.00.00	-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0		A	
3824.76.00.00	- -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0		A	
3824.77.00.00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A	

3824.78.00.00	- -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0		A	
3824.79.00.10	- - - 플루오르와 염소로만 퍼할로겐화된 비환식탄화수소를 함유한 것	0		A	
3824.79.00.20	- - - 그 밖의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3824.79.00.90	- - - 기타	0		A	
3824.81.00.00	- -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0		A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0		A	
3824.83.00.00	-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0		A	
3824.84.00.00	- - 엘드린(ISO), 캄페클로(ISO)(독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0		A	
3824.85.00.00	-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0		A	
3824.86.00.00	- -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0		A	
3824.87.00.00	- -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폰일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0		A	
3824.88.00.00	- -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0		A	
3824.91.00.00	-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0		A	
3824.99.10.00	- - - 석유 술폰네이트	0		A	
3824.99.21.00	- - - - 클로로파라핀	0		A	
3824.99.22.00	- - - - 저분자량 혼합폴리에틸렌글리콜	0		A	
3824.99.31.00	- - - - 스케일방지 조제품	0		A	
3824.99.32.00	- - - - 와인 정제용 조제품, 액체 정제용 조제품	0		A	
3824.99.40.00	- - - 가용성 세라믹 소성 시험기, 소다 석회, 수화실리카겔, 젤라틴을 기본 재료로 한 카핑 페이스트(copying paste)	0		A	

3824.99.50.00	- - - 나프텐산과 이들의 수불용성염과 이들의 에스테르	5		A	
3824.99.60.00	- - - 유정 천공 액체용의 조제품	10		A	
3824.99.70.00	- - - 미네랄 농축용 조제품(크산틴산염을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	0		A	
3824.99.80.00	- - - 동화촉진제, 황산나트륨과 크롬산나트륨의 혼합물	0		A	
3824.99.91.00	- - - - 마네브, 지네브, 만코제브	0		A	
3824.99.92.00	- - - - 점착성이 있는 페라이트(분상 또는 입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3824.99.93.00	- - - - 이온교환체	0		A	
3824.99.94.10	- - - - - 에폭시화 오일	0		A	
3824.99.94.90	- - - - - 기타	0		A	
3824.99.95.00	- - - - 오산화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4 이하인 분리하지 않은 인산(농축했는지에 상관없다)	0		A	
3824.99.96.00	-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수정액	5		A	
3824.99.97.00	- - - - 프로피네브	0		A	
3824.99.98.00	- - - - 축전지판 제조용의 산화납(grey oxide) 또는 흑색 산화물(black oxide)의 조제품	0		A	
3824.99.99.11	- - - - - 주로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노플루오라이드 O-알킬(탄소수가 10개 미만으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로 구성된 혼합물	0		A	
3824.99.99.12	- - - - - 주로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로아미도시아니다토스 O-알킬(탄소수가 10개 미만으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로 구성된 혼합물	0		A	
3824.99.99.13	- - - - - 주로 알킬 디플루오라이드(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닐로 구성된 혼합물	0		A	
3824.99.99.14	- - - - - 본질적으로 N, 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르아마이드로 구성된 혼합물	0		A	
3824.99.99.15	- - - - - 주로 N, 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포르아미데이트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로 구성된 혼합물	0		A	

3824.99.99.20	- - - - 주로 수소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폰산염[S-2-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에스테르 및 오-알킬로 구성된 혼합물(탄소수가 10개 미만으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 본질적으로 알킬화 또는 양성자화 염으로 구성된 혼합물	0		A	
3824.99.99.30	- - - - 주로 수소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포스폰산염[S-2-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에스테르 및 오-알킬로 구성된 혼합물(탄소수가 10개 미만으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 본질적으로 알킬화 또는 양성자화 염으로 구성된 혼합물	0		A	
3824.99.99.41	- - - - - 주로 아민 N, 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2-클로로에틸 또는 이들의 양성자화된 염으로 구성된 혼합물	0		A	
3824.99.99.42	- - - - - 주로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티올 또는 이들의 양성자화된 염으로 구성된 혼합물	0		A	
3824.99.99.51	- - - - - 주로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이들의 양성자화된 염으로 구성된 혼합물	0		A	
3824.99.99.59	- - - - - 기타	0		A	
3824.99.99.60	- - - - 하나의 인(磷) 원자가 하나의 노르말-프로필, 메틸, 에틸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화합품으로 본질적으로 구성된 그 밖의 혼합물	0		A	
3824.99.99.71	- - - - - 플루오린과 클로린만으로 퍼할로겐화된 비환식 탄화수소를 가지는 것	0		A	
3824.99.99.79	- - - - - 기타	0		A	
3824.99.99.91	- - - - - 퓨젤, 디펠유	10		A	
3824.99.99.99	- - - - - 기타	0		A	
3825.10.00.00	- 생활폐기물	10		A	
3825.20.00.00	- 하수 찌꺼기	10		A	
3825.30.00.00	- 감염성 폐기물	10		A	
3825.41.00.00	- -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10		A	
3825.49.00.00	- - 기타	10		A	

3825.50.00.00	-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10		A	
3825.61.00.00	-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10		A	
3825.69.00.10	- - - 암모니아성 가스액과 폐산화철	10		A	
3825.69.00.90	- - - 기타	10		A	
3825.90.00.00	- 기타	10		A	
3826.00.00.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70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3901.10.0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0		A	
3901.20.0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0		A	
3901.30.00.0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0		A	
3901.40.00.00	-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0		A	
3901.90.10.00	- - 그 밖의 올레핀과 에틸렌의 공중합체	0		A	
3901.90.90.00	- - 기타	0		A	
3902.10.00.00	- 폴리프로필렌	0		A	
3902.20.00.00	- 폴리이소부틸렌	0		A	
3902.30.00.00	- 프로필렌 공중합체	0		A	
3902.90.00.00	- 기타	0		A	
3903.11.00.00	- - 발포성의 것	0		A	
3903.19.00.00	- - 기타	0		A	
3903.20.00.00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0		A	
3903.30.00.0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0		A	
3903.90.00.00	- 기타	0		A	
3904.10.10.00	- - 에멀션(emulsion) 중합반응으로 얻어진 것	0		A	
3904.10.20.00	- - 서스펜션(suspension) 중합반응으로 얻어진 것	0		A	
3904.10.90.00	- - 기타	0		A	
3904.21.00.00	- - 가소화하지 않은 것	0		A	
3904.22.00.00	- - 가소화한 것	0		A	
3904.30.10.00	- - 어떠한 다른 물질과도 혼합되지 않은 것	0		A	
3904.30.90.00	- - 기타	0		A	
3904.40.00.00	-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0		A	
3904.50.00.00	- 염화비닐리텐 중합체	0		A	
3904.61.00.00	-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0		A	
3904.69.00.00	- - 기타	0		A	
3904.90.00.00	- 기타	0		A	

3905.12.00.00	- - 물에 분산된 것	0		A	
3905.19.00.00	- - 기타	0		A	
3905.21.00.00	- - 물에 분산된 것	0		A	
3905.29.00.00	- - 기타	0		A	
3905.30.00.00	-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A	
3905.91.00.00	- - 공중합체(共重合體)	0		A	
3905.99.10.00	- - - 폴리(비닐 부티랄)	0		A	
3905.99.20.00	- - - 폴리비닐피롤리돈	0		A	
3905.99.90.00	- - - 기타	0		A	
3906.10.00.00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0		A	
3906.90.10.00	- - 폴리아크릴로니트릴	0		A	
3906.90.21.00	- - - 폴리아크릴산 나트륨(100분의 1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흡수력이 자체 중량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3906.90.29.00	- - - 기타	0		A	
3906.90.90.10	- - - 촉진제	0		A	
3906.90.90.90	- - - 기타	0		A	
3907.10.00.00	- 폴리아세탈수지	0		A	
3907.20.10.00	- - 폴리에틸렌글리콜	0		A	
3907.20.20.00	- - 폴리프로필렌글리콜	0		A	
3907.20.30.10	- - - 폴리프로필렌글리콜	0		A	
3907.20.30.90	- - - 기타	0		A	
3907.20.90.00	- - 기타	0		A	
3907.30.10.00	- - 액체 상태인 것	0		A	
3907.30.90.00	- - 기타	0		A	
3907.40.00.00	- 폴리카보네이트	0		A	
3907.50.00.00	- 알키드수지	0		A	
3907.61.10.00	- - - 이산화티타늄의 것	0		A	
3907.61.90.10	- - - - 재생플레이크	0		A	
3907.61.90.20	- - - - 재생펠리트	0		A	
3907.61.90.90	- - - - 기타	0		A	
3907.69.10.00	- - - 이산화티타늄의 것	0		A	
3907.69.90.10	- - - - 재생플레이크	0		A	
3907.69.90.20	- - - - 재생펠리트	0		A	
3907.69.90.90	- - - - 기타	0		A	
3907.70.00.00	- 폴리(락트산)	0		A	

3907.91.00.00	- - 불포화의 것	0		A	
3907.99.00.00	- - 기타	0		A	
3908.10.10.00	- - 폴리아미드 -6 (폴리카프로락탐)	0		A	
3908.10.90.00	- - 기타	0		A	
3908.90.00.00	- 기타	0		A	
3909.10.10.00	- - 우레아 포름알데히드 몰딩 분말	0		A	
3909.10.90.00	- - 기타	0		A	
3909.20.10.00	- - 멜라민 포름알데히드	0		A	
3909.20.90.00	- - 기타	0		A	
3909.31.00.00	- -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0		A	
3909.39.00.00	- - 기타	0		A	
3909.40.00.00	- 페놀수지	0		A	
3909.50.00.00	- 폴리우레탄	0		A	
3910.00.10.00	- 분산액[에멀전(emulsion) 또는 서스펜션(suspension)] 또는 용액	0		A	
3910.00.90.00	- 기타	0		A	
3911.10.10.00	- - 쿠마론-인덴수지	0		A	
3911.10.90.00	- - 기타	0		A	
3911.90.00.00	- 기타	0		A	
3912.11.00.00	- - 가소화하지 않은 것	0		A	
3912.12.00.00	- - 가소화한 것	0		A	
3912.20.10.00	- - 콜로디온 및 그 밖의 용액과 분산액[에멀전(emulsion) 또는 서스펜션(suspension)]	0		A	
3912.20.90.00	- - 기타	0		A	
3912.31.00.00	-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0		A	
3912.39.00.00	- - 기타	0		A	
3912.90.00.00	- 기타	0		A	
3913.10.00.00	- 알긴산과 그 염·에스테르	0		A	
3913.90.10.00	- - 염화고무	0		A	
3913.90.30.00	- - 천연고무의 그 밖의 화학적 유도체	0		A	
3913.90.40.00	- - 그 밖의 변성된 천연중합체	0		A	
3913.90.90.00	- - 기타	0		A	
3914.00.00.00	이온교환체[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0		A	

3915.10.00.0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A	
3915.20.00.0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A	
3915.30.00.0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15		A	
3915.90.00.10	- - 폴리병(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15		E	
3915.90.00.90	- - 기타	15		E	
3916.10.00.0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A	
3916.20.00.0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A	
3916.90.00.0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A	
3917.10.00.00	-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0		A	
3917.21.10.00	- -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 · 스프레이 및 이와 유사한 것	0		A	
3917.21.90.00	- - - 기타	0		A	
3917.22.00.00	-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15		E	
3917.23.10.00	- -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 · 스프레이 및 이와 유사한 것	0		A	
3917.23.90.00	- - - 기타	15		E	
3917.29.10.00	-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0		A	
3917.29.91.00	- - -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 · 스프레이 및 이와 유사한 것	0		A	
3917.29.99.00	- - - - 기타	0		A	
3917.31.00.00	- - 연질(軟質)의 관 · 파이프 ·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15		E	
3917.32.10.00	- - - 인조거트(소호 제3917.10호의 것은 제외한다)	15		E	
3917.32.91.00	- - -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 · 스프레이 및 이와 유사한 것	15		E	
3917.32.99.00	- - - - 기타	0		A	
3917.33.10.00	- -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 · 스프레이 및 이와 유사한 것	0		A	
3917.33.90.00	- - - 기타	0		A	
3917.39.10.00	- - - 관개시스템용의 것, 드립 · 스프레이 및 이와 유사한 것	15		E	
3917.39.90.00	- - - 기타	0		A	
3917.40.00.00	- 연결구류	15		E	
3918.10.10.00	- - 바닥 깔개	0		A	
3918.10.90.00	- - 기타	20		E	
3918.90.10.00	- - 바닥 깔개	0		A	
3918.90.90.00	- - 기타	0		A	

3919.10.00.10	- - 기저귀 제조용 탄성 트라이어드 횡단면을 가지는 것	0		A	
3919.10.00.90	- - 기타	0		A	
3919.90.11.00	- - - 롤 모양인 것(폭이 1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5		E	
3919.90.19.10	- - - - 에틸렌 수지	0		A	
3919.90.19.90	- - - - 기타	10		E	
3919.90.90.10	- - - 에틸렌 수지	0		A	
3919.90.90.90	- - - 기타	10		E	
3920.10.00.0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15		E	
3920.20.10.00	- -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메탈라이즈드 폴리프로필렌	20		E	
3920.20.90.10	- - - 기저귀 제조용 탄성 트라이어드 횡단면을 가지는 것	0		A	
3920.20.90.90	- - - 기타	20		E	
3920.30.10.00	-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E	
3920.30.90.00	- - 기타	20		E	
3920.43.00.10	- - - 라벨 제조용 횡단 열 수축률이 100분의 60 이상인 필름	0		A	
3920.43.00.90	- - - 기타	20		E	
3920.49.00.00	- - 기타	0		A	
3920.51.00.00	-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20		E	
3920.59.00.00	- - 기타	20		E	
3920.61.00.00	- -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0		A	
3920.62.00.00	-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20		E	
3920.63.00.00	-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0		C	
3920.69.00.00	-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0		E	
3920.71.00.00	-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15		A	
3920.73.00.00	- -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		A	
3920.79.00.00	- -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15		A	
3920.91.10.00	- - - 안전유리 제조용의 것	0		A	
3920.91.90.00	- - - 기타	0		A	
3920.92.00.00	- -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		A	
3920.93.00.00	-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20		A	
3920.94.00.00	- - 페놀수지로 만든 것	20		A	
3920.99.00.00	-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0		C	
3921.11.00.00	- -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20		E	
3921.12.00.00	- -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0		A	

3921.13.00.00	-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20		E	
3921.14.00.00	-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15		A	
3921.19.10.00	- - -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를 뒷면에 부착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혼합물로 구성된 시트	0		A	
3921.19.90.00	- - - 기타	0		A	
3921.90.10.00	- - 종이를 적층하여 얻은 것	0		A	
3921.90.90.00	- - 기타	20		E	
3922.10.10.00	- - 유리 섬유로 보강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	20		E	
3922.10.90.00	- - 기타	20		E	
3922.20.00.00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20		E	
3922.90.00.00	- 기타	0		A	
3923.10.10.00	- - 카세트, CD, DVD 및 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되는 것	0		A	
3923.10.90.11	- - - - 닭용	0		A	
3923.10.90.19	- - - - 기타	0		A	
3923.10.90.90	- - 기타	20		E	
3923.21.00.00	- -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0		A	
3923.29.10.00	- - - 채혈백	20		A	
3923.29.20.00	- - - 비경구 솔루션 포장용 파우치	5		A	
3923.29.90.10	- - - - 파우치형 포장	0		A	
3923.29.90.90	- - - - 기타	0		A	
3923.30.20.00	- - 예비성형품	20		E	
3923.30.91.00	- - - 용량이 18.9리터(5갤런) 이상인 것	20		D	
3923.30.99.00	- - - 기타	0		A	
3923.40.10.00	- - 테이프가 포함되지 않은 카세트	20		A	
3923.40.90.00	- - 기타	0		A	
3923.50.10.00	- - 실리콘 마개	0		A	
3923.50.90.00	- - 기타	20		E	
3923.90.00.00	- 기타	15		E	
3924.10.10.00	- - 아기 젖병	20		C	
3924.10.90.10	- - - 폴리락트산(PLA)으로 퇴비화된 제품용	20		X	
3924.10.90.90	- - - 기타	20		X	
3924.90.00.00	- 기타	0		A	

3925.10.00.00	-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E	
3925.20.00.0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20		E	
3925.30.00.00	-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20		E	
3925.90.00.00	- 기타	20		E	
3926.10.00.00	-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20		E	
3926.20.00.00	-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20		E	
3926.30.00.00	- 가구,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20		G	
3926.40.00.00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0		A	
3926.90.10.00	- - 어망용 부표와 플로트(float)	5		E	
3926.90.20.00	- -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의 것[코르셋용 스테이스(stays)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5		D	
3926.90.30.00	- - 스크루, 볼트, 와셔 및 일반 사용을 위한 이와 유사한 연결구류	0		A	
3926.90.40.00	- - 개스킷이나 워셔	20		B	
3926.90.60.00	- - 소음방지 프로텍터	0		A	
3926.90.70.00	- - 작업자 보호용 특수 마스크	0		A	
3926.90.90.00	- - 기타	20		G	
4001.10.00.00	-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 인지에 상관없다]	0		A	
4001.21.00.00	- -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0		A	
4001.22.00.00	-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A	
4001.29.10.00	- - - 크레이프 시트	0		A	
4001.29.20.00	- - - 재응결한 고무 알갱이	5		A	
4001.29.90.00	- - - 기타	10		A	
4001.30.00.00	-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울(q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0		A	
4002.11.10.00	- -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의 것	0		A	
4002.11.20.00	- - -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의 것	0		A	
4002.19.11.10	- - - - 합성고무의 것	0		A	
4002.19.11.90	- - - - 기타	5		C	
4002.19.12.00	- - - - 판·시트 또는 스트립 모양의 것	0		A	
4002.19.21.10	- - - - 합성고무의 것	0		A	
4002.19.21.90	- - - - 기타	10		E	
4002.19.22.00	- - - - 판·시트 또는 스트립 모양의 것	0		A	
4002.20.10.00	- - 라텍스	0		A	

4002.20.91.00	- - - 일차제품의 것	0		A	
4002.20.92.00	- - - 판 · 시트 또는 스트립 모양의 것	0		A	
4002.31.10.00	- - - 라텍스	0		A	
4002.31.91.00	- - - - 일차제품의 것	0		A	
4002.31.92.00	- - - - 판 · 시트 또는 스트립 모양의 것	0		A	
4002.39.10.00	- - - 라텍스	0		A	
4002.39.91.00	- - - - 일차제품의 것	0		A	
4002.39.92.00	- - - - 판 · 시트 또는 스트립 모양의 것	0		A	
4002.41.00.00	- - 라텍스	0		A	
4002.49.10.00	- - - 일차제품의 것	0		A	
4002.49.20.00	- - - 판 · 시트 또는 스트립 모양의 것	0		A	
4002.51.00.00	- - 라텍스	0		A	
4002.59.10.00	- - - 일차제품의 것	0		A	
4002.59.20.10	- - - - 합성고무의 것	0		A	
4002.59.20.90	- - - - 기타	10		A	
4002.60.10.00	- - 라텍스	0		A	
4002.60.91.00	- - - 일차제품의 것	0		A	
4002.60.92.00	- - - 판 · 시트 또는 스트립 모양의 것	0		A	
4002.70.10.10	- - - 합성라텍스	0		A	
4002.70.10.90	- - - 기타	5		A	
4002.70.91.10	- - - - 합성라텍스	0		A	
4002.70.91.90	- - - - 기타	5		A	
4002.70.92.10	- - - - 합성라텍스	0		A	
4002.70.92.90	- - - - 기타	5		A	
4002.80.00.00	-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0		A	
4002.91.00.00	- - 라텍스	0		A	
4002.99.10.00	- - - 일차제품(primary form)의 것	0		A	
4002.99.20.00	- - - 판 · 시트(sheet) 또는 스트립상의 것	0		A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 ·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0		A	
4005.10.00.00	-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고무	0		A	
4005.20.00.00	-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A	
4005.91.10.00	- - - 추잉 검 베이스	0		A	

4005.91.90.00	- - - 기타	15		B	
4005.99.10.00	- - - 추잉 검 베이스	0		A	
4005.99.90.00	- - - 기타	0		A	
4006.10.00.00	-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0		A	
4006.90.00.00	- 기타	0		A	
4007.00.00.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4008.11.10.00	- - -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하지 않은 것	0		A	
4008.11.20.00	- - - 그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	15		B	
4008.19.00.00	- - 기타	0		A	
4008.21.10.00	- - -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하지 않은 것	0		A	
4008.21.21.00	- - - - 인쇄제판용 블랭킷(blanket)	0		A	
4008.21.29.00	- - - - 기타	15		B	
4008.29.00.00	- - 기타	0		A	
4009.11.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0		A	
4009.12.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A	
4009.21.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5		E	
4009.22.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A	
4009.31.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0		A	
4009.32.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A	
4009.41.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15		E	
4009.42.00.00	-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5		E	
4010.11.00.00	- -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0		A	
4010.12.00.00	-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5		C	
4010.19.10.00	- - -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5		A	
4010.19.90.00	- - - 기타	0		A	
4010.31.00.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4010.32.00.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0		A	
4010.33.00.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4010.34.00.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0		A	

4010.35.00.00	-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5		E	
4010.36.00.00	-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4010.39.00.00	- - 기타	0		A	
4011.10.10.00	- - 래디알	1% + USD 0.63/kg		G	
4011.10.90.00	- - 기타	1% + USD 0.63/kg		E	
4011.20.10.00	- - 래디알	1% + USD 0.83/kg		G	
4011.20.90.00	- - 기타	1% + USD 0.83/kg		X	
4011.30.00.00	- 항공기용	15		A	
4011.40.00.00	- 모터사이클용	15		E	
4011.50.00.00	- 자전거용	15		A	
4011.70.00.00	- 농경용 ·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0		A	
4011.80.00.11	- - -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15		E	
4011.80.00.12	- - 림의 지름이 61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15		E	
4011.80.00.90	- - 광산용의 것	15		E	
4011.90.00.00	- 기타	15		E	
4012.11.00.00	-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1% + USD 0.63/kg		E	
4012.12.00.00	- - 버스용 · 화물자동차용	1% + USD 0.63/kg		E	
4012.13.00.00	- - 항공기용	15		E	
4012.19.00.00	- - 기타	1% + USD 0.63/kg		E	
4012.20.00.00	- 중고 공기타이어	1% + USD 0.63/kg		E	
4012.90.10.00	- - 타이어 플랩	15		E	
4012.90.20.00	- - 솔리드 타이어	15		C	
4012.90.30.00	- - 쿠션 타이어	15		C	
4012.90.41.00	- - - 재생용의 것	0		A	
4012.90.49.00	- - - 기타	15		A	
4013.10.00.0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 버스용 · 화물차용	15		E	
4013.20.00.00	- 자전거용	15		E	
4013.90.00.00	- 기타	15		E	

4014.10.00.00	- 콘돔	0		A	
4014.90.00.00	- 기타	25		E	
4015.11.00.00	- - 외과용	15		E	
4015.19.10.00	- - - 방사선 차단의 것	5		C	
4015.19.90.10	- - - 의료용 탐구/시술용	0		A	
4015.19.90.90	- - - - 기타	0		A	
4015.90.10.00	- - 방사선 차단의 것	5		C	
4015.90.20.00	- - 잠수복	30		E	
4015.90.90.00	- - 기타	20		E	
4016.10.00.00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30		E	
4016.91.00.00	- - 바닥 깔개와 매트	30		E	
4016.92.00.00	- - 지우개	25		C	
4016.93.00.00	- - 개스킷이나 워셔	0		A	
4016.94.00.00	- -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25		E	
4016.95.10.00	- - - 탱크[연질(용기)인지에 상관없다]	30		E	
4016.95.20.00	- - - 공기타이어의 가황처리 및 재생기계용 백	0		A	
4016.95.90.00	- - - 기타	30		E	
4016.99.10.00	- - - 그 밖의 공업용 물품	0		A	
4016.99.21.00	- - - - 차축 샤프트용 먼지보호대	15		E	
4016.99.29.00	- - - - 기타	0		A	
4016.99.30.00	- - - 마개	0		A	
4016.99.40.00	- - - 이너튜브와 공기타이어 보수용 패치	0		A	
4016.99.60.00	- - - 인쇄제판용 블랭킷(blanket)	0		A	
4016.99.90.00	- - - 기타	0		A	
4017.00.00.00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 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0		A	
4101.20.00.00	-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또는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4101.50.00.00	- 전신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4101.90.00.00	-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벨리(belly)를 포함한다]	0		A	
4102.10.00.00	-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A	
4102.21.00.00	- - 산처리한 것	0		A	
4102.29.00.00	- - 기타	0		A	
4103.20.00.00	- 파충류의 원피	0		A	

4103.30.00.00	- 돼지의 원피	0		A	
4103.90.00.00	- 기타	0		A	
4104.11.00.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A	
4104.19.00.00	- - 기타	5		C	
4104.41.00.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A	
4104.49.00.00	- - 기타	10		C	
4105.10.00.00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C	
4105.30.00.00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10		C	
4106.21.00.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C	
4106.22.00.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10		C	
4106.31.00.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C	
4106.32.00.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C	
4106.40.00.00	- - 파충류의 원피	5		C	
4106.91.00.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E	
4106.92.00.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E	
4107.11.00.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10		E	
4107.12.00.00	-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0		E	
4107.19.00.00	- - 기타	10		E	
4107.91.00.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15		E	
4107.92.00.00	-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5		E	
4107.99.00.00	- - 기타	15		E	
4112.00.00.00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10		C	
4113.10.00.00	- 산양의 가죽	10		C	
4113.20.00.00	- 돼지의 가죽	5		C	
4113.30.00.00	- 파충류의 가죽	10		C	
4113.90.00.00	- 기타	5		E	
4114.10.00.00	-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15		E	
4114.20.00.00	-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15		E	

4115.10.00.00	-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10		C	
4115.20.00.00	-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패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10		C	
4201.00.00.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25		E	
4202.11.10.00	- - -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zek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	30		E	
4202.11.90.00	- - - 기타	30		E	
4202.12.10.00	- - -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zek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	30		E	
4202.12.90.00	- - - 기타	30		E	
4202.19.00.00	- - 기타	30		E	
4202.21.00.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나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로 만든 것	30		E	
4202.22.00.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30		E	
4202.29.00.00	- - 기타	30		E	
4202.31.00.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나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로 만든 것	30		E	
4202.32.00.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30		E	
4202.39.00.00	- - 기타	30		E	
4202.91.10.00	- - - 여행가방과 배낭	30		E	
4202.91.90.00	- - - 기타	30		E	
4202.92.00.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30		D	
4202.99.10.00	- - - 여행가방과 배낭	30		E	
4202.99.90.00	- - - 기타	30		E	
4203.10.00.00	- 의류	30		E	
4203.21.00.00	-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30		E	
4203.29.00.00	- - 기타	30		E	
4203.30.00.00	- 벨트와 띠	30		E	
4203.40.00.00	- 그 밖의 의류 부속품	30		E	
4205.00.10.00	- 전동용 벨트	15		E	
4205.00.90.00	- 기타	25		E	

4206.00.10.00	- 캣거트(catgut)	15		E	
4206.00.20.00	- 소시지케이싱	15		E	
4206.00.90.00	- 기타	15		E	
4301.10.00.00	-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A	
4301.30.00.00	-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Caracul) ·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 · 중국 · 몽고 ·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A	
4301.60.00.00	-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A	
4301.80.00.00	-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A	
4301.90.00.00	-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0		A	
4302.11.00.00	- - 밍크의 것	0		A	
4302.19.00.00	- - 기타	0		A	
4302.20.00.00	-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4302.30.00.00	-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4303.10.10.00	- - 알파카(alpaca)의 것	30		E	
4303.10.90.00	- - 기타	30		E	
4303.90.10.00	- - 알파카(alpaca)의 것	30		E	
4303.90.90.00	- - 기타	30		E	
4304.00.00.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30		E	
4401.11.00.00	- - 침엽수류	15		A	
4401.12.00.00	- - 활엽수류	15		A	
4401.21.00.00	- - 침엽수류	5		A	
4401.22.00.00	- - 활엽수류	5		A	
4401.31.00.00	- - 목재 펠릿(pellet)	15		A	
4401.39.00.00	- - 기타	15		A	
4401.40.00.00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5		A	
4402.10.00.00	- 대나무로 만든 것	5		A	
4402.90.00.00	- 기타	5		A	
4403.11.00.00	- - 침엽수류	5		A	
4403.12.00.00	- - 활엽수류	5		A	

4403.21.00.00	- -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03.22.00.00	- -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03.23.00.00	- -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 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03.24.00.00	- -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 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03.25.00.00	- - 기타(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03.26.00.00	- - 기타	5		A	
4403.41.00.00	-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5		A	
4403.49.10.00	- - - 이페(Ipé)나무[타베브이아(Tabebuia) 종]의 것	5		A	
4403.49.90.10	- - - - 티크(teca)[텍토나(Tectona grandis)속]의 것	5		E	
4403.49.90.90	- - - 기타	5		E	
4403.91.00.00	- - 홀름(holm) · 코르크(cork) 참나무와 그 밖의 참나무[코 커스(Quercus)종]의 것	5		A	
4403.93.00.00	-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 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03.94.00.00	-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 한다)	5		A	
4403.95.00.00	-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A	
4403.96.00.00	-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 다)	5		A	
4403.97.00.00	-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의 것	5		A	
4403.98.00.00	- -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의 것	5		A	
4403.99.00.00	- - 기타	5		A	
4404.10.00.00	- 침엽수류	10		A	
4404.20.00.00	- 활엽수류	10		A	
4405.00.00.00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10		A	
4406.11.00.00	- - 침엽수류	10		A	
4406.12.00.00	- - 활엽수류	10		A	
4406.91.00.00	- - 침엽수류	10		A	
4406.92.00.00	- - 활엽수류	10		A	
4407.11.10.00	- - - 연필 제조용 소형 판자(Small board)	10		A	
4407.11.90.00	- - - 기타	0		A	

4407.12.00.00	- -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및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	10		A	
4407.19.10.00	- - - 연필 제조용 소형 판자(Small board)	10		A	
4407.19.90.00	- - - 기타	10		A	
4407.21.00.00	- -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10		A	
4407.22.00.00	- - 비롤라(Virola) · 임부아(Imbua) · 발사(Balsa)	10		A	
4407.25.00.00	-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10		A	
4407.26.00.00	- -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 아란(Alan)	10		A	
4407.27.00.00	- - 사펠리(Sapelli)	10		A	
4407.28.00.00	- - 이로코(Iroko)	10		A	
4407.29.10.00	- - - 이페(Ipé)나무[타베브이아(Tabebuia)종]의 것	10		A	
4407.29.90.00	- - - 기타	10		A	
4407.91.00.00	- - 홀름(holm) · 코르크(cork) 참나무와 그 밖의 참나무[코커스(Quercus)종]의 것	10		A	
4407.92.00.00	-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	10		A	
4407.93.00.00	- - 단풍나무[아세르(Acer)종]의 것	10		A	
4407.94.00.00	- -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의 것	10		A	
4407.95.00.00	- -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의 것	10		A	
4407.96.00.00	-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	10		A	
4407.97.00.00	-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의 것	10		A	
4407.99.00.00	- - 기타	10		A	
4408.10.10.00	- - - 연필 제조용 소형 판자(Small board)	5		C	
4408.10.90.00	- - 기타	10		A	
4408.31.00.00	-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10		A	
4408.39.10.00	- - - 이페(Ipé)나무[타베브이아(Tabebuia)종]의 것	10		A	
4408.39.90.00	- - - 기타	10		A	
4408.90.00.00	- 기타	0		A	
4409.10.10.00	- - 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	20		E	
4409.10.20.00	- - 주형가공한 목재	20		E	
4409.10.90.00	- - 기타	20		A	
4409.21.00.00	- - 대나무로 만든 것	25		A	
4409.22.10.00	- - - 이페(Ipe)나무[타베브이아(Tabebuia) 종]의 것	25		A	
4409.22.90.00	- - - 기타	25		A	

4409.29.10.00	- - - 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	25		A	
4409.29.20.00	- - - 주형가공한 목재	25		A	
4409.29.90.00	- - - 기타	25		A	
4410.11.00.00	-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15		A	
4410.12.00.00	- -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15		A	
4410.19.00.00	- - 기타	15		A	
4410.90.00.00	- 기타	15		A	
4411.12.00.00	-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X	
4411.13.00.00	- -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X	
4411.14.00.00	- -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5		X	
4411.92.00.10	- - -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고밀도 섬유판(fiber board)	0		A	
4411.92.00.90	- - - 기타	15		A	
4411.93.00.10	- - - 두께가 3.5밀리미터 이하인 고밀도 섬유판(fiber board)	0		A	
4411.93.00.90	- - - 기타	15		E	
4411.94.00.00	-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이하인 것	15		E	
4412.10.00.00	- 대나무로 만든 것	15		E	
4412.31.00.00	-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15		E	
4412.33.00.00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종] · 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종]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 ·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 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종] · 느릅나무[울무스(Ulmus)종] ·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 · 히커리[카르야(Carya)종] · 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종] · 라임[틸리아(Tilia)종] · 단풍나무[아서(Acer)종] ·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 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종]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루스(Populus)종] · 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종] · 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종]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종]의	15		E	
4412.34.00.00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E	
4412.39.00.00	- - 기타	15		E	
4412.94.00.00	-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15		E	
4412.99.00.00	- - 기타	15		X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 · 플레이트(plate) 모양 · 스트립(strip) 모양 ·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A	

4414.00.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 · 사진틀 · 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20		E	
4415.10.00.00	- 케이스 · 상자 · 크레이트(crate) · 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15		E	
4415.20.00.00	- 팰릿(pallet) · 박스팰릿(box pallet) ·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15		E	
4416.00.00.00	나무로 만든 통 · 배럴(barrel) · 배트(vat) · 튜브(tub) ·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15		E	
4417.00.10.00	- 공구	15		E	
4417.00.90.00	- 기타	15		E	
4418.10.00.00	-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15		E	
4418.20.00.00	- 문 · 문틀 · 문지방	15		X	
4418.40.00.00	-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15		E	
4418.50.00.00	- 지붕을 이는 판자	15		E	
4418.60.00.00	- 기둥과 들보	15		E	
4418.73.00.00	- - 대나무로 만든 것 또는 최소한 최상층(마모층)을 대나무로 만든 것	15		E	
4418.74.00.00	- - 기타(모자이크 마루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E	
4418.75.00.00	- -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E	
4418.79.00.00	- - 기타	15		E	
4418.91.10.00	- - - 집성재[글루램(glulam)]	15		E	
4418.91.90.00	- - - 기타	15		E	
4418.99.10.00	- - - 집성재[글루램(glulam)]	15		E	
4418.99.90.00	- - - 기타	15		E	
4419.11.00.00	- -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30		E	
4419.12.00.00	- - 젓가락	30		E	
4419.19.00.00	- - 기타	30		E	
4419.90.00.00	- 기타	30		E	
4420.10.00.00	-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30		E	
4420.90.00.00	- 기타	30		E	
4421.10.00.00	- 옷걸이	0		A	
4421.91.10.00	- - - 스푼 · 콧 · 보빈 · 재봉사 릴과 이와 유사한 것(선반가 공한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4421.91.20.00	- - - 이쑤시개	15		E	
4421.91.30.00	- - - 제과용과 아이스크림용의 소형 스틱과 스푼	20		E	
4421.91.40.00	- - - 성냥개비의 나무	15		E	
4421.91.90.00	- - - 기타	20		E	

4421.99.10.00	- - - 스폴 · 콥 · 보빈 · 재봉사 릴과 이와 유사한 것(선반가 공한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4421.99.20.00	- - - 이수시개	15		E	
4421.99.30.00	- - - 제과용과 아이스크림용의 소형 스틱과 스푼	20		E	
4421.99.40.00	- - - 성냥개비의 나무	15		E	
4421.99.90.00	- - - 기타	20		E	
4501.10.00.00	-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4501.90.00.10	- - 코르크 분말 제5호	0		A	
4501.90.00.90	- - 기타	5		A	
4502.00.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 · 판 모양 · 시트(sheet) 모양 ·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 이 예리한 마감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5		E	
4503.10.00.00	- 마개	10		C	
4503.90.00.00	- 기타	10		C	
4504.10.00.00	- 블록 ·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 타일(어떤 모양이 라도 상관없다) · 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 함한다)	10		C	
4504.90.10.00	- - 마개	0		A	
4504.90.20.00	- - 개스킷(gasket) · 와셔(washer) · 그 밖의 실(seal)	10		C	
4504.90.90.00	- - 기타	0		A	
4601.21.00.00	- - 대나무로 만든 것	30		E	
4601.22.00.00	- - 등나무로 만든 것	30		E	
4601.29.00.00	- - 기타	30		E	
4601.92.00.00	- - 대나무로 만든 것	30		E	
4601.93.00.00	- - 등나무로 만든 것	30		E	
4601.94.00.00	- -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30		E	
4601.99.00.00	- - 기타	30		E	
4602.11.00.00	- - 대나무로 만든 것	30		E	
4602.12.00.00	- - 등나무로 만든 것	30		E	
4602.19.00.00	- - 기타	30		E	
4602.90.00.00	- 기타	30		E	
4701.00.00.00	기계목재펠프	5		A	
4702.00.00.00	화학목재펠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5		A	
4703.11.00.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A	
4703.19.00.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A	

4703.21.00.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A	
4703.29.00.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A	
4704.11.00.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A	
4704.19.00.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A	
4704.21.00.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A	
4704.29.00.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A	
4705.00.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5		E	
4706.10.00.00	-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0		A	
4706.20.00.00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5		E	
4706.30.00.00	-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4706.91.00.00	- - 기계펄프	0		A	
4706.92.00.00	- - 화학펄프	0		A	
4706.93.00.00	- -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5		E	
4707.10.00.00	-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 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 · 판지로 만든 것	0		A	
4707.20.00.00	-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4707.30.00.00	-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5		E	
4707.90.00.00	-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5		C	
4801.00.00.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4802.10.00.00	-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5		E	
4802.20.00.00	- 사진 감광성 · 열 감응성 · 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5		C	
4802.40.00.00	- 벽지용 원지(原紙)	10		E	
4802.54.00.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미만인 것	0		A	
4802.55.10.00	- - - 은행권용 보안용지	5		C	
4802.55.20.00	- - - 그 밖의 보안 용지	0		A	
4802.55.90.00	- - - 기타	0		A	
4802.56.10.00	- - - 은행권용 보안용지	5		D	
4802.56.20.00	- - - 그 밖의 보안 용지	0		A	
4802.56.90.00	- - - 기타	0		A	
4802.57.10.00	- - - 은행권용 보안용지	5		C	
4802.57.20.00	- - - 그 밖의 보안 용지	0		A	
4802.57.90.00	- - - 기타	0		A	

4802.58.10.00	- - - 롤 모양인 것	0		A	
4802.58.90.00	- - - 기타	5		D	
4802.61.10.00	-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40그램 미만인 것(제48류의 주 제 4호에 있는 그 밖의 열거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4802.61.90.00	- - - 기타	0		A	
4802.62.00.00	-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A	
4802.69.10.00	- - - 중량이 1제곱미터당 40그램 미만인 것(제48류의 주 제 4호에 있는 그 밖의 열거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D	
4802.69.90.00	- - - 기타	0		A	
4803.00.10.00	-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0		A	
4803.00.90.10	- - 메이크업 리무버 물티슈, 타월 또는 이와 유사한 위생용 지 또는 화장실용 용지 제조에 사용되는 원지(라텍스를 침투한, 폭이 36센티미터보다 넓은 롤 모양의 원지로 한정한다)	0		A	
4803.00.90.90	- - 기타	10		E	
4804.1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	0		A	
4804.19.00.00	- - 기타	0		A	
4804.2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	15		D	
4804.29.00.00	- - 기타	5		E	
4804.3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	15		E	
4804.39.00.00	- - 기타	15		E	
4804.41.10.00	- - - 탈지의 것(장식 플라스틱 시트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4804.41.90.00	- - - 기타	15		E	
4804.42.00.00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질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15		E	
4804.49.00.00	- - 기타	15		E	
4804.5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	15		E	
4804.52.00.00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의해 얻어진 목재 섬유질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15		E	
4804.59.00.00	- - 기타	15		E	
4805.11.00.00	- -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0		A	
4805.12.00.00	- -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10		E	

4805.19.00.00	- - 기타	10		D	
4805.24.00.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15		D	
4805.25.00.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15		D	
4805.30.00.00	- 아황산포장지	0		A	
4805.40.10.00	- - 면 또는 아바카(마닐라마) 섬유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0이고, 풀을 먹이지 않은 것으로, 광물 화합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0		A	
4805.40.20.00	- - 면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것	5		C	
4805.40.90.00	- - 기타	0		A	
4805.50.00.00	- 펄트지와 판지	0		A	
4805.91.10.00	- - - 탈지의 것(장식 플라스틱 시트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4805.91.20.00	- - - 전기절연용의 것	0		A	
4805.91.30.00	- - - 다층의지와 판지(소호 제4805.12호, 제4805.19호, 제4805.24호, 또는 제4805.25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4805.91.90.00	- - - 기타	0		A	
4805.92.10.00	- - - 전기절연용의 것	0		A	
4805.92.20.00	- - - 다층의지와 판지(소호 제4805.12호, 제4805.19호, 제4805.24호, 또는 제4805.25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4805.92.90.00	- - - 기타	0		A	
4805.93.10.00	- - - 전기절연용의 것	0		A	
4805.93.20.00	- - - 다층의지와 판지(소호 제4805.12호, 제4805.19호, 제4805.24호, 또는 제4805.25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4805.93.30.00	- - - 비중이 1을 초과하는 경질의 판지	0		A	
4805.93.90.00	- - - 기타	0		A	
4806.10.00.00	- 황산지	10		E	
4806.20.00.00	- 내지지(耐脂紙)	0		A	
4806.30.00.00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0		A	
4806.40.00.00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0		A	
4807.00.00.00	겹붙인 종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7.5		E	
4808.10.00.00	- 물결 모양의 종지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15		E	
4808.40.00.00	-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15		E	
4808.90.00.00	- 기타	0		A	

4809.20.00.00	- 셀프복사지	0		A	
4809.90.00.00	- 기타	0		A	
4810.13.11.00	-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0그램 이하인 것	10		D	
4810.13.19.00	- - - 기타	0		A	
4810.13.20.00	-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0		A	
4810.14.10.00	-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변은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E	
4810.14.90.00	- - - 기타	10		E	
4810.19.00.00	- - 기타	0		A	
4810.22.00.00	- -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0		A	
4810.29.00.00	- - 기타	15		D	
4810.31.00.00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E	
4810.32.00.00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E	
4810.39.00.00	- - 기타	15		E	
4810.92.00.10	- - - 이중 또는 삼중 판지(cardboard)로서 평량 200그램 이상과 400그램 이하로 한정한다	0		A	
4810.92.00.90	- - - 기타	0		A	
4810.99.00.10	- - -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한 면이나 양면이 LWC 층)(백색도가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5까지의 밝기가 있는 종이로 한정한다)	0		A	
4810.99.00.90	- - - 기타	15		D	
4811.10.10.00	- - 타르를 전체에 입힌 것(비중이 1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광택, 바니쉬 또는 주름처리 여부에 상관없다)	15		E	
4811.10.90.00	- - 기타	15		E	
4811.41.10.00	- - -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시트 모양인 것	5		E	
4811.41.90.00	- - - 기타	5		E	
4811.49.10.00	- - -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며,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시트 모양인 것	15		E	
4811.49.90.00	- - - 기타	15		E	

4811.51.10.00	- - - 알루미늄 박(箔)의 중간층이 있는 것(식품공업에서 식품류를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인쇄된 것인 지에 상관없다)	0		A	
4811.51.20.00	- - -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피복하거나 도포한 것(식품공업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인쇄된 것인 지에 상관없다)	0		A	
4811.51.90.00	- - - 기타	0		A	
4811.59.10.00	- - - 젖은 사포를 만들기 위한 것	10		C	
4811.59.20.00	- - - 알루미늄 박(箔)의 중간층이 있는 것(식품공업에서 식품류를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인쇄된 것인 지에 상관없다)	0		A	
4811.59.30.00	- - - 멜라민 수지가 침투된 종이(표면장식이나 인쇄된 것인 지에 상관없다)	0		A	
4811.59.40.00	- - - 전기절연용의 것	5		C	
4811.59.50.00	- - -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피복하거나 도포한 것(식품공업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인쇄된 것인 지에 상관없다)	0		A	
4811.59.60.00	- - - 여과지	0		A	
4811.59.90.00	- - - 기타	0		A	
4811.60.10.00	- - 전기절연용의 것	5		C	
4811.60.90.10	- - - 폭이 최대 1,000밀리미터,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그램 이상 50그램 이하인 코일	0		A	
4811.60.90.90	- - - 기타	10		E	
4811.90.10.00	- - 비중이 1을 초과하는 바니시한 것(주름을 낸 것인 지에 상관없다)	5		C	
4811.90.20.00	- -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용	10		E	
4811.90.50.00	- - 껍선, 선이나 방안선을 그은 것	15		E	
4811.90.80.00	- - 흡수지(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서, 표면장식된 것 또는 인쇄된 것으로 침투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C	
4811.90.90.00	- - 기타	5		C	
4812.0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0		A	
4813.10.00.00	-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0		A	
4813.20.00.00	-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0		A	
4813.90.00.00	- 기타	15		C	
4814.20.00.00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울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5		E	

4814.90.00.00	- 기타	0		A	
4816.20.00.00	- 셀프복사지	0		A	
4816.90.00.00	- 기타	25		D	
4817.10.00.00	- 봉투	30		E	
4817.20.00.00	- 봉함엽서 · 우편엽서 · 통신용카드	30		E	
4817.30.00.00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 · 파우치 · 지갑 ·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E	
4818.10.00.00	- 화장지	30		E	
4818.20.00.00	- 손수건 · 클렌징티슈 · 안면용 화장지 · 타월	30		E	
4818.30.00.00	-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30		E	
4818.50.00.00	- 의류와 의류 부속품	30		E	
4818.90.00.00	- 기타	30		E	
4819.10.00.00	-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5		E	
4819.20.00.00	-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A	
4819.30.10.00	- - 두 겹 이상의 것	0		A	
4819.30.90.00	- - 기타	0		A	
4819.40.00.00	-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0		A	
4819.50.00.00	-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0		A	
4819.60.00.00	- 서류상자 · 서류받침 · 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 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E	
4820.10.00.00	- 장부 · 회계부 · 노트북 · 주문장 · 영수장 · 편지지철 · 메모철 · 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30		E	
4820.20.00.00	- 연습장	30		E	
4820.30.00.00	-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 · 폴더 · 서류철 표지	30		E	
4820.40.10.00	- - 연속 용지(Continuous form)	30		E	
4820.40.90.00	- - 기타	30		E	
4820.50.00.00	-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30		E	
4820.90.00.00	- 기타	30		E	
4821.10.00.00	- 인쇄한 것	0		A	
4821.90.00.00	- 기타	0		A	
4822.10.00.00	-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15		E	
4822.90.00.00	- 기타	15		E	
4823.20.00.00	- 여과용 종지와 판지	30		E	
4823.40.00.00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 · 시트(sheet) · 다이얼	15		E	
4823.61.00.00	- - 대나무로 만든 것	30		E	

4823.69.00.10	- - - 폴리젯산(PLC)을 도포한 제품용	30		E	
4823.69.00.90	- - - 기타	30		E	
4823.70.00.00	-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 · 프레스한 제품	15		E	
4823.90.20.00	- - 전기절연용지	20		E	
4823.90.40.00	- - 개스킷(gasket)이나 와셔(washer)	0		A	
4823.90.50.00	- - 자카드(Jacquard)와 이와 유사한 기계용 카드	0		A	
4823.90.60.00	- -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모델과 견본	30		E	
4823.90.90.00	- - 기타	30		E	
4901.10.10.00	- - 운세 · 사진소설 · 연재 만화 및 만화책	0		A	
4901.10.90.00	- - 기타	0		A	
4901.91.00.00	- - 사전 · 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0		A	
4901.99.10.00	- - 운세 · 사진소설 · 연재 만화 및 만화책	0		A	
4901.99.90.00	- - - 기타	0		A	
4902.10.00.00	- 1주에 4회 이상 간행되는 것	0		A	
4902.90.10.00	- - 운세 · 사진소설 · 연재 만화 및 만화책	0		A	
4902.90.90.00	- - 기타	0		A	
4903.00.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30		D	
4904.00.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A	
4905.10.00.00	- 지구의	0		A	
4905.91.00.00	- - 책자로 된 것	0		A	
4905.99.00.00	- - 기타	0		A	
4906.00.00.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 · 공학용 · 공업용 · 상업용 · 지형학 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 · 카본복사한 것	0		A	
4907.00.10.00	- 사용하지 않은 우표 · 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 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20		E	
4907.00.20.00	- 지폐	0		A	
4907.00.30.00	- 외국 신용기관이 발행한 여행자 수표 장부	20		C	
4907.00.90.00	- 기타	0		A	
4908.10.00.00	- 전사지[디칼커매니아(decals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30		E	
4908.90.10.00	- - 섬유에 연속 전사하기 위한 것	30		D	
4908.90.90.00	- - 기타	30		D	
4909.00.00.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 · 전언용 · 안내 용으로서 그림 · 봉투 ·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0		E	

4910.00.0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30		D	
4911.10.00.10	- - 데모 카드(demo card)	30		E	
4911.10.00.90	- - 기타	30		D	
4911.91.00.00	- - 서화 · 디자인 · 사진	30		D	
4911.99.00.10	- - - 석판화	0		A	
4911.99.00.90	- - - 기타	15		D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5002.00.00.00	생사(꾼 것은 제외한다)	0		A	
5003.00.00.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 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		A	
5004.00.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0		A	
5005.00.00.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0		A	
5006.00.00.00	견사 · 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20		A	
5007.10.00.00	- 견 노일(noil) 직물	20		E	
5007.20.00.00	-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20		E	
5007.90.00.00	- 그 밖의 직물	20		E	
5101.11.00.00	- - 깎은 양모	0		A	
5101.19.00.00	- - 기타	0		A	
5101.21.00.00	- - 깎은 양모	0		A	
5101.29.00.00	- - 기타	0		A	
5101.30.00.00	- 탄화처리한 것	0		A	
5102.11.00.00	- - 캐시미어(Kashmir) 산양의 것	0		A	
5102.19.10.00	- - - 알파카나 라마의 것	0		A	
5102.19.20.00	- - - 토끼의 것	0		A	
5102.19.90.00	- - - 기타	0		A	
5102.20.00.00	- 동물의 거친 털	0		A	
5103.10.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0		A	
5103.20.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10		A	

5103.30.00.00	-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10		A	
5104.00.00.00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 (garnetted stock)	0		A	
5105.10.00.00	- 카드(card)한 양모	0		A	
5105.21.00.00	- -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5105.29.10.00	- - - 톱(top)의 것	0		A	
5105.29.90.00	- - - 기타	0		A	
5105.31.00.00	- -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A	
5105.39.10.00	- - - 알파카나 라마의 것	0		A	
5105.39.20.00	- - - 비큐나(vicuna)의 것	0		A	
5105.39.90.00	- - - 기타	0		A	
5105.40.00.00	-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5106.10.0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5		E	
5106.20.0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15		E	
5107.10.0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5		E	
5107.20.0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15		E	
5108.10.00.00	- 카드(card)한 것	15		E	
5108.20.00.00	- 코움(comb)한 것	15		E	
5109.10.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25		E	
5109.90.00.00	- 기타	25		E	
5110.00.10.00	- 소매용이 아닌 것	15		E	
5110.00.90.00	- 기타	15		E	
5111.11.10.00	- - - 양모로 만든 것	20		E	
5111.11.20.00	- - - 비큐나(vicuna)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1.11.40.00	- - - 알파카나 라마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1.11.90.00	- - - 기타	20		E	
5111.19.10.00	- - - 양모로 만든 것	20		E	
5111.19.20.00	- - - 비큐나(vicuna)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1.19.40.00	- - - 알파카나 라마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1.19.90.00	- - - 기타	20		E	
5111.20.10.00	- - 양모로 만든 것	20		E	
5111.20.20.00	- - - 비큐나(vicuna)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1.20.40.00	- - - 알파카나 라마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1.20.90.00	- - 기타	20		E	

5111.30.10.00	- - 양모로 만든 것	20		E	
5111.30.20.00	- - - 비큐나(vicuna)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1.30.40.00	- - - 알파카나 라마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1.30.90.00	- - 기타	20		E	
5111.90.10.00	- - 양모로 만든 것	20		E	
5111.90.20.00	- - - 비큐나(vicuna)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1.90.40.00	- - - 알파카나 라마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1.90.90.00	- - 기타	20		E	
5112.11.10.00	- - - 양모로 만든 것	20		E	
5112.11.20.00	- - - 비큐나(vicuna)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2.11.40.00	- - - 알파카나 라마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2.11.90.00	- - - 기타	20		E	
5112.19.10.00	- - - 양모로 만든 것	20		E	
5112.19.20.00	- - - 비큐나(vicuna)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2.19.40.00	- - - 알파카나 라마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2.19.90.00	- - - 기타	20		E	
5112.20.10.00	- - 양모로 만든 것	20		E	
5112.20.20.00	- - - 비큐나(vicuna)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2.20.40.00	- - - 알파카나 라마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2.20.90.00	- - 기타	20		E	
5112.30.10.00	- - 양모로 만든 것	20		E	
5112.30.20.00	- - - 비큐나(vicuna)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2.30.40.00	- - - 알파카나 라마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2.30.90.00	- - 기타	20		E	
5112.90.10.00	- - 양모로 만든 것	20		E	
5112.90.20.00	- - - 비큐나(vicuna)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2.90.40.00	- - - 알파카나 라마의 털로 만든 것	20		E	
5112.90.90.00	- - 기타	20		E	
5113.00.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E	
5201.00.10.00	- 섬유길이 34.92밀리미터(1⅜인치)를 초과하는 것	0		A	
5201.00.20.00	- 섬유길이 28.57밀리미터(1⅜인치) 초과 34.92밀리미터(1⅜인치) 이하인 것	0		A	
5201.00.30.00	- 섬유길이 22.22밀리미터(⅞인치) 초과 28.57밀리미터(1⅜인치) 이하인 것	0		A	
5201.00.90.00	- 섬유길이 22.22밀리미터(⅞인치) 이하인 것	0		A	

5202.10.00.00	-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5		A	
5202.91.00.00	- -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A	
5202.99.00.00	- - 기타	0		A	
5203.00.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5204.11.00.00	-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5		E	
5204.19.00.00	- - 기타	15		E	
5204.20.00.00	- 소매용	25		E	
5205.11.00.00	-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15		E	
5205.12.00.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5		E	
5205.13.00.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5		E	
5205.14.00.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5		E	
5205.15.00.00	-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15		E	
5205.21.00.00	-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15		E	
5205.22.00.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7.5		E	
5205.23.00.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7.5		E	
5205.24.00.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5		E	
5205.26.00.00	- -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15		E	
5205.27.00.00	- -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15		E	
5205.28.00.00	- -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120수 초과)	15		E	
5205.31.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15		E	
5205.32.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5		E	
5205.33.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5		E	
5205.34.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5		E	
5205.35.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15		E	
5205.41.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15		E	

5205.42.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5		E	
5205.43.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5		E	
5205.44.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5		E	
5205.46.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15		E	
5205.47.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15		E	
5205.48.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20수 초과)	15		E	
5206.11.00.00	-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15		E	
5206.12.00.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7.5		E	
5206.13.00.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5		E	
5206.14.00.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5		E	
5206.15.00.00	-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15		E	
5206.21.00.00	-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15		E	
5206.22.00.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7.5		E	
5206.23.00.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5		E	
5206.24.00.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5		E	
5206.25.00.00	-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15		E	
5206.31.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15		E	
5206.32.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5		E	
5206.33.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5		E	
5206.34.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5		E	
5206.35.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15		E	
5206.41.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15		E	
5206.42.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5		E	

5206.43.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15		E	
5206.44.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15		E	
5206.45.00.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15		E	
5207.10.00.00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25		E	
5207.90.00.00	- 기타	25		E	
5208.11.00.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E	
5208.12.00.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E	
5208.13.00.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08.19.00.00	- - 그 밖의 직물의 것	20		E	
5208.21.10.00	-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35그램 이하인 것	20		E	
5208.21.90.00	- - - 기타	20		E	
5208.22.00.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E	
5208.23.00.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08.29.00.00	- - 그 밖의 직물의 것	20		E	
5208.31.00.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E	
5208.32.00.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E	
5208.33.00.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08.3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208.41.00.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E	
5208.42.00.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E	
5208.43.00.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08.4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208.51.00.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E	
5208.52.00.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E	

5208.59.10.00	-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08.59.90.00	- - - 기타	20		E	
5209.11.00.00	- - 평직물(平織物)	20		E	
5209.12.00.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09.1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209.21.00.00	- - 평직물(平織物)	20		E	
5209.22.00.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09.2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209.31.00.00	- - 평직물(平織物)	20		E	
5209.32.00.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09.39.00.00	- - 그 밖의 직물	20		G	
5209.41.00.00	- - 평직물(平織物)	20		E	
5209.42.00.00	- - 데님(denim)	30		E	
5209.43.00.00	-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09.49.00.10	- - - 데님(denim)형 직물[데님(denim) 직물]	30		E	
5209.49.00.90	- - - 기타	20		E	
5209.51.00.00	- - 평직물(平織物)	20		G	
5209.52.00.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09.5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210.11.00.00	- - 평직물(平織物)	20		E	
5210.1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210.21.00.00	- - 평직물(平織物)	20		E	
5210.2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210.31.00.00	- - 평직물(平織物)	20		E	
5210.32.00.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10.3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210.41.00.00	- - 평직물(平織物)	20		E	
5210.49.00.10	- - - 데님(denim)형 직물[데님(denim) 직물]	30		E	
5210.49.00.90	- - - 기타	20		E	
5210.51.00.00	- - 평직물(平織物)	20		E	
5210.5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211.11.00.00	- - 평직물(平織物)	20		E	
5211.12.00.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11.1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211.20.00.00	- - 표백한 것	20		E	
5211.31.00.00	- - 평직물(平織物)	20		E	
5211.32.00.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11.3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211.41.00.00	- - 평직물(平織物)	20		E	
5211.42.00.00	- - 데님(denim)	30		E	
5211.43.00.00	-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11.49.00.10	- - - 데님(denim)형 직물[데님(denim) 직물]	30		E	
5211.49.00.90	- - - 기타	20		E	
5211.51.00.00	- - 평직물(平織物)	20		E	
5211.52.00.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20		E	
5211.5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212.1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	20		E	
5212.12.00.00	- - 표백한 것	20		E	
5212.13.00.00	- - 염색한 것	20		E	
5212.14.00.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0		E	
5212.15.00.00	- - 날염한 것	20		E	
5212.2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	20		E	
5212.22.00.00	- - 표백한 것	20		E	
5212.23.00.00	- - 염색한 것	20		E	
5212.24.00.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0		E	
5212.25.00.00	- - 날염한 것	20		E	
5301.10.00.00	-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0		A	
5301.21.00.00	-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0		A	
5301.29.00.00	- - 기타	0		A	
5301.30.00.00	- 아마의 토크(tow)와 웨이스트(waste)	5		A	
5302.10.00.00	-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0		A	
5302.90.00.00	- 기타	5		A	
5303.10.00.00	-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5303.90.30.00	- - 황마	0		A	
5303.90.90.00	- - 기타	5		C	
5305.00.11.00	- - 생것	0		A	
5305.00.19.00	- - 기타	0		A	
5305.00.90.00	- 기타	0		A	
5306.10.00.00	- 단사	15		E	
5306.20.10.00	- - 소매용	0		A	
5306.20.90.00	- - 기타	0		A	
5307.10.00.00	- 단사	15		E	
5307.20.00.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15		E	
5308.10.00.00	- 코이어(coir)사	15		E	
5308.20.00.00	- 대마사	15		E	
5308.90.00.00	- 기타	15		E	
5309.1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309.19.00.00	- - 기타	20		E	
5309.2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309.29.00.00	- - 기타	20		E	
5310.10.00.00	- 표백하지 않은 것	20		E	
5310.90.00.00	- 기타	20		E	
5311.00.00.0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20		E	
5401.10.10.00	- - 소매용	15		E	
5401.10.90.00	- - 기타	15		E	
5401.20.10.00	- - 소매용	15		E	
5401.20.90.00	- - 기타	15		E	
5402.11.00.00	- - 아라미드의 것	0		A	
5402.19.10.00	- - - 나일론 6.6의 것	10		A	
5402.19.90.00	- - - 기타	0		A	
5402.20.00.0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5402.31.00.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5		E	
5402.32.00.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E	
5402.33.00.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7.5		E	
5402.34.00.00	-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A	
5402.39.00.00	- - 기타	15		E	

5402.44.00.00	- - 탄성사	0		A	
5402.45.00.00	- -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5402.46.00.00	-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5402.47.00.00	-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5402.48.00.00	-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5402.49.10.00	- - - 폴리우레탄의 것	0		A	
5402.49.90.00	- - - 기타	15		E	
5402.51.00.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5		E	
5402.52.00.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15		E	
5402.53.00.00	- - 기타	15		E	
5402.59.00.00	- - 기타	15		E	
5402.61.00.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5		E	
5402.62.00.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15		E	
5402.63.00.00	- - 기타	15		G	
5402.69.00.00	- - 기타	15		E	
5403.10.00.00	-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5403.31.00.00	-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5403.32.00.00	-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E	
5403.33.00.00	-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A	
5403.39.00.00	- - 기타	15		E	
5403.41.00.00	-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5		E	
5403.42.00.00	-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A	
5403.49.00.00	- - 기타	15		E	
5404.11.10.00	- - - 폴리우레탄의 것	0		A	
5404.11.90.00	- - - 기타	0		A	
5404.12.00.00	-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5404.19.10.00	- - - 폴리우레탄의 것	0		A	
5404.19.90.00	- - - 기타	0		A	
5404.90.00.00	- 기타	15		A	

5405.00.00.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E	
5406.00.10.00	- 합성필라멘트사	25		E	
5406.00.90.00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	25		E	
5407.10.10.00	- - 타이어 제조용의 것	20		E	
5407.10.90.00	- - 기타	20		E	
5407.20.00.00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20		E	
5407.30.00.00	-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20		E	
5407.4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407.42.00.00	- - 염색한 것	20		D	
5407.43.00.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0		E	
5407.44.00.00	- - 날염한 것	20		E	
5407.5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407.52.00.00	- - 염색한 것	15		X	
5407.53.00.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0		D	
5407.54.00.00	- - 날염한 것	20		E	
5407.61.00.00	-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15		D	
5407.69.00.00	- - 기타	20		D	
5407.71.10.00	- - - 폴리(비닐알코올)사로 만든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	15		E	
5407.71.90.00	- - - 기타	20		E	
5407.72.00.00	- - 염색한 것	20		E	
5407.73.00.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0		E	
5407.74.00.00	- - 날염한 것	20		E	
5407.8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407.82.00.00	- - 염색한 것	20		E	
5407.83.00.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0		E	
5407.84.00.00	- - 날염한 것	20		E	
5407.9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407.92.00.00	- - 염색한 것	20		E	
5407.93.00.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0		E	
5407.94.00.00	- - 날염한 것	20		E	
5408.10.00.10	- - 타이어 제조용의 것	20		E	

5408.10.00.90	- - 기타	20		E	
5408.2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408.22.00.00	- - 염색한 것	20		E	
5408.23.00.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0		E	
5408.24.00.00	- - 날염한 것	20		E	
5408.3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408.32.00.00	- - 염색한 것	20		G	
5408.33.00.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0		E	
5408.34.00.00	- - 날염한 것	20		E	
5501.10.0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A	
5501.20.0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A	
5501.30.10.00	- - 습식압출로 얻어진 것	0		A	
5501.30.90.00	- - 기타	0		A	
5501.40.0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A	
5501.90.00.00	- 기타	0		A	
5502.10.00.00	- 초산셀룰로오스 로빙	0		A	
5502.90.10.0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A	
5502.90.90.00	- 기타	0		A	
5503.11.00.00	- 아라미드(aramid)의 것	0		A	
5503.19.00.00	- - 기타	0		A	
5503.20.0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A	
5503.30.10.00	- - 습식압출로 얻어진 것	0		A	
5503.30.90.00	- - 기타	0		A	
5503.40.0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A	
5503.90.10.00	- - 비닐	0		A	
5503.90.90.00	- - 기타	0		A	
5504.10.00.0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A	
5504.90.00.00	- 기타	15		E	
5505.10.00.00	- 합성섬유의 것	10		E	
5505.20.00.00	- 재생 · 반(半)합성 섬유의 것	10		E	
5506.10.0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A	
5506.20.0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A	
5506.30.0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A	
5506.40.0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A	
5506.90.00.00	- 기타	0		A	

5507.00.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5508.10.10.00	- - 소매용	15		E	
5508.10.90.00	- - 기타	15		E	
5508.20.10.00	- - 소매용	25		E	
5508.20.90.00	- - 기타	15		E	
5509.11.00.00	- - 단사	15		E	
5509.12.00.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15		E	
5509.21.00.00	- - 단사	15		E	
5509.22.00.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15		E	
5509.31.00.00	- - 단사	15		E	
5509.32.00.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15		E	
5509.41.00.00	- - 단사	15		E	
5509.42.00.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15		E	
5509.51.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15		E	
5509.52.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15		E	
5509.53.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7.5		E	
5509.59.00.00	- - 기타	15		E	
5509.61.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15		E	
5509.62.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15		E	
5509.69.00.00	- - 기타	15		E	
5509.91.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15		E	
5509.92.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15		E	
5509.99.00.00	- - 기타	15		E	
5510.11.00.00	- - 단사	15		E	
5510.12.00.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15		E	
5510.20.00.00	-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E	
5510.30.00.00	-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E	
5510.90.00.00	- 그 밖의 실	15		E	
5511.10.00.0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25		E	

5511.20.00.0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25		E	
5511.30.00.0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25		E	
5512.1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512.19.00.00	- - 기타	20		E	
5512.2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512.29.00.00	- - 기타	20		E	
5512.9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512.99.00.00	- - 기타	20		E	
5513.11.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20		E	
5513.12.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20		E	
5513.13.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20		E	
5513.1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513.21.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20		E	
5513.23.10.00	-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20		E	
5513.23.90.00	- - - 기타	20		E	
5513.2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513.31.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20		E	
5513.39.10.00	-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20		E	
5513.39.20.00	-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20		E	
5513.39.90.00	- - - 기타	20		E	
5513.41.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20		E	
5513.49.10.00	-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20		E	
5513.49.20.00	-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20		E	
5513.49.90.00	- - - 기타	20		E	
5514.11.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20		E	

5514.12.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20		E	
5514.19.10.00	-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20		E	
5514.19.90.00	- - - 기타	20		E	
5514.21.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20		E	
5514.22.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20		E	
5514.23.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20		E	
5514.2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514.30.1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20		E	
5514.30.2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20		E	
5514.30.3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20		E	
5514.30.9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514.41.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20		E	
5514.42.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20		E	
5514.43.00.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20		E	
5514.49.00.00	- - 그 밖의 직물	20		E	
5515.11.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20		E	
5515.12.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20		E	
5515.13.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20		E	
5515.19.00.00	- - 기타	20		E	
5515.21.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20		E	
5515.22.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20		E	
5515.29.00.00	- - 기타	20		E	
5515.91.00.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20		E	
5515.99.00.00	- - 기타	20		E	
5516.1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516.12.00.00	- - 염색한 것	20		E	

5516.13.00.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0		E	
5516.14.00.00	- - 날염한 것	20		E	
5516.2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516.22.00.00	- - 염색한 것	20		E	
5516.23.00.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0		G	
5516.24.00.00	- - 날염한 것	20		E	
5516.3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516.32.00.00	- - 염색한 것	20		E	
5516.33.00.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0		E	
5516.34.00.00	- - 날염한 것	20		E	
5516.4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516.42.00.00	- - 염색한 것	20		E	
5516.43.00.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0		E	
5516.44.00.00	- - 날염한 것	20		E	
5516.9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5516.92.00.00	- - 염색한 것	20		E	
5516.93.00.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20		E	
5516.94.00.00	- - 날염한 것	20		E	
5601.2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5		A	
5601.2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5		E	
5601.29.00.00	- - 기타	15		E	
5601.30.00.00	-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	5		A	
5602.10.00.00	-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7.5		E	
5602.2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5		E	
5602.29.00.00	-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5		E	
5602.90.00.00	- 기타	15		E	
5603.11.00.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0		A	
5603.12.10.00	- - - 폴리에스테르의 것(스티렌-부타디엔 고무를 침투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3그램 이상이고 폭이 75밀리미터인 미리 잘라진 것으로 한정한다)	15		A	
5603.12.90.10	- - - - 부직포(1제곱미터당 평량이 25그램 이상 70그램 이하이며 폴리에틸렌으로 도포되고 압출 방식으로 얻어진 저귀 제조만을 위한 것으로서, 최대폭이 1,000밀리미터로 미리 잘라진 것으로 한정한다)	0		A	

5603.12.90.20	- - - - 롤 모양의 부직포(1제곱미터당 평량이 25그램 이상 70그램 이하이며 비스코스와 폴리에스테르를 혼방하거나 비스코스와 폴리프로필렌을 혼방한 것으로서, 최대폭이 2,400밀리미터인 물수건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5603.12.90.90	- - - - 기타	15		E	
5603.13.00.10	- - - 주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 진 것(표면에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저귀 제조용 부직포로서 최대 폭 1,000밀리미터로 절단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5603.13.00.90	- - - 기타	7.5		E	
5603.14.00.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15		E	
5603.91.00.10	- - - 롤 모양의 부직포[비스코스와 폴리프로필렌을 혼합한 것으로서, 물수건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5603.91.00.90	- - - 기타	15		E	
5603.92.00.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0		A	
5603.93.00.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0		A	
5603.94.00.10	- - - 롤 모양의 부직포(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기저귀와 기름·지방을 흡수하는 천 제조용의 것으로서, 길이가 144피트이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5603.94.00.90	- - - 기타	15		E	
5604.10.00.00	-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E	
5604.90.20.00	- - 강력사(타이어 제조용으로 가황하지 않은 고무를 침투 또는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E	
5604.90.90.00	- - 기타	15		E	
5605.00.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5606.00.00.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15		E	
5607.21.00.00	- - 포장용 끈	15		E	
5607.29.00.00	- - 기타	15		E	
5607.41.00.00	- - 포장용 끈	15		E	
5607.49.00.00	- - 기타	0		A	
5607.50.00.00	-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A	

5607.90.00.00	- 기타	15		E	
5608.11.00.10	- - - 모노필라멘트로 만든 것	0		A	
5608.11.00.20	- - - 멀티필라멘트로 만든 것	0		A	
5608.11.00.90	- - - 기타	0		A	
5608.19.00.00	- - 기타	15		E	
5608.90.00.00	- 기타	0		A	
5609.00.10.00	- 로드 슬링(load sling)[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5		G	
5609.00.90.00	- 기타	15		E	
5701.10.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30		A	
5701.90.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0		A	
5702.10.00.00	- 켈렘(kelem) · 슈맥(schumack) · 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30		A	
5702.20.00.00	-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 깔개	30		A	
5702.3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30		A	
5702.3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30		E	
5702.3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0		A	
5702.4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30		A	
5702.4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30		E	
5702.4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0		A	
5702.50.00.00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30		A	
5702.9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30		A	
5702.9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30		E	
5702.9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0		A	
5703.10.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30		A	
5703.20.0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30		E	
5703.30.00.00	-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0		E	
5703.90.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0		E	
5704.10.00.0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30		A	
5704.20.00.0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0		E	
5704.90.00.00	- 기타	30		E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0		E	
5801.10.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0		E	
5801.21.00.00	-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0		E	

5801.22.00.00	-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0		E	
5801.23.00.00	-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0		E	
5801.26.00.00	- - 셔닐(chenille)직물	20		E	
5801.27.10.00	- - - 절단되지 않은 것[컬(curled)가공된 것]	20		E	
5801.27.20.00	- - - 절단된 것	20		E	
5801.31.00.00	-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0		E	
5801.32.00.00	-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0		E	
5801.33.00.00	-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0		E	
5801.36.00.00	- - 셔닐(chenille)직물	20		E	
5801.37.00.00	- - 벨벳과 경(經)파일(pile)	20		X	
5801.90.00.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20		E	
5802.1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	20		E	
5802.19.00.00	- - 기타	20		E	
5802.20.00.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20		E	
5802.30.00.00	- 터프트(tuft)한 직물	20		E	
5803.00.10.00	- 면으로 만든 것	20		E	
5803.00.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	20		E	
5804.10.00.00	- 툴(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20		E	
5804.21.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0		E	
5804.2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0		E	
5804.30.00.00	- 손으로 만든 레이스	20		E	
5805.00.00.00	고블랭(gobelin)직 · 플랜더스(flanders)직 · 오뮈송(aubusson)직 · 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 포인트(petit point) · 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0		A	
5806.10.00.00	-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셔닐(chenille)직물	20		E	
5806.20.00.00	-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E	
5806.31.00.00	- - 면으로 만든 것	20		E	
5806.32.10.00	- - - 두께가 4.1센티미터 이하인 것	20		E	
5806.32.90.00	- - - 기타	20		E	
5806.3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0		E	
5806.40.00.00	-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덱)	20		E	
5807.10.00.00	- 직조한 것	20		E	

5807.90.00.00	- 기타	20		E	
5808.10.00.00	-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20		E	
5808.90.00.00	- 기타	20		E	
5809.00.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 (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 외한다)	20		E	
5810.10.00.00	-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하 다)	20		E	
5810.91.00.00	- - 면으로 만든 것	20		E	
5810.9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0		E	
5810.9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0		E	
5811.00.00.00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 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20		E	
5901.10.00.00	-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 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20		E	
5901.90.00.00	- 기타	20		E	
5902.10.10.00	- - 고무가공을 한 것	0		A	
5902.10.90.00	- - 기타	0		A	
5902.20.10.00	- - 고무가공을 한 것	0		A	
5902.20.90.00	- - 기타	0		A	
5902.90.00.00	- 기타	0		A	
5903.10.00.00	- 폴리(염화비닐)의 것	15		D	
5903.20.00.00	- 폴리우레탄의 것	15		E	
5903.90.00.00	- 기타	20		A	
5904.10.00.00	- 리놀륨	20		E	
5904.90.00.00	- 기타	20		E	
5905.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20		G	
5906.10.00.00	-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30		E	
5906.91.00.00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30		E	
5906.99.10.00	- -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나 폴리에스테 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20		E	
5906.99.90.00	- - - 기타	20		E	
5907.00.00.0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 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20		E	

5908.00.00.00	램프용 · 스토브용 · 라이터용 · 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 · 편조 · 편직 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15		E	
5909.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 · 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A	
5910.00.00.10	- 고무가공을 한 단순한 면 밴드	0		A	
5910.00.00.90	- 기타	15		E	
5911.10.00.00	-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식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식물로서 고무 · 가죽 또는 그 밖의 물품을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식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5		C	
5911.20.00.00	-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15		E	
5911.31.00.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5		C	
5911.32.00.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5		C	
5911.40.00.00	-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 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0		A	
5911.90.10.00	- - 개스킷(gasket)이나 와셔(washer)	15		E	
5911.90.90.10	- - - 식물 디스크	0		A	
5911.90.90.90	- - - 기타	15		E	
6001.10.00.00	- 롱파일(long pile) 편물	20		E	
6001.21.00.00	- - 면으로 만든 것	20		E	
6001.2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0		E	
6001.2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0		E	
6001.91.00.00	- - 면으로 만든 것	20		E	
6001.9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0		E	
6001.9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0		E	
6002.40.00.0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0		E	
6002.90.00.00	- 기타	20		E	
6003.10.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0		E	
6003.20.00.00	- 면으로 만든 것	20		E	
6003.30.0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0		E	
6003.40.00.00	-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0		E	
6003.90.00.00	- 기타	20		E	

6004.10.00.0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총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20		G	
6004.90.00.00	- 기타	20		E	
6005.2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6005.22.00.00	- - 염색한 것	20		E	
6005.23.00.00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0		E	
6005.24.00.00	- - 날염한 것	20		E	
6005.35.00.00	-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식물	20		E	
6005.36.00.00	- -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G	
6005.37.00.00	-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G	
6005.38.00.00	- -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G	
6005.39.00.00	- -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G	
6005.4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6005.42.00.00	- - 염색한 것	20		E	
6005.43.00.00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0		E	
6005.44.00.00	- - 날염한 것	20		E	
6005.90.00.00	- 기타	20		E	
6006.10.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0		E	
6006.2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G	
6006.22.00.00	- - 염색한 것	20		G	
6006.23.00.00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0		E	
6006.24.00.00	- - 날염한 것	20		E	
6006.3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6006.32.00.00	- - 염색한 것	20		G	
6006.33.00.00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0		E	
6006.34.00.00	- - 날염한 것	20		G	
6006.41.00.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0		E	
6006.42.00.00	- - 염색한 것	20		E	
6006.43.00.00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20		E	
6006.44.00.00	- - 날염한 것	20		E	
6006.90.00.00	- 기타	20		E	
6101.20.00.00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1.30.0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1.90.1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1.9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102.10.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2.20.00.00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2.30.0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2.90.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3.10.1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3.10.2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3.10.9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	10% + USD 5.5/kg		X	
6103.2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3.2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3.29.10.0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3.29.90.00	- - - 기타	10% + USD 5.5/kg		X	
6103.3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3.3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3.3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3.3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3.4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3.4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3.4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3.4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1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19.10.0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19.20.00	-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19.90.00	- - - 기타	10% + USD 5.5/kg		X	
6104.2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2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29.10.0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29.90.00	- - - 기타	10% + USD 5.5/kg		X	
6104.3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3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3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3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4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4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4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44.00.00	- -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4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5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5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5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5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6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6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6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4.6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5.10.00.00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5.20.10.00	-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5.20.90.00	- - 그 밖의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5.90.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6.10.00.00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6.20.0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6.90.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7.1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7.1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7.1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7.2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7.2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7.2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7.9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7.99.10.00	-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7.99.90.00	- - - 기타	10% + USD 5.5/kg		X	
6108.11.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8.1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8.2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8.2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8.2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8.3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8.3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8.3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8.9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8.9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8.9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9.10.00.00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9.90.10.00	-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09.9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110.11.10.00	- - - 저지(jersey)	10% + USD 5.5/kg		X	
6110.11.20.00	- - - 웨이스트코트(waistcoat)	10% + USD 5.5/kg		X	
6110.11.30.00	- - - 카디건(cardigan)	10% + USD 5.5/kg		X	
6110.11.90.00	- - - 기타	10% + USD 5.5/kg		X	
6110.12.00.00	- -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0.19.10.00	- - - 저지(jersey)	10% + USD 5.5/kg		X	
6110.19.20.00	- - - 웨이스트코트(waistcoat)	10% + USD 5.5/kg		X	
6110.19.30.00	- - - 카디건(cardigan)	10% + USD 5.5/kg		X	
6110.19.90.00	- - - 기타	10% + USD 5.5/kg		X	

6110.20.10.00	- - 저지(jersey)	10% + USD 5.5/kg		X	
6110.20.20.00	- - 웨이스트코트(waistcoat)	10% + USD 5.5/kg		X	
6110.20.30.00	- - 카디건(cardigan)	10% + USD 5.5/kg		X	
6110.2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110.30.10.00	-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0.3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110.90.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1.20.00.00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1.30.0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1.90.1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1.9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112.1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2.12.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2.1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2.20.00.00	- 스키슈트	10% + USD 5.5/kg		X	
6112.31.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2.3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2.41.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2.4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3.00.00.00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 + USD 5.5/kg		X	
6114.20.00.00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4.30.0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4.90.1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4.9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115.10.10.00	- - 단계압박 양말류	10% + USD 5.5/kg		X	
6115.1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115.21.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 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 USD 5.5/kg		X	
6115.22.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 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 USD 5.5/kg		X	
6115.2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	10% + USD 5.5/kg		X	
6115.30.1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5.3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115.94.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5.95.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5.96.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5.9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6.10.00.00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10% + USD 5.5/kg		X	
6116.9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6.9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6.9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6.9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7.10.00.00	- 숄(shawl)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 · 베일(veil) 과 이와 유사한 물품	10% + USD 5.5/kg		X	
6117.80.10.00	- - 무릎과 발목 보호대	10% + USD 5.5/kg		X	

6117.80.20.00	- - 넥타이류	10% + USD 5.5/kg		X	
6117.8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117.90.1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117.9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201.1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1.1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1.13.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1.1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1.9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1.9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1.93.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1.9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2.1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2.1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2.13.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2.1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2.9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2.9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2.93.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2.9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3.1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3.12.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3.1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3.2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3.2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3.29.10.0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3.29.90.00	- - - 기타	10% + USD 5.5/kg		X	
6203.3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3.3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3.3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3.3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3.4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3.42.10.00	- - - 데님(denim)의 것	10% + USD 5.5/kg		X	
6203.42.20.00	- - - 코듀로이(corduroy)의 것	10% + USD 5.5/kg		X	
6203.42.90.00	- - - 기타	10% + USD 5.5/kg		X	
6203.4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3.4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1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1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1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1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2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2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2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2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3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3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3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3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4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4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4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44.00.00	- -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4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5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5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5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5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61.0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6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6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4.6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5.20.00.00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5.30.0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5.90.1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5.9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206.10.00.0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6.20.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6.30.00.00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6.40.0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6.90.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7.1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7.1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7.2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7.2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7.2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7.9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7.99.10.00	-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7.99.90.00	- - - 기타	10% + USD 5.5/kg		X	
6208.11.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8.1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8.2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8.2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8.2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8.9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8.9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8.9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9.20.00.00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9.30.0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9.90.10.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09.9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210.10.00.00	- 제5602호나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0.20.00.00	- 그 밖의 의류(소호 제6201.11.00호부터 제6201.19.00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 USD 5.5/kg		X	
6210.30.00.00	- 그 밖의 의류(소호 제6202.11.00호부터 제6202.19.00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 USD 5.5/kg		X	
6210.40.00.00	-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10% + USD 5.5/kg		X	
6210.50.00.00	-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10% + USD 5.5/kg		X	
6211.11.00.00	- - 남성용이나 소년용	10% + USD 5.5/kg		X	
6211.12.00.00	- - 여성용이나 소녀용	10% + USD 5.5/kg		X	
6211.20.00.00	- 스키슈트	10% + USD 5.5/kg		X	
6211.3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1.33.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1.39.10.0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1.39.90.00	- - - 기타	10% + USD 5.5/kg		X	
6211.42.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1.43.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1.49.10.0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1.49.90.00	- - - 기타	10% + USD 5.5/kg		X	
6212.10.00.00	- 브래지어	10% + USD 5.5/kg		X	
6212.20.00.00	- 거들과 팬티거들	10% + USD 5.5/kg		X	
6212.30.00.00	- 코르슬렛(corselette)	10% + USD 5.5/kg		X	
6212.90.00.00	- 기타	10% + USD 5.5/kg		X	
6213.20.00.00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3.90.10.00	-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3.9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214.10.00.0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4.20.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4.30.0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4.40.00.00	-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4.90.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5.10.00.0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5.20.0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5.90.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216.00.10.00	- 작업자 보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10% + USD 5.5/kg		X	
6216.00.90.00	- 기타	10% + USD 5.5/kg		X	
6217.10.00.00	- 부속품	10% + USD 5.5/kg		X	
6217.90.00.00	- 부분품	10% + USD 5.5/kg		X	

6301.10.00.00	- 전기모포	10% + USD 5.5/kg		X	
6301.20.10.00	- - 양모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1.20.20.00	- - 비큐나(vicuna)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1.2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301.30.00.00	-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	10% + USD 5.5/kg		X	
6301.40.00.00	-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	10% + USD 5.5/kg		X	
6301.90.00.00	- 그 밖의 모포	10% + USD 5.5/kg		X	
6302.10.1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2.1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302.2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2.2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2.2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2.3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2.32.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2.3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2.40.1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2.4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302.5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2.53.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2.59.10.00	- - - 린넨(linen)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2.59.90.00	- - - 기타	10% + USD 5.5/kg		X	

6302.60.00.00	-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 USD 5.5/kg		X	
6302.9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2.93.00.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2.99.10.00	- - - 린넨(linen)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2.99.90.00	- - - 기타	10% + USD 5.5/kg		X	
6303.12.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3.19.10.00	-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3.19.90.00	- - - 기타	10% + USD 5.5/kg		X	
6303.91.0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3.92.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3.9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4.11.00.00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4.19.00.00	- - 기타	10% + USD 5.5/kg		X	
6304.20.00.00	- 베드 넷트(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 USD 5.5/kg		X	
6304.91.00.00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4.92.00.00	- -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0% + USD 5.5/kg		X	
6304.93.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0% + USD 5.5/kg		X	
6304.9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0% + USD 5.5/kg		X	
6305.10.10.00	- - 황마로 만든 것	0		A	
6305.1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305.20.00.00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X	

6305.32.00.00	- -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 USD 5.5/kg		X	
6305.33.10.00	- - - 폴리에틸렌의 것	10% + USD 5.5/kg		X	
6305.33.20.00	- - - 폴리프로필렌의 것	10% + USD 5.5/kg		X	
6305.39.00.00	- - 기타	10% + USD 5.5/kg		X	
6305.90.10.00	- - 피타 섬유[까부야(cabuya), 피께(fique)]의 것	10% + USD 5.5/kg		X	
6305.9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306.12.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A	
6306.19.10.00	-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A	
6306.19.90.00	- - - 기타	10% + USD 5.5/kg		A	
6306.22.00.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A	
6306.29.0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A	
6306.30.00.00	- 돛	10% + USD 5.5/kg		A	
6306.40.00.00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10% + USD 5.5/kg		A	
6306.90.10.00	- - 면으로 만든 것	10% + USD 5.5/kg		A	
6306.90.90.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 USD 5.5/kg		A	
6307.10.00.00	- 마루뒹이포 · 접시뒹이포 · 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10% + USD 5.5/kg		E	
6307.20.00.00	- 구멍재킷과 구멍벨트	10% + USD 5.5/kg		A	
6307.90.10.00	- -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10% + USD 5.5/kg		E	
6307.90.20.00	- - 안전벨트	10% + USD 5.5/kg		A	
6307.90.30.00	- - 보호용 마스크	0		A	
6307.90.40.00	- - 로드 슬링(load sling)[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 USD 5.5/kg		G	
6307.90.90.00	- - 기타	10% + USD 5.5/kg		E	

6308.00.00.00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10% + USD 5.5/kg		E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10% + USD 5.5/kg		X	
6310.10.10.00	- - 의류 공업에서 발생한 자투리 조각	10% + USD 5.5/kg		X	
6310.10.90.00	- - 기타	10% + USD 5.5/kg		X	
6310.90.00.00	- 기타	10% + USD 5.5/kg		X	
6401.10.00.00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10% + USD 6/켤레		G	
6401.92.00.00	-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10% + USD 6/켤레		E	
6401.99.00.00	- - 기타	10% + USD 6/켤레		E	
6402.12.00.00	-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10% + USD 6/켤레		A	
6402.19.00.11	- - - - 운동화	15		E	
6402.19.00.12	- - - - 축구화	15		E	
6402.19.00.19	- - - - 기타	15		E	
6402.19.00.90	- - - 기타	10% + USD 6/켤레		G	
6402.20.00.00	-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 USD 6/켤레		E	
6402.91.00.00	- - 발목을 덮는 것	10% + USD 6/켤레		E	
6402.99.10.00	- - - 보호용 금속 토캡을 넣은 것	10% + USD 6/켤레		G	
6402.99.90.10	- - - - 특수용도의 신발	15		E	
6402.99.90.90	- - - - 기타	10% + USD 6/켤레		G	
6403.12.00.00	-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10% + USD 6/켤레		A	
6403.19.00.11	- - - - 운동화	15		E	
6403.19.00.12	- - - - 축구화	15		E	
6403.19.00.19	- - - - 기타	15		G	
6403.19.00.90	- - - 기타	10% + USD 6/켤레		G	

6403.20.00.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 + USD 6/켈레		E	
6403.40.00.0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 USD 6/켈레		X	
6403.51.00.00	- - 발목을 덮는 것	10% + USD 6/켈레		G	
6403.59.00.00	- - 기타	10% + USD 6/켈레		E	
6403.91.10.00	- - - 신발류[베이스나 플랫폼이 나무로 된 것으로 안창 또는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 USD 6/켈레		E	
6403.91.90.00	- - - 기타	10% + USD 6/켈레		E	
6403.99.10.00	- - - 신발류[베이스나 플랫폼이 나무로 된 것으로 안창 또는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 USD 6/켈레		E	
6403.99.90.10	- - - - 특수용도의 신발	15		E	
6403.99.90.90	- - - - 기타	10% + USD 6/켈레		X	
6404.11.10.11	- - - - - 운동화	15		G	
6404.11.10.12	- - - - - 축구화	15		E	
6404.11.10.19	- - - - - 기타	15		E	
6404.11.10.90	- - - - 기타	10% + USD 6/켈레		E	
6404.11.20.11	- - - - - 테니스화	15		E	
6404.11.20.12	- - - - - 농구화	15		E	
6404.11.20.13	- - - - - 체조화	15		E	
6404.11.20.19	- - - - - 기타	15		E	
6404.11.20.90	- - - - 기타	10% + USD 6/켈레		E	
6404.19.00.00	- - 기타	10% + USD 6/켈레		G	
6404.20.00.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 + USD 6/켈레		E	
6405.10.00.00	-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0% + USD 6/켈레		E	
6405.20.00.00	-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0% + USD 6/켈레		E	
6405.90.00.00	- 기타	10% + USD 6/켈레		E	
6406.10.00.00	-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10% + USD 3/유닛		X	

6406.20.00.00	-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5		X	
6406.90.10.00	- -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15		E	
6406.90.90.10	- - - 버트레스(butress) · 캐필런(capillons) · 레깅스 · 힐 양말	15		E	
6406.90.90.20	- - - 토캡(toe-cap)	15		A	
6406.90.90.90	- - - 기타	10% + USD 3/유닛		X	
6501.00.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15		C	
6502.00.10.00	- 토킬라(toquilla) 짚이나 모코라(mocora) 짚으로 만든 것	15		E	
6502.00.90.00	- 기타	15		C	
6504.00.00.11	- 토킬라(toquilla) 짚이나 모코라(mocora) 짚으로 만든 것	30		C	
6504.00.00.19	- - 기타	30		C	
6504.00.00.90	- 기타	30		C	
6505.00.10.00	- 헤어네트	30		C	
6505.00.20.00	- 펠트(felt)로 만든 모자[제6501호의 해트보디(hat-body), 후드(hood) 또는 플래토우(plateaux)로 만든 것으로서 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0		C	
6505.00.90.00	- 기타	30		C	
6506.10.00.10	- - 특수용도의 것(제95류의 국내 주 제1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한다)	0		A	
6506.10.00.90	- - 기타	30		C	
6506.91.00.00	- -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0		C	
6506.99.00.00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30		C	
6507.00.00.00	헤드밴드 · 내장재 · 커버 · 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모자의 프레임(frame) · 챙 · 턱끈	15		C	
6601.10.00.00	-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30		C	
6601.91.00.00	- -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30		C	
6601.99.00.00	- - 기타	30		C	
6602.00.00.00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30		C	
6603.20.00.00	-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0		A	
6603.90.00.00	- 기타	15		C	
6701.00.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 깃털과 그 부분 · 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 깃촉(quill)은 제외한다]	15		C	

6702.10.0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0		C	
6702.90.0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30		C	
6703.00.00.00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0		A	
6704.11.00.00	- - 전체가발	30		C	
6704.19.00.00	- - 기타	30		C	
6704.20.00.00	-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30		C	
6704.90.0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30		C	
6801.00.00.00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15		C	
6802.10.00.00	-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가루	15		C	
6802.21.00.00	-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15		E	
6802.23.00.00	- - 화강암	15		E	
6802.29.10.00	- - - 석회질 암석	0		A	
6802.29.90.00	- - - 기타	15		C	
6802.91.00.00	-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25		E	
6802.92.00.00	- - 그 밖의 석회질 암석	15		C	
6802.93.00.00	- - 화강암	15		E	
6802.99.00.00	- - 그 밖의 돌	15		E	
6803.00.00.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15		E	
6804.10.00.00	-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0		A	
6804.21.00.00	- -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6804.22.00.00	- -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0		A	
6804.23.00.00	- - 천연석으로 만든 것	5		C	
6804.30.00.00	- 수지석(手砥石)	5		E	
6805.10.00.00	-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A	
6805.20.00.00	-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A	
6805.30.00.00	-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A	

6806.10.00.00	-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 · 시트(sheet) 모양 ·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6806.20.00.00	-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 팽창점토 · 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0		A	
6806.90.00.00	- 기타	0		A	
6807.10.00.00	- 롤 모양인 것	15		E	
6807.90.00.00	- 기타	0		A	
6808.00.00.00	패널 · 보드 · 타일 · 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 짚 · 목재의 대팻밥 · 칩 · 파티클(particle) · 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 · 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15		C	
6809.11.00.00	- -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15		E	
6809.19.00.00	- - 기타	15		C	
6809.90.00.00	- 그 밖의 제품	15		C	
6810.11.00.00	- - 건축용 블록과 벽돌	15		C	
6810.19.00.00	- - 기타	15		E	
6810.91.00.00	- -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15		E	
6810.99.00.00	- - 기타	0		A	
6811.40.00.10	-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15		C	
6811.40.00.20	- - 그 밖의 판 · 패널 · 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15		C	
6811.40.00.90	- - 기타	15		C	
6811.81.00.00	-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15		C	
6811.82.00.00	- - 그 밖의 시트(sheet) · 패널 · 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15		C	
6811.89.00.00	- - 그 밖의 제품	15		C	
6812.80.00.00	- 청석면의 것	0		A	
6812.91.00.00	- -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 모자류	15		C	
6812.92.00.00	- - 종이 · 표지용 판지 · 펄트(felt)	15		C	
6812.93.00.00	- -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트(jointing)	15		C	
6812.99.10.00	- - - 가공한 섬유, 석면을 기본재료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5		C	
6812.99.20.00	- - - 실	15		C	
6812.99.30.00	- - - 코드(cord)와 스트링(string)(엮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5		C	
6812.99.40.00	- - - 직물,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5		C	
6812.99.50.00	- - - 개스킷(gasket)이나 와셔(washer)	15		E	

6812.99.90.00	- - - 기타	0		A	
6813.20.00.00	- 석면을 함유한 것	0		A	
6813.81.00.00	- -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0		A	
6813.89.00.00	- - 기타	15		E	
6814.10.00.00	-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5		E	
6814.90.00.00	- 기타	0		A	
6815.10.00.00	-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0		A	
6815.20.00.00	- 이탄(泥炭)제품	0		A	
6815.91.00.00	- - 마그네사이트 · 백운석 ·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0		A	
6815.99.00.00	- - 기타	0		A	
6901.00.00.00	벽돌 · 블록 · 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 · 트리폴리트 · 다이아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C	
6902.10.00.00	- 마그네슘 · 칼슘 ·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 · 산화칼슘 ·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0		A	
6902.20.10.00	- -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것	0		A	
6902.20.90.00	- - 기타	0		A	
6902.90.00.00	- 기타	0		A	
6903.10.10.00	- - 레토르트(retort)와 도가니(crucible)	0		A	
6903.10.90.00	- - 기타	0		A	
6903.20.10.00	- - 레토르트(retort)와 도가니(crucible)	0		A	
6903.20.90.00	- - 기타	0		A	
6903.90.10.00	- - 레토르트(retort)와 도가니(crucible)	0		A	
6903.90.90.00	- - 기타	0		A	
6904.10.00.00	- 건축용 벽돌	15		C	
6904.90.00.00	- 기타	15		C	
6905.10.00.00	- 기와(지붕타일)	25		E	
6905.90.00.00	- 기타	25		C	
6906.00.00.00	도자제의 관(管) · 도관(導管) · 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25		E	
6907.21.00.10	-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경우	25		E	
6907.21.00.90	- - - 기타	5% + USD 0.14/kg		G	
6907.22.00.10	- - -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경우	25		E	

6907.22.00.90	- - - 기타	5% + USD 0.14/kg		G	
6907.23.00.10	- - -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경우	25		E	
6907.23.00.90	- - - 기타	5% + USD 0.14/kg		G	
6907.30.00.10	- - -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경우	25		E	
6907.30.00.90	- - - 기타	5% + USD 0.14/kg		E	
6907.40.00.10	- - -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경우	25		E	
6907.40.00.90	- - - 기타	5% + USD 0.14/kg		G	
6909.11.00.10	- - - 수은 회수용으로 100킬로와를 초과하는 열 레토르트(retort) 시스템 엔진	0		A	
6909.11.00.90	- - - 기타	25		E	
6909.12.00.00	-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0		A	
6909.19.00.00	- - 기타	0		A	
6909.90.00.00	- 기타	0		A	
6910.10.00.00	- 자기제의 것	25		E	
6910.90.00.00	- 기타	25		E	
6911.10.00.0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30		E	
6911.90.00.00	- 기타	30		E	
6912.00.00.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30		E	
6913.10.00.00	- 자기제의 것	30		E	
6913.90.00.00	- 기타	30		E	
6914.10.00.10	- - 고무 장갑 제조용 몰드	0		A	
6914.10.00.90	- - 기타	25		E	
6914.90.00.00	- 기타	25		D	
7001.00.1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001.00.30.00	- 유리 괴(塊)	0		A	
7002.10.00.00	- 구(球)	0		A	
7002.20.00.00	- 막대(rod)	0		A	
7002.31.00.00	- -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0		A	
7002.32.00.00	-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 온도당 1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0		A	
7002.39.00.00	- - 기타	0		A	

7003.12.10.00	- - - 편평한 것	10		E	
7003.12.20.00	- - - 줄무늬로 된 것, 물결 모양으로 된 것, 압착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	0		A	
7003.19.10.00	- - - 편평한 것	0		A	
7003.19.20.00	- - - 줄무늬로 된 것, 물결 모양으로 된 것, 압착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	0		A	
7003.20.00.00	-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10		E	
7003.30.00.00	- 프로파일(profile)	15		E	
7004.20.00.00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0		A	
7004.90.00.00	- 그 밖의 유리	0		A	
7005.10.00.00	-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7005.21.11.00	- - - - 플롯트 유리	0		A	
7005.21.19.00	- - - - 기타	0		A	
7005.21.90.00	- - - 기타	0		A	
7005.29.10.00	- - -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005.29.90.00	- - - 기타	0		A	
7005.30.00.00	- 망입(網入) 유리	15		E	
7006.00.00.00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5		E	
7007.11.00.00	-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7.5		G	
7007.19.00.00	- - 기타	15		E	
7007.21.00.00	-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15		G	
7007.29.00.00	- - 기타	15		E	
7008.00.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15		E	
7009.10.00.00	-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20		E	
7009.91.00.00	- - 틀이 붙지 않은 것	25		E	
7009.92.00.00	- - 틀이 붙은 것	25		E	
7010.10.00.00	- 앰플	0		A	
7010.20.00.00	-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0		A	
7010.90.10.00	- - 용적이 1리터를 초과하는 것	0		A	
7010.90.20.00	- - 용적이 0.33리터 초과 1리터 이하인 것	0		A	

7010.90.30.00	- - 용적이 0.15리터 초과 0.33리터 이하인 것	0		A	
7010.90.40.00	- - 용적이 0.15리터 이하인 것	0		A	
7011.10.00.00	- 전등용	0		A	
7011.20.00.00	- 음극선관용	0		A	
7011.90.00.00	- 기타	0		A	
7013.10.00.00	- 유리 도자제의 것	30		C	
7013.22.00.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30		E	
7013.28.00.00	- - 기타	30		E	
7013.33.00.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30		E	
7013.37.00.00	- - 기타	30		E	
7013.41.00.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30		E	
7013.42.00.00	- - 선팡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 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유리로 만든 것	30		E	
7013.49.00.00	- - 기타	30		E	
7013.91.00.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30		E	
7013.99.00.00	- - 기타	30		E	
7014.00.00.00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0		A	
7015.10.00.0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10		E	
7015.90.00.00	- 기타	15		E	
7016.10.00.00	-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 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25		E	
7016.90.10.00	- -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로 무색 유리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30		E	
7016.90.20.00	- - 블록(block) · 패널(panel) · 플레이트(plate) · 셸(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15		E	
7016.90.90.00	- - 기타	15		E	
7017.10.00.00	-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0		A	
7017.20.00.00	- 선팡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 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0		A	
7017.90.00.00	- 기타	0		A	
7018.10.00.00	- 유리로 만든 비드(bead) · 모조 진주 · 모조 귀석 또는 반 귀석 ·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15		E	
7018.20.00.00	-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0		A	
7018.90.00.00	- 기타	15		C	

7019.11.00.00	- -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019.12.00.00	- - 로빙(roving)	0		A	
7019.19.00.00	- - 기타	0		A	
7019.31.00.00	- - 매트(mat)	0		A	
7019.32.00.00	- - 얇은 시트(sheet)(보일)	0		A	
7019.39.00.00	- - 기타	0		A	
7019.40.00.00	- - 로빙(roving) 직물	0		A	
7019.51.00.00	-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E	
7019.52.00.00	- -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019.59.00.00	- - 기타	0		A	
7019.90.10.00	- - 글라스 울(glass wool)(벌크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으로 한정한다)	0		A	
7019.90.90.00	- - 기타	0		A	
7020.00.10.00	- 유리 외피(진공단열처리되거나 그 밖의 항온 용기용으로 한정한다)	0		A	
7020.00.90.00	- 기타	0		A	
7101.10.00.00	- 천연진주	0		A	
7101.21.00.00	- - 가공하지 않은 것	0		A	
7101.22.00.00	- - 가공한 것	0		A	
7102.10.00.00	- 선별하지 않은 것	0		A	
7102.21.00.00	-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102.29.00.00	- - 기타	0		A	
7102.31.00.00	-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102.39.00.00	- - 기타	0		A	
7103.10.10.00	- - 에메랄드	0		A	
7103.10.20.00	- - 아메트린(ametrino)[볼리비아나이트(bolivianita)]	0		A	
7103.10.90.00	- - 기타	0		A	
7103.91.10.00	- - - 루비와 사파이어	0		A	
7103.91.20.00	- - - 에메랄드	0		A	
7103.99.10.00	- - - 아메트린(ametrino)[볼리비아나이트(bolivianita)]	0		A	
7103.99.90.00	- - - 기타	0		A	
7104.10.00.00	- 압전기용 석영	0		A	
7104.20.00.00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7104.90.00.00	- 기타	0		A	

7105.10.00.00	- 다이아몬드의 것	0		A	
7105.90.00.00	- 기타	0		A	
7106.10.00.00	- 가루	0		A	
7106.91.10.00	- - - 합금하지 않은 것	0		A	
7106.91.20.00	- - - 합금한 것	0		A	
7106.92.00.00	- - 반가공한 것	0		A	
7107.00.00.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C	
7108.11.00.00	- - 가루	0		A	
7108.12.00.00	- -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0		A	
7108.13.00.00	- -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0		A	
7108.20.00.00	- 화폐용	0		A	
7109.00.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110.11.00.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A	
7110.19.00.00	- - 기타	0		A	
7110.21.00.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A	
7110.29.00.00	- - 기타	0		A	
7110.31.00.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A	
7110.39.00.00	- - 기타	0		A	
7110.41.00.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A	
7110.49.00.00	- - 기타	0		A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112.30.00.00	-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0		A	
7112.91.00.00	- -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0		A	
7112.92.00.00	-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0		A	
7112.99.00.00	- - 기타	0		A	
7113.11.00.00	-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 지에 상관없다)	30		E	
7113.19.00.00	-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 지에 상관없다)	30		E	
7113.20.00.0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30		E	
7114.11.10.00	- - - 순도 0.925인 것	30		E	
7114.11.90.00	- - - 기타	30		E	

7114.19.00.00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 인지에 상관없다)	30		E	
7114.20.00.0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30		E	
7115.10.00.00	-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115.90.00.00	- 기타	25		E	
7116.10.00.00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30		E	
7116.20.00.00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30		E	
7117.11.00.00	- -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25		E	
7117.19.00.00	- - 기타	30		E	
7117.90.00.00	- 기타	30		E	
7118.10.00.00	-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10		E	
7118.90.00.00	- 기타	15		E	
7201.10.0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01.20.0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E	
7201.50.00.00	-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0		A	
7202.11.00.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0		A	
7202.19.00.00	- - 기타	0		A	
7202.21.00.00	- -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0		A	
7202.29.00.00	- - 기타	0		A	
7202.30.00.00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0		A	
7202.41.00.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0		A	
7202.49.00.00	- - 기타	0		A	
7202.50.00.00	-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0		A	
7202.60.00.00	- 페로니켈(ferro-nickel)	0		A	
7202.70.00.00	-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0		A	
7202.80.00.00	-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 silico-tungsten)	0		A	
7202.91.00.00	- -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 silico-titanium)	0		A	
7202.92.00.00	-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0		A	
7202.93.00.00	- - 페로니오븀(ferro-niobium)	0		A	
7202.99.00.00	- - 기타	0		A	
7203.10.00.00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A	

7203.90.00.00	- 기타	0		A	
7204.10.00.00	- 주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204.21.00.00	- - 스테인리스강의 것	0		A	
7204.29.00.00	- - 기타	0		A	
7204.30.00.00	-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204.41.00.00	- - 선삭(旋削) · 세이빙(shaving) · 칩 · 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 · 톱밥 · 파일링(filing) · 트리밍(trimming) · 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A	
7204.49.00.00	- - 기타	0		A	
7204.50.00.00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0		A	
7205.10.00.00	- 알갱이	0		A	
7205.21.00.00	- - 합금강의 것	0		A	
7205.29.00.00	- - 기타	0		A	
7206.10.00.00	- 잉곳(ingot)	0		A	
7206.90.00.00	- 기타	15		A	
7207.11.00.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E	
7207.12.00.00	- - 기타(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07.19.00.00	- - 기타	0		A	
7207.20.00.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10		E	
7208.10.10.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7208.10.20.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8.10.3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8.10.4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08.25.10.00	-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7208.25.20.00	-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8.26.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8.27.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08.36.00.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7208.37.10.0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12 이상인 것	0		A	
7208.37.90.00	- - - 기타	0		A	
7208.38.10.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12 이상인 것	0		A	
7208.38.90.00	- - 기타	0		A	
7208.39.10.0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12 이상인 것	0		A	
7208.39.91.00	- - - 두께가 1.8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8.39.99.00	- - - 기타	0		A	

7208.40.10.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7208.40.20.10	- - - 길이가 6,0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8.40.20.90	- - - 기타	0		A	
7208.40.30.10	- - - 길이가 6,0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8.40.30.90	- - - 기타	0		A	
7208.40.40.10	- - - 길이가 6,0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8.40.40.90	- - - 기타	0		A	
7208.51.10.00	- - - 두께가 12.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7208.51.20.00	- - -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 12.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8.52.10.10	- - - - 길이가 6,0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8.52.10.90	- - - - 기타	0		A	
7208.52.90.10	- - - - 길이가 6,0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8.52.90.90	- - - - 기타	0		A	
7208.53.00.10	- - - 길이가 6,0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8.53.00.90	- - - 기타	0		A	
7208.54.00.10	- - - 길이가 6,0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8.54.00.90	- - - 기타	0		A	
7208.90.00.00	- 기타	0		A	
7209.15.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0		A	
7209.16.00.00	- -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09.17.00.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9.18.10.00	-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 0.2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A	
7209.18.20.00	- - - 두께가 0.2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09.25.00.10	- - - 길이가 3,0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9.25.00.90	- - - 기타	0		A	
7209.26.00.10	- - - 길이가 3,0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9.26.00.90	- - - 기타	0		A	
7209.27.00.10	- - - 길이가 3,0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9.27.00.90	- - - 기타	0		A	
7209.28.00.10	- - - 길이가 3,0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09.28.00.90	- - - 기타	0		A	
7209.90.00.00	- 기타	0		A	
7210.11.00.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A	
7210.12.00.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10.20.00.00	-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합석판을 포함한다)	0		A	

7210.30.00.0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0.41.00.00	- - 물결 모양의 것	20		G	
7210.49.00.10	- -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길이가 3,0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10.49.00.90	- - - 기타	0		A	
7210.50.00.0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0.61.00.00	-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0.69.00.00	- - 기타	0		A	
7210.70.10.00	- - 사전에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0.70.90.00	- - 기타	0		A	
7210.90.00.00	- 기타	0		A	
7211.13.00.00	- -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0		A	
7211.14.00.00	- -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11.19.10.0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	0		A	
7211.19.90.00	- - - 기타	0		A	
7211.23.00.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0		A	
7211.29.00.00	- - 기타	5		E	
7211.90.00.00	- 기타	0		A	
7212.10.00.00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2.20.00.0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2.30.00.0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C	
7212.40.00.00	-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0		A	
7212.50.00.0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A	
7212.60.00.00	- 클래드(clad)한 것	0		A	
7213.10.0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 리브(rib) · 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25		X	
7213.20.00.00	-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X	
7213.91.10.00	- - - 크로뮴 · 니켈 · 구리 · 몰리브데늄을 합제한 함유량이 100분의 0.12 미만인 것	20		X	

7213.91.90.00	- - - 기타	20		X	판제가 극저 결폐되는 다금의 선재는 제외한다. 용접 와이어 제조용 또는 가전제품의 크롬도금공정 용[특히{도금 품질(plating quality)} 스크루용{냉간 압조 품질(CHQ: cold heading quality)}], 금속 세척 공업용의 제품 생산용[고망간(HM: high manganese)], 그리고 탄소의 함유량이 100분의 0.35를 초과하는 선재(SAE가 1035 이상인 것)(SAE: 화학 조성을 기초로 한 강(鋼) 분류 시스템)
7213.99.00.00	- - 기타	20		X	
7214.10.0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인치 이상 12인치 이 하인 것	0		A	
7214.10.00.90	- - 기타	20		G	
7214.20.0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 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20		X	
7214.3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E	
7214.30.90.00	- - 기타	20		E	
7214.91.20.00	- - -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X	
7214.91.90.00	- - - 기타	20		X	
7214.99.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X	
7214.99.90.00	- - 기타	20		E	
7215.1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E	
7215.10.90.00	- - 기타	20		E	
7215.5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X	
7215.50.90.00	- - 기타	20		E	
7215.9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E	
7215.90.90.00	- - 기타	20		E	
7216.10.00.00	-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지(H)형강[열간(熱間)압연· 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E	
7216.21.00.00	- - 엘(L)형강	10		X	
7216.22.00.00	- - 티(T)형강	20		E	
7216.31.00.10	- - - 구멍을 뚫지도 도장하지도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도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6 미터·9미터·12미터로만 제시된 것	0		A	
7216.31.00.90	- - - 기타	20		E	
7216.32.00.10	- - - 구멍을 뚫지도 도장하지도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도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6 미터·9미터·12미터로만 제시된 것	0		A	

7216.32.00.90	- - - 기타	20		E	
7216.33.00.10	- - - 구멍을 뚫지도 도장하지도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도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6 미터 · 9미터 · 12미터로만 제시된 것	0		A	
7216.33.00.90	- - - 기타	20		E	
7216.40.00.00	-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 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 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G	
7216.50.00.00	-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 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E	
7216.61.00.00	-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20		G	
7216.69.00.00	- - 기타	20		E	
7216.91.00.00	-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 리한 것	20		G	
7216.99.00.00	- - 기타	20		E	
7217.10.00.00	-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		X	
7217.20.00.00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25		X	
7217.30.00.10	- - 구리를 도포한 것(지름이 1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17.30.00.90	- - 기타	0		A	
7217.90.00.00	- 기타	25		X	
7218.10.00.0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0		A	
7218.91.00.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0		A	
7218.99.00.00	- - 기타	0		A	
7219.11.00.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7219.12.00.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19.13.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19.14.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19.21.00.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7219.22.00.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19.23.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19.24.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19.31.00.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A	
7219.32.00.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19.33.00.00	-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19.34.00.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19.35.00.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19.90.00.00	- 기타	0		A	

7220.11.00.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A	
7220.12.00.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A	
7220.20.00.0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A	
7220.90.00.00	- 기타	0		A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	5		C	
7222.11.10.00	- - - 지름이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22.11.90.00	- - - 기타	0		A	
7222.19.10.00	- - - 횡단면이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E	
7222.19.90.00	- - - 기타	10		E	
7222.2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22.20.90.00	- - 기타	0		A	
7222.3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22.30.90.00	- - 기타	0		A	
7222.40.00.00	- 형강(形鋼)	0		A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0		A	
7224.10.00.0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0		A	
7224.90.00.00	- 기타	0		A	
7225.11.00.00	- - 방향성(方向性)인 것	0		A	
7225.19.00.00	- - 기타	0		A	
7225.30.00.00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225.40.00.10	- - 두께가 10밀리미터 미만이고 길이가 6,0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25.40.00.90	- - 기타	0		A	
7225.50.00.10	- - 고속도강의 것	0		A	
7225.50.00.90	- - 기타	0		A	
7225.91.00.10	- - - 고속도강의 것	0		A	
7225.91.00.90	- - - 기타	0		A	
7225.92.00.10	- - - 고속도강의 것	0		A	
7225.92.00.90	- - - 기타	0		A	
7225.99.00.10	- - - 고속도강의 것	0		A	
7225.99.00.90	- - - 기타	0		A	
7226.11.00.00	- - 방향성(方向性)인 것	0		A	
7226.19.00.00	- - 기타	0		A	
7226.20.00.00	- 고속도강의 것	0		A	
7226.91.00.00	-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A	

7226.92.00.00	-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A	
7226.99.00.00	- - 기타	0		A	
7227.10.00.00	- 고속도강의 것	20		X	
7227.20.0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20		X	
7227.90.00.00	- 기타	20		X	관제가 즉시 철폐되는 다음의 전재는 제외한다: 용접 와이어 제조용 또는 가전제품의 크롬도금공정용[특히{도금 품질(plating quality)} 스크루용{냉간 압조 품질(CHQ: cold heading quality)}, 금속 세척 공업용의 제품 생산용{고망간(HM: high manganese)}, 그리고 탄소의 함유량이 100분의 0.35를 초과하는 선재(SAE가 1035 이상인 것)(SAE: 화학 조성을 기초로 한 강(鋼) 부록 시스템)]
7228.10.00.00	- 고속도강의 봉	20		E	
7228.2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E	
7228.20.90.00	- - 기타	20		E	
7228.30.00.10	- - 고탄소 강(鋼)(탄소의 함유량이 100분의 0.5 이상인 것으로 용접용 열처리를 필요로 하는 것)의 것	0		A	
7228.30.00.90	- - 기타	20		E	
7228.40.10.00	- - 횡단면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E	
7228.40.90.00	- - 기타	20		E	
7228.5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E	관제가 즉시 철폐되는 강(鋼)종 4340은 제외한다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크롬은 100분의 0.8, 니켈은 100분의 1.8, 몰리브덴은 100분의 0.25인 합금이며, 담금질과 뜨임(quenched and tempered, Q&T)을 거친 것으로서, 지름이 25.4밀리미터 이상 76.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8.50.90.00	- - 기타	20		E	관제가 즉시 철폐되는 강(鋼)종 4340은 제외한다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크롬은 100분의 0.8, 니켈은 100분의 1.8, 몰리브덴은 100분의 0.25인 합금이며, 담금질과 뜨임(quenched and tempered, Q&T)을 거친 것으로서, 높은 내피로성 및 충격인성이 요구되는 공구 제조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7228.60.10.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E	
7228.60.90.00	- - 기타	20		E	
7228.70.00.10	- - 양면의 날개의 크기가 동일한 형강의 것(프로파일 높이가 1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길이가 6미터 · 9미터 · 12미터로만 제시된 것)	0		A	

7228.70.00.20	- - 유(U) · 아이(I) 또는 에이치(H) 형강(구멍을 뚫지도 도장하지도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도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6미터 · 9미터 · 12미터로만 제시된 것)	0		A	
7228.70.00.90	- - 기타	20		E	
7228.80.00.00	- 중공(中空)드릴봉	20		E	
7229.20.00.10	- - 지름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229.20.00.90	- - 기타	20		E	
7229.90.00.00	- 기타	20		X	
7301.10.00.00	- 널말뚝(sheet piling)	20		G	
7301.20.00.00	- 형강(形鋼)	25		G	
7302.10.00.00	- 레일(rail)	20		A	
7302.30.00.00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20		A	
7302.40.00.00	-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20		A	
7302.90.10.00	- - 받침목(크로스타이)	20		A	
7302.90.90.00	- - 기타	20		A	
7303.00.00.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15		A	
7304.11.00.00	-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A	
7304.19.00.00	- - 기타	0		A	
7304.22.00.00	-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15		A	
7304.23.00.00	- - 그 밖의 드릴파이프	15		A	
7304.24.00.00	-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5		A	
7304.29.00.10	- - - 코팅과 생산용 파이프(나사산 마감형이 없는 것, 평면형의 것, 업셋이 있고 없는 것)	0		A	
7304.29.00.20	- - - 코팅과 생산용 파이프(나사산 마감형이 없는 것, 평면형의 것, 업셋이 있고 없는 것)	15		G	
7304.29.00.90	- - - 기타	15		C	
7304.31.00.00	-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A	
7304.39.00.00	- - 기타	10		A	
7304.41.00.00	-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25		C	
7304.49.00.00	- - 기타	0		A	

7304.51.00.00	-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25		C	
7304.59.00.00	- - 기타	25		A	
7304.90.00.00	- 기타	25		A	
7305.11.00.10	- - - 압력이나 도관(導管)의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25		G	
7305.11.00.90	- - - 기타	25		E	
7305.12.00.00	- -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25		G	
7305.19.00.00	- - 기타	15		E	
7305.20.00.00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15		C	
7305.31.00.10	- - - 파일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5		G	
7305.31.00.90	- - - 기타	25		E	
7305.39.00.00	- - 기타	25		E	
7305.90.00.00	- 기타	25		X	
7306.11.00.00	-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		C	
7306.19.00.00	- - 기타	10		C	
7306.21.00.00	-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		C	
7306.29.00.00	- - 기타	10		C	
7306.30.10.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	25		G	
7306.30.91.00	- - - 강(鋼)으로 만든 이중 벽식 튜브와 파이프(바깥지름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306.30.92.00	- - - 강(鋼)으로 만든 단일 벽식 튜브와 파이프(바깥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7306.30.99.00	- - - 기타	25		X	
7306.40.00.0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5		X	
7306.50.00.0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5		G	
7306.61.00.00	- -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25		X	
7306.69.00.00	- - 기타	25		G	
7306.90.00.00	- 기타	25		G	
7307.11.00.10	- - - 엘보(elbow) · 티(tee) · 이(yee) · 크로스(cross)(150PSI 이상의 압력용)	25		E	
7307.11.00.90	- - - 기타	25		E	
7307.19.00.10	- - - 엘보(elbow) · 티(tee) · 이(yee) · 크로스(cross)(150PSI 이상의 압력용)	25		E	
7307.19.00.90	- - - 기타	25		E	
7307.21.00.10	- - - 스테인리스강의 단조(鍛造)한 것(150 PSI 이상의 압력용)	0		A	
7307.21.00.90	- - - 기타	0		A	

7307.22.00.10	- - - 스테인리스강의 단조(鍛造)한 것(150PSI 이상의 압력 용)	0		A	
7307.22.00.90	- - - 기타	0		A	
7307.23.00.00	-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0		A	
7307.29.00.10	- - - 스테인리스강의 단조(鍛造)한 것(150PSI 이상의 압력 용)	0		A	
7307.29.00.90	- - - 기타	0		A	
7307.91.00.10	- - - 스테인리스강의 단조(鍛造)한 것(150PSI 이상의 압력 용)	0		A	
7307.91.00.90	- - - 기타	0		A	
7307.92.00.10	- - - 스테인리스강의 단조(鍛造)한 것(150PSI 이상의 압력 용)	0		A	
7307.92.00.90	- - - 기타	0		A	
7307.93.00.00	-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0		A	
7307.99.00.10	- - - 고압파이프의 봉인장치용	0		A	
7307.99.00.91	- - - - 강(鋼)으로 만든 커플링(coupling)(바깥지름이 70밀리미터 이상 3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07.99.00.92	- - - - 축소 니플 No-GO(niple No-Go)	0		A	
7307.99.00.93	- - - - 혼합 니플[크로스 오버(Cross overs)]	0		A	
7307.99.00.94	- - - - 유정용 익스텐션 파이프[핍 조인트(pup joint)]	0		A	
7307.99.00.95	- - - - 유압기계식 구성부품: 엘보(elbow) · 리덕션(reduction) · 티(tee) · 바이퍼케이터(bifurcator) · 트리퍼케이터(trifurcator)(압력 또는 전도 파이프용의 것으로서 지름이 406.4밀리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07.99.00.99	- - - - 기타	0		A	
7308.10.00.10	- - 전체 웹 빔(web beam)으로 한 것으로서 용접된 것	25		G	
7308.10.00.20	- - 모듈식[베일리형(bailey type)]	25		G	
7308.10.00.30	- - 박스형 빔(box-type beam)	25		G	
7308.10.00.90	- - 기타	25		E	
7308.20.00.10	- - 강(鋼)으로 만든 것(시추용으로 한정한다)	25		G	
7308.20.00.20	- - 송전선이나 전기통신용	25		G	
7308.20.00.30	- - 변전소용	25		G	
7308.20.00.90	- - 기타	25		E	
7308.30.00.00	-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25		E	
7308.40.00.00	- 비계(飛階) · 차단기 · 지주 · 궤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15		E	
7308.90.10.00	- -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판 · 봉 · 형강(形鋼) · 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25		G	

7308.90.20.00	- - 수문	25		X	
7308.90.90.10	- - - 강(鋼)으로 만든 케이블 트레이	15		X	
7308.90.90.20	- - - 장대	15		G	
7308.90.90.30	- - - 물결 모양이거나 편평하거나 곡면이 있는 구조의 판 · 가드레일	15		X	
7308.90.90.40	- - - 강성 포장용 다월(dowel)	15		X	
7308.90.90.50	- - - 피겨드(figured) 봉	15		X	
7308.90.90.60	- - - 변전소용 틀	15		X	
7308.90.90.70	- - - 천장 크레인 구조물	15		X	
7308.90.90.80	- - - 타워 크레인 구조물	15		X	
7308.90.90.90	- - - 기타	15		X	
7309.00.00.10	- 탱크(용적이 30,000리터 이상이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X	
7309.00.00.20	- 사일로(용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X	
7309.00.00.30	- 탱크 · 용기(대기 압력에서 액체나 고체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X	
7309.00.00.40	- 폐기물 용기	25		X	
7309.00.00.50	- 발효조 저장고(양조업용으로 한정한다)	25		G	
7309.00.00.60	- 압력 용기(양조업용으로 한정한다)	25		G	
7309.00.00.90	- 기타	25		G	
7310.10.00.00	-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25		E	
7310.21.00.00	- -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0		A	
7310.29.10.00	- - - 정액의 운반용 · 포장용 이중벽식 용기	0		A	
7310.29.90.00	- - - 기타	10		E	
7311.00.10.00	- 이음매가 없는 것	0		A	
7311.00.90.00	- 기타	25		X	
7312.10.10.00	- - 강화 공기타이어용	0		A	
7312.10.90.00	- - 기타	0		A	
7312.90.00.00	- 기타	0		A	
7313.00.10.00	- 유자선(有刺線)	25		X	
7313.00.90.00	- 기타	25		E	
7314.12.00.00	-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14.14.00.00	- -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14.19.10.00	- -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메탈 클로스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5		E	

7314.19.90.00	- - - 기타	25		E	
7314.20.00.00	- 그릴 · 망 ·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X	
7314.31.00.00	-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25		X	
7314.39.00.00	- - 기타	25		G	
7314.41.00.00	-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25		X	
7314.42.00.00	-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25		G	
7314.49.00.00	- - 기타	25		G	
7314.50.00.00	- 익스팬디드 시트(expanded sheet)와 스트립 메탈	25		E	
7315.11.00.10	- - - 특별한 유형의 것(제95류의 국내 주 제1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15.11.00.90	- - - 기타	15		C	
7315.12.00.10	- - - 철, 강(鋼), 연접식의 에셀론(echelon) 체인	0		A	
7315.12.00.90	- - - 기타	0		A	
7315.19.00.00	- - 부분품	15		C	
7315.20.00.00	- 스킨체인(skid chain)	15		A	
7315.81.00.00	- - 스테드링크(stud-link)	0		A	
7315.82.00.00	-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15.89.00.00	- - 기타	5		C	
7315.90.00.00	- 그 밖의 부분품	0		A	
7316.00.00.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15		E	
7317.00.00.00	철강으로 만든 못 · 압정 · 제도용 핀 · 물결 모양 못 · 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25		X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망간화된 못은 제외한다.
7318.11.00.00	-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25		G	
7318.12.00.00	- -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15		X	
7318.13.00.00	- -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15		E	
7318.14.00.00	- -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15		G	
7318.15.10.10	- - - - 지름이 1/2인치부터 4인치까지이며 길이가 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니켈 합금과 강(鋼)의 등급이 55, 105, A193, A325, A354, A449, A490, A588이며 스테인리스강의 유형이 304, 316, 410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18.15.10.90	- - - - 기타	15		G	
7318.15.90.00	- - - 기타	15		X	

7318.16.00.10	- - - 강(鋼)이나 코팅되지 않은 것(전기도금된 것이나 플루오르화 탄소)으로 A194 2H와 8H 재료로 만든 것이며 지름이 1/2인치를 초과하는 것	5		E	
7318.16.00.90	- - - 기타	15		X	
7318.19.00.00	- - 기타	25		G	
7318.21.00.10	- - - 선(線) 기계용	0		A	
7318.21.00.90	- - - 기타	15		G	
7318.22.00.00	- - 그 밖의 와셔(washer)	15		G	
7318.23.00.00	- - 리벳(rivet)	15		G	
7318.24.00.00	- -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15		E	
7318.29.00.00	- - 기타	7.5		C	
7319.40.00.00	- 안전핀과 그 밖의 핀	30		C	
7319.90.10.00	- - 수봉침 · 수편침 · 자수침	30		C	
7319.90.90.00	- - 기타	30		C	
7320.10.00.00	- 판상 스프링과 그 판	0		A	
7320.20.10.00	- - 차량 서스펜션 시스템용	0		A	
7320.20.90.10	- - - 강(鋼)의 트랙션이나 토션(torsion)의 것	0		A	
7320.20.90.90	- - - 기타	0		A	
7320.90.00.00	- 기타	25		E	
7321.11.11.00	- - - - 내장용	30		X	
7321.11.12.00	- - - - 테이블 탑(table-top)	30		X	
7321.11.19.00	- - - - 기타	30		X	
7321.11.90.00	- - - 기타	30		X	
7321.12.00.00	- - 액체 연료용	30		X	
7321.19.10.00	- - - 고체 연료용	30		X	
7321.19.90.00	- - - 기타	30		X	
7321.81.00.00	-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30		X	
7321.82.00.00	- - 액체 연료용	30		X	
7321.89.10.00	- - - 고체 연료용	30		X	
7321.89.90.00	- - - 기타	30		X	
7321.90.10.00	- - 무탱크 온수기용 가스 버너	0		A	
7321.90.90.00	- - 기타	0		A	
7322.11.00.00	- - 주철로 만든 것	15		E	
7322.19.00.00	- - 기타	15		E	
7322.90.00.00	- 기타	0		A	

7323.10.00.00	-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30		E	
7323.91.10.00	- - - 제품	30		E	
7323.91.20.00	- - - 부분품	30		E	
7323.92.10.00	- - - 제품	30		E	
7323.92.20.00	- - - 부분품	30		E	
7323.93.10.00	- - - 제품	30		C	
7323.93.20.00	- - - 부분품	30		C	
7323.94.10.00	- - - 제품	30		C	
7323.94.90.00	- - - 부분품	30		C	
7323.99.10.00	- - - 제품	30		C	
7323.99.90.00	- - - 부분품	30		C	
7324.10.00.00	-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5		C	
7324.21.00.00	- -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5		E	
7324.29.00.00	- - 기타	15		E	
7324.90.00.10	- - 세면도구와 이들의 부분품용	0		A	
7324.90.00.90	- - 기타	5		E	
7325.10.00.10	- - 검사 및 하수도 박스용 뚜껑	25		G	
7325.10.00.20	- - 하수도망 그리드	25		G	
7325.10.00.30	- - 소화전용 포스트(post), 플레이트(plate)와 뚜껑	25		G	
7325.10.00.90	- - 기타	25		G	
7325.91.00.00	-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25		G	
7325.99.00.10	- - - 검사 및 하수도 박스용 뚜껑	25		G	
7325.99.00.20	- - - 하수도망 그리드	25		G	
7325.99.00.30	- - 소화전용 포스트(post), 플레이트(plate)와 뚜껑	25		G	
7325.99.00.91	- - - - 합금철(ferroalloy), 페로칼슘실리콘(ferrocalcium-silicon), 기타의 것	0		A	
7325.99.00.99	- - - - 기타	25		E	
7326.11.00.00	-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25		G	
7326.19.00.00	- - 기타	25		E	
7326.20.00.10	- - 매끄러운 인발 강선(콘크리트 보강용으로 길이가 30밀리미터부터 80밀리미터까지이며 양 끝이 대칭이고 3, 4 또는 5접힘으로 변형된 상태인 것으로서 지름이 0.55밀리미터에서 1.05밀리미터까지의 일정한 원형 단면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326.20.00.90	- - 기타	25		E	
7326.90.10.00	- - 가변 횡단면의 봉	25		E	
7326.90.90.10	- - - 수도 계량기 보호함	25		G	
7326.90.90.90	- - - 기타	25		E	
7401.00.10.00	- 구리의 매트(mat)	0		A	
7401.00.20.00	- 시멘트동(침전동)	0		A	
7402.00.10.00	- 불리스터 구리(정제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7402.00.20.00	- 그 밖의 정제하지 않은 것	0		A	
7402.00.30.00	-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0		A	
7403.11.00.00	- - 음극과 음극의 형재	0		A	
7403.12.00.00	- - 와이어바(wire-bar)	0		A	
7403.13.00.00	- - 빌릿(billet)	0		A	
7403.19.00.00	- - 기타	0		A	
7403.21.00.00	-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0		A	
7403.22.00.00	- -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0		A	
7403.29.10.00	- -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0		A	
7403.29.90.00	- - - 기타	0		A	
7404.00.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405.00.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0		A	
7406.10.00.00	-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0		A	
7406.20.00.00	-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		A	
7407.10.0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A	
7407.21.00.00	-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0		A	
7407.29.00.00	- - 기타	0		A	
7408.11.00.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5		E	
7408.19.00.00	- - 기타	0		A	
7408.21.00.00	-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0		A	
7408.22.00.00	-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10		C	
7408.29.00.00	- - 기타	5		C	
7409.11.00.00	- - 코일 모양	0		A	
7409.19.00.00	- - 기타	0		A	
7409.21.00.00	- - 코일 모양	0		A	
7409.29.00.00	- - 기타	0		A	
7409.31.00.00	- - 코일 모양	0		A	

7409.39.00.00	- - 기타	0		A	
7409.40.00.00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0		A	
7409.90.00.00	-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A	
7410.11.00.00	-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A	
7410.12.00.00	-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A	
7410.21.00.00	-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A	
7410.22.00.00	-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A	
7411.10.0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A	
7411.21.00.00	-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0		A	
7411.22.00.00	-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0		A	
7411.29.00.00	- - 기타	0		A	
7412.10.0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5		C	
7412.20.00.0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A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25		X	
7415.10.00.00	- 못과 압정, 제도용 핀 · 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15		C	
7415.21.00.00	-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15		E	
7415.29.00.00	- - 기타	15		C	
7415.33.00.00	- -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5		C	
7415.39.00.00	- - 기타	15		E	
7418.10.10.00	- - 스폰지 · 패드 · 글로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세면이나 폴리싱(polishing)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 한정한다]	30		E	
7418.10.20.00	비전기 조리 · 가열 기구와 부분품	30		E	
7418.10.90.00	- - 기타	30		E	
7418.20.0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30		E	
7419.10.00.00	- 체인과 그 부분품	5		C	
7419.91.00.00	- - 주조 · 주형 · 압착 ·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5		C	
7419.99.10.00	- - - 금속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	0		A	
7419.99.20.00	- - - 구리로 만든 스프링	0		A	
7419.99.90.00	- - - 기타	0		A	
7501.10.00.00	- 니켈의 매트(mat)	0		A	
7501.20.00.00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0		A	

7502.10.00.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	0		A	
7502.20.00.00	- 니켈 합금	0		A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504.00.00.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		A	
7505.11.00.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A	
7505.12.00.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A	
7505.21.00.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A	
7505.22.00.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A	
7506.10.00.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A	
7506.20.00.00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A	
7507.11.00.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A	
7507.12.00.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A	
7507.20.00.00	- 관(管) 연결구류	0		A	
7508.10.00.00	-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 그릴 · 망	0		A	
7508.90.10.00	- - 니켈 도금용 양극(전기분해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0		A	
7508.90.90.00	- - 기타	0		A	
7601.10.0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0		A	
7601.20.00.00	- 알루미늄 합금	0		A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603.10.00.00	-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0		A	
7603.20.00.00	- 충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		A	
7604.10.10.00	- - 봉	0		A	
7604.10.20.00	- - 프로파일(profile)[중공(中空)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 USD 1.2/kg		G	
7604.21.00.00	- -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5% + USD 1.2/kg		G	
7604.29.10.00	- - - 봉	5% + USD 1.2/kg		E	
7604.29.20.00	- - -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	5% + USD 1.2/kg		C	
7605.11.00.00	- - 횡단면의 최대 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것	0		A	
7605.19.00.00	- - 기타	0		A	
7605.21.00.00	- - 횡단면의 최대 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것	0		A	
7605.29.00.00	- - 기타	0		A	
7606.11.00.00	-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A	
7606.12.20.00	- - - 마그네슘[두랄루민(duralumin)]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이상인 것	0		A	
7606.12.90.00	- - - 기타	0		A	
7606.91.10.00	- - - 튜브형 용기 제조용 디스크	0		A	
7606.91.90.00	- - - 기타	0		A	

7606.92.20.00	- - - 튜브형 용기 제조용 디스크	0		A	
7606.92.30.00	- - - 마그네슘[두랄루민(duralumin)]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이상인 것	5		E	
7606.92.90.00	- - - 기타	0		A	
7607.11.00.00	- -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A	
7607.19.00.00	- - 기타	0		A	
7607.20.00.00	- 뒷면을 붙인 것	0		A	
7608.10.10.00	- - 바깥지름이 9.52밀리미터 이하이고 벽의 두께가 0.9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G	
7608.10.90.00	- - 기타	5% + USD 1.2/kg		X	
7608.20.00.0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5% + USD 1.2/kg		X	
7609.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0		A	
7610.10.00.00	-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15		G	
7610.90.00.10	- - 케이블 트레이	25		G	
7610.90.00.90	- - 기타	25		G	
7611.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5		C	
7612.10.00.00	- 연질의 튜브형 용기	0		A	
7612.90.10.00	- - 우유 운송용 용기	15		E	
7612.90.30.00	- - 극저온 용기	0		A	
7612.90.40.00	- - 통 · 드럼 · 캔	15		C	
7612.90.90.00	- - 기타	0		A	
7613.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25		E	
7614.10.00.00	-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25		E	
7614.90.00.10	- - 알루미늄으로 만든 편조형 케이블(소형 트리플 AC용으로 한정한다)	25		X	
7614.90.00.90	- - 기타	25		E	
7615.10.10.00	- - 압력 쿠키	30		E	
7615.10.20.00	- - 그 밖의 냄비 · 팬과 이와 유사한 품목	30		E	
7615.10.80.00	- - 기타	30		E	
7615.10.90.00	- - 가정용품의 부분품	30		E	
7615.20.0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30		E	

7616.10.00.00	- 못 · 압정 · 스테이플 ·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 스크루훅(screw hook) · 리벳(rivet) · 코터(cotter) · 코터핀(cotter-pin) · 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15		E	
7616.91.00.00	- -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 그릴 · 망	15		E	
7616.99.10.00	- - - 익스팬디드 시트(expanded sheet)와 스트립 메탈	15		E	
7616.99.90.10	- - - - 연결구류(광섬유 설치용)	25		G	
7616.99.90.90	- - - - 기타	10		X	
7801.10.00.00	- 정제한 납	0		A	
7801.91.00.00	- -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0		A	
7801.99.00.00	- - 기타	0		A	
7802.00.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804.11.00.00	- - 시트(sheet) · 스트립 · 박(箔)[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7804.19.00.00	- - 기타	0		A	
7804.20.00.00	-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		A	
7806.00.10.00	- 방사성 물질용의 장갑한(armoured) 컨테이너	0		A	
7806.00.20.00	- 봉 · 프로파일(profile)과 선(線)	0		A	
7806.00.30.00	-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15		C	
7806.00.90.10	- - 클립 · 접착제와 함께 사용되는 자동차용 스윙용 축연추	15		A	
7806.00.90.20	- - 그 밖의 납의 추	0		A	
7806.00.90.90	- - 기타	0		A	
7901.11.00.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0		A	
7901.12.00.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0		A	
7901.20.00.00	- 아연 합금	0		A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7903.10.00.00	- 아연 더스트(dust)	0		A	
7903.90.00.00	- 기타	0		A	
7904.00.10.00	- 선(線)	0		A	
7904.00.90.00	- 기타	0		A	
7905.00.00.00	아연의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박(箔)	0		A	
7907.00.10.00	- 홈통 · 지붕덮개 · 채광 창틀과 그 밖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15		E	
7907.00.20.00	-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0		A	
7907.00.90.00	- 기타	0		A	
8001.10.00.00	- 합금하지 않은 주석	0		A	

8001.20.00.00	- 주석 합금	0		A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003.00.10.00	- 주석합금의 봉 · 선(용접용으로 한정한다)	0		A	
8003.00.90.00	- 기타	0		A	
8007.00.10.00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및 박(箔)(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007.00.20.00	-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지 · 판지 ·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		A	
8007.00.30.00	-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15		E	
8007.00.90.00	- 기타	15		C	
8101.10.00.00	- 가루	0		A	
8101.94.00.00	- - 텅스텐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0		A	
8101.96.00.00	- - 선(線)	0		A	
8101.97.00.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01.99.00.00	- - 기타	0		A	
8102.10.00.00	- 가루	0		A	
8102.94.00.00	- - 몰리브덴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0		A	
8102.95.00.00	- - 붕[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박(箔)	0		A	
8102.96.00.00	- - 선(線)	0		A	
8102.97.00.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02.99.00.00	- - 기타	0		A	
8103.20.00.00	- 탄탈륨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0		A	
8103.30.0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03.90.00.00	- 기타	0		A	
8104.11.00.00	-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0		A	
8104.19.00.00	- - 기타	0		A	
8104.20.0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04.30.00.0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 · 연삭설(tuming) · 알갱이, 가루	0		A	
8104.90.00.00	- 기타	0		A	

8105.20.00.00	-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괴(塊), 가루	0		A	
8105.30.0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05.90.00.00	- 기타	0		A	
8106.00.11.00	- - 바늘 모양의 것	0		A	
8106.00.19.00	- - 기타	0		A	
8106.00.2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06.00.90.00	- 기타	0		A	
8107.20.00.00	- 카드뮴의 괴(塊), 가루	0		A	
8107.30.0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07.90.00.00	- 기타	0		A	
8108.20.00.00	- 티타늄의 괴(塊), 가루	0		A	
8108.30.0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08.90.00.00	- 기타	0		A	
8109.20.00.00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0		A	
8109.30.0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09.90.00.00	- 기타	0		A	
8110.10.00.00	-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0		A	
8110.20.0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10.90.00.00	- 기타	0		A	
8111.00.11.00	- - 망간의 괴(塊), 가루	0		A	
8111.00.12.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11.00.90.00	- 기타	0		A	
8112.12.00.00	- - 괴(塊), 가루	0		A	
8112.13.00.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12.19.00.00	- - 기타	0		A	
8112.21.00.00	- - 괴(塊), 가루	0		A	
8112.22.00.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12.29.00.00	- - 기타	0		A	
8112.51.00.00	- - 괴(塊), 가루	0		A	
8112.52.00.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12.59.00.00	- - 기타	0		A	
8112.92.10.00	- - - 괴(塊), 가루	0		A	
8112.92.20.00	-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A	
8112.99.00.00	- - 기타	0		A	

8113.00.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A	
8201.10.00.00	- 가래와 삽	0		A	
8201.30.00.00	- 곡괭이 · 픽스(picks) · 괭이 · 쇠스랑	0		A	
8201.40.10.00	- - 마체테 칼	10		E	
8201.40.90.00	- - 기타	10		E	
8201.50.00.00	-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지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0		A	
8201.60.10.00	- - 전지가위	0		A	
8201.60.90.00	- - 기타	0		A	
8201.90.10.00	- - 낫 · 초절기와 짚용 칼	0		A	
8201.90.90.00	- - 기타	0		A	
8202.10.10.00	- - 톱	5		C	
8202.10.90.00	- - 기타	5		C	
8202.20.00.00	- 띠톱의 날	5		C	
8202.31.00.00	- -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0		A	
8202.39.00.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A	
8202.40.00.00	- 체인톱의 날	10		E	
8202.91.00.00	- -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5		C	
8202.99.00.00	- - 기타	0		A	
8203.10.00.00	-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0		A	
8203.20.00.00	-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0		A	
8203.30.00.00	-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0		A	
8203.40.00.00	- 파이프커터(pipe-cutter) · 볼트크로퍼(bolt cropper) · 천공편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0		A	
8204.11.00.00	- - 조절할 수 없는 것	5		C	
8204.12.00.00	- - 조절할 수 있는 것	5		C	
8204.20.00.00	-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8205.10.00.00	- 드릴링 · 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5		C	
8205.20.00.00	- 망치(hammer, sledge hammer)	10		E	
8205.30.00.00	- 목재 가공용 대패 · 끌 ·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5		C	
8205.40.10.00	- - 슬롯(slotted) 스크루용	5		C	
8205.40.90.00	- - 기타	0		A	
8205.51.00.00	- - 가정용 공구	30		E	
8205.59.10.00	- - - 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	0		A	

8205.59.20.00	- - - 끌	5		C	
8205.59.30.00	- - - 조각칼과 팁	5		C	
8205.59.60.00	- - - 그리스(grease) 컵과 건	5		B	
8205.59.91.00	- - - - 보석 세공사와 시계 기술자용 특수공구	0		A	
8205.59.92.00	- - - - 석공 · 주조공 · 미장공 · 도장공용 공구[모종삽 · 스무더(smoother) · 서버(server) · 스크레이퍼(scraper) 등]	5		C	
8205.59.99.00	- - - - 기타	0		A	
8205.60.10.00	- - 블로램프(blow lamp)	10		E	
8205.60.90.00	- - 기타	15		C	
8205.70.00.00	- 바이스(vice) · 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5		E	
8205.90.10.00	- - 모루 · 휴대용 화덕 ·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	0		A	
8205.90.90.00	- - 기타	0		A	
8206.00.00.00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5		C	
8207.13.10.00	- - - 트레판(trepan)과 크라운(crown)	0		A	
8207.13.20.10	- - - - 다이아몬드 드릴링의 것	0		A	
8207.13.20.90	- - - - 기타	0		A	
8207.13.30.00	- - - 일체형 드릴 비트	0		A	
8207.13.90.00	- - - 그 밖의 공구	0		A	
8207.19.10.00	- - - 트레판(trepan)과 크라운(crown)	0		A	
8207.19.21.00	- - - - 다이아몬드로 도포한 것	0		A	
8207.19.29.00	- - - - 기타	0		A	
8207.19.30.00	- - - 일체형 드릴 비트	0		A	
8207.19.80.00	- - - 그 밖의 공구	0		A	
8207.20.00.00	-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0		A	
8207.30.00.00	- 프레스ing(pressing)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공구	0		A	
8207.40.00.00	-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0		A	
8207.50.00.00	- 드릴링(drilling)용 공구	0		A	
8207.60.00.00	-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0		A	
8207.70.00.00	- 밀링(milling)용 공구	0		A	
8207.80.00.00	- 터닝(turning)용 공구	0		A	
8207.90.00.00	- 그 밖의 호환성 공구	0		A	
8208.10.00.00	- 금속 가공용	0		A	
8208.20.00.00	- 목재 가공용	0		A	
8208.30.00.00	-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0		A	

8208.40.00.00	-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기계의 것	0		A	
8208.90.00.00	- 기타	0		A	
8209.00.10.00	-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0		A	
8209.00.90.00	- 기타	0		A	
8210.00.10.00	- 분쇄기	30		E	
8210.00.90.00	- 기타	30		E	
8211.10.0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30		E	
8211.91.00.00	- -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30		E	
8211.92.00.00	- -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15		E	
8211.93.10.00	- - - 전지용과 접목용 칼	0		A	
8211.93.90.00	- - - 기타	30		E	
8211.94.10.00	- - - 식탁용 칼의 것	15		C	
8211.94.90.00	- - - 기타	0		A	
8211.95.00.00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30		E	
8212.10.10.00	- - 면도기(Razors)	30		E	
8212.10.20.00	- - 면도기(Shavers)	30		E	
8212.20.00.00	-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30		E	
8212.90.00.00	- 그 밖의 부분품	30		E	
8213.00.00.00	가위와 이들의 날	25		C	
8214.10.00.00	- 종이용 칼 · 편지 개봉기 · 지우개용 칼 · 연필깎이와 그 날	25		E	
8214.20.00.00	-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25		E	
8214.90.10.00	- - 이발기	25		E	
8214.90.90.00	- - 기타	25		E	
8215.10.0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30		E	
8215.20.00.00	-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30		E	
8215.91.00.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30		E	
8215.99.00.00	- - 기타	30		E	
8301.10.00.00	- 자물쇠	15		E	
8301.20.00.00	-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15		E	
8301.30.00.00	-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0		A	
8301.40.10.00	- - 금고 또는 스트롱박스(strong-box)용	0		A	
8301.40.90.00	- - 기타	0		A	
8301.50.00.00	-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0		A	

8301.60.00.00	- 부분품	0		A	
8301.70.00.0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15		E	
8302.10.10.00	- - 자동차용	15		E	
8302.10.90.00	- - 기타	0		A	
8302.20.00.10	- - 철·비(非)철 금속으로 주조하여 제조한 바퀴	15		E	
8302.20.00.90	- - 기타	0		A	
8302.30.00.0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A	
8302.41.00.00	- -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0		A	
8302.42.00.00	- -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302.49.00.00	- - 기타	0		A	
8302.50.00.00	-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15		E	
8302.60.00.00	- 자동도어 폐지기	0		A	
8303.00.10.00	- 금고 또는 스트롱박스(strong-box)	0		A	
8303.00.20.00	-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0		A	
8303.00.90.00	- 기타	0		A	
8304.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30		E	
8305.10.00.00	-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15		E	
8305.20.00.00	-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5		E	
8305.90.0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15		E	
8306.10.00.00	-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15		C	
8306.21.00.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30		E	
8306.29.00.00	- - 기타	30		E	
8306.30.00.00	-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30		E	
8307.10.00.10	- - 토캡(toe-cap)용	0		A	
8307.10.00.90	- - 기타	0		A	
8307.90.00.0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0		A	
8308.10.11.00	- - - 철강으로 만든 것	0		A	
8308.10.12.00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A	
8308.10.19.00	- - - 기타	0		A	
8308.10.90.00	- - 기타	0		A	

8308.20.00.00	-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0		A	
8308.90.0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E	
8309.10.00.00	-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0		A	
8309.90.00.00	- 기타	0		A	
8310.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15		E	
8311.10.00.10	- - 셀룰로오스로 도포한 것(E6011형의 것)	7.5		C	
8311.10.00.20	- - 금홍석으로 도포된 것(E60131형의 것)	7.5		C	
8311.10.00.30	- - 저(low)수소로 도포된 것(E7018형의 것)	7.5		C	
8311.10.00.40	- - 특수강(鋼)용	7.5		C	
8311.10.00.90	- - 기타	7.5		C	
8311.20.0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0		A	
8311.30.0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납접·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E	
8311.90.00.00	- 기타	10		E	
8401.10.00.00	- 원자로	0		A	
8401.20.00.00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0		A	
8401.30.00.00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0		A	
8401.40.00.00	- 원자로의 부분품	0		A	
8402.11.00.00	-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0		A	
8402.12.00.00	-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0		A	
8402.19.00.00	- -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0		A	
8402.20.00.00	-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25		E	
8402.90.00.00	- 부분품	0		A	
8403.10.00.00	- 보일러	25		E	
8403.90.00.00	- 부분품	25		E	
8404.10.00.10	- - 과열기(동형인 것)	25		E	
8404.10.00.20	- - 이코노마이저(Economizers)	25		E	
8404.10.00.30	- - 예열기	25		E	
8404.10.00.90	- - 기타	25		E	
8404.20.00.00	-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25		E	
8404.90.00.00	- 부분품	25		E	

8405.10.00.00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8405.90.00.00	- 부분품	10		C	
8406.10.00.00	- 선박추진용 터빈	0		A	
8406.81.00.00	- - 출력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0		A	
8406.82.00.00	- -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0		A	
8406.90.00.00	- 부분품	0		A	
8407.10.00.00	- 항공기용 엔진	0		A	
8407.21.00.00	- - 아웃보드(outboard) 모터	0		A	
8407.29.00.00	- - 기타	0		A	
8407.31.00.00	- - 실린더 용량이 5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8407.32.00.00	- - 실린더 용량이 5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25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5		C	
8407.33.00.00	- - 실린더 용량이 25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5		C	
8407.34.00.00	- - 실린더 용량이 1,00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8407.90.00.00	- 그 밖의 엔진	0		A	
8408.10.00.00	- 선박추진용 엔진	0		A	
8408.20.10.00	- - 실린더 용량이 4,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8408.20.90.00	- - 기타	0		A	
8408.90.10.00	- - 출력이 130킬로와트(174HP) 이하인 것	0		A	
8408.90.20.00	- - 출력이 130킬로와트(174HP)를 초과하는 것	0		A	
8409.10.00.00	- 항공기 엔진용	0		A	
8409.91.10.00	- - - 실린더 블록과 헤드	0		A	
8409.91.20.00	- - - 실린더 라이너	0		A	
8409.91.30.00	- - - 커넥팅 로드	0		A	
8409.91.40.00	- - - 피스톤	0		A	
8409.91.50.00	- - - 피스톤 링	0		A	
8409.91.60.00	- - - 카뷰레터와 그 부분품	0		A	
8409.91.70.00	- - - 밸브	0		A	
8409.91.80.00	- - - 크랭크 케이스	0		A	
8409.91.91.00	- - - - 자동차 연료시스템 전환 장비(가스 연료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09.91.99.00	- - - - 기타	0		A	
8409.99.10.00	- - - 피스톤	0		A	
8409.99.20.00	- - - 피스톤 링	0		A	

8409.99.30.00	- - - 연료시스템용 인젝터와 그 밖의 부분품	0		A	
8409.99.40.00	- - - 실린더 블록과 헤드	0		A	
8409.99.50.00	- - - 실린더 라이너	0		A	
8409.99.60.00	- - - 커넥팅 로드	0		A	
8409.99.70.00	- - - 밸브	0		A	
8409.99.80.00	- - - 크랭크 케이스	0		A	
8409.99.91.00	- - - - 밸브 가이드	0		A	
8409.99.92.00	- - - - 피스톤 핀	0		A	
8409.99.93.00	- - - - 엔진 전환장비(제8408.20호의 디젤·가스 또는 세미 디젤·세미가스 겸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09.99.99.00	- - - - 기타	0		A	
8410.11.00.00	- - 출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25		E	
8410.12.00.00	-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25		E	
8410.13.00.00	- - 출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A	
8410.90.00.10	- - 임펠러[블레이드(blade)가 있는 휠]·제트 디플렉터(jet deflector)(기계 움직임 조절)·팔레트(palette) 또는 스푼(spoon)[블레이드(blade)]·노즐 및 터빈 레귤레이터(속도 조절기)	0		A	
8410.90.00.90	- - 기타	15		E	
8411.11.00.00	- -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것	0		A	
8411.12.00.00	- -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0		A	
8411.21.00.00	- -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0		A	
8411.22.00.00	- -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한 것	0		A	
8411.81.00.00	- -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5		C	
8411.82.00.00	- -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C	
8411.91.00.00	- -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0		A	
8411.99.00.00	- - 기타	5		C	
8412.10.00.00	-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5		C	
8412.21.00.00	-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0		A	
8412.29.00.00	- - 기타	0		A	
8412.31.00.00	-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5		C	
8412.39.00.00	- - 기타	0		A	
8412.80.10.00	- - 풍력 엔진(풍차)	0		A	
8412.80.90.00	- - 기타	0		A	
8412.90.00.00	- 부분품	0		A	
8413.11.00.00	-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5		C	

8413.19.00.00	- - 기타	5		C	
8413.20.00.00	-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0		A	
8413.30.10.00	- - 항공기 엔진용	0		A	
8413.30.20.00	- - 기타(인젝션 펌프로 한정한다)	0		A	
8413.30.91.00	- - - 연료의 것	0		A	
8413.30.92.00	- - - 오일의 것	0		A	
8413.30.99.00	- - - 기타	0		A	
8413.40.00.00	- 콘크리트 펌프	5		C	
8413.50.00.00	-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0		A	
8413.60.10.00	- - 나선형 더블스크루 펌프(축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13.60.90.00	- - 기타	0		A	
8413.70.11.00	- - - 출력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8413.70.19.00	- - - 기타	0		A	
8413.70.21.00	- - - 출력 지름이 30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C	
8413.70.29.00	- - - 기타	0		A	
8413.81.10.00	- - - 인젝션 펌프	5		E	
8413.81.90.10	- - - - 오일 리프팅용 유압 제트 펌프	0		A	
8413.81.90.90	- - - - 기타	0		A	
8413.82.00.00	- - 액체엘리베이터	0		A	
8413.91.10.00	- - - 연료 배급 또는 판매용	5		C	
8413.91.20.00	- - - 항공기 엔진용	0		A	
8413.91.30.00	- - - 그 밖의 엔진의 연료·오일 또는 냉각제용	0		A	
8413.91.90.10	- - - - 오일 리프팅용 유압 제트	10		E	
8413.91.90.91	- - - - - 원심 펌프용	0		A	
8413.91.90.99	- - - - 기타	10		E	
8413.92.00.00	-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20		G	
8414.10.00.00	- 진공펌프	0		A	
8414.20.00.00	-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5		C	
8414.30.40.00	- - 화물 운반 차량용의 것	5		C	
8414.30.91.00	- - - 밀폐나 반밀폐된 것[출력이 0.37킬로와트(1/2HP)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14.30.92.00	- - - 밀폐나 반밀폐된 것[출력이 0.37킬로와트(1/2HP)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14.30.99.00	- - - 기타	0		A	
8414.40.10.00	- - 출력이 30킬로와트(40HP) 미만인 것	5		C	

8414.40.90.00	- - 기타	5		C	
8414.51.00.00	- - 테이블 · 바닥 · 벽 · 창문 · 천장과 지붕용의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의 독립형 전동기가 내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30		E	
8414.59.00.00	- - 기타	0		A	
8414.60.00.00	-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 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0		E	
8414.80.10.00	- - 자동차용 압축기	0		A	
8414.80.21.00	- - - 출력이 30킬로와트(40HP) 미만인 것	0		A	
8414.80.22.00	- - - 출력이 30킬로와트(40HP) 이상 262.5킬로와트(352HP) 미만인 것	0		A	
8414.80.23.00	- - - 출력이 262.5킬로와트(352HP) 이상인 것	0		A	
8414.80.90.00	- - 기타	0		A	
8414.90.10.00	- - 압축기의 것	0		A	
8414.90.90.00	- - 기타	0		A	
8415.10.10.00	- - 냉각 유닛을 장착한 것[시간당 30,000비티유(BTU)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A	
8415.10.90.00	- - 기타	0		A	
8415.20.00.00	-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0		A	
8415.81.10.00	- - 냉각 유닛을 장착한 것[시간당 30,000비티유(BTU)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E	
8415.81.90.00	- - - 기타	15		E	
8415.82.20.00	- - - 시간당 30,000비티유(BTU) 이하인 것	15		A	
8415.82.30.00	- - - 시간당 30,000비티유(BTU) 초과 240,000비티유(BTU) 이하인 것	15		E	
8415.82.40.00	- - - 시간당 240,000비티유(BTU)를 초과하는 것	15		E	
8415.83.10.00	- - - 시간당 30,000비티유(BTU) 이하인 것	0		A	
8415.83.90.00	- - - 기타	5		C	
8415.90.00.00	- 부분품	0		A	
8416.10.00.00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5		C	
8416.20.10.00	- - 잘게 부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5		C	
8416.20.20.00	- -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0		A	
8416.20.30.00	- - 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	5		C	
8416.30.00.00	-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 · 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0		A	
8416.90.00.00	- 부분품	0		A	
8417.10.00.10	- - 광물 주조 공장용 용광로(12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17.10.00.90	- - 기타	5		C	

8417.20.10.00	- - 터널오븐(tunnel oven)	0		A	
8417.20.90.00	- - 기타	0		A	
8417.80.20.00	- - 오븐(세라믹 제품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C	
8417.80.30.00	- - 실험실용 오븐	0		A	
8417.80.90.10	- - - 공업용 오븐(시멘트 공업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17.80.90.80	- - - 기타	0		A	
8417.90.00.10	- - 실험실용 오븐용	0		A	
8417.90.00.90	- - 기타	0		A	
8418.10.10.00	- - 용량이 184리터 미만인 것	20		X	
8418.10.20.00	- - 용량이 184리터 이상 269리터 미만인 것	20		X	
8418.10.30.00	- - 용량이 269리터 이상 382리터 미만인 것	20		X	
8418.10.90.00	- - 기타	20		G	
8418.21.10.00	- - - 용량이 184리터 미만인 것	20		X	
8418.21.20.00	- - - 용량이 184리터 이상 269리터 미만인 것	20		X	
8418.21.30.00	- - - 용량이 269리터 이상 382리터 미만인 것	20		X	
8418.21.90.00	- - - 기타	20		E	
8418.29.10.00	- - -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0		A	
8418.29.90.00	- - - 기타	30		X	
8418.30.00.8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0		E	
8418.30.00.90	- - 기타	30		X	
8418.40.00.8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0		E	
8418.40.00.90	- - 기타	30		X	
8418.50.00.8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418.50.00.90	- - 기타	15		X	
8418.61.00.00	- -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5		C	
8418.69.11.00	- - - - 압축식	0		A	
8418.69.12.00	- - - - 흡수식	0		A	
8418.69.91.00	- - - - 제빙기	5		E	
8418.69.92.00	- - - - 음수대(분수식의 것)	10		E	
8418.69.93.00	- - - - 챔버나 터널(냉각장치가 장착된 것으로서 분리형 또는 패널구조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18.69.94.00	- - - - 화물 운반 차량용 냉각 유닛	5		A	
8418.69.99.00	- - - - 기타	0		A	
8418.91.00.00	- -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15		E	
8418.99.10.00	- - - 플레이트 증발기	0		A	
8418.99.20.00	- - - 응축기	0		A	

8418.99.90.00	- - - 기타	0		A	
8419.11.00.00	- -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20		E	
8419.19.10.00	- - - 용량이 120리터 이하인 것	20		C	
8419.19.90.10	- - - - 즉시식 물가열기(전기나 가스식은 제외한 것으로서 용량이 12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19.19.90.90	- - - - 기타	20		E	
8419.20.00.00	- 내과용 · 외과용 · 실험실용 살균기	0		A	
8419.31.00.00	- - 농산물용	0		A	
8419.32.00.00	- - 목재용 · 제지펄프용 · 종이용 · 판지용	0		A	
8419.39.10.00	- - - 동결건조 유닛	5		C	
8419.39.20.00	- - - 분무 건조식	0		A	
8419.39.91.00	- - - - 광물용	0		A	
8419.39.99.00	- - - - 기타	0		A	
8419.40.00.10	- - 알코올 공업에 사용되는 증류탑	15		G	
8419.40.00.20	- - 분류탑이나 칼럼(column)	15		G	
8419.40.00.90	- - 기타	0		A	
8419.50.10.00	- - 저온살균용	0		A	
8419.50.90.10	- - - 표면 응축기	25		E	
8419.50.90.20	- - - 주스 히터(juice heater)(설탕 공업용으로 한정한다)	25		E	
8419.50.90.91	- - - - 티타늄 교환기	0		A	
8419.50.90.99	- - - - 기타	25		E	
8419.60.00.00	- 기체 액화용 기기	15		E	
8419.81.00.00	- -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0		A	
8419.89.10.00	- - - 가압처리기	0		A	
8419.89.91.00	- - - - 증발용	0		A	
8419.89.92.00	- - - - 배소(焙燒)용	0		A	
8419.89.93.00	- - - - 살균용	15		E	
8419.89.99.10	- - - - - 딕시(dixy)	15		E	
8419.89.99.20	- - - - - 직접 · 간접 화로[조유(粗油)와 그 파생물용으로 한정한다)	15		E	
8419.89.99.30	- - - - - 반죽 가열기(설탕 공업용으로 한정한다)	15		E	
8419.89.99.90	- - - - - 기타	0		A	
8419.90.10.00	- - 물가열기의 것	0		A	
8419.90.90.00	- - 기타	0		A	
8420.10.10.00	- - 베이커리 · 파이와 비스킷 공업용	0		A	
8420.10.90.00	- - 기타	0		A	

8420.91.00.00	- - 실린더	0		A	
8420.99.00.00	- - 기타	0		A	
8421.11.00.00	- - 크림분리기	0		A	
8421.12.00.00	- - 의류탈수기	15		E	
8421.19.10.00	- - - 실험실용의 것	0		A	
8421.19.20.10	- - - - 사탕수수 주스 청정기	0		A	
8421.19.20.90	- - - - 기타	0		A	
8421.19.30.00	- - - 종이와 셀룰로오스 공업용	0		A	
8421.19.90.10	- - - - 발전소용 원심 분리기(오일을 분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21.19.90.90	- - - - 기타	10		E	
8421.21.10.00	- - - 가정용	20		C	
8421.21.90.10	- - - - 하수처리 기계	0		A	
8421.21.90.90	- - - - 기타	0		A	
8421.22.00.00	- -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0		A	
8421.23.00.10	- - - 분사식 엔진용 석유 여과기	5		A	
8421.23.00.90	- - - 기타	0		A	
8421.29.10.00	- - - 프레스 여과기	0		A	
8421.29.20.00	- - - 자기식(磁氣) 및 전자석 여과기	0		A	
8421.29.30.00	- - - 여과기(전적으로 또는 주로 제9018호의 의료기기 및 기구를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21.29.40.00	- - - 생산정을 위한 튜브형 그리드(grid) 여과기	5		C	
8421.29.90.10	- - - - 석유 탈수기	0		A	
8421.29.90.20	- - - - 2상이나 3상 분리기	0		A	
8421.29.90.30	- - - - 정전식 탈염기	0		A	
8421.29.90.40	- - - - 정전식 처리기[처리 용량이 100BFPD(1일당 처리 능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21.29.90.90	- - - - 기타	0		A	
8421.31.00.00	- -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0		A	
8421.39.10.00	- - - 사이클론 청정기	15		E	
8421.39.20.00	- - - 공기 또는 그 밖의 기체용 정전식 여과기	5		C	
8421.39.90.10	- - - - 백(bag)형 여과기	0		A	
8421.39.90.20	- - - - 가스 세정기	0		A	
8421.39.90.30	- - - - 티이에이(TEA) 또는 백난로용 드럼[브이알유(VRU)-녹 아웃 드럼(knock out drum)]	0		A	
8421.39.90.90	- - - - 기타	0		A	
8421.91.00.00	-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0		A	

8421.99.10.00	- - - 엔진 여과기용 여과 소자	5		E	
8421.99.90.00	- - - 기타	0		A	
8422.11.00.00	- - 가정용	15		C	
8422.19.00.00	- - 기타	15		E	
8422.20.00.0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0		A	
8422.30.10.00	- - 수직형 충전기(출력이 1분당 40개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22.30.90.10	- - - 레이블링용	0		A	
8422.30.90.20	- - - 액체 포장용	0		A	
8422.30.90.90	- - - 기타	0		A	
8422.40.10.00	- - 사전에 포장된 상품의 래핑(wrapping)용 기계	0		A	
8422.40.20.00	- - 진공 포장 기계	0		A	
8422.40.30.00	- - 담배 포장용	5		E	
8422.40.90.00	- - 기타	0		A	
8422.90.00.00	- 부분품	0		A	
8423.10.00.0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25		C	
8423.20.00.00	-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0		A	
8423.30.10.00	- - 배치(batcher)(시멘트·아스팔트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용으로 한정한다)	15		E	
8423.30.90.10	- - - 전자저울[컨베이어 벨트{피에조미터(piezometer)}에 연결된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23.30.90.90	- - - 기타	15		E	
8423.81.00.00	-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0		A	
8423.82.10.00	- - - 자동차 중량 측정용	0		A	
8423.82.90.00	- - - 기타	0		A	
8423.89.10.00	- - - 자동차 중량 측정용	0		A	
8423.89.90.00	- - - 기타	5		C	
8423.90.00.00	- 각종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25		E	
8424.10.00.0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C	
8424.20.00.00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0		A	
8424.30.00.00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0		A	
8424.41.00.00	- - - 휴대용 기기(중량이 2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24.49.00.00	- - 기타	0		A	
8424.82.10.00	- - - 휴대용 기기(중량이 2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24.82.21.10	- - - - 드리핑(dripping)식	0		A	

8424.82.21.21	- - - - - 센터 피벗(center pivot)식	0		A	
8424.82.21.29	- - - - - 기타	0		A	
8424.82.29.00	- - - - 기타	0		A	
8424.82.90.00	- - - 기타	0		A	
8424.89.00.00	- - 기타	0		A	
8424.90.10.00	- - 스프레이와 드립(drip) 시스템(관개시스템용으로 한정한다)	0		A	
8424.90.90.00	- - 기타	0		A	
8425.11.00.00	- - 전동식	0		A	
8425.19.00.00	- - 기타	0		A	
8425.31.10.00	- - - 갯도에서 들어올리고 내리기 위한 용도의 호이스트 윈치, 지하 광산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윈치	10		C	
8425.31.90.00	- - - 기타	0		A	
8425.39.10.00	- - - 갯도에서 들어올리고 내리기 위한 용도의 호이스트 윈치, 지하 광산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윈치	10		C	
8425.39.90.00	- - - 기타	0		A	
8425.41.00.00	- -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5		C	
8425.42.20.00	- - - 휴대용(차량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8425.42.90.00	- - - 기타	0		A	
8425.49.10.00	- - - 휴대용(차량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8425.49.90.00	- - - 기타	15		E	
8426.11.00.00	- -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25		G	
8426.12.10.00	- - -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20		E	
8426.12.20.00	- - -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0		A	
8426.19.00.00	- - 기타	15		C	
8426.20.00.00	- 타워크레인(tower crane)	25		E	
8426.30.00.00	-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25		G	
8426.41.10.00	- - - 트럭 크레인(truck crane)	0		A	
8426.41.90.00	- - - 기타	0		A	
8426.49.00.00	- - 기타	15		E	
8426.91.00.00	-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5		C	
8426.99.10.00	- - - 케이블웨이(cableway)와 케이블 크레인(cable crane) ["블론다인(blondine)"]	10		C	
8426.99.20.00	- - - 데릭 크레인(derrick crane)	10		E	
8426.99.90.00	- - - 기타	0		A	
8427.10.00.00	-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0		A	
8427.20.00.00	-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트럭	0		A	

8427.90.00.00	- 그 밖의 트럭	0		A	
8428.10.10.00	- - 캐빈(cabin)이나 균형추가 없는 리프트	5		C	
8428.10.90.00	- - 기타	0		A	
8428.20.00.00	- 압축공기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0		A	
8428.31.00.00	- -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10		C	
8428.32.00.00	- - 그 밖의 버켓형	0		A	
8428.33.00.00	- - 그 밖의 벨트형	0		A	
8428.39.00.10	- - - 활송장치가 있는 컨베이어	0		A	
8428.39.00.90	- - - 기타	0		A	
8428.40.00.00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5		C	
8428.60.00.00	- 텔레페릭(teleferic)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 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0		A	
8428.90.10.00	- - 광산용 왜건푸셔 · 기관차 · 화차의 트레버서 · 화차 경사기나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5		C	
8428.90.90.00	- - 기타	0		A	
8429.11.00.00	- - 무한궤도식	0		A	
8429.19.00.00	- - 기타	5		C	
8429.20.00.00	-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0		A	
8429.30.00.00	- 스크래퍼(scraper)	5		C	
8429.40.00.00	-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5		C	
8429.51.00.10	- - - 출력이 70마력 이하인 콤팩트 스킵 스티어 로더(compact skid steer loader)	0		A	
8429.51.00.90	- - - 기타	0		A	
8429.52.00.10	- - - 출력이 30마력 미만인 것	0		A	
8429.52.00.90	- - - 기타	0		A	
8429.59.00.00	- - 기타	0		A	
8430.10.00.00	-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5		C	
8430.20.00.00	-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0		A	
8430.31.00.00	- - 자주식(自走式)	5		C	
8430.39.00.00	- - 기타	5		C	
8430.41.00.00	- - 자주식(自走式)	5		E	
8430.49.00.00	- - 기타	3.75		E	
8430.50.00.00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5		C	
8430.61.10.00	- - - 로드롤러(road roller)	5		C	
8430.61.90.00	- - - 기타	5		C	
8430.69.10.00	- - - 스크래퍼(scraper)	5		C	

8430.69.90.00	- - - 기타	5		C	
8431.10.10.00	- - 풀리 태클(pulley tackle) · 호이스트(hoist) · 윈치(winch) · 캡스턴(capstan)의 것	0		A	
8431.10.90.00	- - 기타	10		C	
8431.20.00.00	- 제8427호의 기계의 것	0		A	
8431.31.00.00	- - 리프트 ·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 에스컬레이터의 것	0		A	
8431.39.00.00	- - 기타	5		E	
8431.41.00.00	- - 버켓(bucket) · 셔블(shovel) · 그랩(grab)과 그립(grip)	0		A	
8431.42.00.00	- -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0		A	
8431.43.10.00	- - - 로커(rocker)	0		A	
8431.43.90.00	- - - 기타	5		E	
8431.49.00.00	- - 기타	0		A	
8432.10.00.00	- 플라우(쟁기)	0		A	
8432.21.00.00	-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A	
8432.29.00.10	- - - 그 밖의 하로우(쇄토기), 스카리파이어와 제초기	0		A	
8432.29.00.20	- - - 컬티베이터(중경기), 모터 호우, 제초기와 호우	0		A	
8432.31.00.00	- 파종기 · 식부기(植付機) · 이식기	0		A	
8432.39.00.00	- - 기타	0		A	
8432.41.00.00	- 퇴비 살포기	0		A	
8432.42.00.00	- 비료 살포기	0		A	
8432.80.00.00	- 그 밖의 기계	0		A	
8432.90.10.00	- - 쿨터(coulter)와 디스크	0		A	
8432.90.90.00	- - 기타	0		A	
8433.11.10.00	- - - 자주식(自走式)	0		A	
8433.11.90.00	- - - 기타	0		A	
8433.19.10.00	- - - 자주식(自走式)	0		A	
8433.19.90.00	- - - 기타	0		A	
8433.20.00.00	-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0		A	
8433.30.00.00	-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0		A	
8433.40.00.00	-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0		A	
8433.51.00.00	- - 수확 · 탈곡 겸용기	0		A	
8433.52.00.00	- - 그 밖의 탈곡기	0		A	
8433.53.00.00	- -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0		A	
8433.59.10.00	- - - 수확용	0		A	

8433.59.20.00	- - - 옥수수 탈립기	0		A	
8433.59.90.00	- - - 기타	0		A	
8433.60.10.00	- - 조란용	0		A	
8433.60.90.00	- - 기타	0		A	
8433.90.10.00	- - 잔디 깎는 기계의 것	0		A	
8433.90.90.00	- - 기타	0		A	
8434.10.00.00	- 착유기	0		A	
8434.20.00.00	- 낙농기계	0		A	
8434.90.10.00	- - 착유기의 것	0		A	
8434.90.90.00	- - 기타	0		A	
8435.10.00.00	- 기계	0		A	
8435.90.00.00	- 부분품	0		A	
8436.10.00.00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0		A	
8436.21.00.00	- -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0		A	
8436.29.10.00	- - - 자동 급이기(給餌器)와 자동 급수기	0		A	
8436.29.20.00	- - - 자동 산란과 채란 장치(배터리)	0		A	
8436.29.90.00	- - - 기타	0		A	
8436.80.10.00	- - 비료 분쇄기 및 혼합기	0		A	
8436.80.90.00	- - 기타	0		A	
8436.91.00.00	-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의 것	0		A	
8436.99.00.00	- - 기타	0		A	
8437.10.11.00	- - - 색상 선별기	0		A	
8437.10.19.00	- - - 기타	0		A	
8437.10.90.00	- - 기타	0		A	
8437.80.11.00	- - - 곡물의 것	0		A	
8437.80.19.00	- - - 기타	0		A	
8437.80.91.00	- - - - 쌀 가공용	0		A	
8437.80.92.00	- - - 제분업의 밀가루 및 그 밖의 제품 선별 및 분리용	0		A	
8437.80.93.00	- - - 곡물 연마용	0		A	
8437.80.99.00	- - - 기타	0		A	
8437.90.00.00	- 부분품	0		A	
8438.10.10.00	- - 베이커리, 파이나 비스킷용	0		A	
8438.10.20.00	- - 파스타 제조용	0		A	
8438.20.10.00	- - 과자 제조용	5		C	
8438.20.20.00	- - 코코아나 초콜릿 제조용	0		A	

8438.30.00.10	- - 사탕수수 주스 리제너레이터(regenerators)	25		E	
8438.30.00.20	- - 결정화 탱크	25		E	
8438.30.00.90	- - 기타	0		A	
8438.40.00.10	- - 발아용 탱크	25		E	
8438.40.00.20	- - 여과 탱크	25		E	
8438.40.00.90	- - 기타	25		E	
8438.50.10.00	- - 가금(家禽)육의 자동 가공용	0		A	
8438.50.90.00	- - 기타	0		A	
8438.60.00.00	- 과일 · 채소의 조제용 기계	0		A	
8438.80.10.00	- - 커피 탈피 및 펄핑(puling)용의 것	0		A	
8438.80.20.00	-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조제 용 기계	0		A	
8438.80.90.00	- - 기타	0		A	
8438.90.00.00	- 부분품	0		A	
8439.10.00.0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0		A	
8439.20.00.00	- 종이 · 판지의 제조용 기계	0		A	
8439.30.00.00	- 종이 ·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0		A	
8439.91.00.00	-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0		A	
8439.99.00.00	- - 기타	0		A	
8440.10.00.00	- 기계	0		A	
8440.90.00.00	- 부분품	0		A	
8441.10.00.00	- 절단기	0		A	
8441.20.00.00	- 종이백 · 봉지 · 봉투 제조용 기계	0		A	
8441.30.00.00	- 박스 · 튜브 · 드럼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 [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0		A	
8441.40.00.00	-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0		A	
8441.80.00.00	- 그 밖의 기계	0		A	
8441.90.00.00	- 부분품	0		A	
8442.30.10.00	- - 사진 식자기	5		C	
8442.30.20.00	- -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 기계류, 장치 및 장비(활자 주 조용 장치를 사용하는지에 상관없다)	0		A	
8442.30.90.00	- - 기타	5		C	
8442.40.00.00	- 위의 기계류 · 장치 · 장비의 부분품	0		A	
8442.50.10.00	- - 인쇄용 활자	15		E	
8442.50.90.00	- - 기타	0		A	
8443.11.00.00	-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 공급식으로 한정한다]	5		C	

8443.12.00.00	-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시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8443.13.00.00	- -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0		A	
8443.14.00.00	-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0		A	
8443.15.00.00	-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0		A	
8443.16.00.00	- - 곡면인쇄용 기계	0		A	
8443.17.00.00	- -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0		A	
8443.19.10.00	- - - 스탬핑(stamping)용	0		A	
8443.19.90.00	- - - 기타	5		C	
8443.31.00.00	-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10		C	
8443.32.11.00	- - - - 씨디(CD) 인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10		E	
8443.32.19.00	- - - - 기타	5		E	
8443.32.20.00	- - - 팩시밀리	0		A	
8443.32.90.00	- - - 기타	5		E	
8443.39.10.00	- - - 잉크젯방식 인쇄기	10		A	
8443.39.90.00	- - - 기타	5		D	
8443.91.00.00	-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A	
8443.99.00.00	- - 기타	0		A	
8444.00.00.00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절단용 기계	0		A	
8445.11.00.00	- - 카드기(carding machine)	0		A	
8445.12.00.00	- - 코밍기(combing machine)	0		A	
8445.13.00.00	- - 연조기나 조방기	0		A	
8445.19.10.00	- - - 조면기	0		A	
8445.19.90.00	- - - 기타	0		A	
8445.20.00.00	- 방적기계	0		A	
8445.30.00.00	-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0		A	
8445.40.00.00	-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0		A	
8445.90.00.00	- 기타	0		A	
8446.10.00.00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0		A	
8446.21.00.00	- -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0		A	
8446.29.00.00	- - 기타	0		A	

8446.30.00.00	-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0		A	
8447.11.00.00	-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8447.12.00.00	-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8447.20.10.00	- - 횡(橫) 편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0		A	
8447.20.20.00	- - 그 밖의 횡(橫) 편직기	0		A	
8447.20.30.00	- -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0		A	
8447.90.00.00	- 기타	0		A	
8448.11.00.00	- - 도비(dobby)기 · 자카드기와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 · 복사용 · 천공용 · 조립용 기계	0		A	
8448.19.00.00	- - 기타	0		A	
8448.20.00.00	- 제8444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A	
8448.31.00.00	- - 침포	0		A	
8448.32.10.00	- - - 조면기의 것	0		A	
8448.32.90.00	- - - 기타	0		A	
8448.33.00.00	- - 스핀들 · 스핀들 플라이어 · 스피닝 링 · 링트래블러	0		A	
8448.39.00.00	- - 기타	0		A	
8448.42.00.00	- - 직조기용 바디 · 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0		A	
8448.49.00.00	- - 기타	0		A	
8448.51.00.00	- -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 · 바늘과 그 밖의 물품	0		A	
8448.59.00.00	- - 기타	0		A	
8449.00.10.00	- 기계류, 모자 제조용 형(型)	0		A	
8449.00.90.00	- 부분품	0		A	
8450.11.00.00	- - 완전자동 세탁기	30		C	
8450.12.00.00	- -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E	
8450.19.00.00	- - 기타	30		E	
8450.20.00.00	-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5		E	
8450.90.00.00	- 부분품	5		E	
8451.10.00.00	- 드라이클리닝기	0		A	
8451.21.00.00	- -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0		A	
8451.29.00.00	- - 기타	0		A	
8451.30.00.00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0		A	
8451.40.10.00	- - 세탁용	0		A	
8451.40.90.00	- - 기타	0		A	

8451.50.00.00	- 감기(reeling)용 기계 · 풀기(unreeling)용 기계 · 접음기 · 절단기 · 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0		A	
8451.80.00.00	- 그 밖의 기계	0		A	
8451.90.00.00	- 부분품	0		A	
8452.10.10.1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25		C	
8452.10.10.90	- - - 기타	25		C	
8452.10.20.00	- - 기계	25		E	
8452.21.00.00	- - 자동식	0		A	
8452.29.00.00	- - 기타	0		A	
8452.30.00.00	- 재봉기용 바늘	0		A	
8452.90.10.00	- - 재봉기용 가구 · 밑판 · 덮개와 그 부분품	0		A	
8452.90.90.00	- - 재봉기용 그 밖의 부분품	0		A	
8453.10.00.00	- 원피 ·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 · 유피(柔皮)기 · 가공기계	0		A	
8453.20.00.00	-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0		A	
8453.80.00.00	- 그 밖의 기계	0		A	
8453.90.00.00	- 부분품	0		A	
8454.10.00.00	- 전로	0		A	
8454.20.00.00	-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0		A	
8454.30.00.00	- 주조기	5		C	
8454.90.00.00	- 부분품	0		A	
8455.10.00.00	- 관 압연기	0		A	
8455.21.00.00	- - 열간(熱間)이나 열 · 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0		A	
8455.22.00.00	- - 냉간(冷間) 압연기	0		A	
8455.30.00.00	- 압연기용 롤	0		A	
8455.90.00.00	- 그 밖의 부분품	0		A	
8456.11.00.00	- -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0		A	
8456.12.00.00	- - 그 밖의 광선 · 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0		A	
8456.20.00.00	-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0		A	
8456.30.00.00	-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0		A	
8456.40.00.00	-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5		C	
8456.50.00.00	- 워터제트 절단기	5		C	
8456.90.00.00	- 기타	0		A	
8457.10.00.0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0		A	
8457.20.00.00	- 싱글스테이션(single-station) 머신	0		A	
8457.30.00.00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 머신	0		A	

8458.11.10.00	- - - 범용 평행 선반	5		C	
8458.11.20.00	- - - 터릿(turret) 선반	0		A	
8458.11.90.00	- - - 기타	0		A	
8458.19.10.00	- - - 범용 평행 선반	0		A	
8458.19.20.00	- - - 터릿(turret) 선반	0		A	
8458.19.30.00	- - - 기타(자동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5		C	
8458.19.90.00	- - - 기타	0		A	
8458.91.00.00	- - 수치제어식	0		A	
8458.99.00.00	- - 기타	0		A	
8459.10.10.00	- - 드릴링용	5		C	
8459.10.20.00	- - 보링(boring)용	0		A	
8459.10.30.00	- - 밀링(milling)용	0		A	
8459.10.40.00	- - 태핑(tapping) 또는 드레딩(threading)용	0		A	
8459.21.00.00	- - 수치제어식	0		A	
8459.29.00.00	- - 기타	5		C	
8459.31.00.00	- - 수치제어식	0		A	
8459.39.00.00	- - 기타	0		A	
8459.41.00.00	- - 수치제어식	0		A	
8459.49.00.00	- - 기타	0		A	
8459.51.00.00	- - 수치제어식	0		A	
8459.59.00.00	- - 기타	0		A	
8459.61.00.00	- - 수치제어식	0		A	
8459.69.00.00	- - 기타	0		A	
8459.70.00.00	- 그 밖의 태핑(tapping) 또는 드레딩(threading) 머신	0		A	
8460.12.00.10	- - - 0.01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로 한 축에서 부품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계	0		A	
8460.12.00.90	- - - 기타	5		A	
8460.19.00.00	- - 기타	5		C	
8460.22.00.10	- - - 0.01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로 한 축에서 부품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계	0		A	
8460.22.00.90	- - - 기타	5		A	
8460.23.00.10	- - - 0.01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로 한 축에서 부품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계	0		A	
8460.23.00.90	- - - 기타	5		A	
8460.24.00.10	- - - 0.01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로 한 축에서 부품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계	0		A	
8460.24.00.90	- - - 기타	5		A	

8460.29.00.00	- - 기타	0		A	
8460.31.00.00	- - 수치제어식	0		A	
8460.39.00.00	- - 기타	5		C	
8460.40.00.00	-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0		A	
8460.90.00.00	- 기타	5		C	
8461.20.00.00	- 셰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0		A	
8461.30.00.00	-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0		A	
8461.40.00.00	-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	0		A	
8461.50.00.00	- 톱기계나 절단기	5		C	
8461.90.10.00	- - 연삭기	0		A	
8461.90.90.00	- - 기타	5		C	
8462.10.10.00	- - 파워해머(power hammer)와 해머링(hammering) 머신	5		C	
8462.10.21.00	- - - 프레스	0		A	
8462.10.29.00	- - - 기타	0		A	
8462.21.00.00	- - 수치제어식	0		A	
8462.29.10.00	- - - 프레스	0		A	
8462.29.90.00	- - - 기타	0		A	
8462.31.00.10	- - - 프레스	0		A	
8462.31.00.90	- - - 기타	0		A	
8462.39.10.00	- - - 프레스	0		A	
8462.39.90.00	- - - 기타	0		A	
8462.41.00.00	- - 수치제어식	0		A	
8462.49.10.00	- - - 프레스	0		A	
8462.49.90.00	- - - 기타	0		A	
8462.91.00.00	- - 액압 프레스	0		A	
8462.99.00.00	- - 기타	0		A	
8463.10.10.00	- - 신선(伸線)용	0		A	
8463.10.90.00	- - 기타	0		A	
8463.20.00.00	- 나사 전조기	0		A	
8463.30.00.00	- 선 가공기	0		A	
8463.90.10.00	- - 리베팅(riveting)용	0		A	
8463.90.90.00	- - 기타	0		A	
8464.10.00.00	- 톱기계	5		C	
8464.20.00.00	- 연마기나 광택기	5		C	

8464.90.00.00	- 기타	5		C	
8465.10.00.00	-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65.20.00.0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5		C	
8465.91.10.00	- - - 수치제어식	0		A	
8465.91.91.00	- - - - 원형의 것	0		A	
8465.91.92.00	- - - - 띠톱	5		C	
8465.91.99.00	- - - - 기타	0		A	
8465.92.10.10	- - - - 목재 성형용	0		A	
8465.92.10.90	- - - - 기타	0		A	
8465.92.90.10	- - - - 브러시 작업용	0		A	
8465.92.90.20	- - - - 목재 성형용	0		A	
8465.92.90.90	- - - - 기타	0		A	
8465.93.10.00	- - - 수치제어식	0		A	
8465.93.90.00	- - - 기타	0		A	
8465.94.10.00	- - - 수치제어식	0		A	
8465.94.90.00	- - - 기타	5		C	
8465.95.10.00	- - - 수치제어식	5		C	
8465.95.90.00	- - - 기타	0		A	
8465.96.00.00	- - 스플리팅(splitting)기 · 슬라이싱(slicing)기 · 박피기	0		A	
8465.99.10.00	- - - 수치제어식	5		C	
8465.99.90.00	- - - 기타	0		A	
8466.10.00.00	-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5		C	
8466.20.00.00	- 가공용 홀더	0		A	
8466.30.00.00	-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0		A	
8466.91.00.00	- - 제8464호의 기계용	0		A	
8466.92.00.00	- - 제8465호의 기계용	0		A	
8466.93.00.00	- -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	0		A	
8466.94.00.00	- -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0		A	
8467.11.10.00	- - -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보링머신(boring machine)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C	
8467.11.20.00	- - -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삽입 및 추출용	5		C	
8467.11.90.00	- - - 기타	5		C	
8467.19.10.00	- - -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5		C	
8467.19.20.00	- - - 콘크리트 진동기	5		C	
8467.19.90.00	- - - 기타	5		C	

8467.21.00.00	- - 각종 드릴	10		E	
8467.22.00.00	- - 톱(체인톱을 포함한다)	0		A	
8467.29.00.00	- - 기타	0		A	
8467.81.00.00	- - 체인톱	0		A	
8467.89.10.00	- - - 톱(체인톱은 제외한다)	5		C	
8467.89.90.00	- - - 기타	0		A	
8467.91.00.00	- - 체인톱의 것	0		A	
8467.92.00.00	-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5		C	
8467.99.00.00	- - 기타	0		A	
8468.10.00.00	- 수지식 취관(吹管)	0		A	
8468.20.10.00	- - 납땜용(절단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5		C	
8468.20.90.00	- - 기타	0		A	
8468.80.00.00	- 그 밖의 기기	5		C	
8468.90.00.00	- 부분품	15		C	
8470.10.00.0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5		C	
8470.21.00.00	-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5		C	
8470.29.00.00	- - 기타	0		A	
8470.30.00.00	- 그 밖의 계산기	5		C	
8470.50.00.00	- 금전 등록기	5		C	
8470.90.10.00	- - 우편요금계의 것	0		A	
8470.90.20.00	- - 표권 발행	5		C	
8470.90.90.00	- - 기타	5		C	
8471.30.00.0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71.41.00.00	- -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8471.49.00.00	- -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71.50.00.00	-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 입력장치 · 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8471.60.20.00	- - 키보드, 엑스-와이(x-y) 좌표 입력장치	0		A	
8471.60.90.00	- - 기타	0		A	
8471.70.00.00	- 기억장치	0		A	
8471.80.00.00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0		A	
8471.90.00.00	- 기타	0		A	

8472.10.00.00	- 등사기(복사판을 포함한다)	5		C	
8472.30.00.00	- 우편물의 분류기 · 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포장지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 · 봉합기 · 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5		C	
8472.90.10.00	- - 코인이나 지폐의 분류 또는 계수용 기계	0		A	
8472.90.20.00	- - 현금 자동지불기	0		A	
8472.90.30.00	- - 수표 인증기	0		A	
8472.90.40.00	- - 천공기 또는 스테이플기	5		C	
8472.90.50.00	- - 현금자동처리기	5		E	
8472.90.90.00	- - 기타	5		C	
8473.21.00.00	- - 소호 제8470.10호 · 제8470.21호 ·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A	
8473.29.00.00	- - 기타	0		A	
8473.30.00.00	-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A	
8473.40.10.00	- - 등사기의 것	0		A	
8473.40.90.00	- - 기타	0		A	
8473.50.00.00	-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0		A	
8474.10.10.00	- - 주조 스트리핑(stripping) 기계와 기계식 체	0		A	
8474.10.20.00	- - 진동식 체	10		E	
8474.10.90.00	- - 기타	0		A	
8474.20.10.00	- - 회전형 콘 파쇄기	25		E	
8474.20.20.00	- - 임팩트 연삭기	5		C	
8474.20.30.00	- - 링 분쇄기	10		E	
8474.20.90.00	- - 기타	25		E	
8474.31.10.00	- - - 최대 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C	
8474.31.90.00	- - - 기타	0		A	
8474.32.00.00	- -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5		C	
8474.39.10.00	- - - 특수기계(도자기 공업용으로 한정한다)	0		A	
8474.39.20.00	- - - 주물사 혼합기	15		E	
8474.39.90.00	- - - 기타	10		C	
8474.80.10.00	- - 세라믹페이스트의 조괴기(造塊機), 형입기나 성형기(成形機)	5		E	

8474.80.20.00	- -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0		A	
8474.80.30.00	- - 조립식 콘크리트 제품 성형용	10		C	
8474.80.90.00	- - 기타	10		E	
8474.90.00.00	- 부분품	0		A	
8475.10.00.00	-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 (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 계	0		A	
8475.21.00.00	- -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0		A	
8475.29.00.00	- - 기타	5		C	
8475.90.00.00	- 부분품	5		C	
8476.21.00.00	-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5		C	
8476.29.00.00	- - 기타	5		C	
8476.81.00.00	-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0		A	
8476.89.00.00	- - 기타	5		C	
8476.90.00.00	- 부분품	0		A	
8477.10.00.00	- 사출 성형기	0		A	
8477.20.00.00	- 압출기	0		A	
8477.30.00.00	- 취입 성형기	0		A	
8477.40.00.00	-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0		A	
8477.51.00.00	-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 (inner tube) 성형기	5		C	
8477.59.10.00	- - - 압축 성형용 액압 프레스	0		A	
8477.59.90.00	- - - 기타	0		A	
8477.80.00.00	- 그 밖의 기계	0		A	
8477.90.00.00	- 부분품	0		A	
8478.10.10.00	- - 궤련에 필터를 적용하는 기계	20		E	
8478.10.90.00	- - 기타	20		E	
8478.90.00.00	- 부분품	20		E	
8479.10.00.00	-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5		E	
8479.20.10.00	- - 추출용	0		A	
8479.20.90.00	- - 기타	0		A	
8479.30.00.0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 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0		A	
8479.40.00.00	-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0		A	
8479.50.00.00	-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79.60.00.00	- 증발식 에어쿨러	5		C	
8479.71.00.00	- -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15		E	
8479.79.00.00	- - 기타	15		E	
8479.81.00.00	- -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0		A	
8479.82.00.00	- -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교반기	0		A	
8479.89.10.00	- - - 비누 공업용	0		A	
8479.89.20.00	- - - 공기 가습기와 제습기(제8415호 또는 제8424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0		A	
8479.89.30.00	- - - 펌프형 자동 그리스(grease) 주입기	0		A	
8479.89.40.10	- - - - 석유공업에서 사용되는 피그 런처(pig launcher)와 피그 리시버(pig receiver) 트랩	15		G	
8479.89.40.90	- - - - 기타	15		E	
8479.89.50.00	- - - 전동식 윈드스크린와이핑(windscreen wiping) 장치	0		A	
8479.89.80.00	- - - 프레스	0		A	
8479.89.90.10	- - - - 양식업용 자동 수확기	0		A	
8479.89.90.20	- - - - 유체용 매니폴드(manifold) 분배기(«매니폴드»로 한정한다)	15		G	
8479.89.90.30	- - - - 벽난로와 티이에이(TEA)용 화염방지기	15		G	
8479.89.90.40	- - - - 벽난로 티이에이(TEA)	15		G	
8479.89.90.91	- - - - - 에코파이스(ECOPAÍS) 가솔린의 생산 및/또는 수출을 위한 바이오에탄올의 국내 처리용 기계	0		A	
8479.89.90.92	- - - - - 일회용 기저귀, 위생 냅킨 및 탐폰(tampon)과 물수건 제조용 기계, 곡물 저장을 위한 기계 장치와 강판을 푸는 기계를 갖춘 금속 사일로	0		A	
8479.89.90.99	- - - - 기타	15		E	
8479.90.00.00	- 부분품	0		A	
8480.10.00.00	- 금속 주조용 주형틀	5		E	
8480.20.00.00	- 주형 베이스	0		A	
8480.30.00.00	- 주형 제조용 모형	10		C	
8480.41.00.00	- - 사출식이나 압축식 성형용	5		C	
8480.49.00.00	- - 기타	0		A	
8480.50.00.00	- 유리 성형용 주형	5		E	
8480.60.00.00	-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0		A	
8480.71.10.00	- - - 면도기의 부분품	5		E	
8480.71.90.10	- - - - 플라스틱 제품 사출용	0		A	
8480.71.90.90	- - - - 기타	5		A	
8480.79.00.00	- - 기타	0		A	

8481.10.00.00	- 감압밸브	0		A	
8481.20.00.00	-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0		A	
8481.30.00.00	- 체크(논리턴)밸브	0		A	
8481.40.00.10	- - 석유공업용 안전밸브 <<블리더(bleeder)밸브>>	0		A	
8481.40.00.90	- - 기타	0		A	
8481.80.10.00	- - 가정용 수도꼭지	20		E	
8481.80.20.00	- - 크리스마스트리 밸브	0		A	
8481.80.30.00	- - 타이어용 밸브	15		C	
8481.80.40.00	- - 구형 밸브	0		A	
8481.80.51.00	- - - 13.8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용	10		E	
8481.80.59.00	- - - 기타	0		A	
8481.80.60.10	- - - 150PSI 이상의 압력용 금속 실(seal)이 있는 게이트 밸브	25		C	
8481.80.60.20	- - - 150PSI 이상의 압력용 탄성 실(seal)이 있는 게이트 밸브	25		C	
8481.80.60.90	- - - 기타	25		C	
8481.80.70.00	- - 정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구형 밸브	0		A	
8481.80.80.00	- - 그 밖의 솔레노이드(solenoid) 밸브	0		A	
8481.80.91.00	- - - 디스펜싱 밸브	0		A	
8481.80.99.10	- - - - 소화전	25		E	
8481.80.99.20	- - - - 150PSI 이상의 압력용 건식 배럴(barrel) 소화전	25		E	
8481.80.99.30	- - - - 150PSI 이상의 압력용 습식 배럴(barrel) 소화전	25		E	
8481.80.99.90	- - - - 기타	0		A	
8481.90.10.00	- - 크리스마스트리 밸브용 바디	20		E	
8481.90.90.10	- - - 스탠딩(standing) 밸브	20		E	
8481.90.90.20	- - - 철과 비(非)철금속의 주조로 제조된 밸브의 것	20		E	
8481.90.90.30	- - - 철과 비(非)철금속의 주조로 제조된 소화전의 것	20		E	
8481.90.90.90	- - - 기타	20		D	
8482.10.00.00	- 볼베어링(ball bearing)	0		A	
8482.20.00.00	-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0		A	
8482.30.00.00	-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A	
8482.40.00.00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A	
8482.50.00.00	-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A	
8482.80.00.00	-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A	

8482.91.00.00	- - 볼 · 니들 · 롤러	0		A	
8482.99.00.00	- - 기타	0		A	
8483.10.10.00	- - 항공기 엔진용	0		A	
8483.10.91.00	- - - 크랭크샤프트(crankshaft)	0		A	
8483.10.92.00	- - - 캠샤프트(camshaft)	0		A	
8483.10.93.00	- - - 플렉시블 샤프트(flexible shaft)	0		A	
8483.10.99.00	- - - 기타	0		A	
8483.20.00.0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A	
8483.30.10.00	- - 항공기 엔진용	0		A	
8483.30.90.00	- - 기타	0		A	
8483.40.30.00	- - 항공기 엔진용	0		A	
8483.40.91.00	- - -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	0		A	
8483.40.92.00	- -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0		A	
8483.40.99.00	- - - 기타	0		A	
8483.50.00.10	- - 알루미늄과 그 합금으로 만든 것	0		A	
8483.50.00.20	- - 강(鋼)과 그 합금으로 만든 것	0		A	
8483.50.00.30	- - 주철로 만든 것	0		A	
8483.50.00.90	- - 기타	0		A	
8483.60.10.00	- - 클러치(clutch)	0		A	
8483.60.90.00	- - 기타	0		A	
8483.90.40.00	- -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	0		A	
8483.90.90.00	- - 부분품	0		A	
8484.10.00.00	- 복합재료의 개스킷(gasket)	0		A	
8484.20.00.00	-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0		A	
8484.90.00.00	- 기타	0		A	
8486.10.00.00	-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0		A	
8486.20.00.00	-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0		A	
8486.30.00.0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0		A	
8486.40.00.00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0		A	
8486.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C	
8487.10.00.00	-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0		A	
8487.90.10.00	- - 비(非)자동식 윤활기	0		A	

8487.90.20.00	- - 실링[실(seal)이나 리테이너(retainer)]	0		A	
8487.90.90.00	- - 기타	0		A	
8501.10.10.00	- - 장난감용 전동기	20		E	
8501.10.20.00	- - 교류 · 직류 겸용 전동기	0		A	
8501.10.91.00	- - - 직류	0		A	
8501.10.92.00	- - - 교류[단상(單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01.10.93.00	- - - 교류[다상(多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01.20.11.00	- - -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를 갖춘 것	0		A	
8501.20.19.00	- - - 기타	0		A	
8501.20.21.00	- - -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를 갖춘 것	0		A	
8501.20.29.00	- - - 기타	5		C	
8501.31.10.00	- - -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를 갖춘 전동기	0		A	
8501.31.20.00	- - - 그 밖의 전동기	0		A	
8501.31.30.00	- - - 직류 발전기	0		A	
8501.32.10.00	- - -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를 갖춘 전동기	0		A	
8501.32.21.00	- - - - 출력이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5		C	
8501.32.29.00	- - - - 기타	5		C	
8501.32.40.00	- - - 직류 발전기	0		A	
8501.33.10.00	- - -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를 갖춘 전동기	0		A	
8501.33.20.00	- - - 그 밖의 전동기	5		C	
8501.33.30.00	- - - 직류 발전기	5		C	
8501.34.10.00	- - -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를 갖춘 전동기	0		A	
8501.34.20.00	- - - 그 밖의 전동기	5		C	
8501.34.30.00	- - - 직류 발전기	0		A	
8501.40.11.00	- - -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를 갖춘 것	0		A	
8501.40.19.00	- - - 기타	5		C	
8501.40.21.00	- - -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를 갖춘 것	0		A	
8501.40.29.00	- - - 기타	5		C	
8501.40.31.00	- - -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를 갖춘 것	0		A	
8501.40.39.00	- - - 기타	5		C	
8501.40.41.00	- - -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를 갖춘 것	0		A	
8501.40.49.00	- - - 기타	0		A	
8501.51.10.00	- - -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를 갖춘 것	0		A	
8501.51.90.00	- - - 기타	0		A	
8501.52.10.00	- - - 출력이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0		A	

8501.52.20.00	- - -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18.5킬로와트 이하인 것	5		C	
8501.52.30.00	- - - 출력이 18.5킬로와트 초과 30킬로와트 이하인 것	0		A	
8501.52.40.00	- - - 출력이 30킬로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5		C	
8501.53.00.00	- -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A	
8501.61.10.00	- - - 출력이 18.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A	
8501.61.20.00	- - - 출력이 18.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A	
8501.61.90.00	- - - 기타	5		C	
8501.62.00.00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C	
8501.63.00.00	-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C	
8501.64.00.00	-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C	
8502.11.10.00	- - - 교류의 것	5		C	
8502.11.90.00	- - - 기타	5		C	
8502.12.10.00	- - - 교류의 것	5		C	
8502.12.90.00	- - - 기타	5		C	
8502.13.10.00	- - - 교류의 것	0		A	
8502.13.90.00	- - - 기타	20		E	
8502.20.10.00	- - 교류의 것	5		C	
8502.20.90.00	- - 기타	5		C	
8502.31.00.00	- - 풍력의 것	5		C	
8502.39.10.00	- - - 교류의 것	5		C	
8502.39.90.00	- - - 기타	15		E	
8502.40.00.00	- 회전변환기	0		A	
8503.00.00.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A	
8504.10.00.00	-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0		A	
8504.21.11.00	- - -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C	
8504.21.19.00	- - - - 기타	15		E	
8504.21.90.00	- - - 기타	25		G	
8504.22.10.00	- -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25		G	
8504.22.90.00	- - - 기타	11.25		G	
8504.23.00.00	-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A	
8504.31.10.00	- - - 용량이 0.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A	
8504.31.90.00	- - - 기타	0		A	

8504.32.10.00	- -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5		E	
8504.32.90.00	- - - 기타	15		E	
8504.33.00.00	- -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1.25		E	
8504.34.10.00	- - - 용량이 1,6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25		G	
8504.34.20.00	- - - 용량이 1,6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5		X	
8504.34.30.00	- -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A	
8504.40.10.00	- - 무정전 전원장치	0		A	
8504.40.20.00	- - 전자시동장치	0		A	
8504.40.90.00	- - 기타	0		A	
8504.50.10.00	- - 작동전압이 260볼트 이하이고 정격전류가 30암페어 이하용	5		C	
8504.50.90.00	- - 기타	5		C	
8504.90.00.00	- 부분품	20		E	
8505.11.00.00	- - 금속으로 만든 것	5		C	
8505.19.10.00	- - - 마그네틱 스트립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0		E	
8505.19.90.00	- - - 기타	10		C	
8505.20.00.00	-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 · 브레이크	5		C	
8505.90.10.00	- - 전자석	5		C	
8505.90.20.00	- - 척(Chucks) · 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홀더	0		A	
8505.90.30.00	- - 전자석 리프팅 헤드(lifting head)	0		A	
8505.90.90.00	- - 부분품	5		C	
8506.10.11.00	- - - 원통형의 것	25		E	
8506.10.12.00	- - - 버튼형의 것	0		A	
8506.10.19.00	- - - 기타	25		E	
8506.10.91.10	- - - - 염화아연 또는 염화암모늄의 전해액이 있는 것	25		E	
8506.10.91.90	- - - - 기타	25		E	
8506.10.92.00	- - - 버튼형의 것	0		A	
8506.10.99.00	- - - 기타	25		E	
8506.30.10.00	- - 원통형의 것	25		E	
8506.30.20.00	- - 버튼형의 것	0		A	
8506.30.90.00	- - 기타	25		E	
8506.40.10.00	- - 원통형의 것	25		E	
8506.40.20.00	- - 버튼형의 것	0		A	

8506.40.90.00	- - 기타	25		E	
8506.50.10.00	- - 원통형의 것	25		E	
8506.50.20.00	- - 버튼형의 것	0		A	
8506.50.90.00	- - 기타	25		E	
8506.60.10.00	- - 원통형의 것	25		E	
8506.60.20.00	- - 버튼형의 것	0		A	
8506.60.90.00	- - 기타	25		E	
8506.80.10.10	- - - 니켈 코발트로 만든 것	25		E	
8506.80.10.90	- - - 기타	25		E	
8506.80.20.00	- - 버튼형의 것	0		A	
8506.80.90.00	- - 기타	25		E	
8506.90.00.00	- 부분품	0		A	
8507.10.00.0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25		G	
8507.20.00.00	-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25		X	
8507.30.00.10	- - aa · aaa · 9v · d 유형의 축전지 또는 충전식 배터리(이차)	0		A	
8507.30.00.90	- - 기타	25		E	
8507.40.00.10	- - aa · aaa · 9v · d 유형의 축전지 또는 충전식 배터리(이차)	0		A	
8507.40.00.90	- - 기타	25		E	
8507.50.00.10	- - aa · aaa · 9v · d 유형의 축전지 또는 충전식 배터리(이차)	0		A	
8507.50.00.90	- - 기타	25		E	
8507.60.00.10	- - 제8702호부터 제8704호까지의 차량에 사용되는 물품의 것	25		E	
8507.60.00.21	- - - aa · aaa · 9v · d 유형의 축전지 또는 충전식 배터리(이차)	0		A	
8507.60.00.29	- - - 기타	25		E	
8507.60.00.91	- - - aa · aaa · 9v · d 유형의 축전지 또는 충전식 배터리(이차)	0		A	
8507.60.00.99	- - - 기타	25		E	
8507.80.00.10	- - - aa · aaa · 9v · d 유형의 축전지 또는 충전식 배터리(이차)	0		A	
8507.80.00.90	- - 기타	25		E	
8507.90.10.00	- - 용기 또는 덮개	0		A	
8507.90.20.00	- - 격리판	0		A	
8507.90.30.00	- - 판	10		E	
8507.90.90.00	- - 기타	0		A	

8508.11.00.00	- -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30		E	
8508.19.00.00	- - 기타	30		E	
8508.60.00.00	- 그 밖의 진공청소기	15		E	
8508.70.00.00	- 부분품	10		B	
8509.40.10.00	- - 블렌더(blender)	30		C	
8509.40.90.00	- - 기타	30		C	
8509.80.10.00	- - 바닥광택기	30		B	
8509.80.20.00	- -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30		B	
8509.80.90.00	- - 기타	20		B	
8509.90.00.00	- 부분품	10		B	
8510.10.00.00	- 면도기	30		E	
8510.20.10.00	- - 이발기용	30		E	
8510.20.20.00	- - 전모용(剪毛)	30		E	
8510.30.00.00	- 모발제거기	20		E	
8510.90.10.00	- - 헤드(head) · 빗 · 카운터 콤(counter comb) · 날 · 이러한 기기들의 날	20		E	
8510.90.90.00	- - 기타	20		E	
8511.10.10.00	- - 항공기 엔진용	5		C	
8511.10.90.00	- - 기타	0		A	
8511.20.10.00	- - 항공기 엔진용	5		C	
8511.20.90.00	- - 기타	0		A	
8511.30.10.00	- - 항공기 엔진용	5		C	
8511.30.91.00	- - - 배전기	0		A	
8511.30.92.00	- - - 점화 코일	0		A	
8511.40.10.00	- - 항공기 엔진용	5		C	
8511.40.90.00	- - 기타	0		A	
8511.50.10.00	- - 항공기 엔진용	5		C	
8511.50.90.00	- - 기타	0		A	
8511.80.10.00	- - 항공기 엔진용	5		C	
8511.80.90.00	- - 기타	0		A	
8511.90.10.00	- - 항공기 엔진용 기기의 것	5		C	
8511.90.21.00	- - - 단속기 접점	10		E	
8511.90.29.00	- - - 기타	0		A	
8511.90.30.00	- - 점화 플러그(항공기 엔진용의 것은 제외한다)의 것	10		E	
8511.90.90.00	- - 기타	0		A	

8512.10.00.0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0		A	
8512.20.10.00	- - 도로용 헤드램프[소호 제8539.10.00호의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은 제외한다]	0		A	
8512.20.90.00	- - 기타	0		A	
8512.30.10.00	- - 경적	10		E	
8512.30.90.00	- - 기타	10		E	
8512.40.00.00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 제무기(demister)	0		A	
8512.90.10.00	- - 자동차용이나 자전거용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의 암(arm)과 날(blade)	10		C	
8512.90.90.00	- - 기타	10		C	
8513.10.10.00	- - 안전등	5		C	
8513.10.90.00	- - 기타	30		D	
8513.90.00.00	- 부분품	20		E	
8514.10.00.00	-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간접가열식)	0		A	
8514.20.00.00	-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노(爐)와 오븐	0		A	
8514.30.10.00	- - 아크(arc)식의 노(爐)	0		A	
8514.30.90.00	- - 기타	5		C	
8514.40.00.00	-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0		A	
8514.90.00.00	- 부분품	0		A	
8515.11.00.00	- - 납땜용 인두와 건(gun)	0		A	
8515.19.00.00	- - 기타	0		A	
8515.21.00.00	-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0		A	
8515.29.00.00	- - 기타	0		A	
8515.31.00.00	-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0		A	
8515.39.00.00	- - 기타	5		C	
8515.80.10.00	- - 초음파식	0		A	
8515.80.90.00	- - 기타	0		A	
8515.90.00.00	- 부분품	0		A	
8516.10.00.00	- 전기식의 즉시식 ·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30		E	
8516.21.00.00	-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30		C	
8516.29.10.00	- - - 스토브(stove)	30		C	
8516.29.90.00	- - - 기타	30		C	
8516.31.00.00	- - 헤어드라이어	30		E	

8516.32.00.00	- - 그 밖의 이용기기	30		E	
8516.33.00.00	- - 손 건조기	30		C	
8516.40.00.00	- 전기다리미	30		E	
8516.50.00.0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30		E	
8516.60.10.00	- - 오븐(oven)	30		X	
8516.60.20.10	- - - 전기저항식의 것	30		X	
8516.60.20.21	- - - - 전기인덕션[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0		X	
8516.60.20.22	- - - - 오븐이 없는 전기인덕션	0		A	
8516.60.20.29	- - - - 그 밖의 전기인덕션	30		X	
8516.60.20.90	- - - 기타	30		X	
8516.60.30.00	- - 스토브(stove) · 그릴러(griller) · 로스터(roaster)	30		E	
8516.71.00.00	- - 커피 · 차를 끓이는 기기	30		C	
8516.72.00.00	- - 토스터	30		C	
8516.79.00.00	- - 기타	30		D	
8516.80.00.00	- 전열용 저항체	0		A	
8516.90.00.00	- 부분품	0		A	
8517.11.00.00	-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17.12.00.22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517.12.00.29	- - - - - 기타	0		A	
8517.12.00.32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517.12.00.39	- - - - - 기타	15		E	
8517.12.00.92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517.12.00.99	- - - - 기타	15		E	
8517.18.00.00	- - 기타	5		C	
8517.61.00.00	- - 기지국	0		A	
8517.62.10.00	- - - 자동 유선전화용이나 유선전신용 교환기	0		A	
8517.62.20.00	- - - 반송통신용 · 디지털 통신용 기기	10		A	
8517.62.90.00	- - - 기타	5		E	
8517.69.10.00	- - - 영상전화기	5		E	
8517.69.20.00	- - - 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수신기기	5		C	
8517.69.90.00	- - - 기타	5		C	
8517.70.00.00	- 부분품	5		A	

8518.10.00.00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0		A	
8518.21.00.00	-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D	
8518.22.00.00	-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E	
8518.29.00.00	- - 기타	10		E	
8518.30.00.0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25		E	
8518.40.00.00	- 가청주파증폭기	5		C	
8518.50.00.00	- 음향증폭세트	5		C	
8518.90.10.00	- - 콘(cone), 진동판(diaphragm), 요크(yoke)	20		E	
8518.90.90.10	- - - 케이싱(가구 또는 캐비닛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C	
8518.90.90.90	- - - 기타	20		C	
8519.20.00.00	-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30		C	
8519.30.10.00	- -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30		C	
8519.30.90.00	- - 기타	30		C	
8519.50.00.00	- 전화응답기	30		E	
8519.81.10.00	- - - 카세트 플레이어	25		C	
8519.81.20.00	- - - 광학식 판독 시스템용 재생기	30		D	
8519.81.90.00	- - - 기타	25		D	
8519.89.10.00	- - - 레코드 플레이어	30		C	
8519.89.90.00	- - - 기타	25		E	
8521.10.00.00	- 마그네틱 테이프형	30		E	
8521.90.10.00	- - 콤팩트 디스크 기록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0		E	
8521.90.90.1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0		D	
8521.90.90.90	- 기타	20		E	
8522.10.00.00	- 픽업 카트리지	0		A	
8522.90.20.00	- - 가구 또는 박스	20		C	
8522.90.30.00	- -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 스타일(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		E	
8522.90.40.00	- - 광학식 판독 시스템용 재생장치	20		E	
8522.90.50.00	- - 카세트형 재생장치	20		E	
8522.90.90.00	- - 기타	20		C	
8523.21.00.00	-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	0		A	
8523.29.10.00	- - - 마그네틱 디스크	25		E	
8523.29.21.00	- - - - 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8523.29.22.00	- - - - 폭이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8523.29.23.00	- - - - 폭이 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8523.29.31.00	- - - - 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8523.29.32.00	- - - - 폭이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A	
8523.29.33.00	- - - - 폭이 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A	
8523.29.90.10	- - - - 음성이나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	20		C	
8523.29.90.90	- - - - 기타	0		A	
8523.41.00.00	- - 음성 또는 그 밖의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광학식 매체 (기록이 안 된 것으로서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25		E	
8523.49.10.00	- - - 음성 재생용	25		E	
8523.49.20.00	- - - 음성 또는 영상과 음성 재생용	25		E	
8523.49.90.00	- - - 기타	25		E	
8523.51.00.00	- -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10		A	
8523.52.00.00	- - 스마트카드	0		A	
8523.59.10.00	- - -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	5		C	
8523.59.90.00	- - - 기타	25		E	
8523.80.10.00	- - 디스크(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스트립 · 필름 · 그 밖의 조제된 매트릭스(matrix)와 마스터(master)	25		E	
8523.80.21.00	- - - 교육용의 것	25		E	
8523.80.29.00	- - - 기타	25		E	
8523.80.30.00	- - 음성이나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	25		E	
8523.80.90.00	- - 기타	25		E	
8525.50.10.00	- - 라디오 방송용	0		A	
8525.50.20.00	- - 텔레비전용	15		E	
8525.60.10.00	- - 라디오 방송용	10		E	
8525.60.20.00	- - 텔레비전용	15		E	
8525.80.10.00	- - 텔레비전 카메라	5		E	
8525.80.20.00	- -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5		A	
8526.10.00.00	- 레이더기기	0		A	
8526.91.00.00	- - 항행용 무선기기	0		A	
8526.92.00.00	- - 무선원격조절기기	0		A	
8527.12.00.00	-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30		E	
8527.13.00.00	- -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30		E	
8527.19.00.00	- - 기타	30		C	
8527.21.00.1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0		D	

8527.21.00.90	- - - 기타	30		F	
8527.29.00.00	- - 기타	30		E	
8527.91.00.00	- - 음성기록기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30		E	
8527.92.00.00	- -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30		E	
8527.99.00.00	- - 기타	30		E	
8528.42.00.10	- - - 20인치 이하인 것	5		E	
8528.42.00.20	- - - 20인치 초과 32인치 이하인 것	5% + USD 73.11/ 개		E	
8528.42.00.30	- - - 32인치 초과 41인치 이하인 것	5% + USD 140.32/개		E	
8528.42.00.40	- - - 41인치 초과 50인치 이하인 것	5% + USD 158.14/개		E	
8528.42.00.90	- - - 기타	20		E	
8528.49.00.10	- - - 20인치 이하인 것	5		E	
8528.49.00.20	- - - 20인치 초과 32인치 이하인 것	5% + USD 73.11/ 개		E	
8528.49.00.30	- - - 32인치 초과 41인치 이하인 것	5% + USD 140.32/개		E	
8528.49.00.40	- - - 41인치 초과 75인치 이하인 것	5% + USD 158.14/개		E	
8528.49.00.90	- - - 기타	20		E	
8528.52.00.10	- - - 20인치 이하인 것	5		E	
8528.52.00.20	- - - 20인치 초과 32인치 이하인 것	5% + USD 73.11/ 개		E	
8528.52.00.30	- - - 32인치 초과 41인치 이하인 것	5% + USD 140.32/개		E	
8528.52.00.40	- - - 41인치 초과 75인치 이하인 것	5% + USD 158.14/개		E	
8528.52.00.90	- - - 기타	20		E	
8528.59.00.10	- - - 20인치 이하인 것	5		E	
8528.59.00.20	- - - 20인치 초과 32인치 이하인 것	5% + USD 73.11/ 개		E	
8528.59.00.30	- - - 32인치 초과 41인치 이하인 것	5% + USD 140.32/개		E	
8528.59.00.40	- - - 41인치 초과 75인치 이하인 것	5% + USD 158.14/개		E	
8528.59.00.90	- - - 기타	20		E	
8528.62.00.00	-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0		E	

8528.69.00.00	- - 기타	20		E	
8528.71.00.10	- - - 디코더(decoder), FTA 위성 수신기	20		E	
8528.71.00.90	- - - 기타	20		E	
8528.72.00.21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20		E	
8528.72.00.29	- - - - 기타				
8528.72.00.29 A	- - - - 20인치 이하인 것	5		E	
8528.72.00.29B	- - - - 20인치 초과 32인치 이하인 것	5% + USD 73.11/ 개		E	
8528.72.00.29 C	- - - - 32인치 초과 41인치 이하인 것	5% + USD 140.32/개		E	
8528.72.00.29 D	- - - - 41인치 초과 75인치 이하인 것	5% + USD 158.14/개		E	
8528.72.00.29E	- - - - 75인치를 초과하는 것	20		E	
8528.72.00.31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20		D	
8528.72.00.39	- - - - 기타				
8528.72.00.39 A	- - - - 20인치 이하인 것	5		C	
8528.72.00.39B	- - - - 20인치 초과 32인치 이하인 것	5% + USD 73.11/ 개		C	
8528.72.00.39 C	- - - - 32인치 초과 41인치 이하인 것	5% + USD 140.32/개		C	
8528.72.00.39 D	- - - - 41인치 초과 75인치 이하인 것	5% + USD 158.14/개		C	
8528.72.00.39E	- - - - 75인치를 초과하는 것	20		C	
8528.72.00.41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20		C	
8528.72.00.49	- - - - 기타				
8528.72.00.49 A	- - - - 20인치 이하인 것	5		E	
8528.72.00.49B	- - - - 20인치 초과 32인치 이하인 것	5% + USD 73.11/ 개		E	
8528.72.00.49 C	- - - - 32인치 초과 41인치 이하인 것	5% + USD 140.32/개		E	

8528.72.00.49 D	- - - - 41인치 초과 75인치 이하인 것	5% + USD 158.14/개		E	
8528.72.00.49E	- - - - 75인치를 초과하는 것	20		E	
8528.72.00.91	- - 20인치 이하인 것	5		G	
8528.72.00.92	- - - 20인치 초과 32인치 이하인 것	5% + USD 73.11/ 개		G	
8528.72.00.93	- - - 32인치 초과 41인치 이하인 것	5% + USD 140.32/개		G	
8528.72.00.94	- - - 41인치 초과 75인치 이하인 것	5% + USD 158.14/개		G	
8528.72.00.99	- - - 기타	20		E	
8528.73.00.00	- - 기타(단색)	30		E	
8529.10.10.00	- - 페라이트 안테나	5		C	
8529.10.20.00	- - 파라볼라 안테나	0		A	
8529.10.90.00	- - 기타, 부분품	0		A	
8529.90.10.10	- - - 새시(chassis)와 전면부	0		A	
8529.90.10.90	- - - 기타	5		C	
8529.90.20.00	- - 인쇄 또는 표면 장착 부품이 있는 카드	20		E	
8529.90.90.00	- - 기타	10		A	
8530.10.00.00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0		A	
8530.80.10.00	- - 교통신호등과 그 컨트롤 박스	15		E	
8530.80.90.00	- - 기타	15		E	
8530.90.00.00	- 부분품	0		A	
8531.10.00.00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0		A	
8531.20.00.00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		A	
8531.80.00.00	- 그 밖의 기기	15		E	
8531.90.00.00	- 부분품	0		A	
8532.10.00.00	-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A	
8532.21.00.00	- - 탄탈륨의 것	0		A	
8532.22.00.00	- - 알루미늄 전해의 것	0		A	
8532.23.00.00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		A	
8532.24.00.00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		A	
8532.25.00.00	- -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		A	
8532.29.00.00	- - 기타	0		A	

8532.30.00.00	- 가변식이나 조정식 축전기	0		A	
8532.90.00.00	- 부분품	0		A	
8533.10.00.00	-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코퍼지선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0		A	
8533.21.00.00	-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0		A	
8533.29.00.00	- - 기타	0		A	
8533.31.10.00	- - - 가감저항기(rheostat)(전압이 260볼트 이하이고 전류가 30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33.31.20.00	- - - 전위차계(potentiometer)	0		A	
8533.31.90.00	- - - 기타	0		A	
8533.39.10.00	- - - 가감저항기(rheostat)(전압이 260볼트 이하이고 전류가 30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33.39.20.00	- - - 그 밖의 가감저항기(rheostat)	0		A	
8533.39.30.00	- - - 전위차계(potentiometer)	0		A	
8533.39.90.00	- - - 기타	0		A	
8533.40.10.00	- - - 가감저항기(rheostat)(전압이 260볼트 이하이고 전류가 30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C	
8533.40.20.00	- - 그 밖의 가감저항기(rheostat)	0		A	
8533.40.30.00	- - 탄소 전위차계(potentiometer)	0		A	
8533.40.40.00	- - 그 밖의 전위차계(potentiometer)	0		A	
8533.40.90.00	- - 기타	5		C	
8533.90.00.00	- 부분품	0		A	
8534.00.00.00	인쇄회로	0		A	
8535.10.00.00	- 퓨즈	5		C	
8535.21.00.00	- - 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5		C	
8535.29.00.00	- - 기타	5		B	
8535.30.00.00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0		A	
8535.40.10.00	- - 피뢰기 · 전압제한기	5		C	
8535.40.20.00	- - 서지(surge)억제기	5		C	
8535.90.10.00	- - 개폐기	5		C	
8535.90.90.10	- - - 교류 전압이 1,000볼트 이상인 유정의 정두용 공업용 접속자	0		A	
8535.90.90.90	- - - 기타	0		A	
8536.10.10.00	- - 제87류의 차량용 퓨즈	5		C	
8536.10.20.00	- - 기타(전압이 260볼트 이하이고 전류가 30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36.10.90.00	- - 기타	0		A	

8536.20.20.00	- - 전압이 260볼트 이하이고 전류가 100암페어 이하인 것	5		E	
8536.20.90.00	- - 기타	0		A	
8536.30.11.00	- - - 전화선 보호용의 기체대기전극을 갖춘 언로더(unloader)	0		A	
8536.30.19.00	- - - 기타	0		A	
8536.30.90.00	- - 기타	0		A	
8536.41.10.00	- - - 정격 전류가 30암페어 이하인 것	0		A	
8536.41.90.00	- - - 기타	5		C	
8536.49.11.00	- - - - 접촉기	5		C	
8536.49.19.00	- - - - 기타	5		C	
8536.49.90.00	- - - 기타	0		A	
8536.50.11.00	- - - 제87류의 차량용	5		C	
8536.50.19.00	- - - 기타	0		A	
8536.50.90.00	- - 기타	0		A	
8536.61.00.00	- - 램프홀더	0		A	
8536.69.00.10	- - 케이블 연장기기	5		E	
8536.69.00.90	- - - 기타	5		E	
8536.70.00.00	-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 케이블용 커넥터	0		A	
8536.90.10.00	- -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전압이 260볼트 이하이고 전류가 30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36.90.20.00	- - 전압이 24볼트 이하인 터미널(terminal)	0		A	
8536.90.90.00	- - 기타	0		A	
8537.10.10.00	- -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 제어기	5		E	
8537.10.90.10	- - - 전자식 패널	5		C	
8537.10.90.90	- - - 기타	0		A	
8537.20.00.00	-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0		A	
8538.10.00.10	- - 공업 · 전자 및 전기기계 제어용 · 배전박스용 보드와 캐비닛	25		X	
8538.10.00.20	- - 전기계량기 보호함	25		X	
8538.10.00.30	- - 차단기함	25		X	
8538.10.00.90	- - 기타	25		E	
8538.90.00.10	- - 교류 전압이 1,000볼트 이상인 유정의 정두용 공업용 접속자	20		E	
8538.90.00.90	- - 기타	20		E	
8539.10.00.00	-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0		A	

8539.21.00.00	- - 텅스텐 할로겐의 것	30		E	
8539.22.10.00	- - - 미니어처	30		E	
8539.22.90.00	- - - 기타	30		E	
8539.29.10.00	- - - 제8512호의 도로 조명 또는 신호 장치용(실내 조명용은 제외한다)	30		E	
8539.29.20.00	- - - 미니어처 유형	30		E	
8539.29.90.00	- - - 기타	30		E	
8539.31.10.10	- - - - T5와 T8 유형	0		A	
8539.31.10.90	- - - - 기타	20		E	
8539.31.20.10	- - - - T5와 T8 유형	0		A	
8539.31.20.90	- - - - 기타	20		E	
8539.31.30.10	- - - - A 레인지(range)	0		A	
8539.31.30.90	- - - - 기타	20		E	
8539.31.90.10	- - - - T5와 T8 유형	0		A	
8539.31.90.90	- - - - 기타	20		E	
8539.32.00.00	- -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30		C	
8539.39.20.00	- - - 섬광 생성용	30		E	
8539.39.90.00	- - - 기타	30		E	
8539.41.00.00	- - 아크램프	30		E	
8539.49.00.00	- - 기타	30		E	
8539.50.00.0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0		A	
8539.90.10.00	- - 스크루 캡(screw-cap)	0		A	
8539.90.90.00	- - 기타	0		A	
8540.11.00.00	- - 천연색	0		A	
8540.12.00.00	- - 단색	0		A	
8540.20.00.00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0		A	
8540.40.00.0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40.60.00.00	- 그 밖의 음극선관	0		A	
8540.71.00.00	- - 자전관(magnetron)	0		A	
8540.79.00.00	- - 기타	0		A	
8540.81.00.00	- - 수신관이나 증폭관	0		A	
8540.89.00.00	- - 기타	0		A	
8540.91.00.00	- - 음극선관의 것	0		A	

8540.99.00.00	- - 기타	0		A	
8541.10.00.00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0		A	
8541.21.00.00	- - 전력 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 것	0		A	
8541.29.00.00	- - 기타	0		A	
8541.30.00.00	-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0		A	
8541.40.10.00	-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0		A	
8541.40.90.00	- - 기타	0		A	
8541.50.00.00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0		A	
8541.60.00.0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0		A	
8541.90.00.00	- 부분품	0		A	
8542.31.00.00	-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0		A	
8542.32.00.00	- - 메모리	0		A	
8542.33.00.00	- - 증폭기	0		A	
8542.39.00.00	- - 기타	0		A	
8542.90.00.00	- 부분품	0		A	
8543.10.00.00	- 입자가속기	0		A	
8543.20.00.00	- 신호발생기	0		A	
8543.30.00.10	- - 전기분해식의 것	10		C	
8543.30.00.90	- - 기타	10		C	
8543.70.10.00	- -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저	0		A	
8543.70.20.00	- - 금속 감지기	0		A	
8543.70.30.00	- - 원격조절기	5		A	
8543.70.90.00	- - 기타	0		A	
8543.90.00.00	- 부분품	0		A	
8544.11.00.11	- - - - 4에이더블유지(AWG)부터 16에이더블유지(AWG)까지의 것	10		G	
8544.11.00.19	- - - - 기타	10		X	
8544.11.00.90	- - 기타	10		G	
8544.19.00.00	- - 기타	10		G	
8544.20.00.00	-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0		A	
8544.30.00.00	- 점화용 와이어링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수송수단용으로 한정한다)	0		A	
8544.42.10.10	- - - - 연결용 전화 케이블(2x20AWG)	15		G	

8544.42.10.20	- - - - 꼬임가공된 전화 케이블(2x17AWG, 2x23AWG 또는 2x24AWG)	15		G	
8544.42.10.30	- - - - 병렬형 전화 케이블(2x22AWG)	15		G	
8544.42.10.90	- - - - 기타	15		G	
8544.42.20.00	- - - 기타 (구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5		X	
8544.42.90.00	- - - 기타	15		E	
8544.49.10.10	- - - - 석유 · 광산업에서 사용되는 유형의 금속외장을 갖춘 것	25		X	
8544.49.10.90	- - - - 기타	25		X	
8544.49.90.00	- - - 기타	25		X	
8544.60.10.10	- - - 중전압용(25킬로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X	
8544.60.10.20	- - - 25킬로볼트 이하의 금속외장을 갖춘 것(석유 · 광산업에서 사용되는 유형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X	
8544.60.10.90	- - - 기타	15		G	
8544.60.90.10	- - - 중전압 알루미늄의 것(25킬로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X	
8544.60.90.20	- - - 25킬로볼트 이하의 금속외장을 갖춘 알루미늄의 것(석유 · 광산업에서 사용되는 유형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G	
8544.60.90.90	- - - 기타	0		A	
8544.70.00.00	- 광섬유 케이블	10		E	
8545.11.00.00	- - 노(爐)용	0		A	
8545.19.00.00	- - 기타	0		A	
8545.20.00.00	- 브러시	0		A	
8545.90.20.00	- - 전지용 탄소	0		A	
8545.90.90.00	- - 기타	0		A	
8546.10.00.00	- 유리로 만든 것	5		C	
8546.20.00.00	- 도자제의 것	0		A	
8546.90.10.00	- - 실리콘으로 만든 것	5		E	
8546.90.90.00	- - 기타	5		E	
8547.10.10.00	- - 플러그 본체	0		A	
8547.10.90.00	- - 기타	0		A	
8547.20.0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0		A	
8547.90.10.00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 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0		A	
8547.90.90.00	- - 기타	0		A	
8548.10.00.10	- - 페라이트를 함유한 것	0		A	
8548.10.00.90	- - 기타	0		A	

8548.90.00.20	- - 페라이트를 함유한 것	0		A	
8548.90.00.90	- - 기타	0		A	
8601.10.0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C	
8601.20.00.00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0		A	
8602.10.00.00	- 디젤 전기기관차	5		C	
8602.90.00.00	- 기타	5		C	
8603.10.0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C	
8603.90.00.00	- 기타	5		C	
8604.00.10.00	- 자주식(自走式)	5		C	
8604.00.90.00	- 기타	5		C	
8605.00.00.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 · 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20		E	
8606.10.00.00	-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20		E	
8606.30.00.00	-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20		E	
8606.91.00.00	-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20		E	
8606.92.00.00	- - 덮개가 없는 것으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20		E	
8606.99.00.00	- - 기타	20		E	
8607.11.00.00	- -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C	
8607.12.00.00	- -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C	
8607.19.00.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C	
8607.21.00.00	-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C	
8607.29.00.00	- - 기타	5		C	
8607.30.00.00	- 혹과 그 밖의 연결장치 · 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5		C	
8607.91.00.00	- - 기관차용	5		C	
8607.99.00.00	- - 기타	5		C	
8608.00.00.00	철도나 궤도전로용 장치물, 철도 · 궤도 · 도로 · 내륙수로 · 주차장 · 항만 ·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기기 · 안전기기 · 교통관제기기, 이들의 부분품	15		C	
8609.00.00.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A	
8701.10.00.00	- 보행운전형 트랙터	0		A	
8701.20.00.8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		A	
8701.20.00.90	- - 기타	5		E	

8701.30.00.00	- 무한궤도식 트랙터	0		A	
8701.91.00.00	- 엔진의 동력이 18킬로와트 이하인 것	0		A	
8701.92.00.00	- 엔진의 동력이 18킬로와트 초과 37킬로와트 이하인 것	0		A	
8701.93.00.00	- 엔진의 동력이 37킬로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0		A	
8701.94.00.00	- 엔진의 동력이 75킬로와트 초과 130킬로와트 이하인 것	0		A	
8701.95.00.00	- 엔진의 동력이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A	
8702.10.10.8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		A	
8702.10.10.90	- - - 기타	35		E	
8702.10.90.8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		A	
8702.10.90.90	- - - 기타	10		E	
8702.20.10.1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2.20.10.90	- - - 기타	0		A	
8702.20.90.1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2.20.90.90	- - - 기타	0		A	
8702.30.10.1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2.30.10.90	- - - 기타	0		A	
8702.30.90.1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2.30.90.90	- - - 기타	0		A	
8702.40.10.1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2.40.10.90	- - - 기타	0		A	
8702.40.90.1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2.40.90.19	- - - - 기타	0		A	
8702.40.90.9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2.40.90.99	- - - - 기타	0		A	
8702.90.10.1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		A	
8702.90.10.70	- - - 기타	35		G	
8702.90.90.1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		A	
8702.90.90.90	- - - 기타	10		E	

8703.10.00.1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3.10.00.19	- - - 기타	0		A	
8703.10.00.3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20		E	
8703.10.00.39	- - - 기타	20		E	
8703.10.00.4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20		E	
8703.10.00.49	- - - 기타	20		E	
8703.10.00.9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20		E	
8703.10.00.99	- - - 기타	20		E	
8703.21.00.8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703.21.00.91	- - - - 삼륜 자동차	40		C	
8703.21.00.99	- - - - 기타	40		G	
8703.22.1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703.22.10.90	- - - - 기타	40		G	
8703.22.9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703.22.90.90	- - - - 기타	40		G	
8703.23.1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703.23.10.90	- - - - 기타	40		G	
8703.23.9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G	
8703.23.90.90	- - - - 기타	40		G	
8703.24.1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703.24.10.90	- - - - 기타	35		G	
8703.24.9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703.24.90.90	- - - - 기타	35		G	
8703.31.1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703.31.10.90	- - - - 기타	40		G	
8703.31.9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703.31.90.91	- - - - 삼륜 자동차	40		E	

8703.31.90.99	- - - - 기타	40		G	
8703.32.1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703.32.10.90	- - - - 기타	40		G	
8703.32.9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703.32.90.90	- - - - 기타	40		G	
8703.33.1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703.33.10.90	- - - - 기타	40		G	
8703.33.9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703.33.90.90	- - - - 기타	40		G	
8703.40.10.1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40		G	
8703.40.10.91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8703.40.10.92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3,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C	
8703.40.10.93	-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4,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20		E	
8703.40.10.99	- - - - - 기타	35		G	
8703.40.90.1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40		G	
8703.40.90.91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8703.40.90.92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3,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C	
8703.40.90.93	-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4,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20		X	
8703.40.90.99	- - - - - 기타	35		X	
8703.50.10.1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40		G	
8703.50.10.91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8703.50.10.92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3,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C	
8703.50.10.93	-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4,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20		E	
8703.50.10.99	- - - - - 기타	35		G	

8703.50.90.1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40		G	
8703.50.90.91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8703.50.90.92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3,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C	
8703.50.90.93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4,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20		E	
8703.50.90.99	- - - - 기타	35		G	
8703.60.10.10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8703.60.10.20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3,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C	
8703.60.10.30	- - - 실린더 용량이 3,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4,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20		E	
8703.60.10.90	- - - 기타	35		G	
8703.60.90.10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8703.60.90.20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3,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C	
8703.60.90.30	- - - 실린더 용량이 3,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4,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20		E	
8703.60.90.90	- - - 기타	35		G	
8703.70.10.10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8703.70.10.20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3,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C	
8703.70.10.30	- - - 실린더 용량이 3,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4,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20		E	
8703.70.10.90	- - - 기타	35		G	
8703.70.90.10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8703.70.90.20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3,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C	
8703.70.90.30	- - - 실린더 용량이 3,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4,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20		E	
8703.70.90.90	- - - 기타	35		G	
8703.80.10.1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3.80.10.90	- - - 기타	0		A	
8703.80.90.1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3.80.90.90	- - - 기타	0		A	
8703.90.00.7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40		E	
8703.90.00.90	- - 기타	40		E	

8704.10.00.1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4.10.00.19	- - - 기타	0		A	
8704.10.00.3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4.10.00.39	- - - 기타	5		A	
8704.10.00.4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4.10.00.49	- - - 기타	5		C	
8704.10.00.5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4.10.00.59	- - - 기타	5		C	
8704.10.00.9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4.10.00.99	- - - 기타	5		C	
8704.21.1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A	
8704.21.10.91	- - - - - 삼륜 자동차	40		E	
8704.21.10.92	- - - - - 농업용 다용도 트럭	0		A	
8704.21.10.99	- - - - - 기타	40		G	
8704.21.9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		A	
8704.21.90.91	- - - - - 삼륜 자동차	0		A	
8704.21.90.92	- - - - - 농업용 다용도 트럭	0		A	
8704.21.90.99	- - - - - 기타	10		E	
8704.22.1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		A	
8704.22.10.90	- - - - 기타	5		A	
8704.22.2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		A	
8704.22.20.90	- - - - 기타	5		E	
8704.22.9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		A	
8704.22.90.90	- - - - 기타	5		A	
8704.23.0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		A	
8704.23.00.90	- - - 기타	5		A	
8704.31.1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15		E	

8704.31.10.91	- - - - 삼륜 자동차	40		E	
8704.31.10.92	- - - - 농업용 다용도 트럭	0		A	
8704.31.10.99	- - - - 기타	40		G	
8704.31.9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		A	
8704.31.90.91	- - - - 농업용 다용도 트럭	0		A	
8704.31.90.99	- - - - 기타	10		E	
8704.32.1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4.32.10.90	- - - - 기타	10		E	
8704.32.2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4.32.20.90	- - - - 기타	15		E	
8704.32.90.8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4.32.90.90	- - - - 기타	5		E	
8704.90.11.1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40		E	
8704.90.11.91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8704.90.11.92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3,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C	
8704.90.11.93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4,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20		E	
8704.90.11.99	- - - - 기타	35		G	
8704.90.19.1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40		E	
8704.90.19.91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8704.90.19.92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3,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E	
8704.90.19.93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4,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20		E	
8704.90.19.99	- - - - 기타	35		E	
8704.90.21.1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40		E	
8704.90.21.91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8704.90.21.92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3,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C	
8704.90.21.93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4,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20		E	
8704.90.21.99	- - - - 기타	35		G	

8704.90.29.1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40		E	
8704.90.29.91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0		A	
8704.90.29.92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3,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10		E	
8704.90.29.93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세제곱센티미터 초과 4,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20		E	
8704.90.29.99	- - - - 기타	35		E	
8704.90.31.00	- - - 차량의 총 중량이 4.537톤 이하인 것	10		E	
8704.90.39.00	- - - 기타	10		E	
8704.90.41.00	- - - 차량의 총 중량이 4.537톤 이하인 것	10		E	
8704.90.49.00	- - - 기타	10		E	
8704.90.51.1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4.90.51.90	- - - - 기타	0		A	
8704.90.59.1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4.90.59.90	- - - - 기타	0		A	
8704.90.91.1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4.90.91.90	- - - - 기타	10		E	
8704.90.99.10	-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4.90.99.90	- - - - 기타	10		E	
8705.10.00.00	- 기중기차(crane lorry)	0		A	
8705.20.00.00	-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10		E	
8705.30.00.00	- 소방차	10		C	
8705.40.00.0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0		A	
8705.90.11.00	- - - 도로청소차	10		E	
8705.90.19.00	- - - 기타	10		E	
8705.90.20.00	- - 이동방사선차	5		C	
8705.90.90.10	- - - 콘크리트 펌프차	0		A	
8705.90.90.90	- - - 기타	0		A	
8706.00.10.8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25		E	
8706.00.10.90	- - 기타	35		E	
8706.00.21.8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25		E	
8706.00.21.90	- - - 기타	0		A	

8706.00.29.8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		A	
8706.00.29.90	- - - 기타	0		A	
8706.00.91.8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40		E	
8706.00.91.90	- - - 기타	10		E	
8706.00.92.8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A	
8706.00.92.90	- - - 기타	0		A	
8706.00.99.80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		A	
8706.00.99.91	- - - - 전통내연기관과 전동기가 결합된 것이 장착된 것	0		A	
8706.00.99.99	- - - - 기타	10		E	
8707.10.00.00	- 제8703호의 차량의 것	25		G	
8707.90.10.00	- - 제8702호의 차량의 것	15		G	
8707.90.90.00	- - 기타	25		G	
8708.10.00.00	- 완충기와 그 부분품	15		A	
8708.21.00.00	- - 안전벨트	0		A	
8708.29.10.00	- - - 보닛	15		E	
8708.29.20.00	- - - 흡반이 · 보닛 · 측면 · 도어와 이들의 부분품	15		A	
8708.29.30.00	- - - 전방 격자	0		A	
8708.29.40.00	- - - 대시보드	15		E	
8708.29.50.00	- - - 프레임이 있는 창문, 발열 저항체와 전기 커넥터를 갖춘 창문(프레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15		G	
8708.29.90.10	- - - - 자동차용 바닥	0		A	
8708.29.90.90	- - - - 기타	15		G	
8708.30.10.00	- -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10		X	
8708.30.21.00	- - - 드럼	0		A	
8708.30.22.00	- - - 압축공기식 시스템	0		A	
8708.30.23.00	- - - 유압식 시스템	0		A	
8708.30.24.00	- - - 서보 브레이크	0		A	
8708.30.25.00	- - - 디스크	0		A	
8708.30.29.00	- - - 그 밖의 부분품	0		A	
8708.40.10.00	- - 기어박스	0		A	
8708.40.90.00	- - 기타	0		A	
8708.50.11.00	- -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0		A	
8708.50.19.00	- - - 부분품	0		A	

8708.50.21.00	- - - 비구동 차축	0		A	
8708.50.29.00	- - - 부분품	0		A	
8708.70.10.00	- -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0		A	
8708.70.20.00	- - 림·허브 캡과 그 밖의 부속품	10		E	
8708.80.10.00	- - 볼 조인트(ball joint)와 그 부분품	0		A	
8708.80.20.10	- - 쇼크업소버	15		A	
8708.80.20.20	- - 부분품	0		A	
8708.80.90.00	- - 기타	0		A	
8708.91.00.00	- - 방열기와 그 부분품	10		E	
8708.92.00.00	-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10		E	
8708.93.10.00	- - - 클러치	0		A	
8708.93.91.00	- - - - 프레스식 플레이트와 디스크	0		A	
8708.93.99.00	- - - - 기타	0		A	
8708.94.00.00	- -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0		A	
8708.95.00.00	-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10		E	
8708.99.11.00	- - - - 새시 프레임	10		E	
8708.99.19.10	- - - - - 새시 레일	0		A	
8708.99.19.90	- - - - - 기타	10		A	
8708.99.21.00	- - - - 카아던(cardan) 변속기	0		A	
8708.99.29.00	- - - - 부분품	0		A	
8708.99.31.00	- - - - 기계식 시스템	0		A	
8708.99.32.00	- - - - 유압식 시스템	0		A	
8708.99.33.00	- - - - 엔드 피팅	0		A	
8708.99.39.00	- - - - 그 밖의 부분품	0		A	
8708.99.40.00	- - - 캐터필라 트랙(caterpillar track)과 그 부분품	0		A	
8708.99.50.00	- - - 연료 탱크	0		A	
8708.99.96.00	- - - - 안전 벨트 클립과 잠금 장치 센서	5		E	
8708.99.99.20	- - - - - 전기식 하네스(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10		E	
8708.99.99.90	- - - - - 기타	10		A	
8709.11.00.00	- - 전기식의 것	0		A	
8709.19.00.00	- - 기타	10		E	
8709.90.00.00	- 부분품	0		A	
8710.00.0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30		E	

8711.10.00.1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5		A	
8711.10.00.90	- - 기타	30		E	
8711.20.00.1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0		A	
8711.20.00.91	- - - 삼륜자동차	30		E	
8711.20.00.99	- - - 기타	30		E	
8711.30.00.1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0		A	
8711.30.00.91	- - - 삼륜자동차	30		E	
8711.30.00.99	- - - 기타	30		E	
8711.40.00.1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0		A	
8711.40.00.91	- - - 삼륜자동차	30		E	
8711.40.00.99	- - - 기타	30		E	
8711.50.00.1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0		A	
8711.50.00.91	- - - 삼륜자동차	30		E	
8711.50.00.99	- - - 기타	30		E	
8711.60.00.0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0		E	
8711.90.00.1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30		A	
8711.90.00.90	- - 기타	30		E	
8712.00.00.10	- 특별한 유형의 것(제95류의 국내 주 제1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712.00.00.90	- 기타	10		E	
8713.10.00.0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A	
8713.90.00.00	- 기타	0		A	
8714.10.10.00	- - 안장(의자)	10		E	
8714.10.90.00	- - 기타	10		E	
8714.20.00.00	- 신체장애인을 위한 차량의 것	0		A	
8714.91.00.10	- - - 강(鋼) 프레임, 경질의 포크(fork)	25		A	
8714.91.00.90	- - - 기타	0		A	
8714.92.10.00	- - - 휠 림[링(ring)]	0		A	
8714.92.90.00	- - - 스포크	0		A	
8714.93.00.00	- -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킷 휠(sprocket-wheel)	0		A	
8714.94.00.00	- -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 부품	0		A	
8714.95.00.10	- - - 특별한 유형의 것(제95류의 국내 주 제1호에 따른 것으로 한정한다)	0		A	
8714.95.00.90	- - - 기타	25		E	

8714.96.00.00	- -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이들의 부분품	0		A	
8714.99.00.00	- - 기타	0		A	
8715.00.10.00	- 유모차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		E	
8715.00.90.00	- 부분품	15		E	
8716.10.00.0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20		E	
8716.20.00.00	-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0		A	
8716.31.00.10	- - - 연료 수송용	20		X	
8716.31.00.20	- - - 물 수송용	20		X	
8716.31.00.30	- - - 액화가스(LPG, NH3, CO2) 운반용	20		X	
8716.31.00.40	- - - 액체 흡입 및 수송용(진공 탱크)	20		X	
8716.31.00.90	- - - 기타	20		E	
8716.39.00.00	- - 기타	20		E	
8716.40.00.00	-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20		G	
8716.80.10.00	- - 상용 손수레	20		X	
8716.80.90.00	- - 기타	20		C	
8716.90.00.00	- 부분품	0		A	
8801.00.00.00	기구·비행선·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0		A	
8802.11.00.00	-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5		C	
8802.12.00.00	-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5		C	
8802.20.10.00	- - 최대 이륙 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군용으로 특별히 의도된 것은 제외한다)	5		C	
8802.20.90.00	- - 기타	5		C	
8802.30.10.00	- - 최대 이륙 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군용으로 특별히 의도된 것은 제외한다)	5		C	
8802.30.90.00	- - 기타	5		C	
8802.40.00.00	-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5		C	
8802.60.00.00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우주선 운반로켓	0		A	
8803.10.00.00	-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0		A	
8803.20.00.00	-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0		A	
8803.30.00.00	-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0		A	
8803.90.00.00	- 기타	0		A	
8804.00.0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a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0		A	

8805.10.00.00	- 항공기 발전장치와 그 부분품, 항공기용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와 그 부분품	0		A	
8805.21.00.00	- -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0		A	
8805.29.00.00	- - 기타	0		A	
8901.10.11.00	- - - 50톤 이하의 것	10		C	
8901.10.19.00	- - - 기타	5		C	
8901.10.20.00	- - 레지스터가 1,000톤을 초과하는 것	0		A	
8901.20.11.00	- - - 50톤 이하의 것	10		C	
8901.20.19.00	- - - 기타	5		C	
8901.20.20.00	- - 레지스터가 1,000톤을 초과하는 것	0		A	
8901.30.11.00	- - - 50톤 이하의 것	10		C	
8901.30.19.00	- - - 기타	5		C	
8901.30.20.00	- - 레지스터가 1,000톤을 초과하는 것	0		A	
8901.90.11.00	- - - 50톤 이하의 것	10		C	
8901.90.19.00	- - - 기타	5		C	
8901.90.20.00	- - 레지스터가 1,000톤을 초과하는 것	0		A	
8902.00.11.00	- - 50톤 이하의 것	10		C	
8902.00.19.00	- - 기타	0		A	
8902.00.20.00	- 레지스터가 1,000톤을 초과하는 것	0		A	
8903.10.00.00	- 공기주입식 선박	30		C	
8903.91.00.00	- -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30		C	
8903.92.00.00	- -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0		A	
8903.99.10.00	- - - 제트 스키	30		C	
8903.99.90.00	- - - 기타	30		C	
8904.00.10.00	- 50톤 이하의 것	10		C	
8904.00.90.00	- 기타	5		C	
8905.10.00.00	- 준설선	0		A	
8905.20.00.00	-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8905.90.00.00	- 기타	0		A	
8906.10.00.00	- 군함	10		E	
8906.90.10.10	- - - 50톤까지의 것	10		C	
8906.90.10.90	- - - 기타	5		E	
8906.90.90.00	- - 기타	5		C	
8907.10.00.0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10		C	

8907.90.10.00	- - 등부표	10		E	
8907.90.90.00	- - 기타	10		C	
8908.00.00.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0		A	
9001.10.00.00	- 광섬유 ·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0		A	
9001.20.00.00	-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0		A	
9001.30.00.00	- 콘택트렌즈	0		A	
9001.40.00.00	-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0		A	
9001.50.0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0		A	
9001.90.00.00	- 기타	0		A	
9002.11.00.00	- - 카메라용 · 영사기용 · 사진 확대기용 · 사진 축소기용	0		A	
9002.19.00.00	- - 기타	0		A	
9002.20.00.00	- 필터	0		A	
9002.90.00.00	- 기타	0		A	
9003.11.00.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A	
9003.19.10.00	- - - 귀금속으로 만든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으로 만든 것(도금된 것)	0		A	
9003.19.90.00	- - - 기타	0		A	
9003.90.00.00	- 부분품	5		C	
9004.10.00.00	- 선글라스	30		C	
9004.90.10.00	- - 작업용 보호 안경	30		E	
9004.90.90.00	- - 기타	30		E	
9005.10.00.00	- 쌍안경	30		E	
9005.80.00.00	- 그 밖의 기기	0		A	
9005.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20		E	
9006.30.00.00	- 수중촬영용 · 공중측량용 · 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5		C	
9006.40.00.00	- 즉석인화 사진기	20		E	
9006.51.00.00	- -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20		E	
9006.52.10.00	- - - 고정초점식의 것	20		E	
9006.52.90.00	- - - 기타	20		E	
9006.53.10.00	- - - 고정초점식의 것	20		E	
9006.53.90.00	- - - 기타	20		E	
9006.59.10.10	- - - - 플레이트 또는 프린팅 실린더 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9006.59.10.90	- - - - 기타	20		E	

9006.59.90.10	- - - - 플레이트 또는 프린팅 실린더 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A	
9006.59.90.90	- - - - 기타	20		E	
9006.61.00.00	-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E	
9006.69.00.00	- - 기타	20		E	
9006.91.00.00	- - 카메라용	20		E	
9006.99.00.00	- - 기타	20		E	
9007.10.00.00	- 촬영기	20		E	
9007.20.10.00	- -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필름용	5		C	
9007.20.90.00	- - 기타	0		A	
9007.91.00.00	- - 촬영기용	5		C	
9007.92.00.00	- - 영사기용	5		C	
9008.50.10.00	- - 환등기	0		A	
9008.50.20.00	- - 마이크로필름 · 마이크로피세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에 상관없다)	0		A	
9008.50.30.00	- - 그 밖의 투영기	0		A	
9008.50.40.00	- - 사진영상 증폭기 또는 초점 축소기	0		A	
9008.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0.10.00.00	-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5		C	
9010.50.00.00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와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0		A	
9010.60.00.00	- 영사용 스크린	5		C	
9010.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1.10.00.00	- 입체현미경	0		A	
9011.20.00.00	-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 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0		A	
9011.80.00.00	- 그 밖의 현미경	5		C	
9011.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2.10.00.00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0		A	
9012.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3.10.00.00	-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0		A	
9013.20.00.00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5		C	
9013.80.10.00	- - 확대경	0		A	
9013.80.90.00	- - 기타	5		C	

9013.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4.10.00.00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0		A	
9014.20.00.00	-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5		C	
9014.80.00.00	- 그 밖의 항행용 기기	0		A	
9014.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5.10.00.00	- 거리측정기	0		A	
9015.20.10.00	- - 경위의(經緯儀)	5		C	
9015.20.20.00	- - 시거의(視距儀)	5		C	
9015.30.00.00	- 수준기(水準器)	5		C	
9015.40.10.00	- - 전기식 또는 전자식의 것	5		C	
9015.40.90.00	- - 기타	0		A	
9015.80.10.00	- - 전기식 또는 전자식의 것	5		C	
9015.80.90.00	- - 기타	5		C	
9015.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C	
9016.00.11.00	- - 전기식의 것	0		A	
9016.00.12.00	- - 전자식의 것	0		A	
9016.00.19.00	- - 기타	0		A	
9016.00.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7.10.00.00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0		A	
9017.20.10.00	- - 축소확대기	0		A	
9017.20.20.00	- - 제도 세트(수학 상자)와 그들의 구성품(케이스에 들어 있는 것인지 또는 별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A	
9017.20.30.00	- - 계산척, 계산반 및 실린더형 계산기	0		A	
9017.20.90.00	- - 기타	0		A	
9017.30.00.00	-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0		A	
9017.80.10.00	- - 직선 측정용	0		A	
9017.80.90.00	- - 기타	0		A	
9017.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18.11.00.00	- - 심전계	0		A	
9018.12.00.00	- - 초음파 영상진단기	0		A	
9018.13.00.00	- - 자기공명 촬영기기	0		A	
9018.14.00.00	- -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0		A	
9018.19.00.00	- - 기타	0		A	
9018.20.00.00	-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0		A	
9018.31.20.00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A	

9018.31.90.00	- - - 기타	0		A	
9018.32.00.00	- -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0		A	
9018.39.00.00	- - 기타	0		A	
9018.41.00.00	-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		E	
9018.49.10.00	- - - 치과용 버어(burr) · 디스크 · 드릴 · 브러시	5		C	
9018.49.90.10	- - - 치과용 기기나 이 호에 분류할 수 있는 그 밖의 치과용 기기가 장착된 치과용 의자(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C	
9018.49.90.20	- - - - 받침대(기반) 위의 치과용 기기	5		E	
9018.49.90.90	- - - - 기타	5		E	
9018.50.00.00	- 안과용 그 밖의 기기	0		A	
9018.90.10.00	- - 전기식 의료용의 것	0		A	
9018.90.90.00	- - 기타	0		A	
9019.10.00.00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		A	
9019.20.00.00	- -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 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0		A	
9020.00.0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0		A	
9021.10.10.00	- - 정형외과용의 것	5		C	
9021.10.20.00	- - 골절치료용의 것	5		C	
9021.21.00.00	- - 의치	0		A	
9021.29.00.00	- - 기타	5		C	
9021.31.00.00	- - 인조관절	5		C	
9021.39.10.00	- - - 심장판막	5		C	
9021.39.90.00	- - - 기타	5		C	
9021.40.00.00	-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5		C	
9021.50.00.0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5		E	
9021.90.00.00	- 기타	10		E	
9022.12.00.00	-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		A	
9022.13.00.00	- -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0		A	
9022.14.00.00	- - 기타(내과용 · 외과용 ·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0		A	
9022.19.00.00	- - 그 밖의 용도의 것	0		A	
9022.21.00.00	- -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0		A	

9022.29.00.00	- - 그 밖의 용도의 것	0		A	
9022.30.00.00	- 엑스선관	0		A	
9022.90.00.10	- -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용 테이블, 의자나 지지물	5		E	
9022.90.00.90	- - 기타	15		B	
9023.00.10.00	- 인체나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5		C	
9023.00.20.00	- 현미경 표본	0		A	
9023.00.90.00	- 기타	5		C	
9024.10.00.00	- 금속재료 시험기기	5		C	
9024.80.00.00	- 그밖의 기기	0		A	
9024.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25.11.10.00	- - - 의료용의 것	0		A	
9025.11.90.00	- - - 기타	0		A	
9025.19.11.00	- - - - 고온계	0		A	
9025.19.12.00	- - - - 제87류의 차량용 온도계	0		A	
9025.19.19.00	- - - - 기타	0		A	
9025.19.90.00	- - - 기타	0		A	
9025.80.30.00	- - 밀도측정기, 기체계(areometer), 액체비중계(hydrometer)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0		A	
9025.80.41.00	- - - 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	0		A	
9025.80.49.00	- - - 기타	0		A	
9025.80.90.00	- - 기타	0		A	
9025.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26.10.11.00	- - - 제87류의 차량용 연료 측정기	10		E	
9026.10.12.00	- - - 수평계	0		A	
9026.10.19.00	- - - 기타	0		A	
9026.10.90.00	- - 기타	0		A	
9026.20.00.00	- 압력의 측정용 · 검사용	0		A	
9026.80.11.00	- - - 열전대 열측정계	0		A	
9026.80.19.00	- - - 기타	0		A	
9026.80.90.00	- - 기타	0		A	
9026.90.00.10	- - 제87류의 차량용 연료 측정기용의 것	0		A	
9026.90.00.20	- - 제87류의 차량용 압력계용의 것	0		A	
9026.90.00.90	- - 기타	5		C	
9027.10.10.00	- - 전기식이나 전자식의 것	0		A	
9027.10.90.10	- - - 제약용의 것	0		A	
9027.10.90.90	- - - 기타	5		C	

9027.20.00.00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5		C	
9027.30.00.00	- 분광계 · 분광광도계 · 분광사진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A	
9027.50.00.10	- - 전기식이나 전자식의 것	0		A	
9027.50.00.90	- - 기타	0		A	
9027.80.20.00	- - 편광계, 피 · 에이치(pH) 미터, 탁도계, 염분계와 팽창계	0		A	
9027.80.30.00	- - 연기 탐지기	5		C	
9027.80.90.10	- - - 전기식이나 전자식의 것	0		A	
9027.80.90.90	- - - 기타	0		A	
9027.90.10.00	- - 마이크로톰(microtome)	0		A	
9027.90.90.00	-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28.10.00.00	- 기체용 계기	0		A	
9028.20.10.00	- - 수도 계량기	5		C	
9028.20.90.00	- - 기타	5		C	
9028.30.10.00	- - 단상(單相)의 것	15		E	
9028.30.90.00	- - 기타	15		E	
9028.90.10.00	- - 전기용 계기의 것	5		C	
9028.90.90.00	- - 기타	5		C	
9029.10.10.00	- - 택시미터	15		E	
9029.10.20.00	- - 전자식 생산량계	0		A	
9029.10.90.00	- - 기타	5		C	
9029.20.10.00	- - 속도계(전기식이나 전자식의 것은 제외한다)	5		B	
9029.20.20.00	- - 회전속도계	5		B	
9029.20.90.00	- - 기타	5		C	
9029.90.10.00	- - 속도계의 것	0		A	
9029.90.90.10	- - - 택시미터용	0		A	
9029.90.90.90	- - - 기타	5		C	
9030.10.00.00	-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5		C	
9030.20.00.0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5		C	
9030.31.00.00	-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5		C	
9030.32.00.00	-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5		C	
9030.33.00.00	- -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		C	
9030.39.00.00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A	
9030.40.00.0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하이퍼미터(hypermeter) · 케르도미터(kerdometer) ·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 잡음전압계(psophometer)]	5		C	

9030.82.00.00	-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0		A	
9030.84.00.00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C	
9030.89.00.00	- - 기타	5		C	
9030.90.10.00	- - 전기적 크기 측정을 위한 기기나 장치의 것	5		C	
9030.90.90.00	- - 기타	5		C	
9031.10.10.00	- - 전자식의 것	5		C	
9031.10.90.00	- - 기타	5		C	
9031.20.00.00	- 테스트벤치(Test bench)	0		A	
9031.41.00.00	- -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0		A	
9031.49.10.00	- - - 광학식 비교측정기, 콤파레이터 벤치(comparator bench), 메저링 벤치(measuring bench), 광파간섭계(interferometer), 광학식 표면 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 차동측정자(differential feeler)를 갖춘 장치, 얼라인먼트 텔레스코프(alignment telescope), 광학식 자(optical rule), 측미(測微) 판독기, 광학식 측각기(optical goniometer)와 포시미터(focimeter)	0		A	
9031.49.20.00	- - - 윤곽투영기	0		A	
9031.49.90.00	- - - 기타	0		A	
9031.80.20.00	- - 제87류의 차량 엔진 조절용 기기[동기(同期)검정기(synchroscope)]	0		A	
9031.80.30.00	- - 면적계	0		A	
9031.80.90.00	- - 기타	0		A	
9031.90.0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A	
9032.10.00.00	-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0		A	
9032.20.00.00	- 매노우스타트(manostat)[프레소스타트(pressostat)]	0		A	
9032.81.00.00	- - 액압식이나 공기식	5		C	
9032.89.11.00	- - - - 전압이 260볼트 이하이고 전류가 30암페어 이하용	5		C	
9032.89.19.00	- - - - 기타	10		E	
9032.89.90.00	- - - 기타	0		A	
9032.90.10.00	- -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의 것	5		C	
9032.90.20.00	- - 전압 조정기의 것	0		A	
9032.90.90.00	- - 기타	0		A	
9033.00.00.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C	
9101.11.00.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30		C	
9101.19.00.00	- - 기타	30		E	
9101.21.00.00	- - 자동 권(自動捲)식	30		E	

9101.29.00.00	- - 기타	30		E	
9101.91.00.00	- - 전기구동식	30		E	
9101.99.00.00	- - 기타	30		E	
9102.11.00.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30		E	
9102.12.00.00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30		E	
9102.19.00.00	- - 기타	30		E	
9102.21.00.00	- - 자동권(自動捲)식	30		E	
9102.29.00.00	- - 기타	30		E	
9102.91.00.00	- - 전기구동식	30		E	
9102.99.00.00	- - 기타	30		E	
9103.10.00.00	- 전기구동식	30		E	
9103.90.00.00	- 기타	30		E	
9104.00.10.00	- 제87류의 차량용	0		A	
9104.00.90.00	- 기타	0		A	
9105.11.00.00	- - 전기구동식	30		E	
9105.19.00.00	- - 기타	30		E	
9105.21.00.00	- - 전기구동식	30		E	
9105.29.00.00	- - 기타	30		E	
9105.91.10.00	- - - 전기 시계 시스템용 시계(마스터 및 보조 시계)	30		E	
9105.91.90.00	- - - 기타	30		E	
9105.99.00.00	- - 기타	30		E	
9106.10.00.00	-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0		A	
9106.90.10.00	- - 주차시간 기록계	0		A	
9106.90.90.00	- - 기타	0		A	
9107.00.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A	
9108.11.00.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0		A	
9108.12.00.00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A	
9108.19.00.00	- - 기타	0		A	
9108.20.00.00	- 자동권(自動捲)식	0		A	
9108.90.00.00	- 기타	0		A	
9109.10.00.00	- 전기식	0		A	
9109.90.00.00	- 기타	0		A	
9110.11.00.00	- -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0		A	

9110.12.00.00	- -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0		A	
9110.19.00.00	- -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0		A	
9110.90.00.00	- 기타	10		E	
9111.10.00.0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25		E	
9111.20.0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15		E	
9111.80.00.00	- 그 밖의 케이스	15		E	
9111.90.00.00	- 부분품	15		E	
9112.20.00.00	- 케이스	0		A	
9112.90.00.00	- 부분품	10		E	
9113.10.00.0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30		E	
9113.20.0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30		E	
9113.90.10.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0		E	
9113.90.20.00	- - 가죽으로 만든 것	30		E	
9113.90.90.00	- - 기타	30		E	
9114.10.00.0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0		A	
9114.30.00.00	- 문자판	0		A	
9114.40.00.00	- 지판과 브리지(bridge)	0		A	
9114.90.00.00	- 기타	0		A	
9201.10.00.00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20		E	
9201.20.00.00	- 그랜드 피아노	20		E	
9201.90.00.00	- 기타	20		E	
9202.10.00.00	- 활을 사용하는 것	20		E	
9202.90.00.00	- 기타	20		C	
9205.10.00.00	- 금관악기	20		E	
9205.90.10.00	- - 건반이 있는 파이프오르간, 하모늄과 이와 유사한 프리메탈 리드식 건반악기	20		E	
9205.90.20.00	- - 아코디언과 이와 유사한 악기	20		C	
9205.90.30.00	- - 하모니카	20		C	
9205.90.90.00	- - 기타	20		E	
9206.00.00.00	타악기[예: 북 · 목금 · 심벌 · 캐스터네츠 · 마라카스(maracas)]	20		C	
9207.10.00.00	-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20		E	
9207.90.00.00	- 기타	20		E	

9208.10.00.00	- 뮤지컬박스	30		E	
9208.90.00.00	- 기타	20		E	
9209.30.00.00	- 악기용 현	10		E	
9209.91.00.00	- -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0		A	
9209.92.00.00	- -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A	
9209.94.00.00	- -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A	
9209.99.00.00	- - 기타	0		A	
9301.10.10.00	- - 자주식(自走式)	30		C	
9301.10.90.00	- - 기타	30		C	
9301.20.00.00	-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30		C	
9301.90.10.00	- - 활강총열을 갖춘 긴 총기(완전 자동식으로 한정한다)	30		C	
9301.90.21.00	- - - 래치의 것	30		C	
9301.90.22.00	- - - 반자동	30		C	
9301.90.23.00	- - - 자동	30		C	
9301.90.29.00	- - - 기타	30		C	
9301.90.30.00	- - 기관총	30		C	
9301.90.41.00	- - - 자동 권총	30		C	
9301.90.49.00	- - - 기타	30		C	
9301.90.90.00	- - 기타	30		C	
9302.00.10.00	- 리볼버(revolver)	30		E	
9302.00.21.00	- - 반자동	30		E	
9302.00.29.00	- - 기타	30		E	
9302.00.30.00	- 피스톨(pistol) (다열총열)	30		E	
9303.10.00.00	- 총구장전 화기	30		E	
9303.20.11.00	- - - 슬라이드의 것	30		E	
9303.20.12.00	- - - 반자동	30		E	
9303.20.19.00	- - - 기타	30		E	
9303.20.20.00	- - 긴 총기(활강다열총열의 것으로서 복합 총기를 포함한다)	30		E	
9303.20.90.00	- - 기타	30		E	
9303.30.10.00	- - 단발의 것	30		E	
9303.30.20.00	- - 반자동	30		E	
9303.30.90.00	- - 기타	30		E	
9303.90.00.10	- - 축우포가 아닌 것과 로켓 발사기	0		A	
9303.90.00.90	- - 기타	30		E	

9304.00.10.00	- 압축 공기식의 것	30		E	
9304.00.90.00	- 기타	20		E	
9305.10.10.00	- - 격발장치	25		E	
9305.10.20.00	- - 프레임과 패턴	25		E	
9305.10.30.00	- - 총열	25		E	
9305.10.40.00	- - 피스톤, 핀과 반동 완충기	25		E	
9305.10.50.00	- - 탄알집과 그 부분품	25		E	
9305.10.60.00	- - 소음기와 그 부분품	25		E	
9305.10.70.00	- - 개머리판·손잡이·플레이트	25		E	
9305.10.80.00	- - 슬라이드[피스톨(pistol)용]와 드럼[리볼버(revolver)용]	25		E	
9305.10.90.00	- - 기타	25		E	
9305.20.10.00	- - 활강총열	25		E	
9305.20.21.00	- - - 격발장치	25		E	
9305.20.22.00	- - - 프레임과 패턴	25		E	
9305.20.23.00	- - - 라이플(rifle) 총열	25		E	
9305.20.24.00	- - - 피스톤, 핀과 반동 완충기	25		E	
9305.20.25.00	- - - 탄알집과 그 부분품	25		E	
9305.20.26.00	- - - 소음기와 그 부분품	25		E	
9305.20.27.00	- - - 소화뿔개와 그 부분품	25		E	
9305.20.28.00	- - - 챔버, 볼트 및 크레이트(crate)	25		E	
9305.20.29.00	- - - 기타	25		E	
9305.91.11.00	- - - - 격발장치	25		E	
9305.91.12.00	- - - 프레임과 패턴	25		C	
9305.91.13.00	- - - - 총열	25		C	
9305.91.14.00	- - - - 피스톤, 핀과 반동 완충기	25		C	
9305.91.15.00	- - - - 탄알집과 그 부분품	25		C	
9305.91.16.00	- - - - 소음기와 그 부분품	25		C	
9305.91.17.00	- - - - 소화뿔개와 그 부분품	25		C	
9305.91.18.00	- - - - 챔버, 볼트 및 크레이트(crate)	25		C	
9305.91.19.00	- - - - 기타	25		C	
9305.91.90.00	- - - 기타	25		C	
9305.99.00.00	- - 기타	25		E	
9306.21.00.00	- - 탄약	30		E	
9306.29.10.00	- - - 탄환	30		E	
9306.29.90.00	- - - 부분품	25		E	

9306.30.20.00	- - 리베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 무통 도살기용 탄약	30		E	
9306.30.30.00	- - 그 밖의 탄약	30		E	
9306.30.90.00	- - 부분품	25		E	
9306.90.11.00	- - - 전쟁 무기용의 것	30		E	
9306.90.12.00	- - - 작살총용 작살	30		E	
9306.90.19.00	- - - 기타	30		E	
9306.90.90.00	- - 부분품	25		E	
9307.00.00.00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30		E	
9401.10.00.00	- 항공기용 의자	30		E	
9401.20.00.00	- 차량용 의자	30		E	
9401.30.00.00	-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E	
9401.40.00.00	-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30		E	
9401.52.00.00	- - 대나무로 만든 것	30		E	
9401.53.00.00	- - 등나무로 만든 것	30		E	
9401.59.00.00	- - 기타	30		E	
9401.61.00.00	- -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30		X	
9401.69.00.00	- - 기타	30		X	
9401.71.00.00	- -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30		G	
9401.79.00.00	- - 기타	30		E	
9401.80.00.00	- 그 밖의 의자	30		A	
9401.90.10.00	- - 뒤로 젖히는 의자용 장치	0		A	
9401.90.90.00	- - 기타	25		A	
9402.10.10.00	- - 치과용 의자	15		A	
9402.10.90.00	- - 기타	15		A	
9402.90.10.00	- - 수술대와 그 부분품	15		A	
9402.90.90.00	- - 기타와 그 부분품	15		E	
9403.10.00.00	-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30		E	
9403.20.00.10	- - 구조화된 케이블용 랙(rack)	30		E	
9403.20.00.90	- - 기타	30		E	
9403.30.00.00	- 사무실용 목제가구	30		X	
9403.40.00.00	- 주방용 목제가구	30		X	
9403.50.00.00	- 침실용 목제가구	30		X	
9403.60.00.00	- 그 밖의 목제가구	30		X	
9403.70.0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30		E	
9403.82.00.00	- - 대나무로 만든 것	30		A	

9403.83.00.00	- - 등나무로 만든 것	30		A	
9403.89.00.00	- - 기타	30		A	
9403.90.00.00	- 부분품	25		X	
9404.10.00.00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30		E	
9404.21.00.00	- -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30		E	
9404.29.00.00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30		E	
9404.30.00.00	- 침낭(sleeping bag)	30		E	
9404.90.00.00	- 기타	30		E	
9405.10.10.00	- - 수술실 또는 치과용의 특수한 것(무영등)	5		E	
9405.10.20.00	- - 투광기	15		E	
9405.10.90.00	- - 기타	30		D	
9405.20.00.00	- 전기식의 테이블 · 책상 · 침대 · 마루스탠드 램프	30		E	
9405.30.00.00	-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조명세트	30		E	
9405.40.11.00	- - - 투광기	20		E	
9405.40.19.00	- - - 기타	20		E	
9405.40.90.00	- - 기타	15		E	
9405.50.10.00	- - 가압액체연료의 것	30		E	
9405.50.90.10	- - - 광산용 안전등	5		E	
9405.50.90.90	- - - 기타	30		E	
9405.60.00.00	-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		E	
9405.91.00.00	- - 유리로 만든 것	15		E	
9405.92.00.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5		E	
9405.99.00.00	- - 기타	25		D	
9406.10.00.00	- 나무로 만든 것	25		E	
9406.90.00.10	- - 주철강으로 만든 것	25		E	
9406.90.00.90	- - 기타	25		E	
9503.00.10.00	- 세발자전거 · 스쿠터 · 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30		E	
9503.00.22.10	- - 정신건강에 유해한 것	30		E	
9503.00.22.90	- - 기타	30		E	
9503.00.28.00	- -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 모자류	30		E	
9503.00.29.00	- - 부분품과 부속품	30		E	
9503.00.30.00	-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0		E	
9503.00.40.00	- 각종 퍼즐	30		E	

9503.00.91.00	- - 전기식 기차(궤도 · 신호기와 그 밖의 부속품은 포함한다)	30		E	
9503.00.92.10	- - - 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STEM 교육)의 교육 목적만을 위하여 설계 제작된 것	30		E	
9503.00.92.90	- - - 기타	30		E	
9503.00.93.00	- -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30		E	
9503.00.94.00	- - 완구용 악기류	30		E	
9503.00.95.00	- - 세트나 아웃피트로 된 것	30		E	
9503.00.96.00	- - 기타(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30		E	
9503.00.99.00	- - 기타	30		E	
9504.20.00.00	-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30		E	
9504.30.10.00	- - 사행성의 것	30		E	
9504.30.90.00	- - 기타	30		C	
9504.40.00.00	- 오락용 카드	30		E	
9504.50.00.00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30		E	
9504.90.10.00	- - 체스 및 체커 게임	30		E	
9504.90.30.00	- - 볼링장용구(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30		E	
9504.90.91.00	- - - 사행성의 것	30		E	
9504.90.99.00	- - - 기타	30		E	
9505.10.00.00	-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30		E	
9505.90.00.00	- 기타	30		E	
9506.11.00.00	- - 스키	30		E	
9506.12.00.00	- -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30		E	
9506.19.00.00	- - 기타	30		E	
9506.21.00.00	- - 세일보드(sailboard)	30		E	
9506.29.00.00	- - 기타	30		E	
9506.31.00.00	- -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30		E	
9506.32.00.00	- - 골프공	30		E	
9506.39.00.00	- - 기타	30		E	
9506.40.00.10	- - 특별한 유형의 것	0		A	
9506.40.00.90	- - 기타	30		E	
9506.51.00.10	- - - 특별한 유형의 것	0		A	
9506.51.00.90	- - - 기타	30		E	
9506.59.00.10	- - - 특별한 유형의 것	0		A	
9506.59.00.90	- - - 기타	30		E	

9506.61.00.10	- - - 특별한 유형의 것	0		A	
9506.61.00.90	- - - 기타	30		E	
9506.62.00.10	- - - 특별한 유형의 것	0		A	
9506.62.00.90	- - - 기타	30		E	
9506.69.00.00	- - 기타	30		E	
9506.70.00.00	-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30		E	
9506.91.00.00	-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30		D	
9506.99.10.10	- - - - 특별한 유형의 것	0		A	
9506.99.10.90	- - - - 기타	30		E	
9506.99.90.00	- - - 기타	30		E	
9507.10.00.00	- 낚싯대	30		E	
9507.20.00.11	- - - 고리 모양으로 된 것	0		A	
9507.20.00.12	- - - 제이(J) 형의 것	0		A	
9507.20.00.19	- - - 기타	0		A	
9507.20.00.90	- - 기타	0		A	
9507.30.00.00	- 낚시 릴	30		E	
9507.90.10.00	- - 낚시용의 것	30		B	
9507.90.90.00	- - 기타	30		D	
9508.10.00.0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0		A	
9508.90.00.00	- 기타	5		C	
9601.10.00.00	-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30		E	
9601.90.00.00	- 기타	30		E	
9602.00.10.00	- 의약품용 젤라틴 캡슐	0		A	
9602.00.90.00	- 기타	0		A	
9603.10.00.00	-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30		E	
9603.21.00.00	- -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30		E	
9603.29.00.00	- - 기타	30		E	
9603.30.10.00	- - 회화용 붓	30		E	
9603.30.90.00	- - 기타	30		D	
9603.40.00.00	-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30		E	
9603.50.00.00	-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E	

9603.90.10.00	- -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고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것	15		E	
9603.90.90.00	- - 기타	15		E	
9604.00.00.00	수동식 채와 어레미	15		E	
9605.00.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30		E	
9606.10.00.00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 스냅파스너(snap-fastener) · 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5		E	
9606.21.00.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25		E	
9606.22.00.00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25		E	
9606.29.10.00	- - - 타구아(식물성 상아)로 만든 것	25		E	
9606.29.90.00	- - - 기타	25		E	
9606.30.10.00	- - 플라스틱 또는 타구아(식물성 상아)로 만든 것	25		E	
9606.30.90.00	- - 기타	25		E	
9607.11.00.00	- -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5		E	
9607.19.00.00	- - 기타	5		E	
9607.20.00.00	- 부분품	5		E	
9608.10.00.00	볼펜	30		E	
9608.20.00.00	-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30		E	
9608.30.00.00	- 만년필 · 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30		E	
9608.40.00.00	-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30		E	
9608.50.00.00	-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30		E	
9608.60.00.00	-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E	
9608.91.00.00	- -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25		E	
9608.99.10.00	- - - 그 밖의 유리제품	25		E	
9608.99.21.00	- - - - 볼이 없는 펜	0		A	
9608.99.29.00	- - - - 기타	30		E	
9609.10.00.10	- - 색깔이 있는 것	30		E	
9609.10.00.90	- - 기타	30		D	
9609.20.00.00	- 연필심	30		E	
9609.90.00.00	- 기타	30		E	
9610.00.00.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0		E	

9611.00.00.00	날짜 도장 · 봉합용 스탬프 ·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0		A	
9612.10.00.00	- 리본	0		A	
9612.20.00.00	- 잉크 패드	0		A	
9613.10.00.00	-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E	
9613.20.00.00	-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E	
9613.80.00.00	- 그 밖의ライター	30		E	
9613.90.00.00	- 부분품	30		E	
9614.00.00.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 · 시가홀더 · 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30		C	
9615.11.00.00	- -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0		E	
9615.19.00.00	- - 기타	30		E	
9615.90.00.00	- 기타	30		E	
9616.10.00.00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0		A	
9616.20.00.00	- 화장용 분첩과 패드	0		A	
9617.00.00.00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20		E	
9618.00.00.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25		C	
9619.00.10.10	- 펄프 · 종이 ·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	30		E	
9619.00.10.20	- - 제56류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15		C	
9619.00.10.90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15		D	
9619.00.20.10	- - 펄프 · 종이 ·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	25		E	
9619.00.20.20	- - 제56류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15		C	
9619.00.20.90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15		E	
9619.00.90.10	- - 펄프 · 종이 ·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	30		E	
9619.00.90.20	- - 제56류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15		C	
9619.00.90.90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15		E	
9620.00.00.11	- - 흑연으로 만든 것	15		A	
9620.00.00.12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0		A	
9620.00.00.13	- - 나무로 만든 것	20		A	

9620.00.00.14	- - 철, 강(鋼) 또는 알루미늄	25		A	
9620.00.00.19	- - 기타	25		A	
9620.00.00.20	- 악기의 것	0		A	
9620.00.00.30	- 제8431호, 제9007호, 제9015호 또는 제9033호, 또는 제8487호의 기계의 것	5		A	
9620.00.00.40	- 제8473호의 기계의 것	10		A	
9620.00.00.50	- 제8522호, 제8529호, 제9005호 또는 제9006호의 기계의 것	20		A	
9620.00.00.90	- 기타	25		A	
9701.10.00.00	- 회화 · 데생 · 파스텔	30		E	
9701.90.00.00	- 기타	30		E	
9702.00.00.00	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 석판화	30		E	
9703.00.00.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30		E	
9704.00.00.00	우표 · 수입인지 · 우편요금 별납증서 · 초일(初日)봉투 · 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30		E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사학 · 고고학 · 고생물학 · 민족학 ·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E	
9706.00.00.00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30		E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3.1조
원산지 상품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 가.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나.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 다.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2. 추가적으로, 그 상품은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제3.2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제1항가호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뿔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라.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역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수산물
- 마.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라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
- 바.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사.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아.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 자.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제조 공정, 또는
 - 2)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 차. 가호부터 자호까지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생산된 상품

제3.3조
역내가치포함비율(RVC)

1.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 방법 중 하나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 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본선인도가격(FOB)은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2.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 가. 상품의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의 경우, 재료 수입 시의 운임보험료포함
가격

- 나.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가 획득한 재료의 경우,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재료를 공급자의 창고에서 생산자의 소재지로 운송하는 데 발생한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거래 가치, 또는
 - 다. 자가 생산된 재료의 경우, 또는 상품의 생산자와 재료의 판매자 간의 관계가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재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그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 추가적으로,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 조에 언급된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3.4조

중간재

- 1.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후속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 2. 비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후속 생산에 사용된 경우,
 - 가. 후속 생산된 상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상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 고려한다. 그리고
 - 나.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목적상 비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원산지 재료만 고려한다.

제3.5조

불인정 공정

- 1. 이 장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 지위

부여의 목적상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 나. 포장의 변경, 또는 포장물의 해체 또는 조립
- 다.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직물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상자로의 단순 배치, 카드 또는 판 위에 고정,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 아. 다른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생산품의 단순 혼합
- 자.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생산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차. 동물의 도살
- 카. 과일, 견과류, 채소 및 갑각류의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타.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파.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또는
- 하. 가호부터 파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해당 상품에 행해진 공정이 제1항의 의미 내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수행된 모든 공정이 함께 고려된다.
3. 이 조의 규정은 비원산지 재료로 생산된 상품에 적용될 것이다.
4. 이 조의 목적상,
 - 가. **단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 나. **단순 혼합**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하나 화학 반응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 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6조

누적

1. 한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여겨진다.
2.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그 당사국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에 결합된 재료의 생산은 그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상품은 제3.1조에 따라 수립된 요건과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3.7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그 상품의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가.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모든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해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제1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1류부터 제1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그리고

나.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15류부터 제2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3. 제1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그 상품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제3.8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1. 특혜관세대우 부여의 목적상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를 결정할 때, 모든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는 다음에 의하여 구별한다.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해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 기법의 사용

2.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제3.9조

세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일반해석규칙 3에 정의된 세트는 그 세트의 모든 구성요소가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총 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0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수입 시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원산지는

가. 그 상품이 세번변경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때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송장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급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3.11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1. 포장재료 및 용기가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 가. 제3.1조제1항가호에 규정된 대로, 그 상품은 전적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
 - 나. 제3.1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대로, 그 상품은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어야 한다. 또는
 - 다. 그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세번변경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제3.12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수송 중인 상품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제3.13조

간접재료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제2항에 정의된 간접재료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2.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도 그 일부를 구성하지도 않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 나.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사용된 설비, 장치 및 보급품
 - 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 라. 도구, 형판 및 주형
 - 마.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 바.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그리고
 -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3.14조

직접 운송

1.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원산지 상품은 양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상품은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여겨진다.

가.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된 상품, 그리고

나. 그러한 비당사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 보관에 관계없이, 다음을 조건으로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

1) 그 상품은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2) 그 상품은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된다.

가. 경유 또는 환적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 서류, 그리고

나. 보관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운송 또는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 서류와 더불어 그 비당사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이 작업을 승인한 관세 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서류

제3.15조

역외가공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한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3-나에 따라 당사국들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원산지 절차

제3.16조

일반 요건

1. 한국의 원산지 상품이 에콰도르로 수입 시, 그리고 에콰도르의 원산지 상품이 한국으로 수입 시 다음의 원산지 증명 중 하나를 제출하면,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의 혜택을 받는다.

가. 제3.17조에 제시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또는

나. 제3.18조에 언급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의미 내에서의 원산지 상품이 제3.20조에 명시된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혜택을 받는다.

3. 원산지 증명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수 있다.

4. 원산지 증명은

가. 양 당사국 간 합의된 인쇄본 또는 전자본으로 작성되며, 그에 대한 서명 및 관인은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나. 영어로 작성된다.

제3.17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한 신청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다.

2. 원산지 증명서는 부록 3-가-1에 언급된 서식으로 작성된다.

3.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4.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할 권리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당국은 또한 양식이 적절하게 작성되도록 보장한다. 특히, 권한 있는 당국은 상품의 설명을 위하여 지정된 빈칸이 모든 부정한 추가사항의 가능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5.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된다.

6. 원산지 증명서가 불가항력,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7.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사고로 멸실된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는 서면으로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진정 등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발급된 원본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입증되었어야 한다. 진정등본은 “(날짜)에 발급된 (번호)번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기재된 날짜부터 유효기간이 계산되도록 한다.

8.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그 밖의 가능한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3.18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원산지 신고서는 당사국의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3.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가-2에 제시된 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된다.

4. 당사국은 송장이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산지 신고서는 비당사국에서 발급된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대하여 제공되지 않는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기재된다. 그러나, 제3.19조의 의미 내에서의 인증수출자는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다만, 그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그 인증수출자가 수기로 서명한 것과 같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 약속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관련된 상품이 수출되는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상품의 수입 후 2년 이내에 수입 당사국에서 제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된 후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다.

제3.19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빈번하게 선적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라 한다)가 해당 상품의 가치에 관계 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증 번호를 부여하며, 이 번호는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다.

4.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권한 있는 당국은 언제든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한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3.20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증명은 다음의 경우 요구되지 않는다.

- 가. 수입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 국내법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계획된 것이라고 수입 당사국이 여기지 않는 한, 그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 나.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상품인 경우

제3.21조

원산지 증명의 효력

- 1. 원산지 증명은 수출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또는 원산지 신고서 작성일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다. 그러한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언급된 기간 내에 그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다.
- 2. 제1항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원산지 증명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정해진 마감일까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제3.22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적시하는 서면 진술을 세관 신고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나. 가호에 언급된 진술의 작성 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할 것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제3.14조에 수립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할 것, 그리고

라. 요구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 또는 그 사본, 그리고 다호에 언급된 서류를 관세 당국에 제출할 것

2. 수입자가 진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이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수입자는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정정된 진술을 작성하고 부담해야 할 관세를 납부한다.

3. 수입자가 이 장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가 거부된다.

제3.23조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에 다음을 제출하면, 그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수입일 후 1년 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그 상품이 수입 시에 원산지 상품이었다는 서면 또는 전자 신고서 또는 진술서

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사본, 그리고

다.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문서

제3.24조

기록 유지 요건

1.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서류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서류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문서

2. 수출자와 생산자,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과 가능한 기관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보관한다.

3.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의 사본을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언급된 기록 및 서류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보관될 수 있다.

제3.25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목적상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상응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무효화되지 않는다.
2. 맞춤법 및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 또는 원산지 증명서의 지정된 칸으로부터의 돌출은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3.26조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지원 요청, 또는
 - 다. 설비, 상품의 생산과정 및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제3.24조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 방문
2. 제1항에 따른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과 그 응답으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영어로 작성된다.

3. 제1항가호의 목적상,

가. 수입 당사국이 작성한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요구받은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은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더 긴 기간이 될 것임을 적시할 것이다. 그리고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호에 언급된 기간 내에 요구받은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검증을 완료하기 전에 고려될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서면 통보를 최소 30일 간 제공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4.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나호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가. 그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을 제공한다.

1) 검증에 대한 그러한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

2) 그 상품의 원산지 증명 또는 그 사본, 그리고

3) 그러한 요청의 목적상 필요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류

나.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실 및 조사결과를 포함한 영문 서면 진술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 증명 서류를 제공한다. 이 진술에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한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 그 진술은 그 상품이 어떻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의 접수일 후 150일 내에 서면 진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공된 서면 진술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입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5.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 검증 방문 수행 전에,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세관을 통하여,

1)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방문 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2)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동의를 얻는다.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호에 따른 통보의 수령부터 30일 내에 제안된 검증 방문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통보를 한 당사국은 관련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다. 가호에 따른 통보를 수령하는 경우, 그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통보의 수령부터 15일 내에,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제안된 검증 방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가진다. 이 연장은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된다.

6. 수입 당사국은 검증 개시 후 12개월 내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수입자와 수출 당사국에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과 더불어 그 결정에 대한 사실관계 판명 및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7.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그 상품은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증금 또는 관세의 납부 후 반출될 수 있다. 검증 결과 그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요건을 준수함이 확인되면 납부된 보증금 또는 관세는 환급된다.

8.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미 결정했을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요건을 준수한다고 입증되기 전까지

그와 동일 상품의 모든 후속 수입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9. 한쪽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요청된 모든 정보, 증명 서류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27조

벌칙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제3.28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제3.29조

비당사국 송장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송장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을 거부하지 않는다.

제3.30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다음에 해당하는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제3.14조에 따라 그 당사국을 통과 중이었던 경우, 또는

나. 세관 통제에 따라 수입 당사국 영역의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었던거나 자유 지역 내에 있었던 경우

다만,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제3.22조에 따른 유효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3.31조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 있는 당국과 가능한 기관의 명칭, 견본 서명 및 관인을 제공하며, 모든 변경은 그러한 변경이 발효될 날짜를 적시하여 사전에 충분히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자국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자국의 안전한 웹사이트를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2. 양 당사국은 갱신된 정보 또는 인증수출자 목록을 안전한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한 정보 또는 목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인증수출자의 법적 이름

나.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

다. 인증의 발급일 및 적용 가능한 경우, 인증의 만료일, 그리고

라. 최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류 수준에서, 인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전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정보를 통보한다.

4. 이 장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의 진정성 및 그러한 서류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때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제3.3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하여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란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까지의 보험비용 및 운임을
포함한 원산지 국가의 상품 가격을 말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에콰도르의 경우,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관세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이란 운송 수단과 관계없이,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동일 상품이란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는 특정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재료란 부품, 원료, 원재료, 부분품 또는 조각을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재료란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사육, 추출, 채집, 수집, 채굴, 수확,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말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부
일반 주해

1.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제3.1조제1항다호에 정의된 대로, 생산 과정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상품에 적용된다.
2. 류,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그 류, 호, 또는 소호의 맞은편에 규정된다.
3. 이 부속서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 가. **부**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부를 말한다.
 - 나.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 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 라.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4. 다음의 정의가 이 부속서에 적용된다.
 - 가. **완전생산기준(WO)**이란 제3.2조에 규정된 대로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란 류의 변경을 말한다. 즉, 비원산지 재료는 상품의 품목분류와 다른 류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란 호의 변경을 말한다. 즉, 비원산지 재료는 상품의 품목분류와 다른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라.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란 소호의 변경을 말한다. 즉, 비원산지 재료는 상품의 품목분류와 다른 소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마.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제3.3조에 규정된 대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말한다.

5. 일부 경우, 제1열의 기재사항이 “ex”로 시작하면, 이는 제3열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제2열에 기술된 그 소호 또는 호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류, 호 또는 소호 수준에서 세번을 제외하는 경우, 그 제외된 세번에 분류된 재료는 원산지 재료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 그리고 그 세계적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설치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내에 회합하며, 그 후 최소 연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한반도의 여건을 검토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에서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한다.

부록 3-가-1
원산지 증명서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증명서 번호: 한국과 에콰도르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한국-에콰도르 SECA 양식 발행국 _____ (국가)		
2.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5. 비고:		
3.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4. 운송 수단 및 경로 (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항일: 선박/항공/기차/차량 편명: 하역항:			9. 원산지 기준 10. 총 중량 또는 그 밖의 단위 11. 송장 번호 및 날짜		
6. 품목번호	7. 상품명	8. HS 번호 (6단위)			
12.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_____ (국가)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_____ (수입국) _____ (장소 및 날짜, 권한 있는 서명권자의 서명)			13.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가능한 기관의 증명: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며, 기술된 상품이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_____ (장소 및 날짜, 이름,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가능한 기관의 서명 및 관인)		

한국과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상응하는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하기 위한 목적상, 이 서류는 상품의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타자로 작성하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가능한 기관이 발급한다. 이 서류에 굵힘, 삭제 또는 수정이 있는 경우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원산지 증명서 작성의 목적상,

증명서 번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가능한 기관이 부여한 연속적인 일련 번호와 일치한다. 이 란은 당국 또는 기관에 의해서만 작성되어야 한다.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제2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이 정보의 비밀 유지를 바라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 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

제3란: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제4란: 운송 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제5란: 추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에서 비고는 아래와 같다.

조건	비고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한다	“비당사국 송장”
원산지 증명서가 소급하여 발급된다	“소급 발급”
진정 등본이 발급된다	“(날짜)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진정등본”

제6란: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7란: 각 상품의 품명을 기재한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제8란: 제7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9란: 수출자는 제9란에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9란에 기입
가. 제3.1조제1항가호에 따라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제3.1조제1항나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PE”
다. 제3.1조제1항다호에 따라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RVC - 기타	“CTC” “RVC” 예) “CTC+RVC” , “CTC 또는 RVC”

제10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 중량이 이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부피)가 사용될 수 있다.

제11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가 이란에 명시된다.

제12란: 이란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제13란: 이란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가능한 기관의 권한 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관인을 찍는다.

부록 3-가-2
원산지 신고서¹

아래에 문안이 제시된, 제3.18조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각주에 따라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가 기재될 필요는 없다.

“이 서류(인증 번호² _____)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인증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상품이 _____의³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특혜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한다.”

.....
(장소 및 날짜⁴)

.....
(수출자의 서명, 또한 이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성과 이름이 정자체로 명시되어야 한다)⁵

¹ 송장 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된다.

² 이 난에는 인증수출자의 인증 번호가 기입된다.

³ 상품의 원산지가 표시된다(한국, 에콰도르). ISO-Alpha-2 코드(KR, EC)의 사용은 허용된다.

⁴ 이 표시는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될 수 있다.

⁵ 인증수출자가 서명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또한 서명인의 성과 이름의 작성에 대한 면제를 의미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완전생산기준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완전생산기준
제3류 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치어란 후기자어기에 있는 덜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파(parr), 스몰트(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완전생산기준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2부 주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지, 접목, 싹, 봉오리 또는 그 밖의 산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완전생산기준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완전생산기준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완전생산기준
제9류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완전생산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0류	곡물	완전생산기준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701호, 제0710호, 제 0714호 또는 제1006호 의 것은 제외한다)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완전생산기준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완전생산기준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ex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즙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류의 것은 제외한다)
ex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3류의 것은 제외한다)
1604.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ex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3류의 것은 제외한다)
1605.54	갑오징어와 오징어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9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2류의 것은 제외한다)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1.10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4류의 것은 제외한다)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3.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2004.10	감자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20	감자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1	죽순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6.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 (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99	기타	1. 김에 대해서는 2단 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2.21호 또는 제 1212.29호의 것은 제 외한다), 2. 다른 상품에 대해서 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 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6.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 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 1211.20호 또는 제 1302.19호의 것은 제 외한다)
ex 제22류	음료·주류·식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 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2202.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 1211.20호 또는 제 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22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2204.29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703호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9	사료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부 광물성 생산품		
ex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이상일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2514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16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2517.49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4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27류 주 주 1. 이 류의 목적상, “화학반응”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한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을 구성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주 2. 제2710호의 목적상, 다음의 공정들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한다. 가.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비등점에 따라 분획되는 분리공정. 그 후 증기가 상이한 액화 분획물로 응축되며, 액화석유가스, 나프타, 휘발유, 등유, 디젤(난방유), 경유 그리고 윤활유 기유가 석유의 상압증류법으로 생산된다. 나. 감압증류법: 대기압보다 낮지만 분자증류법만큼 낮지는 않은 압력에서의 증류. 감압증류법은 석유에 포함된 중질 증류액과 같이 비등점이 높은 열에 민감한 제품을 증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를 통해 경질·중질 감압경유 및 잔사유를 얻는다. 일부 정유공장에서는 윤활유의 주성분을 얻기 위하여 경유가 추가로 처리될 수 있다. 다. 촉매 수처리: 특수 촉매가 존재하는 고온 및 압력에서 수소로 석유 유도체를 분해 및/또는 처리하는 것. 촉매 수처리는 수소 분해 및 수소 처리를 포함한다. 라. 개질(촉매 개질): 나프타의 비등 범위에 있는 분자를 재배열하여 더 높은 옥탄 아로마틱(예: 가솔린 수율을 희생하여 안티녹(anti-knock)제의 품질 개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주요 생성물 중 하나는 촉매 개질로, 가솔린의 혼합 성분으로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수소를 부산물로 얻는다. 마. 알킬화: 아이소파라핀과 올레핀을 촉매적으로 결합하여 고옥탄 가솔린을 얻는 과정 바. 분해: 열에 의한 유기 화합물의 분자 분해 및 재결합을 수반하는 정제 공정으로,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이들이 결합하여 모터 연료, 단량체 등을 구성하기에 보다 적합한 분자를 형성한다. 사. 코킹: 감소된 원유, 분해 잔류물, 타르 및 세일 오일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낮은 중질 잔류 탄화수소가 고온에 의하여 탄소로 전환되는 열분해 공정으로, 또한 정유공장의 다른 공정 단위의 공급 원료로 사용될 준비가 된 낮은 비등 온도의 탄화수소 분획이 최종적으로 더 높은 부가 가치의 제품으로 전환되는 공정이다. 그리고 아. 이성질화: 등분자 구조를 가진 탄화수소가 해당 이성질체로 변환되는 석유 정제 공정 주 3. 제2710호에서, “직접 혼합”은 탱크에 저장된 상이한 가공 단위 및 성분의 석유 혼합물들이 제2710호에 분류된 소정의 파라미터를 갖는 완성품을 생성하기 위하여 결합되는 정제 공정을 말한다.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6부 주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한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을 구성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ex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9류	유기화합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0류	의료용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3003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1류	비료.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3206	다)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90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 1211.20호 또는 제 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28류, 제37류, 제40류 또는 제90류의 것은 제외한다)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7부 주 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한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 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반응을 구성하지 않는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8부 원피 · 가죽 · 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3류	모피 ·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 · 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組物)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籠細工物)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46류	짚 · 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 · 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ex 제50류	견.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004호부터 제5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002	생사(꾼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003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006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101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4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2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5105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52류	면.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201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202	면 웨이스트(waste) [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203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306호부터 제53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아마 · 대마 · 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5305	코코넛 · 아바카(마닐라마) · 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 · 노일(noil) ·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넷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106호부터 제5109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4호,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403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 · 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 (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405	재생 · 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 · 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 (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ex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2단위 세번변경기준
5502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2단위 세번변경기준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504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 [노일(noil) · 실의 웨이스트 ·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5507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56류	워딩(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 특수사,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5603	부직포(침투 · 도포 · 피복 ·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 천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9류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호부터 제5109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 5206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 5404호,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 5212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 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 5212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 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넘마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또는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 다만, 그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7류	조제 깃털·숨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68류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 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9류	도자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4부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ex 제71류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쥔 것 ·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쥔 것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쥔 것 ·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쥔 것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4	합성 ·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쥔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쥔 것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	철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3류	철강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1.20	알루미늄 합금	6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7605	알루미늄의 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8류	납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ex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 부속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4	화물자동차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 · 기중기차(crane lorry) · 소방차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도로청소차 · 살포차 · 이동공작차 · 이동방사선차]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8부 광학기기 · 사진용 기기 · 영화용 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 · 사진용 기기 · 영화용 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96류	잡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9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97류	예술품 · 수집품 · 골동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적용범위 및 목적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각각의 국제적 의무와 국내 관세법에 따라,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 및 양 당사국 간 운송수단의 이동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각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 나.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 다.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는 것, 그리고
 - 라.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 관세 당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

제4.2조 일관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이 자국의 관세 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이행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영역에 걸쳐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이행 및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되도록이면 그 당사국의 지역 세관 간에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

는 행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제4.3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통관과 관련된 자국의 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문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 그러한 문의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3. 각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적 체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4.4조

자동화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 가. 세관 이용자가 전자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나.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 다. 국제무역 데이터의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 라.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4.5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가. 품목분류

나.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다. 상품이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 당국이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 내에 사전심사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했어야 한다.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할 때, 그 당사국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3.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

하여, 사전심사결정이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4. 발급 당사국은 발급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의 공포 후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발급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이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하였던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 자국 법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전심사결정을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포할 수 있다.

6. 신청인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또는 상황을 누락하는 경우, 또는 사전심사결정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민사, 형사 및 행정적 조치, 금전상의 벌칙, 또는 그 밖의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상품의 도착 후 48시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상품이 도착하는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도착지점 밖으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 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3.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자국의 관세 당국이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관세, 조세 및 수수료의 지급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긴급 통관을 요하는 상품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반출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5. 부패성 상품의 피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한정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통관 통제로부터 부패성 상품의 반출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가급적 가장 빠른 시간에, 상품이 도착하고 반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한 후 12시간 내, 그리고

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국의 관세 당국의 업무 시간 외

6. 각 당사국은 요구될 수 있는 어떠한 검사를 조정하는 경우,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7. 각 당사국은 반출을 기다리는 동안 부패성 상품의 적절한 저장 시설을 마련하거나 수입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마련한 모든 저장 시설에 대하여 자국의 관련 당국이 승인 또는 지정하였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을 이동시키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포함하여, 그러한 저장 시설로의 상품의 이동은, 요구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하고 국내 법률에 합치되는 경우, 수입자의 요

청에 따라, 그러한 저장 시설에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4.7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 가.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제공한다.
-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
- 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 마.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특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 서류가 제출된 후 6시간 내에 화물이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 바.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송화물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한다.

바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한 상품의 경우, 당사국은 공식적인 반입서류, 관세 또는 세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

위험관리

각 당사국은 자국 관세 당국이 검사 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4.9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및 상호인정

1. 양 당사국은 「세계관세기구의 무역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표준」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프로그램의 이행을 증진한다.
2. 그 요건을 준수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의무, 요건, 형식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수립된다.
3.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서로 합의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인정 약정을 협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10조

통관사후심사

1. 상품의 반출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사후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기초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위한 인이나 탁송물을 선별한다. 각 당사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한다. 그 인이 심사 과정에 관여되고 확실한 결과가 달성된 경우, 그 당사국은 자신의 기록이 심사된 인에게 지체 없이 다음을 통보한다.

가. 결과

나. 결과에 대한 이유, 그리고

다. 인의 권리 및 의무

3. 양 당사국은 통관사후심사에서 획득된 정보가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관리 적용 시 통관사후심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제4.11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사,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사를 실시하는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당사국이 제4.13조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4.12조

벌칙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4.13조

비밀유지

1.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한쪽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양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고 제공한 당사국이 비밀로 분류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다른 쪽 당사국이 정보 요청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한 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2.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접수한 당사국은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적 절차 과정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합치되게 행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당사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당사국이 이 조에 근거하여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이 행한 구체적인 비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한다.

4. 각 당사국은 공개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관세법 행정에 따라 제출된 비밀 정보를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한다.

제4.14조

관세 협력

1.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관련하여 서로 지원할 수 있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나. 통관 우수 관행 및 위험관리 기술의 발전과 이행

다.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라. 기술력 및 기술의 사용 증진

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상품의 품목분류, 평가 및 원산지 결정

바. 자유무역협정 이행 통계,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할 형식 및 종류의 교환,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통관 사안

2.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세 행정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인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사안이 접촉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안은 제4.15조에 규정된 관세위원회에 회부된다.

제4.15조

관세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 구성되는 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양 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이 장들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의 검토, 논의 및 제안

나.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해석을 위한 규정의 검토, 논의 및 제안

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 라 한다)의 전환에 근거한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라. HS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마.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개정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바. 전자 증명 및 검증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작업, 그리고

사. 공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4. 위원회는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양 당사국 간 교대로 회합한다.

제4.16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그리고

나. 에콰도르의 경우,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에콰도르 관세청,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관세법 및 규정이란 상품의 수입, 수출, 이동 또는 보관, 관세 당국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운영 및 집행, 그리고 그 법적 권한에 따라 관세 당국이 제정한 모든 규제에 관한 법적이고 규제적인 규정을 말한다.

통관 절차란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수단에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운송수단이란 자연인 및 상품을 운송하여 당사국의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관세 영역에서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차량 및 항공기를 말한다.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의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 나.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
- 다.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대한 투명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
- 라.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는 것

제5.2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5.3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재확인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양 당사국 간에 적용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품보호협약」 및 세계동물보건기구의 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여 이 협정에 포함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5.4조

동등성

1. 수출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수입 당사국의 조치 또는 동일한 생산품을 거래하는 수출 당사국이 사용하는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수출 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수입 당사국에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 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한다.

2.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특정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동등성 인정에 대한 양자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3. 특정 생산품 또는 생산품군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그 당사국 조치의 동등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고려는, 그 자체만으로 진행 중인 그 당사국으로부터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해당 생산품의 수입을 방해하거나 중단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5.5조

위험평가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5조를 저해함이 없이,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위험평가 요청을 적절히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위험평가는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된다. 위험평가는 이 장의 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따를 것이다.

3. 긴급조치¹를 저해함이 없이, 수입 당사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검토를 개시한 시점에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 당사국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

제5.6조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용

1.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

2. 자국 영역 내의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출 당사국은 그러한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임을, 그리고 계속하여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유지될 것임을 각각 수입 당사국에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요청에 따라 수입 당사국에 부여된다.

3.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한쪽 당사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내린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당사국은 그 이유를 시기적절하게 설명한다.

¹ 긴급조치란 그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상 시급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수입 당사국이 관련 수출 당사국에 적용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말한다.

제5.7조

기술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자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의 기술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에서 상호 합의되는 협력 및 기술지원 절차를 지원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특히 위험 분석 방법론, 질병 또는 해충 관리 방법, 실험실 시험 기술 그리고 국내 규정에 관한 정보 교환에 대하여 협력을 강화한다.

나. 동물 질병과 식물 병해충 관리에 관한 각 당사국의 역량 및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의 관련 공무원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다. 동물 질병, 식물 해충 및 식품 안전을 포함한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기술 경험을 교환하며, 그러한 연구 및 경험의 결과를 공유한다.

3.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중 일부는 필요한 경우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수출 관심 생산품에 대한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에 관한 규제적 이해 증진을 목표로 부속 작업반을 설치하고 각 당국의 관심을 고려하여 그들의 역량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함께 작업할 수 있다.

제5.8조

정보교환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전달되도록 보장한다.

2. 양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의 중대한 비준수에 관한 관련 정보를 권한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 당국을 통하여 시기적절하게 서로 교환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위한 접촉선을 수립하며, 이 접촉선은 인터넷을 통하여 영어로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영어로 문의하는 경우 영어로 답변한다.

4. 요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위험분석 절차에 대한 설명과 위험분석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수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위험분석 절차의 상태를 알린다.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수출 당사국 상품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수입 당사국은 행정 또는 입법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진행한다.

제5.9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해결은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기반해야 하고, 양자 간의 기술적 협력 및 협의를 통하여 최적으로 달성됨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다루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현재 또는 장래의 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가. 이 장의 이행을 점검한다.

나.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한다.

다.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 라.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
-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에 대한 중대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비준수에 대하여, 양 당사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시기적절하게 소통한다.
- 바. 필요한 경우,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이 상호 관심이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사안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합의된 용어와 조건에 기초한 기술 협의의 수립을 고려한다. 당사국이 기술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의 통보로부터 30일 내에 개최된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의 통보 후 180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더 긴 기간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하에 운영되는 관련 국제 및 지역 기구, 그리고 식품 안전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 포럼의 회의를 위하여 사안, 입장 및 의제에 대하여 조정한다.
- 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적용과 관련된 기술 협력 활동의 조정을 증진한다. 그리고
- 자. 각 당사국의 규제의 틀 및 규범 제정 절차에 관한 명확화를 포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대한 특정 이행 사안과 관련된 양자 간 이해를 증진한다.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수립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년마다 회합한다. 위원회는 직접 대면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무역 및 규제 기관 또는 부처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집행을 담당하는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6. 이 장의 이행, 특히 위원회 회의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 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에콰도르의 경우,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5.10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0장(분쟁 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 6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6.1 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이행의 개선을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증대하고 원활히 하는 것
- 나.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기술장벽의 설치를 피하는 것, 그리고
- 다. 양 당사국 간 공동 협력을 증진하는 것

제 6.2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 6.3 조 적용범위 및 정의

-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

서 1에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규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 6.4 조

국제표준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제5.4조 및 부속서 3의 의미에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 결정」 (G/TBT/1/Rev.14의 제1부에 대한 부속서 2) 및 그 결정의 모든 후속 개정을 적용한다.

제 6.5 조

기술규정

1.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6.6 조

적합성 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을 만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2.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가.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수용하기로 다른 쪽 당사국과 합의할 수 있다.

나.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은 상대방의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발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수입 당사국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신뢰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사

용되는 메커니즘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4.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자국의 이유를 설명한다.
5. 제1항에 언급된 대로,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다른 쪽 당사국의 가능한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협상 개시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제 6.7 조

투명성

1.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9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보되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문서 전체 또는 요약본에 대한 온라인 링크 또는 그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2.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경우 언제나, 각 당사국은 대중 및 다른 쪽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한쪽 당사국은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된 기술규정의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간 기간의 연장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안전, 보건, 환경보호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관한 투명성 절차에서, 여전히 개정이 추가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을 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에 관한 협의가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자국의 인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한쪽 당사국은 제안된 기술규정이 공공 협의에 제출된 때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적절히 고려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8.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의 요구사항에 맞게 생산품 또는 생산방식을 조정할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공표와 그 발효 간 합리적인 시간 간격¹을 허용한다.

제 6.8 조

기술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특히 다음에 관한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¹ 합리적인 시간 간격이란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6 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 나. 투명성, 우수 규제 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조화, 그리고 적합성 평가 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의 사용과 같은 규제 문제
- 다. 이 장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발생하는 도량형 요구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준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지원
-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사용, 그리고
- 마. 국가 품질 기반(예를 들어, 표준화, 계량, 시험, 인증 및 인정) 강화를 목표로 한 역량 강화 활동 및 그 밖의 관련 문제

3. 양 당사국은 국제표준의 조화 및 사용을 증진하는 데 협력한다.

4. 양 당사국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가 수립한 체계에 따라, 에콰도르인정서비스(SAE)와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의 수용을 촉진하는 데 협력한다.

5. 유사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비용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개발을 위하여 그 당사국이 의존한 관련 정보 또는 그 밖의 이용 가능한 문서를 비밀 정보를 제외하고 요청 당사국에 제공한다.

6. 양 당사국은 이용 가능한 경우, 채택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전문의 영어 번역본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보 교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다.

7.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서로의 적합성 평가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국제전기기기 인증(IECEE-CB) 제도의 회원이 되도록 장려하는 데 협력한다.

제 6.9 조

정보교환

1. 이 장에 따른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일반 우편을 통하여, 또는 전자메일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수용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 일 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여기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6.10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의 이행 및 이 장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원활히 하는 것
 - 나. 이 장의 이행, 집행 및 운영을 점검하는 것
 - 다. 이 장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
 - 라. 제6.8조에 규정된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공동 협력을 조율하고 제고하는 것

- 마.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제안에 관한 협력의 강화를 위하여 상호 합의된 우선 순위 분야를 확인하는 것
- 바. 상호인정협정 교섭을 위한 절차를 촉진하는 것
- 사.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 아.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 자.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의 해결을 목적으로 협의하는 것
- 차.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하는 것
- 카.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 또는 특정 분야를 위한 임시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 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 파.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여기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 하. 공동위원회가 결정한 이 장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

3. 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회의는 대면으로, 또는 원격회의, 화상회의나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당사국이 제2항자호에 따른 협의를 이용한 경우, 이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이 합

의하는 경우 제20.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구성한다.

5. 다음 기관은 위원회를 조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에콰도르의 경우,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그 승계기관

사안에 따라, 담당 부처 또는 규제기관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 조정을 담당하는 접촉선을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이 지정된 접촉선의 이름, 그리고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및 그 밖의 관련 세부사항을 포함한 그 조직 내 관련 공무원의 세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접촉선의 모든 변동 사항 또는 관련 공무원의 정보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당국은 각국의 영역에 있는 관련 기관 및 인과의 조율 및 그러한 기관 및 인의 참여 보장을 담당한다.

제6.11조

시장 감시

양 당사국은 시장 감시 및 집행 활동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로 약속한다.

제6.12조

국경 조치

한쪽 당사국이,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을 입국항에서 억류하는 경우, 상품을 억류한 당사국은 억류 사유를 지체 없이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제6.13조

표시 및 라벨링

특히,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이 생산품의 의무적인 표시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에 동의한다.

- 가. 그 당사국은 그 생산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링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한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나. 인간이나 동물 또는 식물, 건강 또는 생명, 환경, 또는 국가 안전에 대한 생산품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은 한, 그러한 당사국은 각국의 시장에서 판매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라벨 또는 표시의 승인, 등록 또는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호는 라벨의 의무 요건 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 그리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관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다.
- 다. 한쪽 당사국이 경제 운영자에 대하여 확인번호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과도한 지체 없이 발행된다.
- 라. 그 당사국은 표시 또는 라벨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양 당사국이 수용한 품목분류체계가 있는 경우, 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하지 않거나 추가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생산품에 관하여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않는 한, 다른 언어의 동시 사용은 금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 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수립된 정당한 목적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은 비영구적 또는 제거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거나, 그 생산품에 인쇄되거나 물리적으로 부착되는 대신 생산품 설명서, 포장

또는 포장재를 통하여 제공된 정보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무역구제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1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그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제7.2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는 정보를 검토하고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조사의 개시로부터 30일 내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제외하고

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이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7.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7.3조

잠정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조치의 적용 후 협의를 개시한다.

3.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그 당사국은 제7.2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7.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2조제5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7.4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적용되어 왔고 그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 한, 제2항에 따라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권리는 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년 동안에는 행사되지 않는다.
4.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5. 모든 보상은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총 적용기간을 기초로 한다.

제7.5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 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임시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2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7.6조

일반규정

1.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관련 세계무역기구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상,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조사의 수행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 동안 그들의 견해를 표시하기 위한 청문 기회가 부여된다.

제7.7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합치되게,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7.8조

약속¹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당사국은 가격에 대한 약속을 자국의 당국이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에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반덤핑 협정 제 8 조(가격 약속)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18 조(약속)에 합치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관한 서면 정보를, 그러한 약속을 제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한다.

2. 반덤핑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발생한 피해를 긍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국내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상계 관세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발생한 피해를 긍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7.9조

누적적 평가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제7.10조

공공이익의 고려

양 당사국은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11조

공청회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서면 신청을 접수한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7.12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3절

무역구제위원회

제7.13조

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무역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무역구제 조치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양 당사국은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무역구제 사안에 관한 그들 각자의 법과 그 법의 적용, 그리고 무역 정책의 일반적인 모든 측면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 협력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합한다.

제4절

정의

제7.14조

정의

제1절의 목적상,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우려란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0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나(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규정된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에 5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제8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8.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 다.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그리고
-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제10.19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나. 정부조달

다.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않는 기간 중 그 항공기의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이른바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 4) 특수 항공 서비스
- 5) 지상 조업 서비스, 그리고
- 6) 공항 운영 서비스, 또는

라.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4. 이 장은 당사국에 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으며, 그 접근 또는 고용에 대하여 그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5.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8.2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¹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8.3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8.4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 에서 대우가 부여되는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서비스들 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구별을 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 상황에 달려있다.

3) 킬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², 또는

4) 수량킬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8.5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여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제8.6조

비합치 조치

1.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² 가호3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지방정부³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8.2조, 제8.3조, 제8.4조 또는 제8.5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8.7조

국내 규제

1.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국가정책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³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당사국이 제2항가호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련 국제기구⁴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4. 당사국이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여겨지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나.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적 기간을 수립한다.

다.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그리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실행 가능한 경우, 신청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마. 신청이 종료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가능한 최대의 한도에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요청에 따라 그리고 과도한 지체 없이, 그러한 처분의 이유를 제공한다. 거부하는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신청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한도에서, 면허 또는 자격에 대한 신청을 제출하기 위하여 당사국 영역에서의 물리적 주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서면 제출과 진정성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전자적 형식의 신청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⁴ “관련 국제기구”란 양 당사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기구를 지칭한다.

아.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원본 문서를 대신하여 당사국의 법에 따라 증명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5.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승인 수수료⁵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그 자체로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6. 면허 또는 자격 요건에 시험의 완료가 포함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시험 일정을 잡는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한다.

7. 분야 또는 조치가 제8.6조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을 이유로 제8.2조 또는 제8.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그러한 분야 또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8. GATS 제6조제4항과 관련된 협상의 결과(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협상의 결과)가 발효하는 경우, 그 결과가 이 협정에 따라 발효하도록 양 당사국 간의 협의 후에 적절한 경우 이 조를 개정한다.⁶

제8.8조

규정⁷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제19장(투명성)에 더하여,

⁵ 이 항의 목적상, 승인 수수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 경매, 입찰 또는 허가를 부여하는 그 밖의 비차별적인 수단에 대한 지불, 또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7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밖의 포럼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면허의 승인 또는 기준을 수립하거나 이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

- 가.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⁸
- 나. 당사국이 제19.1조제2항에 합치되게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규정에 대한 사전공고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 다.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된 최종 규정의 공포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둔다.

제8.9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5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8.3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 또는 자국 영역 내 관련 기관이

⁸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수립하는 의무의 이행은 소규모 행정 기관의 자원 및 예산 제약의 고려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체결한 모든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하여도 적절한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4.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할 때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할 수 없다.

제8.10조 지불 및 송금⁹

1.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련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송금과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8-가는 제8.10조에 적용된다.

다. 법 집행 또는 금융 규제 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8.11조

혜택의 부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8.1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공항 운영 서비스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해 공항 터미널, 비행장 및 그 밖의 공항 시설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 운영 서비스는 항공 운항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또는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투자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이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 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구성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지상 조업 서비스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해 공항에서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 대리·관리 및 감독, 여객 취급, 수하물 취급, 램프 서비스, 음식 준비를 제외한 케이터링, 항공 화물 및 우편물 취급, 항공기 연료 공급, 항공기 정비 및 청소, 육상 운송, 그리고 비행 운영·승무원 관리 및 비행 계획. 지상 조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체 처리, 보안, 라인 정비, 항공기 보수 및 유지, 또는 제빙 시설, 연료 배급 시스템, 수하물 취급 시스템 및 공항 내 고정 교통 시스템과 같은 필수적인 중앙 집중식 공항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¹⁰ 그리고

특수 항공 서비스란 항공화재진압, 관광, 살포, 조사, 지도제작, 사진촬영, 낙하산 투하, 글라이더 견인, 그리고 벌채 및 건설을 위한 헬기운반과 같은 비운송 항공서비스, 그리고 그 밖의 공중에서의 농업, 산업 및 조사 서비스를 말한다.

¹⁰ 제8.2조 및 제8.3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는 GATS 제2조 및 제17조에서 사용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부속서 8-가

송금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 당사국이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의 적용 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구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연장을 사전에 통보한다.

나.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이하 “IMF”라 한다).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 일시적이며, 제1항에 기술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마. 몰수적이지 않다.

바.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지된다.

사. 내국민 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아. 다른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만큼 유리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한다.

자.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차.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IMF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지 않는 한,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카.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해외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않는다.¹¹

3. 이 부속서의 목적상, **외국인직접투자**란 다음을 위한 한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하며, 대외채권은 제외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에 기업 설립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존의 기업의 증자,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기존의 기업의 지분 취득. 다만, 순전히 금융적 성격을 지니며,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투자는 제외한다.

¹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IMF에 따라 국제 자본 이동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자본 유입 송금에 대한 모든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거래 금액의 일부를 예치하는 의무와 같은 통제를 포함할 수 있다.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8.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8.2조(내국민 대우)

나. 제8.3조(최혜국 대우)

다. 제8.4조(시장접근)

라. 제8.5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8.6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¹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¹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그 조치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라. **조치**²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4. 제8.6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8.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5.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8.6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말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지주재(제8.5조)와 내국민 대우(제8.2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8.5조)와만 불합치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8.2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1. 분야	건설서비스
관련업무	현지주재(제8.5조)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8823호, 2022. 2.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2023. 5.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법률 제18737호, 2022. 1. 1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9159호, 2023. 1.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행정안전부령 제397호, 2023. 4. 19.)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에서 건설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 분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대여·정비·수리·판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5조)
조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19365호, 2023. 4. 1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국토교통부령 제1233호, 2023. 7. 19.)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대여·정비·수리·판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 분야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수리·판매·폐기 및 검사서비스,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구재 (제8.5조)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53조(법률 제19315호, 2023. 3. 2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국토교통부령 제1243호, 2023. 8. 1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국토교통부령 제1217호, 2023. 5. 25., 환경부령 제1035호,
2023. 5. 25.)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 판매·정비·수리 및 폐기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고, 경우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및 봉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4. 분야	유통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법률 제17142호, 2020. 3. 31.)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880호, 2021. 12. 2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7 부터 제9조까지(법률 제18723호, 2022. 1.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33280호, 2023. 2. 28.) 국세청 고시 제2021-14호(2021. 5. 14.)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를 유지해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5. 분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17643호, 2020. 12. 1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설치한 인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6. 분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업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약사법 제42조 및 제45조(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약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대통령령 제32089호, 2021. 10. 19.)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2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9호, 2021. 9. 7.) 의료기기법 제15조(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총리령 제1841호, 2022. 12. 1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총리령 제1872호, 2023. 3. 22.)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8445호, 2021. 8. 1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대통령령 제33647호, 2023. 7. 2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총리령 제1879호, 2023. 5. 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법률 제18445호, 2021. 8. 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대통령령 제33160호, 2022. 12. 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총리령 제1868호, 2023. 3.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법률 제18965호, 2022. 6.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총리령 제1885호, 2023. 6. 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9473호, 2023. 6. 1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총리령 제1894호, 2023. 8.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법률 제18964호, 2022. 6. 10.)

화장품법 제3조(법률 제18448호, 2021. 8. 17.)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총리령 제1887호, 2023. 6. 22.)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 포함)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다. 식품검사 서비스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또는

마. 화장품(기능성 화장품 포함) 공급 서비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분야	의약품 소매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약사법 제20조 및 제21조(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의약품 소매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해야 한다. 그 인은 약국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다.

8.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시장접근(제8.4조)
조치	철도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2조 및 제13조(법률 제19056호, 022. 11. 15.)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법률 제15460호, 2018. 3. 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법률 제19393호, 2023. 4. 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38조(법률 제18693호, 2022. 1. 4.)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100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또는 그 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또는 그 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철도운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인이 합작투자 계약 또는 운송 관련 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그 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국가철도공단만이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9.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5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법률 제18558호, 2021. 12.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궤도운송법 제4조(법률 제18185호, 2021. 5. 18.)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0. 분야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해운법 제24조 및 제33조(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3조(해양수산부령 제553호, 2022. 6. 30.) 도선법 제6조(법률 제18695호, 2022. 1. 4.)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및 제31조(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규정된 대로 한국에 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는 한국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 해운중개서비스, 해상대리업서비스와 선박 정비 및 수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규정된 회사여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11. 분야	운송서비스 – 특수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항공안전법 제7조 및 제10조(법률 제18789호, 2022. 1. 18.) 항공사업법 제30조 및 제50조 (법률 제18565호, 2021. 12. 7.)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49조 (국토교통부령 제1164호, 2022. 12. 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항공기 사용서비스 또는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 그리고 항공 관광과 같은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해당하는 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³, 또는

-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책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사용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산림화재관리·항공광고·비행훈련·항공지도제작·항공조사·항공살포·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 그리고 항공순찰 및 관측을 포함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호는 항공 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항공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분야	운송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8558호, 2021. 12.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주차장법 제12조(법률 제18562호, 2021. 12. 7.) 도로교통법 제36조 (법률 제19158호, 2023. 1.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 (대통령령 제33547호, 2023. 6. 2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주차장서비스, 버스터미널 운영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고, 경우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및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분야

쿠리어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항공사업법 제52조 (법률 제18565호, 2021. 12. 7.)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국토교통부령 제1164호, 2022. 12.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법률 제18568호, 2021. 12.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4조 및 제41조의2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쿠리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운송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14.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87조(법률 제19153호, 2023. 1. 3.)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 8. 28.) 전과법 제13조 및 제20조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기간통신사업 등록 또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만 허용된다. 기간통신사업 등록은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부여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않는다.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에 등록된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으로 기간통신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법률 제19153호, 2023. 1. 3.)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다.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않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법률 제16019호, 2018. 12. 24.)의 규정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 포함)를 말한다.

15. 분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5조)
조치	공인중개사법 제9조(법률 제19423호, 2023. 6.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 7. 2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29조(법률 제19403호, 2023. 5. 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및 제25조(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6. 분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 · 리스 · 임대 및 수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 (제8.5조)
조치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17조 (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7조 (보건복지부령 제1841호, 2022. 12. 19.)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 · 리스 · 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7. 분야	대여 서비스 -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5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법률 제18558호, 2021. 12.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4조(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8. 분야	과학조사서비스와 해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법률 제17750호, 2020. 12. 2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15429호, 2018. 3. 1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않거나 지배하지 않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19.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21조의2,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6, 제58조의22 및 제109조(법률 제17828호, 2021. 1. 5.)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법률 제16911호, 2020. 2. 4.)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설치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그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공증인은 그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0.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노무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법률 제18923호, 2022. 6. 10.)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의2(대통령령 제33002호, 2022. 11. 22.)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의2(고용노동부령 제375호, 2022. 12. 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만이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 포함)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1.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12(법률 제19165호, 2023. 1. 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변리사 서비스는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한국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인은 이러한 형태의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

22. 분야	전문직 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8조 및 제23조(법률 제18114호, 2021. 4. 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법률 제19217호, 2023. 1. 1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3.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제20조 및 제20조의2(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법인세법 제60조(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소득세법 제70조(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1조(국세청훈령 제2477호, 2021. 12. 1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 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비스 - 외국세무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24. 분야	전문직 서비스 – 통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8, 제17조의13, 제19조 및 제25조(법률 제18722호, 2022. 1. 6.)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관세사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통관업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5. 분야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5조)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145조(법률 제19611호, 2023. 8.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29조(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6. 분야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측량 및 지도제작 서비스(지적 측량 및 지적도 제작 서비스 미포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5조)
조치	건축사법 제23조(대통령령 제18826호, 2022. 2. 3.) 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3조(국토교통부령 제929호, 2021. 12. 1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법률 제17344호, 2020. 6. 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32995호, 2022. 11.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국토교통부령 제1150호, 2022. 9. 16.)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법률 제18933호, 2022. 6.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 12. 3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 제18421호, 2021. 8. 1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 18823호, 2022. 2.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3조(법률 제33456호, 2023. 5.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법률 제18936호,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대통령령 제33525호, 2023. 6. 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해양수산부령 제466호, 2021. 2. 19.)

온천법 제7조(법률 제19028호, 2022. 11. 1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법률 제19159호, 2023. 1. 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또는 측량 및 지도제작 서비스(지적 측량 및 지적도 제작 서비스 미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한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7. 분야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 서비스 및 옥외광고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 (제8.5조)
조치	방송법 제13조 및 제73조(법률 제19326호, 2023. 4.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법률 제18876호, 2022. 6.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4조(대통령령 제33021호, 2022. 12. 6.)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28. 분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33조(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3조(대통령령 제33131호, 2022. 12. 27.)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및 제36조(고용노동부령 제375호, 2022. 12. 3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7605호, 2020. 12. 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법률 제19430호, 2023. 6. 9.) 선원법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42조 및 제143조(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해운법 제33조(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해운법 시행규칙 제23조(해양수산부령 제553호, 2022. 6. 30.)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법률 제13272호, 2015. 3. 2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임시파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20년 1월 16일 현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32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관리사업운영자, 「선원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해양 및 수산업 관련 단체나 기관만이 선원인력공급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규정된 회사여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29. 분야	조사 및 경비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법률 제19021호, 2022. 11. 15.)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33464호, 2023. 5. 15.)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안전부령 제418호, 2023. 7. 1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 5가지 종류의 경비 서비스만이 허용된다. 가. 시설경비 나. 호송경비 다. 신변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마. 특수경비

30. 분야	간행물 관련 유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조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3(법률 제18382호, 2021. 8. 10.) 출판문화사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 2020. 6. 23.)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내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은 필요 시 심의의 대상이 된다.

31. 분야 운송 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 (제8.5조)

조치 항공사업법 제42조(법률 제18565호, 2021. 12. 7.)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국토교통부령 제1164호, 2022. 12. 8.)
항공안전법 제97조(법률 제18789호, 2022. 1. 18.)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2. 분야

교육 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시장접근(제8.4조)

조치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21조, 제23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제28조(대통령령 제33405호, 2023. 4. 18.)

사립학교법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33527호, 2023. 6. 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률 제18989호, 2022. 10. 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대통령령 제31709호, 2021. 6.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8조(법률 제19430호, 2023. 6. 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4조(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50퍼센트 이상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이 출연한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본재산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부속서 II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 제외)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의료인·약사·수의사·한약사·의료기사, 유아·초등·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사내 대학을 제외하고, 고등교육기관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수도권 지역에서 제한될 수 있다.

대학(전문대학)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의 전문대학, 대학 및 산업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 공인평가인정기구의 인정을 취득하거나, 해당 외국정부의 인정 또는 추천을 획득한 외국 대학으로 제한된다.

그 밖의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러한 인정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된다.

33. 분야

교육 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시장접근(제8.4조)

조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및 제13조(법률 제19347호, 2023. 4.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31711호, 2021. 6. 1.)

평생교육법 제30조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법률
제18195호, 2021. 6.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6호, 2021. 6. 1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에 한정된다.

가.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1)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육시설

2) 지식·인력 개발 사업 관련 교육시설,
그리고

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성인대상
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한국 내에 거주해야 한다.

34. 분야	교육 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5조)
조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법률 제19174호, 2023. 1.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33596호, 2023. 6. 2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고용노동부령 제387호, 2023. 7. 4.)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5. 분야	수의 서비스
관련업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수의사법 제4조, 제17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법률 제18691호, 2022. 1. 4.)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 및 제37조의12(법률 제17036호, 2020. 2. 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1(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 3. 10.) 민법 제32조(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수의사법」 제17조(법률 제18691호, 2022. 1. 4.)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동물병원에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인만이 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법률 제17036호, 2020. 2. 18.)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수산생물질병검사센터에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소지한 인만이 수산생물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6. 분야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구재 (제8.5조)

조치

물환경보전법 제62조(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지하수법 제29조의2(법률 제19170호, 2023. 1. 3.)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법률 제18432호, 2021. 8. 17.)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법률 제18420호, 2021. 8.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법률 제18853호, 2022. 4. 2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33011호, 2022. 11.
 29.)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7. 분야

공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조치

공연법 제6조 및 제7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공연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대통령령 제33441호, 2023. 5. 2.)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2호, 2023. 5.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법무부령 제1054호, 2023. 6. 30.)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한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8.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16조 및 제28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대통령령 제33416호, 2023. 4. 18.) 전파법 제20조(법률 제18957호, 2022. 6. 10.)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책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책임임원)나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 또는 지국의 한국 내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39. 분야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조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9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한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나. 한국 국민이 아닌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다. 외국인이 5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한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한국 내에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

40. 분야	유통 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시장접근(제8.4조)
조치	양곡관리법 제12조(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축산법 제30조 및 제34조(법률 제18445호, 2021. 8. 17.) 종자산업법 제42조(법률 제18265호, 2021. 6. 15.) 사료관리법 제6조(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인삼산업법 제20조(법률 제18534호, 2021. 11.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3635호, 2023. 7. 18.)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6호, 2021. 6.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28호, 2023. 3. 31.)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2조(내국민 대우) 및 제8.4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

41. 분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상영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3434호, 2022. 3. 8.)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부속서 I
에콰도르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8.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8.2조(내국민 대우)

나. 제8.3조(최혜국 대우)

다. 제8.4조(시장접근), 또는

라. 제8.5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8.6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4. 제8.6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8.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 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에콰도르의 경우, **국내법인**은 국민 그리고/또는 외국인 투자로 에콰도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6. 에콰도르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7. 에콰도르의 경우, 주식회사는 회사법 제6절 “주식회사(Compañía Anónima)”에 따

라 구성된 실체를 지칭한다.

1. 분야 통관 대리인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 (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관 대리인 및 보조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규정 제2장(통관 대리인)
제6조, 제7장(통관 대리인의 보조인) 제41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통관 대리인과 통관 대리인의 보조인이 전문직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에콰도르 내 주소가 요구된다.

2. 분야 법률 서비스¹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사법기능 기본법 제7편(변호사) 제1장(사건 지원 변호사) 제324조 · 제326조 · 제327조, 제3장(법학, 법 및 법과학 학부 졸업생을 위한 예비 전문직 실무) 제332조 · 제339조 · 제340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 변호사는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학위가 법으로 규정된 조건에 따라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그 국가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GATS상 에콰도르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98, GATS/SC/98/Suppl.1 및 GATS/SC/98/Suppl.2)에 규정된 외국 법률 및 국제법에 대한 자문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분야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공증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사법기능 기본법 제6편(사법기능의 보조 기관) 제1장(공증인) 제299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공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인이어야 하고 정치 참여의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

4. 분야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하위분야	구매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화물 운송 차량에 관한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구매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그 밖의 육상 운송 장비에 관한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육상 운송, 교통 및 도로 안전 기본법 제5편(육상 운송의 권한) 제2장(행정 체제) 제2절(차량 임대 및 리스 회사) 제77.a조, 제4절(차량 임대 및 리스 회사에 대한 행정 제재의 적용) 제77.e조 · 제77.f조 · 제78조 차량 임대 또는 리스 회사의 운영에 대한 규정 제2편(차량 임대 회사의 인가 및 운영) 제2장(법인 목적) 제5조 · 제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회사의 주된 목적이 육상 운송 차량의 임대 또는 리스인 국내법인만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회사는 다음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 운전자를 동반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회사에 임대된 차량은 운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않고 차량을 임대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사람과 상품의 이동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나. 공공 또는 상업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5. 분야 통신 서비스²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에콰도르 공화국 헌법 제6편(개발 체제) 제5장(전략 분야, 서비스 및 국영 기업) 제313조, 제6장(노동 및 생산) 제6절(저축 및 투자) 제339조, 제7편(좋은 생활 체제) 제1장(포용 및 형평성) · 제2장(생물 다양성 및 천연자원) 제408조

행정 기본법 제1편(행정 조직) 제3장(권한의 행사)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회사법 제1절(일반규정) · 제13절(외국 회사) 제415조

통신 기본법 제2편(네트워크 및 통신서비스 제공) 제2장(통신서비스 제공) 제14조 · 제15조, 제5편(권한) 제1장(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한) 제39조, 그리고 제2장(라디오 스펙트럼의 사용 및 개발) 제55조, 제11편(희소 자원과 상품의 점유) 제1장(라디오 스펙트럼의 할당) 제93조

통신 기본법에 대한 일반규정 제3편(권한) 제2장(위임에 의한 권한 규정) 제20조, 제7편(서비스 계약 체제) 제4장(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GATS상 에콰도르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98, GATS/SC/98/Suppl.1 및 GATS/SC/98 /Suppl.2)에 규정된 C. 통신서비스 (h)부터 (n)까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와 의무) 제59조, 제9편(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금체제) 제62조

통신 및 주파수에 대한 권한 규정 제1권(권한의 부여) 제1편(통신서비스에 대한 권한의 부여) 제1장(일반 승인형식에 따라 부여되는 권한) 제1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다음을 위하여 운영 면허가 요구된다.

가. 방송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제공

나. 라디오 스펙트럼 사용 또는 개발, 그리고

다. 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이러한 운영 면허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연인은 거주자여야 하고 외국인인 에콰도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운영 면허는 경제적 수요 심사의 대상이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은 고립된 비도시 지역, 도시 주변 지역 내 및 저소득 인구 집단에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익이 있는 시장에서 민간 운영자의 접근과 참여를 위한 그러한 최소 자원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 따라, 라디오 스펙트럼의 사용 및 개발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은 다음을 제외하고 권리금, 요금, 기여금 및 그 밖의 의무금을 지불해야 한다: 1) 운영 면허의 부여 또는 갱신을 위한 것 그리고 2) 사용 및 개발을 위하여 주파수에 대한 승인의 부여 또는 갱신을 위한 것. 그러나 공기업은 통신부가 발표한 공공 정책에 따라 사회적 성격을 가진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 이행 또는 ARCOTEL(통신 규제 및 통제 기관)이 제공한 결의의 실행을 통하

여 이러한 면제를 전부 받아야 한다.

교차보조금은 구독형 방송을 포함하여, 위임에 의한 권한을 보유한 통신서비스 공급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승인에 의한 권한을 보유한 통신서비스 공급자는 헌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러한 목적상 사회적 이익의 개념을 준수하면서, 보편적 서비스의 경우에만 이러한 보조금을 적용할 수 있다.³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임에 의한 권한은 민간 통신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고, 승인에 의한 권한은 공공 통신회사에 부여된다.

6.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커뮤니케이션 기본법 제6편(광고, 국내 제작 및 대중공연) 제2절(국내 제작) 제98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매체를 통하여 에콰도르 영역 내에 전파되는 광고는 에콰도르인 또는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외국의 자연인이 에콰도르 영역 내에서 제작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에콰도르인 또는 외국 법인이 해외에서 제작해야 한다. 이러한 외국 법인은 주식 총량의 과반수를 에콰도르 인이 소유하고, 광고 실현 및 제작을 위한 급여 대상자 명단의 최소 80퍼센트는 에콰도르 국적자로 이루어진다. 급여 대상자 명단의 이러한 비율은 전문 직서비스 계약을 포함할 것이다.

광고 제작물은 텔레비전 및 영화 광고, 라디오 광고, 정적 광고를 위한 사진 또는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시청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7. 분야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커뮤니케이션 기본법 제7편(라디오주파수스펙트럼) 제11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통신 당국은 국가 영역 전체에 걸쳐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AM 라디오 주파수 이용권 하나, FM 라디오 주파수 이용권 하나 및 텔레비전 주파수 이용권 하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AM 또는 FM 중 어느 하나의 라디오 이용권을 보유한 인은 누구든지 하나를 초과하지 않는 단파 주파수의 부여를 위한 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8. 분야 방송

하위분야 라디오 및 무료 방송 텔레비전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커뮤니케이션 기본법 제5편(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매체) 제74조, 제7편(라디오 주파수스펙트럼) 제10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개방형 신호 매체, 라디오 및 텔레비전은 공익정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의무를 가질 것이다.

- 가. 에콰도르 대통령 또는 이 권한을 받은 집행 기능 기관이 지시한 공익에 관한 메시지를 국가 또는 지역 채널, 전부 또는 일부 소셜 미디어에서 전송한다.
- 나. 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비상 사태의 경우, 에콰도르 대통령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이 지시한 메시지를 국가 또는 지역 채널에서 전송한다.
- 다. 텔레비전 교육, 문화,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권한을 가진 부처 또는 사무국이 마련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공식 프로그램에 하루에 한 시간을 할당하고, 이는 누적되지 않는다. 그리고
- 라. 공공, 민간 및 지역사회 매체의 연결을 통하여,

국가위험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기관이 선포한
적색경보와 함께, 4급, 5급 재난 및 참사로 알려
진 위험한 사건의 전개 상황을 대중들에게 지속
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비상사태 선포를 반드시
수신하지 않고도 지정된 공식 대변인의 메시지를
전송한다.

무료 방송의 경우, 라디오 스펙트럼의 34퍼센트까지 지역사회 분야
에 유보될 것이며, 66퍼센트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 배정될 것이다.
공공 분야 비율은 스펙트럼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분야	시청각서비스
하위분야	무료 방송 텔레비전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커뮤니케이션 기본법 제6편(광고, 국내제작 및 대중공연) 제2절(국내 제작) 제97조·제100조·제10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신호의 근원이 국내인 시청각 매체는 모든 시청자에게 적합한 일일 방송 편성표의 최소 60퍼센트를 국내 제작물로 방송할 것이다. 이 시청각 매체는 점진적으로 그 비율에 도달할 것이다. 국내 제작물은 비디오 제작물, 예술, 뮤직 비디오, 텔레비전 연속극 및 그 밖의 작가 제작물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물 및 시청각 창작물, 플롯·다큐멘터리·실험물·애니메이션 및 혼합 매체 프로그램 및 시리즈를 포함한다.

이러한 국내 콘텐츠는 독립적인 국내 제작물의 최소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하고, 이는 그 매체의 일일 전체 방송 편성에 따라 계산된다.

시청각 작품은 에콰도르 국적의 사람 또는 국가 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최소 80퍼센트가 제작에 참여한 경우, 국내물로 여겨질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에콰도르인이 국외에서 제작한 작품의 경우,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

모든 시청자에게 적합한 시간으로 명시된 일정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의 가족 시간대에 해당하며, A 유형 편성물이 방송된다.

10. 분야	시청각서비스
하위분야	무료 방송 및 구독형 텔레비전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커뮤니케이션 기본법 제2편(원칙과 권리) 제2장(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 제5편(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매체), 제6편(광고, 국내제작 및 대중공연) 제2절(국내제작) 제10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프로그램 편성표 내에 에콰도르 영역으로부터 신호가 방송되는 하나 이상의 채널을 보유한 무료 방송텔레비전 매체와 오디오 및 비디오 구독형 시스템은 매년 권리를 획득하고 최소 두 편의 독립적인 국내 제작 장편 영화를 방영할 것이다. 독립적인 국내 제작 물량이 예상 쿼터를 채우지 못한다면, 원산지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이베로 아메리카 제작물이 그 쿼터를 채울 것이다. 공화국 대통령이나 해당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이 지시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또는 비상 사태의 경우, 구독형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은 국가나 지역 채널에 무료로 연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프로그램 편성을 중단한다. 구독형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은 정보통신 규제·개발·촉진 위원회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미리 자격을 부여한 국가, 구역 및 지역 무료

방송 텔레비전 채널을, 콘텐츠와 프로그램 편성의 품질을 고려하여 통신 당국이 수립한 기술 조건을 충족하는 한 자신의 시스템에서 전송해야 한다.

구독형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이 국가 영역 내에서 무료 방송 텔레비전을 전송하는 경우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재송권(료) 지불로부터 면제될 것이며, 구독자 또는 이러한 시스템의 구독자에게 청구되지 않을 것이다.

구독형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이 무료 방송텔레비전 신호를 전송할 때, 원래의 방송 편성은 존중될 것이고, 방송 편성 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를 변경하거나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1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라디오 방송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커뮤니케이션 기본법 제6편(홍보, 국내제작 및 대중공연) 제2절(국내 제작) 제103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 국내 제작 저널 콘텐츠 방송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거주하는 에콰도르인 실연자, 작곡가 또는 예술가가 에콰도르에서 또는 해외에서 제작, 작곡 또는 실연한 음악을 방송하기 위한 시간은 모든 편성 일정에서 방송되는 콘텐츠의 최소 50퍼센트에 해당해야 하며, 국내 음악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대로 저작권료를 지불한다.

특정 주제 또는 전문적 성격을 지닌 방송국은 음악 콘텐츠의 50퍼센트라는 언급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12. 분야	우편 및 메일 서비스
하위분야	우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우편서비스 일반법 제1장(예비 규정) 제1조, 제3장(우편 서비스 및 그 권한) 제15조 · 제16조 · 제20조 우편 서비스법에 대한 일반규정 제7장(권한)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에콰도르에서 우편서비스의 제공은 허가 또는 권한을 통하여 각 기관의 승인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외국 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은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국가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전 단락에 언급된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신속 택배 또는 택배, 항공 · 육상 · 해상 또는 하천 운송으로 제공되는 우편환, 육상 운송 회사를 통한 소포 수송, 우편업무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 이 유보항목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포함된 우편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13. 분야	선불 보건의료 서비스 ⁴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종합 선불 보건의료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와 보험의료지원보장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규제하는 기본법 제2장(종합선불보건의료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와 보험의료지원보장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설립 및 기능) 제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주식회사로 구성된 국내법인만이 선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GATS상 에콰도르의 구체적 약속양허표(GATS/SC/98, GATS/SC/98/Suppl.1, 및 GATS/SC/98 /Suppl.2)에 규정된 병원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14. 분야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관광업법 제2장(관광 활동 및 이를 수행하는 자) 제8조·제9조, 제6장(관광 보호 구역) 제24조 관광업법 일반규정 제2장(단일 관광업 등록) 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 제3장(임시 허가) 제52조·제53조·제54조, 제4장(연간 운영 면허) 제55조·제56조·제57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 관광객 안내 규정 제3편(관광객 안내 자격증 등록 및 취득 요건)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자연인과 법인은 관광업 등록을 신청하고 그 운영 면허를 받기 위하여 에콰도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지역 관광객 안내 자격증 등록 및 취득을 위하여, 활동을 수행할 마을에서의 최소 3년 간의 거주에 대한 증명이 요구된다. 에콰도르의 자연 구역, 수상 및 육상 보호 구역, 국립 공원 및 해양 공원에서의 관광객 운영은 국내 선박소유자 및 운영자에 유보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승인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법인인 경우, 에콰도르 국적이거나 에콰도르 내에 법적으로 주소를 둔 외국회사의 지점이어야 한다.

국립 공원과 해양 보호 구역에서 운영되는 수상 선박은 에콰도르 국적의 선박이 될 것이다.

15. 분야	박물관 관련 서비스 및 보존 서비스
하위분야	고고학 및 고생물학 현장 또는 구역에 대한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문화 기본법 일반규정 제5편(국가 문화 제도) 제4장(국립 문화유산 연구소) 제3절(문화유산 특별 체제) 제7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에콰도르 국립문화유산연구소(스페인어 약자 INPC)는 고고학 및 고생물학 현장이나 구역의 관리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 국내 또는 외국의 학술 또는 교육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술 또는 교육 기관은 국가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16.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항공 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 제2편(비행장 및 공항 인프라) 제2장(건설 및 운영) 제3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비행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승인은 에콰도르인인 자연인 또는 에콰도르에 주소를 둔 법적 실체에만 부여될 것이다.

17. 분야	항공 운송
하위분야	항공 업무 및 관련 활동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 제8편(양허 및 운영 허가) 제1장(일반사항) 제109조 항공 업무 서비스, 관련 활동 및 민간 항공 서비스에 대한 운영 허가에 관한 규정 제1장(범위 및 정의) 제1조, 제2장(운영 허가 취득 요건) 제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내법인만이 항공 업무 또는 관련 활동에 대한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항공 업무 서비스 및 관련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항공 촬영, 화재진압, 광고비행,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강하, 외부 화물 운송, 항공 순찰 및 감시, 훈증 소독, 항공살포, 포식종 통제, 강우 통제, 항공관광, 항공 인력을 위한 기초 훈련 학교, 항공 훈련 센터 및 항공기 제조 및 조립

18.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 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항공법 제4편(항공 인력) 제1장(항공 기술 인력) 제74조·제75조·제76조 민간항공법 제4편(일반규정) 제45조·제4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⁵</u>

에콰도르 회사에서는, 에콰도르 국적의 항공 기술 인력만이 국가 내에서 보수를 받는 항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항공 서비스의 수행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에콰도르인 기술 인력에 대한 외국인 강사의 고용이 승인될 것이다. 민간 항공 총국 또는 권한 있는 것으로 지정된 당국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이러한 승인을 부여할 것이고, 필요가 지속되고 검증된 경우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갱신될 수 있다. 이러한 기한 내에, 고용된 인력은 자신을 대체할 에콰도르인 인력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은 국가 내에서 항공 활동을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모든 자연인에게 적용된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는 제8.1조제4항다호1목, 4목 및 5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에콰도르에 운영 및 유지보수 센터를 보유한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인 국민과 외국인은 각 경우에 맞게 조종사, 탑승 승무원, 기술자, 전문가 및 행정인력 서비스를 위하여 에콰도르 시민을 고용할 것이다.

민간 항공 총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이용 가능한 에콰도르 기술 인력이 없음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만, 이전 단락에 명시된 기능에 대한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승인할 수 있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각 사례에 대하여 항공 당국이 정한 기간 내에 외국인 인력을 대체할 에콰도르 인력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19.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도로 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육상 운송, 교통 및 도로 안전 기본법 제2권(자동차 육상 운송) 제2편(운송 서비스) 제1장(육상 운송 서비스의 등급) 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 제5편(육상 운송의 권한) 제1장(일반사항) 제72조·제73조·제73.a조·제74조·제75조·제76조 육상 운송, 교통 및 도로 안전 기본법에 대한 규정 제2편(지상 운송 서비스) 제1장(지상 운송 회사 및 협동조합의 구성), 제8장(지상 운송의 권한) 제1절(일반 정보) 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 제2절(권한 취득을 위한 요건) 제72조·제73조·제74조·제7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모든 형태의 도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한이 요구될 것이다. 도로 운송 권한은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하게 될 운영 계약, 운영 허가 및 승인이다. 그러한 권한은 경제적 수요 심사의 대상이다. 회사의 경우, 운송 사업자는 민간 유한 회사, 주식 회사 또는 혼합 경제 회사로 배타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자연인의 경우, 영구 거주가 요구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로 운송 형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국제운송,

국내운송, 국경 간 운송, 상업운송 및 자가 운송

20.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 서비스
	내륙수로 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해상 및 하천 운송 일반법 제7조 d) 수중 공간에서의 항해, 안전 관리, 해양 및 하천 보호 기본법 제2편(항해) 제4장(선원, 어민 및 하천 인력의 양성 및 훈련) 제64조·제75조 해상 활동에 관한 규정 제10장(상선 인력) 제102조·제103조, 제11장(상선 인력 등록) 제110조 국립해양국(DIRENA) 결의 제017/17호(선박의 최소 보안 요원과 관련된 원칙) 제2조 결의 제MTOP - SPTM - 2016 - 0102 - R호(선원의 자격기준, 서류의 등록에 대한 기준) 제7장(외국인) 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에콰도르에 주소를 둔 법인만이 에콰도르 국적의 선박과 해군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에콰도르 국적의 선장이 에콰도르 국적의 선박과 해군 선박을 지휘해야 하며, 선원은 대부분 에콰도르인이어야 한다. 선박의 관리에 전문화된 기능이 요구되고 자격을 갖춘 에콰도르인 가용 인력이 부족한 경우, 국립해양국(DIRNEA) 또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당국은 정당한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이유로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승인할 것이다.

외국인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요트 또는 레크리에이션 보트(다만, 그 소유주가 외국인이며 국립해양국(DIRENA) 또는 권한 있는 것으로 지정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외하고, 에콰도르 국적의 선박은 에콰도르 국적 선장의 지휘만을 받을 것이다.

최소 보안요원 배치문서에 따라 기능을 맡기 위하여, 제휴 계약, 6개월을 초과하는 용선 계약에 따라, 또는 국유화 과정에 있는 에콰도르 해역을 운항하는 총 톤수가 50GRT 이상인 외국 국적 선박에는 에콰도르인 해양 인력이 50퍼센트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용선 계약에 따른 선박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선장은 외국인일 수 있다.

21. 분야 해상 및 하천 운송

하위분야 선박 대리인

관련의무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해상 및 하천 운송 일반법 제7조 d)

수중 공간에서의 항해, 안전 관리, 해양 및 하천 보호 기본법 제2편(항해) 제4장(선원, 어민 및 하천 인력의 양성 및 훈련) 제75조

해상 활동에 관한 규정 제12장(대리인, 해운회사 및 항만 운영자) 제115조 · 제116조, 제13장(수상운송) 제130조

결의 제MTOPI-SPTM-2016-0126-R호[제12장(해상 활동에 관한 규정-선박 대리인)의 올바른 적용에 대한 규칙] 제3조

결의 제MTOPI-SPTM-2016-0111-R호[제12장(해상 활동에 관한 규정-선주)의 올바른 적용에 대한 규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자연인 및 주소를 둔 법인만이 선박 대리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해양하천운송청 또는 권한 있는 것으로 지정된 당국이 부여하는 승인이 필요하다

22. 분야	해상 및 하천 운송
하위분야	항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해상 활동에 대한 규정 제12장(대리인, 해운회사 및 항만 운영자), 제13장(수상 운송) 결의 제MTOP-SPTM-2016-0060-R호(에콰도르에서의 항만 서비스를 규제하는 규칙) 제4조 · 제5조 · 제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내법인만이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각각 등록을 취득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선박 또는 해군 선박, 화물 및 승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 지역에서 제공되는 전문적 기술 서비스에 적용된다.

23. 분야	해상운송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해상 활동에 대한 규정 제13장(수상 운송) 제125조 수출 및 수상 운송 촉진법 제2장(수상 운송) 제16조 결의 제MTOP-SPTM-2021-0034-R호 제9장(국가 수역을 향해 하는 에콰도르 국적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을 위한 국가 및 국제 교통 허가 발급, 내부 궤적 및 예외적 인가에 관한 해양 활동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위한 규정, 제6장(외국 국적 선박을 위한 운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외적 인가)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승객과 화물의 내륙 수상 운송은 에콰도르 국적 선박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유보된다. 승객과 화물의 내륙 수상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외적 인가가 외국 국적 선박에 부여될 수 있다.

24. 분야 해상운송

하위분야 탄화수소 적재, 하역 및 보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수출 및 수상 운송 촉진법 제2장(수상 운송) 제14조 · 제1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탄화수소의 적재, 하역 및 보관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것은 제외하
고, 국내회사, 에콰도르 국가 기업 또는 에콰도르 국가가 주식 자본의
최소 51퍼센트를 참여하는 혼합형 해운회사에 배타적으로 할당된다.

25.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국제 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수출 및 수송 운송 촉진에 관한 법(관보 제901호, 1992. 3. 25.) 제2장(수상 운송) 제13조·제14조 해상 활동에 대한 규정 제13장(수상 운송) 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에콰도르 착발의 국제 해상운송에서 실질적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된다. 실질적 상호주의는 외국이 에콰도르 국적 선박이나 국내 해운회사가 임대 또는 운영하는 선박에 부여하는 접근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외국 선박이 에콰도르가 생성하는 수입 및 수출 화물의 운송에 대해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항만해양하천운송청은 제3국이 에콰도르 해운회사가 소유, 임대 또는 운영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 제3국 국적의 회사나 선박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수출 선적에서의 자유 경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상호주의 원칙이 다른 국가에 의하여 제한되었을 때, 해당 국내 해운회사는 제한적, 배타적 또는 화물유보 조치의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에콰도르 해운회사가, 외국 해운회사가 소속된 국가로부터의 수입 화물을 운송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그러한 국가의 수입 또는 수출 화물을 운송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 외국 해운회사에 대하여 상호적 및 비례적 제한이 부과될 것이다.

제한은 다른 나라가 부과하는 화물 접근 제한에 따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외국 해운회사가 에콰도르 착발의 운항을 계속할 수 있지만, 에콰도르 해운회사와 동일한 비율로 제한됨을 의미한다.

운항 배제는 에콰도르 해운회사가 해당 국가와의 운항이나 해당 국가와 제3국 간 운항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국가에 소속된 외국 회사의 선박이 에콰도르로 입국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수반한다.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8.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8.2조(내국민 대우)

나. 제8.3조(최혜국 대우)

다. 제8.4조(시장접근)

라. 제8.5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8.6조(비합치 조치) 제2항에 따라 유보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다.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8.6조(비합치 조치) 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 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4.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지주재(제8.5조)와 내국민 대우(제8.2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제8.5조)와만 불합치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제8.2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상 약속을 저해하지 않고, 한국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방위산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법률 제18755호, 2022. 1. 11.) 방위사업법 제35조(법률 제18805호, 2022. 5. 4.)

3. 분야	모든 분야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여 중요기술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66호, 2023. 1.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 18755호, 2022. 1. 1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35호, 2023. 7. 18.)

5. 분야

총포, 도검, 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구재 (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공의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공 분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 분야 국가 소유의 국가 전자/정보 시스템

7. 분야 국가 소유의 국가 전자/정보 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국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 분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훈련, 공익사업, 대중교통, 공공주택, 보건, 그리고 보육.

9.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 한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

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대하여는,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 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8.6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8.5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0.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또는

라. 철도운송

1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 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2. 분야

환경 서비스 - 음용수 처리·공급 서비스, 생활폐수 수집·처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 제외)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분야 원자력 에너지 - 핵연료의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 포함),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4. 분야

에너지 서비스 – 송전 · 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송전 · 배전 및 전력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5. 분야 에너지 서비스 - 가스 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6. 분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농축산물, 식음료에 대한 중개 서비스

나. 곡물, 육류, 가금류, 곡분, 인삼, 홍삼, 비료에
대한 도매(수입 포함) 서비스, 그리고

다. 쌀, 인삼 및 홍삼에 대한 소매 서비스

17.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구재 (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8.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카보타지 제외)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9. 분야 운송 서비스 - 내륙수상운송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내륙수상운송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0. 분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1.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할 수 있는 차량 정수의 결정 및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한국 우정당국은 국내 및 국외 서신의 수집, 처리 및 배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에 대한 접근 및 그 운영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우편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병역법(법률 제19081호, 2022. 12. 13.)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 18755호, 2022. 1. 11.)

22.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방송 서비스에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3.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란 해당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 포함)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 및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7조, 제9조, 제18조 및 제21조(법률 제18735호, 2022. 1. 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32870호, 2022. 8. 16.)

24.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3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 8. 8.)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5호, 2021. 6. 29.)

25.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한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9조(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0호, 2023. 4. 25.)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5호, 2021. 6. 29.)

27. 분야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10장(금융서비스)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현행의 합법적 투자은행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8. 분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의 디지털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할 때, 한국은 한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에 대하여, 한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그 밖의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의 발효일에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의 조치 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 제19592호, 2023. 8. 8.)

29. 분야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0.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 판정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30.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 판정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30.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 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30.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 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30.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 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30.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 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30.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 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30. 분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 판정
관련업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31. 분야	사업 서비스 -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 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은 농협·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2. 분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 포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 8.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33. 분야 교육 서비스 - 유아·초등·중등·고등 및 그 밖의 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 (제8.5조)

현지구재 (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의료 및 보건 관련 성인 교육 서비스 외의 성인 교육 서비스 제외), 그리고 그 밖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4. 분야 사회 서비스 -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5.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6.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한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592호, 2023. 8.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 8. 8.)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 8. 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592호, 2023. 8. 8.)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779호, 2019. 12. 10.)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587호, 2020. 12. 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18호, 2020. 6. 9.)

37. 분야

도박 및 베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구재 (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도박 및 베팅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박 및 베팅 서비스”는 전자적 전송을 통하여 공급되는 도박 및 베팅 서비스와 사행성게임물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사행성게임물”은 특히 베팅을 통하거나 우연에 의하여 금전적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는 게임기기를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관광진흥법 제5조, 제21조 및 제28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법률 제19122호,
2022. 12. 27.)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0조(대통령령 제32863호, 2022. 8. 9.)

한국마사회법(법률 제19121호, 2022. 12. 2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경륜·경정법 제4조, 제19조 및 제24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및 제22조(법률 제19592호, 2023. 8. 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법률 제18773호, 2022. 1. 1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2670호, 2022. 6. 7.)

38. 분야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 승인 · 등록 · 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 · 법무회사(로펌)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 상사연합 ·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에콰도르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에콰도르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에는 종사하지 않는다.

가. 법원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적 문서의 준비

나.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다.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한국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또는 이를 한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라. 한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투명성 목적으로,

가.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 실무에 종사했어야 하며,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나.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해당 대표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외국법 자문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해당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5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한다.

다.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 내에서의 그러한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해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라.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에콰도르의 관련 법에 따라 조직되고 에콰도르 내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에콰도르가 아닌 국가의 법무회사(로펌)의 지점, 현지 사무소,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유형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에콰도르 법무회사**(로펌)란 에콰도르 법에 따라 조직되고 에콰도르 내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39.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공인회계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해야 한다. 그러한 외국공인회계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40.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소유권, 파트너십, 임원 및 이사의 국적, 그리고 제공 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세무사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에서 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외국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해야 한다. 그러한 외국세무사의 사무소는 한국 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41. 분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오직 한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2. 분야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한국 선박의 운영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국 선박을 위하여 유보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간 해상운송을 포함한다. **한국 선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

나. 한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다. 한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라.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가 한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21.2조(필수적 안보)의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43. 분야

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한국은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특수항공 서비스 및 항공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을 제외한 항공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부록 II-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연구 및 개발 서비스: 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 나.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 다. 학제 간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조사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광업 부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포장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 에서 “제한 없음(None)” 으로 수정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가.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 나. 여행 대행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컨벤션 대행 서비스 외의 컨벤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빌딩청소 서비스(CPC 874*, 다만, 87409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환경컨설팅 서비스 (CPC 9409*)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기타 - 게임 서비스(CPC 964**)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그리고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 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부속서 II
에콰도르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8.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8.2조(내국민 대우)

나. 제8.3조(최혜국 대우)

다. 제8.4조(시장접근), 또는

라. 제8.5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8.6조제2항에 따라 유보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바.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8.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요소에 우선한다.

1. 분야

특정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구재 (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에콰도르는 다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보편적 우편 서비스

나. 파이프라인 운송 서비스

다. 송유관, 시설 및 터미널

라. 수의 서비스, 그리고

마.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 서비스

2. 분야 철도운송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¹
	현지주재(제8.5조)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콰도르는 현대의 철도에 의한 운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문화적 및 역사적 유산으로 여겨지는 철도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접근 제한은 부록 II-가에 규정된 철도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3. 분야 소수 및 원주민 집단 사안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콰도르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 집단이나 원주민 집단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4. 분야 선조의 영토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콰도르는 선조의 영토의 재생 가능한 천연 자원의 소유, 이전 및 보전을 규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에콰도르공화국 헌법 제2편(권리) 제2장(좋은 삶의 권리) · 제4장(공동체, 민족 및 국적의 권리), 제6편(개발 체제) 제3장(식량 주권)

5.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에콰도르는 무형 문화유산과 관련된 표현의 지원, 발전, 홍보 및 개발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마찬가지로 에콰도르는 자국의 자연유산에 대한 보호, 보존, 회복 및 홍보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에콰도르의 자연유산은 환경, 과학, 문화 또는 경관의 관점에서 가치를 구현하고 국내 보호구역 제도 및 취약하고 위협받는 생태계를 포함하는 물리적, 생물학적 및 지질학적 형성물의 집합으로 이해된다.

기존의 조치 에콰도르 공화국 헌법 제7편(좋은 생활 체제) 제1장(포용 및 형평성) 제5절(문화), 제2장(생물 다양성 및 천연자원)

6.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콰도르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에콰도르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그리고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7. 분야 사회 및 보건의료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과도르는 다음의 서비스가 공익을 이유로 설립되거나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공법의 집행 및 다음의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사회적 재활, 실업 보험, 사회 보장 서비스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교육 및 공공 훈련, 어린이,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보건 및 돌봄

8.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및 지방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갈라파고스 주에는 특별한 체제의 정부가 있고 그 정부의 계획 및 개발이 에콰도르의 자연유산 보존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조직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에콰도르는 갈라파고스 주의 특별한 체제에 대하여 특히 관광객 운영 허가 부여, 인력 고용, 인프라, 환경 보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고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에콰도르 공화국 헌법

관광업법

갈라파고스 주를 위한 특별 체제 기본법

관광업법에 대한 일반 규정

9.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분야 방송 및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콰도르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 및 양방향 방송
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0. 분야 예술 및 문화 산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콰도르는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과 같은 문화 산업에 대한 어떠한 기존 또는 미래의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 조약에 따라서도 국가들에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 활동의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통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이 협정의 제한이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문화 산업"은 다음의 활동에 관련된 인을 포함한다.

가.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또는 신문을 인쇄물 또는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출판, 유통 또는 판매. 다만, 전술된 것들의 단순 인쇄 또는 조판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나. 공연 예술의 제작 및 발표

다. 시각 예술의 제작 및 전시

라. 인쇄물 또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음악을 출판, 유통 또는 판매

마. 수공업품의 디자인, 제작, 유통 및 판매

바. 일반 대중에 대한 방송 및 라디오, 텔레비전 및
케이블 전송에 대한 모든 활동, 위성 프로그래밍
서비스 및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사. 광고 콘텐츠의 제작 및 디자인

11. 분야 공공 서비스 및 전략 분야²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콰도르는 에콰도르 법에 따라 공공 서비스 또는 전략 분야로 여겨지는 경제 활동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양허, 허가 및 승인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에콰도르는 또한 법적으로 권한을 받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략 분야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과, 그리고 법률로써 설립되거나 행정부에서 부여된 국가 독점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에콰도르 공화국 헌법 제6편(개발 체제) 제5장(전략 분야, 서비스 및 국가 기업)

² 공공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식수 및 관개, 위생, 전기, 도로, 항만 및 공항 인프라를 위한 공공 서비스
전략 분야는 다음으로 여겨진다: 모든 형태의 에너지, 비재생 천연 자원(광업 제외), 탄화수소의 운송 및 정제, 라디오스펙트럼, 물

12. 분야 총포, 탄약, 화약류 및 유사장치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콰도르는 총포, 탄약, 화약류 및 유사 장치의 사용, 판매, 보관, 운송, 수입, 수출 및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탄약, 화약류 및 유사 장치 분야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3. 분야 군함, 전투기 및 그 밖의 유사한 용도의 운송 장비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현지주재(제8.5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콰도르는 군함, 전투기 및 그 밖의 유사한 용도의 운송 장비의 판매, 보관, 운송, 수입 및 수출을 포함하여 군함, 전투기 및 그 밖의 유사한 용도의 운송 장비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4. 분야	수공예 산업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콰도르는 에콰도르 수공예품으로 인정되는 수공예품의 디자인, 유통, 소매 또는 전시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5. 분야 육상 및 하천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8.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콰도르는 이 협정의 발효 후 서명되는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6. 분야	레저,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하위분야	도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8.2조) 최혜국 대우(제8.3조) 시장접근(제8.4조) 현지주재(제8.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에콰도르는 특히 카지노, 베팅장, 게임장과 같은 곳에서의 도박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행정 법령 제873호(카지노와 게임방에서 행해지는 확률 게임에 대한 과도기적 체제의 규제)

17.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8.4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에콰도르는 GATS상 에콰도르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98, GATS/SC/98/Suppl.1, 및 GATS/SC/90/Suppl.2)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에콰도르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에콰도르의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가. “모든 분야” 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에콰도르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 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공급형태 1 및 2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 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 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 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에콰도르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 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해서는, 에콰도르의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에콰도르의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에콰도르의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 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8.6조(비합치 조치)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8.5조(현지주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부록 II-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에콰도르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98, GATS/SC/90/Suppl.1 그리고 GATS/SC/98/Suppl.2)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에콰도르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1.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³	
k. 그 밖의 서비스 종교 서비스(CPC 95910)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a. 컴퓨터 설비 설치 관련된 자문 서비스(CPC 841)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e.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845) 그 밖의 컴퓨터 서비스(CPC 849)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C. 연구 개발 서비스	
a. 자연과학 연구 개발 서비스(CPC 851)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

³ 에콰도르에서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재확인된 학위가 필요하다. 보건 전문가들은 충족해야 하는 특별한 요건들이 있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b.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 개발 서비스(CPC 852)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 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c. 학제간 연구 개발 서비스(CPC 853)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 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D. 부동산 서비스	
a. 소유 또는 임대 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서비스(CPC 821)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 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a. 구매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운영자가 없는 개인 차량에 대한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CPC 83101)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 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b. 구매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운영자가 없는 선박에 대한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CPC 83103)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 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구매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운 영자가 없는 농기계 및 장비에 대한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CPC 83106)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 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구매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텔 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카세트 녹음 기 및 관련 장비와 부속품에 대한 리 스 또는 임대 서비스(CPC 83201)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 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F. 기타 사업 서비스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CPC 864)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 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d. 경영 컨설팅 서비스(CPC 866)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 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f. 농업, 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 농업 부수 서비스(CPC 8811인 농 업 관련 전문직서비스로 한정한다) - 축산업 부수 서비스(CPC 8812인 축산업 관련 전문직 서비스로 한정한 다) - 임업 및 벌목 부수 서비스(CPC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 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8814)	
n. 장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운송 장비 제외) -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수수료나 계약 기초의 기계 및 장비의 수리 서비스(CPC 8862) - 수수료나 계약 기초의 의료, 정밀 및 광학 기기, 시계 수리 서비스(CPC 8866)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o. 빌딩 청소 서비스(CPC 874)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p. 사진 서비스 - 사진 처리 서비스(CPC 87505) -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과 관련 없는 영화 처리 서비스(CPC 87506)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q. 포장 서비스(CPC 876)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s. 집회 또는 국제회의 시 제공되는 서비스(CPC 87909*)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t. 기타 - 전문디자인 서비스(CPC 87907)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CPC 86725)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복사 및 유사 서비스(CPC 87904)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세탁물 수거 서비스(CPC 97011)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D. 시청각 서비스	
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CPC 9611), (CPC 96111은 제외)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e. 녹음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A. 빌딩의 일반 건설 공사(CPC512): 1가구 및 2가구 거주 빌딩, 다가구 거주 빌딩 및 교육용 빌딩의 건설 공사(CPC 5121, 5122 및 5127)는 제외한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B. 토목 공사를 위한 일반 건설 공사(CPC 513)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C. 설치 및 조립 작업(CPC 514 +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

516)	(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E. 기타(CPC 511 + 515 + 518)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4. 유통 서비스	
A. 위탁 중개인 서비스(CPC 621) B. 도매 서비스(CPC 622) C. 소매 서비스(CPC 631 + 632 + 6111 + 6113 + 6121) D. 프랜차이즈(CPC 8929)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5. 교육 서비스	
D. 성인 교육 서비스(CPC 924)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시청각 서비스는 제외)	
D. 스포츠 및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CPC 964) (베팅, 도박은 제외한다) 온라인게임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11. 운송 서비스	
E. 철도 운송 서비스	
여객 및 화물 운송(CPC 7111 +	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7112)	", 서비스 공급형태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e.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CPC 743)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d. 기타(CPC 749)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12. 기타 서비스	
- 신발 및 가죽 제품 수선 서비스(CPC 63301) -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CPC 63302) - 시계 및 보석 수리 서비스(CPC 63303) - 시계 및 보석 전문 수리 서비스(CPC 63303) - 헬멧 수리 및 세탁 서비스(CPC 63304) - 자전거 수리 서비스(CPC 63309) - 자물쇠업(CPC 63309)	서비스 공급형태 1 및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9.1조 일반 원칙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특혜 무역 관계, 양 당사국의 법률 및 부속서 9-가의 규정에 따라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고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 희망, 그리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며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민권, 국적,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이 자국 영역으로 입국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4.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게 출입국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9.2조 일반 의무

각 당사국은 제9.1조에 따라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협정에 따른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신속하게 적용한다.

제9.3조

일시 입국의 허용

1. 양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대하여 약속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과 그 약속을 규율하는 조건은 부속서 9-가에 기재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기업인이 다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항에 따른 약속에 규정된 범위에서 그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

가. 관련 출입국 절차를 위한 허용 당사국의 규정된 신청 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나.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 연장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 및 공중 보건과 안전 및 국가안보 관련 조치와 같은 그 밖의 관련 조치를 충족할 것

3.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부과하는 수수료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협정에 따른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지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도록 보장한다.

4.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인이 전문직을 수행하거나 달리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면허 또는 의무적 행동 규범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제9.4조

투명성

1. 제19.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숙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법 및 규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요건에 대하여 통합 문서로 설명자료를 준비, 공표하고 자국 영역과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출입국 조치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할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표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제19.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3.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그 당사국은 그 신청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9.5조

작업반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장에 관련된 사안을 고려하고 검토하도록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기업인의 일시 입국 작업반(이하 “작업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작업반은 필요한 경우, 이 장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 나.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절차의 수립
- 다.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
- 라. 이 장에 관한 상호 관심이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치, 그리고
- 마. 공동위원회가 결정한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문제

제9.6조

협력

제9.1조에 규정된 원칙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 가.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출입국 당국 간 기술적 지원을 촉진하는 데 협력할 것, 그리고
- 나. 생체인식기술이용, 승객선진정보시스템, 여행서류 보안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출입국 사안의 맥락에서 프로그램과 기술 규정 및 이행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할 것.

제9.7조

분쟁해결

1.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제20장(분쟁해결)이 그 문제에

적용된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영향을 받은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를 완료했을 경우

4. 권한 있는 당국이 행정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부터 1년 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제3항나호에 언급된 구제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9.8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장, 그리고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 제19장(투명성), 제20장(분쟁해결), 제21장(예외) 및 제23장(최종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다른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하여 의무나 약속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9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이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출입국 절차란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사증, 허가, 승인이나 그 밖의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를 말한다.

출입국 조치란 외국 국민의 입국과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말한다. 그리고

일시 입국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구적 거주 의도 없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절
상용 방문자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 부록 9-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하려는 기업인에게 취업 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부록 9-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한 문서, 그리고

다. 제안된 상용 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

2. 각 당사국은 기업인이 다음을 입증함으로써 제1항다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규정한다.

가. 제안된 상용 활동의 주된 수입원이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 기업인의 주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나호에 언급된 사안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증명은 합리적이고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

3. 어떠한 당사국도

- 가.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또는
- 나.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된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2절 무역업자 및 투자자

1. 각 당사국은 감독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을 하려는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 가. 주로 해당 기업인이 국민인 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사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는 것, 또는
- 나. 해당 기업인 또는 그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금액의 자본 투자를 약정했거나, 약정하는 과정에 있는 투자를 설립, 개발, 운영하거나 투자의 운용에 자문이나 핵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 가.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또는
- 나.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된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3절 기업 내 전근자

1. 각 당사국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는 기업 내 전근자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2. **기업 내 전근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일시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인을 말한다.

가.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서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그 회사의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실제 서비스의 공급이나 조직의 서비스와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나.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 및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수행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이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전문가**란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수준의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또는

나.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된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4절

계약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부록 9-가-3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 서비스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인에게는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그렇게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한 문서, 그리고

다.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 요건 또는 대체 자격인증서의 취득을 입증하는 문서

2. 계약 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전문적 지식의 이론적 및 실질적 적용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직업에 종사하는 인

나. 각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전문적 자격과 전문적 자격을 갖춘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한 인

다. 다른 쪽 당사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않으며,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서비스 계약을 취득한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인. 그 계약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라. 승인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법인의 피고용인이었던 인, 그리고

마. 다른 쪽 당사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도록 요구되는

인

3. 각 당사국은 계약 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지니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부록 9-가-1

상용 방문자

다음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한쪽 당사국의 기업인

회의 및 협의

회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기업관계자와의 협의에 참여하는 한쪽 당사국의 기업인

연구 및 설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한쪽 당사국의 기술, 과학 및 통계 연구원

성장, 제조 및 생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상업적 거래를 수행하는 한쪽 당사국의 구매 및 생산관리 인력

마케팅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연구 또는 분석을 수행하는 한쪽 당사국의 마케팅 연구원 및 분석가

무역 컨벤션에 참석하는 당사국의 무역박람회 및 홍보 인력

판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상품을 배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을 받거나 계약을 협상하는 한쪽 당사국의 판매 담당자 및 대리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구매를 행하는 한쪽 당사국의 구매자

유통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의 원활화와 관련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통관
중개인

판매 후 서비스

일시입국을 하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당사국 영역 밖에 위치한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상업용 또는 산업용 장비 또는 기계의 판매에 부수되는 보증 또는 그 밖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에 필수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보증 또는 서비스
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근로자를 교육하는 당사국의
설치자, 수리 및 유지보수 담당자 및 감독자

일반 서비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한 상업적 거래에 종사하는 한쪽 당사국의 관리
및 감독 인력

기업관계자와 협의하거나 컨벤션에 참석 또는 참여하는 당사국의 홍보 및 광고 인력

컨벤션에 참석 또는 참여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작된 여행을 인솔하는 한쪽
당사국의 관광업 인력(관광 및 여행사 대행인, 관광가이드 또는 여행업자)

요리 행사나 박람회에 참석 또는 참여하거나 기업관계자와 협의하는 당사국의 조리사 인력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한쪽 당사국의
번역가 또는 통역가

회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기업관계자와의 협의에 참여하는 당사국의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제공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한쪽 당사국의 가맹점 거래자 및 개발업자

부록 9-가-2 체류기간

한국의 경우,

1. 부속서 9-가의 제1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상용 방문자에게는 90일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2. 부속서 9-가의 제2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무역업자 및 투자자에게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3. 부속서 9-가의 제3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기업 내 전근자에게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4. 부속서 9-가의 제4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계약서비스 공급자에게는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5.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려는 에콰도르의 기업인은 권한 있는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으로 등록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1. 부속서 9-가의 제1절에 따라 에콰도르에 입국하는 상용 방문자에게는 180일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고, 발급일부터 1년마다 한 번만 허용될 수 있다.
2. 부속서 9-가의 제2절에 따라 에콰도르에 입국하는 무역업자 및 투자자에게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3. 부속서 9-가의 제3절에 따라 에콰도르에 입국하는 기업 내 전근자에게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4. 부속서 9-가의 제4절에 따라 에콰도르에 입국하는 계약서비스 공급자에게는 12개월의 기간 중 6개월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5. 90일을 초과하여 에콰도르에 체류하려는 한국의 기업인은 권한 있는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으로 등록한다.

부록 9-가-3
계약 서비스 공급자¹

1	통신기기 기술자 및 연구원
2	통신장비 기술자 및 연구원
3	통신기술 기술자 및 연구원
4	통신망운영 기술자 및 연구원
5	정보통신 컨설턴트
6	웹엔지니어 및 웹프로그래머
7	석유화학 기술자 및 연구원
8	고무 및 플라스틱 기술자 및 연구원
9	농약 및 비료 기술자 및 연구원
10	도료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11	금속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2	세라믹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	시멘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4	발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15	송전·배전 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16	전기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17	전기안전 기술자 및 연구원
18	전자제품개발 전문가
19	반도체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0	전자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21	전자의료기기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22	금형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	플랜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	냉·난방 및 공조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	건설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¹ 공인회계사, 건축가 및 변호사에 대하여, 한국의 공인회계사 시험, 국가건축사자격시험 그리고 국가변호사시험은 한국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하려는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에콰도르 국민에게도 응시가 허용된다.

26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7	조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8	비행기·철도차량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9	섬유소재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30	섬유공정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31	염색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32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33	건축시공 기술자
34	토목시공 기술자
35	생물학자(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36	생화학자(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37	환경 컨설턴트
38	가스·에너지 산업에 국한된 광업 기술자 및 연구원
39	가스·에너지 산업에 국한된 지질학 기술자 및 연구원
40	법률 자문을 제외한 일반 관리 컨설턴트, 재무 관리 컨설턴트, 마케팅 관리 컨설턴트, 생산 관리 컨설턴트
41	컴퓨터 하드웨어 전문가
42	컴퓨터시스템 감리 전문가
43	컴퓨터시스템 설계·분석가
44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45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46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47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48	데이터베이스 설계·분석가
49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50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5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52	컴퓨터 보안 전문가
53	웹 기획자
54	멀티미디어 기획자
55	웹마스터

56	화장품 및 비누제품 전문가
57	전기제품 개발 전문가
58	전기감리 기술자 및 연구원
59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60	번역가 및 통역가
61	컴퓨터 이용 기계 디자이너, 컴퓨터 이용 전기 및 전자 장비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직물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액세서리 디자이너,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62	시각 디자이너 및 삽화가
63	인테리어 디자이너
64	조리사
65	호텔 및 관광 업체 관리자
66	마케팅 및 광고 전문가

부록 9-가-4
주요 출입국 조치

한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사증 발급 등에 관한 지침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한 것

에콰도르에 대하여,

이주기본법 및 이주법에 대한 규정, 또는 이를 수정한 것

제10장 금융서비스

제10.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는 그 장이나 양해, 또는 그 장의 조항들이나 그 양해의 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제1항에 기술된 조치에 적용된다.

가.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포함된 송금 및 혜택의 부인에 대한 항들 및 제8.11조(혜택의 부인)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나. 제8.10조(지불 및 송금)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0.5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 또는 모든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2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¹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10.5조제1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의 목적상,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10.3조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2조 또는 제10.3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에서 부여되는 대우인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투자자들, 투자들, 금융기관들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들 간을 구별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 상황에 달려있다.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10.4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²,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² 가호3목은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10.5조

국경 간 무역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0-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의무는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영업 또는 구매권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당사국에 요구하지 않는다.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의는 제1항과 불합치하지 않아야 한다.
3. 당사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6조

신금융서비스³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0.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³ 제10.6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않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인가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6조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10.7조

특정 정보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 나. 공개되면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제10.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국적자를 고위 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이 자국의 국민, 자국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10.9조

비합치 조치

1.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 그리고 제10.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그 당사국이 부속서 III에 규정된 자국의 유보목록 제1절에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⁴이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또는 제10.8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⁴

2.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 그리고 제10.8조는 당사국이 부속서 III에 규정된 자국의 유보목록 제2절에 기재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제8.2조(내국민 대우), 제8.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8.4조(시장접근)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속서 I 또는 II에 규정된 당사국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는, 그 유보항목에 규정된 조치,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각 경우에 맞게, 제10.2조, 제10.3조 또는 제10.4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제10.10조

예외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5조는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⁴이 제10.5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는 한도에서만 그 개정⁴에 적용된다.

1.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이 장의 다른 규정이나 제11장(통신) 또는 제12장(디지털 무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⁵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2. 이 장이나 제11장(통신) 또는 제12장(디지털 무역)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은 제8.10조(지불 및 송금) 또는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포함된 항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8.10조(지불 및 송금) 및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포함된 송금에 대한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기관이나 공급자의 계열사 또는 그 기관이나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않는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동종의 여건 하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⁵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0.11조
투명성 및 특정 조치의 운영

1.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과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제19.1조제2항을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자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접수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6 7}

4.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한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규제기구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가능하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통합하여 최종 규정을 제시하는 문서와 별도의 문서로 그 답변을 공표할 수 있다.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을 양해한다.

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거나 유지한다.

7.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8.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9.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120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제10.12조

자율규제기구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10.2조 및 제10.3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10.13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제10.14조
인정

1.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서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또는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3.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고 제2항에 기술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10.15조

구체적 약속

부속서 10-나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10.16조

금융서비스위원회

1. 제22.3조(위원회 및 작업반)에 따라 설치된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부속서 10-다에 규정된 대로,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참여를 저해함이 없이,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양 당사국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위원회에 회부한 금융서비스 관련 문제를 검토한다.

다. 국가 감독 당국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건전성 규제에 대한 자문 관련 사안에서 협력한다. 그리고

라. 이 협정상의 공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제10.17조

협의

1.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을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10-다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금융당국 간 정보 공유와 관련된 자국의 법 또는 양 당사국의 금융당국 간 협정 또는 약정의 요건으로부터 이탈하도록 당사국에 요구하거나, 특정 규제, 감독, 행정 또는 집행 사안에 방해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제당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18조

분쟁해결

1. 제20장(분쟁해결)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20.7조(중재패널의 설치)가 적용된다.
 -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 나. 그 밖의 경우,
 - 1)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20.9조제5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 2) 피소 당사국이 제10.10조를 원용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3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진다. 그리고

나. 제20.9조제5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4. 제20.14조(불합치의 경우 보상 및 혜택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쟁 중인 그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만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또는

다.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없다.

제10.19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인에 대한,
또는

다.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
을 말한다.

그러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인이 지배하는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 포함)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사. 금융리스

아.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및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1)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포함)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4)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그리고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타. 자금중개업
-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 하.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정의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항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이 규제 자본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 나. 가호에 언급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외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이다.

당사국의 투자자란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정의된 “당사국의 투자자”를 말한다.

신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 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 기업의 지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을 말하며,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란 유가증권 또는 금융파생상품 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

부속서 10-가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한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19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⁸, 위험평가⁹,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제10.19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인과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2. 제10.5조제1항은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제10.19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⁸ 상담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제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⁹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3.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¹⁰의 제공 및 이전

나. 제10.19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¹¹,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10.19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¹². 이 약속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증권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하여는, 한국이 자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서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이 약속은 (1) 한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2) 한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¹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가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¹¹ 한국의 약속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 보호, 민감 정보의 권한 없는 재사용 금지, 그러한 정보의 처리에 관한 금융기관의 기록에 대한 금융규제당국의 접근 권한, 그리고 기술 시설의 위치 요건과 같은 특정한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¹²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자문을 포함하지만 포트폴리오 운용에 관한 그 밖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고, 부수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언급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에콰도르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19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국제 해상 운송, 국제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 포함).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감독당국이 서비스에 자격을 부여하는 한, 가호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 그리고

라. 가호 및 나호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중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2.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19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감독당국의 사전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조건으로, 제10.19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나. 중개 및 신용조회와 분석을 제외한, 제10.19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부속서 10-나

구체적 약속

제1절

감독 협력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 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권한 있는 당국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금융당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금융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금융당국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 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2절

정보의 이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 가. 개인 정보와 개인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기록 및 계정의 비밀성을 보호하는 조치, 또는
- 나. 건전성 고려에 근거하여, 특정 기업을 그러한 정보의 수신인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당국으로부터 사전 인가를 획득하도록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조치

다만, 이 권리는 이 절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제3절

정부지원정책 이행기관

양 당사국은 정부지원정책 이행기관이 이 장의 목적상 금융서비스 공급자로 여겨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부속서 10-다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에콰도르의 경우, 금융정책규제위원회 및 생산통상투자수산부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

이 협정에서 투자에 관한 다음의 정의 및 의무의 필요성에 대하여,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에콰도르 대표단 간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1장(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및 제10장(금융서비스)의 목적상,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기업
- 나. 주식, 증권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 다. 채권, 회사채 및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¹³
- 라. 선물, 옵션 및 그 밖의 파생상품
-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및 그 밖의 유사한 계약
- 바. 지식재산권
- 사. 면허, 인가, 허가 및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14 15}, 그리고
-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¹³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지닐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지닐 가능성이 보다 낮다.

¹⁴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한도에서, 양여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 및 범위와 같은 요소에 달려 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의 내용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를 저해하지 않는다.

¹⁵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 행위 또는 행정 행위에 들어 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않는다.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¹⁶

투자는 다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 공적부채 운영¹⁷, 또는

나. 투자의 특징을 지닌 대부가 아닌 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¹⁸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제10장(금융서비스)의 목적상,

송금¹⁹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¹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부채 운영은 비차별적인 대우의 적용을 받는다.

¹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투자자" 및 "당사국의 투자자"의 정의의 목적상, 투자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자원 또는 자본을 이전하거나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는 것과 같이, 투자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나 행위들을 한 경우, 투자를 "하고자 시도"하는 투자자로 양해한다.

¹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8-가(송금)는 이 항에 적용된다.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다. 이자,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의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혜택의 부인

1.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이를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 대한 한국의 유보목록

한국의 유보목록을 위한 서설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1목부터 5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0.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않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
 - 1) 제10.2조(내국민 대우)
 - 2) 제10.3조(최혜국 대우)
 - 3)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0.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0.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0.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한국이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0.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0.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제10.9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나호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10.9조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이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다호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0.9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10.9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이 부속서 10-나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부록 III-1은 양 당사국이 제10.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거나 제10.1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특정 조치를 기재한다.

7. 제8.2조(내국민 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II상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10-가에 명시된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제10.5조제1항의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두 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¹
3.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한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에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해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4. 한국은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10.9조제1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10.9조제1항다호는 제10.4조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10.4조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²

¹ 예를 들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기 제4항에 명시된 제10.9조제1항다호의 적용상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10.3조(최혜국 대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보험업법 제91조 및 제100조(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대통령령 제33604호, 2023. 6. 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유보내용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2인 이하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은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의 수,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은행 판매비율,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그리고 대출의 대가로 보험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 관행과 같은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함을 밝힌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0.5조)
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9055호, 2022. 11. 1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8269호, 2021. 6.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8818호, 2022. 2. 3.)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8814호, 2022. 2. 3.) 선원법(법률 제19415호, 2023. 5.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 8. 8.) 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 제18683호, 2022. 1. 4.)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17894호, 2021. 1. 12.)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7051호, 2020. 2. 18.) 항공사업법(법률 제18565호, 2021. 12. 7.) 도로교통법(법률 제19158호, 2023. 1.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08호, 2022. 6.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원자력 손해배상법(법률 제18143호, 2021. 4. 20.)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8945호, 2022. 6. 1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9453호, 2023. 6. 13.)

낙시 관리 및 육성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전자서명법(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변호사법(법률 제17828호, 2021. 1.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0호, 2020. 6.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13호, 2019. 4. 30.)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9423호, 2023. 6. 1.)
공인회계사법(법률 제18114호, 2021. 4. 20.)
관광진흥법(법률 제19592호, 2023. 8. 8.)
케도운송법(법률 제18185호, 2021. 5. 18.)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47호, 2023. 6.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1, 2023. 7. 1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09호, 2022. 1. 21.)
세무사법(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17344호, 2020. 6.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2022. 6. 10.)
우주손해배상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입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03호, 2012. 2. 1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54호, 2023. 1.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7호, 2023. 1. 17.)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해운법(법률 제19415호, 2023. 5. 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157호, 2023. 1. 3.)

유보내용

한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0-가에 기재되지 않은 “강제적인”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어떠한 그러한 서비스도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은행법 제15조 및 제16조의2(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및 제8조의2(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별표(대통령령 제33604호, 2023. 6. 2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별표(법률 제17294호, 2020. 5. 19.)
유보내용	1.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³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2. 투명성을 목적으로, 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기술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에 대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³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등급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나. 자연인은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외의 기업체는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기업체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의 비율을 10퍼센트까지로 증가시킬 수 있다.

라. 다호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외의 기업체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지분의 3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은행법 제58조(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10(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의4, 제11조 및 별표(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7호, 2023. 7. 5.)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한국에서의 각 지점의 설치에 개별 인가를 요구한다.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그러한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73조, 제379조 및 제386조(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유보내용	한국거래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그 밖의 대체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 또는 파생상품 시장을 운용할 수 있다.

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및 제294조부터 제323조까지(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유보내용	한국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결제기관으로서 또는 한국의 예탁자 계정 간의 그러한 증권의 이전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 제323조의3, 제323조의10 및 제378조(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유보내용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만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중앙청산기구만이 증권 및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서비스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0.5조)
조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대통령령 제33542호, 2023. 6. 13.)
유보내용	일반투자자(일부 전문투자자⁴ 포함)가 외화로 표시된 증권 및 외국 증권시장 또는 외국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 한국에서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해야 한다.

⁴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26호, 2023. 7. 4.)의 기관투자자는 제외한다.

9.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은행법 제62조 및 제63조(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은행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5조(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대통령령 제33542호, 2023. 6. 13.)
유보내용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한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한국 내로 가지고 와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국내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액 또는 대출될 대부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은행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그 은행 또는 금융투자업자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여겨진다.

10.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신용협동조합법 제7조(법률 제18714호, 2022. 1. 4.)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법률 제19564호, 2023. 7.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법률 제19260호, 2023. 3.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외국환거래법 제9조(법률 제18244호, 2021. 6.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 제258조, 제263조 및 제355조(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유보내용	다음 유형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다. 가. 신용협동조합 나. 상호저축은행 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라.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마. 신용정보회사 바. 일반펀드사무관리회사 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아. 채권평가회사

1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법률 제17354호, 2020. 6. 9.)
유보내용	한국에서 일정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다.

1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18682호, 2022. 1. 4.) 중소기업은행법(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18574호, 2021. 12. 7.)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085호, 2022. 12. 13.)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135호, 2022. 12. 27.)
유보내용	한국은 가. 다음의 금융기관(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3) 한국주택금융공사 4) 농협은행, 그리고 5) 수산업협동조합 나.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

- 1)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2)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 기관보다 자본 대비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 3)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 4)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특정조세의 면제

1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외국환거래법 제9조(법률 제18244호, 2021. 6. 15.)
유보내용	한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 간 중개업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의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된다.

제2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0.5조)
조치	없음
유보내용	한국은 한국 내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0-가에 기재되지 않은 “강제적인” 제3자 보험 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를 결정할 때, 외국 영역에서 그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공급된 어떠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 서비스도 고려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없음
유보내용	한국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소유 또는 정부지배 기관들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그 기관들의 의무 및 책임의 계속적 보증 또는 한시적 추가 보증을 포함하여, 그 기관들의 정부 보증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유보내용	한국은 외국 투자자의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소유권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한국은 (1) 공모 시점에 외국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2) 공모 이후,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동종의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기관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에콰도르 금융기관의 접근을 확실히 하도록 보장한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국경 간 무역(제10.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8조)
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18574호, 2021. 12. 7.) 주택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유보내용	한국은 주택청약저축계정과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부록 III-1

제10.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거나 제10.1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조치

다음의 조치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는다. 다음의 조치 또는 관련 법의 수정, 개정 또는 변경은 원래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10.4조와 불합치한다고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 (1) 한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관련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 영위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 (2) 한국의 거주자가 외국의 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원화로 지급을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및 제7-8조부터 제7-10조까지)
- (3) 한국 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된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 (4) 순매각 포지션의 합계 또는 순매입 포지션의 합계 중 더 큰 값에 의하여(약식방법) 계산되는 외국환은행의 종합순노출 포지션은 전월말 총 자기자본의 50퍼센트로 제한된다. (「외국환거래법」 제11조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 (5) 유가증권 신용공여는 신용한도금액과 수익의 운용에 대한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유가증권의 매도와 매입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6) 개별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대여액은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 (7) 한국에 설립된 은행,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 영위할 수 있다.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8) 금융기관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은행법」 제38조, 「보험업법」 제105조)
- (9) 한국의 비거주자는 한국에서의 실제적인 이용만을 위하여 외화를 한국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부터 제7-10조까지, 및 제7-36조부터 제7-39조까지)
- (10) 한국은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 그 밖의 이자율, 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 (「은행법」 제30조,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

다음의 조치는 제10.10조제1항에 해당되고, 따라서 제10.2조(내국민 대우)는 한국이 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음 조치 또는 관련 법의 수정, 개정 또는 변경 또한 제10.10조제1항의 범위 내에 해당될 것이다.

- (1) 외국보험사 지점의 영업기금은 자본금으로 여겨질 것이며, 본점의 자본금은 그러한 지점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액 또는 대출하려고 하는 대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보험업법」 제9조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 (2) 외국보험사의 한국 내 지점은 한국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총계에 상당하는 자산을 한국 영역 내에

보유야 한다. (「보험업법」 제75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5조의2)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 대한 에콰도르의 유보목록

에콰도르의 유보목록을 위한 서설

1. 이 부속서의 에콰도르의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1목부터 5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에콰도르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0.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않는 에콰도르의 기존의 조치
 - 1) 제10.2조(내국민 대우)
 - 2) 제10.3조(최혜국 대우)
 - 3)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0.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0.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0.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에콰도르가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0.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0.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제10.9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나호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10.9조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다호에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바.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의 비한정적 목록을 적시한다.

4. 제1절의 비합치 조치의 해석에서,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비합치 조치는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5. 제2절의 비합치 조치의 해석에서,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6. 부록 III-1은 양 당사국이 제10.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거나 제10.1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특정 조치를 기재한다.

7. 에콰도르의 경우, 유한회사는 회사법 제5절 “유한회사(De la Compañía de Responsabilidad Limitada)”에 따라 구성된 실체를 지칭하고 주식회사는 회사법 제6절 “주식회사(Compañía Anónima)”에 따라 구성된 실체를 지칭한다.

두 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에콰도르의 약속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에콰도르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법적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3. 제10.9조제1항다호는 법적형태의 특정 유형에 대하여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관련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증권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중앙증권예탁소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1권 제60조 통화, 금융, 증권 및 보험 결의 법전 제2권 주식시장 제11편(가치의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중앙예탁소) 제1절(설립 및 운영허가)
유보내용	증권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중앙증권예탁소에 대한 주식회사에서, 각 주주는 수권자본금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이 비율을 초과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와 법적으로 인가받은 국가의 공공 분야 기관은 예외로 한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1권 제14.1.f조 · 제162조 · 제179조 · 제194조, 제2권
유보내용	금융활동을 수행하거나 대표사무소를 구성하기 위하여 에콰도르 내에 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금융기관은 국가 통제 기구로부터 사전인가를 획득해야 한다. 지점은 에콰도르 내에 사전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는 자신의 고객을 위한 정보센터의 역할만을 수행할 것이다. 외국금융기관의 대표사무소는 에콰도르 내에서 해외에 예치할 기금 또는 예치금을 모집하거나, 에콰도르 내에서 해외에서 발행된 증권을 모집 또는 투자할 수 없다.¹ 증권 시장 기관에서 지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정책규제위원회는 금융, 증권 및 보험 분야에서 새로운 기관의 구성을 위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할 권한을 갖는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외국금융기관은 은행 그리고 제10.19조(정의)의 마호부터 카호까지에 열거된 활동을 수행하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서비스기관을 지칭한다.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1권 제389조·제428조·제434조, 제2권 제44조·제56조·제97조·제98조·제176조, 제3권 제2조·제3조·제4조·제5조
유보내용	민간금융기관² 및 금융서비스기관³은 주식회사로 은행감독원에 설립되고 부수서비스기관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설립된다. 주식회사의 법적 형태에 대한 동일한 규정이 보험 및 재보험 회사, 보험중개회사, 증권거래소, 중개회사, 펀드 관리자 및 신탁사, 증권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중앙증권예탁소와 위험평가회사에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그리고 은행감독국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 분야의 기관이 자본을 소유하는 부수서비스회사는 국가 금융 시스템 외부에 있는 다른 형태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간금융기관은 은행을 포함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기관은 예금 보관소, 외환거래소 및 주택담보대출유통시장개발회사를 포함한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신용조회서비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국경 간 무역(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1권 제357조 신용데이터등록서비스 및 신용정보기관 결의 제485-2018-F호(관보 제408호, 2019. 1. 17.)
유보내용	신용조회서비스는 은행감독원 그리고 에콰도르 내에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구성된 법적 기관에 의하여 제공될 것이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유일한 목적이 신용조회서비스의 제공인 회사는 이 인가를 취득할 수 있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최혜국 대우(제10.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국경 간 무역(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1권 제237조, 제2권 제176조 통화, 금융, 증권 및 보험 결의 법전 제2권(주식시장) 제16편(위험평가) 제2장(위험평가) 제2절(기준 및 범위) 그리고 제4편(주식시장의 공공 등록소 등록을 위한 총칙) 제2장(민간분야 발행자) 제2절(주식시장의 공공 등록소 등록의 유지 및 지속적인 정보의 전송) 회사, 증권 및 보험 감독원 결의 제SCVS-INS-2016-002호
유보내용	위험평가는 국내법인 또는 외국 위험평가회사, 또는 서로 제휴하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구성되어, 경험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명성을 갖추고 통제기구로부터 적절하다고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외국 위험평가기관 또는 국내 보험 및 재보험 회사와의 제휴기관은 국제적으로 최소 3개국에서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 평가에 중요하게 참여하였음을 등록하고, 모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평가를 받

있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의 위험평가는 “위험평가기관 명부”에 등록된 법인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에콰도르 증권시장에서 해외 발행 증권의 2차 공모 시, NRSRO(국가 공인신용평가기관)과 같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위험평가기관이 그러한 발행에 대해서 한 위험평가는 수용될 것이다.

에콰도르 증권시장에서 최초 공모를 하는 현지 발행자로 인정되는 다자간 발행자의 경우, 동일한 규범이 적용될 것이다.

외국 발행자의 증권이 등록되고 거래되는 에콰도르 증권거래소는 주식 발행 국가의 거래소, 또는 그 외국 발행자의 증권이 등록된 국제적인 명성을 갖춘 증권거래소나 기관과의 협정에 서명할 의무가 있다.

6. 분야	보험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3권 제17조
유보내용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수석 이사 또는 대리 이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보험체계를 구성하는 것의 이사회 구성원, 관리자,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7. 분야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⁴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국경 간 무역(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3권 제66조
유보내용	에콰도르 영역 내에서, 국가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되지 않은 보험회사와 다음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가. 피보험자가 계약이 체결될 당시 에콰도르에 있는 경우, 개인보험 나. 국가 영역 내 소재한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 및 추가적인 위험 보험 다. 에콰도르에 등록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선체/기체 보험 라. 국가 내로 수입되는 제품 또는 상품의 운송에 대한 보험 마. 에콰도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민사책임보험, 그리고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0-가와 이 유보항목에 규정된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부속서 10-가가 우선해야 할 것이다.

바. 에콰도르 영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그 밖의 보험. 에콰도르 영역 내 비거주자가 입원 시 위험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들의 인 또는 차량에 대하여 그 영역 밖에서 계약하는 보험은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 내에서 영업하도록 인가된 보험회사가 특정 위험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회사증권보험감독원의 사전인가를 받은 이해당사자는 해외에서 그러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증권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2권 제46조
유보내용	증권거래소의 주주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거래소의 기발행 주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축적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그 리고 지역 통합의 증진과 에콰도르 주식시장, 증권거래소 또는 규제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회사증권보험감독원으로부터 그러한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퍼센트까지 이 참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9.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펀드 및 신탁 관리자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국경 간 무역(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2권 제77조
유보내용	에콰도르 거주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는 국가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펀드 매니저 회사를 통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상 펀드와 펀드 매니저 회사는 수탁 책임을 갖고 각각의 대표 계약에 서명해야 하고 회사증권보험감독원의 정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에콰도르에서 구성된 펀드와 신탁 관리자만이 국제 펀드를 관리 또는 대표하도록 인가된 기관이 될 것이다.

10.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투자은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2권 제59조 이후 번호가 매겨지지 않은 첫 번째 조
유보내용	중개회사(casas de valores)와 에콰도르사회보장기관은행만이 투자은행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은행 활동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투자 및 금융 옵션을 찾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제2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에콰도르는 다음의 하나 이상의 공공금융기관에 혜택 또는 배타적 권리를 제한없이 부여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서민연대금융공사(Corporación Nacional de Finanzas Populares y Solidarias) 또는 그 승계기관
- 나. 국립금융공사(Corporación Financiera Nacional B.P) 또는 그 승계기관
- 다. 에콰도르사회보장기관은행(Banco del Instituto Ecuatoriano de Seguridad Social) 또는 그 승계기관
- 라. 에콰도르개발은행(Banco de Desarrollo del Ecuador B.P)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마. 뱅에콰도르(BANECUADOR B.P) 또는 그 승계기관

기존의 조치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1권 제386조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에콰도르는 다음과 같은 서민연대 금융분야 기관의 모사무소 또는 운영사무소 개소에 제한을 설정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 저축 및 신용협동조합, 연합단체 또는 연대단체, 공동 은행 및 펀드, 저축 펀드 및 출신국가에서 고려되고 이 분야에 해당하는 그 밖의 법적 형태 또는 명칭

서민연대금융 분야와 초소형 · 소형 · 중형 생산 단위의 서비스 계획은 그러한 것들이 서민연대경제 발전을 증진하는 한도에서 국가로부터 차등대우 및 특혜대우를 받을 것이다.

기존의 조치 에콰도르 공화국 헌법[관보 제449호(2008. 10. 20.) 제311조

통화 및 금융 기본법[관보 제332호, 2014. 9. 12.(최신 개정 2022. 12. 22.)] 제1권 제160조 · 제163조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0.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8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기존의 국영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자본이나 자산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처분 시, 에콰도르는 자본 또는 자산에 대한 그러한 지분의 소유권과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또는 결과적으로 국영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그들의 투자의 권리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한을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이전 또는 처분에 대하여, 에콰도르는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매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처분 시 지분 또는 자산에 대한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부과하거나 이 유보에서 기술된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유지되거나 채택되는 소유권에 대한 규정은 시행 중인 조치로 간주된다.

나. 국영기업이란 에콰도르 또는 합작회사가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통하여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공기업을 말하고, 국영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의 목적으로

만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설립된 기업을 포함한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및 재보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국경 간 무역(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에콰도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보험 및 재보험 회사, 중개업자 및 보험 부수 서비스 제공자는 에콰도르 법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등록하고 자신의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에콰도르는 국가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소유한 보험 또는 재보험 회사에 공공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할당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외국 보험 및 재보험 회사, 그리고 외국 보험 및 재보험 회사의 중개업자는 대표사무소를 개소할 수 없다.

부록 III-1

제10.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거나 제10.10조(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

다음의 조치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않는다. 다음의 조치 또는 관련 법의 어떠한 수정, 개정 또는 변경도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한다고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 (1) 민간금융체계 내의 기관과 그 기관의 이사는 에콰도르 시장에 존재하거나 활동하는, 금융 분야 밖의 사업체 또는 상업회사의 주식 및 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는 개별적으로 또는 경제, 기업 및/또는 가족사업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합산하여 금융기관 주식 자본의 2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고, 금융 분야 밖의 사업체 또는 상업회사의 주식 및 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10조(예외)에 따라, 에콰도르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에콰도르가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

제10.10조(예외)를 저해함이 없이, 에콰도르가 한국의 부록 III-가에 규정된 조치와 동등하거나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자국의 법령에서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도 제10.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 또는 관련 법령의 어떠한 수정, 개정 또는 변경도 원래의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10.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1장 통신

제11.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을 포함하여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 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그리고
 - 라. 부가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2. 방송국 또는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제1절에 따라 공중 통신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거나, 또는 기업에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또는

- 다. 사설망을 운영하는 인이 제3자에게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설망을 이용하는 것을 당사국이 금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

제1절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제11.2조

접근 및 이용¹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나. 전용 또는 소유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²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나 다른 기업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

라. 교환, 신호, 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국이 기업에 자국의 영역 내에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면허, 양여 또는 그 밖의 유형의 승인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호는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마.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건너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최종이용자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이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그리고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에 관한 기술적 요건

제2절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제11.3조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한 의무

상호접속

1.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동일한 영역 내에서 간접적으로 상호접속을 합리적인 효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나. 가호를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번호이동성³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합리적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동등 다이얼 및 전화번호에 대한 접근⁴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일한 범주의 서비스 내에서 동등 다이얼을 제공할 것을

³ 제2항은 인터넷전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⁴ 제11.3조제3항은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보장하고, 그 당사국 영역의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이 부여될 것을 보장한다.

제3절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⁵

제11.4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 자회사, 계열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가. 동종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급, 효율 또는 품질, 그리고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제11.5조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⁵ 제11.4조, 제11.7조 및 제11.9조부터 제11.11조까지는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제11.6조

재판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1.7조

망 요소 세분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부여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에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요구되는 망
요소와 그러한 요소를 획득할 수 있는 공급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8조

상호접속

일반조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 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 나.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 포함) 및 효율에 따라
-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 라.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 포함)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그리고
-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선택권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그의 설비 및 장비를 지배적 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와 상호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 그리고
- 나. 다음 선택사항 중 하나
 - 1)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효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2)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상호접속 제안 및 협정의 공개

3.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협정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 자국 영역의 다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한다.

제11.9조

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책정⁶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을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의 원가지향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 규제기관에 부여한다.

⁶ 제11.9조는 당사국이 지배적 사업자에게 세분화된 망 요소로서 전용회선 제공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1.10조

설비 병설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 효율로 대안적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어느 구역이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그러한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11.11조

전주·관로·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그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 관로, 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효율로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제4절

그 밖의 조치

제11.12조

국제 모바일 로밍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 성장 촉진 및 소비자 복지 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율 증진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당사국은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에 대하여 투명성과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소비자가 소매 요율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소비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방문할 때 자신이 선택한 기기를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로밍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한다.

제11.13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로서 해저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인가받은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 있는 해저 케이블 시스템(육양 설비 포함)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보장한다.

제11.14조

부가서비스의 공급 조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

-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 나. 그러한 서비스 효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 다. 그러한 서비스의 효율표를 제출할 것
-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 마. 공중 통신 망 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기술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15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지분⁷을 소유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제11.16조

보편적 서비스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15조는 통신규제기관 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1.17조

허가 절차

1. 당사국이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그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1.18조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3.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8.4조(시장접근)가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든지 또는 제8.1조(적용범위)의 운영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적용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제8.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당사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효율적인 전파의 사용과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비정부 통신 서비스용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도록 노력하고, 당사국이 행정적 유인 가격책정, 경매 또는 비면허 사용에 의한 것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이러한 행위를 장려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11.19조

규제에 대한 접근방식

1. 양 당사국은 통신 서비스 공급에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시장의 가치를 인정하며, 유효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규제 필요와 접근방식이 시장마다 다름을 인정하고, 각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이러한 측면에서, 양 당사국은 당사국이 다음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가. 그 당사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문제에 대한 예측으로 또는

이미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규제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나. 특히, 자체 망 설비를 소유하지 않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경쟁적이거나 경쟁적일 가능성이 있는, 또는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 부문에 대해서 시장 원리의 역할에 의존할 수 있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규제에 대한 참여를 자제하는 당사국은 계속해서 이 장에 따른 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11.20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양 당사국은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통하여 그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제11.21조 집행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11.2조부터 제11.3조까지에 규정된 의무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 권한은 금전적 벌칙, 구제명령(잠정적 또는 최종적), 시정 명령, 또는 허가의 수정,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제11.22조 통신 분쟁의 해결^{8 9}

⁸ 한국의 경우, 제11.22조의 목적상, **기업**은 자연인 또는 한국 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말한다.

⁹ 에콰도르의 경우, 제11.22조의 목적상, **기업**은 자연인, 에콰도르 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 또는 에콰도르에

제19.3조(행정절차) 및 제19.4조(재심사 및 불복청구)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이의신청

- 가. 1) 기업은 제11.2조부터 제11.13조까지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 또는 다른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 2)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지정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에 의한 심사를 구할 수 있다.

사법적 재심

-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한 사법적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않는 한, 사법적 재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제11.23조

투명성

제19.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주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가.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범제정과 자국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요율표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할 것
- 나. 이해관계인이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와 합리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
- 다.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규범제정 과정에서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모든 의견이 공개될 것
- 라.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의견에서 제기된 모든 중대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규범제정 과정에서 응답할 것, 그리고
- 마.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 1) 다음에 관한 조치
 - (가)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 (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다)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 (라)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그리고
 - 2) 제11.22조에 규정된 통신 분쟁의 해결을 포함하여 사법적 및 그 밖의 심판절차에 관한 절차

제11.24조

기술 선택의 유연성

1.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그들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유연성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고,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1.25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11.26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용 이동 서비스란 이동무선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동등 다이얼이란 최종이용자가 어느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공중 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동등한 자리수를 사용할 수 있는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을 말하며, 기업의 지점을 포함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 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란 최종이용자가 자신의 본국 공중 통신 망이 위치한 영역 밖에서 음성, 데이터 또는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자신의 본국 모바일 단말기 또는 그 밖의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들 간 상업적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상용 이동 서비스를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의 통신 설비를 말한다.

면허란 어떠한 인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양허, 허가, 등록 또는 그 밖의 승인을 포함하는 모든 승인을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 요소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징, 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전환할 때 서비스의 품질, 신뢰성 또는 편의성의 손상 없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물리적 설비 병설이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구역에서 장비를 설치, 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중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고, 부가서비스는 제외한다.

표준상호접속제안이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제시되고 통신규제기구에 제출되거나 통신규제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상호접속제안으로서, 상호접속을 위한 약관, 요율 및 조건이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이를 수락하려는 용의가 있는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는 관련 공급자와의 협상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이에 기초하여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통신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서비스란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부가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당사국의 관련 법 또는 규정에 각각 정의된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어떠한 서비스가 부가서비스인지 분류할 수 있다.

제12장 디지털 무역

제12.1조 적용범위 및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디지털 무역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는 체계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에서 신뢰, 상호운용성, 혁신 및 보안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 장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관련된 조치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0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 조치 포함)의 대상이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2.3조, 제12.14조, 제12.15조 및 제12.17조에 포함된 의무는

가.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0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 예외 및 비합치 조치의 대상이다. 그리고

나. 이 협정의 그 밖의 관련 규정과 연계하여 해석된다.

6. 제12.3조, 제12.14조 및 제12.15조에 포함된 의무는 제8.6조(비합치 조치) 또는 제10.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2.2조

관세

1.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12.3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¹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제1항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제13장(지식재산권)에 포함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¹ 제12.3조의 의무를 해석할 때, 양 당사국은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가 내국민 대우로 한정되며 최혜국 대우는 포함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2.4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1.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 또는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그리고

나. 전자거래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한다.

제12.5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자국의 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인증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국의 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제12.6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할 때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 불공정한 계약 조건과 부당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이란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를 불러오거나, 예방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피해의 잠재적 위협을 불러오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 가. 오도하는 광고를 포함하여, 오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표시하는 관행
 - 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청구된 후 고의로 그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달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관행, 또는
 - 다. 승인 없이 소비자의 금융 계정, 전화 계정, 디지털 계정 또는 그 밖의 계정에 청구하거나 그러한 계정에서 인출하는 관행
3. 각 당사국은 온라인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불러오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경 간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5.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하게 그리고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할 때를 포함하여, 온라인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과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6.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청구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안적 분쟁 해결을 포함한 메커니즘의 유익함을 인정한다.

제12.7조

개인정보 보호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의 경제적·사회적 유익함과 그러한 보호가 디지털 무역에서 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²

3. 각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부터 디지털 무역 이용자를 보호할 때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 이용자에게 자국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생활, 개인정보 또는 개인데이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 사생활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법이나 사생활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약속 이행을 규정하는 법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가. 개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5. 양 당사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이러한 상이한 제도 간의 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자율적으로 또는 상호 약정으로 부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규제적 결과에 대한 인정 또는 광범위한 국제적 체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에서 적용된 그러한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메커니즘 간 호환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러한 메커니즘 또는 다른 적절한 약정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8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규정한 절차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공개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공개한다.

2.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종이 형태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³으로 수용한다.

제12.9조

물류

³ 이는 양 당사국 간特惠무역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에 제공되는 特惠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양 당사국은 비용 감축과 공급망의 속도 및 신뢰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국경 간 물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물류 분야에 관한 우수 관행 및 일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10조 전자송장

1. 양 당사국은 상업적 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2. 모든 국내법과 법 체계에 의하여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에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양 당사국의 전자송장 체계 간의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전자송장에 관련된 자국 조치의 기반을 국제 체계에 두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 체계를 고려하면서,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송장 시스템의 전 세계적인 채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기업이 전자송장을 채택하는 것을 증진, 장려, 지원 또는 촉진한다.
 - 나. 전자송장을 지원하는 정책, 인프라 및 절차의 채택을 장려한다.
 - 다. 전자송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전자송장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라.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국제 전자송장 시스템의 채택을 증진한다.

제12.11조

특송화물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무역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항공 특송화물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방식으로 자국의 통관 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항공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12조

전자지급

1. 전자지급, 특히 비은행, 비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국경 간 전자지급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가. 전자지급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 강화

나. 전자지급 인프라의 상호운용성 및 상호연결성 증진, 그리고

다.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혁신과 경쟁 장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가.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간에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나. 관련된 전자지급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지급 시스템 간에 보다 높은 상호 운용성을 허용하는 금융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간 데이터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전자지급 메시지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의 채택을 증진한다.

다.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의 사용을 증진하고, 전자지급에서 보다 높은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용 API를 제3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라. 혁신, 경쟁 그리고 새로운 금융 및 전자지급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한다.

3. 제1항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규제를 통하여 전자지급 시스템에서 안전성, 효율성, 신뢰 및 보안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규제 및 정책의 채택과 집행은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제12.13조

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각국의 적용 가능한 정책과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능력을 갖춘 소비자의 이익을 인정한다.

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소비자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⁴

나.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이용자 장치가 네트워크에 피해를 가하지 않는 한,

⁴ 양 당사국은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특정한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

그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 다.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제12.14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활동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을 허용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의 이전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15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

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16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나.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한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17조

소스코드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그에 대한 접근, 또는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2. 이 조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 기관, 법 집행 기관, 규제 기관 또는 사법 당국(“관련 기관”)이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조사, 수사, 검사, 집행 조치 또는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또는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을 보존하거나 관련 기관이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⁵

제12.18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협력 노력 및 이니셔티브를 증진한다

나. 젠더 및 사회적 포용 접근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업에서의 장애를 극복하고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한다.⁶

다. 다음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제, 정책, 집행 및 준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한다.

⁵ 그러한 공개는 영업 비밀 소유자가 영업 비밀로서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나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⁶ 에콰도르의 경우, 나호는 제1.4조(정의)에 정의된 사회연대경제(“SSEs”)에도 적용된다.

- 1) 개인정보 보호
- 2)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 3) 컴퓨터 설비
- 4)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 5) 전자 통신상 보안
- 6) 인증, 그리고
- 7) 전자정부

라.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접근에 관하여 양 당사국 간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공유한다.

마. 디지털 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및 다자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바. 행동규범, 모범계약, 지침 및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을 강화하는 민간 부문별 자율규제 방법의 개발을 장려한다.

2. 효과적인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부속서 12-가에 명시된 대로 디지털 무역 작업반을 설치한다.

제12.19조

사이버보안 사안에 대한 협력

양 당사국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가.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한 역량 구축을 포함하여,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자국 국가 기관의 역량 구축, 그리고
- 나. 양 당사국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를 적발하고 경감하는 데 협력하기 위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사용

제12.20조

데이터 혁신

-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화 및 데이터 사용이 경제 성장을 증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적용 가능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의 사용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험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하며 이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한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연구자, 학계 및 산업계가 관여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의 이점을 증명하는 데 요구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 나. 데이터 이동성을 위한 정책 및 표준 개발에 대한 협력, 그리고
- 다. 데이터 혁신과 관련된 연구 관행 및 산업계 관행 공유

제12.21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2.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역량과 시장 범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정보와 우수 관행을 교환한다.

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국제 공급자, 구매자 및 그 밖의 잠재적 사업 파트너와 연결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 밖의 메커니즘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참여를 권장한다. 그리고

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고 번창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12.22조

인공지능

1. 양 당사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이 자연인과 기업에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또한 AI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 디지털 경제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 관련된 규제, 정책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화 및 경험 교환의 증진을 통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2.23조

핀테크 협력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내 핀테크 산업 간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핀테크에 관한 효과적인 협력이 기업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위한 핀테크 솔루션의 개발을 증진한다. 그리고
 - 나.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도록, 핀테크에서의 양 당사국 간 기업가 정신 또는 스타트업 인재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12.24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련의 정의된 절차를 말한다.

컴퓨터 설비란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및 저장 장치를 말하나, 금융시장인프라의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 장치나 금융시장인프라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
- 나.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정의된 “당사국의 투자자.”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다. 제8.12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다만, 제10.19조(정의)에 정의된 “금융기관” 또는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7 8}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검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송장이란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 지급 요청을 자동으로 생성, 교환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지급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 가능한 금전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전자문서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금융시장인프라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해당 시스템의 운영자를 포함한다)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화폐를 포함한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된 표현은 포함하지 않는다.

⁸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 지급,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청산, 결제 또는 기록, 또는

나. 그 밖의 금융 거래

핀테크란 금융서비스의 전달과 이용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의 사용을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 또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한도에서 그 밖의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인의 전자 주소로 발송되는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부속서 12-가
디지털 무역 작업반

1. 디지털 무역 작업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협력 노력 및 이니셔티브의 증진

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그 이용에 대한 장애 극복 지원

다. 이 장에 관련된 정보 교환

라. 이 장의 해석과 적용을 포함하여, 이 장에 관련된 문제 논의

마. 그 밖의 위임된 사안의 이행, 그리고

바. 공동위원회가 결정한 이 장에 관련된 그 밖의 문제 검토

2. 디지털 무역 작업반은 각 당사국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3. 적절한 경우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디지털 무역 작업반은 연구자, 학계, 산업계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 같은 그 밖의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작업반을 소집할 때 그러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 가능한 시기에 디지털 무역 작업반을 소집한다.

제12장(디지털 무역) 제12.1조제6항에 대한 양해

이 협정의 제12장(디지털 무역)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에콰도르 대표단 간 양해에 도달하였다.

양 당사국은 전략적경제협력협정상 투자 장의 부재를 고려하여, 제12.1조제6항에 언급된 “제8.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비합치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양해를 공유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2.1조제6항에 더하여, 제12.3조, 제12.14조 및 제12.15조에 포함된 의무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양 당사국의 조치가 GATS 제20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이루어진 한쪽 당사국의 약속에 명시된 조건, 제한, 자격 및 요건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한도에서, 또는 한쪽 당사국의 약속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분야의 한도에서, 그러한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3장 지식재산권

제1절 일반규정

제13.1조 효력

각 당사국은 최소한 이 장에 효력을 부여한다.

제13.2조 국제 협정

1.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그들이 당사자인 지식재산에 관한 그 밖의 모든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나 그 밖의 모든 지식재산 협정하에서 양 당사국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이탈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 가. 「특허법 조약」 (2000)
 - 나.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1999)
 - 다.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1989)
 - 라.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1991) , 그리고

마. 「1980년에 개정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1977)

제13.3조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의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3.4조

내국민 대우

1.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식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¹ 및 향유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²에게 부여한다. 다만, 제13.45조와 제13.46조제1항다호에 대하여는,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실연자, 음반 제작자와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제한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지정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사법 및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1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이탈은

가. 이 장에 불합치하지 않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해야 한다.
그리고

¹ 제13.4조제1항 및 제13.4조제2항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민” 은, 관련 권리에 관하여, 제13.2조에 언급된 협정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된 권리의 보호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그 당사국의 모든 인[제1.4조(정의)에 정의된 대로]을 포함한다.

² 제13.4조제1항의 목적상, “보호” 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구체적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이용가능성, 취득, 적용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그리고 (2) 제13.38조에 규정된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 금지, 제13.39조에 규정된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의무와 제13.41조제1항 및 제13.41조제2항에 규정된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보호

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제1항은 지식재산권의 획득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자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3.5조

기존의 대상물 및 이전의 행위에 대한 협정의 적용

1. 제13.35조를 포함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날짜에 보호되고 있거나, 이 장에 따른 보호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후에 충족하게 되는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

2. 제13.35조를 포함하여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3.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13.6조

투명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또는 집행에 관한 모든 법, 규정 및 절차가 명문화되고 공표³되거나, 공표가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및 권리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국의 언어로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법, 규정 또는 절차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제13.6조의 공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제2절
유전자원 및 연계된 전통지식

제13.7조
유전자원 및 연계된 전통지식

1.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 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그리고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각료 선언(WT/MIN/(01)DEC/1) 제19항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과 전통지식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각국의 국내 법률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을 보유한 자의 참여와 승인을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증진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공함으로써 유전자원 또는 연계된 전통지식에 기초한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한다.
 - 가.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 나. 적절한 심사 당국에 서면으로 선행기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5.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 간 위원회,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적절한 포럼에서의 논의에 대한 견해 및 정보를 공유하

기로 합의한다.

제3절 지리적 표시

제13.8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제13.9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보호가 상표 제도, 독자적 제도 또는 그 밖의 법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13.10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

1. 각 당사국은 상표를 통해서 또는 독자적 제도를 통해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보호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절차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그 보호를 위한 출원에 대하여:

가.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규율하는 자국의 법과 규정이 대중에게 쉽게 이용 가능

하도록 하고 출원의 제출과 관련한 절차를 포함하여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출원의 제출 절차에 관한 지침을 일반 대중이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특정 출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3. 제1항에 언급된 절차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이해관계인이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최소한 지리적 표시가 그 당사국 영역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보통 명칭⁴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을 근거로 그러한 보호를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를 제공한다.

제13.11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일

제13.10조에 언급된 당사국의 국내 행정 절차를 통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그 당사국 내 보호를 위한 출원일⁵ 또는 등록일, 또는 그 당사국 내 등록일 후 개시된다.

제13.12조

제한

이 절은 각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4절

⁴ 당사국이 포도주 및 증류주를 위한 지리적 표시 또는 그러한 지리적 표시의 출원에 제13.10조를 적용하는 경우,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관련 표시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존재하는 포도 품종의 관습적 명칭과 동일한 포도로 만든 제품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지리적 표시를 자국의 상표 제도를 통하여 보호하는 경우, 이 조에 언급된 출원일은 적용 가능한 경우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 출원일을 포함한다.

상표

제13.13조

상표 보호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⁶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선행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양 당사국이 사용에 기반하여 권리를 이용 가능하게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3.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4. 상표가 출원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표등록의 장애를 형성하지 않는다.

제13.14조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각 당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보통명칭)와 관련하여 상표의 상대적 크기, 위치 또는 사용 양식에 관한 요건을 특히 포함하여, 그 보통명칭의 사용을 강제하는 자국의 조치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사용되는

⁶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경우, 상표에 대한 적절한 설명 또는 시각적 표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이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3.15조

예외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13.16조

유명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 유명 상표 목록에 등재되어 있을 것 또는 유명 상표로 사전 인정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967)(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 상표⁷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⁸을 희석⁹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⁷ 표장이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인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⁸ 에콰도르의 경우, **명성**이라는 용어는 상업적 가치를 말한다.

⁹ 이 조의 목적상, 한국은 "유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희석"은 한국의 상표법(법률 제18999호, 2022년 12월 18일) 제34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대로 정의되는 것으로 여긴다.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제13.17조

상표 등록 및 출원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 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요건.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 나. 출원인이 상표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
- 다. 이해당사자가 등록 전에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의 취소나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 라.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결정은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서면 결정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을 위한 제도, 그리고
- 나. 상표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제13.18조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상표 출원 또는 등록에 관계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각 등록 및 공표는, 수정되고 개정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1979)(이하 “니스 분류”라 한다)에 의하여 설정된 분류상의 류별로 분류하여 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그 명칭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 나. 상품 또는 서비스는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동일한 류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역으로, 각 당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다른 류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5절

특허

제13.19조

특허 가능 대상

-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만 한다.
-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 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수술방법, 그리고

다.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과 동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공정을 제외한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공정

제13.20조

예외

1.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1항과 합치하게, 당사국이 제3자가 의약품의 시판허가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특허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허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그 당사국의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을 제외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조·사용 또는 판매되지 않도록 규정하며, 그 당사국이 그러한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으로만 그 제품이 그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도록 규정한다.

제13.21조

공지 예외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가. 공지가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그리고

나.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12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

제13.22조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

각 당사국은 특허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공개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제13.23조
청구된 발명

1.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의 개시(開示)가 출원일 현재 그 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과도한 실험 없이 그 발명이 이루어져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개시(開示)가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청구된 발명의 개시(開示)가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그 기재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의 전체 범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출원일에 인지하여 기술하지 않았거나 완성하지 않았던 대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청구된 발명은 그 개시(開示)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그리고

나. 청구된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하다.

제13.24조
우선심사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이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조건으로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 출원의 공개 후에 출원인 외의 인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우, 또는

나. 특허 출원인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를 위한 준비 중인 경우

제13.25조 절차의 간소화

1. 당사국은 우선권이 주장된 특허에 대한 선출원이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인정 한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선출원에 대한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우선권이 주장된 특허에 대한 선출원의 번역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6절 특정 규제 제품 관련 조치

제13.26조 특정 규제 제품 관련 조치

1.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와 자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의약품과 농약품의 안전성 및 효과성과 관련된 미공개 실험 또는 그 밖의 자료를 보호한다.

2. 당사국에서 의약품과 농약품 시판 시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부당한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양 당사국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제7절

디자인

제13.27조

디자인 보호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서 물품의 일부(들)를 포함한 산업 디자인에 대하여 최소 10년의 보호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2.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3. 각 당사국은 산업디자인 등록 출원인이 요청서에 자신이 지정한 기간 동안 그러나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디자인을 미공개로 유지하도록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제1항에 따라 부여된 보호는 전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하여 요구되는 디자인에는 미치지 않는다.
5. 각 당사국은 청구된 산업 디자인이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일 전에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출원의 우선일 전에 어떠한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에서 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배포된 출판물에 기술되거나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 신규성이 있지 않음을 보장한다.

제13.28조

예외

각 당사국은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8절

부정 경쟁 및 미공개 정보

제13.29조

부정 경쟁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정경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 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성격의 모든 행위
- 나.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신용을 해하게 하는 성격의 거래상의 허위 주장
- 다. 상품의 성질, 제조방법, 특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수량에 대하여 대중을 오도할 염려가 있는 거래상의 표시 또는 주장, 그리고
- 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유발할 의도에 관한 것과 같이,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목적으로 각 당사국 내의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 취득 또는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 외관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 그 제품의 미등록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3.30조

미공개 정보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에 따른 미공개 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제9절

식물 품종

제13.31조

식물 품종

1. 양 당사국은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91) 제15조제2항에 언급된 육종가의 권리에 대한 선택적 예외를 포함한 그러한 협약에 기초하여 식물 품종의 보호를 촉진하고 보장하도록 협력한다.

2. 이 협정의 서명은 식물 육종가의 권리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각 당사국은 식물 품종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조건을 충족하고 일반 명칭이 될 적합한 명칭으로 표시되는 경우 보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품종의 식별은 모호하지 않게 결정되어야 하고, 보호 기간 내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91) 제14조제5항나호에 정의된 본질적으로 파생된 품종을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그에 합치되게 보호한다.

제10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3.32조 복제권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¹⁰ 및 방송 사업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모든 복제를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허락하거나 금지¹¹할 권리”를 그의 저작물, 실연¹², 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 가지도록 규정한다. ^{13,14}

제13.33조 배포권

1.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그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¹⁵을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 제작자의 허락과 함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최초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 후 제1항의 권리의 소진에 적용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결정하는 양 당사국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34조 보호 기간

¹⁰ 이 장의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는 권리승계인도 지칭한다.

¹¹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는 이 장의 목적상 배타적 권리를 지칭한다.

¹²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실연**”이란 이 장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말한다.

¹³ 각 당사국은 제13.32조에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그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일부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¹⁴ 양 당사국은 일시적 복제에는 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이 포함됨을 양해한다.

¹⁵ 제13.33조에서 사용된 대로, 이 조의 배포권의 적용대상인 “복제물”과 “원본과 복제물”은 유형물로 유포될 수 있는 고정된 복제물만을 지칭한다.

1. 각 당사국은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방송의 보호 기간이 방송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하여 송신되는지에 관계없이, 방송의 최초 송신 후 50년 이상이 될 것을 규정한다.

제13.35조

베른협약 제18조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4조제6항의 적용

각 당사국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하 "베른협약"이라 한다) 제18조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4조제6항을 이 절의 대상물, 권리 및 의무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제13.36조

무방식주의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규정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의 권리의 향유와 행사에서 어떠한 형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13.37조

계약에 의한 이전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 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

제13.38조 기술적 보호조치

1. 각 당사국은 관련 인이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어떠한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소지하거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매되는 것

-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 의미가 있는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또는

-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3. 이 협정의 목적상, 기술조치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관하여, 각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은 행위를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구성품을 말한다. 기술조치는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이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암호화, 스크램블이나 그 밖의 변형과 같은 접근통제나 보호절차, 또는 복제통제 메커니즘의 적용을 통하여 권리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4. 양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다음 행위로 한정한다.

- 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얻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에 참여한 인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았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요소에 대하여 선의로 수행된, 적법하게 획득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한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
- 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 고정되지 않은 실연 또는 현시물을 적법하게 획득했고 선의의 비침해 행위에 대한 허락을 얻기 위하여 선의의 노력을 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가 정보의 스캔블 및 디스크랜블을 위한 기술의 흡결 및 취약성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수행하는 선의의 비침해 행위
- 다.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제2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따라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는 기술, 제품, 서비스 또는 장치에 구성품이나 부품을 포함하는 것
- 라.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검사, 조사 또는 보정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그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가 허락하는 선의의 비침해 행위
- 마.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의 능력에 그 밖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인의 온라인 행위를 반영하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비침해 행위
- 바. 정부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 정보 활동, 필수적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허락된 행위
- 사. 취득 여부의 결정을 유일한 목적으로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이 자신에게 달리 이용 가능하지 않은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 아. 비침해 이용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개연성이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입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입증된 경우, 특정 종류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비침해 이용. 다만, 이 호에 근거하여 채택되는 제한이나 예외는 그러한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갱신 가능한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효력을 가져야 한다.

제13.39조

권리관리정보

1.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그리고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하여는 이를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다음을 하는 인으로부터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 가. 알면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 나.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는 것, 또는
- 다.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 또는 전달하거나, 대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 외의 어떠한 인이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 중 어느 것이든 관여한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처벌을 규정한다. 이러한 처벌은 침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대로 제13.68조의 가호, 나호 및 마호에 열거된 구제 및 권한을 그러한 행위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정부 직원,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 정보 활동, 필수적인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허락된 행위로 한정한다.

3. **권리관리정보**란 다음 중의 어느 하나가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대중전달 또는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때에, 다음을 말한다

가.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 또는 방송 사업자, 또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나.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다.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권리자에게,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복제물에 부착하게 하거나,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대중전달과 관련하여 권리관리정보가 나타나도록 요구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3.40조

제한 및 예외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되지 않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특정한 경우에, 이 절에서 언급된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를 자국의 법률에 규정할 수 있다.

제13.41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 조립, 변경, 수입, 수출, 판매, 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 또는 그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기술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구제를 규정한다.

제13.42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 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양 당사국 간 콘텐츠의 더욱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의 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각국의 징수단체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합리화를 달성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관

저작권

제13.43조

대중전달에 관한 권리

베른협약 제11조제1항2호, 제11조의2제1항1호 및 2호, 제11조의3제1항2호, 제14조제1항2호, 그리고 제14조의2를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대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대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제3관
저작인접권

제13.44조
실연자의 권리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 가. 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방송하고 대중에 전달하는 것
- 나. 자신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고정하는 것, 그리고
- 다. 대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자신의 실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제13.45조
음반제작자의 권리

각 당사국은 음반제작자에게 대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자신의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제13.46조
방송사업자의 권리

1. 각 당사국은 방송사업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 그리고

다.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대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하에 대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대한 사안이다.

2. 제13.40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 인지에 관계없다)를 신호 내용의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의, 그리고 신호 그 자체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 또는 그 권리자들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재송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¹⁶

제11절

지식재산권의 집행

제1관

일반 의무

제13.47조

지식재산권 관련 집행 관행

1.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사법결정과 행정판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이유가 설명¹⁷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¹⁶ 이 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부터 접근 불가능한 폐쇄적이고 한정된 가입자망을 통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재송신은 인터넷상에서 재송신을 구성하지 않는다.

¹⁷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과 판정이 기초로 하는 관련 사실의 조사결과 및 사유나 법적 근거를 명시하면 이유가 설명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결정과 판정이 공표¹⁸되거나, 공표가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들과 권리자가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자국의 언어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민사, 행정 및 형사 제도에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제 공하려는 자국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당사국이 수집 할 수 있는 통계적 정보를 포함한다.

제13.48조

추정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¹⁹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상표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규정한다. 특허에 관련되는 민사 및 행정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가 유효하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규정하고, 각각의 특허 청구항은 그 밖의 청구항의 유효성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정함을 규정한다.

제2관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제13.49조

자격 있는 권리자

각 당사국은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²⁰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¹⁸ 당사국은 그 결정 또는 판정을 인터넷상에 공개함으로써 제13.47조의 공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¹⁹ 저작권의 목적상, 저작자가 채택한 자신의 필명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는 경우, 필명은 저작자의 이름에 포함될 수 있다.

²⁰ 제13.49조의 목적상, “권리자”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하고, 어느 지식재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을 또한 포함한다.

한다.

제13.50조

손해배상

1. 각 당사국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법 당국은,
 - 가. 피해 당사자가 입은 일실이익을 포함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 그리고 적절한 경우 침해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정신적 손해와 같은 경제적 요인 외의 요소와 같은 모든 적절한 측면을 고려한다. 또는
 - 나. 가호에 대한 대안으로, 적절한 경우, 최소한, 침해자가 문제가 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승인을 요청하였더라면 지급되었어야 할 로열티 또는 사용료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일괄지급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침해자가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양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이득의 반환 또는 사전에 설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13.51조

법무 비용

각 당사국은 승소 당사자에 발생한 변호사비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법적 비용 및 그 밖의 절차적 비용은 형평성 또는 그 밖의 이유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패소 당사자가 자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부담하도록 보장한다.

제13.52조

압류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 행위와 관련된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위조에 대해서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3.53조

시정조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침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어떠한 손해도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침해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품의 폐기 또는 그러한 상품의 상거래로부터의 확실한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은 그러한 상품의 생성 또는 제조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의 폐기도 명령할 수 있다.
2. 사법당국은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침해자의 비용으로 실행되도록 명령한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원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54조

정보권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어떠한 측면으로든 침해에 연루된 인 또는 인들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3.55조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폐기 명령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 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 가. 적절한 경우, 사법당국이 내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 나.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제13.56조

행정 절차

사건의 본안에 관한 행정 절차의 결과로 민사 구제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가 이 장에 규정된 원칙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제13.57조

침해 수입품과 그 수출의 금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히 침해 수입품의 상거래로의 반출과 그 수출을 금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3.58조

전문가 비용

당사국의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에서 기술전문가 또는 그 밖의 전문가를 임명하고 소송 당사자에게 그러한 전문가 비용을 부담할 것

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히 그러한 비용이 수행된 업무의 양 및 성격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13.59조 대안적 분쟁해결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한다.

제13.60조 잠정조치

1. 각 당사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2.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사법당국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3관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제13.61조 권리자에 의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되는 정보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²¹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반출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는다.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신청이 자국 영역의 모든 반입 지점에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제13.62조

합리적인 담보 또는 보증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물품이 침해상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담보가 수입자 또는 수입된 물품의 소유자가 상품의 반출 정지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13.63조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권리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²¹ 제13.61조부터 제13.66조까지의 목적상,

위조된 상표 상품이란 포장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될 수 없는 상표를 허락 없이 부착하여, 수입국의 법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모든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이란 권리자 또는 제작 국가에서 권리자가 정당하게 허락한 인의 동의 없이 제작된 복제물로서, 그 복제가 수입국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구성하였을 물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말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결정으로부터 최대 30일 내에 권리자에게 탁송인이나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그 물품의 명세, 그 물품의 수량, 그리고 알려진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국을 권리자에게 제공한다.

제13.64조 직권 국경조치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중인²²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물품에 대하여 직권²³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3.65조 폐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관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제13.66조 수수료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수수료 또는 물품보관수수료가 산정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수수료를 이러한 조치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는 금액으로

²² 제13.64조의 목적상, **통과 중인 물품**이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교토협약"이라 한다)에 정의된 “보세운송” 상의 상품 및 “환적된” 상품을 말한다.

²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직권조치가 사인이나 권리자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한다.

정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4관 형사절차와 구제

제13.67조 형사절차와 처벌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고의적인 수입 또는 수출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다룬다.²⁴

제13.68조 처벌, 압류, 몰수 및 폐기

제13.67조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더 나아가 사법 당국이 형사적 침해가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실제 형기의 부과를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한다.
- 나. 자국의 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그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모든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그 명령에 명시된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²⁴ 당사국은 불법복제된 상품의 수출에 관한 제13.67조의 의무를 배포에 관한 자국의 조치를 통하여 준수할 수 있다.

한, 그러한 명령이 개별적으로 그 품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라. 사법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명령한다.

- 1)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과 위조된 표장으로 구성된 물품의 몰수 및 폐기, 그리고
- 2)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더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 호와 다 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마. 형사사건에서,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폐기 예정인 상품과 그 밖의 재료의 목록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을 위하여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의 제기를 희망한다는 권리자의 통보가 있는 경우, 증거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료를 폐기 명령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13.69조

영화 또는 영상저작물의 보호

각 당사국은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고의로 허락받지 않고 상업적인 규모로, 영화관의 상영으로부터 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제5관

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

제13.70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²⁵

양 당사국은 중개자의 서비스가 제3자에 의하여 침해활동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정보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송신되는 정보에 전혀 연루되지 않는 경우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13.71조부터 제13.74조까지에 명시된 조치를 규정한다.

제13.71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단순도관”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 또는 통신망에 대한 접근 제공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송신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송신을 개시하지 않을 것

나. 제공자가 송신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 그리고

다. 제공자가 송신에 담긴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

2. 제1항에 언급된 송신 및 접근 제공 행위는, 저장에 통신망에서 송신을 실행할 목적으로만 일어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리고 정보가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²⁵ 제13.71조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란 이용자가 선택한 자료를,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명시하는 지점 간 또는 지점 사이에 디지털 온라인 통신을 위하여 송신, 라우팅 또는 접속하는 제공자를 말하고, 제13.72조 및 제13.73조에 언급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란 온라인 서비스 또는 망 접근을 위한 설비의 제공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더 오래 저장되지 않는 한, 송신되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을 포함한다.

3. 이 조는 양 당사국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72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캐싱”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통신망에서의 송신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다른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그 서비스 수신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정보의 계속적 송신을 더 효율적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만 행해지는 정보의 자동적이고 중개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것

나. 제공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조건을 준수할 것

다. 제공자가 업계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방식으로 명시된 정보의 갱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라. 제공자가 정보의 이용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업계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이용되는 기술의 합법적 이용에 간섭하지 않을 것, 그리고

마. 제공자가 송신의 최초 원천에 있는 정보가 망으로부터 삭제되었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무력화되었거나, 또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그러한 제거나 무력화를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 자신이 저장한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이 조는 양 당사국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

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73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호스팅”

1.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저장으로 구성되는 정보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서비스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을 조건으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없음을 보장한다.

가. 제공자가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불법적 활동 또는 정보를 명백하게 하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지 못할 것, 또는

나. 제공자가, 그러한 것을 알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신속하게 행동할 것

2. 제1항은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자의 권한 또는 통제하에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조는 양 당사국의 법적 제도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를 종료하거나 방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 당사국이 정보의 제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를 규율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74조

일반적 감시 의무의 면제

1. 양 당사국은, 제공자가 제13.71조부터 제13.73조까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 자신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 또는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과하지 않

는다.

2. 양 당사국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행해진 불법 혐의 활동이나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신속하게 알릴 의무, 또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저장계약을 맺고 있는 자신의 서비스 수신자의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의무를 수립할 수 있다.

제13.75조

인터넷상 반복적인 침해에 대한 조치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과 저작권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²⁶ 조치를 한다.

제10절

지식재산권위원회

제13.76조

지식재산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 목적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의 검토 및 점검

²⁶ 조치가 통계상으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반복적인 침해를 양적으로 억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조치가 비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나.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원활하게 할 방안의 논의

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 제도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

라. 공동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 수행, 그리고

마. 이 장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이러한 회합은 합의된 수단을 통하여 진행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

제13절

협력과 기술이전

제13.77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목적으로 각국의 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법체계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가.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제도 및 역량 구축을 개선하고 강화한다, 또는

나. 각 당사국의 인, 특히 중소기업에 의한 지식재산의 창출 및 발전을 격려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가. 지식재산 정보 체제를 포함한 지식재산 사용에 대한 교육 프로젝트

나. 공무원을 위한 지식재산 및 그 밖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수 및 전문 과정

다. 라이선싱, 특허 기술 및 시장 정보

라. 경험 및 기술적인 지식의 교환을 포함한 식물 품종, 저작권, 산업디자인의 보호,
그리고

마. 지식재산에 관한 상호 관심이 있는 그 밖의 주제

3. 양 당사국은 이 조의 목적을 충족하고 협력 개발의 촉진을 담당하는 접촉선을 지정한
다. 접촉선은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에콰도르의 경우,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 14 장

정부조달

제14.1조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 무역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관심을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 증진에 기여할 정부조달 사안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4.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되며, 조달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란 정부 목적의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정부조달로 다음을 말한다.
 - 가.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않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지 않는 것

- 나. 구매, 리스 그리고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임차 또는 할부 구매,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 다. 제 14.6 조에 따른 공고의 공표 당시 제 5 항, 제 6 항 및 제 7 항에 따라 추정된 조달금액이 부속서 14-가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금액의 것
-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 마. 이 장의 적용범위로부터 달리 배제되지 않고, 부속서 14-가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는 것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그 밖의 부동산, 또는 이들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용자, 지분참여, 보증, 재정적 유인 및 보조금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¹
- 다. 재무 대리 또는 예탁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서비스, 또는 용자 및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²을 포함한 공적 부채와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다음 활동과 관련된 은행, 금융 또는 특화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공적부채 발생,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라. 공공고용계약 및 관련 조치

마.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조달

- 1) 개발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 제공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것
- 2) 다음과 관련된 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가) 군대 주둔, 또는

(나) 그러한 협정의 서명국에 의한 사업의 공동 이행, 또는

- 3) 국제기구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수행되거나 국제적 공여, 차관, 투자, 또는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적용 가능한 절차나 조건이 이 장과 불합치하게 되는 것

4.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조달기관이 부속서 14-가에 열거되지 않은 인에게 특정 요건에 따라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4.4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그러한 요건에 적용된다.

계약가액 산정

5. 적용대상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산할 때, 조달기관은

가. 조달을 이 장의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할 의도로 해당 조달을 별개의 조달로 나누지 않으며,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정 가액평가 방법을 선택하거나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 다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한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하나 이상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을 포함한다.

1) 할증료, 요금, 수수료 및 이자, 그리고

2) 그 조달이 선택 조항의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택 구매를 포함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

6. 조달의 개별적인 요건이 두 건 이상의 낙찰이나 낙찰의 분할로 귀결되는 경우(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 추정 최대 총 가액의 산정은 다음에 근거한다.

가. 직전 12 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가액으로서, 가능한 경우, 이후 12 개월에 걸쳐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또는 가액의 예상되는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 또는

나. 최초 낙찰 이후 12 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회계연도 동안 낙찰될 동일한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추정가액

7.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 조달의 경우, 또는 총액이 명시되지 않은 조달의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확정기간 계약의 경우

- 1) 계약기간이 12 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기간에 대한 최대 총 추정 가액, 또는
- 2) 계약기간이 12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 잔존가액을 포함한 최대 총 추정가액

나. 조달의 전 기간에 걸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조달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

8.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새로운 조달 정책, 절차 또는 계약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이 장과 달리 불합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14.3조

예외

1.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양 당사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게 되거나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재소자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2. 양 당사국은 제 1 항나호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불가결한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4.4조

일반원칙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

1.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이 장과 부속서 14-가에 규정된 제한 및 유보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가.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또는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전자적 수단의 이용

3. 전자적 수단으로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할 때, 조달기관은

-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 나. 접수 시간의 설정과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참가 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유지한다.

조달의 수행

- 4.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 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개입찰, 선택입찰 및 제한입찰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
 - 나. 이해 상충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 다. 부패 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원산지 규정

- 5. 적용대상조달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통상적인 무역거래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

대응구매의 금지

- 6.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적용대상조달의 모든 단계에서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시행하지 않는다.

조달에 특정되지 않는 조치

7. 제 1 항과 제 2 항은 관세 및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그 밖의 수입규정 또는 절차, 그리고 적용대상조달을 규율하는 조치 외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5조

조달제도에 관한 정보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하여 자국의 조달 법, 규정, 절차 및 정책지침,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한 모든 변동 또는 추가사항을, 널리 유포되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전자 또는 종이 매체로 신속하게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 법, 규정, 절차 및 정책지침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답변한다.

제14.6조

공고

조달예정공고

1.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제 14.11 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관심 있는 공급자들에게 입찰서 또는, 적절한 경우, 해당 조달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러한 공고는 조달 입찰을 위하여 설정된 전체 기간 동안, 널리 유포되고 대중이 무료로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또는 종이 매체로 공표한다. 각 당사국은 조달기관이 인터넷 또는 비슷한 망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하나의 창구에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예정공고를 공표하도록 장려한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달예정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그리고 이들의 비용과 지불조건이 있다면 그 비용과 지불조건
- 나.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하는 조달에 대한 설명
- 다. 반복계약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경우, 후속 조달예정공고의 시기에 대한 예상
- 라. 선택사항에 대한 기술
- 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기간 또는 계약 기간
- 바. 사용될 조달 방법과 그 방법이 협상 또는 전자 경매를 수반할지 여부
- 사. 적용 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 아.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 자. 공급자가 제공해야 할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단한 설명. 다만, 그러한 요건이 조달예정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입찰서류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차. 조달기관이 제14.8조에 따라, 제한된 숫자의 적격 공급자를 입찰 참가 요청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적용 가능

한 경우,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모든 제한

카. 해당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의 적시, 그리고

파.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공식 언어 외의 언어로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는 경우, 그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해당 언어

3. 조달기관은 예정된 조달 건마다 쉽게 접근 가능한 요약공고를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와 동시에 공표하도록 노력한다. 해당 요약공고는 적어도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의 대상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 등재 신청서 제출 마감일, 그리고

다. 조달과 관련되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의 주소 또는 장소

조달계획공고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매 회계연도 조달계획에 관한 공고를 매 회계연도 전에 또는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권장한다. 그 공고는 최소한 조달의 대상 및 조달예정공고에 대한 공표 계획일자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제14.7조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상업적,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조달기관은

가. 해당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과 밖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에 기초하여 그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평가한다.

나.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근거하여 평가한다.

다.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조달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3.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나. 허위 신고

다. 이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상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마. 공급자의 상업상 무결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바. 세금 미납

제14.8조

공급자의 등록 및 자격심사

등록제도 및 자격심사절차

1.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에 참가하도록 허락되기 전에 등록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공급자에게 등록 또는 사전자격심사에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공고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지원에 착수할 수 있고, 조달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립가능한 범위에서, 등록 및/또는 자격심사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 내에 공표되도록 보장한다.

선택입찰

2. 당사국의 국내법이 선택입찰절차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각각의 예정된 조달에 대하여,

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조달기관이 그러한 신청서를 기초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사전에 조달 참가를 신청하도록 공급자에게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리고

나. 조달기관이 조달예정공고,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그 입찰서류에 입찰에 허용될 공급자 수의 제한 및 그러한 제한 기준을 기술하지 않는 한,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한 모든 국내 공급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3. 입찰서류가 제 2 항가호에 언급된 공고의 공표일부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은 경우, 조달기관은 제 2 항나호에 따라 선정된 모든 적격 공급자에게 그 서류가 동시에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유자격자 명부

4. 조달기관이 관심 있는 공급자들에게 유자격자 명부에의 등재를 신청하도록 요청하는 공고를 매년 발행하거나, 달리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할 수 있다. 그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나. 공급자들이 충족해야 할 참가조건과 조달기관이 공급자의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할 방법

다.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해당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라. 유자격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유자격자 명부 사용의 종료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그리고

마. 유자격자 명부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적시

5.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의 등재를 언제든지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적격 공급자를 그 명부에 포함시킨다.

6. 선택입찰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 근거한 조달에 대한 참가 신청서 및 요구되는 모든 관련 서류를 제 14.9 조제 2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그 신청서를 검토한다. 조달기관은 조달의 복잡함 때문에 신청에 대한 검토를 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검토할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그 공급자를 그 조달과 관련하여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제14.9조

기간

1. 조달기관은 자국의 합리적인 필요에 따라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조달에 대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응찰서를 준비 및 제출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2.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입찰 참가 신청서의 제출 마감일이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일부터 원칙적으로 25 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이러한 기간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은 10 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될 수 있다.

3. 제 4 항 및 제 5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다음의 날부터 40 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가. 공개입찰의 경우, 조달예정공고가 공표된 날, 또는

나.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이 유자격자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라고 조달기관이 그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4.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 3 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10 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부속서 14-가에 열거된 전자 매체에 제 14.6 조제 4 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 공고를 최소 40 일, 그리고 12 개월을 넘지 않을 만큼 미리 공표한 경우

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대한 2 차 또는 후속 공고를 공표하는 경우, 또는

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그러한 기간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5. 조달기관은 제 3 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5 일씩 단축할 수 있다.

가. 조달예정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나. 모든 입찰서류가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일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6. 제4항과 연계하여 제5항의 원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이 조달예정공고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미만인 되도록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7. 이 조의 그 밖의 모든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을 13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조달기관은 조달예정공고와 입찰서류를 모두 동시에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해야 한다. 그 조달기관은 또한 상업적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입찰서를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을 10일 이상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다.

8. 부속서 14-가의 조달기관이 모든 또는 제한된 숫자의 적격 공급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 기간은 조달기관과 선정된 공급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4.10조

예정된 조달에 관한 정보

입찰서류

1. 조달기관은 조달에 참가하는 데 관심 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응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 서류를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한다.

2. 조달예정공고에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포함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 그리고 기술규격, 적합성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를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건

나. 공급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정적 보증, 정보 및 서류를 포함한 공급자의 모든 참가조건

다. 계약 낙찰에서 고려될 모든 평가 기준, 그리고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

라.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실시할 경우, 평가 기준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 경매 수행의 근거가 되는 규칙

마.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 권한이 있는 인물

바. 지불조건 및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은 입찰서 제출 수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조건

사.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일자, 그리고

아.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제출과 관련되는 그 밖의 요건

3. 조달기관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신속하게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보다 이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조달기관이 입찰 절차에서 외국어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언어 중 하나는 영어이다.

기술규격

5. 조달기관은 양 당사국 간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

6.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할 때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명시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규격을 그러한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한다.

7. 기술규격에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이 사용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조달의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시키는 동등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임을 적시한다.

8. 조달기관은, 조달의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기관은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9.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을 위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해당 조달에 상업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인으로부터, 경쟁을 미리 배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방식으로 구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은 이 조에 따라 천연자원의 보전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다.

수정

11. 조달기관이 계약의 낙찰 전에 조달예정공고 또는 참가한 공급자에게 제공한 입찰서류에 규정한 기준 또는 기술요건을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하거나 재발행하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그러한 모든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전달한다.

가. 정보의 수정, 개정 또는 재발행 시 참가한 모든 공급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전달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공급자가 적절하게 수정하여 개정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전달한다.

제 14.11 조

제한입찰

1. 조달기관이 공급자 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규정을 이용하지 않는 한,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입찰을 이용할 수 있고 제 14.6 조부터 제 14.9 조까지, 제 14.10 조 제 1 항부터 제 14.10 조 제 4 항까지, 제 14.12 조부터 제 14.14 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가. 입찰서류의 요건이 상당 부분 수정되지 않는 한, 다음의 경우

-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거나 입찰참가를 요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 2) 입찰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의 이유로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 요건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인 경우
-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 권리의 보호, 또는

- 3) “인적 신뢰에 기초한” 서비스 조달과 같은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가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 1)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기존의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비와의 상호 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 2) 그러한 구분이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중복을 초래할 경우

라. 엄밀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을 이용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마. 원자재 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바.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 개발은 현장시험 결과를 포함하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수용할만한 품질 기준으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한적 생산이나 공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상업성을 확립하거나 연구 및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 청산, 법정관리 또는 파산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처분의 경우에 매우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만, 일반적인 공급자로부터의 통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 1) 경연대회가 특히,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와 관련하여 이 장의 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을 경우, 그리고
-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하여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자. 최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입찰서류 원본의 목적 내에 있는 추가적인 건설 서비스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 서류에 기술된 건설 서비스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러한 경우, 추가 건설 서비스에 낙찰된 계약의 총 가액은 최초 계약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 1 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다.

가. 조달기관의 명칭

나.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또는 보고 시 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 가액, 그리고

다.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한 제 1 항에 기술된 상황과 조건을 적시하는 문안

제 14.12 조

전자 경매

조달기관은 전자 경매를 이용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려는 경우, 전자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참가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 가.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 기준에 기초하고 경매 과정에서 자동 순위 또는 순위 재조정에 사용될 수학적 공식을 포함한 자동 평가 방법
- 나.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기준으로 계약이 낙찰될 경우, 그 입찰서의 요소에 대한 모든 최초 평가 결과, 그리고
- 다. 경매 수행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제 14.13 조

협상

1.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조달기관이 협상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가. 그 기관이 제14.6조에 따라 요구되는 조달예정공고에서 협상을 수행할 의향이 있다고 적시한 경우, 또는
 - 나. 평가를 통하여,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특정 평가기준에 비추어 명백하게 가장 유리한 입찰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경우
2. 조달기관은
 - 가. 협상에 참가하는 공급자의 탈락이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됨을 보장한다. 그리고

- 나. 협상이 타결된 경우, 양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마감시한이 제공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참가 공급자에게 새로운 또는 개정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공통적인 마감시한을 제시한다.

제 14.14 조

입찰서의 취급 및 계약의 낙찰

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조달기관은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접수, 개찰 및 취급한다.
2. 조달기관은 최소한 입찰서 개찰 전까지 모든 입찰서를 비밀로 취급한다. 특히, 조달기관은 특정 공급자에게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3. 조달기관은 입찰서의 접수가 오로지 그 조달기관의 잘못된 취급 때문에 지체된 경우, 입찰서 접수에 대하여 명시된 시각 후에 접수된 입찰서의 공급자를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4. 조달기관이 입찰서의 개찰과 계약의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계약의 낙찰

5. 조달기관은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되고, 개찰 시 공고 및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준수하며, 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6. 조달기관이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조달기관은,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조달기관이 판단한 공급자로서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

7. 조달기관이 제출된 그 밖의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8. 조달기관은 이 장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적용대상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약을 해지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14.15조

낙찰 후 정보

1.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조달기관의 낙찰 결정을 신속하게 알리며,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다. 조달기관은, 요청에 따라,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 및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을 제공한다.

2. 조달기관은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각 계약의 낙찰 후 72일 이내에, 부속서 14-가

에 포함된 양허표에 열거된 적절한 서면 또는 전자 매체에 공고를 공표한다. 그 기관이 그 공고를 전자 매체에만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공고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나.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다. 낙찰자의 이름 및 주소

라. 낙찰금액 또는 계약의 낙찰에 고려된 최고 및 최저 청약

마. 낙찰일 또는 계약일, 그리고

바. 사용된 조달방법의 종류 및 제14.11조에 따라 제한입찰이 이용된 경우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3. 각 조달기관은 계약 낙찰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다음을 보존한다.

가. 제14.11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입찰 절차 및 낙찰의 서류와 보고서, 그리고

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적용대상조달 행위의 적절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제14.16조 정보의 공개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과 상대적 이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달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그 정보의 발표가 향후의 입찰에서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경우, 그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협의하여 합의한 후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2.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비밀정보의 공개가 법 집행을 방해하게 되거나,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거나, 특정한 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지식재산의 보호를 포함한다)을 저해하게 되거나, 또는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될 경우, 당사국(조달기관, 당국 및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에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4.17조

국내 심의 절차

1. 각 당사국은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다음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를 제공한다.

가. 이 장의 위반, 또는

나. 공급자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장의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의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 조치의 준수 실패

모든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규정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2.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제1항에 언급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는 공급자의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그 조달을 수행하는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은 조달기관과 공급자가 협의를 통해 문제제기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장려한다. 그 조달기관은 그 공급자의 진행 중인 또는 향후의 조달 참가, 또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상 시정 조치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문제제기를 공평하고 시기적절하게 검토한다.

3. 각 공급자는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부여 받으며, 이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이의제기의 근거가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졌어야 했던 때부터 10일 이상이다.

4. 각 당사국은 비차별적이고, 시기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당사국의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문제제기를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접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유지한다.

5. 제4항에 언급된 당국 외의 기구가 이의제기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 당사국은 공급자가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는 조달을 집행한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최초 결정을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법원이 아닌 심의기구는 사법적 심의의 대상이 되거나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가진다.

가. 조달기관은 이의제기에 서면으로 응답하고 심의기구에 모든 관련 서류를 공개한다.

나. 절차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는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기구의 결정 전에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다. 참가자는 대표되고 동반될 권리를 가진다.

- 라. 참가자는 모든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 마. 참가자는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 바. 공급자 이의제기에 관련된 결정 또는 권고는 각 결정 또는 권고의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시기적절하게 제공된다.
7.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공급자의 기회를 보존하는 신속한 잠정조치 그러한 잠정조치는 조달 절차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익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 나. 심의기구가 이 장의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입찰 준비 비용 또는 이의제기와 관련된 비용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로 제한될 수 있는,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정정 행위 또는 보상

제14.18조

적용범위의 정정 및 수정

1.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조달 적용범위를 수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 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나. 수정 전에 존재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정 제안을 통보에 포함한다.

2. 제1항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보상조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가. 해당 수정이 사소한 개정 또는 순전히 형식적인 성질의 정정인 경우, 또는

나. 제안된 수정이 당사국이 조달기관에 대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3. 다른 쪽 당사국이

가. 제1항나호에 따라 제안된 조정이 상호 합의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하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 제안된 수정이 제2항가호에 따른 사소한 개정 또는 정정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 제안된 수정이 제2항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조달기관에 대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 다음 날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20장(분쟁해결)의 목적을 포함하여 조정 또는

제안된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3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제안된 수정, 정정 또는 사소한 개정에 합의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14-가를 수정함으로써 그 합의에 효력을 부여한다.

제14.19조 정부조달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적용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평가하고, 양 당사국에 적절한 활동을 권고한다.

나. 협력활동을 조정한다.

다. 양 당사국이 제시하는 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그리고

라.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협상을 고려한다.

3. 위원회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회합한다.

4. 회합은 필요에 따라 전화,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제14.20조

추가 협상

이 협정의 발효 후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합의된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접근 적용 범위에 대하여 비당사국에 추가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호혜와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14.21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에 따라 각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해를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정부조달 정보 및 관련 전문가 교류

나. 정부조달에 대하여 기술적 표준화의 촉진 및 증진

다. 정부조달제도에서 전자적 통신의 개발 및 이용

라.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하여 공급자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그리고

- 마. 조달 관련 공고를 위한 영어를 포함하여 역량강화 및 조달기회에 대한 다국어 접근의 촉진

제14.22조

소상공인·중소기업³의 참여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입찰절차에의 공동 참여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급자 간,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간 사업 협력의 중요성을 또한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특수한 필요성에 집중하여 정부조달 절차, 방법 및 계약요건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하도록 노력한다.

제14.23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규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³ 에콰도르의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서민연대경제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란 비정부적 목적을 위하여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상업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한 청약의 대상이 되고, 비정부 구매자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참가조건이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등록, 자격심사 및 그 밖의 선행조건을 말한다.

건설 서비스란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이하 "CPC"라 한다) 중분류 51에 근거하여,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 경매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 기준과 관련된 계량화가 가능한 입찰의 비가격 요소에 대한 새로운 가치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공급자가 제시하기 위하여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수반하고, 그 결과로 입찰 순위 또는 순위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복적 과정을 말한다.

서면으로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그리고 사후에 통지 가능한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과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치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법, 규정, 절차, 행정 지침이나 관행 또는 조달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유자격자 명부란 조달기관이 그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결정하여 그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활용하려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한다.

조달예정공고란 조달기관이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또는 둘 모두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재료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조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조달기관이란 당사국의 부속서 14-가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적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인정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적격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요청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건설 서비스를 포함한다.

표준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않은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

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다룰 수 있다.

공급자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 1)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규정한 것, 또는
- 2)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부속서 14-가

적용범위

제 1 절 중앙정부기관

가. 한국 양허표

제14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된다.

상품

기준가: 130,000 특별인출권 (이하 “SDR” 이라 한다)

서비스

기준가: 130,000 SDR

건설 서비스

기준가: 5,000,000 SDR

기관 목록

1. 감사원
2. 국무조정실
3. 국무총리실
4. 기획재정부
5. 교육부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외교부
8. 통일부
9. 법무부
10. 국방부
11. 행정안전부(제14.3조에 규정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12. 문화체육관광부
13. 농림축산식품부
14. 산업통상자원부
15. 보건복지부
16. 환경부
17. 고용노동부

18. 여성가족부
19. 국토교통부
20. 해양수산부
21. 중소벤처기업부
22. 공정거래위원회
23. 금융감독원
24. 국민권익위원회
25. 방송통신위원회
26. 국가인권위원회
27. 인사혁신처
28. 법제처
29. 국가보훈부
30. 식품의약품안전처
31. 국세청
32. 관세청
33. 조달청(주해3)
34. 통계청
35. 검찰청

- 36. 병무청
- 37. 방위사업청
- 38. 경찰청(제14.3조에 규정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 39. 문화재청
- 40. 농촌진흥청
- 41. 산림청
- 42. 특허청
- 43. 기상청
- 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45. 해양경찰청(제14.3조에 규정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 46. 소방청

제1절에 대한 주해

- 1. 위의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들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 2. 제14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조달청이 제1절 및 제2절(한국 양허표)에 열거된 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기관의 적용범위 및 기준가가 적용된다.

나. 에콰도르 양허표

이 협정의 제14장은 제9절에 따라 조달가액이 아래의 상응하는 기준가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추정된 경우, 아래에 기재된 상품, 서비스 및 건설 서비스에 관하여 이 부속서에 언급된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된다.

상품

기준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260,000 SDR 그리고 그 후 130,000 SDR

서비스

기준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260,000 SDR 그리고 그 후 130,000 SDR

건설 서비스

기준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6,000,000 SDR 그리고 그 후 5,000,000 SDR

중앙정부

1. 대통령실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2. 부통령실 (Vicepresidente de la República)

국가사무국

1. 국가기획사무국 (Secretaría Nacional de Planificación)
2. 고등교육, 과학, 기술 및 혁신 사무국 (Secretaría de Educación Superior, Ciencia, Tecnología e Innovación)
3. 어린이의 영양실조없는 성장을 위한 에콰도르 기술사무국 (Secretaría Técnica Ecuador Crece Sin Desnutrición Infantil)
4. 인권사무국 (Secretaría de Derechos Humanos)

부처⁴

1. 농림축산부 (Ministerio de Agricultura y Ganadería)
2. 생산통상투자수산부 (Ministerio de Producción, Comercio Exterior, Inversiones y Pesca)
3. 환경수자원생태전환부 (Ministerio del Ambiente, Agua y Transición Ecológica)
4. 문화유산부 (Ministerio de Cultura y Patrimonio)
5. 국방부 (Ministerio de Defensa Nacional)
6. 체육부 (Ministerio del Deporte)
7. 도시개발주택부 (Ministerio de Desarrollo Urbano y Vivienda)

⁴ 모든 부처, 그 종속 및 부속 기관, 기관 또는 행정 기관은 제 3 절에 열거된 기관을 제외하고 적용대상이 된다.

8. 경제재정부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9. 경제사회통합부 (Ministerio de Inclusión Económica y Social)
10. 내무부 (Ministerio del Interior)
11. 국무부 (Ministerio de Gobierno)
12. 외교이민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y Movilidad Humana)
13. 노동부 (Ministerio del Trabajo)
14. 공중보건부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15. 통신 및 정보사회부 (Ministerio de Telecomunicaciones y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16. 교통 및 공공사업부 (Ministerio de Transporte y Obras Públicas)
17. 관광부 (Ministerio de Turismo)
18. 교육부 (Ministerio de Educación)
19. 에너지 및 비재생천연자원부 (Ministerio de Energía y Recursos Naturales No Renovables)

금융기관

1. 에콰도르 B.P 개발은행 (Banco de Desarrollo del Ecuador B.P)
2. 바네콰도르 B.P (Banecuador B.P)
3. 국가금융공사 (Corporación Financiera Nacional, CFN)
4. 서민연대금융공사 (Corporación Nacional de Finanzas Populares y Solidarias, CONAFIPS)
5. 에콰도르 사회보장연구소 은행 (Banco del Instituto Ecuatoriano de Seguridad Social, BIESS)
6. 에콰도르 중앙은행 (Banco Central del Ecuador)

그 밖의 기관

1. 국가위기관리대응청 (Servicio Nacional de Gestión de Riesgos y Emergencias)
2. 전략정보센터 (Centro de Inteligencia Estratégica)
3. 국가조달청 (Servicio Nacional de Contratación Pública, SERCOP)
4. 국세청 (Servicio de Rentas Internas, SRI)
5. 에콰도르 관세청 (Servicio Nacional de Aduana del Ecuador, SENA E)
6. 민간항공총국 (Dirección General de Aviación Civil)
7. 시민 등기, 신원 확인 및 인증총국 (Dirección General del Registro Civil, Identificación y Cedulación)
8. 항만청 (Autoridad Portuaria)

그 밖의 정부 기관

1. 국회 (Asamblea Nacional)
2. 사법위원회 (Consejo de la Judicatura)
3. 선거위원회 (Consejo Nacional Electoral)
4. 헌법재판소 (Corte Constitucional)
5. 시민참여 및 사회규제 위원회 (Consejo de Participación Ciudadana y Control Social)
6. 선거분쟁재판소 (Tribunal Contencioso Electoral)
7. 지방 검찰청 (Fiscalía General del Estado)
8. 국선변호인 (Defensoría Pública)
9. 행정감찰관 (Defensoría del Pueblo)

10. 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del Estado)
11. 검찰청(Procuraduría General del Estado)
12. 우수 고등교육 보장 위원회(Consejo de Aseguramiento de la Calidad de la Educación Superior, CACES)
13. 회사, 증권 및 보험 감독원(Superintendencia de Compañías, Valores y Seguros)
14. 서민연대경제감독원(Superintendencia de Economía Popular y Solidaria)
15. 시장지배력규제감독원(Superintendencia de Control del Poder del Mercado)
16.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
17. 통신규제감독청(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de las Telecomunicaciones)
18. 에콰도르 사회보장연구소(Instituto Ecuatoriano de Seguridad Social, IESS)
19. 물규제감독청(Agencia de Regulación y Control del Agua)
20. 육군 공병대(Cuerpo de Ingenieros del Ejército)(평시 토목 공사 절차에만 해당)

교육기관

1. 벤자민 카리온 에콰도르 문화원(Casa de la Cultura Ecuatoriana “Benjamín Carrión”)
2. 육군폴리테크닉학교(Escuela Politécnica del Ejército)
3. 국립폴리테크닉학교(Escuela Politécnica Nacional)
4. 마누엘 펠릭스 로페즈 마나비 농업고등폴리테크닉학교(Escuela Superior Politécnica Agropecuaria de Manabí “Manuel Félix López”)
5. 침보라소 고등폴리테크닉학교(Escuela Superior Politécnica del Chimborazo)
6. 리토랄 고등폴리테크닉학교(Escuela Superior Politécnica del Litoral)
7. 에콰도르 농업대학교(Universidad Agraria del Ecuador)

8. 에콰도르 센트럴대학교(Universidad Central del Ecuador)
9. 과야킬 대학교(Universidad de Guayaquil)
10. 아마존 주립대학교(Universidad Estatal Amazónica)
11. 볼리바르 주립대학교(Universidad Estatal de Bolívar)
12. 쿠엥카 대학교(Universidad de Cuenca)
13. 밀라그로 주립대학교(Universidad Estatal de Milagro)
14. 마나비 남부 주립대학교(Universidad Estatal del Sur de Manabí)
15. 산타엘레나반도 주립대학교(Universidad Estatal Península de Santa Elena)
16. 마나비 라이카 엘로이 알파로 대학교(Universidad Laica Eloy Alfaro de Manabí)
17. 침보라소 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Chimborazo)
18. 로하 국립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de Loja)
19. 카르치 주립폴리테크닉대학교(Universidad Politécnica Estatal del Carchi)
20. 암바토 기술대학교(Universidad Técnica de Ambato)
21. 바바호요 기술대학교(Universidad Técnica de Babahoyo)
22. 코토팍시 기술대학교(Universidad Técnica de Cotopaxi)
23. 마찰라 기술대학교(Universidad Técnica de Machala)
24. 마나비 기술대학교(Universidad Técnica de Manabí)
25. 퀘베도 기술대학교(Universidad Técnica de Quevedo)
26. 북부 기술대학교(Universidad Técnica del Norte)
27. 에스메랄다스 루이스 바르가스 토레스 기술대학교(Universidad Técnica Luis Vargas Torres de Esmeraldas)
28. 고등국립연구소(Instituto de Altos Estudios Nacionales, IAEN)
29. 야차이 실험기술연구대학교(Universidad de Investigación de Tecnología Experimental Yachay)

제1절에 대한 주해

이 협정의 제14장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국무부(Ministerio de Gobierno), 내무부(Ministerio del Interior) 및 전략정보센터(Centro de Inteligencia Estratégica): 국방 및 공공안전에 필요한 전략적 성격의 상품 조달 및 삼군합동사령부(Comando Conjunto de las Fuerzas Armadas), 육군(Ejército Nacional), 해군(Armada Nacional), 에콰도르 공군(Fuerza Aérea Ecuatoriana) 및 경찰(Policía Nacional)을 위한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제2절(식료품·음료 및 담배, 섬유·의류 및 가죽 제품)에 분류된 상품의 조달
2. 경제사회통합부, 도시개발주택부, 교육부 및 이들에 종속 또는 부속되거나 조정되는 기구, 기관 또는 행정기관: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건설을 위한 서비스, 교육 자료의 초안 작성, 디자인, 인쇄, 편집 및 출판과 교복 구매
3. 경제사회통합부 및 이에 종속 또는 부속되거나 조정되는 기구, 기관 또는 행정기관: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제2절(식료품·음료 및 담배, 섬유·의류 및 가죽 제품)에 규정된 제품의 조달
4. 농림축산부,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및 이들에 종속 또는 부속되거나 조정되는 기구, 기관 또는 행정기관: 농업 지원 프로그램 및 식량 원조와 관련된 식료품, 농업 투입물 및 살아있는 동물의 조달
5. 선거위원회 : 선거 및 공공 협의의 준비 및 조직을 위한 조달

제2절 지방정부기관

가. 한국 양허표

제14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지방정부기관에 적용된다.

상품

기준가: 200,000 SDR 그룹 A

400,000 SDR 그룹 B

서비스

기준가: 200,000 SDR 그룹 A

400,000 SDR 그룹 B

건설 서비스

기준가: 15,000,000 SDR

지방정부기관

1. 그룹 A

- 1.1. 서울특별시
- 1.2. 부산광역시
- 1.3. 대구광역시
- 1.4. 인천광역시
- 1.5. 광주광역시
- 1.6. 대전광역시
- 1.7. 울산광역시
- 1.8. 경기도
- 1.9. 강원도
- 1.10. 충청북도
- 1.11. 충청남도
- 1.12. 전라북도
- 1.13. 전라남도
- 1.14. 경상북도
- 1.15. 경상남도
- 1.16. 제주특별자치도

2. 그룹 B

- 2.1. 서울특별시 내 지방정부
 - 2.1.1. 종로구
 - 2.1.2. 중구
 - 2.1.3. 용산구
 - 2.1.4. 성동구
 - 2.1.5. 광진구

- 2.1.6. 동대문구
- 2.1.7. 중랑구
- 2.1.8. 성북구
- 2.1.9. 강북구
- 2.1.10. 도봉구
- 2.1.11. 노원구
- 2.1.12. 은평구
- 2.1.13. 서대문구
- 2.1.14. 마포구
- 2.1.15. 양천구
- 2.1.16. 강서구
- 2.1.17. 구로구
- 2.1.18. 금천구
- 2.1.19. 영등포구
- 2.1.20. 동작구
- 2.1.21. 관악구
- 2.1.22. 서초구
- 2.1.23. 강남구
- 2.1.24. 송파구
- 2.1.25. 강동구

2.2. 부산광역시 내 지방정부

- 2.2.1. 중구
- 2.2.2. 서구
- 2.2.3. 동구
- 2.2.4. 영도구

- 2.2.5. 부산진구
- 2.2.6. 동래구
- 2.2.7. 남구
- 2.2.8. 북구
- 2.2.9. 해운대구
- 2.2.10. 사하구
- 2.2.11. 금정구
- 2.2.12. 강서구
- 2.2.13. 연제구
- 2.2.14. 수영구
- 2.2.15. 사상구
- 2.2.16. 기장군
- 2.3. 인천광역시 내 지방정부
 - 2.3.1. 중구
 - 2.3.2. 동구
 - 2.3.3. 미추홀구
 - 2.3.4. 연수구
 - 2.3.5. 남동구
 - 2.3.6. 부평구
 - 2.3.7. 계양구
 - 2.3.8. 서구
 - 2.3.9. 강화군
 - 2.3.10. 옹진군

제2절에 대한 주해

1. 위의 지방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제14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에콰도르 양허표

이 협정의 제14장은 제9절에 따라 조달가액이 아래의 상응하는 기준가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추정된 경우, 아래에 기재된 상품, 서비스 및 건설 서비스에 관하여 이 부속서에 언급된 지방정부기관에 적용된다.

상품

기준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350,000 SDR 그리고 그 후 200,000 SDR

서비스

기준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350,000 SDR 그리고 그 후 200,000 SDR

건설 서비스

기준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6,000,000 SDR 그리고 그 후 5,000,000 SDR

지방정부기관

모든 지방자치정부(Gobiernos Autónomos Provinciales)를 포함한다.

모든 도시자치정부(Gobiernos Autónomos Municipales)를 포함한다.

제2절에 대한 주해

이 협정의 제14장은 교구자치정부(the Gobiernos Autónomos Parroquiales)에 의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절

그 밖의 기관

가. 한국 양허표

제14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그 밖의 정부기관에 적용된다.

상품

기준가: 400,000 SDR

서비스

기준가: 400,000 SDR

건설 서비스

기준가: 15,000,000 SDR

그 밖의 기관

1. 한국산업은행
2. 기업은행
3. 한국조폐공사

4. 한국전력공사(HS 번호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 범주에 해당되는 물품의 구매는 제외함)(주해3)
5. 대한석탄공사
6. 한국광해광업공단
7. 한국석유공사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한국도로공사
1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 한국관광공사
15. 근로복지공단
16. 한국가스공사(주해3)
17. 한국철도공사

제3절에 대한 주해

1. 제14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4장은 조달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조달계약에 부수적인 운송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4장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에 의한 다음의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NS/W/120	CPC 코드	설명
1.A.e.	8672	엔지니어링서비스
1.A.f.	8673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
1.B.	84	컴퓨터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1.F.e.	86761	성분·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1.F.e.	86764	기술 검사 서비스
1.F.m.	8675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8866	철 제품, 기계류 및 장비에 부수적인 수리 서비스
1.F.c.	865	경영 자문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2.C.	7523	통신 서비스(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포함)

나. 에콰도르 양허표

이 협정의 제14장은 제9절에 따라 조달가액이 아래의 상응하는 기준가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추정된 경우, 아래에 기재된 상품, 서비스 및 건설 서비스의 조달에 관하여 이 부속서에 열거된 기관에 적용된다.

상품

기준가: 400,000 SDR

서비스

기준가: 400,000 SDR

건설 서비스

기준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6,000,000 SDR 그리고 그 후 5,000,000 SDR

조달기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제14장은 아래에 열거된 공공사업체에 적용된다.

A. 행정부의 공공사업체

1. 에콰도르 해군조선소(Astilleros Navales Ecuatorianos-ASTINAVE EP)
2. 에콰도르 전기공사(Corporación Eléctrica del Ecuador-CELEC EP)
3. 통신공사(Corporación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CNT EP)
4. 광산공사(Empresa Nacional Minera-ENAMI EP)
5. 에콰도르 탄화수소공사(Empresa Pública de Hidrocarburos del Ecuador EP-PETROECUADOR)
6. 혁신마케팅공사(Empresa Pública de Innovación y Comercialización INVENTIO-ESPOL EP)
7. 에콰도르 석유공사(Empresa Pública Flota Petrolera Ecuatoriana-EP FLOPEC)
8. 에콰도르 해상 운송(Transportes Navieros Ecuatorianos)
9. 전력공사(Empresa Eléctrica Pública Estratégica Corporación Nacional de Electricidad-CNEL EP)
10. 암바토전기회사(Empresa Eléctrica Ambato Regional Centro Norte S.A.)
11. 리오밤바전기회사(Empresa Eléctrica Riobamba)
12. 코토팍시지방전기회사(Empresa Eléctrica Provincial Cotopaxi S.A. ELEPCOSA)
13. 북부지역전기회사(Empresa Eléctrica Regional Norte S.A.)
14. 남부지역 전기회사(Empresa Eléctrica Regional del Sur S.A.)
15. 중남부지역전기회사(Empresa Eléctrica Regional Centro Sur C.A.)
16. 아조게스전기회사(Empresa Eléctrica Azogues C.A.)
17. 히드로미라 카르치(Hidromira Carchi EP)
18. 공항서비스 및 경제자유구역·특별제도 관리 도시공사(Empresa Pública de Servicios Aeroportuarios y Gestión de Zonas Francas y Regímenes Especiales)

19. 과야킬공항당국(Autoridad Aeroportuaria de Guayaquil)
20. 도시청소공사(Empresa Pública Metropolitana de Aseo)
21. 도시교통·공공사업공사(Empresa Pública Metropolitana de Movilidad y Obras Públicas)
22. 도시식수·위생공사(Empresa Pública Metropolitana de Agua Potable y Saneamiento)
23. 암바토식수·하수도시립공사(Empresa Municipal de Agua Potable y Alcantarillado de Ambato)
24. 푸질리식수·하수도시립공사(Empresa Pública Municipal de Agua Potable y Alcantarillado de Pujili)
25. 리오밤바식수·하수도시립공사(Empresa Municipal de Agua Potable y Alcantarillado de Riobamba EP-EMAPAR)
26. 페드로몬카요칸톤식수·기본위생시립공사(Empresa Pública Municipal de Agua Potable y Saneamiento Básico del Cantón Pedro Moncayo-EMASA-PM)
27. 쿠엥카청소시립공사(Empresa Municipal de Aseo de Cuenca)
28. 과야킬전기공사(Empresa Eléctrica Pública de Guayaquil EP)
29. 에콰도르 우편서비스공사(Empresa Pública Servicios Postales del Ecuador SPE EP)
30. 코카코도싱클레이수력발전소(Hidroeléctrica Coca Codo Sinclair-COCASINCLAIR EP)
31. 리토랄수력발전소(Hidroeléctrica del Litoral-HIDROLITORAL EP)
32. 히드로에스폴(HIDROESPOL EP)
33. 공공부문부동산관리청(Servicio de Gestión Inmobiliaria del Sector Público-INMOBILIAR)
34. 에콰도르 통신공사(Empresa Pública de Comunicación del Ecuador-

COMUNICA EP)

35. 히드로아고얀(Hidroagoyán S.A.)

제3절에 대한 주해

아래 열거된 기관에 대하여, 승계기관이 설립된 경우, 그 기관은 제3절의 적용대상이다.

1. 에콰도르 시멘트공사(Empresa Pública Cementera del Ecuador EP1)
2. 에콰도르 전략개발공사(Empresa Pública de Desarrollo Estratégico Ecuador — ESTRATEGICO EP)
3. 에콰도르 타메항공공사(Empresa Pública TAME Línea Aérea del Ecuador— TAME EP)
4. 의약품공사(Empresa Pública de Fármacos ENFARMA EP)
5. 에콰도르 철도공사(Ferrocarriles del Ecuador Empresa Pública—FEEP)
6. 야차이 EP(Yachay EP)
7. 에콰도르 제조공사(Fabricamos Ecuador EP)
8. 국가비축본부(Unidad Nacional de Almacenamiento EP)
9. 교통기술공사(Empresa Pública Técnica Vehicular)

제4절

상품

가. 한국 양허표

1. 제14장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 조달에 적용된다.

2.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의한 조달의 경우, 제14장은 다음의 군급번호(FSC) 분류품목에만 적용된다.

FSC	참조번호	설명
1	2510	차량의 운전실, 차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2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3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4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5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6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7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8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9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10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부수품
11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12	3416	선반
13	3417	절삭기
14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15	4110	냉장장비

16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17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온수기
18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19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수공구
20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21	5530	합판 및 단판
22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문 및 구성품
23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24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25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26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용
27	6505	약품 및 생물체제
28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29	6840	살충소독제
30	6850	각종 특수화학물
31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32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33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34	7350	식탁용 식기
35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36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37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38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39	8110	드럼 및 깡통
40	9150	기름 및 윤활유: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41	9310	종이와 판지

나. 에콰도르 양허표

이 협정의 제14장은 제1절, 제2절 및 제3절 각각의 주해 및 제7절의 추가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제4절에 대한 주해

이 협정의 제14장은 연구 및 개발 서비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조달 또는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의 다음 분류 내 상품의 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중분류 12 원유 및 천연가스
2. 소분류 333 석유
3. 소분류 334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4. 소분류 341 기초 유기화학물

제5절

서비스

가. 한국 양허표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음의 서비스는 적용대상이 된다.

GNS/W/120	CPC	설명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서비스
1.A.d.	8671	건축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서비스
1.A.f.	8673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1.B.a.	841	컴퓨터설비 설치관련 자문 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1.B.c.	843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1.B.d.	844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1.B.e.	845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E.a.	83103	선박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b.	83104	항공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기기(15인승 미만의 승용차로 한정함)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d.	83106, 83108, 83109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83107	건설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 대행 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컨설팅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1.F.e.	86761*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로 한정함)
	86764	기술 검사 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8814*	임업 부수 서비스(공중 소화 및 병해충 방제는 제외함)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 86752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장비의 유지 및 보수
1.F.p.	875	사진 서비스
1.F.q.	876	포장 서비스
1.F.r.	88442*	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아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1.F.s.	87909*	속기 서비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1.F.t.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함)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는 제외함)
2.D.e.	—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6.B.	9402*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업 서비스는 제외한 서비스)
	9406*, 9409*	환경분야 시험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함)
9.A	641	호텔 및 그 밖의 숙박 서비스
9.A	642	음식 제공 서비스
9.A	6431	오락을 제공하지 않는 음료 제공 서비스(CPC 6431의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함)
9.B	7471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정부 운송요청은 제외함)
11.A.b.	7212*	카보타지는 제외한 국제운송
11.A.d.	8868*	선박의 정비 및 수리
11.F.b.	71233*	카보타지는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11.H.c	748*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 해운대리업 서비스 -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 해운중개 서비스 - 항공화물 운송 대리업 서비스 - 통관 서비스
11.I.	-	철도 운송을 위한 화물 주선

제5절에 대한 주해

별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정된 조건부 양허안에
자세히 기재된 대로 “일부분”을 가리킨다.

나. 에콰도르 양허표

이 협정의 제14장은 이 부속서에 명시된 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에 따라 적시되고, 제1절, 제2절 및 제3절 각각의 주해 및 제7절의 추가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대상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참조번호
도로운송서비스	712,744, 87304
해상운송서비스	721, 745
철도운송서비스	711, 743
파이프라인 운송	713
내륙수상운송	722
통신서비스	752, 7512, 754
유지 및 보수 서비스	633, 6122, 886, 6112
호텔	641, 643
전기공급서비스 및 본관을 통한 가스공급서비스	691
항공 운송 서비스	73, 746 [세분류 7321(항공우편운송) 그리고 7462 (항공교통관제서비스) 제외]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741,742,748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	7471
보험 및 연금기금에 대한 부수 서비스	814
운영자만 동반하지 않는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83106, 83107, 83108, 83109
개인 및 가정 물품 관련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83202, 83203, 83204, 83209
컴퓨터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841, 843, 844, 845, 849

부기서비스	8622
세무서비스	863
시장조사서비스	86401
경영 자문 관련 서비스	866 [세세분류 86602(중재 및 조정서비스) 제외]
종합엔지니어링서비스	8673(15년 후)
광고서비스	871(10년 후)
건물청소서비스 및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부동산서비스	874, 822
농업, 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어업 부수 서비스, 광업 부수 서비스, 제조업 부수 서비스(기계류 및 기기와 같은 금속제품의 제조는 제외)	881, 882, 883, 884
포장서비스, 인쇄 및 출판서비스	876, 88442
그 밖의 사업서비스	8790 (87901, 87902 제외)
수의서비스	932
환경 서비스: 배기가스정화서비스, 소음저감서비스,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	9404, 9405, 9406, 9409

제6절

건설 서비스

가. 한국 양허표

제14장은 제1절, 제2절 및 제3절의 주해와 제7절을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CPC 51에 분류된 모든 건설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6절에 대한 주해

제14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에콰도르 양허표

이 협정의 제14장은 제1절, 제2절 및 제3절의 주해와 제7절을 조건으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고 이 부속서에 명시된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의 중분류 51에 포함된 모든 건설 서비스에 적용된다.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중분류 51 목록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목
대분류 5			건설업 및 건설: 토지
중분류 51			건설업
511			건설 현장에서의 사전 시공 작업
	5111	51110	현장 조사 작업
	5112	51120	철거작업
	5113	51130	현장 조성 및 정리 작업
	5114	51140	채굴 및 땅 고르기 작업
	5115	51150	광업용 부지 조성 작업(F042에 분류된 석유 및 가스 추출용 제외)
	5116	51160	비계작업
512			빌딩관련 건설업
	5121	51210	1가구 및 2가구 주택용
	5122	51220	다가구 주택용
	5123	51230	창고 및 산업 건물용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중분류 51 목록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목
	5124	51240	상업 건물용
	5125	51250	공공위락 건물용
	5126	51260	호텔, 레스토랑 및 이와 유사한 건물용
	5127	51270	교육 건물용
	5128	51280	보건 건물용
	5129	51290	그 밖의 건물용
513			토목 건축공사
	5131	51310	고속도로(고가도로 제외), 도로, 거리, 철도 및 비행장 활주로용
	5132	51320	교량, 고가도로, 터널 및 지하철용
	5133	51330	수로, 항만, 댐 및 그 밖의 수상공사
	5134	51340	장거리 파이프라인, 통신 및 송전선(케이블)용
	5135	51350	로컬 파이프라인 및 케이블, 보조 작업용
	5136	51360	광업용 건설용
	513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건설용
		51371	경기장 및 운동장용
		51372	그 밖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설치작업(예,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장)
	5138	51380	준설서비스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중분류 51 목록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목
	5139	51390	따로 분류되지 않은 토목공사용
514	5140	51400	조립식 건축물의 조립 및 시공
515			전문건설공사
	5151	51510	말뚝박기를 포함한 기초공사
	5152	51520	급수관정
	5153	51530	지붕 및 방수공사
	5154	51540	콘크리트공사
	5155	51550	용접을 포함한 철골공사
	5156	51560	석조공사
	5159	51590	그 밖의 전문건설공사
516			설치작업
	5161	51610	난방, 환기 및 공조공사
	5162	51620	물 배관 및 배수공사
	5163	51630	가스장치공사
	5164		전기작업
		51641	전기배선작업
		51642	화재경보기공사
		51643	도난경보기공사
		51644	안테나공사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중분류 51 목록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목
		51649	그 밖의 전기공사
	5165	51650	보온공사(전기배선, 물, 열, 소리)
	5166	51660	울타리 및 철책공사
	5169		그 밖의 설치작업
		51691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공사
		51699	그 밖의 설치작업
517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5171	51710	유리작업 및 창유리 설치작업
	5172	51720	미장작업
	5173	51730	도장작업
	5174	51740	바닥 및 벽 타일작업
	5175	51750	그 밖의 바닥깔기, 벽면마감 및 도배작업
	5176	51760	나무 및 금속 창호공사 및 목공사
	5177	51770	실내장식공사
	5178	51780	장식공사
	5179	51790	그 밖의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518	5180	51800	운영자를 동반하는 건축이나 토목 공사의 건설 또는 해체용 장비와 관련된 임대 서비스

제6절에 대한 주해

에콰도르의 조달기관은 도로 및 고속도로의 건설, 유지 또는 재건을 위한 건설 서비스를 조달할 때, 비도시 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역의 현지 인력 고용과 관련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절
추가 주해

가. 한국 양허표

1. 제14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항에 대한 조달은 제14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에콰도르 양허표

1. 이 협정의 제14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국방 및 공공안전을 위하여 전략적인 삼군(Fuerzas Armadas), 경찰(Policía Nacional) 또는 전략정보센터(Centro de Inteligencia Estratégica)에 의한 국방 및 공공안전 분야에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나. 소상공인·중소기업 또는 서민연대경제의 구성원을 위하여 유보된 공공조달 프로그램 또는 절차. 다만, 서민연대경제의 구성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여겨지기 위하여 요구되는 동일한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상품의 조달

라. 갈라파고스에 소재한 공공분야 기관에 의한 조달 또는 그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달

마. 에콰도르공화국 외국 공관의 그 운영을 위한 상품, 서비스 또는 건설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또는

바. 에콰도르 기관의 다른 에콰도르 기관으로부터의 조달

2.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열거된 조달기관은 에콰도르 국가조달청(Servicio Nacional de Contratación Pública, SERCOP)이 정의한 방법에 기초하여 수행된 기술 세분화⁵ 연구에 따른 국산 재료의 포함을 위한 의무 요건을 정부 조달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조달 계약의 낙찰을 위한 입찰 절차 참가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된 조건의 형태를 취한다. 조달기관은 조달예정 공고에 국산 재료 조건의 존재를 기재하고 계약 문서에 이를 상세히 명시한다. 그러한 조건은 상품 및 건설 서비스의 조달 절차에만 적용되고 전체 계약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에콰도르가 공급자에게 계약서 서명 시점에 에콰도르에 주소와 법적 대리인을 둘 것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요건은 양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을 따른다.⁶ 에콰도르가 이 협정의 비당사자 또는 비당사인 공급자에게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혜택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한국으로 확대된다.

⁵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기술 세분화란 국가공공조달시스템 기본법(Ley Orgánica del Sistema Nacional de Contratación Pública)의 제 6 조제 10 항에 포함된 정의에 따라, 계약 전 단계에서 계약기관이 당사국의 기술 및 생산 능력을 고려하여 조달 및 그 구성요소의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관련 국가 당국이 규정한 법률 및 방법에 기초하여 수행한 세부 연구를 말한다. 이 절차는 상품 및 건설서비스의 국내공급에 대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기관의 영향력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술 세분화 요건은 입찰서류에 포함된다.

⁶ 주소의 경우, 에콰도르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1999 년 11 월 5 일부터 관보 제 312 호에 공표된 에콰도르 회사법 제 6 조 및 제 415 조와 그 후속 수정 사항에 따른 공공사업의 수행, 공공 서비스의 제공 또는 천연자원의 개발. 에콰도르는 자국의 법과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정주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제8절
공표수단

한국

법률 및 법제: 조달청 www.pps.go.kr

조달기회: 나라장터 www.koneps.go.kr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관보

조달공고: 에콰도르의 조달 사이트

<http://www.compraspublicas.gob.ec> 및/또는 모든 적용대상기관의 공식 웹페이지

제9절

기준가액 및 가액산정

기준가

1.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이 월별 “국제금융통계”에 공표하는 환산율을 사용하여 기준가액을 자국 통화로 환산한다. 환산율은 한국 원화 기준가가 유효하게 되기 전 해의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년 동안의 SDR로 표시한 한국 원화의 일일 가치 평균에 기초한다. 자국통화로 표시된 기준가는 2년 동안 고정된다.

2. 에콰도르는 자국의 국립은행 환산율을 사용하여 기준가액을 자국 통화로 환산한다. 환산율은 개정전 8월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한 24개월 동안의 미국 달러 환율에 대한 SDR의 일일 가치 평균에 기초하고,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기준가는 이 협정의 발효 직후 짝수 해부터 2년 간격으로 조정되며, 각 조정은 1월 1일에 발효한다.

3. 양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가가 발효되기 전에 각국의 통화로 이용 가능한 새롭게 계산한 기준가액을 공개한다.

4. 당사국은 자국 통화로 된 기준가액을 다음과 같이 버릴 수 있다.

가. 한국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는 일백만원 아래, 그리고 건설 서비스는 일천만원 아래, 그리고

나. 에콰도르의 경우, 천달러 아래

제10절

건설·운영·이전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

건설·운영·이전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에 적용 가능한 규칙

1. 건설·운영·이전 계약은 가액이 5,000,000 SDR 이상으로 제1절에 열거된 한국의 기관이 낙찰하는 경우 그리고 가액이 15,000,000 SDR 이상으로 제2절에 열거된 기관이 낙찰하는 경우, 제14.2조제1항부터 제14.2조제3항까지, 제14.3조제1항부터 제14.3조제3항까지, 제14.4조제1항, 제14.4조제2항, 제14.8조제1항부터 제14.8조제3항까지 그리고 제14.17조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2. 공공사업 실시 계약은 이 협정의 발효 후 5년의 기간 동안 가액이 6,000,000 SDR 이상, 그리고 그 후 5,000,000 SDR 이상으로 제1절 및 제2절에 열거된 에콰도르의 기관이 낙찰하는 경우, 제14.2조제1항부터 제14.2조제3항까지, 제14.3조제1항부터 제14.3조제3항까지, 제14.4조제1항, 제14.4조제2항, 제14.8조제1항부터 제14.8조제3항까지 그리고 제14.17조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규정 외에, 실시 계약 또는 건설·운영·이전 계약에 대한 양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은 이에 따라 적용된다.

제15장 경쟁 정책

제15.1조 목적

양 당사국의 무역 관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의 금지, 경쟁 정책의 이행 그리고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믿는다.

제15.2조 경쟁법과 경쟁당국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경쟁적 관행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경쟁법과 규정에 대한 모든 면제가 특히 투명하고 공공정책이나 공익에 근거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각국의 경쟁 정책, 법과 규정을 수립하고 개발하며 이행하기 위한 자국의 자율성을 유지한다.

제15.3조 이행

1. 양 당사국 경쟁당국의 집행 정책은 투명성, 적시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또는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시정조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발언을 하며,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통하여 또는 그 당사국의 독립적인 사법당국에서 제재 또는 시정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구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을 대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위반을 판정하는 모든 최종 결정이 서면으로 제공되며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모든 관련된 사실의 조사 결과와 법적 근거를 기술하도록 보장한다.

제15.4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증진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통보, 협의, 정보교환, 조정 및 기술적인 지원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각국의 경쟁법 및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협력한다.

제15.5조

통보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에 관련된 집행 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그러한 집행 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통보한다.

2. 양 당사국의 법에 반하지 않고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통보는 집행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제15.6조

협의

1.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법에 반하지 않고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2.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은 그 사안이 양 당사국간 시장, 소비자, 무역 또는 투자의 적절한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5.7조

정보교환 및 비밀유지¹

1.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 경쟁당국의 요청에 따라, 각국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는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각 당사국의 비밀유지 규칙과 기준에 합치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한 경쟁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실체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의 국내 법 및 법 제도에 규정된 것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기밀성을 부여한다.

제15.8조

기술 지원

¹ 에콰도르의 경우,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는 자국의 법에 따라 유보된 정보를 포함한다.

1. 양 당사국은 경험 교환, 역량 강화, 그들의 경쟁법과 정책 이행을 위한 기술 및 제도적 역량 강화와 경쟁 문화의 촉진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영역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서로 제공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 및 우선순위와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제15.9조

공기업과 지정독점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과 지정독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양 당사국은 공기업과 지정독점이 각국의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다만, 그러한 법의 적용은 공기업과 지정독점에 부여된 특정 공공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기업과 지정독점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 장의 규정에 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제15.10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15.1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반경쟁적 관행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경쟁의 방해, 제한 또는 왜곡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효과를 유발하는 기업 간 합의 및 기업 단체의 결정
- 나.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적 지위의 남용
- 다. 특히 지배적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각국의 경쟁법에 따른 기업의 합병 또는 그 밖의 구조적 결합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에콰도르의 경우, 시장지배력 통제 관리청 또는 그 승계기관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 나. 에콰도르의 경우, 「규제와 시장지배력 통제 기본법」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 다. 이 협정 발효 후 위에 언급된 법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국이 각국의 경쟁법과 규정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을 위하여 각국의 지역 및 국가 당국에 부여한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6장 노동

제16.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자유무역과 투자가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적 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이하 “국제노동기구 선언”이라 한다) 및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선언(2008)의 원칙을 준수하는 고용조건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공동의 기대를 증진하는 것. 양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관계에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나. 이 장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과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각 당사국의 노동제도, 건실한 노동정책 및 관행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각 당사국의 역량과 능력개선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장려하고 달성하는 것
- 다. 각 당사국 영역 내에서 근로조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며 증진하고 집행하는 것, 그리고
- 라. 상호 관심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하여 논의와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제16.2조 일반원칙

1. 양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으로서의 그들의 의무와 국제노동기구 선언에 따른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각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선언에 기술된 다음의 권리를 자국의 법, 규정 및 그에 따른 관행 내에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나.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철폐

다.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라.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의 철폐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자국의 노동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을 채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상대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 법률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노동 법률의 집행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양 당사국은 이 장에서 양국의 의도가 양국의 노동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양국의 무역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임을 인정한다.

5. 양 당사국은 양국의 역량, 특히 기술적 역량과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이 장에 따른 양국의 약속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6.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작위나 부작위를 통하여, 이 장에 따라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노동법을 포함한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집행 자원의 배

분에 대하여 재량을 행사하고 집행 자원의 할당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7. 면제와 이탈이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불합치할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제1항을 이행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않는다.

8.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법, 규정, 정책 및 관행이 보호무역주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제16.3조

절차적 보장 및 대중 인식

1.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서 자국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자국 노동법의 집행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행정, 준사법, 사법 또는 노동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그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국은 국내적으로 자국의 노동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으로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할 것이고, 자국의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따라 이 장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대중에 알리기에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국의 노동법과 규정상 자신의 권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6.4조

제도적 장치

노동위원회

양 당사국은 노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노동부 또는 그 밖의 관련 부처의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 노동위원회는

- 가. 협력 활동의 합의된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 나. 합의된 협력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 다. 상호 간 관심 있는 노동 사안에 대한 대화의 장으로서 기능한다.
- 라. 이 장의 이행 및 결과를 검토한다.
- 마. 정보 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촉진한다.
- 바.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그리고
- 사. 공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고려한다.

2. 노동위원회는 부속서 16-가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공통의 관심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회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이 장의 범위 내에 있는 그 밖의 모든 문제를 고려할 수 있고, 가능한 신규 협력 분야도 확인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의 업무는 이 장에 따른 약속 및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대화와 효과적인 협력에 기초한다.

5.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질 것이다.

접촉선

6.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노동부 또는 그 밖의 관련 부처로부터 접촉선을 지정한다.

7. 접촉선은 부속서 16-가에 따른 노동에 대한 협력 활동의 조정을 포함하여 노동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대중의 참여

8. 노동위원회와 각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제16.5조

협의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및 적용에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우호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선의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 협의, 정보의 교환 및 협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2.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접

촉선에 제출된 협의 요청의 접수를 한쪽 당사국이 인지한 때부터 60일 내에 개시된다. 양 당사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다.

3.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협의 기간을 결정한다.

4. 한쪽 당사국이 1차 협의 후에 사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노동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 후 90일 이내에 소집되며, 그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노동위원회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결론 및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는 적절한 협력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제공한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협의는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열린다.

8.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16.6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부속서 16-가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개시하고 발전시키기로 약속한다.

부속서 16-가

노동 협력

1.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 간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상호 관심 있는 정책 분야 및 그 효과적 적용

나. 노사관계

다. 근로조건

라. 산업안전보건

마. 직업훈련과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바. 공공 고용서비스

사. 노동통계, 또는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이행될 수 있다.

가. 연구 방문을 포함한 정부 대표단, 전문 직업인, 전문가, 학자 및 강사 간 교류

나. 관련 발간물 및 전문분야 논문의 교환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표준·규정·절차 및 우수 관행에 관한 정보의 교환

다. 공동회의, 세미나, 워크숍, 회의, 훈련 및 대외접촉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의 조직

라. 기술적 도구를 포함하는 협력사업과 시연의 개발

마. 인정된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것을 포함한 공동연구사업, 연구 및 보고에의 참여, 또는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기술적 교류 또는 협력

3. 제2항에 따라 합의된 모든 협력 활동은 이용 가능한 자원뿐만 아니라 각 당사국의 노동 우선순위와 필요를 고려한다. 상호 결정으로 착수한 특정 활동이나 사업도 별도 약정에 문서화 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의 노조와 사용자 또는 그 밖의 인과 단체가 잠재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데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5. 양 당사국은 그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입법적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제17장 환경

제17.1조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이라는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확인하고, 이 목적이 그들의 무역 관계의 모든 수준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이라는 목적과 자국의 국가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상호지지적 무역과 환경정책을 추구하고 자국 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증진한다.
3. 양 당사국은 생물 다양성 및 천연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그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존을 증진하는 데 무역과 무역 정책의 역할을 강화한다.
4. 양 당사국은 양국의 역량, 특히 기술적 및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이 장의 양 당사국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결의를 재확인한다.
5.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법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7.2조 목적

이 장은 특히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 및 현재와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한 무역 관계의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을 증진하는 것, 그리

고

- 나. 이 장의 이행과 상호 관심 있는 환경 문제의 개발에서 무역과 환경 정책 및 관행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것

제17.3조

보호 수준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환경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천연자원에 대한 상대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러한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제17.4조

다자간 환경협정

1. 양 당사국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와 협정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관심 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그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 협정을 각국의 법과 관행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이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고, 부당한 무역장벽을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제17.5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작위나 부작위를 통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환경법 및 규정을 포함한 자국의 환경법 및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환경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의무의 이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조사, 통제 및 국내 환경법 및 규정의 집행과 관련된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합리적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17.6조

절차적 보장

1.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자국 환경법의 집행을 위한 재판소에 적절히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행정, 준사법, 사법 또는 그 밖의 관련 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환경법의 집행을 위한 그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국의 법상 자신의 권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7.7조

투명성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에 따라, 적절한 공지 및 공공 협의,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비국

가 행위자와의 적절하며 적시의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준비, 조정 및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제17.8조

환경에 유익한 무역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환경 보호와 보존에 중점을 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7.9조

생물 다양성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생물 다양성 보전과 그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생물 다양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자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당사국이 사전에 통지한 합의에 따름을 인정하며, 각 당사국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7.10조

기후변화

1. 양 당사국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제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는 국제적 약속의 맥락에서 모든 국가들의 가능한 가장 폭넓은 협력과 효과적이고 적절한 국제적 대응에 대한 그들의 참여를 요

구하는 공동의 국제적 관심사안임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의 긴급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과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에서 무역의 역할을 고려하여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3. 양 당사국은 저탄소·기후탄력적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의 촉진이라는 세계적인 목적을 고려하며,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고 청정에너지 생산과 이용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적응 프로그램·프로젝트를 위한 최적 가용 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접근, 보급 및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무역과 투자 조치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17.11조

환경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부속서 17-가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개시하고 발전시키기로 약속한다.

제17.12조

제도적 장치

1. 양 당사국은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환경부 또는 그 밖의 관련 부처의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가. 협력 활동의 합의된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나. 합의된 협력 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다. 상호 관심 있는 환경 사안에 대한 대화의 장 역할을 한다.

라. 이 장의 이행 및 결과를 검토한다

마. 정보교환을 통한 협의를 촉진한다.

바.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그리고

사. 공동 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을 고려한다.

3. 위원회는 제17.11조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 공동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회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4. 위원회는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그 밖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고, 가능한 신규 협력 분야도 발굴할 수 있으며,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임무상의 그 밖의 조치도 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업무는 이 장에 따른 약속 및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대화·효과적인 협력에 기초한다.

6. 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17.13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부 또는 그 밖의 관련 부처 내에서 환경 사안을 위한 접촉선을 지정한다.

2. 접촉선은 제17.11조와 부속서 17-가에 따른 환경에 대한 협력 활동의 조정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제17.14조

협의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및 적용에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우호적으로 그리고 선의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 협의, 정보의 교환 및 협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2.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그러한 요청서를 전달한 후 60일 내에 양 당사국은 협의를 개시한다.
3.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4. 한쪽 당사국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속히 소집되고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제4항에 따른 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6.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제공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한다. 협의는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열린다.

제17.15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부속서 17-가

환경 협력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협력 분야에 관한 목록을 수립하였으며, 이 목록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이 협정의 틀 내의 환경 사안에서 이루어진 조치와 진전에 대한 대화 수행
- 나. 특히 세계무역기구,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양자,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
- 다. 환경 규정, 규범 및 기준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교환
- 라. 기후변화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력
- 마. 생물 다양성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과학적 및 기술적 협력
- 바. 순환 경제 접근법을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측면에 관한 협력
- 사.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 간 관계에 관한 견해의 교환
- 아. 환경 재난의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협력
- 자. 우수 환경 관행 및 기술적인 정보의 교환
- 차. 환경 교육에 관한 협력, 그리고
- 카.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

2. 양 당사국은 협력 활동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선순위 분야를 확인하기로 합의하고, 이

협정의 발효 후 이러한 우선순위 분야 및 활동을 포함한 작업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다.

3. 이 장에 따라 합의된 모든 협력 활동은 이용 가능한 자원뿐만 아니라 각 당사국의 환경 우선순위와 필요를 고려한다.

제18장 협력

제18.1조 적용범위 및 목적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전략 및 정책 목표에 따라, 이 협정의 결과를 최적화하고 기회를 확대하며 양 당사국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이행 및 이용 제고에 기여하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른 형태의 양자 협력과 상승효과를 발생시키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이 양 당사국 간의 개발 격차를 좁히고 이 협정의 이행 및 활용으로부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한다. 경제 및 기술 협력은 각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 수준과 국가 역량을 고려한다.
4.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목표로 하는 협력 이니셔티브에 특히 주목하기로 합의한다.
 - 가. 생산적 상승효과를 제고하는 것, 무역 및 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경쟁력 및 혁신을 증진하는 것
 - 나. 이 협정이 창출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사회연대경제의 생산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그들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
 - 다. 이 협정의 이행 및 이용 제고를 위하여 양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라. 이 협정의 다른 장에서 확인된 협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5.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 간 협력은 이 협정의 그 밖의 장과 그 밖의 양자 협력 메커니즘에 규정된 양 당사국 간 협력 및 협력활동을 보완할 것이다.

6. 협력활동은 이 협정에 규정된 일반 및 특정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차원 모두에서 수립되며 서로 보완된다.

제18.2조

협력 분야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분야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상호 유익한 조건을 통한 협력의 수단 및 메커니즘의 사용을 촉진하기로 합의한다.

가. 농업 및 농산업

나. 수산업 및 양식업

다. 임업

라.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마. 제조업

바. 정보통신기술

사. 과학, 기술 및 혁신

아. 보건의료 산업

자. 소상공인 · 중소기업 및 사회연대경제

자. 기업환경 개선

카 해양

파. 문화

타. 관광, 그리고

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기술된 분야에서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며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제18.3조 협력 형태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기술 지원

나. 관련 정보의 교환

다. 인적자원 훈련을 포함한 역량 강화

라. 제도의 설계 및 강화

마. 장학금, 학술 교류 등과 같은 과학 또는 교육 활동 종사자의 교류

바. 세미나 및 워크숍

- 사. 분야별 종합추진계획 수립
- 아. 발전전략 수립
- 자. 우수 관행 공유
- 차. 공동연구 및 개발 사업
- 카. 공동의 무역 및 투자 증진 활동
- 파.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기술 이전, 그리고
- 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형태

제18.4조

이행, 위원회 및 접촉선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최적의 집행 및 혜택의 이용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행되는 협력 활동의 이행 및 후속 조치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2. 이 장의 이행 및 협력 활동의 후속 조치를 위하여,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될 것이다. 위원회는 이 장의 부속서에 따라 양 당사국의 통상부처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부처의 대표로 구성된다.
3.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회합한다. 각 회합의 일자, 장소 및 의제는 접촉선 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
4.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이 장과 이 협정의 그 밖의 장에 규정된 무역 관련 협력 이니셔티브 이행의 진전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

- 나. 양 당사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이 장에 따른 협력 방법과 활동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
 - 다. 주제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국가 협력 기관, 연구 기관 및 대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관련 당국 간 조정을 하는 것
 - 라. 사업 제안, 사업 상황 및 이 장의 전반적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접수하고 전달하며 검토하는 것, 그리고
 - 마. 공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들
5. 양 당사국은 가능한 협력 활동에 관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할 것이다.
-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에콰도르의 경우,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18.5조

자원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경제 협력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3. 이 장의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조달은 각 당사국의 국가 역량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부담된다.

4. 위원회는 위원회가 적시하는 특정 협력 활동을 위한 자원의 제공을 검토한다.

제18.6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부속서 18-가
농업 및 농산업 협력

양 당사국은 농업 분야에서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및 학계의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특히

가. 다음과 같은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증진한다.

- 1) 축산 및 축산 가공업, 작물경작, 원예, 관개농업 및 천연섬유 생산을 포함한 농산업
- 2) 농업개혁 및 농업정책
- 3) 비도시 지역 개발
- 4) 도시 근교 및 도시 농업
- 5) 환경 및 천연자원 경제와 관리, 그리고
- 6) 지속 가능한 보전농경기술

나.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증진한다.

다. 농장 및 관련 생산시설 연구방문을 장려한다. 그리고

라. 양 당사국 간 농산물 무역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증진한다.

부속서 18-나
수산업 및 양식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어류와 수산물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수산업 협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인간의 직접 소비를 증대할 목적으로 종자의 개발과 수생생물 어업 및 양식종의 가공을 위한 연구 및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것
 - 나. 책임 있는 어업이라는 접근 방식에 따라 정보교환 및 천연자원의 보존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 다. 평등과 상호 이익의 원칙을 기초로 수산물 및 양식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및 위생 관리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개발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수산업 및 양식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 가. 수산업 및 양식업 개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을 강화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는 것
 - 나. 식량안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수산 및 양식 자원의 소비와 더불어 인간의 직접 소비를 위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증진하는 것
 - 다.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을 방지하는 것
 - 라. 공동으로 조직된 과정, 방문, 세미나 및 워크숍에의 참여를 통하여 양 당사국의 국가공무원과 수산업계 구성원의 훈련을 증진하는 것
 - 마. 양 당사국의 연구기관 간 파트너십 및 교류 구축, 그리고

바. 수산협력약정¹을 통하여,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양 당사국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최적화된 활용을 증진하는 것

¹ 수산협력약정은 특히, 수산자원, 수생생물종 및 양식업 분야에서의 양 당사국의 무역원활화 및 연구증진에 관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부속서 18-다

임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임업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협력을 적절하게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 가. 관련 지표의 개발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의 이행에 대한 협력
 - 나. 개발도상국의 산림탄소저장량(예: REDD+)에 대한 우수 관행 및 전문 지식 교환에 대한 협력
 - 다. 국제 시장에서 인정된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 지원(특히 소규모 생산자와 지역사회를 위하여)에 대한 협력
 - 라. 친환경임업 기술 개발 및 산림 생태계 보전에 대한 협력
 - 마. 임업 가치사슬 생산물의 가공, 공급 및 무역에 대한 협력
 - 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조치에 대한 협력
 - 사. 산불, 병충해의 방지 및 통제와 불법 교역을 감소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한 산림 보호에 대한 협력
 - 아. 산림 생태, 토양과 이러한 자원의 지리적 역학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참여형 산림 계획에 대한 협력
 - 자. 보존을 목적으로 재조림을 통한 산림복원에 대한 협력
 - 차. 조림과 목재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 사업

카. 연구 및 개발, 교육과 훈련에 대한 협력

파. 각 당사국의 법 제도에 따라 독립적 감독기관을 통한 것을 포함한 임업적 방
제 메커니즘에 대한 협력

타. 산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기술 및 기법에 대한 협력

하. 각 국가에 존재하는 상이한 산림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관
련 경험의 교환에 대한 협력, 그리고

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에 대한 협력

부속서 18-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1. 양 당사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광물자원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더 강하고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그들의 공동 목적이 지속 가능하고 청정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및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한다.

3. 양 당사국은 환경보호와 보전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개발 측면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률 및 내부 절차를 고려하는 데 동의한다.

4. 위에 언급된 것을 고려하여,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공동 프로그램과 자금조달 또는 태양광, 풍력, 수소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같은 청정 에너지 관련 분야

나. 에너지 및 광물자원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영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의 설계 및 개발

다. 광업 관련 환경적 책임의 복원을 위한 광업 기술의 교환

라. 국가 법률에 따라 파리협정상의 에너지 발생 배출 기준, 에너지 효율성, 재생 에너지 이니셔티브, 시장과 비시장 메커니즘의 증진

마. 환경영향이 낮은 에너지 인프라의 건설

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 사업 기회와 투자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동

사. 에너지 효율 조치를 포함하여,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가공, 운송 및 이용에 관련된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교류의 증진

아. 양 당사국 간 공공, 학계 및 민간 부문의 관련 전문가, 기술자 및 지도자에 의한 것과 같은 방문 및 교류, 그리고

자. 양 당사국의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분야

5.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정보의 교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지질학적 자료 또는 정보

나. 입찰 및 채굴사업과 같은 투자 기회

다. 관련 법, 규정 및 정책

라. 광해방지기술, 인프라 개발과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와 지역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6. 각 당사국은 제19.2조(통보 및 정보의 제공)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자국의 법과 규정이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7.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공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고 적절한 협력 메커니즘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력 위원회에 회합을 요청할 수 있다.

8.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협력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비밀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응답한다.

부속서 18-마
제조산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 분야에 중점을 두고, 무역, 투자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가. 펄프

나. 알루미늄

다. 조선 및 조선소

라. 구리

마. 석유화학

바. 철강

사. 섬유, 의류, 디자인 및 패션

아.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자.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차. 가공식품 및 음료

카. 화장품 및 세면용품

파. 플라스틱, 그리고

타. 그 밖의 양 당사국의 관심사항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제조업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가. 국내 생산에서 부가가치의 창출 및 다양화와 양 당사국 간 산업 생산성의 지속 가능한 증대를 촉진

나. 우수 관행의 교환,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혁신(R&D&I) 센터, 기술 이전 센터, 과학기술단지, 기술산업단지 및 그 밖의 그러한 장소의 개발을 통하여 추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제조업 및 농산업 제품의 혁신을 지원

다. 순환 경제, 생태 효율성, 재활용 및 소비 후 관행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와 충전소의 생산 및 사용에 특히 중점을 둔 환경에 기초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라. 생산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훈련과 산업 생산 전략의 창출, 이행 및 개발을 포함한 역량 강화의 장려

부속서 18-바
정보통신기술 협력

1. 양 당사국은, 국내적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업 관행이 민간 부문의 주도로 급속히 발전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이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그러므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은 분야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간의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가. 사이버보안

나. 전자서명의 상호운용성

다.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처리, 관리, 유통 및 무역

라. 양 당사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협력

마. 정보기술단지의 연구, 개발 및 관리

바.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정보기술 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

사. 양 당사국이 네트워크 및 통신의 연구·개발 및 배치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활동

아. 국제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 그리고

자. 양 당사국의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부속서 18-사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

1. 양 당사국은 특히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기술 생산자와 사용자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인프라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의 첨단 과학 또는 핵심 기술 분야에 특히 중점을 두고, 공동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가. 생명공학

나. 나노기술

다. 신소재

라. 환경기술

마. 과학 및 기술 정책, 그리고

바. 연구 및 개발 시스템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활동에서 적절한 경우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가. 필요한 경우, 설비 공유, 비밀이 아닌 과학 및 기술자료의 교환 및 제공, 그리고 가능한 경우 과학 표본의 교환을 포함하는 공동 연구 및 개발과 고등교육

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다. 세미나, 학술토론회, 학회 및 그 밖의 과학 및 기술 회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참

여를 포함하여 그러한 활동의 공동 주최

- 라. 양 당사국이 기존의 국가 계획 또는 정책에 따른 공동 과학 및 기술 연구 활동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활동의 증진
- 마.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관행, 정책, 법, 규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과학 및 기술 협력

부속서 18-아
보건의료 산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공중보건을 향상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포함한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공중보건 산업 분야에서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다음에 관한 정보 교환

- 1) 공공정책
- 2) 법, 규정 및 결의안, 그리고
- 3)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학회,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박람회 및 그 밖의 행사

나. 다음을 위한 관련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

- 1) 연구원, 학생 및 관련 산업 관계자의 교류
- 2) 공동 연구 프로그램 및 사업
- 3) 보건의료 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 4) 제품 품질 개선, 공급망 연계, 기술 무역 등
5. 상호투자 기회의 증진 및 촉진, 그리고
- 6) 약학 학위가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 및 학생을 위한 제약 산업의 다른

생산 지역에 대한 인턴십

부속서 18-자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력

1. 양 당사국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경제 성장, 고용 및 혁신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서 성별 기반 접근법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이 협정이 창출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그 기회로부터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 플랫폼의 설립 및 유지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관련된 이 협정 관련 정보의 공유 그리고 양 당사국 간 지식, 경험 및 우수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정보 교환을 증진한다.
3. 제1항에 따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될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 가. 이 협정의 전문
 - 나. 그 당사국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관련된다고 여기는 무역 및 투자 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 그리고
 - 다. 이 협정이 제공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고자 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유용하다고 여기는 추가적인 사업 관련 정보
4.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그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촉진적이고 투명한 무역 규칙 및 규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장려하는 것
 - 나. 기업 간 파트너십의 증진 및 촉진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를 개선하는 것
 - 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증진하는 것

- 라. 혁신과 기술의 사용 및 이전을 장려하는 것
- 마. 소상공인·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우수한 규제 관행 및 역량 강화를 증진하는 것
- 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 향상에 관한 우수 관행을 공유하는 것
- 사. 관리기술 개발, 제품 품질 개선, 공급자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우수 관행 및 지식을 공유하는 것
- 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접근 개선, 무역 원활화를 포함한 분야에서 정보 및 우수 관행을 교환하는 것
- 자. 신규 수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후원, 수출자 클럽)
- 차.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박람회, 무역 사절단과 같은 네트워킹 기회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 카. 환경 관리, 순환경제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대상과 같은 분야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

5. 양 당사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화를 소집할 수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화는 민간 부문, 피고용인, 비정부기구, 학계 전문가, 다양하고 소외된 집단이 소유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그리고 각 당사국의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부속서 18-차
기업환경 개선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역과 투자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더 호의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전달과 조정자 및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담당하게 될 접촉선을 지정한다. 접촉선은
 - 가. 에콰도르의 경우,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기업환경 개선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 가. 양 당사국의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공공 정책의 설계, 이행 및 평가에 대한 협력
 - 나. 양 당사국의 기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창구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 관행과 전문 지식 교환
 - 다. 투자의 사후 관리에 대하여 특히 전문 지식 공유, 정보 교환 및 기술 지원 참여를 통한 협업
 - 라. 투자와 관련된 법, 규정, 정책 및 그 밖의 것에 관한 정보 교환, 그리고
 - 마. 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 활동 장려

부속서 18-카
해양 협력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해상 운송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가. 항구 운영, 관리 및 개발 강화를 위한 개발 전략의 수립
- 나. 물류 효율성과 선박 유지보수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은 해상 항구의 설계와 강화
- 다. 항구 운영, 관리 및 개발에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 및 기술 협력 마련,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부속서 18-차

문화 협력

1. 상호 이익의 목적상, 문화 협력이 창조적 산업의 발전, 문화적·경제적 교류의 강화, 양 당사국 간 이해의 증대 그리고 문화 산업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시청각(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엔터테인먼트(극장, 라이브 밴드, 뮤지컬 등을 포함한다), 문화유산,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와 비디오 게임과 같은 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관련 산업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은 특히 가.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 교환, 나. 기술 지원, 다. 지식 공유, 라. 문화 분야에서의 시청각 공동 제작과 같은 공동 제작의 확대, 그리고 마. 문화 서비스 활동의 목적상 출입국 절차 및 일시 입국의 활성화를 통하여 협력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불법 거래를 확인하고 원상태로 복원하며 피하는 것을 포함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은 국가유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적 문서의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청각 분야에서의 공동제작협정을 고려하고 협상하는 데 동의한다.
5. 제4항에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은 일단 체결되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6. 제4항에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을 준수하는 공동제작 사업은 각 당사국 영역에서 국내 제작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각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정부지원을 포함한 모든 혜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부속서 18-파

관광 협력

양 당사국은 관광이 양국 간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고 양국의 경제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산업임을 인정하면서,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 가. 윤리적이고 책임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과 지역 공동체 간의 조정을 보장한다.
- 나. 양 당사국의 웹사이트 간 연결 및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한다.
- 다. 양 당사국의 관광객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 라. 양 당사국 영역에서 관광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에 대하여 협력한다.
- 마. 양 당사국 영역에서 생태관광 및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업한다.
- 바. 관광 및 관련 분야에서의 관련 통계, 홍보자료, 정책 및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사. 관광 및 교통 당국과 기관이 양 당사국 간 항공 연결을 개선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한다.

제19장 투명성

제19.1조 공표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관정을 전자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범위에서, 당사국은

가. 자국이 채택 또는 수정하고자 제안하는 그러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관련이 있는 한, 그러한 의견을 검토한다.

3. 제19.2조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세계무역기구로의 적절한 통보에 의해 이용 가능하게 된 때, 또는 그 당사국의 공식적이고 공개된, 무료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그 당사국이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19.2조 통보 및 정보의 제공

1.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한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 협정상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익에 달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실제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한쪽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이 그 조치를 사전에 통보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실제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된 모든 통보 또는 정보는 그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4. 이 조에 따른 모든 통보, 요청 또는 정보는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된다.

제19.3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 조치를 적용할 때 다음을 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리고 자국의 법에 따라,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에게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그리고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제공한다.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할 때, 그러한 이해관계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가 자국의 법을 기초로 하며, 이를 따르도록 보장한다.

제19.4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사를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는 공평하고,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자국의 법이 요구하는 경우, 행정 당국이 취합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적인 재심사를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이 그러한 결정을 이행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19.5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확립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제20장 분쟁해결

제20.1조 목적

1. 이 장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회피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이 장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20.2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여기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4장(정부조달)상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다만, 제21.1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대상인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호를 원용할 수 없다. 또는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제20.3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청했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했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가 절차적 또는 관할적인 이유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20.4조

협의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20.2조제1항에 언급된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고,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접수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그 요청에 답변하고 다음과 같은 기간 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이르기 위하여 선의로 협의를 개시한다.

가.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한 요청의 접수일 후 15일, 또는

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한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협의를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개최된다. 대면인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4. 각 당사국은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 또는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5. 이 조에 따른 협의는 비밀이며 이 협정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20.5조

공동위원회의 개입

1.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 후 3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15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나.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 후 6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30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2. 서면 요청은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요청의 접수부터 10일 내에 회합하고, 그 요청의 접수부터 60일 내에 협의의 대상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공동위원회는

가. 자신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주제에 대하여 기술 자문인을 요청할 수 있거나 작업반을 만들 수 있다.

나. 주선, 조정, 중개 또는 그 밖의 대안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다. 권고를 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제20.6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양 당사국은 언제든지 주선, 조정 및 중개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른 절차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중재패널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계속될 수 있다.

3.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이 협정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20.7조
중재패널 설치

1.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서면으로 피소 당사국에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 후 3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15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나.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 후 6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30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다. 제20.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개입 요청의 전달로부터 10일 내에 회합하지 않았거나 요청의 접수부터 60일 내에 대상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를 수 없었던 경우, 또는

라.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한 제소 당사국이, 공동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이 만료하면, 제20.5조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경우

2. 중재패널 설치 요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 그리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적시한다.

3. 당사국은 제안된 조치의 조사를 위하여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없다.

제20.8조
중재패널의 위임사항

1.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제20.12조제1항 및 제20.12조제2항에 규정된 판단, 판정, 그리고 권고를 하고, 제20.12조제1항 및 제20.12조제6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제20.9조

중재패널의 구성

1. 중재패널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2. 각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자국의 국민일 수 있는 중재인을 한 명씩 임명하고, 중재패널의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 역할을 할 최대 3명의 후보자를 제안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45일 내에, 제안된 후보자를 고려하여 중재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세 번째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45일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7일 내에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회합하여 양 당사국이 제안한 후보자 명부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세 번째 중재인 후보자는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고, 어느 당사국에도 통상적인 거주지가 없으며, 어느 당사국에 의해서도 고용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자격으로도 그 분쟁을 다루지 않았어야 한다.

4.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세 번째 중재인이 임명되는 날이다.

5. 모든 중재인은,

가. 법, 국제무역 또는 이 협정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나.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분쟁과 관련된 어느 한 쪽 당사국이나 기관과 연계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

다.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그리고

라. 부속서 20-나를 준수한다.

6. 한쪽 당사국이 중재인이 부속서 20-나의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그 중재인을 제7항에 따라 교체한다.

7.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후임자는 15일 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임명 방식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선정된다. 후임자는 원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날부터 정지된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 재개된다.

제20.10조

중재패널 절차

1.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20-가에 규정된 중재절차 규칙의 규율을 받는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과 협의하여, 그 부속서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2. 중재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초청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3. 양 당사국은 적어도 하나의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절차상 발표, 진술 또는 반박

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중재패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 또는 서면입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거나, 당사국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손해가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은 조치의 결과로서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당사국은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의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5. 중재패널은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과 협의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6. 중재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포함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제22.2조제3항라호에 따라 채택한 해석 및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을 선의로 수행하며 자국의 의무에 대한 우회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을 해석한다.

7. 중재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린다. 다만, 중재패널이 컨센서스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어느 중재인이 다수의견 또는 소수의견과 관련되어 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8.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모든 관련 정보원으로 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정 측면에 관한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에 획득한 모든 조언이나 의견의 사본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9.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유지된다.

10. 제8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은 분쟁에 관한 자국의 견해에 대하여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정보와

서면입장은 비밀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된 정보 또는 서면입장을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으로부터 20일 내에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비밀이 아닌 정보 또는 서면입장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11.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재패널에 제공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12. 중재패널 절차의 장소¹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 장소는 양 당사국의 수도가 교대로 되며 중재패널 절차의 첫 번째 회의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제20.11조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렇게 합의한 날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자신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정지된 중재패널 절차는 재개된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중재패널의 업무에 대한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재패널 업무의 정지의 각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권한은 실효된다. 이 실효는 제소 당사국이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2.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되기 전 언제든지 중재패널의 의장에게 공동으로 통보함으로써 중재패널 절차를 종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은 판정을 내리기 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양 당사국에 제안할 수 있다.

¹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 절차는 기술적 수단으로 열 수 있다.

제20.12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90일 내에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모든 조사결과 및 판정에 대한 기본 근거,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권고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한 사실의 조사결과 및 판정을 포함하는 최초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 가.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는지 여부
- 2)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는지 여부, 또는
- 3)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20.2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나. 패널이 다루도록 분쟁의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항

2. 양 당사국의 공동 요청에 따라, 중재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거나 제20.2조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자신의 조사결과와 판정에 불합치 제거 또는 무효화나 침해의 처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4. 중재패널이 보고서를 90일 내에 제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패널은 보고서를 제출할 추정기간과 함께 지연에 대한 사유를 분쟁의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고서는 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5. 각 분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부터 14일 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분쟁의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6. 분쟁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부터 30일 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지연의 이유와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6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7.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중재패널은 제20.12조제1항, 제20.12조제4항 및 제20.12조제6항에 따른 각 기간의 절반 내에 잠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제20.12조제5항의 측면에서, 그 기간은 10일까지 단축될 것이다.

8.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국을 구속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9.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어떠한 권고도 이 협정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10.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제20.13조

최종보고서의 이행

1.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았거나 당사국의 조치가 제20.2조제1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은 그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즉시, 또는 그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거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중재패널 최종보고서의 제출일부터 45일 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패널은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3. 피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이 행한 이행 조치를, 제2항에 따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거나 원 중재패널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제소 당사국에 통보한다. 피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4.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을 중재인으로 가진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은 제20.9조에 따라 임명된다. 중재패널은 그 사안이 중재패널에 회부된 날 후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20일 내에 그리고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45일 내에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앞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해당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20.14조

불이행의 경우 보상 및 혜택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이행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이행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또는 제20.13조제3항에 따라 사안이 회부된 중재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렇게 요청받는 경우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에 이르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교섭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의 접수일부터 20일 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언제든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보를 피소 당사국에 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정지의 통보로부터 30일 후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개시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가. 제6항에 따라 조사가 수행되고 있는 중인 경우, 또는

나. 상호 합의한 해결책에 이른 경우

4. 제1항에 언급된 보상과 제2항에 언급된 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다. 보상과 정지 모두 중재패널 보고서의 조사결과와 판정의 완전한 준수보다 선호되지 않는다. 정지는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는 때까지만 적용된다.

5.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가.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이 이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정한 조치나 그 밖의 사안에 영향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대하여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도록 우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그러한 정지의 통보에는 그 기초가 되는 근거를 적시한다. 그리고

다. 제2항에 언급된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

6. 제소 당사국에 의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위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피소 당사국이 여기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사안을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7.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을 중재인으로 가진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은 제20.9조에 따라 임명된다.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은 그 사안이 중재패널에 회부된 날 후 45일 내에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앞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 하에 해당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20.15조

경비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의 비용과 자국의 경비 및 법무 비용을 부담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의장의 비용과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20.16조

부속서

부속서 20-가와 20-나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0.17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중재패널이란 제20.7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중재인이란 제20.7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후보자란 제20.9조에 따라 세 번째 중재인으로 임명되는 것이 고려되는 개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20.7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20.2조에 언급된 대로 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중재패널 절차를 말한다.

부속서 20-가 중재절차 규칙

행정 운영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절차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중재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통보

2.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이 전달하는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팩스, 텔렉스, 전신 또는 발송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수단으로 전송된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자국의 각 서면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4. 모든 통보는 작성되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에콰도르의 생산통상투자 수산부에 각각 전달된다.

5.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시정될 수 있다.

6. 문서 전달 마감일²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최초 입장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의 목적상 전달일이란 제출된 문서가 목적지에 도달한 날이다.

7.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30일 이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의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자국의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중재패널의 운영

8. 중재패널의 의장은 중재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행정적 및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0. 중재인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중재인의 보조인의 참석을 허락할 수 있다.

11. 모든 결정 및 판정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지 않는다.

12. 이 장이 다루지 않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않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3. 중재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이 장에 규정된 기한을 수정하거나, 절차에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수정 또는 조정에 대한 이유를 필요한 기한 또는 조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알린다.

1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비용은 통상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기준에 따를 것이다.

심리

1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소한 한번의 심리가 개최된다. 의장은 양 당사국 및 중재패널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한다. 중재패널의 의장은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부속서 제20항에 따라 양 당사국이 심리를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또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6.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17.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18. 당사국의 대표자, 당사국의 자문인, 전문가, 행정 인력, 통역사, 번역사, 법원서기 그리고 중재인의 보조인은 심리가 대중에게 공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중재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당사국의 대표자와 자문인만이 중재패널에 발언할 수 있다.

19. 각 당사국은 심리일의 최소 5일 전에 그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서 구두 변론이나 발언을 할 사람과 심리에 참석할 그 당사국의 대표자, 자문인, 통역사 및 번역사의 명부를 중재패널에 전달한다.

20. 중재패널의 심리는 대중에게 비공개된다. 양 당사국은 심리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1. 중재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주장

반박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답변,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22.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든지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다.

23. 중재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도록 주선하고, 속기록이 준비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속기록 사본을 양 당사국에 전달한다. 양 당사국은 속기록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중재패널은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4. 각 당사국은 심리일부터 10일 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응답하는 보충적 서면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문

25. 중재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든지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질문이 제시된 당사국에 질문서를 전달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질문서 사본을 보낸다.

26. 중재패널이 질문서를 제시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중재패널에 모든 서면 답변서 사본을 전달한다. 각 당사국은 접수일부터 7일 내에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진다.

일방적 의사소통

27. 중재패널이 고려 중인 사안에 관하여 중재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않다.

28. 어떠한 중재인도 나머지 중재인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할 수 없다.

기술적 조언 요청에 따른 기한 정지

29.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가가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전문가에게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추가 기간이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해진 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30. 전문가의 서면 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이 전달된 날부터 보고서가 중재패널에 전달되는 날까지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한은 정지된다.

외부조언자의 입장

31.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3일 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입장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10일 내에 제출되고,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않아야 하고, 중재패널이 고려 중인 사실적·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32. 제31항에 언급된 입장은 자연인 또는 법인인지에 관계없이 활동 성격 및 자금조달 출처를 포함하여 그 입장을 제출하는 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의 국적 또는 설립 장소 및 그 인이 중재절차에서 가지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한다. 그 서면입장은 제34항에 따른 공동 작업언어로 작성된다.

33. 중재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31항 및 제32항에 부합하는 모든 입장을 자신의

판정에 목록화한다. 중재패널은 그러한 입장에서 제기된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에 따라 중재패널이 획득한 모든 입장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에 제출된다.

통역 및 번역

34. 제20.4조에 언급된 협의 동안 그리고 제8항에 언급된 회의 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절차의 공동 작업언어는 영어이다. 당사국이 절차 중에 통역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준비 및 비용 부담은 그 당사국이 진다.

35. 이 장에 따라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어떠한 원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그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기한 계산

36.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달력상의 일로 계산되고, 첫째 날은 그 기한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이 된다.

37. 제6항의 이행을 이유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동일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러한 접수에 의존하여 기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러한 문서를 접수한 마지막 날부터 기산된다.

그 밖의 절차

38. 제20.10조제2항부터 제20.10조제4항까지, 그리고 제20.12조제5항 및 제20.12조제6항에 따라, 사안을 회부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최초의 서면입장을 사안의 회부일부터 15일 내에 전달하고, 피소 당사국은 최초 서면입장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자국의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39. 제20.10조 및 제20.12조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중재패널 절차의 기한에 따라 각 당사국에 같은 수의 서면입장을 작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중재패널은 반박 서면입장을 포함한 추가 서면입장의 전달 기한을 정한다.

40.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부속서는 제20.10조 및 제20.12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또한 적용 가능하다.

정의

41. 이 장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 자문하거나 그 당사국을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중재인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중재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대표자란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임명한 인을 말한다.

부속서 2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절차에 대한 책임

1. 모든 후보자와 중재인은 분쟁해결 절차의 완전 무결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중재인들은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에 확립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개 의무

2. 제20.9조에 따라 중재인으로서 자신의 임명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3. 일단 임명되면, 중재인은 제2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중재인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중재인은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공개한다.

임무

4. 임명되는 경우, 중재인은 절차의 과정 내내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5. 중재인은 모든 임무를 공정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6. 중재인은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않는다.

7. 중재인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8. 중재인은 부속서 20-가 제27항 및 부속서 20-가 제28항에 따라, 절차에 관한 일방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중재패널 구성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9.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다. 중재인은 공평한 태도로 행동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대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 또는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11. 중재인은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재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중재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2. 중재인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13.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관계를 맺거나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전임 중재인의 의무

14. 모든 전임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때 편파적이었거나 중재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을 도출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비밀유지

15.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16. 중재인은 공표에 앞서 중재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17.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중재패널의 심의 또는 중재인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의

18. 이 장의 목적상,

직원이란, 중재인에 대하여, 보조인을 제외하고 그 중재인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제21장

예외

제21.1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9장(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1장(통신) 및 제12장(디지털 무역)¹의 목적상, GATS 제14조(각주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제21.2조

¹ 이 항은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필수적 안보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무기,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또는 군사 시설에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2)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또는

3)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그리고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의 목적상, 자국의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제21.3조

과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²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나.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2.2조(내국민 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범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리고

나. 제2.12조(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2항을 조건으로

² 조세협약이란 양 당사국 간 발효 중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가. 제8.2조(내국민 대우) 및 제10.2조(내국민 대우)는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제8.2조(내국민 대우) 및 제8.3조(최혜국 대우) 그리고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10.3조(최혜국 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나 상속, 유산취득, 증여 그리고 세대를 건너뛸 이전에 대한 세금 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가호 및 나호에 언급된 조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의무

라. 기존의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

마. 기존의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바. 기존의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위의 어떠한 조들에 대해서도 그 개정 시점에서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그 개정

사. (GATS 제14조라호에서 허용된 대로) 공정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 또는

아.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 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

5. 이 조의 목적상, "세금" 및 "과세조치"는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관세와 그 안에 기재된 예외(가호는 제외한다)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21.4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1.5조

비밀유지

한쪽 당사국이 자국이 비밀로 지정한 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러한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제21.6조

국제수지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하여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 당사국 간 지급 및 자본 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상품 무역의 경우, 1994년도 GATT 및 세계무역기구의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경우, GATS 제12조와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부속서 8-가에 따라³, 지급 또는 송금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조치는 비차별적이고 그 기간이 제한되며, 국제수지 상황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고,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수립된 조건을 따르며 적용가능한 대로 국제통화기금협정과 이 협정의 조항 및 부속서와 합치한다.

3.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은 그러한 조

³ GATS 제12조와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부속서 8-가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부속서 8-가가 우선한다.

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히 통지하고, 그것의 제거를 위한 시간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시한다.

4. 제1항에 따라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에 관하여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한다.

제22장 제도 규정

제22.1조 접촉선

1.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접촉선을 지정한다. 접촉선의 지정은 이 협정의 특정 장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의 특정한 지정을 저해하지 않는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

제22.2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에콰도르의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 또는 그들이 각자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 위원회는
 - 가. 이 협정의 이행과 적용을 감독하고 촉진하며 협정의 일반 목표를 증진한다.
 -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 다. 양 당사국 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제20장(분쟁해결)에서 부여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을 구한다.

마. 이 협정의 적용 결과를 평가한다.

바. 이 협정의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한다. 그리고

사.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거나 양 당사국이 그에 위임한 분야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관심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그리고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모든 이해당사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상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

마. 이 협정이 상정한 대로 권고를 하거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바. 각 당사국 각각의 적용 가능한 국내 요건과 절차의 완료 후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자신의 절차 규칙과 이 협정에 따른 다른 위원회가 만들거나 권고한 규칙 또는 추가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 그 기능을 수행할 때,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원칙적으로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의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한쪽 당사국의 요청으로부터 30일 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5. 한쪽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다른 쪽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제22.3조

위원회 및 작업반

1. 다음의 위원회는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가. 환경위원회

나. 상품무역위원회

다. 협력위원회

라. 금융서비스위원회

마. 정부조달위원회

바. 지식재산권위원회

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

자. 무역구제위원회

차. 관세위원회, 그리고

카. 노동위원회

2. 다음의 작업반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 작업반, 그리고

나. 디지털 통상 작업반

제23장 최종 규정

제23.1조 부속서, 부록, 각주 및 양해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각주 및 양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3.2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각 당사국이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날에 발효한다.

제23.3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제23.2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3.4조 발효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23.5조
존속 및 탈퇴

1. 이 협정은 확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통보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3.6조
정본

이 협정의 한국어본, 스페인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년 월 일 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____년 ____월 ____일

마리아 손솔레스 가르시아
생산통상투자수산부장관
에콰도르공화국 키토

가르시아 장관님 귀하,

본인은 이 날 서명된 우리 양국 정부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에콰도르공화국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협상 과정에서 양 당사국 간 투자를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인정의 맥락에서,

양 당사국은 각자의 입장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부속서 I 및 II를 포함하여, 투자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한 후속 협상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요청의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후속 협상을 개시한다.

양 당사국은 후속 협상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내에 그 협상을 마치도록 노력한다.

후속 협상은 투자 보호와 자유화, 그리고 부속서 I 및 II의 유보목록뿐만 아니라 부속서를 포함한 다른 장들의 투자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적용대상으로 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안 덕 근

____년 ____월 ____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민국 서울

안덕근 본부장님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날 서명된 우리 양국 정부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에콰도르 공화국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협상 과정에서 양 당사국 간 투자를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인정의 맥락에서,

양 당사국은 각자의 입장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부속서 I 및 II 를 포함하여, 투자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한 후속 협상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요청의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후속 협상을 개시한다.

양 당사국은 후속 협상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내에 그 협상을 마치도록 노력한다.

후속 협상은 투자 보호와 자유화, 그리고 부속서 I 및 II의 유보목록뿐만 아니라 부속서를 포함한 다른 장들의 투자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적용대상으로 할 것이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마리아 손솔레스 가르시아